

# 2010년도 업무추진지침

2010. 1



# 2010년도 업무추진지침

2010·1



# 목 차

2010년 주요 업무계획 .....	1
고용정책관실 .....	19
직업능력정책관실 .....	59
고용평등정책관실 .....	125
고용서비스정책관실 .....	201
노사협력정책국 .....	297
공공노사정책관실 .....	365
근로기준국 .....	387
산업안전보건국 .....	427
정책기획관실 .....	587
국제협력관실 .....	635
대변인실 .....	669
감사관실 .....	677
운영지원과 .....	693

# 2010년 주요 업무계획



# 순 서

I. 최근 상황 평가 및 2010년도 과제 .....	5
II. 취업애로계층 일자리 지원 .....	8
III. 일자리 창출 역량 극대화 .....	14
IV. 미래 대비 및 국격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 ..	16

- 2010년 : 노사문화 선진화 원년 -



# I. 최근 상황 평가 및 2010년도 과제

## 1. 8조 4,097억원 규모 일자리 대책을 시행, 고용위기 적극 대응

- 적극적 고용안정대책(재정 조기집행, 2조 8천억원 규모 추경 편성)으로 효과적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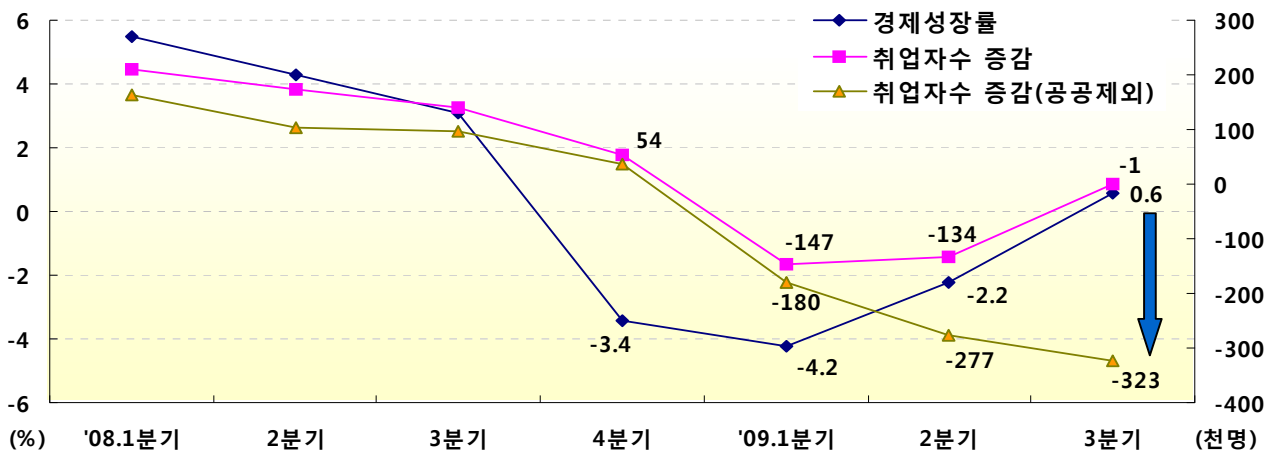
\* '09. 상반기 취업자수 증감률 : 미국 -3.5%, 유로 -1.4%, 한국 -0.6%

\* 연초 30만개 수준의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었으나, 일자리 대책 효과로 8만개 감소로 완화

- 특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2.23) 등을 계기로 일자리 나누기를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

\* 일자리 나누기의 고용유지효과는 최소 9만명에 달할 것으로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 2. 경제는 본격 회복국면에 접어들었으나 고용은 더딘 회복



- 금년들어 취업자는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나,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부문의 고용창출력이 부진

\* '09.3분기 현재 공공부문을 제외한 취업자수는 323천명 감소

- 특히, 여성과 청년, 임시·일용·자영업자 등 취업애로계층의 어려움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

▶ ('09.1~10, 전년대비 취업자 증감)

전체 <-84천명> 일용 <-144천명> 자영자 <-234천명> 청년 <-144천명> 여자 <-100천명>



### 3. 노사관계 선진화의 기틀 마련

#### ①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노사관계 확산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09.2.23)” 등 산업 현장에 노사협력 분위기가 확산되어 노사관계 안정기조가 유지되고, 경제위기 극복에도 기여

- \* 노사분규건수 : 116건으로 전년동기(107건) 대비 소폭 증가 (11월말)
- \* 근로손실일수 : 591천일로 전년동기(797천일) 대비 25.8% 감소 (11월말)
- \* 노사협력건수 : 6,375건으로 전년동기(2,680건) 대비 2.4배 증가 (11월말)

- 법 테두리내 노사갈등의 자율적 해결 지원 등 일관된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노사관계가 근원적으로 변화되는 전기 마련 (쌍용차, 철도 등)

- 공공부문의 불법·불합리한 노사관행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공정하고 책임 있는 노사관계 형성의 기틀 마련

- \* 공공부문 단체협약 분석 및 불합리한 노사합의 개선 추진 등

#### ② 전임자·복수노조 제도 노사정 합의(’09.12.4)

- 13년간 미루어온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복수노조 허용 관련 노사정 합의 도출 ⇨ 시행시기, 시행방안 최초로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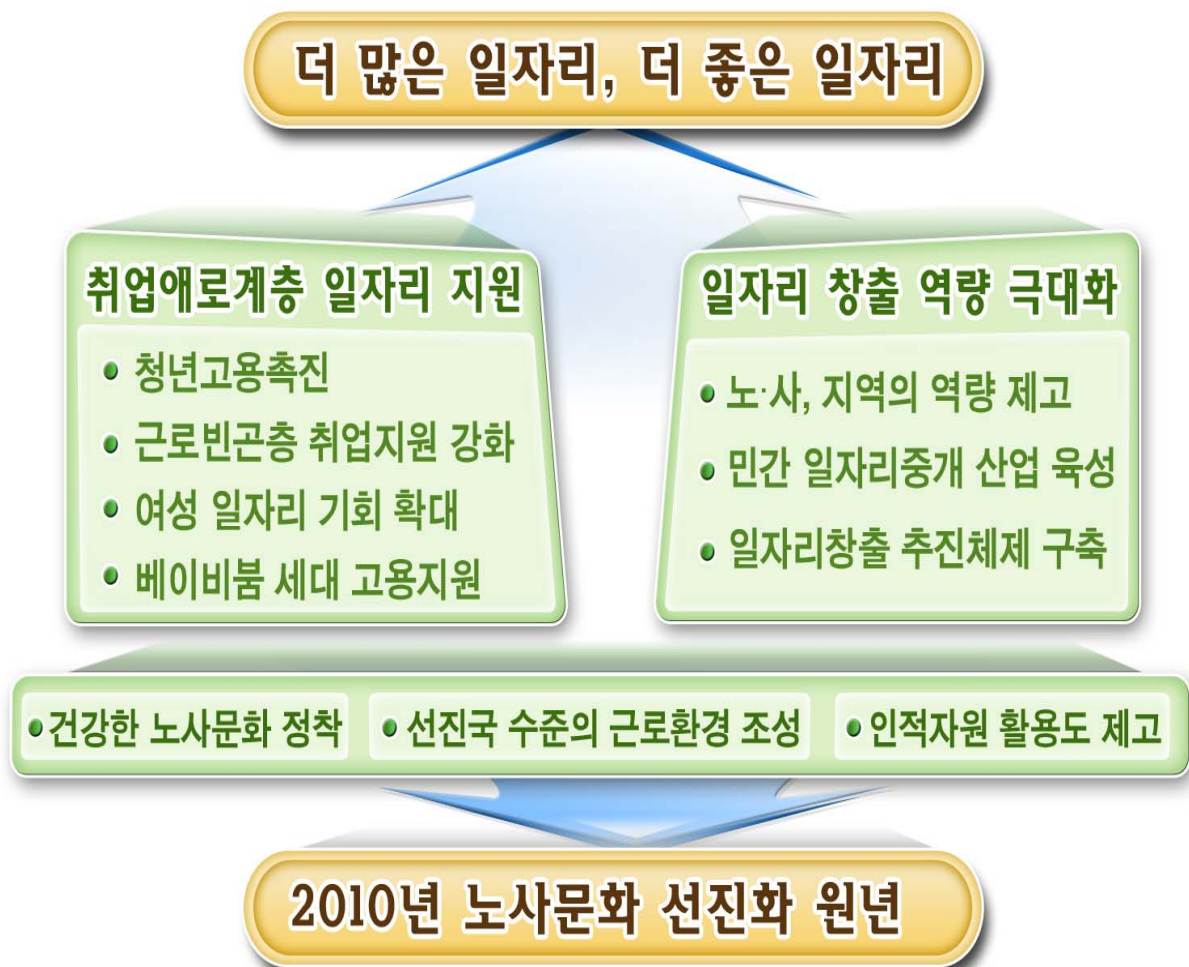
- \* 전임자 급여 지급 원칙적 금지, 예외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 \*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규제 폐지, 교섭창구 단일화

- 생산성 향상, 외자유치 등에 긍정적 기여, 새로운 노사관계를 여는 전환점 마련

## 2010년도 노동정책 과제

- ◆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며, 친서민 정책의 핵심
-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취업애로계층을 지원하고 경제 각 주체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극대화
  - ⇒ 국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
- ◆ 전임자·복수노조 제도 합의를 토대로 새로운 노사관계 제도를 원만하게 정착
  - ⇒ 2010년을 노사문화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고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근원적 일자리 창출



## II. 취업에로계층 일자리 지원

### 1. 청년고용 촉진

#### 1-1 일자리 중개 시스템 구축

- (대졸자 및 우수중소기업 DB 보강) 대졸자·전문계고 80만명, 우량 중소기업 6만개 DB를 확충하고 매칭 서비스 제공

##### < DB 구축 내용 >

- △ (청년) 구직의사, 직업훈련수요, 훈련희망직종, 이메일 등
- △ (중소기업) 임금, 근로조건, 현황 등 기본정보와 구인수요 파악
- △ 개인·기업별로 구직 및 훈련 수요를 프로파일링하여, 1차 메일로 관련 정보 제공, 2차 추가정보 희망자에게 취업지원 및 훈련서비스 제공



#### 일자리 중개 시스템

- (학교의 취업지원 역량 강화) 청년과 중소기업간 일자리 중개 과정에서 학교의 기능을 확대하고 고용지원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
  - 학교별 취업지원관을 배치, 직업 진로지도 및 취업상담, 매칭 서비스 제공
  - 학교 취업지원센터를 「취업·창업지원센터」로 확대 개편
    - ▶ 대학 150개소('10년) → 전 학교로 단계적 확대 검토
    - ▶ 인사·노무 경력자 등 참여(파트타임)
  - 대학의 취업성과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 \*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노동부), 교육역량강화사업(교과부) 선정시 우대

## 1-2 학교와 중소기업간 맞춤형훈련과 취업연계

- (재학생) 산학간 협약에 의한 인력 양성, 졸업과 동시에 취업<58천명>
  - ▶ 산학협력중심대학(교과부, 지경부), 폴리텍대학(노동부), 중소기업-학교 취업협약훈련(중기청)
- (졸업생) 기업의 채용 수요에 따라 맞춤형훈련 실시, 취업으로 바로 연결<79천명>
  - ▶ 수요자 주도형 사업주단체 공동훈련(노동부),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교과부), 인력채용패키지(중기청)
- 정부지원 훈련사업에 참여한 위탁훈련기관 및 민간 훈련기관의 훈련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포털사이트 구축(10.4월 개시, 부처 공동활용)

## 1-3 창직·창업 도전 지원

- (창직·창업 준비 지원) 일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청년인턴제와 훈련 프로그램 융합 지원(10년 시범실시)
  - 청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문화, 예술분야 산업의 훈련수요와 결합, 현장에서 인턴경험과 훈련(문화관광부·중소기업청 1인 창조기업 연계)
- (창직·창업 공간 지원)
  - 고용지원센터에 창직·창업 아이디어 발굴 공간을 대여(40개소)하고, 대학·지자체로 확산 유도
  -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지원과 연계하여 창업 공간 지원



## 2. 근로빈곤층의 취업지원 강화

### 2-1 1:1 취업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및 제도화) 저소득층에 대해 심층상담을 통한 진단부터 직업훈련, 취업알선까지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확대('09년 1만명→'10년 2만명)
- (취업주치의 지정) 저임금(150만원 미만) 실직 근로자에 대해 취업할 때까지 통합서비스 제공



- 복지관련 제도도 일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근로유인형으로 재설계(관계부처 협조)
- 자영업자의 생계안정 및 재도전 기회 부여를 위해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 허용('10년 상반기 고용보험법 개정)

### 2-2 재정지원 일자리 우선 제공

-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여성가장,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배분
  - 총 참여기간 및 중복참여를 제한하고 사업종료 후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하도록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 \* 기술습득 및 취업용이 직종(이·미용, 도배, 자동차 정비) 등 직업훈련과정도 지원
- 지역별 자원봉사 센터, NGO 등과 연계하여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디딤돌 일자리 확대

## 2-3 사회적기업을 새로운 일자리 브랜드로 육성

- (12년까지 사회적기업 1천개 육성) 범 정부적 협력을 통해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 중 수익성과 자립가능성이 가능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10년, 200개)
  - \* 노동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바우처 공급기관, 자활근로사업단 등
- 지자체에 사업개발비(185억원)를 지원하여 사회적기업 설립 유도('10년 50개)
- 공공기관 우선구매, 세제·금융지원 확대, 소셜펀드 조성 등 사회적기업의 조기 자립기반 강화
- (민간부문의 사회적기업 참여유도) 대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과 연계, '1사 1사회적기업' 적극참여 유도('09년 4개사 →'10년 10개사)
  - 회계, 법률, 노무 분야 등의 전문성 기부(pro bono) 활성화

## 3. 여성의 일자리 기회 확대

### 3-1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창출

- 파트타임·재택근무 적합직무\* 모델을 만들고 공공부문부터 적용 후 민간부문에 전파
  - \* 노동부 “고용노동 콜센터” 사례 : 상담원을 단시간 계약직근로자로 채용, 1일 2교대 근무(오전-오후 4.5시간)

■ 민원상담 업무, 휴일근무 또는 야간 개장이 필요한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 및 고궁 관리업무 등으로 확대 가능

- 단시간 근로자 추가 고용시 컨설팅 및 비용 일부 지원

### 3-2 일하는 여성의 직장보육시설 지원

- (대·중소기업 연계형 직장보육시설 확대) 중소기업, 원·하청 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지도(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협조)
- (공공부문 직장보육시설 확충) 해당기관의 보육수요가 높은 기관에 소규모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보육아동 정원 일부를 지역주민 및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개방 추진
  - 공공부문에 대한 보육수요 조사 실시('10.1분기, 복지부, 행안부 협의)

## 4. 베이비붐 세대 고용 지원

\* 베이비붐 세대(55년생~63년생)는 712만명으로 향후 9년간 집중 퇴직 예상

### 4-1 고용연장 지원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활성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동의 요건 완화를 통해 제도 확산 추진
- (정년연장 논의) '13년 국민연금 수급연령 61세 상향, '18년 고령사회 진입 등을 감안 정년 연장 등 노사민정 사회적 논의 시작('10년)

\* 일본은 '94년(고령사회) 60세 정년 의무화, '04년 65세 고용 의무 법제화

### 4-2 전직 지원

- (취업애로계층) 고령자 인재은행을 훈련-고용-취업지원프로그램 토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확대 개편 ('09년 8개→'10년 16개)
- (퇴직 전문인력) 중기중앙회, 언론사 등과 협력하여 DB를 구축, 원하는 중소기업에 집중 매칭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



## 5.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

### 5-1 기간제 근로자 제도개선

- (기간제한 적용예외 확대) 기간제한으로 다수가 실직되고 있는 직종(대학시간강사, 연구원 등)의 경우에는 기간제한 예외에 포함
  - 실태조사('09.11~12월),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 추진
- (차별시정제도 활성화) 기간제 근로자 본인의 차별시정 신청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 권한 부여방안 강구
  - 취약계층의 차별문제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차별상담서비스 제공

### 5-2 산재보험 적용확대 및 산재근로자 지원

-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검토
- 중소기업 무급가족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마련
- 진폐보상체계 개편 완료, 석면관련 질환 인정기준 및 장해 평가기준 개선 등 신속·공정한 산재보상 실시('10년 하반기 법령개정)

### 5-3 장애인 고용촉진 강화

- 2015년까지 공공부문 고용률 3% 달성 추진('09.4월, 국무회의 보고)
  -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고용률 2% 상회, 헌법기관 1.67%, 교육청 0.98%
- 의무고용률 달성여부 평가시 중증장애인 1명을 경증장애인 2명으로 인정('10.1 시행)



### Ⅲ. 일자리 창출 역량 극대화

#### 1. 노사의 일자리 상생협력 확산

- (원·하청 기업간) 원청기업과 협력업체가 청년 인턴을 연계 채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 확산 유도
- (고령자-청년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 중고령자에 대한 임금 피크제 실시, 재직·전직 훈련 등으로 생긴 빈 일자리에 청년을 신규 채용
  - 노사민정간 대화 체계를 구축하여 고용상생협약 체결 유도
  - \* 정부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훈련비, 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지원

#### 2. 지역단위 일자리 역량 제고

- 지역별 노사민정협의체를 재편, 지역고용대책을 수립·추진 하도록 하고 성과에 따라 관련 예산을 차등 배분
- 지방이 중앙정부와 함께 일자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 유도

#####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

- ▶ 일자리 통계 인프라 구축 : 시·군·구별로 주기적으로 일자리 수 조사
  - \* 경기도는 31개 시·군·구에 대해 분기별 일자리 조사 추진('10년)
- ▶ 지자체장의 일자리목표 공시 유도 : 임기중 일자리 목표 제시 및 달성을 위한 지역고용대책을 공표, 노동부는 자치단체와 MOU 체결 및 지원
- ▶ 성과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 지자체 평가시 일자리 성과 우수 단체는 각종 지원금 우대지급, 우수사례 포상 및 확산 유도

- 지자체의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역할 강화를 지원

### 3. 민간 일자리 중개서비스 산업 육성

#### 3-1 규제 완화

- 직업소개 및 파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
  - \* 고급 전문직종에 대해 직업소개요금 자율화, 파견업을 32개 직종에서 확대, 단순소개 위주에서 파견·훈련 겸하는 종합인력회사

#### 3-2 일자리 중개 선도기업 육성

- 민간 일자리 서비스 산업을 대폭 정비하고 서비스 공신력 제고, 표준화·대형화 유도
  - 고용서비스 우수인증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
    - \* 민간위탁기관 선정시 우선 선정, 인증마크 사용(3년), 종사자 교육훈련 지원 등

### 4. 일자리 창출 추진체제 구축

-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제고)** 범정부 일자리 사업(234개) 평가 및 개선, 수요자 관점에서 개편
- **(고용영향평가 실시)** 국가·지자체의 주요 사업·정책이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고용창출 제고 방안 마련
- **(국가고용전략 수립)** 우리경제의 고용창출력과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범정부적 고용전략 수립(“10년 상반기)
  - \* 노동시장 선진화·고용지원서비스 강화 등을 통한 노동시장 활력 회복, 미래인재 양성 등 인적자원 개발, 고용친화적 경제·산업·교육 정책 등
  -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교육제도 개선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전 분야를 논의하는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 운영

# IV. 미래 대비 및 국격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

## - 2010년 : 노사문화 선진화 원년 -

---

### 1.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

#### ① 전임자·복수노조 제도 연착륙 지원

- 교섭·협의를 통한 근로시간 면제 기준 및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마련(노조법 시행령 개정)하고, 제도 정착을 위해 노사 적극 지도
  - \* 노사정 이행 점검 TF 운영(노사정 공동 실태조사, 제도이행 실태 점검), 매뉴얼 개발·보급, 현장 노사교육, 외투기업·국제사회 등 적극 홍보
- 중앙·지역단위 노사정 협력 강화를 통해 예방적 갈등관리
  - \* 노·사출신 교섭협력관 채용, 현장(지방노동관서) 배치 등
- 외투기업, 국제사회 등에 노사관계 선진화 적극 홍보

#### ② 공정과 책임의 노사문화 구현

- 불합리한 노사문화·파업관행(사업장 점거, 업무방해 등) 개선
-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의 『生産的 交渉』 지도(임금 등 단기·분배 이슈 → 생산성 향상 등 장기·경쟁력 이슈 중심으로 전환)

#### ③ 참여와 협력의 생산적 노사관계 형성

- 노사갈등기업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장혁신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고, 중소·영세기업 '현장 노무관리 지원방안' 마련
- 일자리 중심의 새로운 노동운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 ④ 민간을 선도하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

- 공공부문이 노사문화 선진화를 선도하도록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견지, 사용자의 노사관계 책임자로서의 올바른 역할 확립
  - \*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노사관계 진단·평가체계 구축

## 2. 선진국 수준의 근로환경 조성

### 2-1 근로기준 제도의 선진화

-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기준 제도·관행 개선
  - 탄력·재량근로, 근로시간계좌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 노동부 실태조사 및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관행 개선 추진
- 연공급제 중심에서 직무·성과급제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선 시도(사업장 컨설팅, 임금정보시스템 운영 등)

### 2-2 산업재해 감소로 사회적 비용 절감

- 노사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제로의 점진적 전환을 위해 '위험성 평가\*제도' 시범사업 실시(제조·건설업 등 3천개소)
  - \* 사업장내 위험요인을 잘 아는 노사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종합적인 위험관리 활동
- 50인 미만 산재취약 사업장에 대한 패키지 지원(교육·재정·기술 지원, 81만개소, 780억원)
- (안전보건 문화 확산) 노·사 단체와 공동으로 '1사 1안전 지키기 운동' 전개
  - 사회적 기업·일자리 연계\*, NGO·노사단체·업종별 단체 등과 협력 등 민간부문의 역할제고를 통한 산업안전보건 문화 확산
  - \* 서비스업 방문 안전보건서비스, 산업간호사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등

## 3. 인적자원 활용도 제고

### 3-1 녹색 인재 양성

- 녹색관련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인력수급 및 훈련수요 예측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에도 정보 제공
- 폴리텍대학 학과를 녹색산업 분야 중심으로 신설·개편
  - \* 녹색산업 특성화 캠퍼스 ('09년 3개 → '10년 12개)
- 우선선정직종훈련을 미래직종으로 단계적 개편하고, 지원방식에 이에 맞도록 재설계
  - \* '10년 그린카정비, 그린홈 시공 등 12개 직종 추가

### 3-2 직업훈련의 현장성 제고

- (중소기업 현장 훈련 강화) 훈련 중 인력공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집체훈련 위주에서 현장훈련 중심으로 지원 확대
  - \* 현장훈련모델 개발·보급, 현장훈련 전문가 양성, 현장훈련 정보시스템 구축, 현장훈련 소요비용 지원 등
  - 버스 등을 이용하여 찾아가는 훈련서비스 신설(50인 미만 기업 대상, 2만명)
  - 중소기업의 핵심 기능·기술인력의 최신 기술 습득 지원(한기대 Skill-up 과정)
- (기간제 근로자 등 훈련기회 확대) 직장생활과 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다양화
  - 주말·단기 고급과정(JUMP) 추가 개설로 시간 제약 해소(5.7만명)

# 고용정책관실



= 목 차 =

1.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 도입 .....	23
2. 고용보험 심사청구의 신속한 처리 및 징수업무 개선 .....	25
2-1. 고용보험 심사·재심사청구의 신속·공정한 처리 .....	25
2-2. 고용보험부정수급반환금 등 징수업무 철저 .....	26
3. 청년층 취업촉진에 집중 투자 .....	27
3-1. 청년고용촉진대책 추진 .....	27
3-2.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	30
3-3.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	32
3-4.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	34
3-5.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	36
3-6. 전문계고교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	39
3-7.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	41
4. 수요자 중심의 고용허가제도 운영 .....	44
4-1. 외국인근로자 귀국지원 강화 및 재고용 활성화 .....	44
4-2. 외국인근로자 고용, 체류지원 강화 .....	47
4-3.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지도 .....	49
4-4. 외국국적 동포(H-2)에 대한 고용·취업 관리강화 .....	52
5. 노동통계조사 .....	54
5-1. 노동통계조사 실시 .....	54
5-2. 통계조사 개선 .....	55
5-3. 신규통계수요 반영 .....	56
6.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적용 확대 등 .....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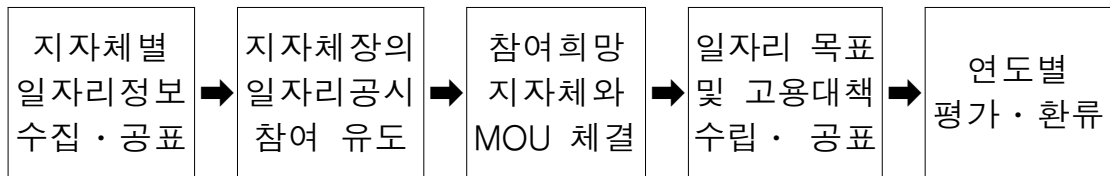
# 1.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 도입

## 가. 목적

- 지방자치단체(기초 및 광역) 장이 임기중 일자리 목표와 지역고용대책을 공시하도록 유도하고 추진성과와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대책 추진역량 강화

## 나. 세부추진 계획

### < 업무추진 프로세스 >



## □ 지방자치단체별 일자리 통계 인프라 구축

### ○ 현행 통계현황

	가구조사 (지역주민중 취업자수)	사업체조사 (지역내 일자리수)
조사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활동인구조사(시도별, 월 1회, 통계청)</li> <li>· 지역별고용조사(시군구별, 연 1회, 통계청) * 특별시, 광역시 제외</li> <li>· 경기도 시군구 일자리 조사(분기 1회, 경기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체기초통계조사(시도 및 시군구별, 연 1회, 통계청)</li> </ul>
행정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시도 및 시군구별, 분기 1회, 노동부)</li> </ul>

### ○ 통계 인프라 지속 확충 추진

- 시군구 단위 조사통계 확대 추진(통계청, 행안부, 시도 협조)
- 고용보험 피보험자 통계 보완 추진(타 기관 DB 비교 분석 등)

□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공시 참여 유도

- 당정협의, 노사민정협의체 논의 등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참여 지자체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 \* 지자체 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 일자리 공시제 참여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

- 지자체장이 일자리 공시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일자리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고용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일자리 목표는 현재 사용가능한 통계를 토대로 취업자수 증가율, 고용률, 고용보험피보험자수 증가율 등으로 제시 가능(가급적 여러 개의 지표를 제시)
- 지역고용대책은 일자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시행할 사업계획을 말함
  - \* 지역고용대책의 내용 : ①지자체의 자체사업 또는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아 시행중인 일자리 관련 사업을 종합 정리, ②종합 정리한 사업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 ③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사회적기업 등 틈새일자리 개발, ④지역밀착형 구인·구직개척 및 알선사업, ⑤그밖에 특화사업 등

□ 정부의 일자리 공시제 참여 지자체 지원방안

-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민간경상보조 예산 확대를 추진하고, 동 예산을 일자리공시제 참여 지자체에 우대 지원
  - \*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사회적기업, 지역실업자훈련 등

다. 행정사항

- 시도 및 시군구와 업무협의를 시 일자리 공시제의 의미와 도입 계획 적극 설명(세부 사항은 추후 송부)

담당 : 고용정책과, 4급 하현재, ☎ 02-2110-7155

## 2. 고용보험 심사청구의 신속한 처리 및 징수업무 개선

### 2-1. 고용보험 심사·재심사청구의 신속·공정한 처리

#### 가. 목 적

- 피보험자격 확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등에 관한 처분 등에 대한 신속·정확한 심사·재심사 처리로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

#### 나. 세부추진 계획

- 심사·재심사 청구절차 안내 철저
  - 실업급여수급자 교육 등을 통해 고용보험 심사·재심사의 내용과 청구기한·절차 등에 대해 안내
  - 지방관서장은 이해부족에 따른 심사청구가 최소화 되도록 불이익 처분시 처분사유를 민원인에게 충분히 설명
- 심사·재심사 청구사건의 신속·공정한 처리
  - 처리기한 준수 및 청구내용의 보정, 현지출장 확인 및 증거 자료 조사 등을 통해 심사결정의 객관성·공정성 유지

#### 다. 행정사항(지방관서, 고용보험심사관·심사위원회)

- 지방관서장은 심사·재심사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수민원 등 본부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본부(고용보험정책과)로 보고
- 지방관서장은 심사(재심사)청구서를 고용보험심사관(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5일이내)을 준수 하여 심사(재심사)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 '09년도 심사·재심사결정사례집은 '10.6월중 제작·배부예정(본부)

담당 : 고용보험정책과 5급 김두영, 6급 임한일 ☎ 02-2110-8035, 7212

## 2-2. 고용보험부정수급반환금 등 징수업무 철저

### 가. 목 적

- 고용보험부정수급반환금의 철저한 환수를 위해 징수업무 관리 강화 및 업무 편이성 증진

### 나. 세부추진 계획

- 징수업무 관리 강화 및 업무 개선
  - 매 분기별로 징수현황을 분석하여 지방관서에 통보
  - 징수담당직원을 체납정리업무에 중점 종사토록 매월 넷째주 '집중체납정리기간' 운영
  - 징수실적우수자 노동행정유공 표창 등 포상
  -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가상계좌제 도입('10. 3월 예정)
- 징수업무 담당자 전문성 제고
  - 체납징수금 관련 업무매뉴얼 제작 배포('10. 2월 예정)
  - 다우리 커뮤니티 (다거두리)를 통한 의견·정보교환
  - 매년 4/4분기 중 징수업무관련 교육 및 의견교환 등을 위한 징수업무담당자 워크숍 실시

### 다. 행정사항(지방관서)

- 지방관서장은 '집중체납정리기간' 운영하고, 징수담당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업무를 적절하게 분장
- 분기별로 통보되는 징수현황 분석자료를 확인하고, 각(지) 청단위로도 문제점을 파악, 자체 징수 대책을 보완·시행
- 징수업무담당자는 커뮤니티활동에 적극 참여

담당 : 고용보험정책과 5급 최익만, 6급 최희재 ☎ 02-2110-7205, 7211

### 3. 청년층 취업촉진에 집중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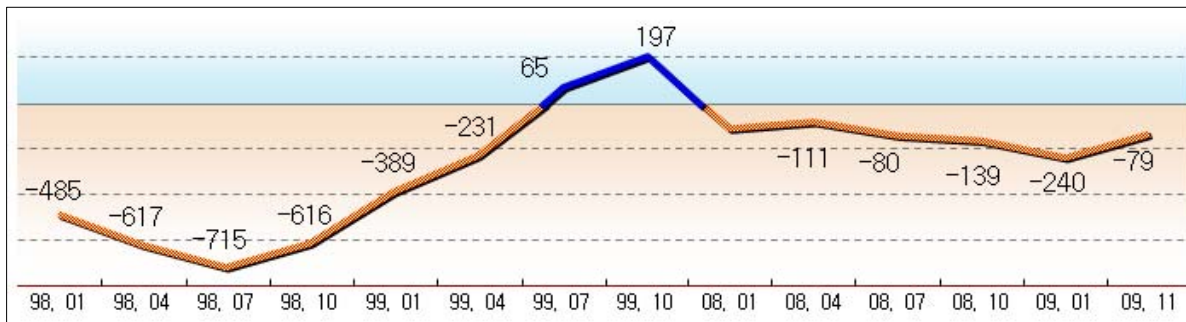
#### 3-1. 청년고용촉진대책 추진

##### 가. 정책 여건

- (청년취업자 수 감소폭 둔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따라 '09년 1월 240천명 까지 감소하던 취업자수가 회복되어 11월에는 79천명 감소(실업률 7.7%, 실업자수 325천명)

\* 취업자수 변화 : -240('09.1)→-113('09.4)→-112 ('09.7)→-79('09.11)

- 다만, 아직 경제위기 이전 수준까지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부문의 고용회복 추세가 더딘 상황 이므로 내년도에도 청년고용개선을 위한 노력 강화 필요



- (취업애로 청년층 증가) 청년 실업률은 악화되지 않고 있으나, 청년층은 선호 일자리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준비 등 비경활 인구화 하면서 취업애로청년층은 100만명 수준 지속

#### < 취업애로 청년층 추이 >

(단위 : 천명)

구 분	'03	'04	'05	'06	'07	'08	'09.11
실업자(A)	401	412	387	364	328	315	325
구직단념자(B)	31	30	32	33	30	35	41
취업준비자(C)	268	297	351	413	417	455	397
쉬었음(D)	225	258	278	258	245	249	283
취업애로층(A+B+C+D)	906	978	1,025	1,043	996	1,025	1,012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양적·질적 미스매치 지속) 청년 실업난 속에서도 기업의 채용수요와 청년층이 희망하는 눈높이 격차 상존
  - 2009.4월 현재 5인 이상 기업에서 180천명(인력부족율 2.1%)의 인력이 부족, 이중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163천명이 부족하여 미스매치 해소가 관건

## 나. 추진 내용

- (청년고용대책 추진) 청년층 고용 촉진을 위하여 「청년고용 촉진대책」('08.8.29), 「청년고용 추가대책」('09.3.18) 등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
  - 내년의 경우 약 8천억원을 투입, 약 27만명 대상 실시

### < 2010년 주요 계획 >

#### ◆ 청년친화적 일자리 지원

- (정부지원 인턴제 실시) 중소기업\*(2.5만명), 행정인턴\*\*(1.3만명) 등 정부지원 인턴취업 경험을 통해 경력형성 및 취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 인턴채용 중소기업에 임금의 50%를 6개월간 지원(정사원 채용시 6개월 추가지원)

\*\* 중앙정부·지자체에서 경력형성 지원(5개월, 주 30시간 근무)

-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저학력·위기청소년 등 취약 청년층을 1년간 집중 지원하여 취업에 성공케 하는 종합고용 서비스\* 제공('10년 1.1만명, 91억원)

\* 심층상담(1개월) - 직업훈련·직장체험(2~6개월) - 집중취업알선

#### ◆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 (기술·기능 인력 양성) 한국폴리텍 대학을 통해 취업을 원하는 청년·고학력 미취업자·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기술·기능인력 양성 지원('10년 370억원, 17천명)

- (권역별 직업능력개발 중심대학 운영) 대학이 대기업과 협약을 체결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전문훈련을 제공하고, 정부는 시설·장비비·훈련비 등 지원('10년 17개 대학, 170억원)
- (미래산업 리더 양성) 문화콘텐츠, 신재생 에너지·환경 등 미래 핵심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 ('10년 11,972명, 1,063원)

◆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 (해외취업·인턴·자원봉사) 국제적 경험과 식견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글로벌리더 양성사업 추진(해외취업 4,500명, 해외인턴 7,535명, 자원봉사 3,930명)

※ 해외 취업수요 위축 등에 대응하여 대학·지자체 위탁사업 발굴, 저소득청년층 취업지원 신규실시 등을 포함한 「글로벌 취업지원 활성화 방안」('09.10월) 마련

◆ 학교-노동시장 이행 원활화

- (진로지도·직장체험 지원) 학교단계별 직업진로지도\* 실시 및 직장체험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졸업 후 취업소요기간 축소

\* '09년 Job School(중·고교) 24만명, 취업캠프(대학생·단기전역장병) 1.2만명

\*\* 대학재학생에게 학점과 연계된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시행(1.5만명)

담당 : 청년고용대책과 4급 최준하 ☎ 02-2110-7178



### 3-2.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 가. 목 적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직업진로지도에서 취업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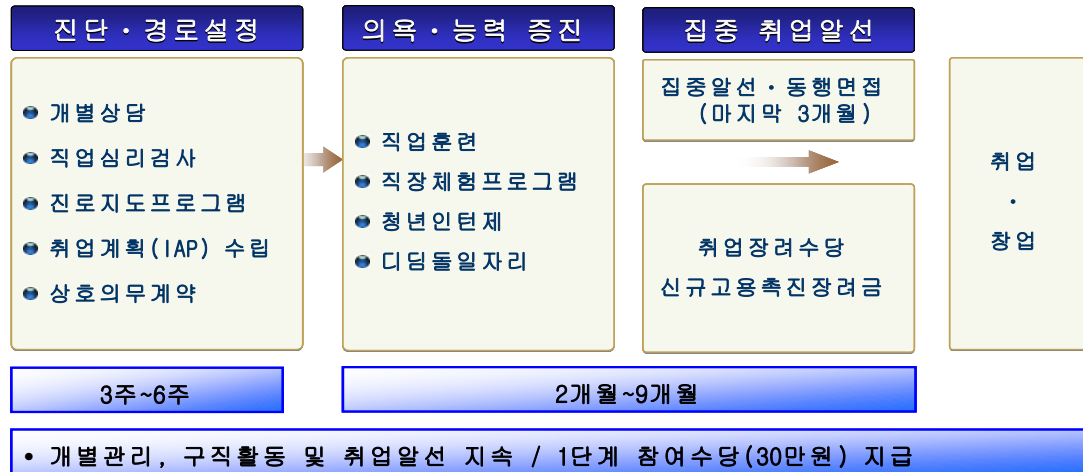
#### 나. 사업추진내용

- 사업운영관서 및 참여인원
  - '10년도 서비스 목표인원은 총 11천명 규모로 47개 전 종합 고용지원센터(67백명) 및 민간전문기관(43백명)에서 병행 추진
    - \* 구체적 목표인원 및 지방청별 인원은 추후 시달될 지침 참조
  - 민간전문기관\*은 1월중 공모를 통해 선정, 고용지원센터와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 시행
    - \* 직업안정법상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등
- 참여자
  - 실업급여 비수급 취약 청년층(만 15~29세 이하, 군필자인 경우 만 32세 미만)만을 대상으로 실시
    - \* 취약청년층 : 고졸이하 학력자(고등학교(전문계고등학교 제외) 3학년에 재학 중인자로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정된 자 포함), 장기실업자, 니트족, 위기청소년 등
    - \* 대상자는 센터 구직등록자, 학교추천, 유관기관 연계 등을 통해 선발 하고, 프로그램 참여자는 직장체험 및 직업훈련 등에 우선선발
- 1단계 참여자 수당지급(교통비·식비)
  - 1단계 참여자에 대해 참여수당(30만원) 지급
- 프로그램 내용
  - 개별상담·IAP수립·직업지도프로그램 참여(1단계, 3~6주)  
→ 직장체험·직업훈련 등 참여(2단계, 2~6개월) → 집중 취업알선(3단계, 3개월)으로 운영하되, 참여자의 수요 및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

○ 전담상담원 지정

- 참여자 개인별 전담상담원(Personal Advisor)을 두어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지속 관리

다. 사업추진체계



※ 3단계 종료 후 미취업자에 대해 6개월 동안 취업알선 등 사후관리 지원

라. 행정사항

- 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진로지도팀(없는 경우에는 취업지원팀)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되, 단계별로 취업지원팀, 직업능력개발팀(과), 지역협력팀이 적극적으로 협조
- 센터내 취업지원팀 및 관내 학교 및 NGO 등 활용, 적극적으로 참여자 발굴
- 1월말까지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계약 체결을 완료  
\* 구체적 민간위탁 추진절차는 추후 시달된 지침 참조
- 워크넷을 통해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참여자에 대해 전산관리

담당 : 청년고용대책과 5급 김재석, 7급 권유정 ☎ 02-2110-7180

### 3-3.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 가. 목 적

-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서 인턴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능력 개발 및 직장경력을 형성케 하고, 정규직으로의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나. 사업규모

- 예산 : 1,765억원(일반회계 1,065억원, 고용보험기금 699억원)
- 인원 : 25,000명
- ※ 2009년 사업규모 : 32천명

#### 다. 주요 사업내용

- 인턴참여 자격 :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미취업자(군필자는 만 31세 이하)
- 실시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지원내용 : 인턴 실시기업에 인턴기간 6개월 동안 약정임금의 50%(80만원 한도), 정규직 전환 시 6개월 동안 약정임금의 50%(80만원 한도) 추가 지원
- 사업방식 : 경제단체·대학·직업소개사업자 등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위탁계약 체결, 위탁운영기관에 대해 기업지원금 등을 일괄 교부하고 운영기관이 기업체에 지급

#### 라. 중점 사업추진방향

##### 사중손실 및 대체효과 부작용 최소화

- 최종학교 졸업 후 6개월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자는 제외함으로써 취업경험이 부족한 신규실업자 위주 시행
- 간호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등 자격증 소지자는 당해 자격증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에 인턴 취업 제한

- 종전 사업장 자발적 이직자 3개월 이내 인턴 참여 제한
- 인위적 감원기업은 지원중단 및 추후 1년간 인턴지원 배제
- 정규직 전환 촉진 및 인턴 교육훈련 강화
  - 조기 정규직 전환시 잔여기간 인턴지원금 전액 지급 및 위탁 운영기관의 정규직 전환자 수에 따른 성공보수 신설
  - 정규직 전환율 70% 이상 기업에 대한 인턴 추가 허용
  - 위탁운영기관이 실시하던 사전직무 교육을 별도로 분리하여 교육훈련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른 관리운영, 지도감독 내실화
  - 전국단위 위탁기관 선정을 배제하고, 청단위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위탁함으로써 관리 업무부담 감소 및 효율화
  - 인턴운영기관에 대한 실적평가를 통해 우수기관 위주 위탁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재강화 차원에서 부정수급 신청 및 수급일부터 1년간 인턴 추가지원 배제

#### 마. 행정사항

- 사업운영기관 모집 등 사업공고(본부) : 1월중
  - 사업공고 후 지방노동청 센터별로 자체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운영기관 참여 신청 접수(지청), 심의·선정\* 및 운영기관과 위탁운영 계약 체결(지방청)을 1월말까지 완료
  - \* 6개 지방청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자를 선정·위탁
- 2월부터 운영기관에서 인턴생 및 인턴 실시기업 모집·선발 등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

담당 : 청년고용대책과 4급 최준하

☎ 02-2110-7178

### 3-4.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 가. 목 적

-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직업의식 고취로 진로설계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

#### 나. 사업규모

- 인원 : 15,000명, 예산 : 151억원

#### 다. 사업추진 방향

- 직장체험 프로그램과 연수참여자 전공과의 연계 강화
- 민간위탁 운영 대학의 업무 효율성 제고 지원
- 중소기업에서의 직장체험 기회 확대

#### 라. 세부추진 계획

##### 학점 연계대학 우선선발 및 지원 강화

- 민간위탁운영 대학 선정시 학점연계 대학 우선 선발
  - 정규학점제 운영대학의 경우는 최대 4개월간 연수수당 지원 (예산 범위내)

\* '10년 예산운영상 위탁예정 10,000명중 4개월 지원자는 약 2,000명 예상

##### 대학에 직장체험 위탁 확대

- 사업규모 전체물량의 60%이상을 대학에 위탁하여 대학 재학생 중심 프로그램으로 정착

□ 중소기업에서의 직장체험 기회 확대

- 5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중기청에서 인증한 창업·벤처 기업에 한해 청년직장체험 연수기관으로 참여 허용
- 대학생들에게 진취적인 창업 마인드 학습 기회 제공 및 소규모 창업·벤처 기업은 필요한 인재 확보 계기로 활용
- 공공기관 연수기관 참여 비율도 축소(20%→10%)하여 민간 기업에서의 직장체험 기회 확대

□ 대학 위탁업무 효율성 제고 지원

- 직장체험 프로그램 종합 매뉴얼 제작·보급
  - \* 워크넷 전산 매뉴얼은 '09년말 기 제작·보급 완료
- '10년 세부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대학측 제기 행정처리 불편 개선, 보고절차 간소화 추진

□ 사전직무교육 시스템 개선

- 사이버 사전직무교육을 대학 위탁운영 참여자까지 확대
- 대학측 사정에 맞게 교육을 실시하되, 집체교육 참여가 곤란할 경우 사이버 교육도 대체 가능하도록 지침 변경
- \* 기 구축된 청년인턴 사이버 교육 시스템(<http://hrd.kpc.or.kr>) 활용

마. 행정사항

- 민간위탁 대학 심의·선정\* 및 위탁(지방청) : ~'10. 1월말
  - \* 6개 지방청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자 선정
- 위탁기관을 통한 참여자 모집·선발 등 사업 시행 : '09.2월초
-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사업 시행 : '10. 1월부터 개시

담당 : 청년고용대책과 5급 윤옥균, 7급 김홍배 ☎ 02-2110-7183

### 3-5.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 가. 목적

-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자에 대한 취업지원 기능 강화에 노력하는 대학을 선별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대학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

#### 나. 사업개요

- 예산 : 총 104억원(168개 내외 대학)
- 사업기간 : 2010. 3 .1~2011. 2. 28(1년)
- 사업방식 : 지원자격을 갖춘 대학으로부터 사업계획 공모를 받아 지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다.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조직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
  - 고등교육법 제24조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의 대학으로 분류하여 지원 가능

#### 라. 세부 지원내용

##### <2,3년차 지원대학>

- 원칙적으로 대학이 사업계획 신청시에 요청한 금액으로 하되, 우수대학은 '09년 정부지원금의 120%까지, 보통대학은 100%까지 신청 가능
- 매칭펀드 방식에 따라 대학은 '10년도 증액사업비의 35%이상(우수), 45%이상(보통) 이상을 부담

- 정부 지원금은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로만 사용 가능(세부사업지침에 권장사업 및 제한사업 예시)
- 취업지원관 도입 희망학교는 일부 사업비를 인건비로 사용 가능
- 지원받은 학교는 전체 지원사업의 50%이상을 외부기관 위탁 금지, 1,000만원이상 위탁사업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와 사전 협의 후 시행

### <취업지원관 지원 대학>

- (다항에 의거) 신청자격이 있는 대학 중 2·3년차 지원대학으로 결정된 학교를 제외한 모든 대학
- 취업지원관 신규채용 계획서를 제출한 대학에 한해 지방청별로 심사 후 지원
- 정부지원금과 대학자체예산을 매칭하여 지원

#### <취업지원관제 개요>

- (자격) 기업체 인사담당자, 직업상담 경력자,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등 취업지원 및 상담분야 전문성을 지닌 인력
- (지위) 대학별로 채용형식(정규직, 계약직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상용직, 파트타임, 자원봉사도 가능
- (역할) 진로지도·경력계획 등 상담업무, 취업프로그램 운영, 구인업체 발굴, 취업알선, 고용지원센터와 연계사업 추진 등
- (지원기간) 1년 원칙, 매년 평가하여 최대 3년까지 지원



## 마. 추진계획

### ○ 추진 일정

지원대상대학은 신청기간내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첨부서류 제출	'10.1월
↓	
관할관서에서 결격요건, 첨부서류 미비여부 등 예비검토하여 지방고용심의회 담당 지방관서에 보고	'10.1월
↓	
지방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학 선정	'10.2월
↓	
지방고용심의회에서 지원대학 선정 확정	'10.2월
↓	
선정대학과 지방노동관서간 지원협정 체결	'10.2월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10.3월
↓	
사업실시	'10.3월
↓	
지원대학의 사업 추진실적 중간보고	'10.8월
↓	
사업추진실적 지방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10.11월
↓	
중앙 평가위원회 개최	'10.12월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정산	'11.3월

## 바. 행정사항

- '10.3.1부터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2월말 이전에 지원대학 선정을 마무리
  - 지원대학 선정 결과는 관련 서식에 의거 즉시 본부에 보고
- 취업지원관 지원대학 결정은 지방관서별로 대상학교 학생 수, 채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배정예산 범위내에서 선정

담당 : 청년고용대책과 5급 윤옥균, 7급 김홍배 ☎ 02-2110-7183

### 3-6. 전문계고교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 가. 목 적

- 진학보다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계고교 재학생에 대한 재학중 직업지도 강화를 위해 전문계고교의 자율적 직업지도 프로그램 구성·실시를 지원

#### 나. 사업개요

- 예산 : 총 45억원(110개 내외 고교)
- 사업기간 : 2010. 3. 1~2011. 2. 28(1년)
- 사업방식 : 지원대상 전문계 고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심사,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지원

#### 다. 세부 지원내용

- 지원금액은 원칙적으로 각 고교에서 사업계획 신청시 요청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수별로 상한선을 설정
  - \* 지원상한액 : 기본 2천만원 + (학생수x2만원), 최대 5,000만원
-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나, '10년 선정학교 중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보통 등급에 대해서는 '11년에도 계속 지원
- 취업지원관 도입 희망학교는 일부 사업비를 인건비로 사용 가능

## 라. 추진계획

### ○ 추진 일정

지원대상 전문계고교는 신청기간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관서에 제출	'10.1월
↓	
관할관서에서 결격요건, 첨부서류 미비여부 등 예비검토하여 지방고용심의회 담당 지방관서에 보고	'10.1월
↓	
지방 심사위원회에서 지원고교 선정	'10.2월
↓	
지방고용심의회에서 지원고교 확정	'10.2월
↓	
선정고교와 지방노동관서간 지원협정 체결	'10.2월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10.3월
↓	
사업실시	'10.3월
↓	
지원고교의 사업 추진실적 중간보고	'10. 8월
↓	
사업추진실적 지방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10.11월
↓	
중앙 평가위원회 개최	'10.12월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정산	'11.3월

## 마. 행정사항

- '10.3.1부터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2월말 이전에 지원학교  
선정 등 마무리
- 선정 결과는 관련 서식에 의거 즉시 본부에 보고

담당 : 청년고용대책과 5급 윤옥균, 7급 김홍배 ☎ 02-2110-7183

### 3-7.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 <1> Job-School (직업체험 프로그램)

##### 가. 목적

- 청소년들이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 나. 사업내용

- 중·고교생 및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내 대학·기업과 연계하여 대학 전공체험, 기업체 견학 등 직업체험기회 제공
- 사업규모 : 14,000명
  - \* 지방관서별 실시목표는 전년도 운영실적, 지역적 여건, 센터인원현황 등을 감안하여 센터별 추진 목표인원 할당
- 소년원, 보호관찰소, 복지단체 등 탈학교 청소년에 대한 직업체험 기회 확대
  - \* 한국고용정보원 위탁계약을 통해 사업 추진('10년 500명)

##### 다. 행정사항

- 연초 관내 중·고교의 수요를 조사한 후 연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도록 조치
- 고용지원센터 부서간 협조를 통해 지역내 학교 및 기업 발굴에 노력
- 소요예산은 수용비, 임차료, 급량비 등 항목 및 기준을 활용하여 적정수준에서 결정
  - \* 전문계고교가 Job School을 실시하면서 그 예산을 전액 「전문계고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에서 지원하는 경우, 센터에서 강사진, 프로그램 지원 등은 가능하나, 별도의 예산지원(수용비, 임차료, 급량비 등)은 하지 않도록 유의

## <2> 취업캠프

### 가. 목적

- 대학생, 청년구직자에 대상으로 취업캠프를 실시하여 진로 지도 및 취업기술 향상 등을 통한 조기 취업 유도

### 나. 사업내용

- 청년구직자·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미지메이킹, 모의면접, 면접특강 등 구직기술 향상 지원
- 사업규모 : 6,000명
  - \* 지방관서별 실시목표는 전년도 운영실적, 지역적 여건, 센터인원현황 등을 감안하여 센터별 추진 목표인원 할당

### 다. 행정사항

- 대학생의 경우 동·하계 방학기간을 적극 활용하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대학별 또는 혼합 개최 등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
- 참여대상은 가급적 졸업예정자, 졸업 후 취업준비중인 청년 구직자, 취약계층 등을 우선 선발
-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구직등록, 취업 알선 등) 실시
  - \* 학교가 취업캠프를 실시하면서 그 예산을 전액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등에서 충당하는 경우, 센터에서 강사진, 프로그램 지원 등은 가능하나, 별도 예산지원(임차료, 급량비 등)은 하지 않도록 유의

### <3> 단기 복무장병 취업캠프

#### 가. 목적

- 5년 미만 단기복무 장병에게 전역 직전 또는 직후 취업캠프를 실시함으로써 직업정보 제공·취업역량 강화·취업의욕 고취를 통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유도

#### 나. 사업내용

- 취업캠프 대상의 특수성을 감안, 재향군인회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09년 사업평가에 따라 민간기관 위탁기관 참여를 결정
  - 전역직후 취업 및 비취업 대상 장병을 구분하여 캠프 운영
    - \* 전역직후 취업하는 경우는 면접요령, 이력서 작성 등 취업스킬 위주로, 학교로 복학할 장병은 진로계획과 경력비전 제시 위주로 진행
- 사업규모 : 8,000명(예산 8억원)
- 사업방식 : 민간기관 위탁

#### 다. 행정사항

- 수탁기관 모집 등 사업공고(본부) : '10. 1월 초
- 수탁기관 심의·선정 (지방청) : '10. 1월 말
  - \* 6개 지방청별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위탁
- 선정 기관과 위탁계약 체결(지방청) : '10년 2월초
- 취업캠프 홍보·모집·운영(수탁기관) : '10. 2월~

담당 : 청년고용대책과 5급 윤옥균, 7급 김홍배 ☎ 02-2110-7183

## 4. 수요자 중심의 고용허가제도 운영

### 4-1. 외국인근로자 귀국지원 강화 및 재고용 활성화

#### 가. 목 적

- 고용허가제 도입 외국인 중 취업기간 만료자가 불법체류하지 않고 출국하도록 귀국지원 프로그램 강화(10년 출국대상 37천명)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이탈자 방지를 위해 숙련기능 외국인근로자(E-9, H-2)의 재고용을 활성화

#### 나. 추진방향

- 외국인근로자 귀국지원 프로그램 시행 등을 통한 귀국지원 강화
- 취업기간(3년) 만료 예정인 외국인근로자(E-9, H-2)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귀국지원 프로그램 등 홍보 강화
  - 개정된 재고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 등

#### 다. 세부추진 계획

- 외국인근로자 귀국지원 프로그램 시행
  - 체류기간 만료전 단계별로 필요한 귀국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귀국지원 프로그램 운영(고용지원센터·한국산업인력공단)

---

< 귀국지원 프로그램 주요내용 >

---

- ① (귀국알림) 체류기간 만료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해당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자진귀국 및 재고용 절차 등에 대해 안내
  - ② (귀국준비 교육) 귀환필요성, 귀국 후 재취업 및 창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창업·기능교육 등) 등 실시, 현지진출 우리기업에 취업알선(체류기간 만료자에 대한 취업알선 사이트 [www.reternjob.or.kr](http://www.reternjob.or.kr) 운영)
  - ③ (귀국신고 등 지원) 출국 항공편, 각종 신고사항 등에 대해 지원하고 귀국 후에는 귀국근로자간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
-

- 귀국예정자 고용 사업장에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전개(유선·우편 등)
- 귀국예정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 및 홍보 강화
  - 취업기간(3년) 만료 예정 외국인(E-9, H-2) 고용사업장에 개선된 재고용제도를 집중 홍보
    - \* 특히 개정법 시행('09.12.10. 시행)에 따라 신규로 재고용 대상에 포함된 특례 고용자(H-2)의 재고용 제도와 재고용시 출국요건 폐지에 대한 홍보 강화
  - 홍보 리플렛 비치(고용지원센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방송매체·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및 사업주 대해 재고용 및 귀국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

#### 라. 행정사항

- 주기적인 귀국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본부)
  - 분기별로 귀국 상황 점검·평가(재고용 현황 점검 및 평가도 병행)
- 출국임박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 및 홍보(지방)
  - 지방관서별로 '10년 중 취업기간 만료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관내 사업장 및 대상 외국인 파악(1월, 한국고용정보원 협조)
  - 해당 근로자의 출국일 60일 이전 사업장 방문 또는 서면으로 자진귀국을 지도·안내(재고용 제도 안내 등)
    - \* 2주 단위로 자진출국 대상자 현황 파악 및 통계관리
- 월별 취업기간 만료자 자진출국 실적 보고(지방)
  - 보고기일 : 매 익월 10일(보고서식 아래 참조)
  - 보고자 : 지방청장(관할 지청 실적을 취합하여 보고)
    - \* 지청 : 매 익월 7일까지 청에 보고



◆ 체류기간 만료자 귀국현황 등 보고서식 ◆

1. 체류기간(3년) 만료자 및 현황 등

(단위 : 명)

지방청	취업기간 만료자수		재고용 신청		자진출국		중간 이탈자수		취업기간 초과 체류자수	
	누계	당월	누계	당월	누계	당월	누계	당월	누계	당월

2. 월별 제도 및 홍보 실적

- 체류기간 만료 예정자에 대한 제도실적(제도대상, 제도방법 등)
- 월별 홍보 실적(재고용 등 홍보일, 홍보대상, 홍보방법 등)
- 기타 체류기간 만료자에 대한 귀국지원 실적

○ 재고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및 홍보활동 강화(지방)

- 재고용 관련 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 개선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수시)
- 재고용 및 자진출국에 따른 인력공백 최소화를 위한 신규 고용 절차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 이용, 홍보공문 발송 등

○ 자진출국 및 재고용 활성화 추진실태 지도·점검(본부)

- 시기 : 상반기('10.5월), 하반기('10.11월)
- 내용 : 취업기간 만료자 자진출국 및 재고용 실태 등 지도·점검

\* 일정, 점검자, 방법 등 세부지침 추후 시달

담당 : 외국인력정책과 5급 손성길, 6급 이승현 ☎ 02-2110-7185, 7190

## 4-2. 외국인근로자 고용, 체류지원 강화

### 가. 목 적

-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국내 취업생활 적응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체류단계별로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간 애로 및 고충 예방

### 나. 추진방향

- 체류단계(입국·체류·귀국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서비스 제공
- 외국인근로자 고용·체류시 필요한 기본적인 지원은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담당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지원 서비스를 확대
  - \* 노동부와 인력공단을 중심으로 외국인근로자 지원기관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필요 서비스 제공

### 다. 세부추진 계획

#### <1> 입국 단계 서비스 제공

- 취업교육 중 발생하는 미인도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인력공단이 전담하여 알선을 추천하고,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알선인증
  - \* 미인도 근로자 사업장 배치시까지의 취업교육기관에서 보호
- 입국초 3개월 이내인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모니터링하여 애로사항 발견시 신속하게 지원(인력공단)

#### <2> 체류 단계 서비스 제공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고충 등 애로사항이 접수될 경우 이를 EPS시스템에 접수하고 상담 등을 통해 고충해소
  - \* 사업장내 발생하는 고충사항에 대해 접수하되, 고용지원센터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는 다른 기관으로 이첩

- 사업장 변경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거나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간 갈등이 있는 경우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시 각 센터별로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구성·운영

\*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구성·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 송부 예정

- 사업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설명회시 고용허가제 교육을 포함 시키고, 고용허가제 활용 사업주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 사업주의 상해·사망신고는 전산망을 통해 산업인력공단에게 전송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산업인력공단에서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므로 신고에 대한 즉시 처리 필요

\* 외국인근로자 상해·사망에 대한 사고경위를 파악하여 보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실시

### <3> 귀국 단계 서비스 제공

- 산업인력공단과 공동으로 체류기간 만료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귀국 안내 실시
-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진귀국자에 대한 현지 기업 취업알선 사업 등 귀국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

### 라. 행정사항

- 고용·체류 지원 사업 세부 계획을 수립·시달(2월, 본부)하면 이를 토대로 필요한 지원서비스 제공 및 홍보
- 고용·체류지원 실적은 고용지원센터만의 활동이 아닌 관할 지역내 관련기관들의 실적을 모두 종합하여 평가할 예정 (EPS 전산망에 입력)

담당 : 외국인력정책과 5급 김윤희 6급 남현주 ☎ 02-2110-7192, 7188

### 4-3.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지도

#### 가. 목 적

- 고용허가제 활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실태(근로실태, 신고의무이행 등)를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나. 추진방향

-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고용관리 지도 강화
-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의 고충사항 파악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 사항 파악
- 불법취업 및 불법고용에 대한 엄중 단속

#### 다. 세부추진 계획

- 기간 : 반기 1회 점검(상반기 4월~5월, 하반기 10월~11월)
- 대상 : 고용허가제 업무담당자별 1인당 20개소 이상 점검
  - \* 주요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 ① 내국인 피보험자 수 50인 이하의 중소기업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사업장 ③ 외국인근로자 다수고용 건설현장  
④ 기타 센터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점검팀 구성
  - (지)청별로 종합고용지원센터 주관 하에 관내 대상 사업장 수 및 활용가능인원 등을 감안하여 점검팀을 자율적으로 편성
    - \* 근로개선지도과 및 고용평등과 등과 합동점검 가능
- 지도·점검 사항
  - 고용허가제에 의한 각종 신고 및 의무이행 여부 확인
  -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및 폭행 여부 등 근로조건 확인
  - 불법고용·불법취업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확인
  - 기타 고용허가제 관련 홍보 및 계도 활동

---

< 지도·점검 요령 >

---

① 각 (지)청별 「자체 지도·점검 계획」 수립(3월, 9월)

-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총 점검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각 팀별로 대상 사업장 배분

② 사업장에 대한 사전 계도차원의 지도·점검계획 실시 안내(3월, 9월)

- 사업주의 거부감을 최소화 하고 원활한 지도·점검을 위하여 방문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사전에 점검계획 실시 안내 공문 발송
- 고용허가제 계도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차원임을 설명하고 협조 유도

③ 점검팀의 사전 준비 사항

- 점검 대상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현황, 각종 신고·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사전 조사
- 점검에 필요한 사업장정보 및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준비
- 사업장 계도를 위한 안내 전단지 등 홍보물 준비
- 계도시 사업주의 질문에 대비하여 고용허가제 관련 지식을 사전에 철저히 숙지

④ 사업장 방문시 점검 요령

- a. 공정하고 친절한 자세를 견지, 자발적으로 점검에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b. 사업장 방문 시 우선, 공무원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여 신분을 알리고 방문 목적을 설명한 후 조사 실시
  - c. 임금대장 등을 확인하여 임금체불 여부 등 확인 : 임금대장 확인 시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불법취업)가 있는지 여부 확인
    - \* 지도·점검과 관계없는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 요구 금지
  - d. 외국인과의 면담 등을 통해 애로사항 및 사업주의 폭행·폭언·성희롱 여부 청취
  - e. 사업주와의 면담하여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및 사업주 준수사항 등 안내
  - f.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조사
  - g. 점검 후 피점검자에 대하여 점검결과에 대한 총평 실시, 총평을 통하여 시정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조치 방법 등을 안내
- ☞ 지도·점검시 사업주 및 외국인이 질문에 불응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기피하여 점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

## 라. 행정사항

### ○ 점검 후 조치사항

- ① 지도·점검 후 점검표를 작성하여 센터소장 결재를 득하고 점검 결과를 '지도점검 등 기록부'에 기록·관리
- ② 관련규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문서에 의하여 시정지시하고, 근로기준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개선지도과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련기관에 통보
  - 시정지시할 경우 업무편람 서식에 의하여 시정지시 및 시정지시 대장 유지·관리
  - 사업주의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시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현장에서 주의 또는 경고 조치

### ○ 소요예산 : 지방관서에 배정된 '09년도 국내여비 활용

### ○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현황 보고(상·하반기 점검 계획 수립시)

- 보고기관 : 각 지방노동청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취합 보고
- 보고서식

센터명	선정사유별 지도·점검 대상사업장 수(개소)				
	계	50인 이하 사업장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사업장	외국인근로자 다수고용건설현장	기타

### ○ 지도·점검 실적보고(상·하반기 점검 완료시)

- 보고기관 : 지방노동청(각 센터의 점검실적을 취합 보고)

### ○ 지도·점검 중 특이사항 발생시 본부에 수시 보고

담당 : 외국인력정책과 5급 박정웅, 7급 유효상 ☎ 02-2110-7187

#### 4-4. 외국국적 동포(H-2)에 대한 고용·취업 관리강화

##### 가. 목 적

- '07.3월 방문취업제 시행 이후 동포(H-2) 인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포 취업인원 제한과 합법 고용절차 준수를 위해 고용 관리를 강화할 필요

##### 나. 추진방향

- 국내 입국한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불법취업을 예방
- 동포가 주로 취업하는 업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동포 고용절차에 대한 안내 실시
- 동포에 대한 건설업 취업등록제 운영을 통해 건설업종에 적정 규모의 동포가 취업할 수 있도록 관리

##### 다. 세부추진 계획

###### 1) 동포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동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게시(동포 취업정보 제공 사이트 운영)하고, 알선 요청시 적극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
- 동포 취업교육장과 연계하여 취업교육기간 중 상시적인 구인·구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2) 동포 고용 사업주에게 합법고용을 위한 안내·홍보 실시

- 동포들이 주로 취업하는 건설업 및 서비스업 사업주 대상 각종 안내시 동포고용절차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여, 사업주들의 합법적인 동포 고용을 유도

- 특히, 개정법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미발급 등 불법 고용 사업주에 대한 고용제한, 과태료규정 신설, 동포의 재고용 대상 포함 등 변경된 제도를 사업주에게 집중적으로 홍보

\* 개정법 시행일: 재고용조항 '09.12.10, 과태료 및 고용제한 규정 등 '10.4.10

### 3) 동포에 대한 건설업 취업등록제 운영

- 동포(H-2)에 대한 건설업 취업등록제 시행(09.5월)에 따라 건설업 취업교육(8시간, 인력공단)을 이수하고 '건설업 취업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동포만 건설업 취업 가능
- 건설업 취업인정증명서(유효기간 1년) 유효기간이 만료된 동포가 갱신 요청시, 요건을 검토하여 갱신 조치
- 건설업 취업인정증명서 없이 건설업에 취업하고 있는 동포 발견시 해당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시정지시하고 법무부에 통보

### 라. 행정사항

- 사업장 지도·점검시 동포 고용사업장 포함
- 동포 취업교육시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취업지원 목표제·특례고용허가서 발급' 등 동포고용 관리 사업을 4개 시범센터(서울강남·서울남부·서울관악·수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09.12.1~'10.3.31)
- 향후 운영성과를 검토해 동포고용관리와 관련해 별도 지침을 센터에 송부할 계획임

담당 : 외국인력정책과 5급 이부용 7급 정봉수 ☎ 02-2110-7192, 7188



## 5. 노동통계조사

### 5-1. 노동통계조사 실시

#### 가. 조사목적

- 노동시장 구조 및 노동현안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노동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
- 고품질의 노동통계조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하여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

#### 나. 조사실시

조사명	조사 기준기간	조사대상	조사 주기	조사 실시기간	조사 보고기한	공 표 예정일
사업체임금근로 시간조사	매월급여 계산기간	1인 이상 9,980개 사업체	분기1회	3.22~4.21 6.22~7.21 9.27~10.26 12.22~11.1.21	4.22 7.22 10.27 11.1.24	5월말 8월말 11월말 11.2월말
지역별임금근로 시간조사	6월급여 계산기간	1인 이상 14,930개 사업체	연1회	6.22~7.21	7.31	10월말
사업체고용(특별) 조사	4월 1일 10월 1일	5인 이상 32,990개 사업체	연2회	4.1~4.30 10.1~10.30	5.14 11.15	6월말 12월말
기업체노동 비용조사	회계연도	10인 이상 3,500개 기업체	연1회	5.17~6.16	6.17	7월말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6월급여 계산기간	1인 이상 32,000개 사업체	연1회	7.1~9.16	9.27	12월말
사업체 고용동향조사	매월말	1인 이상 18,000개 사업체	월1회	익월 1~10일	익월 11일	익월말
사업체 고용실태조사 (가칭)	전월말	5인 이상 11,000개 사업체	분기1회	4.1~4.15 7.1~7.15 10.1~10.15 11.1.3~11.1.14	4.16 7.16 10.18 11.1.17	5월말 8월말 11월말 11.2월말

※ 사업체고용실태조사의 조사주기 및 조사실시기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다. 추진일정

- 구체적인 세부추진일정 및 지침은 각 조사별로 추후 시달

담당 : 노동시장분석과 5급 김재훈, 정향숙, 권재혁 ☎ 02-2110-7084, 7077, 7076

## 5-2. 통계조사 개선

### 가. 추진목적

- 조사시기가 중복되는 통계조사에 대해 통합 조사표로 개선하여 사업체의 응답 편의성 확보 및 부담 경감
- 통계조사 응답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사업체의 응답 편의성 확보 및 부담 경감

### 나. 추진내용

- 신설 통계로 인해 불가피하게 조사시기가 중복되는 조사들에 대해 통합조사표를 작성
- 전산입력시스템 개선 및 활용의 확대를 통하여 자료처리 기간 단축

### 다. 추진일정

- '10. 1월 : 조사시기 확정
- '10. 1~2월 : 신규조사 표본설계 및 조사지침 수립
- '10. 2~3월 : 통합 조사표 작성
- '10. 1~6월 : 전산입력시스템 개선 및 각 조사별 세부추진 계획 시달
- '10. 1~12월 : 조사실시

담당 : 노동시장분석과 5급 김재훈, 정향숙, 권재혁 ☎ 02-2110-7084, 7077, 7076

### 5-3. 신규통계수요 반영

#### 가. 추진목적

- 비정규직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 급변하는 통계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통계의 정책지원 강화

#### 나. 추진내용

-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일자리 변동에 관한 분기 단위 통계 자료 생산·제공  
※ 조사주기는 변경될 수 있음
- 조사항목 개선, 부가조사 등을 통한 새로운 통계수요 적극 반영

#### 다.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조사주기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될 수 있음

- '10. 1월 : 시범조사 분석
- '10. 1~3월 : 『사업체 고용실태조사』 표본설계 및 조사지침 수립
- '10. 4~12월 : 『사업체 고용실태조사』 실시

담당 : 노동시장분석과 5급 김재훈, 정향숙, 권재혁 ☎ 02-2110-7084, 7077, 7076

## 6.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적용 확대 등

### 가. 목 적

- 법정 퇴직금 적용이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들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나. 세부추진 계획

####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적용 확대(본부)

- 관련 법령(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 추진
  - 당연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시행령 개정, '10년 상반기)
  - 건설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퇴직공제금 지급 조건 완화 등을 검토(시행규칙 개정, '10년 상반기)

#### 2) 건설공사 현장 편의시설 제공 이행 지도(지방)

- 대상 : 공사예정금액이 1억 이상(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인 공사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편의시설의 제공형태 및 조치기준 :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임차 등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지도방법 : 건설공사 근로감독시 지도·점검
  - \* 조치기준 :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참조

#### 3) 「건설근로자 고용구조개선 선도기업 육성」 시범사업 실시(본부)

- 「건설근로자 고용구조개선 선도기업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
  - 시범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계속고용에 따른 인건비 등을 지원
- \* 건설근로자공제회 위탁사업으로 추진 예정

\* 기존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제도'는 '10년부터 폐지 예정이며 소멸시효가 존속함에 따라 최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지방관서는 사업장 신청이 있는 경우 종전 법 및 지침에 의거 처리

4) 고용관리책임자의 지정·신고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할 계획 (본부)

## 다. 행정사항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운영 점검(지방)

○ 「'10 사업장감독 종합시행계획」에 맞춰 지방관서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실태 점검 실시

\* '10 사업장감독 종합시행계획은 근로기준국에서 별도 시달

- 당연가입대상공사, 건설근로자공제회 지부의 '행정지도 요청 공사'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노사누리 시스템 등재 철저(지방, 반기1회 이상)

○ 지방관서 업무담당자 교육 실시

\* 지방청별로 업무담당자(근로감독관) 순회교육 실시(1/4분기)

2) 건설공사 현장 편의시설 제공 이행 지도(지방)

○ 지도점검계획 및 조치기준은 「'10 사업장감독 종합시행계획」으로 별도 시달 예정

담당 : 고용정책과 4급 황계자, 7급 김현용 ☎ 02-6902-8465

# 직업능력정책관실



= 목 차 =

I. 10년도 직업능력정책 방향 .....	63
1. 10년도 직업능력개발 정책 여건 .....	63
2. '10년 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 .....	64
II. 사업별 세부 추진지침 .....	68
1.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 지원 .....	68
2. 우선선정직종훈련 .....	71
3.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추진 .....	73
4.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평가강화 .....	75
5. 직업훈련기관 지도·감독 강화 .....	78
6. 훈련법인 지도·감독 강화 .....	80
7.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 방지 .....	88
8.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	89
9.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	90
10. 근로자 자율적 능력개발지원 .....	94
11. 근로자 학자금 대부실시 .....	96
12.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과 대체인력 지원 .....	98
13.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 실시 .....	99



14.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	100
15.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실시 .....	101
16. 중소기업 CEO 및 HRD 담당자 연수사업 실시 .....	102
17.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JUMP 지원 .....	103
18. 직업능력개발 유공자 포상 .....	104
19. 직업능력의 달 행사 .....	105
20. 직업능력개발 훈련기준 적용 .....	106
21.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등 수급관리 .....	107
22. 노사협력직업훈련 지원 .....	108
23.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실시 .....	109
24.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 운영 .....	110
25. 직업능력지식포털 구축·운영 .....	112
26.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설치비용 대부 .....	114
27. '10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 안내 .....	115
28.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면제과정」 관련 업무시행 철저 .....	117
29.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 단속 .....	119
30. 기능인 우대분위기 조성 .....	122
31. 기능경기대회 지원 .....	123

# I. 10년도 직업능력정책 방향

---

## 1. 10년도 직업능력개발 정책 여건

### □ 직업훈련의 사회안전망 역할 요구는 당분간 지속

- 최근 수출호조 등으로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으나, 일자리 회복으로까지 연결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 특히, 영세자영업자, 임시·일용직 등 취업애로계층의 고용 불안이 지속
- 따라서 실직자, 취업애로계층 등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요구 지속

### □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 강화

-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내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수요자(훈련생·기업·산업계)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요구 증대

### □ 미래성장산업 육성 본격 추진 및 기업의 HRD 투자 증가

- 정부정책 기조가 위기극복에서 미래대비 전략적 투자로 전환됨에 따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범 정부차원의 정책이 본격 추진되고,
  - 세계 녹색산업 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투자도 확대될 전망
- 이에 따라 녹색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직결되는 질 높은 훈련제공 요구 증가

###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내실화 요구 증가

- '10년은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한시적 위기 대책 사업이 정비·축소될 예정인 바,
  - 직업능력개발사업 또한 내실을 기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 증가

## 2. '10년 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

◇ 10년도 정책 추진방향은 미래대비 수요자 친화적 직업능력 개발로 정하고,

- 5대 핵심 정책과제로 ①미래 성장동력산업 인력양성 ②맞춤형 직업훈련의 제도화 ③대상별 훈련의 효과성 제고 ④직업능력개발 사업 성과관리 강화 ⑤능력이 중시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선정

☞ 10년 연두업무 보고서 직업능력개발 관련 내용 : ◦ 취약계층 보호(민생안정) ◦ 고용·일자리(경제활성화) ◦ 녹색성장 및 인재육성(미래대비)

### < '10년도 정책방향 및 주요과제 >

#### 미래대비·수요자 친화적 직업능력개발

미래 성장동력산업 인력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선정직종훈련) 전략산업직종으로 개편 / 지원방식 등 재편 / 타 부처와 연계 제도화</li> <li>□ (산업별협의체(SC)) 신성장동력 분야로 확대</li> <li>□ (폴리텍대학) 녹색산업 관련 학과 신설·개편</li> <li>□ (인프라 확충) 민간훈련기관 육성 / 훈련교사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 녹색자격제도 운영</li> </ul>
맞춤형 직업훈련 제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채용예정자훈련 및 협약훈련 확대 / 현장훈련 활성화 등 중소기업 특화훈련 지원</li> <li>□ (산업) SC의 정책참여 확대 및 산업별 특화훈련 실시</li> <li>□ (자격제도)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 제고</li> </ul>
실업자 등 대상별 훈련의 효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직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신속한 정착</li> <li>□ (고학력 미취업 청년층) 폴리텍대학 특별과정 운영</li> <li>□ (영세자영업자) 취업연계훈련 강화</li> <li>□ (북한이탈주민) 채용희망기업 연계 맞춤훈련 강화</li> <li>□ (생계형범죄자)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확산</li> <li>□ (기간제근로자) 자기주도적 능력개발 지원 강화</li> </ul>
직업능력개발사 업 성과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기관 평가) 노동부 → 정부 전체사업으로 확대</li> <li>□ (평가 내실화) 노동부 훈련기관 평가사업 대폭 정비</li> <li>□ (인프라) 직업능력개발평가센터 지정 / HRD-net 개편</li> </ul>

####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1) 미래 성장동력산업 인력양성

- (우선선정직종훈련 개편)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신재생 에너지, LED응용, 전력IT·SW 등 국가전략산업 직종으로 개편
  - 제조업 기능인력 양성에 맞추어진 훈련대상·훈련기간·훈련비 지원방식을 전략산업 인재양성에 맞도록 재편
- (산업별협의체(SC) 지원) 지원대상 SC를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로 확대 (09년 19개 → 11년 25개)
- (폴리텍대학) 지역별 전략산업 수요를 고려, 폴리텍대학(캠퍼스) 학과를 녹색산업 등 성장동력산업 분야로 신설·개편
- (훈련프로그램 개발·보급) 녹색산업인력 수급전망 로드맵과 녹색직종 훈련프로그램 교재를 개발하여 관련기관에 보급
- (녹색산업 선도 자격제도 운영) 산업성장이 예측되고 인력양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그린자격종목 신설
  - 기존 산업의 녹색화에 따라 녹색산업·기술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자격종목은 시험과목 및 출제기준 등을 정비

## (2) 맞춤형 직업훈련의 제도화

- 채용예정자 훈련 및 협약훈련 확대
  - (채용예정자 훈련 확대) 중소기업이 실업자와 채용약정 후 민간훈련기관에 맞춤훈련을 위탁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 및 훈련수당(월 20만원) 지원 확대
  - (대학·기업간 협약훈련 확대) 폴리텍대학과 기업간 훈련협약을 체결, 기업이 원하는 커리큘럼에 따라 훈련을 실시한 후 바로 취업으로 연결
- 산업별협의체(SC)의 정책참여 및 산업별 특화훈련 실시
  - 국가기술자격 종목개발의 기초가 되는 직업능력표준 개발에서부터 자격검정에 이르기까지 산업계(SC)의 참여 확대
  - SC 중심으로 산업별 인력부족 실태 및 훈련수요조사,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맞춤훈련 실시 등을 위한 예산 지원

○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 제고

- (활용도 평가 강화) 기업을 대상으로 자격종목별 활용도(채용·임금·승진 등)를 평가, 활용도가 낮은 자격은 통·폐합 또는 출제내용·검정방식 개선
- (검정방식 개선) 현장실무능력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기능장 일부종목 검정방식을 개선(현 실기시험 방식에 면접 추가)하여 시범운영

(3) 실업자 등 대상별 훈련의 효과성 제고

① 실업자훈련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정착

- (훈련상담 강화) 구직자 설문지 및 체크리스트 개발, 상담매뉴얼 제작·보급, 훈련상담 교육 등을 통해 상담역량을 강화
- 1:1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 계좌발급시뿐만 아니라 장기간 훈련에 참여하지 않거나 수강 포기한 계좌소지자 등에 대한 관리 강화
- (양질의 훈련과정 제공) 단순기능습득, 저소득 일자리 위주로 인정되고 있는 훈련과정을 기술숙련, 금융·문화 등 미래 유망 고소득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분야로 확대
- (훈련직종 편중 해소) 음식·이미용 등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다한 직종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높이는 등 직종편중 해소 방안 강구

② 취약계층 대상 훈련 내실화

- (고학력 미취업 청년층) 대졸자의 훈련수요가 많고, 취업 가능성이 높은 훈련직종을 중심으로 전국 폴리텍대학(38개 캠퍼스)에 6개월~1년 과정의 특별훈련과정 개설·운영
- (영세자영업자) 중·고령층과 저학력자가 많은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 취업과 연계된 맞춤형 훈련 실시
- (북한이탈주민)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채용희망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맞춤형 훈련 확대

○ (기간제 근로자) 자기주도적 능력개발 지원 강화

-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절차 간소화 및 카드발급기간 단축 (14일 → 7일) 등 이용편의 제고(10년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 개정)
- 주중에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주말·야간의 다양한 고급훈련과정을 개설·제공

(4) 직업능력개발사업 성과관리 강화

○ 전부처 훈련사업 참여 훈련기관 대상 평가 실시

- 현재 노동부 이외 타부처 훈련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위탁훈련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미흡, 예산낭비 지적
- '10년부터 타부처의 위탁훈련기관에 대하여도 훈련실시 능력, 훈련성과 등 체계적 평가 실시(평가결과를 재정지원 기준 등에 활용)

○ 성과관리 인프라 구축

- 공모를 거쳐 직업능력개발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직업능력개발평가센터」로 지정('09.12월)
- 평가업무(노동부 및 타부처 훈련기관 평가)와 함께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직업훈련 성과관리방안 모색
- 노동부 HRD-net을 통해 정부 전체 훈련정보 제공 및 부처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훈련관리 시스템으로 개편

(5)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인증기업의 경영성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수모델 홍보·확산
- 학벌·학력보다 해당 분야에서 실력으로 성공한 숙련기술자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 II. 사업별 세부 추진지침

### 1.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 지원

#### 가. 목 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실업자 및 청년층 등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 새터민,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조속한 (재)취업 지원

#### 나. 세부사업별 훈련규모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훈련 목표인원	예산(안)	비고
소 계	157,287	281,949	
전직실업자취업훈련 (고용보험기금)	114,159	201,949	
신규실업자등훈련 (일반회계)	42,028	74,357	
새터민직업훈련 (일반회계)	1,100	5,637	

주) 신규실업자 등 훈련 : 신규+여성가장+영세자영업자

주) 새터민직업훈련은 기초직업적응훈련 예산이 포함된 금액임  
(기초직업적응훈련 1,500명, 1,185백만원)

#### 다.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1)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 및 전직실업자 취업훈련

(가) 계좌제훈련 및 우선선정직종훈련과 중복되는 직종 승인 최소화

- '10년 실업자훈련 예산의 70%가 계좌제로 배정됨에 따라 계좌제에서 대부분의 실업자훈련 과정이 공급될 예정
- '10년 물량배정 방식 실업자훈련에 있어서는 지역별 계좌제 훈련과정과 우선선정직종 훈련과정 공급현황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공급이 부족한 과정 위주로 실시
- 특히, 승인되는 과정이 서비스직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

(나)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특화 훈련과정 우대

- 취약계층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독자반으로 편성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대

※ 취약계층 : 결혼이민자, 새터민, 영세자영업자, 장애인, 중·고령자, 여성가장 등

- 기업과 훈련기관간 MOU 체결을 통한 맞춤형 직업훈련-취업 지원 연계프로그램 개발

————— <09년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지원 연계프로그램 개발 우수사례> —————

- 안양지청-(주)CJ푸드빌-현대호텔관광직업전문학교 : 새터민 제과제빵 과정
- 안양지청-삼성에버랜드-현대호텔관광직업전문학교 : 새터민 한·양식조리사 과정
- 서울서부지청-(주)제모피아-에림직업전문학교 : 새터민 주얼리디자인 과정
- 평택지청-(주)인증모드-한국폴리텍여자대학 : 새터민 양장기능사 과정

- 특히, '10년도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다문화가족 지원대책이 마련될 예정에 있으므로 관내 훈련기관에 적극 홍보하여 결혼이민자를 위한 독자반 개설을 권장

(다) 예산 상반기 조기집행 철저

- 실업자훈련비 상반기 조기집행\*을 위해 최대한 연초에 개설이 가능한 훈련과정을 우선 승인

\* '10년도 범정부 일자리 관련 예산은 상반기에 65% 이상(집행액 기준) 조기집행이 목표이므로 관서별 목표 달성에 철저를 기할 것

(라) 기타

- 지방노동청장은 관할 지방관서의 훈련인원 및 예산을 수시로 파악·관리함으로써 훈련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조치
- 지방관서는 배정된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관리 강화

\* 훈련실시 상황 및 예산집행 현황을 직업훈련정보망(HRD-net)에 수시로 입력하고 지방청에서는 월별 예산집행 현황을 취합하여 매익월 10일 까지 본부에 보고



○ 훈련기관 평가 결과와 연계된 훈련과정 심사

- 훈련과정 심사시 평가등급을 고려하되, 동일한 평가등급일 경우 평가 종합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대

<기존 훈련기관>

- 훈련실적이 있는 훈련기관으로 훈련기관 평가신청을 하지 않아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심사시 훈련기관평가를 E등급으로 처리

<신규훈련기관>

- 훈련기관 평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평가신청 마감기한 까지 신청을 하지 않아 평가를 받지 않은 훈련기관은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심사시 훈련기관평가를 E등급으로 처리
- 평가신청 마감기한 이내에 신청하였으나 훈련실적이 미미하여(나군) 컨설팅만 받은 훈련기관과 평가신청 마감기한 이후 설립된 훈련기관에 대하여, 훈련기관평가 점수는 훈련기관평가 영역을 제외한 영역의 점수의 합계 만점을 훈련기관평가 B등급을 만점 점수로 환산하여 훈련과정 심사

담당 : 인적자원개발과 5급 김태령, 7급 노태구 ☎ 02-2110-7270

## 2. 우선선정직종훈련

### 가. 목 적

- 국가기간·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의 훈련을 실시하여 구직자의 직업능력을 양성함으로써 실업극복과 국가기간·전략산업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 나. 사업규모

- 민간훈련기관 위탁훈련 : 697억원(9,197명)
- 대한상의 훈련 : 302억원(3,130명)

### 다. 사업시행주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3항제2호에 따라 '08년 사업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 \* 훈련 진행과 관련된 지도·감독 업무는 해당 지방노동관서에서 담당

### 라. 추진계획

- '10년 사업참여 희망기관에 대한 공모를 실시('09.12.11~12.24) 하고 신청기관 및 과정 심사('10.1.)
  - 과정심사시 별도의 직종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장비-교사-교과내용(커리큘럼)」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실시
- 위탁대상 훈련기관 선정 및 사업 실시('10.1.~)
  - 인력공단은 최종 위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보고 후 사업진행
    - \* 훈련예산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및 예산집행 철저

○ 훈련모니터링 실시

- 사업진행 과정에서 인력공단은 당초 훈련계획서대로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 훈련상황 지도·감독

- 지방노동관서는 매반기마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선정직종 훈련 상황을 지도·감독
- 인력공단 지역본부·지사가 훈련 진행 중 위법·부당한 사유를 발견하여 지방노동관서에 합동 지도·감독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
- 지방노동관서는 지도·점검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조치기준에 따른 내용(처분내용도 포함)을 해당 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통보
- 인력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에 따른 처분을 하고 지체 없이 직업훈련 정보망에 전산 입력

○ 우선선정직종훈련 시범사업 실시

- '10년도는 일반공모 외에 녹색/신성장동력산업 등과 관련된 직종을 추가로 공고\*(1/4분기 중)하여 PF(project financing) 방식에 의해 훈련비를 지급하는 시범사업 실시 예정

\* '10년도 예산의 일부 활용(7개 직종, 350명)

담당 : 인적자원개발과

4급 최정희, 6급 이창규 ☎ 02-2110-7275

### 3.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추진

#### 가. 목 적

- 종래 훈련기관 중심의 훈련방식에서 탈피하여 훈련생에게 직업능력개발 계좌를 발급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적합한 훈련 과정을 선택,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계좌발급시 상담, 정보제공 등을 강화하고 훈련비 지원과 훈련이력이 통합관리 될 수 있도록 추진

#### 나. 사업규모

- 예산현황
  - 실업자훈련(세부사업)의 내역으로 편성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훈련 목표인원	예산(안)	비고
계	117,000	191,441	
일반회계	30,000	48,539	
고용보험기금	87,000	142,902	

#### 다. 주요내용

##### 상담·계좌발급

- 실업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훈련분야를 협의·선정하고 계좌 발급
- 계좌취득자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 적합훈련과정 인정·고시

- 계좌취득자들이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적합훈련과정을 인정·고시하고 훈련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

□ **훈련비용 지원**

- 훈련참여자에 대하여 1인당 200만원까지 실훈련비 지원 및 교통비·식비 별도 지원(훈련비의 20%는 훈련생 본인 부담)

□ **훈련기관 평가 및 지도·감독**

- 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및 정보제공을 통해 훈련생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사업의 내실화 도모
-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 제고

**라. 향후 계획**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개정 고시 : ~ '10.1월
- 훈련상담원 채용 및 직무교육 실시 : ~ '10.1월
- '10년 적합훈련과정 인정·고시 : ~ '10.1월
- 지침 및 훈련상담 매뉴얼 제작·배포 : ~ '10.2월
- '11년 적합훈련과정 심사 : '10.하반기
- 적합훈련과정 운영 훈련기관 평가 실시 : '10.하반기

담당 : 인적자원개발과 5급 조영현, 7급 임희철 ☎ 02-6902-8222, 8224

## 4.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평가강화

### 가. 목 적

-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훈련생 및 사업주에게 제공하여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와 훈련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평가 연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함

### 나. 주요내용

#### (1) 평가대상

- 집체훈련기관 : 실업자훈련기관, 우선선정직종훈련기관, 재직자훈련기관,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기관\*  
\* 계좌제훈련기관도 2010년 평가대상에 포함
- 원격훈련기관 : 우편위탁훈련기관, 인터넷위탁훈련기관, 인터넷 자체훈련기관
- 평가제외 : 평가결과 2년 연속 A등급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2) 평가대상기간 : '09.1.1~12.31(훈련 종료일 기준)

- 종전 우선선정직종훈련(훈련기간이 6개월~1년)의 평가대상 기관을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평가대상 연도의 하반기에 훈련을 실시한 경우 취업률 평가(훈련종료 후 6개월 기준) 시 불이익

#### (3) 평가방법

- (평가위원 현장평가) 훈련전문가·내용전문가·지방노동관서 담당자 등 3인으로 구성, 훈련실시능력·훈련성과 평가
- (수요자평가) 훈련생의 훈련실시능력에 대한 만족도 조사

#### (4) 평가기준 : 자세한 사항은 '09.1.31 공고내용 참조

## 다. 사업추진 체계

- 외부전문기관(직업능력개발평가센터\*)에 평가업무 대행  
※ 직업능력개발평가센터는 공모를 통해 선정('09.12월말)

## 라. 행정사항

- 종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9-22호)을 노동부 예규(제611호)\* 변경하는 대신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평가계획(평가기준 포함)을 매년 공고하는 방식으로 전환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노동부 예규 제611호, 제정 2009.12.7, 시행 2010.1.1) 참조 ⇒ (다우라-지식마당-법령정보Ⅱ-예규)
- 2010년 평가기준 및 평가일정에 따라 지방노동관서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수행  
- 2010.1.31 공고되는 평가세부기준과 평가일정 참조
- (참고사항) 직업능력개발평가센터에서는 노동부 이외 타 부처가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위탁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도 대행하게 됨  
\* 2010년 신규사업으로서 예산규모는 477백만원

## 마. 추진계획

- 직업능력개발평가센터 공모 및 선정 : '09. 12월
- '10년 훈련기관 평가실시계획 및 평가기준 공고 : '10.1.31
- 평가 설명회 : 5~6월
- 평가위원 선정 : 6~7월
- 평가신청 및 평가정보 입력 : 6~7월

- 평가대상 확정 : 7월
- 평가위원 현장평가 및 수요자 평가 : 7~9월
- 지방관서 평가 : 9월
- 평가결과 발표 및 이의신청 : 10~11월
- 이의신청 결과 처리 및 HRD-Net 최종 공개 : 11월

담당 : 직업능력정책과 4급 편도인, 6급 박형란 ☎ 02-2110-7248



## 5. 직업훈련기관 지도·감독 강화

### 가. 목 적

-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훈련기관이 위탁·인정받은 훈련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감독함으로써 훈련서비스의 질과 훈련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지도감독 대상 선정
  - 훈련기관 평가등급에 따른 정기지도감독, 데이터모니터링 결과, 민원발생, 부정행위발생 등 참고자료에 의해 부정훈련 가능성이 높은 훈련기관을 수시지도감독 대상으로 선정
  - 지도감독률이 저조한 훈련(기관)
    - 중소기업컨소시엄, 재직자(자체, 위탁)훈련, 능력개발카드제 훈련
    - 평생교육시설, 사업주(단체)
  - 위반율이 높은 훈련(기관)
    - 재직자 자체훈련, 수강지원금과정
    - 평생교육시설, 학교, 학원, 사업주(단체)
  - 부정행위에 대한 매스컴 보도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분야
    - 요양보호사과정, 요리과정, 부동산관련학과 등의 서비스 분야
    - 원격훈련(우편원격, 인터넷원격위탁), 재직자위탁훈련기관
  - 훈련생 모집, 진도관리 등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한 원격훈련기관
- 중점 지도·감독 내용
  - 출결관리 소홀(부정), 수료증 관리 소홀 등 출석부정행위가 전체 부정행위의 절반 이상을 차지

- 자동경보시스템 등 출결자료에서 특정일을 전후하여 출석률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거나 특정 훈련생의 결석이 계속되는 등 출결이상이 있는 경우 집중 확인점검 시행
- \* 각 지방노동청은 6개월 단위로 우선선정직종을 포함한 실업자훈련기간 중 훈련생의 출국여부를 출입국관리소에 조회하여 지방관서에 통보
- 인터넷원격훈련기관 지도·점검 시 장비 또는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산업인력공단의 지원을 받아 합동지도·점검 실시(능력개발분석팀, ☎ 3271-9595~6)
- 우선선정직종훈련기관의 지도·점검은 지방노동관서에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조치기준에 따른 내용(처분내용도 포함)을 해당 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통보
- 훈련생에게 「직업훈련카드제도 운영지침」등 훈련제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훈련기관 지도 철저
- 훈련기관 및 훈련생의 의무사항,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내용 등

#### 다. 기타사항

-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인정제한, 지정취소 등의 조치는 불이익 처분이므로 반드시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 등 이행

담당 : 인적자원개발과 4급 최정희, 6급 이창규 ☎ 02-2110-7275

## 6. 훈련법인 지도·감독 강화

### 가. 목 적

- 법인의 재산관리, 임원 변동, 등기사항 등기 여부, 목적사업의 이행상태 등 지도·감독을 통하여 훈련서비스의 질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함

### 나. 세부추진 사항

- 훈련기관으로부터 재산처분, 조직변경에 의한 정관변경 신청 시 판단이 불가능한 사례가 없도록 법인관리를 철저
  - 부채발생, 담보제공, 장기임대 등 재산변동 및 지부·분사무소 개폐 등 정관변경사유 발생시 적정 조치여부 확인
  - \* 법인의 재산변동, 조직변경 내역 등이 정관 및 등기내용과 일치하도록 지도할 것
- 훈련법인 지도·감독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강화
  - 명칭변경 명령 미이행, 학비 미반환, 불법광고 등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경고, 시정명령, 허가취소 등 강력 조치
  - 훈련기관 홈페이지에 조직 및 기구 등을 소개하면서 학장, 전임교수, 교수, 강사, ○○학부 등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오해할 정도의 광고를 통하여 훈련생을 모집하는 경우
- 훈련법인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등의 목적사업을 하지 않고 학점은행제만을 실시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목적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등 법인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지도

## 다. 행정사항

- 훈련법인 관리카드 일제 정비 및 관리 철저
  - 09.12.31 기준으로 훈련법인 법인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업데이트하고 10.1월말까지 사본 1부를 본부로 제출
- 훈련법인 관리카드 인계인수 철저
  -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자 변경 시 인계인수서 목록에 포함
- 연 1회 지도·감독을 실시하되, 훈련기관 지도·감독시 병행
  - \* 점검표 붙임 2참조
- 점검결과 불법·부당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등 위반행위별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
  - \* 위반행위별 조치기준 붙임 3참조
-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은 2주 이내 본부 보고

담당 : 인적자원개발과 4급 최정희, 6급 이창규 ☎ 02-2110-7275

<붙임 1>

## 훈 련 법 인 관 리 카 드

(관리번호 : 관할 지방관서명-일련번호-허가년도-허가번호)

훈련법인명				훈련기관명			
소재지				소재지			
이사장				학교장			
법인허가번호				허가일자			
기본재산	출연내역	금액(원)	기타(주소 등)				
	예) 건물 및 토지	150,000,000	서울시 강남구				
	예) 현금	150,000,000	국민은행 (000-00-000-01)				
이사현황	직위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력	주요경력	
	이사장	홍길동	'50.12.12	남	대졸	고등학교 교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감 사						
기본재산 출연자	성명	출연금(원)	주소			주요이력사항	
	홍길동	200,000,000	서울 강남구 방배동 000-00			현 이사장	
훈련직증명	훈련직증명	훈련기간	최초훈련실시일		본원/분원 여부		
	예) 실내디자인	3월, 6월	'99년 10월				
	자동차정비	6월	'01년 3월				
분원내역	분원명칭	설치일자	분원운영자		주소		



<붙임 2>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점검표			
훈련법인명		<input type="checkbox"/> 본원 <input type="checkbox"/> 분원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설립허가번호		설립허가일	
<b>■ 법인사무</b>			
검토항목	검토 사항	적합 여부	비고
I. 민법 제97조	1. 등기 및 등기 사항 보고 해태 여부		
	2. 재산목록 미비치 및 부정기재 여부		
	3. 신고사항 미신고 및 부정 신고 여부		
	4. 파산신청 해태 등		
II. 목적사업의 이행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여부		
	2. 「 <u>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u> 」 제11조 ( <u>훈련기관 지도점검</u>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		
	3. 직업능력개발사업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 여부		
III. 수익사업의 적정성	1. 과도한 수강료 부과 여부		
	2. 법인 사업수행에 따른 과실을 개인에게 분배하고 있는 지 여부		
IV. 학정은행제	1. 허위·과대 광고 행위 여부		
	2. 중도포기자에 대한 부당한 수강료 미반환 여부		
	3. 부실 운영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았는 지 여부		
	4. 기타 공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했는 지 여부		
V. 임원 등	1. 임원, 감사의 자격 충족 여부 및 선임의 적법성 여부		
	2. 이사회의 적법한 운영 여부		
VI. 사업계획의 이행 등	1. 설립허가시 및 매년도 제출한 사업계획의 시행 여부		
	2. 분사무소 등기 및 보고 여부		
	3. 허위 분원 운영, 분원 등기 및 신고 해태 여부 등		





<붙임 3>

위반행위별 조치기준

위 반 행 위	처분내용
○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취소
○ 정당한 이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u>6월</u> 이내에 목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취소
○ 정당한 이유 없이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u>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u>	허가취소
○ 현저한 부정행위 등으로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허가취소
○ 분사무소를 별개의 소유형태로 독립적으로 운영한 경우	허가취소
○ 법인 기본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 받은 경우	허가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허가취소
○ 법인 기본재산의 감손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허가취소
○ 목적사업과 관련 없는 수익사업 등을 한 경우	허가취소
○ 목적사업과 관련 있는 수익사업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 보고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차 경고 및 정지명령 2차 허가취소

위 반 행 위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제한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제한을 받거나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되는 조치를 받은 경우</li> <li>-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li> <li>- 이외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취소</li> <li>- 경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의 수익을 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차 경고 및 정지명령</li> <li>2차 허가취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 회계 부정</li> <li>- 사회적 물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li> <li>- 이외 경미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취소</li> <li>- 경고 및 시정명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정명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정명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 등기를 지연하거나 하지 아니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정명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li> <li>-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li> <li>- 이외 경미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고 및 시정명령</li> <li>- 시정명령</li> </ul>

## 7.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 방지

### 가. 목 적

- 훈련기관 및 훈련생 등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자의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재정 건전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나. 추진계획

- 신규 훈련생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 개최시 훈련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필히 안내하도록 지도(지도 공문 발송) 및 훈련기관 지도감독 시 훈련기관, 훈련생 등을 대상으로 부정수급예방 지도
- 훈련기관 지도·감독시 출결부정, 수료부정 등 부정수급의 우려가 있는 항목\* 및 제재내용을 중점적으로 점검
  - \* 출결카드 대리체크 및 대리훈련(명의도용), 연속결석시 직권입력 등
- 지방관서별 발생빈도가 높은 부정수급 유형별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훈련비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접수 확인시 활용
  - 실업자훈련, 수강지원금·직업능력개발카드제, 재직자자체(위탁),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등 훈련유형별로 작성

### 다. 행정사항

- 부정수급 적발시 반환명령, 추가징수, 지급제한 등에 대한 제도변경('09.4.1) 사항을 숙지하여 시행 철저
- 부정수급 조사 처리 후 고용보험전산망·HRD-Net 전산입력 철저
  - \* 미입력 및 오류 입력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통계 불일치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입력내용에 대한 철저한 확인 요망
- 부정수급 반환명령액에 대하여 체납처분표를 작성하고 반환독촉, 압류, 공매 등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절차를 적기에 이행하는 등 채권관리 철저

담당 : 인적자원개발과 4급 최정희, 6급 이창규 ☎ 02-2110-7275

## 8.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 가. 목 적

- 비정규직과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비 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대부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

### 나. 사업내용

- 대부근거 : 「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1조제1항(신용보증 실시)
- 대부요건 : 1개월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실업자(실업급여 비수급자) 및 비정규직(연간 소득 2,400만원 미만자)
- 대부수준 : 월 단위 100만원(비정규직 300만원, 실업자 600만원) 한도 대부
- 대부금리 및 상환조건 : 2.4%(신용보증수수료 1% 별도),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 '10년 예산 : 147억원(고보기금 109억, 근복지금 38억원)

### 다. 행정사항

- '09.1월 사업공고(일간지·홈페이지) 및 신청접수(복지공단)

담당 : 인적자원개발과 5급 배상훈, 7급 고연주 ☎ 02-2110-7265, 7262

## 9.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 가. 목 적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에게 직업훈련을 실시(직접 또는 위탁)하거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훈련비 및 임금(유급휴가) 등 지원함으로써
- 사업주의 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통한 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 나. 사업내용

- 지원대상 : 피보험자, 채용예정자, 구직등록자
  - \* 유급휴가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된 피보험자
- 추진절차 : 훈련과정 인정 신청(사업주 또는 위탁훈련기관)  
→ 훈련과정 인정(지방노동관서) → 훈련실시 및 수료자보고(사업주 또는 위탁훈련기관) → 수료자 훈련비용 지원신청(사업주) → 훈련비용 지원(지방노동관서)
- 지원조건 :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후 재직자 등에 대한 훈련을 실시
- 지원금액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에 의한 훈련비 산출액의 80%(중소기업 100%)
  - \* 유급휴가는 훈련비 외에 임금지급분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의 100%(우선 지원대상기업 및 150인 미만 기업은 150%) 지원
  - \*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해 1일 이상 유급으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인건비 일부 추가지원(대기업 : 최저임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 : 최저임금액의 120%)
- '10년 예산 : 4,106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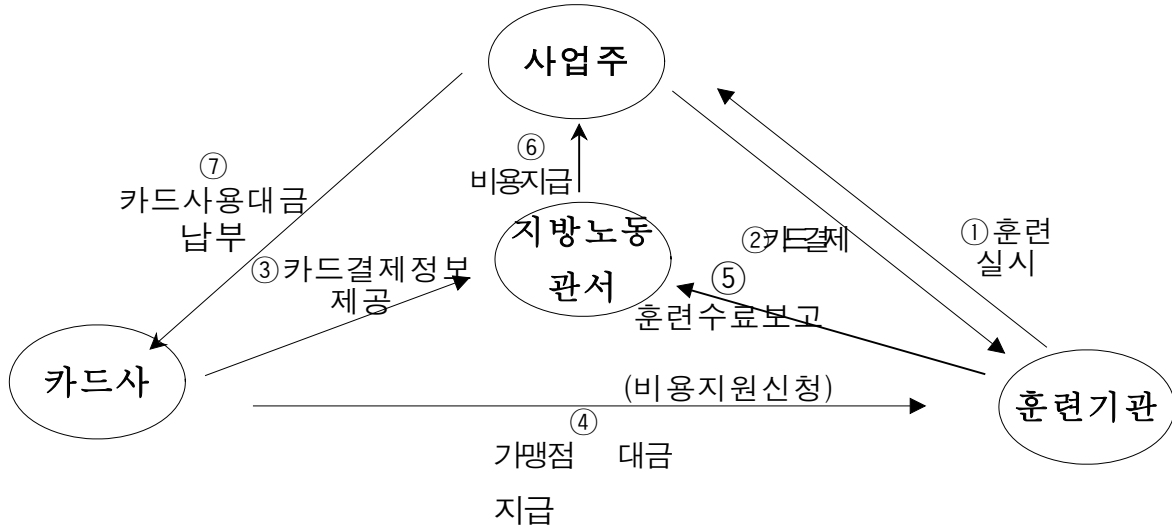
## 다. 행정사항

-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 활용 실적이 저조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노동정책설명회, 사업주 간담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
- 훈련 종료 후 30일 이내에 훈련비용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 철저
  - \* 사업주가 훈련비용 청구를 훈련 과정별로 훈련 종료 후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 훈련비용지원신청서 접수시 훈련비 지급 청구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철저
- 사업주로부터 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비용지원 지급계좌가 법인 또는 사업주 계좌와 일치하는 지 여부 확인 철저
- 지방관서의 비용지원지급결정권자가 비용지급 결정시 결재권자의 ID와 Password 관리 철저

## 라. 사업주 훈련비 카드제 도입에 따른 행정사항

- 사업주 훈련비 카드제('10.1월말 시행 예정)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동 제도에 대하여 사업주 및 훈련기관에 대한 적극적 홍보 실시
  - '10.1월 시범사업 실시 후 제도 정착시 의무 실시 예정
    - ※ 사업주 훈련비 카드제 도입관련 구체적 업무 지침 및 홍보 계획은 추후 시달 예정

담당 : 인적자원개발과 5급 황효정, 6급 민광제 ☎ 02-2110-7267, 7263



< 카드를 활용한 훈련비 지원업무 프로세스 >

- ①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직업훈련 위탁
- ② 사업주가 법인(또는 대표자)카드를 사용, 훈련비 결제
- ③ 카드사에서 HRD-Net을 통해 지방노동관서에 카드결제정보 제공
- ④ 카드사에서 가맹점인 훈련기관에 카드결제대금 지급
- ⑤ 훈련기관에서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훈련수료자 보고와 동시에 사업주의 훈련비 지원신청 대행[현행 수료자 보고(훈련기관), 지원신청(사업주)으로 이원화된 절차를 수료자 보고·지원신청이라는 하나의 절차(행위)로 일원화]

- (현행) 훈련과정 인정 → 훈련 실시 → 수료자 보고(훈련기관) → 지원신청(사업주)
- (개선) 훈련과정 인정 → 훈련 실시 → 수료자 보고·지원신청(훈련기관)

- ⑥ 지방노동관서에서 HRD-Net상의 카드결제정보를 토대로 사업주에게 훈련비 지원금 지급
- ⑦ 사업주가 카드사로 훈련비 카드사용대금 납부

## □ 기대 효과

- ◆ 사업주가 위탁훈련시 법인(또는 대표자)카드를 사용, 훈련비 결제(납부)
  - ⇒ 훈련기관에서 훈련비 지원신청 대행
  - ⇒ HRD-Net으로 결제정보를 받아 훈련비 지급에 관한 별도 증명 및 신청 절차 없이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훈련기관에서 비용신청 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사업주는 별도 행정부담 없이 훈련실시가 가능해져 사업주의 행정부담 완화
  - 특히, 그간 행정부담으로 직업능력개발 실시를 꺼려했던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실시 활성화에 기여
- 현행 훈련수료자보고(훈련기관), 비용지원신청(사업주)으로 이원화 된 민원을 하나의 절차(행위)로 일원화함으로써 처리 기한이 단축(현행 평균 30일 이상 → 10일 이내)
  - ※ 자체훈련도 훈련수료자보고와 비용지원신청을 일원화
- 훈련비 거래 내역이 투명해져 훈련비 관련 부정의 최소화에도 도움



## 10. 근로자 자율적 능력개발지원

### (1) 근로자수강지원금

#### 가. 목 적

-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 지원과 직업훈련 기회 확대를 통한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95)
  - \* 지원대상 : 300인 미만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이직예정자(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 40세 이상자,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 지원내용 : 카드제를 포함하여 1인당 1년간 1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1조제1항제1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 나.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일반과정 또는 외국어과정을 자비로 수강한 근로자
- 훈련기관 : 공공 훈련기관, 직업능력개발시설·법인, 외국어 학원 등
- 지원내용
  - 일반과정 : 수강료의 80%, 비정규직은 100%
    - \* 훈련비기준단가에 의해 계산된 금액의 100% 한도내 지원
  - 일반과정 중 음식서비스·기타서비스업 : 수강료의 50%, 비정규직은 80%
    - \* 훈련비기준단가에 의해 계산된 금액의 50%(비정규직은 80%)
  - 외국어과정 : 수강료의 50%, 비정규직은 80%
    - \* 40시간 기준 90,000원, 40시간 초과시 최소단위 20시간 증가시마다 45,000원씩 비례 지원
  - 인터넷원격훈련과정 : 수강료 전액
    -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 별표4의 훈련생 1인당 지원 한도액 한도 내 지원

## (2)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 가. 목 적

-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 지원과 직업훈련 기회 확대를 통한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07)

### 나. 사업내용

- 지원절차
  -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신청하여 교부받은 후
  -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한 경우 훈련기관의 신청에 의해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 지원제도
    - \* 지원대상 :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 \* 지원내용 : 수강지원금을 포함하여 1인당 1년간 100만원(5년간 300만원)한도 내
    - \*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지원내용
  - 일반과정 : 수강료의 100%
  - 일반과정 중 음식서비스·기타서비스업 : 수강료의 80%
  - 외국어과정 : 수강료의 80%
    - \* 20시간 기준 54,000원, 20시간 초과시 최소단위 20시간 증가시마다 54,000원씩 비례 지원

## (3) 행정사항

- 제도개선(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에 따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훈련기관 지도점검 강화
- 근로자 능력개발카드 신청·발급업무 신속 처리
-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의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10년 예산 : 708억원

담당 : 인적자원개발과 5급 배상훈, 7급 고연주 ☎ 02-2110-7265,7262

## 11. 근로자 학자금 대부실시

### 가. 목 적

-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장기저리로 대부하여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자발적인 능력개발 촉진

### 나. 사업내용

- 대부대상 : 재직근로자 또는 임의가입 자영업자(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사업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기능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 포함)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자
- 대부횟수 : 총학기수 이내
- 상환기간
  - 졸업 후 1년 거치 4년 상환
- 대부금액 : 등록금(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전액
  - \* 사업주 또는 기타의 자로부터 수강료의 일부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대부
- 대부금리 : 거치기간 1.0%, 상환기간 3.0%
  - \* 신용보증대출, 일반대출 동일
- 대부대행금융기관 : 신용보증대출은 우리은행 및 기업은행에서, 일반대출은 농협에서 취급
  - \* 대부절차 개선 : '09.2월 신용보증대출 신청 인터넷서비스 개시로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방문하는 절차 폐지
  - \* 신용보증한도 : 2,000만원

- 대부절차 : 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신청(신청자, HRD-Net을 통해 신청) → 대부여부 확정 통보(인력공단) → 대부약정 체결(신청자, 금융기관) → 금융기관 대출
- '10년 예산 : 942억원

#### 다. 행정사항

- 지방노동관서는 관내 사업장 및 훈련기관 등에 대부제도 수시 홍보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대부업무관련 HRD-Net 사용방법, 대부 처리절차 등 자문요청시 적극 협조

담당 : 인적자원개발과 5급 배상훈, 7급 고연주 ☎ 02-2110-7265,7262

## 12.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과 대체인력 지원

### 가. 사업목적

- 중장기에 걸친 유급휴가훈련과 이로 인해 발생한 빈 일자리에 실업자 대체고용을 연계 지원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전문 능력과 기술향상 도모

\* '94년 덴마크에서 지원제도를 도입(직장순환제 : Jobrotation)한 이래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히 운용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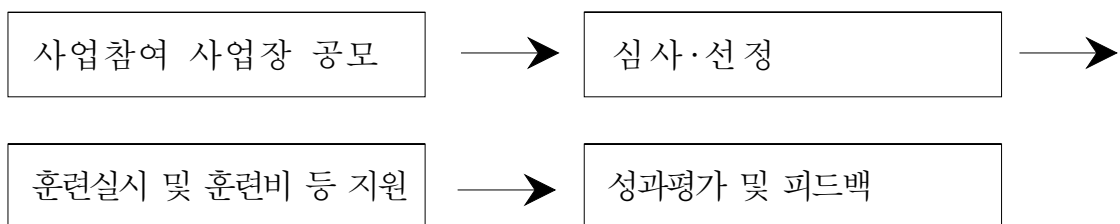
### 나. 사업내용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장기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고 실업자를 대체인력으로 고용한 경우 훈련비 및 인건비 일부 (실 훈련비 및 인건비의 70%)지원

#### ○ 지원내용

- 훈련비 및 인건비 : 실 훈련비 및 인건비의 70%
- 직무 재설계 컨설팅 : 유급휴가훈련 활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직무 재설계 컨설팅비 등 지원

#### ○ 사업추진 절차(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사업)



- '10년 예산 : 49억원

### 다. 행정사항

- 동 사업에 대하여 지역내 중소기업 및 훈련기관 대상으로 적극 홍보

담당 : 인적자원개발과 5급 황효정, 6급 민광제 ☎ 02-2110-7267, 7263

### 13.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 실시

#### 가. 사업목적

-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의 우수한 직업능력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컨소시엄 형태의 중소기업 훈련 지원
-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에게 양질의 직무능력향상 훈련 제공 및 현장 필요 인력의 적기 양성·공급

#### 나. 사업추진 체계

지방노동관서	산업인력공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컨소시엄 HUB 사업단)
· 컨소시엄 운영기관의 훈련실시에 따른 훈련비 등 지원 · 훈련비 지원관련 지도·감독	· 컨소시엄 운영기관 선정 · 컨소시엄 운영기관 시설·장비비, 인건비 등 지원 및 정산	· 컨소시엄 운영기관에 대한 컨설팅, 홍보 · 컨소시엄 전담자 교육·훈련

#### 다. 행정사항(지방노동관서)

- 컨소시엄 훈련과정\*에 대해 고용보험의 사업주훈련으로 지원  
\* 컨소시엄 훈련과정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심사를 거쳐 컨소시엄 과정으로 승인된 과정
- '10년 신규 운영기관 선정 공모시 대기업, 사업주단체, 대학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 실시 훈련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적정한 컨소시엄 훈련이 이뤄지도록 지속 독려
- '10년 예산 : 737억원

담당 : 인적자원개발과 5급 황효정, 6급 민광제 ☎ 02-2110-7267, 7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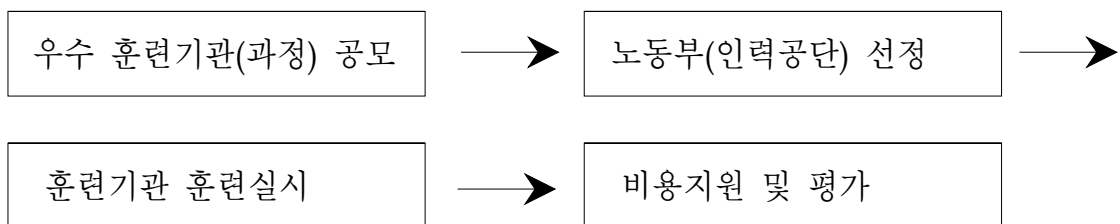
## 14.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 가. 목 적

-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유용한 양질의 훈련과정을 선정하여 무료훈련기회와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사업주의 인적자원개발 투자 확대 유도

### 나.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노동부(인력공단)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 우수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
- 지원내용 : 실 훈련비 전액과 훈련기간 중의 참여한 근로자의 임금 일부지원
- 훈련기관 : 우수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대기업 훈련시설, 전문훈련기관 등에 대해 공모·심사를 통해 선정
- 지원절차



- '10년 예산 : 163억원

### 다. 행정사항

- 훈련과정별 참여훈련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10.1월, 일간지·인력공단 홈페이지)
- 사업공고 내용 및 관련 고시 개정에 따른 달라진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관내 훈련기관 및 중소기업에 적극 홍보
  - \* 추후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과정이 확정·공고될 경우 동 내용을 중소기업 사업주 대상으로 적극 안내

담당 : 인적자원개발과 5급 황효정, 6급 민광제 ☎ 02-2110-7267, 7263

## 15.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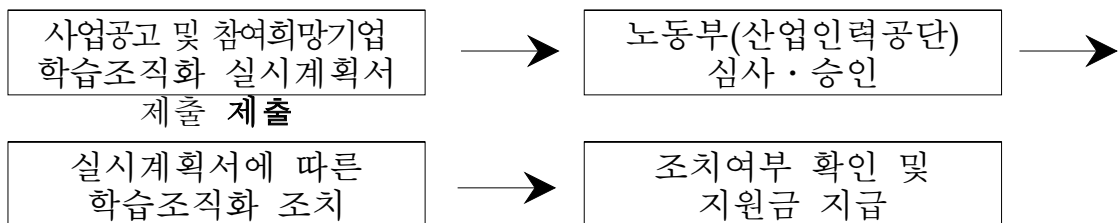
### 가. 목 적

- 생산현장에서의 일과 학습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직업능력 개발을 근로자의 평가·보상 및 기업의 성과개선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학습조직화 촉진
- \* 기업의 학습조직화가 촉진될수록 근로자의 평생학습 및 기업의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활동도 동시에 활성화

### 나.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노사협의를 통해 학습조직화를 촉진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 \* 학습조직의 유형 : 학습조 도입, 학습공간 구축, 우수학습활동지원, 학습 네트워크기반 지원, 학습조직화 코칭, 학습조직화를 위한 컨설팅, 체계적 현장훈련
- 지원내용 : 학습조 운영비 등 학습조직화 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지원

### ○ 지원절차



- '10년 예산 : 83억원

### 다. 행정사항

-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장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10.1월, 일간지·인력공단 홈페이지)
- 중소기업사업주 설명회, 노사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 설명 및 안내

담당 : 인적자원개발과 5급 황효정, 6급 민광제 ☎ 02-2110-7267, 7263



## 16. 중소기업 CEO 및 HRD 담당자 연수사업 실시

### 가. 목 적

- 중소기업 CEO 및 HRD 담당자들의 인식개선을 통하여 직업 능력개발에 대한 관심과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활성화

### 나. 사업운영

- 사업추진 절차(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
  -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를 거쳐 연수기관 선정
  - 연수기관이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국 주요지역 순회 연수 실시
- '10년도 사업 계획
  - 장소 : 전국 16개 지역, 46회 실시 예정  
(CEO연수 21회/HRD담당자 연수 : 25회)
  - 일정 : (1~2월) 사업계획수립 및 공고, (3~11월) 전국 순회 연수 실시

### 다. 행정사항

- 연수프로그램 확정시(2월중 예정) 지역별 연수계획을 시달할 예정이므로 중소기업 사업주 설명회·간담회·사업장 지도점검 시 적극 안내

담당 : 인적자원개발과 5급 배상훈, 7급 고연주 ☎ 02-2110-7265, 7262

## 17. 중소기업 · 비정규직 근로자 JUMP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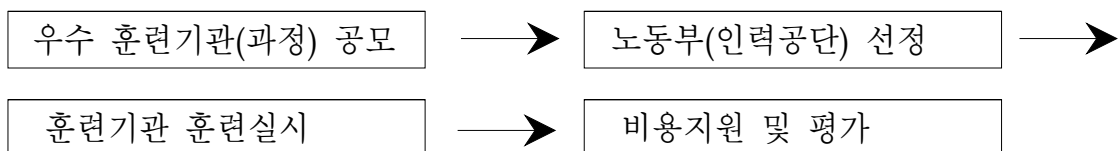
### 가. 사업목적

- 시간적 · 경제적 여유 부족으로 훈련참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및 비정규 근로자의 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특화 된 훈련 서비스 제공
- 주말, 야간 중심의 단기직무능력향상과정을 제공하고 동 과정을 동영상, 이-러닝 콘텐츠 등으로 보충학습 하도록 하여 취약 계층 근로자의 자기 주도적 능력개발을 지원

### 나. 사업내용

- JUMP 훈련지원
  -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적합한 훈련과정을 선정 하여 주말, 야간 시간대를 활용하여 근로자에게 제공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식포털사이트 구축
  -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적시학습(JIT Learning)을 지원 하기 위하여 직무 관련 기술·경험·노하우를 스스로 학습·공유·생산할 수 있는 지식 포털 사이트 구축·운영

### ○ 사업추진 절차



- '10년 예산 : 144억원

### 다. 행정사항

- 선정된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추후 통보 예정)에 대하여 지역내 중소기업에 적극 홍보
- 지식포털사이트('10.4월말 오픈 예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참여

담당 : 인적자원개발과 5급 배상훈, 7급 고연주 ☎ 02-2110-7265,7262

## 18. 직업능력개발 유공자 포상

### 가. 사업목적

- 사회 각 분야에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공이 큰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나. 주요업무내용

#### (1) 포상 홍보 및 유공자 발굴

- 포상계획을 관내 근로자, 사업장, 훈련기관 등 관계자에게 홍보
  - \* 근로감독, 사업장 간담회 등 청·지청에서 관계자 접촉시 포상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소개
- 관할 내 유공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천

#### (2) 유공자 추천

- 각 지청에서 접수된 포상대상자를 청에서 취합하여 청별 공적심사위원회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본부(직업능력정책과)에 추천
- 추천 시에는 공적의 사실여부와 추천제외요건(재포상금지, 산재, 범죄경력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다. 추진일정

- '10년 직업능력개발유공자 포상계획 수립 시달(4월, 본부)
- 포상대상자 추천서 접수, 청별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포상후보자 본부 추천 (5~6월, 지방)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포상후보자 선정, 정부포상후보자 행정안전부 추천(7~8월, 본부)
- 포상 수여(9월,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담당 : 직업능력정책과 5급 김지원, 전문위원 정복영 ☎ 02-2110-7258

## 19. 직업능력의 달 행사

### 가. 행사개요

- 9월을 직업능력의 달로 정하고 박람회, 컨퍼런스, 컨테스트 등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다양한 행사 추진

#### < '10년 직업능력의 달 행사 일람 >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9.1, 장소미정)** : 직업능력개발에 공이 큰 유공자 포상(훈·포장, 대통령표창 등), 대한민국명장·우수기능인 증서 수여

**미래직업박람회(9.15~18, COEX 대서양홀)** : 미래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직업관 정립을 돕고 전국민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관심 확산 유도

**대한민국 장인작품박람회(9.15~19, COEX 컨벤션홀)** : 명장 등 우수 기능인의 작품을 전시하여 기능인에 대한 인식 제고와 기능장려 유도

**전국기능경기대회(9.7~13, 인천광역시)** : 컴퓨터정보통신 등 55개 직종별로 전국 최고의 기능인 선발

**HRD 컨퍼런스(9.28~30,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국내·외 최신 동향 및 우수사례 정보 공유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수여식(9.29, 장소미정)** :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중기청 공동으로 인증서 수여

※ 기타 행사는 '10년 상반기 중 확정예정

### 나. 행정사항

- 「직업능력의 달」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행사내용, 행사시기·장소 등에 대해 관내 홍보 실시
  - \* 지역 언론, 유관기관 등을 활용하고, 현수막·팜플렛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
- 지방청에서도 직업능력의 달 행사기간 중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세미나, 거리캠페인 등)

담당 : 직업능력정책과 5급 김지원, 전문위원 정복영 ☎ 02-2110-7258

## 20. 직업능력개발 훈련기준 적용

### 가. 목 적

- 산업수요를 반영한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 훈련실시 지원

### 나. 세부추진 계획

#### (1)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 개선

- '09.12.10. 산업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존 209개 직종 중 156개 직종의 훈련기준을 개정하여 고시
  - 43개 직종을 통·폐합하고, 137개 직종의 훈련기준 체계 및 내용·수준을 개선하였으며, 녹색 및 지식서비스산업 등 23개 직종의 훈련기준을 신규 개발함
- \* 33개 직종은 미개정하였으며, 현재 훈련기준 수는 총 189개임

#### (2) 행정사항

- 폐지된 훈련기준의 활용을 방지하고 변경 고시된 훈련기준 활용
  - 종전에 활용하였으나 현실과 맞지 않아 폐지되거나 변경된 훈련기준을 준거로 훈련과정을 심사하지 않도록 유의
  - \* '09.12.10. 훈련기준 개정 고시는 '10.1.1.부터 시행하며, 동 고시 부칙의 직종별 훈련기준에 대한 적용, 훈련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체계개선 미적용 직종 등을 확인하여 업무처리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
- 훈련기준 설정 또는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 처리
  - 훈련기준 설정 또는 변경신청을 접수한 때는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지방노동관서장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본부에 송부
  - \* 훈련기준(안) 작성시 훈련목표, 교과목 및 그 내용, 시설 및 장비, 훈련기간 및 시간, 훈련방법 등을 명시토록 지도

담당 : 직업능력정책과 5급 김우영, 7급 고영환 ☎ 02-2110-7247

## 21.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등 수급관리

### 가. 목 적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및 관리업무

### 나. 세부추진 계획

#### (1) 주요내용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현황 전산관리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시 HRD-net에 교사자격 정보 입력
    - \* HRD-net 입력권한은 직업능력정책과로 신청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적합여부 판단 철저
  - 교사훈련과정(양성·교직·향상)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자격 기준 및 경력확인(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 등) 철저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교부신청서 처리기간(7일) 준수

#### (2) 행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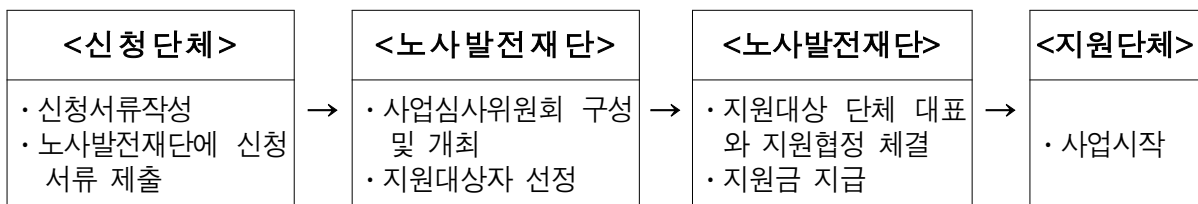
- 자격증갱신 또는 재교부시 기 입력자료를 확인하여 발급
  - \* 자격증 발급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전산 미입력자 현황도 HRD-net에서 반드시 확인
- 자격증 발급시 HRD-net에 전산입력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한국고용정보원 실무자와 협의 처리
  - \* 한국고용정보원 능력개발팀(Tel 02-2629-7873,4)
- 자격증발급 문의에 대하여는 기 시달된 매뉴얼을 충분히 검토한 후 답변
- 자격증교부 신청서 접수시 주소지 또는 거주지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하지 말고 접수 지방노동관서에서 처리

담당 : 직업능력정책과 5급 김우영, 7급 고영환 ☎ 02-2110-7247

## 22. 노사협력직업훈련 지원

### 가. 사업개요

-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초기업 단위 교육훈련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기업단위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할 유인이 낮은 지역·업종의 비정규직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훈련 실시
- 보다 수요자 중심의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노사발전재단에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
- 사업추진 체계 및 방식
  - 지원형태 : 노사발전재단에 사업 위탁
  - 사업시행주체 : 노사단체
  - 수혜자 : 지역 및 산업수요에 필요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주
  - 사업집행절차



- '10년 예산 : 25억원

### 나. 행정사항

- 노사발전재단과 2009년 사업 위탁계약 체결(1월중)
- 사업 공모 및 지원기관 선정(2월)

담당 : 인적자원개발과 5급 박준용, 6급 허기봉 ☎ 02-2110-8116,7264

## 23.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실시

### 가. 목 적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관을 심사평가하여 정부에서 인증하고 컨설팅 등 지원사업 시행('06)

### 나. 사업내용

- 추진주체
  - 민간부문 인증\* : 노동부 주관(교과·지경·중기청 공동참여)\*\*
    - \* 인증대상 : 고용보험법 적용사업장(기업, 공기업, 훈련기관 등)
    - \*\* 인증서는 4개 부처 공동명의로 수여
  - 공공부문 인증 : 교육과학부 주관(행안부 공동참여)
- 인증 운영체제(비상설 회의체)
  - 인증제 관계부처 협의회 구성운영(제도, 정책 등 총괄)
  - 인증위원회 구성운영(정부·산업계·민간, 인증기업 심의)
  - 민간부문 인증사업 운영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총괄
    - \* 공공부문 인증사업 운영은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총괄
- 심사절차 :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심사평가단의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인증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다. 행정사항

- '09.2월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인력공단)
  - ※ 인력공단에서는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인증심사 기준을 개선하여 사업시행

담당 : 인적자원개발과 5급 이재학, 6급 장순애 ☎ 02-2110-7273, 7271



## 24.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 운영

### 가. 목 적

-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은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 배양 및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훈련의 기회확대 등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직업훈련종합서비스망의 기능을 수행
  -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직업능력개발관련 종합 DB 구축을 통한 직업능력개발정책의 과학화 달성을 목적으로 함

### 나. 사업내용

-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기능고도화
  - 법·제도 개편에 따른 관련 프로그램 개선 및 신규업무 개발
  -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 반영 및 기능개선에 의한 프로그램 수정 및 개발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정책의 원활한 집행, 사용자의 편리성 향상 및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기능강화
-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홈페이지 개선
  - 검색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정보제공 기틀 마련
  - 고객유형별 맞춤정보 제공을 통한 개인화 서비스 및 전자통지 개선,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등을 통한 편의성 제고
  - 웹 접근성 지침에 준수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여 사용자 및 환경에 구애받지 않도록 웹 접근성 향상

- 원격훈련기관 LMS<sup>1)</sup> 연계시스템 구축
  - 원격훈련기관의 LMS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간 실시보고, 수료보고 등 훈련업무를 대상으로 연계처리 시스템 구축
  - 원격훈련기관의 LMS 정보의 자동 반영으로 온라인 업무처리 간소화(원격훈련기관중 일부 시범 실시 후 추후 확대)

#### 다. 행정사항

- HRD-Net 시스템에 대한 지방노동관서, 훈련기관 등 이용자의 개선 의견을 수시 수렴하여 개선
  - ※ 검색기능 강화를 통한 훈련과정 검색시간 단축 및 웹 접근성 향상 등 사이트 활성화에 대한 고객 의견 수렴
- 원격훈련기관의 훈련업무처리 자동화 구축시 업무처리 시간 및 행정소요 비용 감소를 위해 연계업무 담당자와 긴밀한 협조 체제 유지

담당 : 인적자원개발과 5급 이재학, 6 장순애 ☎ 2110-7273, 7271

1)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 학사관리시스템. 컴퓨터 온라인을 통하여 학생들의 성적과 진도는 물론 출석과 결석 등 학사전반에 걸친 사항들을 관리해 주는 시스템을 말함

## 25. 직업능력지식포털 구축·운영

### 가. 목적

- 사업별, 기관별 혼재되어 개발·운영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 정보들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수요자의 학습선택권 강화와 공급자간 성과경쟁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훈련시장 유도과 함께 직업능력개발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장 마련

### 나. 사업내용

- 직업능력지식포털 구축('09.12~'10.3월)
- 직업능력지식포털을 통한 직업능력 지식정보 통합 제공('10.4월 예정)
  - 콘텐츠 축적 및 교류서비스
  - 사이버연수원 및 중소기업 HRD지원서비스
  - 범정부 직업능력개발사업 통합 및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 서비스
  - 개인학습이력, 커뮤니티, Q&A 등 수요자 맞춤서비스

### 다. 행정사항

- 직업능력지식포털 시스템에 등재할 훈련기관 및 훈련정보 파악('10.1월~2월)
  - 해당부처 및 위탁훈련기관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등) 기재
  - 각 부처 사업운영방식(개별 사이트운영여부, 온/오프라인훈련 형태, 신청·접수·수료 등 행정절차 등) 파악하여 직업능력지식포털 시스템에서 통합제공 방안수립

- 정부지원 훈련사업에 참여한 위탁훈련기관의 담당자가 해당 훈련정보(훈련기관명,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훈련내용, 훈련생 요건, 학습콘텐츠 등)를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이용권한 부여
  - \* 위탁훈련기관 담당자가 포털에 접속하여 훈련정보를 직접 입력토록 조치하되, 불가피한 경우 인력공단에서 직접 입력함으로써 누락 사항이 발생 방지
- '10.3월까지 범정부 직업능력개발 훈련정보 통합제공을 포함하여 기본적인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여 서비스 개시
  - \* '10.7월까지 시스템보완을 통해 정상화

담당 : 인적자원개발과 5급 이재학, 6 장순애 ☎ 2110-7273, 7271

## 26.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설치비용 대부

### 가. 목 적

- 근로자 직업훈련시설 설치 및 훈련장비 구입시 장기저리로 자금을 대부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 활성화 도모

### 나. 사업내용

- 대부대상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 대부심사 및 대부대상자 확정을 사업주와 훈련기관으로 각각 분리 심사 및 확정
- 대부한도 : 60억원 이내로 소요자금의 90%까지 대부가능
- 대부금리
  -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컨소시엄사업 참여 대기업 : 연리 1%
  - 대기업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 연리 2.5%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법인, 근로자단체 : 연리 4%
- 대부기간 : 10년 이내(5년 거치 5년 상환)
- 상환방법 : 거치기간 경과 후 5년간 연 4회(분기별) 균분 상환
- '10년도 예산 : 95억원

### 다. 행정사항

- '10.1월 사업공고(일간지·홈페이지), '10.3월 신청접수(인력공단)
- 사업장 안내 및 인력공단 지부(사)에서 업무협조 요청시 적극 협조

담당 : 인적자원개발과 5급 배상훈, 7급 고연주 ☎ 02-2110-7265,7262

## 27. '10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 안내

### 가. 목 적

- 직업훈련 등 이수 후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했는지 여부를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

### 나. 추진계획

- '10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컨텐츠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 : 514종목
  - 기술사 3회, 기능장 : 2회, 기사·산업기사 : 4회, 기능사 : 5회
- 대한상공회의소 : 18개 종목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1회), 2급(2회)
  - 워드프로세서 1급·2급·3급 : 각 연 3회
  -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3급 : 각 연 3회
  - 전산회계운용사 1급(1회), 2급·3급 : 각 연 2회
  - 전자상거래운용사 : 연 2회
  - 비서 1급·2급·3급 : 각 연 2회<비서 1급 응시자 증가로 1회 증회>
  - 한글속기 1급·2급·3급 : 각 연 2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3개 종목
  - 방사선관리기술사, 원자력발전기술사, 원자력기사 : 각 연 1회
- 영화진흥위원회 : 2개 종목
  - 영사산업기사, 영사기능사 : 각 연 1회

- 한국전파진흥원 : 12개 종목(첫 시행)
  - 전파통신 / 기사·산업기사·기능사 : 연 2~3회
  - 전파전자 / 기사·산업기사·기능사 : 연 2~4회
  - 무선설비 / 기사·산업기사·기능사 : 연 2~4회
  - 방송통신 / 기사·산업기사·기능사 : 연 2~3회
  
- 한국콘텐츠진흥원 : 3개 종목(첫 시행)
  - 게임기획전문가,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 각 연 2회
  
- 한국광해관리공단 : 2개 종목(첫 시행)
  - 광해방지기술사·기사 : 각 연 1회
  
- 검정시행기관별 “2010년도 검정시행 일정”은 우리부 홈페이지 및 검정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국가기술자격 검정 관련 기관별 홈페이지 및 연락처

검정 관련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노동부 자격정책과	www.molab.go.kr	02)2110-7283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02)3271-9133
대한상공회의소	www.license.korcham.net	02)6717-361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www.kins.re.kr	042)868-0274
영화진흥위원회	www.kofic.co.kr	02)958-7649
한국전파진흥원	www.korpa.or.kr	02)2142-2263
한국콘텐츠진흥원	www.kgq.or.kr	02)3153-1226
한국광해관리공단	www.mireco.or.kr	02)3702-6601

#### 다. 행정사항

- 지방노동관서에서 직업훈련 상담 및 일-훈련-자격이 연계 되도록 시행 일정 등 안내

담당 : 자격정책과 5급 손희찬, 6급 임병각 ☎ 02-2110-7283

## 28.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면제과정」 관련 업무시행 철저

### 가. 근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18조, 노동부예규 제578호<산업기사응시자격인정 및 기능사필기시험면제 등에 관한규정>

### 나. 추진계획

#### ○ 주요내용

-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기관·기술훈련과정 지정, 기능사필기 시험면제기관·훈련과정 지정(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 개발 업무 담당 부서)

#### ○ 지정절차

-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09.2월부터 교육훈련과정의 지정을 지방관서로 이관 ('09.2월 예규 개정)

#### ① 신청접수 : 연중 수시

\* 지방노동관서장은 2부 접수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로 1부 송부

#### ② 방문조사

- 지방관서(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업무 담당부서)  
: 시설·장비 적정 여부 실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 교과과정 등의 적정여부검토 후 해당 지방관서에 송부

※ 조사내용 : 노동부예규 제578호 제2조 내지 제5조 참조



- ③ 지방관서에서 인력공단의 검토내용을 받아 교육훈련과정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 결정

#### 다. 행정사항

- 매년 지정교육기관 점검계획 수립 및 면제과정 등에 대한  
증명서 발급 철저
  - 대상 : 지정받은 교육훈련기관
  - 면제과정 등의 확인 : 교육훈련생명부와 수료자(수료 예정자)  
명부 대조확인 (수시)

담당 : 자격정책과 5급 손희찬, 6급 임병각 ☎ 02-2110-7283

## 29.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 단속

### 가. 근 거

-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제16, 17조 및 제26조(벌칙)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7조

### 나. 주요내용

- 자격 취득자의 취업기회 잠식, 무자격자 고용에 따른 부실공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07년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대여자를 조사·단속하고 있고, 우리부 소관 자격에 대해서는 지방관서를 통해 조사·단속 중

### 다. 조사·단속 절차(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 업무담당부서)

#### □ 자격대여 의심자에 대한 1차 조사(유선확인조사)

- 대여 의심자 근무상황 등을 유선 확인
  - 유선확인 내용 : 사업체(공사) 현황, 근무·주거상황 등
  - 정상적으로 답변을 못했을 경우 그 이유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확인서 징구하여 사업체 조사에 증거자료로 확보

#### ○ 대여의심자 급여 지급 내역 자료 확인

- 단속대상자에게 월급을 지급받은 내역을 제출토록 함
  - ※ 2차 자료 조사시 급여 확인내역과 동일한 내용 확인

#### □ 2차 조사(근무사실 확인 조사)

- 1차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 단속대상자의 소속사업체 방문 조사 실시
  - 사업체 방문 조사에 대한 공문 발송시 전체 기간은 명시하되, 구체적인 일시는 명시하지 않음

◆ 급여지급 내역 확인시 참고사항

- 계좌이체시 : 통장사본, 온라인 계좌입금내역(전산출력물) 등확인
- 현금지급시 :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발행), 회사 통장(임금지급일에 임금상당액의 출금 여부)을 기준으로 확인
  - 사업체 또는 세무사무소에서 작성관리하는 임금대장, 소득세원천징수 영수증(확인서 등)은 증빙자료 가치가 없음
  - 4대보험 가입증명원도 증빙자료로 가치가 없음(불법대여시 대부분 4대보험 가입)
- 재직기간 전체 또는 최소 6개월 이상 급여지급 내역 확인

※ 정상적인 답변이 가능하고, 급여지급 내역자료가 확인된 경우는 “대여 아님”으로 정리하고, 단속대상에서 제외

- 단속대상자의 회사(또는 현장) 근무여부 대면 확인하되, 대면 확인이 안될 경우 사유 확인(근무상황부 등) 및 유선 확인\*

\* 회사에 상주하는 경우사전에 전화로 상주여부 확인

- 단속대상자 담당 업무 확인, 근무일지(또는 공사 일지 등), 기타 보고서·결재서류 등에 주기적으로 서명 여부 등 확인

- 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라 의견진술서나 자격증불법대여 확인서에 따라 확인서를 징구하되, 확인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의견진술서나 자격증불법대여 확인서 제출 거부를 표기>하고 향후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게 됨을 안내

라. 행정사항

- '10년에도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
  - 단속 추진 내용 등 세부사항은 별도 시달(하반기 중)
- 구인·구직 상담시 자격증 대여가 불법임을 안내 및 불법 인식 개선을 위한 계도·홍보 지원

담당 : 자격정책과 5급 손희찬, 6급 임병각 ☎ 02-2110-7283

## 우리부 소관 국가기술자격 종목 현황

### [우리부 소관 국가기술자격종목]

기계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기사·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기사·산업기사, 인간공학기술사·기사, 전산회계운용사1·2·3급, 직업상담사1·2급, 기계가공기능장, 선반기능사, 연삭기능사, 밀링기능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수치제어선반기능사**, 수치제어 밀링기능사, 기계조립산업기사·기능사, 메카트로닉스기사·산업기사·기능사, 생산자동화산업기사·기능사, 공유압기능사, 기계설계기사·산업기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배관기능장·기능사, 배관설비산업기사, 철도차량정비기능장, 천장크레인 운전기능사, 양화장치운전기능사,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치공구설계산업기사, 용접기능장·기사·산업기사, **전기용접기능사**, **가스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금형제작기능장, 프레스금형설계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기능사, 판금제관기능장·산업기사, 판금기능사, 제관기능사, 금속기사(재료·제련·가공분야), 표면처리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주조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원형기능사, 압연기능장, 냉간압연기능사, 열간압연기능사, 제선기능장·기능사, 제강기능장·기능사(전로·전기로·연속주조), 축로기능사, 화공기사·산업기사, 전기기기산업기사, 전자기기기능장·기능사, 전자카드기능사, 조선기사·산업기사,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선체건조기능사, 동력기계정비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건축목재시공기능장, 섬유물리기사·산업기사, 섬유화학기사·산업기사, 염색기능사(침염·날염), 섬유디자인산업기사, 의류기사, 패션디자인산업기사, 양복산업기사·기능사(양복패턴·양복봉제), 양장기능사(양장패턴·양복봉제), 한복산업기사·기능사, 응용지질기사, 사진기능사, 인쇄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제판기사, 사진제판기능사, 피아노조율산업기사·기능사, 목공예기능사, 도자기공예기능사, 귀금속가공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보석가공기능사, 보석감정기능사, 패세공기능사, 철기기능사, 조화공예기능사, 자수기능사(수자수·기계자수), 금속도장기능사, 광고도장기능사, 워드프로세서1·2·3급, 한글속기1·2·3급, 비서1·2·3급, 컴퓨터활용능력1·2·3급, 전자상거래운용사, 텔레마케팅관리사 (144종목)

\* 굵은표시 글자는 최근 5년내에 자격증 불법대여 사례가 있었던 자격종목

### 30. 기능인 우대분위기 조성

#### 가. 목 적

- 명장, 기능한국인 등 우수기능인 선발을 통해 기능인의 사기 진작 및 기능존중 풍토 제고

#### 나. 세부추진 계획

##### (1)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홍보(매월 1명)

- 선정대상 : 기능관련 직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명장·기능장·기능전승자·기능경기대회 입상자·기업체 CEO 등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능인
- 지원내용 : 언론홍보, 성공사례 동영상 및 수기집 제작·배포 등

##### (2) 명장 등 우수기능인 선정 및 지원

- 명장(35명 이내)
  - 선정대상 : 장인정신이 투철한 그 분야 최고기능의 보유자
  - 지원내용 : 상금 20백만원, 증서 및 휘장 수여 등
- 기능전승자 및 계승자(10명 이내)
  - 선정대상 : 전통기능을 보유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자
  - 지원내용 : 전승자와 계승자에게 매월 80만원 및 20만원 지원
- 중소기업우수기능인(100명 이내)
  - 선정대상 : 중소기업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기능인으로 기능인 사기진작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자
  - 지원내용 : 상금 50만원 및 대학 입학 시 장학금 지급
- 선정 시기 : 선정공고("10.2), 접수기간("10.3), 증서수여("10.9)

#### 다. 행정사항

- 지방노동관서장은 우수기능인 선발 시에 많은 근로자와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지원

담당 : 자격정책과 5급 박영택 6급 유광욱 ☎ 02-6902-8220

## 31. 기능경기대회 지원

### 가. 사업목적

- 기능인의 기능수준 향상과 기술 및 기능 개발을 촉진하여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기능 존중 풍토 조성

### 나. 세부추진 계획

-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 '10. 4월(16개 시·도)
  - 경기직종 및 인원 : 연 846직종 9,160명
-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 '10. 9월(인천광역시)
  - 경기직종 및 인원 : 56직종 2,288명
-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 : 44개 대회
  - 사업주, 비영리 단체 등의 개최비용 지원

### 다. 행정사항

- 지방노동관서장은 관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와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확립하여 교육(직업훈련)기관, 산업체에서 우수기능인이 기능경기대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 지역 주민이 기능경기대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대회준비 현장을 방문 격려 및 지원

담당 : 자격정책과 5급 박영택, 6급 유광옥 ☎ 02-6902-8220

<참고자료>

2010년 기능경기대회 개최 기본계획

1. 개최근거

- 기능장려법 제11조(국내기능경기대회)
- 기능장려법 시행령 제20조(국내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2. 개최일정

구 분	참가원서접수기간	개최기간	개최지
지방대회	1. 18(월)~2. 5(금)	4. 7(수)~4. 12(월)	16개 시·도
전국대회	5. 10(월)~5. 14(금)	9. 7(화)~9. 13(월)	인천광역시

3. 지방 및 전국대회 경기직종 (56직종)

분 과	직종수	경 기 직 종 명
기 계	10	폴리메카닉스, 금형, <u>시계수리</u> , 기계설계/CAD, CNC/밀링, CNC/선반, 자동차정비, 농업기계정비, 메카트로닉스, 냉동기술
금 속	7	용접, 원형, 주조, 자동차차체수리, 판금, 배관, 자동차페인팅
전 기 전 자 정 보	12	공업전자기기, <u>통신설비</u> , 옥내제어, 동력제어, 전기기기, <u>컴퓨터제어</u> , 정보기술, 웹디자인, 컴퓨터정보통신, 모바일로보틱스, 통신망분배기술, 게임개발
건 축 목 재	8	조적, 미장, 타일, 가구, 실내장식, 목공, 건축설계/CAD, <u>장식미술</u>
공 예	10	석공예, 귀금속공예, 보석가공, 목공예, 도자기, <u>자수</u> , <u>나전칠기</u> , 그래픽디자인, 애니메이션, 제품디자인
미 예	9	화훼장식, <u>양복</u> , 헤어디자인, 의상디자인, <u>기계편물</u> , 한복, 요리, 제과제빵, 피부미용

\* 굵게 밑줄 친 시계수리, 통신설비, 컴퓨터제어, 장식미술, 나전칠기, 자수, 양복, 기계편물 등 8개 직종은 2010년까지만 개최하고 2011년부터 폐지되는 직종임

# 고용평등정책관실





= 목 차 =

1.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고용안정 및 제도보완 .....	131
2. 차별시정제도의 조기 정착 여건 조성 .....	133
3. 기간제·단시간 및 파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강화 .....	135
4. 기회균등과 차별개선 .....	139
4-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의 실효성 확보(본부, 지방) .....	139
4-2. 고용상 차별개선 등 고용환경 개선 .....	143
4-3. 직장내(고객 등) 성희롱 예방 .....	145
4-4. 성희롱 사건 전담감독관 전문성 강화 교육(본부) .....	147
5.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	148
5-1.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정착(본부, 지방) .....	148
5-2.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지원제도 개선(본부) .....	149
5-3. 모성보호급여(산전휴가·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방지 .....	150
5-4.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	152
6. 여성일자리 창출 .....	155
6-1. 단시간근로 일자리 창출(본부, 지방,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	155
6-2. 돌봄노동 공식 부문화 추진 (본부) .....	156
6-3. 실직여성가장 창업점포지원(본부, 근로복지공단) .....	157

<b>7. 여성직업능력개발과 취업촉진</b> .....	<b>158</b>
7-1. 여성유망직종 훈련과정 확대(본부) .....	158
7-2. 여성가장 실업자 취업훈련(본부, 지방) .....	160
7-3. 경력단절 여성고용 촉진(본부, 지방) .....	161
7-4. 여성고용촉진컨설팅(본부,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	162
7-5. 여성근로자 고용촉진 지원(본부, 지방) .....	163
<b>8. 남녀고용평등 의식의 확산</b> .....	<b>164</b>
8-1. 제10회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 운영(본부, 지방) .....	164
8-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유공자 표창(본부, 지방) .....	165
8-3.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 홍보(본부, 지방) .....	167
<b>9. 남녀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 확보</b> .....	<b>168</b>
9-1.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 내실화 .....	168
9-2.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지원(본부, 지방) .....	169
9-3.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실태 지도·점검(본부, 지방) .....	170
9-4. 고용평등업무 및 여성고용 지원사업 담당자 연찬회(본부) .....	172
<b>10.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b> .....	<b>173</b>
<b>11.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서비스 확대</b> .....	<b>175</b>
11-1. 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 사업 실시 .....	175
11-2. 실버채용박람회 개최(본부, 지방) .....	177
11-3. 고령자인재은행의 취업지원 기능강화(본부, 지방) .....	178
11-4.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취업지원(본부, 지방) .....	180

<b>12. 임금피크제 확산 및 연령차별금지 안착</b> .....	<b>182</b>
12-1. 임금피크제 확산(본부, 지방,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	182
12-2.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제도의 실효성 강화(본부, 지방) .....	185
<b>13. 고령자고용지원 강화</b> .....	<b>186</b>
13-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속시행(지방) .....	186
13-2.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 및 정년연장 지도(본부, 지방) .....	188
13-3. 준·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고용지도 .....	189
13-4. 실직고령자 「자영업창업지원사업」(근로복지공단) .....	190
<b>14. 고령자 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작업환경 개선</b> .....	<b>191</b>
14-1. 「Age Campaign」 실시(본부, 지방) .....	191
14-2. 고령자 친화적 작업환경 개선(본부, 장애인공단) .....	192
<b>15.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b> .....	<b>193</b>
15-1. 장애인고용의무이행강화(지방, 장애인공단) .....	193
15-2.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본부, 장애인공단) .....	195
15-3.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본부, 장애인공단) .....	196
15-4.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대회 개최 준비(본부, 장애인공단) .....	197
<b>16.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본부, 장애인공단)</b> .....	<b>198</b>
<b>17.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예방 점검(지방, 장애인공단)</b> .....	<b>200</b>



# 1.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고용안정 및 제도보완

## 가. 목 적

-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직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통계 신설을 통해 노동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실시하고, 제도개선 방안 모색

## 나. 세부추진 계획

### (1)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추진(본부, 지방)

#### ○ 정규직 전환 지도

- 노동정책 설명회 등을 통해 근속기간 2년이 도래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권장
  - 2년 근속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지도하고, 부당해고 구제 제도를 통해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조치
  - 임금인상·근로조건 향상 등 진정한 의미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임금·직무 재설계 등 컨설팅 비용 지원
- \*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인사관리체계 개선, 비정규직 능력개발 프로그램 구축, 임금직무 재설계, 조직문화 개선 등

#### ○ 실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 실직된 기간제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신속 지급
- 실직자의 성·연령·학력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지원
- 직업훈련계좌 발급 및 다양한 훈련프로그램 지원

## (2) 기간제법 등 제도개선 방안 모색(본부 및 지방)

### ○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노동시장 모니터링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통계 신설 등을 통해 기간제법의 효과 및 정확한 기간제근로자 규모·실태·이동경로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실시

### ○ 노동시장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추진

- 기간제법 등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 합리적인 기간제한 방안 모색,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부담 완화, 차별시정 신청기간 등에 대한 보완방안 등

## 다. 행정사항

### ○ 교육자료 배포, 질의회시집 등 발간·배포(본부)

### ○ 지방노동청(지청)별로 기간제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을 중심으로 기간제법 설명회 개최(노동정책 설명회시 포함) 및 결과보고

- 정규직 전환지도(정규직 전환 우수사례 포함) 및 고용서비스 지원 실적 등을 본부에 보고(분기별)

### ○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노동시장 모니터링 결과 공표(본부)

- 기간제법 제도개선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및 노사단체 등에 대한 의견수렴(지방)

담당 : 고용차별개선정책과 4급 조오현 6급 김은경 ☎ 02-2110-7407, 7405

## 2. 차별시정제도의 조기 정착 여건 조성

### 가. 목 적

- 차별시정제도의 조기 정착을 통한 기간제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교육·홍보 및 행정지도 강화

### 나. 세부추진 계획

#### (1) 차별시정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율점검 실시(본부, 지방)

- 차별시정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사업주의 차별개선 인식을 유도하고 차별을 사전에 예방
  - 취업규칙 등 점검을 통해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한 명백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 확인 및 시정지도
  -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준수 여부 및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서면 근로계약 체결 등 중점 점검

#### (2) 차별시정제도 설명회 개최 등 교육·홍보실시(본부, 지방)

- 차별시정제도 안내 및 사업장 교육
  - 100인 미만 사업장 인사 담당자 중심으로 교육 실시
    - \* 지역 업종별 협회 등과 연계, 교육 실시
  - 노동위원회 및 공인노무사 협회 등과 연계하여 차별시정제도 설명회 개최
    - \* 차별시정신청 요건 및 차별시정 주요 사건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차별시정제도 중점 홍보 실시
  - \* 홍보 동영상 제작·배포, 지하철, 버스 등 홍보 매체 활용



### (3) 차별시정제도 개선 추진(본부, 노동위원회)

- 사업체 차별실태조사('09.10월~12월) 등을 바탕으로 차별시정 제도 개선 방안 강구
  - 행정절차·지침 보완 등을 통해 차별시정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개선
  -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부담 완화, 차별시정 신청기간 등에 대한 보완 추진

#### 다. 행정사항

- 차별시정 체크리스트 보완, 지방관서에 배포(본부)
  - 차별시정 안내 브로셔 및 교육자료 배포
- 차별시정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사업장 지도(지방)
  - 차별시정 우수사례 등을 본부에 보고(수시)
- 지역특성에 적합한 설명회 및 자체홍보계획 수립 시행(지방)
  - \* 노동위원회 및 공인노무사 협회 등과 연계하여 교육·홍보
- 차별시정제도 개선관련 본부-중앙노동위원회 정례 협의(본부)
  - 필요시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지방관서 협조)

담당 : 고용차별개선정책과 5급 강검윤 7급 박인혜 ☎ 02-2110-7401, 7411

### 3. 기간제·단시간 및 파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강화

#### 가. 목 적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 파견사업체·사용사업체 점검 내실화 및 무허가파견 업체 집중 단속을 통한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 사업장감독 강화를 통해 사내하도급을 중심으로 한 도급사업의 적법한 운영과 불법파견 소지 제거

#### 나. 세부추진 계획

##### (1)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점검 (본부·지방)

- “사업장감독 종합시행계획”에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점검 관련 내용 포함·시달
  - 구체적 점검대상·시기·방법 등은 관서별 비정규직 현황 및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시행
-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휴일·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
  - 아울러 기간제법상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부과 대상(근로감독관집무규정의 조치대상) 항목에 대하여 점검
- 기간제법상 조치대상 이외의 부분(차별시정 등)에 대하여는 「노동행정종합컨설팅」 수행시 컨설팅 내용에 포함

## (2) 파견·사용사업체 점검 (지방)

- 파견·사용사업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허가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되,
  - 파견사업체는 연1회 이상, 사용사업체는 파견사업체 당 1개소 이상이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되도록 점검계획 수립
    - \*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인증제’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사업체에 대하여는 인증된 다음 연도로부터 3년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
- 근로자파견업무 해당 여부, 근로자파견기간 준수 여부,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
- 파견법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제출 기한(매 반기 다음달 10일)을 엄수토록 지도
  -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파견·사용사업체 관리와 근로자 파견사업 현황자료 내실화 도모

## (3) 무허가파견 집중 단속 (지방)

- 무허가파견은 근로자파견·근로자공급·직업소개 등의 복합적인 형태를 띠면서 파견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허가받은 업체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주는 문제를 야기
-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무허가업체를 파악하고 단속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되 ‘10. 4월을 『무허가 파견업체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여 점검 추진
  - \* 고용보험에 인력공급 업체로 등록된 업체, 생활정보지 구인란, 피해 근로자 신고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무허가 업체 파악
  - 각 지방관서는 무허가파견에 대한 철저한 단속의지를 수시로 관내 파견·사용사업체에 전달
  - 무허가파견을 적발한 경우,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무허가 근로자공급 또는 직업소개 위반 등 직업안정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 조치

#### (4) 도급사업의 적법한 운영 지도 (지방)

- 사내하도급·용역사업장을 중심으로 도급사업의 적법한 운영과 불법파견 소지 제거를 위한 사업장감독을 강화
  - 본부의 사내하도급 관련 감독계획에 따라 지방관서별로 점검 대상·시기 등을 결정하되 가능한 '10. 6월 중에 집중점검 추진
-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07.4.19)을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파견' 여부를 면밀히 검토·처리하고
  - 아울러 동 지침에 따른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기업 스스로 불법파견 소지 등을 진단·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
  - \* 『파견·도급 구별 참고자료』(고용차별개선정책과-1091, 2009.8.17)참조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사업장 점검 요령, 불법파견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주요판례 등)
- 근로자파견 관련 노사동향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사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 판례 등 주요 정보는 수집·보고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조치

#### 다. 행정사항 (본부·지방)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다수고용사업체와 파견·사용사업체 점검은 본부의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지방관서 실정에 맞게 자체 계획 수립하여 시행(지방)
  - \* 상황에 따라 본부에서 세부추진사항에 대해 별도 시달 예정
- 무허가파견 및 사내하도급 관련 점검목표 및 일정 등 세부 추진계획은 '10. 2월중 별도 시달 예정(본부)

- 업무 담당자 교체, 신규 직원 발령 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점검지침, 개정 파견법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지도 역량 강화(지방)

\* 근로자파견업무 담당자에 대하여는 잦은 인사관리를 지양하는 등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인사관리 측면의 배려가 필요

—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주요 업무 > —

- ① 기간제법의 적용범위 지도
  -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적용 지도
  -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기간제법 일부조항 적용 지도
- ②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지도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 2년 초과사용시의 해고제한 등
  - 건설공사, 고령자 등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지도
- ③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지도
  - 단시간근로자의 1주 12시간 내 초과근로 지도
- ④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의 차별 금지 지도
  -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처우 금지 지도
  - 노동위원회에 대한 차별 시정신청 등 구제절차 이행 지도
  -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이행(차별적 행위 중지, 근로조건 개선명령, 금전보상 등) 지도
  - 차별처우 시정명령 및 이행상황 제출요구 불이행, 차별처우 시정관련 불이익처분(시정신청, 시정신청 관련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시정명령 불이행 신고, 법·시행령 위반사실 통고)에 대한 사법처리
- ⑤ 차별시정 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임금 그 외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명시 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담당 : 고용차별개선정책과 5급 정진국, 6급 김은경 ☎ 02-2110-7410, 7405  
5급 최진철 6급 김창환 ☎ 02-2110-7410, 7408

## 4. 기회균등과 차별개선

### 4-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의 실효성 확보(본부, 지방)

#### 가. 목 적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고용상 차별 해소·여성 고용의 질 제고 등 여성고용촉진

#### 나. 사업내용

- 기업의 여성고용수준 평가 및 고용평등에 관한 연구, 조사, 교육, 홍보 등의 업무

#### 다. 추진방법

##### <1> 적극적고용개선조치 통계의 신뢰성 확보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적용누락 방지를 위한 신규 사업장 발굴 ('09.12월~'10.1월)
  - 적용대상기업, 산업분류, 관리자, 근로자 현황 등에 대한 제출 자료 확인(2~3월)
  - 남녀근로자 현황 통계자료의 통계 오류 조사를 통한 신뢰성 확보(4~5월)
    - 남녀근로자현황 제출 사업장중 산업분류, 관리자 수 등이 의심스러운 사업장을 선정하여 조사 실시
- ※ 조사결과 허위사실 발견 시 과태료 부과 등 의법조치

##### <2>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제도이해 제고 및 인식개선 사업 전개

- AA적용대상 사업장 인사노무 담당자 설명회 개최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개요와 매뉴얼 활용방법, 남녀 근로자 현황 부실작성 예방 및 인식개선 등 설명(2월)

- 2010년 시행계획서 및 2011년 이행실적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 인사·노무담당자 대상 시행계획서 및 이행실적보고서 작성요령, AA-net 활용 방법 등 설명(2월)
- 지방노동관서 AA 담당자 워크숍 개최
  - 지방노동청(지청) AA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동 제도개요 및 업무매뉴얼 등 설명 (2월)
- 간담회 개최
  - 중앙노사단체 및 여성단체 간담회 실시(4월, 10월)
  - 우리부 산하기관 인사담당 임원 간담회 개최(9~10월)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이행 부진기업 사업주 간담회 개최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인식개선 사업 전개
  - 관내 사업장 CEO 및 인사담당 임원, 노동조합간부, 지역 노·사 단체·전문가,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인식개선 사업 전개
    - ※ 방문지도, 간담회·설명회 개최, 홍보캠페인 전개 등 지방관서 실정에 따라 추진
- AA-NET 개편 및 매뉴얼 적극 활용(연중)
  - 시행계획서의 서식 단순화 및 이행실적보고서의 자동연계 구축 등 전산시스템 적용·활용
  - 남녀근로자현황, 시행계획서/이행실적보고서 활용을 위한 애니메이션 교육 프로그램 보급·활용

### <3> AA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 인센티브 강화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 조세감면 추진(기획재정부 협의)
  - 공공기관 평가시 AA 제도 이행평가와 연계 강화(기획재정부 협의)
  - 이행실적 우수기업 표창 확대(행정안전부 협의)
- ※ '08년 7개사(국무총리 2, 노동장관 5)→'09년 5개(국무총리 1, 노동부장관 4)→'10년 10개(국무총리 2, 노동부장관 8)확대 협의 추진('10.1월)

- (가칭)여성관리자 리더십 아카데미 개설
  - 여성관리자의 역량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성관리자 리더십 아카데미 실시(분기 1회)
  - 기존에 대규모, 일회성으로 추진하던 여성관리자 워크숍을 소규모로 연중 아카데미\* 형식으로 추진
- \* 대상 : AA적용사업장 여성관리자 20~30명 규모
- 주기 : 분기1회
- 내용 : 여성관리자의 역량진단 및 리더십 함양 등
- 방법 : 업종별, 기업형태별(공공/민간)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지역별 순회실시 검토)

#### <4> 홍보강화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 기업 사례 발굴 및 전파(7~12월)
- CEO 대상 “여성인력 활용과 성과”를 주제로 한 강의 개설
  - CEO 대상 조찬 모임 등에 여성인력과 기업 성과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강의 등을 통해 AA제도 홍보 및 실효성 제고
- 조사 연구사업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활성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과제 수행

#### 라. 추진일정

- 관서별 신규적용대상 사업장 명단 선정보고(1월, 지방)
- 적용사업장 명단 확정 및 근로자현황 제출 안내(2월, 지방)
  - ※ 관리번호 부여 등 적용대상사업장 명단 확정
- 지방관서 담당자 워크숍 개최(2월, 본부)
- AA 적용대상 사업장 관계자 설명회 개최(2월, 본부)
- 시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설명회 개최(2월, 본부)



- 적용대상사업장 남녀근로자 현황 및 '09년 시행계획서 접수(3.31, 지방)
- 남녀근로자 현황 신뢰성 확보를 위한 오류 조사(4~5월, 지방)
- 기업제출 남녀근로자현황자료 분석(6월, 본부)
  - ※ 산업별 여성고용율 및 여성관리자 비율 산정
- '09년 시행계획서 심사·평가(4~5월, 본부)
- 적극적 고용개선위원회 개최(7월, 본부)
- 여성고용기준 미달 사업장 선정 및 시행계획서 제출 요구(8월, 지방)
- AA적용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개최(연중, 지방)

담당 : 여성고용과 5급 조상용, 7급 송보영 ☎ 02-2110-7291, 7298

## 4-2. 고용상 차별개선 등 고용환경 개선

### 4-2-1. 모집·채용 광고상 위법사항 모니터링(본부, 지방)

#### 가. 목 적

- 모집·채용 광고상 위법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직무상 특정성이 필요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상 특정성의 채용을 기피하는 불합리한 고용환경 개선

#### 나. 추진계획

- 점검대상 : 신문, 생활정보지,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 등
- 점검방법 : 지방노동관서 주관, 고용평등상담실과 합동으로 역할 분담하여 모니터링 실시
  - 지방노동관서 :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
  - 고용평등상담실 : 신문, 생활정보지 등

#### 다. 행정사항

- 지방노동관서에서는 관내 고용평등상담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자체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6월)

#### 라. 추진일정

- 「모니터링 세부추진계획」 시달(6월, 본부)
- 지방관서 자체세부추진계획 수립, 모니터링 실시(7월, 본부)
- 모니터링 실적보고(8.10까지 보고, 지방)
- 분석 및 보도자료 배포(8월, 본부)

담당 : 여성고용과 5급 임종환, 6급 송희국 ☎ 02-2110-7288, 7297

## 4-2-2. 표준이력서와 표준면접가이드라인 확대 보급 및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체크리스트 개발·보급(본부, 지방)

### 가. 목 적

- 면접단계에서 여성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면접위원의 공정한 구성, 외모에 관한 불필요한 언급 금지 및 남녀 차별적인 질문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표준면접가이드라인」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보급

### 나. 추진방향

- 「표준면접가이드라인」을 공공기관과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대기업에 보급하여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여성채용관행 개선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공공기관과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대기업에 보급하여 기업 스스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의 적용여부를 점검 및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

### 다. 추진일정

#### <표준면접가이드라인>

- 1,000인 이상 사업장 활용도 조사(~4월, 본부)
- 노동계, 경영계 등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5월, 본부)
-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 확대·보급(6월, 지방)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체크리스트>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체크리스트에 대해 지방관서 및 전문가 의견수렴(~5월, 본부)
-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 확대·보급(6월, 지방)

담당 : 여성고용과 5급 임종환, 6급 송희국 ☎ 02-2110-7288, 7297

### 4-3. 직장내(고객 등) 성희롱 예방

#### 4-3-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 및 확인점검(본부, 지방)

##### 가. 목 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사업주는 연1회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동 법률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율점검 및 확인점검 실시

##### 나. 추진계획

- 점검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중 지방관서에서 자율적으로 선정
  - \* 확인점검은 10% 이상 반드시 실시토록 명시<필요시 지방관서 기관 평가 항목에 반영>
- 점검방법 : 사업장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고, 법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자율개선계획서 제출 및 자율개선

##### 다. 추진일정

- 직장내 성희롱 예방 자율점검 및 홍보계획 시달(2월, 본부)
- 지방관서별 계획수립, 점검안내 및 홍보(3월, 지방)
- 자율점검표 수거 및 개선지도(3~5월, 지방)
- 실적보고 등(6월, 지방→본부)

담당 : 여성고용과 5급 임종환, 6급 송희국 ☎ 02-2110-7288, 7297

#### 4-3-2. 성희롱 예방 홍보(본부, 지방)

##### 가. 목 적

- 직장내 성희롱 예방 홍보를 통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 분위기 확산 및 인식 전환을 유도하여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 나. 홍보전략

- TV, 라디오, 동영상 및 팸플렛 제작 등을 턴키홍보 방식으로 추진

##### 다. 추진일정

- 턴키홍보 사업체 계약(~3월, 본부)
  - ※ 홍보시기 : 연중
  - ※ 홍보방법 : tv, 라디오, 지하철, 팸플렛 제작 등
- 지방노동관서, 사업주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자체 홍보계획 수립 시행

담당 : 여성고용과 5급 임종환, 6급 송희국 ☎ 02-2110-7288, 7297

#### 4-4. 성희롱 사건 전담감독관 전문성 강화 교육(본부)

##### 가. 목 적

- 성희롱 사건 전담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추진 역량 강화

##### 나. 교육대상 및 내용

- 대상 : 성희롱 사건 전담 감독관
- 내용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도점검, 신고사건 처리요령 등 관련 업무 전반

##### 다. 행정사항

- 교육대상자를 교육계와 협의(1월)하여 성희롱 업무 담당자로 한정

##### 라. 추진일정

- 교육시기 : '10년 5월<교육계 및 노동행정연수원과 협의 필요>
- 교육장소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동행정연수원

담당 : 여성고용과 5급 임종환, 6급 송희국 ☎ 02-2110-7288, 7297

## 5.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 5-1.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정착(본부, 지방)

#### 가. 목 적

- 사업장 현장점검, 사업주·근로자에게 적극적 홍보를 통해 산전후휴가·육아휴직제도의 현장 정착

#### 나. 사업내용

- 중소기업 등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산전후휴가·육아휴직을 활용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은 적극 발굴하여 필요시 제도개선 추진
  - 사업장을 방문하여 활용 노하우 및 미활용 사유 및 문제점 파악, 건의사항 수렴 등
- 또한, 사업주·근로자들이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내용별 중점 홍보대상을 정하고 홍보대상별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 채택

#### 다. 추진일정

- 사업장 현장점검
  - 현장점검 점검항목 등 현장지도 매뉴얼 작성('10.2월, 본부)
  - 지방관서 담당자 현장점검 실시('10.3월, 지방)
  - 현장지도 결과 분석('10.4월, 본부)
  - 제도개선 추진('10.4월~12월, 본부)
- 지원제도 홍보
  - 턴키홍보업체 선정('10.2월, 본부)
  - 홍보전략 수립('10.3월, 본부·턴키홍보업체)
  - 홍보 실시('10.4월~12월, 턴키홍보업체)

담당 : 여성고용과 4급 최상운, 7급 임세영 ☎ 02-2110-7294, 7296

## 5-2.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지원제도 개선(본부)

### 가. 목 적

-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지원제도의 사회분담 확대 및 고용 유발효과 제고

### 나. 사업내용

- 산전후휴가는 근로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출산 정책과 연계된 문제이므로 일반회계 등 재원분담의 확대 추진
- 육아휴직 후 복귀율을 높이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확대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다. 추진방법

- 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재원 확보방안(사회화 확대 포함) 등 제도개선을 위한 TF 구성·운영 및 연구용역 실시
- 세미나 개최 및 관련법령 개정

### 라. 추진일정

- 제도개선 TF 구성·운영('10.1월~6월, 본부)
- 연구용역 실시('10.1월~6월, 본부)
- 세미나 개최('10.5월, 본부)
- 관련법령 개정('10.7월~12월, 본부)

담당 : 여성고용과 4급 최상운, 7급 임세영 ☎ 02-2110-7294, 7296



### 5-3. 모성보호급여(산전휴가·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방지

#### 가. 목 적

- 모성보호 급여의 부정수급을 예방하여 모성보호급여 사업의 내실화 도모

#### 나. 추진방법

- 산전후휴가자·육아휴직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이해부족으로 부정수급자가 되는 것을 방지(본부, 지방)

\*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예방·적발요령 지침 시달(본부), 부정수급 안내 강화 및 급여 신청 시 사전교육 철저(지방)

- 사업주 설명회 및 모성보호급여 지급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 안내 및 자진신고 유도(지방)

-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점검활동 강화(본부, 지방)

\* 추진체계 : 본부 세부시행지침 시달 → 고용지원센터별 자체계획 수립 → 현지실사 및 결과 보고(지방) → 결과 분석(본부)

- 부정수급 의심사업체에 대한 “샘플링을 통한 상·하반기 현지실사 세부추진지침”시달(본부), 지방관서에서는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결과 보고(지방)

※ 대상선정기준 : ①과거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한 사업장 ②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수급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③모성보호급여 중복수혜 의심사업장, ④기타 10인 이하 영세사업장중 여성근로자 3인 이하 사업장 등

- 고용보험전산망의 자동경보시스템 경보사항 철저 대응(지방)

\* 동종업종·지역의 기준임금에 비해 통상임금이 과다하게 높은 자, 휴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납부가 계속 이루어진 경우(조기복직 가능성), 사업장 소멸신고 및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소급하여 이루어진 경우 등에 대해서는 현지출장, 출석요구, 면담조사, 직장동료, 관계자 유선전화 등으로 확인조사 철저

## 다. 추진일정

-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관련 매뉴얼 마련('10.1~2월, 본부)
  - \*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적발사례, 부정수급 시 제재 조치 등 포함
- 부정수급 예방점검 세부추진지침 수립·시달('10.1~2월, 본부)
- 부정수급 의심사업장 현지실사 : 상·하반기(년 2회, 지방)
- 결과 보고 등(매반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 지방→본부)

담당 : 여성고용과 4급 최상운, 7급 임세영 ☎ 02-2110-7294, 7296

## 5-4.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 가. 목적

-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여성고용을 촉진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 나.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직장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또는 사업주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단체
- 지원내용
  - 직장보육시설 설치 비용 무상지원 및 용자 지원
    - \* 시설전환비(무상지원) 사업주 2억원, 사업주단체 5억원(공동설치)  
유구비품비 3천만원(교체비는 3년 경과시 지원)
    - \* 용자지원금 7억원, 우선지원대상기업 1%, 대기업 2%
  -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 보육교사 등 1인당 월 80만원

### 다. 추진계획

#### (1)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 직장보육시설 확충

- 보육수요가 많고 지역주민의 이용이 많은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 소규모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보육아동 정원의 일부를 지역주민 및 인근 중소기업근로자에게 개방
- '10.1분기 해당기관에 대한 보육수요 조사 실시(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협의)
- 우리부 지방노동관서에 대한 보육수요 조사 실시 후 예산반영 추진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보육수요 파악, 본사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
  - \* 주요 대상사업장 : 주택공사 등 10대 공기업, KT, 서울메트로 등
- 우리부 산하 공단에서 적극적인 설치방안 강구하여 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설치가능 공기업 등에 설치방법 지원, 지원규모 결정
  - \*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를 통한 밀착 지원(연중)

## (2) 민간기업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

-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 운영 지원 확대
  - \* 시설전환비 예산총액 : 27억원('09) → 189억원('10)
- 대-중소기업 연계형 직장보육시설 확충
  - 원 · 하청 기업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지도(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협조)
  - \* 원 · 하청 거래가 높은 업종(예) : 자동차, 기계장비, IT, 의복 · 모피제조업 등
  -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1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지원요건 적용(설치비 소요비용의 80% 무상지원, 1% 용자이율)
  - 대기업 주도로 설치, 협력업체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 (3) 직장보육시설 설치 · 운영 지원서비스 강화

- 본부, 지방관서,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시설 지원센터의 역할 분담을 구체화하여 전문적 · 체계적 지원
  - 체계적 홍보 및 지원을 위해 6개청에 TF팀 설치 · 운영
- 직장보육시설 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 '10.1월 직장보육지원센터 서울분소 신설(인력증원 4명)
  - 직장보육시설 규모별 설치 · 운영매뉴얼,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 라. 행정사항

-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대상 사업장 현황 및 보육시설 의무 이행 실태 파악 : 매반기 익월 20일까지(지방)
  - \* 실태조사양식 별도 송부
- 국고보조 직장보육시설 운영 관리 : 연중(지방)
  - 매 분기별 운영현황 관리
  -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시 본부 보고 후, 연도말 익월 20일까지 재산처분상황 보고
    - \* 직장보육시설 설립 운영지침('98.11), 국고보조 직장보육시설 운영 현황 보고에 따른 조치사항(여성고용과-1546, '09.4.30)에 의거 처리
-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 1월(공단)

## 마. 추진일정

-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조직 확대 및 홍보자료 제작·배포('10.1~2)
- 직장보육시설 지원제도 홍보·교육 : 연중(본부, 지방, 공단)
- 공공부문 관계기관 협의 및 수요조사 실시('10.1~3)
-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계획」 시달 및 6개청에 TF팀 설치('10.1)
- 직장보육시설 설치지도, 수요조사 및 지원 : 연중(지방, 공단)
- 직장보육시설 확충사업 중간점검 실시('10.7)
- 우리부, 관서별 직장보육시설 설치 수요조사 실시('10.1)

담당 : 여성고용과 4급 곽희경, 6급 박태영 ☎ 02-2110-9293, 7317

## 6. 여성일자리 창출

### 6-1. 단시간근로 일자리 창출(본부, 지방,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 가. 목 적

- 사업장에서 직무재설계, 일자리나누기 등을 통해 단시간근로 일자리를 창출토록 지원하여 여성 등 취업애로계층의 경제 활동참여 제고

#### 나. 사업내용

- 단시간근로 적합직무 발굴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본부)
- 사업주가 일자리나누기, 직무재설계 등을 통해 단시간근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컨설팅 지원(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 단시간근로일자리창출컨설팅을 받은 기업이 상용직 단시간근로자 신규고용시 소요비용 일부 지원 및 단시간근로 우수사례 등 전파(고용지원센터)
- 단시간근로일자리창출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 발굴·홍보, 업무매뉴얼 제작·확산(본부,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 다. 추진일정

- 컨설팅 공모 및 대상사업장 선정 : 1~2월
- 선정 기업 컨설팅 추진 : 2월~12월(상반기 집중실시)
- 컨설팅결과 상용직 단시간근로자 채용기업 비용 지원 : 3월~
- 컨설팅결과 우수사례 발굴·홍보 및 매뉴얼 제작 : 7월~
-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12월

담당 : 여성고용과 4급 곽희경, 6급 박태영 ☎ 02-2110-7293, 7317

## 6-2. 돌봄노동 공식 부문화 추진 (본부)

### 가. 목적

- 돌봄노동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핵심영역으로 자리매김 되고, 여성이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로서 여성 경제활동참가를 촉진시킬 수 있는 분야로 인식
- 그러나, 돌봄노동시장이 공식·비공식부문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열악한 취업여건 등으로 여성단체 중심으로 개선을 요구
- 향후 인구의 노령화, 가족형태의 변화, 인구의 이동성 확대 등으로 유급 돌봄노동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할 전망
  - 돌봄노동의 공식부문화 또는 노동법적 보호방안 검토 필요

### 나. 사업내용

#### 1) 취업여건 개선(양질의 일자리화)

- (업무표준화) 돌봄노동의 분야별로 업무의 내용 및 범위,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직무의 표준화
- (자격제도화) 돌봄노동의 분야별로 자격인증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자격등급별 표준화된 인력양성, 취업연계
- (사회적기업) 비공식 돌봄노동을 공식부문으로 전환하도록 사회적기업 설립을 유도·지원

#### 2) 노동법상 지위보장

- 근로자성, 노동법상 지위, 사회보험 적용방안 검토

#### 3) 가이드라인 설정

- 노동법적 보호 이전의 단계로서 근로여건 및 노동관련 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담당 : 여성고용과 5급 임종환

☎ 02-2110-7288

### 6-3 실직여성가장 창업점포지원(본부, 근로복지공단)

#### 가. 목 적

- 담보·보증여력이 부족하고 취업이 어려운 실직여성가장에게 생계형 창업점포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자영업을 통한 자립기반 기회 제공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나. 사업내용(근로복지공단 위탁사업)

- 지원방법 : 실직여성가장에게 최대 7천만원 한도의 창업점포 임대보증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
- 지원조건 : 1~2년 단위계약으로 최장 6년간 지원, 점포지원금에 대하여 연리 3%의 이자 매월납부
- 사업규모 : 22억원

#### 다. 추진일정

- '10년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 : 1월중(공단)
- 창업지원 신청서 접수 및 선발 : 2월, 7월(총2회)
- 실전창업 및 자신감 향상 교육실시 : 4월, 8월
- 창업운영자에 대한 경영개선교육 실시 : 7~11월
- 사업부진 창업자에 대한 창업전문컨설팅 지원 : 4~11월
- 사업성과 및 창업운영자 욕구에 대한 설문조사 : 9월
- 창업지원 유관기관 지원네트워크 구축 : 연중

담당 : 여성고용과 5급 조상용, 7급 송보영 ☎ 02-2110-7291, 7298



## 7. 여성직업능력개발과 취업촉진

### 7-1. 여성유망직종 훈련과정 확대(본부)

#### 가. 목 적

- 여성유망직종 훈련과정 확대를 통한 새로운 영역의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나. 사업내용

- 여성에게 적합한 훈련과정 개발 표준(안)을 여성훈련기관에 보급하고, 보다 많은 여성적합 훈련과정 공급

#### 다. 추진방법

##### <1> 사회서비스분야의 훈련과정 공급확대

- 사회서비스 분야는 특히 여성에 대한 인력수요가 많이 요구되는 직종으로 기존 실업자훈련과정으로 진입하지 못한 훈련과정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확대하여 공급
  - 훈련과정의 인정요건이 유연한 계좌제를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훈련과정이 대량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

##### <2> 미래유망직종 훈련과정 공급 확대

- 현재 훈련시장에서 공급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유망한 훈련 과정을 실업자직업훈련과정으로 공급
  - \* 「여성적합 훈련직종 및 훈련과정 개발」 연구용역 결과 활용('09.12월 완료)
- 여성유망직종이나 비용, 시장성 등으로 민간에서 개설되기 어려운 훈련과정에 대하여 전문훈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시범실시로 새로운 직업 형성 유도
  -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확보된 경우 계좌제로 개설

### <3> 여성적합 훈련과정 표준(안) 보급·활용

- 경력단절여성 등에 적합한 훈련과정으로 개발된 표준(안)을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훈련기관에 보급하여 적극 활용토록 지도(상반기)

#### 라. 추진일정

- 여성적합 훈련과정 표준(안) 보급·활용(1월)
- 여성유망 훈련과정 시범실시 방안 마련(4월)

담당 : 여성고용과 5급 조상용, 7급 송보영 ☎ 02-2110-7291, 7298

## 7-2. 여성가장 실업자 취업훈련(본부, 지방)

### 가. 목 적

- 여성가장실업자의 취업능력제고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취업 또는 창업이 용이한 직종 중심으로 훈련 실시

### 나. 사업내용

- 훈련대상
  -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여성
  - 본인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질병·군복무·학교재학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여성
- 훈련과정 : 여성가장의 취업·창업이 용이한 분야

### 다. 추진방법

- 취업률 제고를 위해 훈련기관과 고용지원센터의 연계 강화
  - 구직·구인정보 및 여성가장 훈련생의 구직정보공유 등
  - 여성가장 훈련생에 대한 고용지원센터내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 창업과정을 수강한 여성가장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여성가장 창업점포 지원사업과 연계

### 라. 추진일정

- '10년 상반기 훈련계획 승인 결과보고('10.1월, 지방)
  - ※ 매월 10일까지 훈련실시 상황 및 예산 집행보고
- 고용지원센터와 훈련기관간 연계강화를 위한 간담회 실시 : 3월 이전(지방)

담당 : 여성고용과 5급 조상용, 7급 송보영 ☎ 02-2110-7291, 7298

### 7-3. 경력단절 여성고용 촉진(본부, 지방)

#### 가. 목 적

- 기존의 취업지원 인프라가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로 지정하여
- 주부 등 경력단절여성에게 ▶심층상담 ▶훈련 또는 인턴제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를 연계하는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촉진 도모

\* '09년 72개소 지정, '10년 5개소 지정, '12년까지 총 100개소 지정

#### 나. 사업내용

- 취업의욕 상실 및 자신감이 부족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생애설계, 자신감향상 등 취업의욕 고취·구직기술 향상 등의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 사업규모 : 77개소, 5,762백만원(16,940명)

#### 다. 추진방법

- 집단상담프로그램 연간 사업계획 신청(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사업계획 승인(고용지원센터) → 집단상담프로 대상자 모집 및 운영(여성새로일하기센터) → 분기별 지원금 신청(여성새로일하기센터) → 분기별 지원금 지급(고용지원센터) → 지원금 정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지원센터)

#### 라. 추진일정

- 지방청 및 지자체에 예산배정(1월, 본부)
-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따른 지원금 지급(매분기, 지방)
-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실태 지도·점검(매월, 지방)

담당 : 여성고용과 5급 조상용, 7급 송보영 ☎ 02-2110-7291, 7298

## 7-4. 여성고용촉진컨설팅(본부,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 가. 목 적

- 여성의 고용안정, 능력개발, 단시간근로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고용안정 달성

### 나. 사업내용

- 지원방법 :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위해 고용 관리 및 조직 문화 등에 관한 컨설팅을 받는 사업주에게 그 비용을 지원
- 지원내용
  - 여성고용촉진컨설팅지원 : 컨설팅 소요비용의 80%(5천만원 한도)
  - 단시간근로일자리창출컨설팅지원 : 컨설팅 소요비용의 전액 (15백만원 한도)

### 다. 추진일정

- 여성고용촉진컨설팅 표준 매뉴얼 개발(2월, 본부)
-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2·7월,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 대상사업장 컨설팅 지원(3~12월,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담당 : 여성고용과 4급 광희경, 5급 조상용 ☎ 02-2110-7293, 7291

## 7-5. 여성근로자 고용촉진 지원(본부, 지방)

### 가. 목 적

- 여성가장,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여성의 고용촉진 지원

### 나. 사업내용

#### <1> 여성가장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

- 대상 :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 지원액(인) : 6개월간 월60만원, 이후 6개월간 월30만원 지급

#### <2> 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

- 대상 :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액(인) : 6개월간 월60만원, 이후 6개월간 월30만원 지급  
※ '12년말까지 연장 시행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 추진 중

#### <3>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 대상 : 임신 또는 산전후휴가 중인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 지원액(인) : 유계약의 경우 6개월간 매월 40만원, 무기계약은 최초 6개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 지원요건 “임신 16주 이상 → 임신 중”으로 완화('10.2월 시행예정)

### 다. 추진방법

- 여성가장훈련 수료자를 여성가장 고용촉진장려금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취업알선(지방)
- 각종 회의·간담회시 여성근로자 고용지원사업 적극 홍보(지방)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및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제도 변경 따른 안내 철저(연중, 지방)

담당 : 여성고용과 4급 최상운, 5급 조상용 ☎ 02-2110-7294, 7293

## 8. 남녀고용평등 의식의 확산

### 8-1. 제10회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 운영(본부, 지방)

#### 가. 목 적

- 남녀차별적인 고용관행·제도 등을 개선하고 평등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관심 확산

#### 나. 추진계획

-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 기념식 개최(4.1)  
※ 우수기업(22개사) 및 유공자(17명) 시상
- 국민의식조사, 신문기고,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한 고용평등의식 고취

#### 다. 추진일정

-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 추진계획 시달(2월, 본부)
- 기념식 행사 용역기관 선정(2월, 본부)
- 지방노동관서, 자체 행사계획 수립·보고(3월, 지방)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유공자 확정 및 홍보(2~4월, 본부)
- 일간지 기획기사 등 홍보 및 캠페인(3~4월, 본부)

담당 : 여성고용과 5급 임종환, 6급 송희국 ☎ 02-2110-7288, 7297

## 8-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유공자 표창(본부, 지방)

### 가. 목 적

-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발굴·시상함으로써 기업의 고용평등환경 조성을 장려하고, 남녀고용평등의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산

### 나. 표창 규모 : 39점('09년-35점, 증4점)

( )는 '09년 대비 증감현황

대상별		합계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39(+4)	2	5	9(+2)	23(+2)
개인		17(△1)	2	3	3	9(△1)
단체	계	22(+5)		2	6(+2)	14(+3)
	대기업	6		1	2	3
	중소기업	6		1	2(+1)	3(△1)
	AA 분야	10(+5)			2(+1)	8(+4)

### 다. 추진방법

- 지방관서 선발과 지방청의 추천
- 고용평등 기여도, 수공기간, 일반 국민에의 파급효과 등 공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 민간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 추천

### 라. 추진일정

- 포상신청서 접수(청·지청) : '09.12.1 ~ 12.31
  - ※ 신청자격 확인 및 현지실사 : '10.1.4 ~ 1.6
- 1차 공적심사(6개청) : '10.1.11 ~ 1.13
  - ※ 본부에 선정결과 보고 : '10.1.15
  - ※ 각 청별 추천대상 : 단체 4개소(대기업 2, 중소기업 2), 개인 4~5명



- 예비심사위원회\* 개최
  - ※ 노·사 단체, 여성단체, 언론사, 학계 관계자 등 7명으로 구성
  - 1차심사(서면) : '10.1.18 ~ 1.22
  - 2차심사(사례발표) : '10.1.29
- 추천대상자 공개 검증(본부) : '10.2.2 ~ 2.8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본부) : '10. 2월
- 행정안전부에 추천 : '10.2.19
- 포상실시 : '10.4.1(제10회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 기념식 시)

담당 : 여성고용과 5급 임종환, 6급 송희국 ☎ 02-2110-7288, 7297

### 8-3.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 홍보(본부, 지방)

#### 가. 목 적

-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로 근로자 및 사업주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활용도 제고

#### 나. 중점 홍보사항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모성보호 등 턴키 홍보 추진
  -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확대에 대하여 집중홍보
  - 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등 장려금 제도 홍보

#### 다. 추진일정

- 턴키홍보 실시(본부)
  - 턴키홍보 사업체 계약 : '10. 3월
  - 시 기 : 연중
  - 내 용 :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 방 법 : TV, 라디오 광고, 지하철 광고, 인터넷 UCC 동영상 제작 및 포털 사이트 게재, 핸드북 제작 배포 등
- 지방노동관서별 특성에 적합한 자체홍보계획 수립 시행(지방)

담당 : 여성고용과 4급 최상운, 박희경 ☎ 02-2110-7295, 7293

## 9. 남녀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 확보

### 9-1.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 내실화(본부, 지방)

#### 가. 목 적

-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된 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

※ 위촉대상 : 노사협의회 위원 또는 고충처리위원, 노동조합의 임원 또는 인사·노무 담당부서의 관리자 등

※ 임기 : 3년, 연임 가능

#### 나. 추진계획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간담회 개최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협의회 구성
-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다. 추진일정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간담회 실시(~6월, 지방)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협의회 구성 및 협의회 운영 지원(연중, 지방)
-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 등에 대한 순회교육(9월, 본부)

담당 : 여성고용과 5급 임종환, 6급 송희국 ☎ 02-2110-7288, 7297

## 9-2.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지원(본부, 지방)

### 가. 목 적

- 민간단체의 상담역량을 활용하여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 나. 추진방법

- 상담원 교육 및 우수상담 사례 공유 등 업무관계자 정보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담역량 강화
- 상담실 운영 지도·점검 실시

### 다. 추진일정

- '09년 국고보조금 정산 실시(2월, 지방)  
※ '09년 국고보조금 정산 실시후 2월말까지 본부 보고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활성화 사업 공모(3월, 본부)  
※ 동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차등지원 예산(14백만원) 활용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시(8월, 지방)
- 고용평등상담실 간담회 실시(9월, 본부)
- '11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 대상 선정 계획수립(10월, 본부)
- '11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 대상 선정(12월, 본부)
- 상담원 교육 및 운영 활성화 등 지원 : 연중

담당 : 여성고용과 5급 임종환, 6급 송희국 ☎ 02-2110-7288, 7297

### 9-3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실태 지도·점검(본부, 지방)

#### 가. 목적

- 여성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고용상 성차별 및 모성보호제도 이행확보
  - \* 2010년에는 임신·출산여성의 근무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복직 및 복직 후 근로조건 보장 등에 대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지도

#### 나. 사업내용

- 여성다수고용사업장을 중심으로 임신부 야간·휴일근로 제한, 산전후 휴가, 직장내성희롱, 고용상 차별 등에 대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실시

#### 다. 추진방법

- '10년 사업장감독종합시행계획에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 실태 지도·점검』 관련 내용 포함·시달(본부)
  - \* 점검목표, 점검대상, 점검방법 등에 대한 세부시행계획 시달
- 여성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 및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사업장 등 지방관서별 주관하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자체 계획 수립하여 실시
- 특히 법 준수여부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등 모성보호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본부, 지방)
  - \* 사업장 점검시 모성보호관련 지원제도 안내(안내책자, 리플렛 활용 등)

## 라. 점검사항

- 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제도 이용실태, 수유시간 확보, 직장내 수유시설 등 시설 확보실태, 산전후휴가 이후 육아 휴직으로 이행실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등 이용실태, 모성보호제도 이용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등

## 마. 추진일정

-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실태 지도·점검” 목표 및 점검대상을 “사업장감독 종합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달(1월, 본부)
-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실태 지도·점검” 세부 시행계획 시달(2월, 본부)
- 지방관서는 자체점검계획을 수립·시행(2월~11월, 지방)
- 사업장 지도·감독시 활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제도 관련 홍보물(안내책자, 리플렛 등) 제작 및 시달(1월, 본부)

담당 : 여성고용과 4급 최상운, 7급 임세영 ☎ 02-2110-7294, 7296

#### 9-4. 고용평등업무 및 여성고용 지원사업 담당자 연찬회(본부)

##### 가. 목 적

- 주요정책 및 제도 설명과 업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토의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고용평등 업무 담당자의 업무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

##### 나. 대상 및 내용

- 대상 : 고용평등업무 감독관 및 모성보호, 여성 고용 지원업무 담당자
- 내용 : 고용평등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 의견 수렴
  - 고용상 차별금지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
  -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제도
  - 직장보육시설 및 일·가정 양립지원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 다. 연찬회 개최시기 : '10년 7월

담당 : 여성고용과 5급 박미심, 6급 박태영 ☎ 02-2110-7295, 7317

## 10.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 가. 목 적

-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기본적 근로조건 보호 강화

### 나. 사업내용

#### (1) 연소근로자 보호 지도·점검 (본부·지방)

-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증가하는 겨울·여름방학기간 중 연소자 다수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지도·점검 실시
  - \* 「2010년 사업장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과 연계 시행
- 근로기준법 상의 연소근로자 보호조항을 중심으로 점검하되
  -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게, 근로조건 명시, 연소자증명서 등 그간 지적이 많았던 내용을 반드시 확인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지급(제6조), 주지의무(11조)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 '10.1.1.부터 변경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시급 4,110원) 홍보 및 준수실태 확인·지도를 병행
-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보도자료 배포) 실시
  - \* 점검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함께 특징적인 사례 발굴·보도

#### (2)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홍보·교육 실시 (본부·지방)

- 온라인·오프라인상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및 연소근로자 보호 캠페인 추진
  - 알자알자 캠페인 등 전략적 홍보 추진 및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지방관서별 홍보계획을 수립·추진
  - 전국 또는 지역별 청소년 대상 행사시 연소근로자 보호 캠페인 병행 실시
    - \*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청소년 알바 페스티벌, 지역 청소년 행사 등
- 연소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해관계자(청소년·사업주·학부모·교사 등) 네트워크 구축



- 청소년 다수고용 업종 단체\* 및 학부모단체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소자 근로조건에 대한 교육·안내
  - \* 한국음식업중앙회, PC방 협회 등 알자알자 캠페인 참가단체 등
- 중·고등학교 학생 및 생활지도교사 대상 연소자 근로관련 노동관계법 교육·홍보자료 배포
  - \* 교육과학기술부(본부), 지방교육청·학교(지방관서) 등과 협조·추진

## 다. 추진일정

### (1) 연소근로자 보호 지도·점검 관련

- 겨울·여름방학 연소근로자 보호 지도·점검 계획 수립·시달 ('09.12월, '10.6월, 본부)
- 지방관서별 자체점검계획 수립·실시(1~2월·7~8월, 지방)
- 점검결과 분석·보고(3·9월, 지방) 및 홍보(본부)

### (2) 홍보 및 교육 실시

-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홍보 추진(3~12월, 본부)
  - 전문 홍보대행기관을 통한 '알자알자 캠페인' 및 전략적 홍보실시
    - \* 여름·겨울방학 전후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불법사태가 언론에 이슈화 되는 점을 고려 선제적으로 대응
  - 연소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해관계자(청소년·사업주·학부모·교사 등)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캠페인 전개
- 지방관서별 자체 홍보·교육계획 수립·추진(지방)
  - 관내 청소년 고용사업주 대상으로 교육·홍보 실시
  - 방학 전·후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교육·홍보 실시
    - \* 관내 중·고교 및 지방교육청과 협조
  - 지역 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정기적 간담회 및 공동 캠페인 실시
  - 지방청에서 관할 지청별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본부에 보고(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담당 : 여성고용과 5급 박미심, 6급 박태영 ☎ 02-2110-7295, 7317

## 11.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 11-1. 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 사업 실시

#### 가. 목 적

- 50세 이상 준·고령자에게 직업훈련 및 중소기업에서의 현장 연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분야의 재취업을 촉진
  - 중소기업에는 일할 의욕이 있고 성실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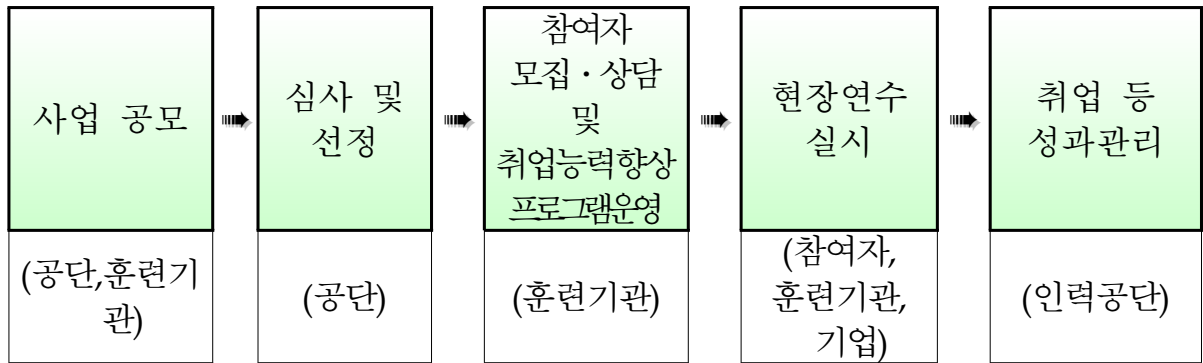
#### 나. 추진방향

-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현장연수의 질적향상을 도모 하면서 참여 중소기업의 고령인력 활용을 촉진 도모
- '09년 위탁·공모방식으로 사업방식을 개편, 추진결과 취업률 등 실적이 상당폭 상승한 점을 고려, '10년에도 한국산업인력 공단에 위탁 운영

#### 다. 사업내용

- 사업규모 : 3,000명/4,651백만원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인력공단(위탁추진)
- 수혜자 및 지원 조건
  - 50세 이상 준·고령 실업자에게 직무훈련 및 현장연수시 연수수당(식비, 교통비) 월 20만원 지원(4개월)
  - 민간훈련기관에 직무훈련비 지원(공모방식으로 참여)
  - 수료후 정규직 취업시 취업처개발비 1인당 20만원 지원

○ 사업추진 체계



라. 향후 일정

- 제도개선 및 시행계획 확정(노동부) : 1월 중
- 사업공고(공단) : 1월말
- 심사 및 선정(공단) : 2월말
- 언론 등 홍보(공단) : 2~3월
- 사업실시 : 3월 ~
- 현장 지도관리 : 분기별
- 우수기관 선정 포상(공단) : 12월

마. 행정사항

- 구직 고령자에게 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 사업 안내
  - 산업인력공단 및 참여직업훈련기관의 현황을 파악하여 고령자에게 제도 안내
  - 직업훈련을 원하는 구직자의 심층상담을 통해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연계 지원
- 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성실프로그램 지원

담당 : 장애인고령자고용과 5급 박중곤 ☎ 02-2110-7312

## 11-2. 실버채용박람회 개최(본부, 지방)

### 가. 목 적

- 준·고령자에 특화된 실버채용박람회 개최 지원을 통해 구인 구직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신속한 현장면접 등 취업기회 부여 및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준·고령자 고용 지원서비스 강화

### 나. 추진계획

- 사업시행주체 : 노동부(고용지원센터)
- 수혜자 : 50세 이상 준·고령자
- 사업집행절차 :
  - 노동부 : 사업계획수립
  - 지방노동관서 및 민간단체 : 사업계획 집행
    - ▲ 민간단체 실버취업박람회 개최 지원 절차 : 사업시행공고 → 지원 대상 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심사)→ 박람회 개최 비용 지원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규모 : 420백만원(70백만원×6개소)

### 다. 행정사항

- 본부 : 사업시행공고(3월)
- 지방관서 : 민간단체 박람회 개최 신청서 접수 및 사전심사
  - \* 채용박람회 시행 공고 시 준·고령자 대상 박람회 개최 신청기관 대상으로 심사, 청별 1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여타 취약계층 박람회와 병행하여 개최 가능
- 민간단체 : 박람회 실적보고는 워크넷을 통해 실시
  - \* 취업여부 확인 후(행사개최 후 3개월 이내) 최종보고 입력(워크넷)
- 기타 행정절차는 채용박람회 추진절차에 준함

담당 : 장애인고령자고용과 7급 이 호 균 ☎ 02-2110-7319

### 11-3. 고령자인재은행의 취업지원 기능강화(본부, 지방)

#### 가. 목 적

- 고령자 취업알선, 직업상담 및 직업소양교육 등을 통해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민간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 고령자인재은행 중 일부를 고령자 상담-훈련-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고용 종합지원센터 기능을 수행하도록 확대 개편

#### 나. 추진계획

- 고령자인재은행 운영의 내실화
  - 고령자인재은행 중 사업운영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지정취소 및 희망단체 신규 지정함으로써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내실화 (지정취소 및 재지정)
  -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목표 : '10년 52개소
  -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고령자 인재은행 운영평가 및 다음연도 운영계획 수립 : '09.12월
- 사업 운영실적에 따른 차등지원 및 지원수준 인상
  - '09년도 운영평가 결과를 반영 기관별 차등지원
  - 고령구직자의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직업능력 개발 훈련과정 운영 등 지원을 위해 월평균 325만원으로 인상
- 고령자인재은행 확대 개편(고령자고용 종합지원센터)
  - '09년도 운영평가 결과 반영 및 신규지정을 통해 고령자 취업지원 성과가 높은 기관을 선정하여 취업알선, 직업정보 제공, 창업지원 및 일자리 개척 등 고령자고용 종합지원센터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 강화
  - '10년 16개소 운영을 통해 점진적 확대 추진('09년8개소→'10년 16개소 → '12년까지 30개소)
  - 지원규모 : 개소당 월평균 925만원 수준

- 고용지원센터와 고령자인재은행간 네트워킹 강화
  - 간담회 개최 및 참석(분기 1회 이상 ), 행사참여, 취업정보 및 직업훈련정보 제공(연간 수시) 등 실시
- 취업알선 업무지도 및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취업실적 제고 : 고용안정정보망을 통한 취업알선 및 상담 지도, 연도중 수시
- 고령자취업지원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 고령자인재은행 취업알선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 고령자 취업지원 업무담당자 교육훈련 실시('10년 3회)
  - 고령자인재은행 워크넷 구인·구직 등록 강화 및 고령자 워크넷 활용 촉진
  - 복지부 시니어클럽(46개소), 대한노인회 노인취업알선센터(248개소), 시·군·구 등 지자체의 고령자취업알선기관 등 유관기관과 상호협조

#### 다. 행정사항

- 고령자인재은행 운영·관리
  - 보조금 교부결정 보고(지방→본부) : '10.1월말
  - 취업알선 현황 보고(지방→본부) : 분기익월 15일
  - 인재은행 운영평가 (지방→본부) : '10.12.20
  - 인재은행 운영기본계획 수립·시달(본부→지방) : '10.12월말
  - 결산 및 연간사업추진실적 보고(지방→본부) : 익년 1.15
- 개정 업무매뉴얼 및 제도 안내 브로셔 제작 배포

담당 : 장애인고령자고용과 7급 이 호 균 ☎ 02-2110-7319

## 11-4.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취업지원(본부, 지방)

### 가. 목 적

- 중견전문인력의 취업알선, 직업상담 및 직업소양교육 등을 통해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민간단체 및 경제단체를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 지정 운영
- '퇴직 전문 인력의 중소기업 재활용'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 관련 제도, 참여기관, 운영방법 등을 체계화

### 나. 추진계획

-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운영기관 확대
  - 현재 2개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사업 추진 능력 및 의지가 있는 기관을 추가적으로 지정하여 퇴직 전문인력을 노동시장에서 적극 활용
  -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운영 목표 : '10년 4개소
- 중견전문인력 종합 고용지원센터 지정·운영
  - 통합 구인·구직 DB 운영, 개별 중견센터 운영지원 등 퇴직 전문 인력의 원활한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 총괄
  - 중견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총괄·통합적 기능 병행
- 수행기능에 따른 운영비 차등 지원 및 지원수준 인상
  - 종합·일반 중견센터로 구분·운영되고 사업비 차등 지원(종합·일반 지원 비율 2:1)
  - 전담인력 확대 및 취업지원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지원수준을 인상('10년도 개소당 평균 244백만원)
- 운영 성과 평가 강화
  - 종합·일반센터 공통 평가지표 및 종합센터에 차별화된 지표를 마련하여 성과평가 강화

- 주기적인 성과평가를 실시 사업목표 달성을 적극 지도하고 미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 이행
- 고용지원센터 및 유관기관간 네트워킹 강화
  - 간담회 개최 및 참석(분기 1회 이상 ), 행사참여, 취업정보 및 직업훈련정보 제공(연간 수시) 등 실시
- 취업알선 업무지도 및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취업실적 제고 : 고용안정정보망을 통한 취업알선 및 상담 지도, 연도중 수시

#### 다. 행정사항

-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운영 · 관리
  - 보조금 교부결정 보고(지방→본부) : '10.1월말
  - 취업알선 현황 보고(지방→본부) : 분기익월 15일
  - 사업운영평가 (지방→본부) : '10.12.20
  - 운영기본계획 수립 · 시달(본부→지방) : '10.12월말
  - 결산 및 연간사업추진실적 보고(지방→본부) : 익년 1.15
- 업무매뉴얼 및 제도 안내 브로셔 제작 배포

담당 : 장애인고령자고용과 7급 이 호 균 ☎ 02-2110-7319



## 12. 임금피크제 확산 및 연령차별금지 안착

### 12-1. 임금피크제 확산(본부, 지방,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 가. 목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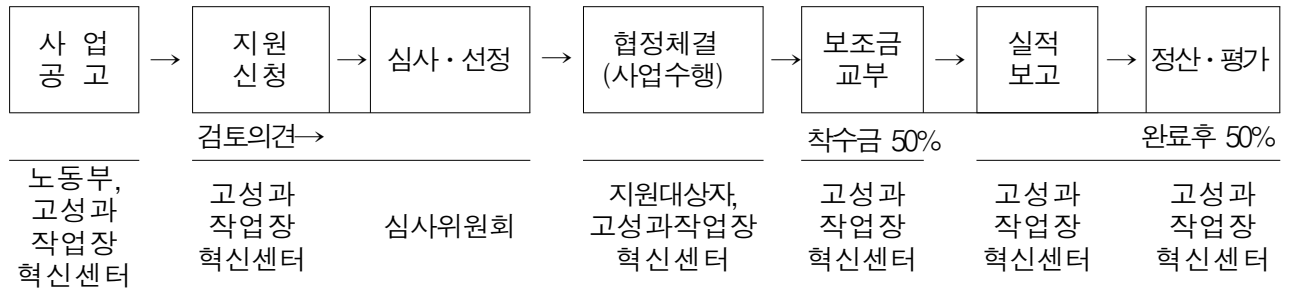
-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을 통해 기업의 연공급적인 임금체계가 성과·직무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여 고령자 고용촉진
  -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 임금이 10% 이상 삭감된 54세 이상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50%를 최대 6년간 지원
  - \*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기업(3천만원 한도)·노사단체(8천만원 한도)에 컨설팅비용의 80% 지원

#### 나. 추진계획

-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원(2,615명, 95억원 지원 목표)
  - 협약임금인상률 등 고시 개정 및 업무처리 전산시스템 개선(10.1월중)
    - \* 감액소득보정을 위한 '09년 임금인상률, 정산지급방법 등 고시
- 임금체계 개선, 직무 재설계 등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노사단체 등에 컨설팅 비용 지원(54개 기업·노사단체 22억원 지원 목표) 한국노동연구원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에 위탁 수행
  - \*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전화 776-9923, 홈페이지 [www.kowincenter.or.kr](http://www.kowincenter.or.kr) [고령자고용안정컨설팅] 참조
- 컨설팅 비용지원
  - '10년 사업계획 수립·공고(10.1월중)
  - 지원업체 선정 및 지원(10.2월~)
- 임금피크제 도입 의사가 있는 100~300인 규모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자문·컨설팅 비용 우선지원 추진 및 임금피크제 도입 실태 주기적 조사 실시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및 고령자고용지원금 관련 고용보험법령 개정('10년)
- 기업대상 제도홍보 강화, 순회 설명회 개최 등('10.2월~)
- 임금피크제보전수당 분기별 실적 분석('10.매분기말)

#### 다. 추진절차



#### 라. 행정사항

-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근로감독관의 관내 사업장 지도·점검시 임금피크제 및 컨설팅비용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 및 대상 사업장 발굴(근로개선지도과)
  - 각 지청별 중점관리 사업장을 선정·시달하고, 분기별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보고하는(매분기말) 등 관서별 집중 관리제(100~300인 규모) 실시('10.1월~)
-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단체협약,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의견 청취,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여부 등 과정상 적법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시 의법 조치(근로개선지도과)
  - \* 지방관서평가지표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근로개선지도과 소관 업무 속지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우선지원대상 기업 지원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대기업 편중 현상 개선 등을 위해 도입 가능 사업장 지속적 발굴·교육 실시(근로개선지도과, 기업지원과)
  - \* 우선지원사업장 비중 : 31.0%('06) → 32.5%('07) → 33.6%('08) → 40.1%('09.11월)

- 특히 기능 인력의 고용연장이 필요한 중소기업에서 임금 피크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보·교육을 강화하여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
  -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 및 컨설팅 지원사업 개선을 통해 지원 확대('09년 33개소 → '10년 54개소), 무료자문서비스 실시, 매뉴얼 보급 등을 추진하는 바,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10.3월 예정),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업무편람,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 일부개정」('10.1월) 내용을 철저히 숙지
  - 지원요건 중 고용보장 연령('06·'07년은 55세 이상, '08년 이후 56세 이상)에 유의하고
  - 특히 전년도 4/4분기 수당지급시 반드시 연간임금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고 그에 따라 반환 또는 차액 추가지급 조치
- 임금피크제 도입 및 직무재설계 등 고령자 고용안정컨설팅 지원 사업 홍보 및 무료자문서비스 지원업체는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에 적극 안내

담당 : 고령자고용과 7급 신용범 ☎ 02-2110-7318

## 12-2.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제도의 실효성 강화(본부, 지방)

### 가. 목 적

-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법률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연령차별금지 법령 및 차별시정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실시로 연령차별 금지제도의 실효성 강화

### 나. 추진계획

- 지방청별로 담당자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 실시('10.3월)
  - 교육내용 : 연령차별금지 법령의 주요내용 및 차별시정제도 등
- 연령차별금지 법률 관련 다각적인 홍보 실시('10년)
  - TV, 라디오, 인터넷, 안내 팜플렛, 보도자료 배포 등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연령차별금지제도 운영 1주년 기념 전문가포럼」 개최('10.3월)
  - 모집·채용에서의 차별금지제도 시행 전·후 효과 분석 등
- 모집·채용 광고상 위법 사항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지방)
  - 모집광고매체(일간지, 지방신문,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의 모집광고를 대상으로 지방청 주관하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중심으로 실시(상, 하반기 2회)

### 다. 행정사항

- 지방청과 협조하여 권역별 교육 준비
    - 업무수행방법, 절차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교육자료 발간
  - 모니터링 결과 조치내용은 노사누리(고용평등 메뉴-모집 채용시 차별금지 위반사업장)에 입력
- \* 교육 및 모니터링의 추진일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지침으로 시달

담당 : 장애인고령자고용과 5급 손은기 ☎ 02-2110-7313

## 13. 고령자고용지원 강화

### 13-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속시행(지방)

#### 가. 목 적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홍보 등을 통해 고령자 고용촉진 도모

#### 나. 추진계획

-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지원('10년 예산 : 251억원)
  -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을 이상 고용한 경우 지원기준을 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 18만원씩 지원
- 정년연장장려금 지원('10년 예산 : 38억원)
  -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에서 18월 이상 근무하고 기존 정년에 도달한 후 정년이 연장된 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정년이 연장된 기간의 1/2 기간동안 지원
-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10년 예산 : 79억원)
  -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계속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원(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간 지원)
-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10년 예산 : 74억원)
  - 고용지원센터 등에 구직신청 후 실업기간이 3개월 (제조업에 채용 등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한 5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 지원센터 등의 알선을 받아 피보험자로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 1인당 최초 6개월은 월 30만원씩 이후 6개월은 월 15만원씩 지원(500인 이하 제조업은 최초 6개월은 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30만원 지원)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상·하반기 실적 분석('10.7월·12월)

#### 다. 행정사항

-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의 신청시 동 장려금의 지급기간 5년임을 적극 안내
  - '09.2월부터 지급기간 5년 만료 사업장 발생
- 정년연장장려금이 산업현장에서 아직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동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적극 유도
- 기 시달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간 상호조정 업무처리 지침」 ('08.3.26) 내용을 철저히 숙지

담당 : 장애인고령자고용과 5급 박중곤 ☎ 02-2110-7312

## 13-2.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 및 정년연장 지도(본부, 지방)

### 가. 목 적

- 고령사회를 맞아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고령자의 기준고용률 이행 및 정년연장 지도를 통한 고령자의 고용확대 도모

### 나. 추진계획

- 기준고용률 미달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지도 실시 : 연중 수시
  - \* 기준고용률 : 제조업 2%, 운수업·부동산 및 임대업 6%, 기타업종 3%
- 정년연령이 평균보다 낮은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지도 실시 : 연중 수시
  - \* 사업주는 정년이 60세 이상 되도록 노력

### 다. 행정사항

- 고령자고용현황 조사 실시 문서 시달(본부→지방) : 1월
-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 독려 및 보고 내용의 오류 여부 등 확인 철저(지방) : 1월~2월
  - \*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 : 1.31까지 제출
- '09년도 고령자 고용현황(정년현황 포함) 조사 보고(지방 → 본부) : 2월
  - \* 고용보험전산망 상의 시스템을 통해 조사결과 입력
- '09년도 고령자 고용현황(정년현황 포함)조사 분석결과 및 정년연장 지도지침 시달(본부→지방) : 5월
- '10년도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 및 정년연장 지도결과 보고(지방→본부) : 11월

담당 : 장애인고령자고용과 6급 박 세 만 ☎ 02-2110-7304

### 13-3. 준·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고용지도(본부, 한국고용정보원)

#### 가. 목 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우선고용직종(47개) 고용 현황을 조사, 준·고령자 채용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하여 명단 공표 등으로 준·고령자 고용 확대 도모

\* 우선고용직종 적용대상 기관('08년 기준 253개소) : 중앙행정기관(43), 지방자치단체(16), 정부투자기관(21), 정부출연기관(132), 교육청(16) 정부출자기관(12), 정부위탁기관(8)

#### 나. 추진계획

- 고용현황 제출 요청<'10.1월초>

\* 제출기한 및 대상 : 1월말, 공공부문 253개소('08년 기준)

- 고용현황 제출 독려 및 집계<'10.1월~3월>

- 고용현황 분석 및 채용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한 실적부진 사유서 제출 요청<'10.4월>(한국고용정보원 분석 협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한 고용확대 요청 <'10.5월>

- 고용확대 실시 결과 및 실적부진 사유 제출 요청 및 수리 <'10.11월>

-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확대 요청을 따르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명단 공표<'10.12월>

담당 : 장애인고령자고용과 6급 박세만 ☎ 02-2110-7304



#### 13-4. 실직고령자 「자영업창업지원사업」(근로복지공단)

##### 가. 목 적

- 보증·담보확보 곤란으로 실업자대부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직고령자에게 점포를 지원함으로써 자영업을 통한 생계 기반 제공 및 고용안정 도모

##### 나. 사업내용(근로복지공단 위탁사업)

- 지원방법 : 실직고령자에게 최대 7천만원 한도의 전·월세 점포 임대 지원
- 지원조건 : 1년 혹은 2년 단위로 최장 6년까지 지원, 연리 3%에 해당하는 임대료 매월 균등 납부
- 목 표 : 실직고령자 34명, 22억원

##### 다. 추진일정

- '10년도 자영업창업지원 사업계획 수립 : 1월(공단 본부)  
\* 매월 10일까지 지원실적 보고(근로복지공단)
- 관련 자격증 소지자, 소정의 창업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실직 전 1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해서 창업을 희망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창업상담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아이템선정, 사업성 분석, 점포선정 및 경영전략 등 창업컨설팅 지속제공 : 연중(공단 지방)

담당 : 장애인고령자고용과 5급 박 중 곤 ☎ 02-2110-7312

## 14. 고령자 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작업환경 개선

### 14-1. 「Age Campaign」 실시(본부, 지방)

#### 가. 목 적

- 고령자고용촉진 관련 정책 및 사업홍보를 강화하여 고령자 고용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년 및 연령차별 등에 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유도

#### 나. 추진계획

- '10년도 Age Campaign 추진계획 수립·시달(본부, 2월)
  - 지방관서별 특성에 맞는 자체 홍보계획 수립(3월)
- 「고령자고용촉진주간」(11월 셋째 주)을 설정하여 고령자고용 우수업체 모범사례 발굴 및 시상 등 집중 홍보활동 전개
  - 「고령자고용 우수기업 포상계획」 지방관서 시달(본부, 5월)

#### 다. 행정사항

- 고령자고용우수업체 발굴·추천(지방, 7월)
- 지역고용대책심의회, 유관기관 또는 관내 사업주 간담회 등을 이용하여 적극 홍보(분기 1회 이상)

담당 : 장애인고령자고용과 5급 손은기 ☎ 02-2110-7313

## 14-2. 고령자 친화적 작업환경 개선(본부, 장애인공단)

### 가. 목적

- 고령자 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융자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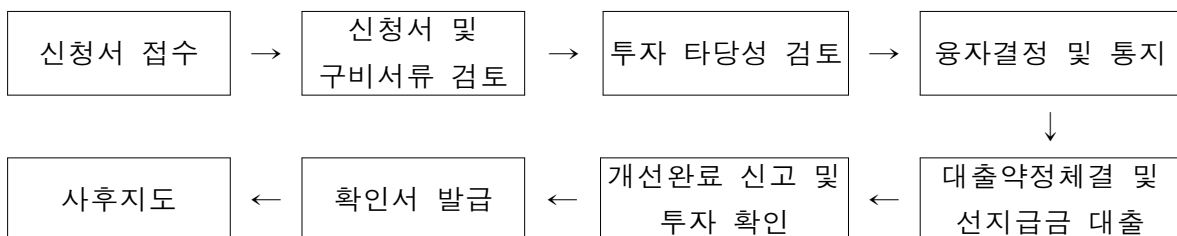
### 나. 사업내용(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위탁사업)

-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 작업시설·장비 등을 설치하여 고령자 친화적인 작업장을 구축하는 사업주에게 소요비용의 일정액 최고 10억원까지 융자

- 지원조건 : 연 3% 이자로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 목 표 : 50개소 50억원

### ○ 사업추진절차



### 다. 행정사항

- '10년 사업계획 공고('10. 2월)
- 지원업체 선정·지원('10. 2월~)
-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융자실적 보고(공단)
- 투자완료 확인업체 지도 실시(공단)

담당 : 장애인고령자고용과 5급 박 중 곤 ☎ 02-2110-7312

## 15.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 15-1. 장애인고용의무이행강화(지방, 장애인공단)

-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 및 변경명령 등
  - 법적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및 제86조
  - 1)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명령
    - 상시 50인이상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를 대상으로 3월말까지 제출토록 1월말경 제출명령
  - 2) 장애인고용계획이 부적절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변경명령 실시 【지방(관리과), 공단 지사】
  - 3) 법 제29조 1항과 2항의 제출명령 및 변경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이행강제 방안의 실효성 제고(지방)
    - \* 과태료부과기준(시행령 별표 2)
      -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제출명령 또는 변경명령 미이행 : 300만원
      - 기타사유로 제출명령 또는 변경명령 미이행 : 250만원
    - \*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참작
  - 4) 장애인미고용사업주 등 장애인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기업명단 공표(본부)
-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고용의무이행지도 중점실시 및 홍보강화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선정한 중점추진대상 기업 방문 시 장애인공단과 동행 이행지도
  - 법적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6조 및 제86조

※ 중점 추진대상

- 300인 이상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이 많은 기업, 장애인고용 파급 효과가 높은 기업 등
- 50~299인 :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기업, 장애인을 다수 고용할 수 있는 직무를 보유한 기업 등
- 장애인고용사업주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 설명회를 공단 지사와 공동으로 개최
  - \*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설명회 개최 총괄 및 대상 사업체 참여 독려를 담당하고, 공단에서는 기업지원안내서, 홍보영상물 등 자료 제공
-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체결 및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실시 기업의 확대와 지속적 관리
  - 부담금 납부액 상위 기업 등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체결 및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실시 확대 추진
  - 장애인고용증진 협약 체결기업에 대하여는 직무분석 등 장애인 고용관련 컨설팅을 통해 기업별 고용가능 직무 발굴 및 장애인 고용모델 제시

담당 : 장애인고용과 5급 박 상 보 ☎ 02-2110-7306

## 15-2.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본부, 장애인공단)

### 가. 시험고용

- 청년층 장애인의 직장체험 기회 제공 및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 고졸 이상 만 15세~38세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100인 미만 사업체는 장애인 미고용사업체에 한함)에서 '시험고용' 사업 실시
- \* 지원내용 : 장애인에 연수(인턴)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1인당 월 60만원을 3월간 지원(100명)

### 나.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직장현장훈련으로 사업체에서 직무지도원의 지도하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행동 적응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유지를 도모
- 훈련과정 : 대상자 선정 및 평가 → 훈련실시 사업체 발굴 및 직무분석 → 직무배치 → 사전훈련 → 현장훈련 → 취업 후 적응지도
- \* 인원 : 뇌병변·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고용 민간전문기관 위탁 포함 1,150명

담당 : 장애인고용과 5급 박 상 보 ☎ 02-2110-7306

### 15-3.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본부, 장애인공단)

#### 가. 추진배경

- 장애인에게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쟁력 강화

#### 나. 추진방안

- 기업과 사전 훈련약정을 체결하여 취업과 연계하는 맞춤형 훈련비율 확대(기능훈련 중 73%이상)
- 장애유형별(시각·청각·뇌병변·정신장애·지체절단·지체척수·지적장애 등) 중증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강화(7개 장애유형, 330명)
  - \* 시각(일산, 대구센터), 청각(일산, 대전센터), 정신장애(부산·대전센터), 뇌병변(부산·전남센터), 지체-절단(전남센터), 지체-척수(대구센터)
- 경제위기에 대응해 장애인공단의 실업자훈련 확대('09년 1,270명 → '10년 1,290명)
- 공공직업훈련기관을 통한 장애인 통합훈련 활성화(580명)
  - 비장애인과 통합훈련이 가능한 저연령층의 경증장애인이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전문적인 기능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응력 제고와 양질의 훈련기회 제공
    - 장애인 훈련생을 5% 이상 선발하도록 지속적인 독려
    -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통한 훈련기회 확대를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지도
    - 훈련생의 적응력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상담 및 평가 확대 실시

#### 다. 추진일정

- 맞춤형훈련 등 각 훈련에 대하여 연중 적정 인원을 수시 모집하여 과정 개설
- 통합훈련에 따른 지원 사항은 필요시 연중 수시 추진

담당 : 장애인고용과 5급 박 상 보 ☎ 02-2110-7306

## 15-4.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대회 개최 준비(본부,장애인공단)

### 가. 목적

- 성공적인 「2011 서울 제8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를 통해 장애인 기능향상 및 고용촉진, 사회인식개선 도모와 국제협력 강화

### 나. 추진계획

- 2011 서울 제8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준비
  - 대회개요
    - 대회기간 : 2011. 9. 25 ~ 9. 30
    - 대회장 : 올림픽공원
    - 대회직종 : 40개
    - 참가규모(예상) : 50개국, 1,500명(선수 500명, 선수단 및 대회 관계자, 취재진 등)
    - 대회내용 : 기능경기, 개·폐막식, 전시·시연회, 국제장애인기능 올림픽연합 총회, 국제 심포지움, 문화공연 및 관광 등
  - 추진내용
    - 대회조직위원회 발족 및 운영(3월)
    - 프로그램별 세부계획 수립, 대행사 선정, 홈페이지 개발
    - 기능경기 과제출제
    - 국제대회 참가선수 선발(9월)
    - 대회홍보(홍보대사 위촉 등)
    - 후원, 협찬업체 선정 추진 등

담당 : 장애인고령자고용과

6급 박세만

☎ 02-2110-7304



## 16.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본부, 장애인공단)

### 가.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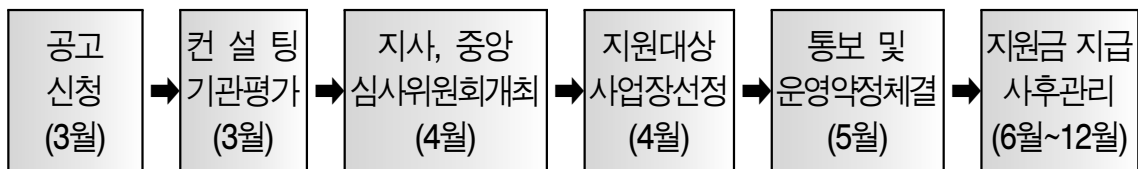
- 일반 고용시장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중심의 작업환경을 조성을 통한 고용 촉진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를 통하여 대기업의 장애인 다수고용 모델 확산
  -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 모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자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를 모회사에서 고용된 것으로 간주

### 나. 추진계획

- 지원 요건
  - 상시근로자수의 30% 이상을 장애인(그 중 50%이상, 장애인 30%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25%이상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주
    - \* 장애인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이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근로자 7년간 고용유지
- 지원내용
  - 표준사업장 : 장애인 작업시설, 편의시설 등 실투자금액의 75%를 지원(사업주 25% 부담), 10억원 한도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 표준사업장의 지원금에서 전년도 모기업의 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 (단, 표준사업장 지원금의 50%이상인 되도록 함)
  - 지원금용도 : 장애인 작업설비 비용,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
- 예 산 : 10,425백만원
  - 표준사업장 15개소 설립지원 : 6,315백만원(개소당 421백만원)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6개소 설립지원 : 4,000백만원 (개소당 667백만원)
- 표준사업장 지원 경상경비 : 110백만원
- 신청업체 평가방법
  - 전문컨설팅 기관의 평가와 장애인공단지사의 1차 심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장애인공단 본부에서 최종 선정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공단 본부 심사로 선정
- 금년 중점 추진 사항
  - 표준사업장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공단의 지원을 받지 않고 설립되었으나 표준사업장의 요건을 갖춘 사업장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 표준사업장의 혜택이 가능하도록 함
    - \* 절차: 공단에 신청서 제출→요건 확인→공단에서 인정서 발급
  - 「1사 1자회사 운동」을 추진하여 대기업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 지원

#### 다. 추진일정



담당 : 장애인고령자고용과 5급 임 세 희 ☎ 02-2110-7305

## 17.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예방 점검(지방, 장애인공단)

### 가. 추진배경

-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예방을 통한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사업의 내실화 도모

### 나. 추진내용

- 장애인공단지사 주관으로 점검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 등
  - 지방노동관서는 합동점검반 명단을 장애인공단 지사로 통보하고 합동점검 실시
  - 지방노동관서는 장애인공단 지사의 요청에 의해 합동점검 불응 사업주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 전산망을 활용한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보완
  - 자동경보 시스템에 구축된 자동경보 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담당직원은 의심사례를 면밀히 조사하여 결과를 전산망에 입력
- \* ①부정행위 혐의가 의심되는 사업체 ②부정행위(수급·신청) 전력 있는 사업체 ③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미가입자 사업체 ④장애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업체 ⑤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체 ⑥최초 신청업체 등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현지실사 강화
  - 부정수급 의심사업체, 임금을 현금지급 사업체 등 연 3회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되, 부정수급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 연 1회 이상 점검

### 다. 점검일정

- 합동점검 : 상반기(4-5월), 하반기(9-10월)
- 현지실사 : 상·하반기(년3회), 부정수급이 의심될 경우

담당 : 장애인고령자고용과 5급 임 세 희 ☎ 02-2110-7305

# 고용서비스정책관실



= 목 차 =

<b>1. 재직근로자의 고용안정사업</b> .....	<b>205</b>
1-1. 근로자 일자리 안정 지원 강화 .....	205
1-2. 취약계층 취업지원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지속 추진 .....	207
1-3. 부정수급 예방·점검 활동의 지속적 추진 .....	211
1-4. 고용지원이동센터 운영 활성화 .....	212
<b>2. 실직자·구직자의 신속한 (재)취업 지원</b> .....	<b>214</b>
2-1. 취업주치의(Job Manager) 도입 .....	214
2-2. 『빈 일자리 고용알선 대책』 추진 .....	216
2-3.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강화 .....	218
2-4.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강화 .....	222
2-5. 심층상담 전담제 운영 .....	235
2-6. 민간취업기관 지원사업 추진 .....	247
2-7. 채용박람회 지원사업 추진 .....	249
<b>3. 실직자, 근로빈곤층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b> .....	<b>251</b>
3-1.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	251
3-2. 연장급여 제도 운영 활성화 .....	255
3-3. 실업급여 부정행위 방지업무 수행 .....	258
3-4. 저소득층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실시 .....	261

<b>4. 민간 직업안정기관의 활성화 및 지도감독 강화</b> .....	<b>265</b>
4-1. 국외 유·무료 직업소개소 .....	265
4-2. 거짓구인광고 .....	266
4-3. 근로자공급사업 .....	267
4-4. 신고포상금제 .....	269
4-5.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271
4-6.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	273
4-7.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기관 지원 .....	275
<b>5.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지원</b> .....	<b>276</b>
5-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사업장 중점관리 .....	276
5-2.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외주입력 관리 철저 .....	281
5-3. 건설고용보험카드 사업 추진 .....	283
<b>6. 일자리 창출 지속 추진</b> .....	<b>284</b>
6-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	284
6-2. 디딤돌일자리 .....	288
6-3. 사회적기업 육성(국정과제) .....	289
6-4. 지자체 사업개발비 지원 .....	293
6-5.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추진 .....	295

# 1. 재직근로자의 고용안정사업

## 1-1. 근로자 일자리 안정 지원 강화

### 가. 목적

- '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경기침체 등으로 '09년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급증하였으나, '09년 하반기이후 뚜렷한 경기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은 감소추세
- '10년에는 경기회복세가 전망되지만, 고용의 후행성 등을 감안할 때 고용의 불안정성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
- 따라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감원대신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자리 안정을 도모할 필요
- 또한, 불가피하게 고용조정되거나 또는 기간계약 만료로 이직예자(이직 포함)에 대해서는 전직지원서비스를 받아 신속하게 전직 또는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나. 사업규모('10년)

(단위 : 명, 백만원)

사업명	인원	금액
고용유지지원금	118,419	99,819
전직지원장려금	670	1,800

### 다. 세부추진 계획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요건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환원 조치
- 고용유지지원금(휴업·유급휴직) 지원수준의 경제위기이전 수준으로 환원조치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 2/3(대규모기업 1/2)

- 고용유지훈련 요건 완화 : 1일 4시간 이상 총 20시간 이상  
→ 1일 4시간 이상 총 16시간 이상

※ '09.12월 현재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10.4.1부터 시행예정)

○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연장지급기간 고시

- 지급기간 및 적용기간 변경 : 2010.1.1 ~ 2010.12.31

## 라. 행정사항

### □ 고용유지지원금의 집행 철저

- 그간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제도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으나, 아직까지 제도를 알지 못하여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영세 중소기업을 위하여 고용지원이동센터 등을 활용한 적극적 홍보 실시
-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조치이후 신속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지원금 지급받은 업체에 대한 감원방지기간 준수여부 등 확인 등 주기적인 사후 관리 철저

### □ 전직지원장려금의 지원 활성화

- '09년에는 경기침체 등으로 장려금 활용실적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동 제도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 근로자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므로 설명회 개최 시 동 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 실시하고,  
- '10년에는 지방관서(고용지원센터)별로 제도 활용사업장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

\* '09년 지원실적을 감안하여 달성가능한 목표 설정

## 1-2. 취약계층 취업지원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지속 추진

### 가. 목적

-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고용안정사업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으로 작동하도록 추진
- 피보험자 등에 대한 실업의 예방, 재취업의 촉진 및 취업취약계층의 고용기회 확대 등을 도모

### 나. 사업규모('10년)

(단위 : 명, 백만원)

사 업 명	인원	금액
○ 고용유지지원금	118,419	99,819
○ 전직지원장려금	670	1,800
○ 재고용장려금	56	100
○ 교대제 전환지원금	883	3,112
○ 중소기업고용창출지원금	17,281	77,028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	372	3,570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6,325	16,305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	10,584	57,153
○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54	196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45,966	115,056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32	85

## 다. 세부추진 계획

- 고용안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09.1월부터 시행)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수준 하향조정
    -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고용촉진 도모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인상하였던 대상자별 지원수준('09.5.14, 월 15~60만원 → 월 18~72만원)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환원조치
    - 지원대상자별 지원수준을 월 18~72만원에서 월 15~60만원으로 변경
      - ※ '09.1.1부터 새로 장려금 대상자로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실업기간 산정 기준 변경
    - 취업취약계층의 실업기간을 구직등록일부터 채용일까지로 변경
    - 다만, 알선일부터 채용일까지 14일 이내에 면접 등 채용절차를 거쳐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 알선일부터 채용일까지 신체검사, 면접 등 채용절차를 진행 하는데 14일을 초과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지방노동관서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인정함
      - ※ '10.1.1 이후 채용된 자부터 적용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제도 개선
    - 고용환경개선계획 제출 이전에 시설·설비에 관한 계획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로 명확히 규정
    - 고용환경개선을 통한 고용창출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증가근로자수 산정방식\*을 변경하되,

□ '09.12월말 현재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중  
(10.1~2월 시행예정)

①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

- 지원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시행령에서 고시사항으로 변경
  - 현행 “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은 시행령(별표1)에서 정하고 있으나,
  - 앞으로 경기상황에 맞춰 노동부장관이 실업기간 등의 요건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실업기간 계산에 있어서 실업자 훈련기간 제외
  - 취업지원 강화 차원에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요건 관련 직업소개를 수행하는 기관에 실업자 훈련기관을 포함하되,
  -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실업기간 계산에 있어서 실업자 훈련기간을 제외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함
-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업당 연간 지원한도제 도입
  - 전년말 피보험자수의 20%로 제한(최대 30명) 하되, 다만, 피보험자수가 10인미만인 사업장은 2명으로 함
- 취업취약계층의 범위 확대
  - 금융채무불이행자중에서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확정을 받은 자를 추가하고, 실업기간은 3개월로 규정함
  - “임신,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 → “임신·출산·육아기(만6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에 이직한 여성근로자”로 확대
- 알선기관 확대
  - 신용회복위원회, 실업자훈련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청년 뉴스타트』 사업 수행기관

## ② 교대제 전환지원금 제도

- 교대제 전환이전 새로 채용한 근로자 중 교대제 전환을 목적으로 새로 채용한 근로자는 '전환 전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함

## ③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제도

- 현행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의 법적 근거(제32조의2)를 삭제하되,
  -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선도 사업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④ 지원금·장려금의 상호조정

-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기간동안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되, 그 밖의 지원금·장려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상호조정 근거규정 마련

## ⑤ 지원금·장려금의 지급제한 신설

- 고용보험법상의 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동일한 대상자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다른 법령이나 일반회계에 의한 지원금, 장려금이나 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받으면
  - 이 법에 따른 지원금·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함

## ⑥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액 범위 명확화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장려금 등의 반환명령의 범위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등”으로 변경함

- 지급제한의 기산 시점을 종래 “부정행위 발생일”에서 “부정행위 적발일”로 변경하며
- 경미한 부정수급 행위(부정수급금액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정수급 행위 발생일이 적발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함

### ⑦ 신고포상금 상향조정

- 내부고발 활성화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에 관한 신고 포상금의 지급수준을 상향조정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부정수급액의 20% → 30%
- 포상금 상한액과 1명당 연간 지급한도 : 300만원 → 3,000만원

## 라. 행정사항

- 제도개선 내용과 현재 개정 추진 중인 사항을 숙지하여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함(본부, 지방)
  - ※ 「고용안정사업 업무편람」은 제도개선 추진중인 내용을 반영하여 '10년 1/4분기에 발간 예정
- 고용안정사업 제도개선 내용 및 신설제도에 대한 홍보계획 수립·실시(본부, 지방 '08년 상반기)
  - 고용안정사업 홍보책자 발간, 라디오·인터넷포털 홍보, 신문광고 등 집중 홍보 실시

## 1-3. 부정수급 예방·점검 활동의 지속적 추진

### 가. 목적

- '07년이후 증가한 고용안정사업관련 부정행위가 '09년에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검찰 및 언론 등으로부터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부정수급의 발생은 지원금 제도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으며, 또한 부정행위관련 추가징수의 범위변경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 증가, 고용보험에 대한 이미지 훼손 등이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주에게 부정수급 제재조치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할 필요

## 나. 세부추진 계획

-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사업 신청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 부정행위는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된다는 것 등을 제도 안내문,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주 및 관계자 등에게 알림
  -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방지 메뉴얼』(’09.12월 배부예정)에 따라 현장 점검 및 관련 절차 진행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령 및 형법에 따라 조치
- ※ 본부 차원의 형사고발기준 마련 시달예정(’10.1/4)

## 1-4. 고용지원이동센터 운영 활성화

### 가. 목적

- 고용지원센터 이용에 제약이 있는 기업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소규모 농공단지 및 아파트형 공장 등을 순회하면서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
- ※ 구인·구직등록, 실업급여 인정업무, 기업지원제도 안내, 종합컨설팅 서비스 제공, FTA신속지원팀·채용대행 서비스 등 정부지원사업 안내 등

## 나. 사업예산('10년)

- 운영비 : 169백만원(자산취득비 등은 없음)

## 다. 세부추진계획

- 지방관서 여건에 맞게 운영하되, 도입 3년차를 맞이하여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
- 지역산업단지 등에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

## 라. 행정사항

- 지역 신문·방송 등에 운영실적, 사례 등에 대해 홍보
- 매분기 말 익월 10일까지 실적보고(고용서비스지원과)

담당 : 고용서비스지원과 5급 김호현, 7급 전연진 ☎ 02-2110-7142, 7146



## 2. 실직자·구직자의 신속한 (재)취업 지원

### 2-1. 취업주치의(Job Manager) 도입

#### 가. 추진배경

- 취약계층 구직자는 「문제 진단·직업탐색 경로설정 → 근로 의욕·취업능력증진 →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 고용서비스 제공이 효과적
- 이에 취약계층 구직자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심층상담 전담제'를 실시하고,
- '09년부터는 저소득층과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상담에서부터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 그러나, 고용지원센터 인적 인프라 부족 등으로 전담자 배치를 통한 효과적인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취업주치의(Job Manager) 도입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1:1 취업 지원서비스 강화 필요

#### 나. 역할

- 저소득 실업급여 수급자 등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집중상담,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IAP) 수립, 취업지원프로그램 투입 및 취업알선, 동행면접 등 특성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다. 배 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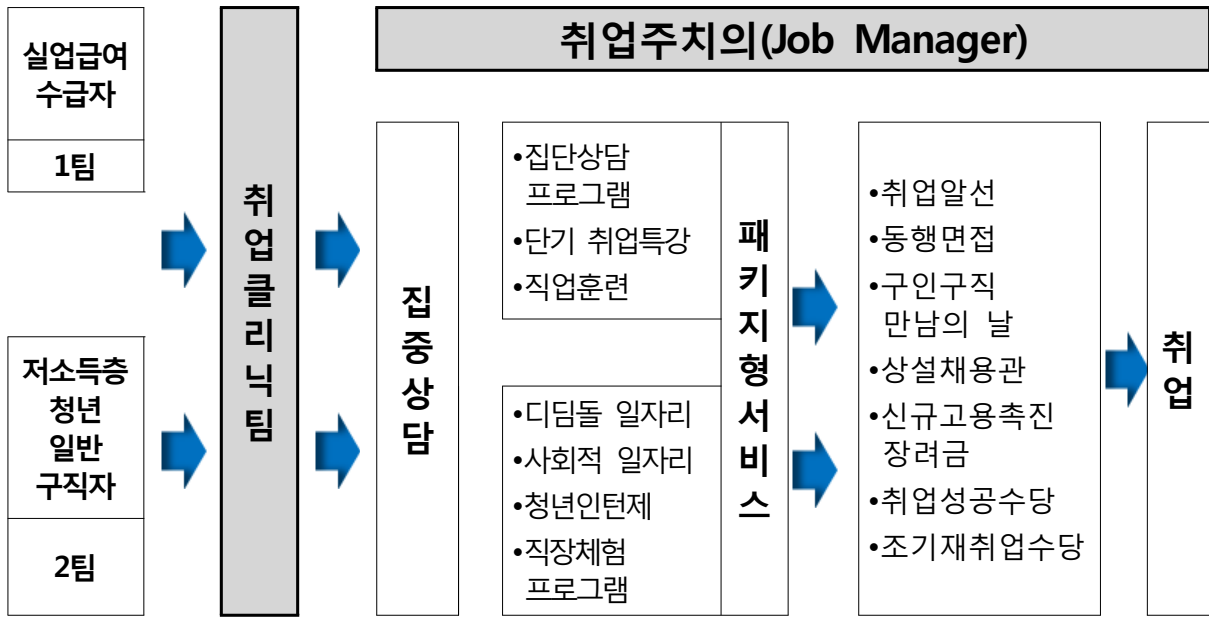
- 취업주치의(Job Manager)를 “취업클리닉팀”이라는 전담조직에 배치하여, 연계와 집중 관리를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주치의(Job Manager) 제도 운영은 수요조사를 통해 운영을 희망하는 26개\* 고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

\* 6개청 종합센터,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 관악, 창원, 울산, 대구북부, 포항, 인천북부, 부천, 안양, 수원, 전주, 군산, 순천, 청주, 천안, 보령

라. 주요 서비스 대상자

- 차차상위계층 이하 실업급여 수급자, 고졸이하 청년,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 구직자

<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



마. 기타 행정사항

- 취업주치의(Job Manager)를 운영하는 고용지원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 '10년도 고용서비스 인턴 등 지원 인력 최우선 배치
  - 지방관서 평가지표에 반영

담당 : 고용서비스정책과 5급 이병성, 6급 이귀례 ☎ 02-2110-7144

## 2-2. 『빈 일자리 고용알선 대책』 추진

### 가. 추진배경

- (취업난 속에 구인난 지속)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채용동결 또는 규모 축소 등으로 취업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구인난 상존
  - \* (미충원인원 규모) '08년 3/4분기 기업의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인원은 9.3만명, '09년 1/4분기에도 6.8만명 존재 (노동부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
  - \* (빈 일자리 발생 주요사유) 임금조건 불일치(희망임금과 제시임금 차이), 정보부족, 열악한 작업환경, 중소기업 근무기피 의식 등이 주요원인
- (강력한 빈 일자리 대책 수립 추진 필요) 이를 통해 구직자의 취업난을 완화하고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다각적인 대책 추진 필요

#### 대통령 말씀

「외국인 정책 개선방안」 보고 시('08.11.11)

- 노동부가 '현재 비어있는 일자리와 불법체류자 추방에 따른 인력 공백을 매워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구직자들을 알선시킬 것

### 나. 세부추진 계획

#### <1> 빈 일자리 전담자 지정

- (전담자 지정) 취업특별지원반 내에 빈 일자리 고용알선사업 전담자를 2~3명을 지정·배치
  - 공무원(일반·상담직) 중심으로 구성하되, 고용서비스인턴도 적정비율로 전담반에 포함 가능
- (역할) 빈 일자리 실태조사 및 구인·구직 DB 구축

## <2> 빈 일자리 구인·구직 DB 구축

- (빈 일자리 DB구축) 워크넷 상시인력부족업체, 주요 산업단지 소재기업,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사업장 등 중심으로 빈 일자리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민간위탁 등을 통해 워크넷 '빈 일자리 DB관리 시스템'에 등재

\* 빈 일자리 실태조사, 특별구인등록기간 운영 세부계획은 '10.1월 중 별도 통보예정

- (구직자 DB 구축) 빈 일자리 기업에 알선이 가능한 구직자 POOL 구축

## <3> 집중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집중 취업알선) 빈 일자리 구직DB를 활용, 눈높이 조절이 가능한 구직자 중심으로 집중 취업알선 실시
- (채용대행서비스 제공) 빈 일자리 기업 대상 월 2회 이상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하는 한편, 동행면접, 채용대행 등 채용지원서비스 제공

## <4> 실적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

- (실적 관리) 워크넷을 통해 매월 관서별·업무전담자별로 실적을 집계·관리할 계획
-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매분기 빈 일자리 고용알선대책 추진 우수관서(2개소)에 노동부장관상 수여,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및 별도 인센티브 부여

담당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4급 최태호, 7급 한종기 ☎ 02-2110-7134

## 2-3.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강화

### 가. 목 적

-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대행서비스 등 센터의 현장 채용 행사를 통해 센터를 방문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일반구직자 등을 대한 취업기회를 지속 확대

### 나. 기본방향

- 고용지원센터를 「상설 채용관化」 시범센터로 수시 지정함으로써 단계적으로 확대
  - 구인·구직자들에게 상설 채용관으로서의 센터 이미지 제고
- 구인·구직 만남의 날, 동행면접과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등과의 연계 강화
- e-채용마당 이용 활성화 및 성공적인 조기 정착

### 다. 프로그램별 세부운영지침

#### (1) 구인·구직 만남의 날

##### ① 프로그램 개요

- 구인기업과 구직자간 직접 만남·면접의 장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신속한 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의 채용행사
  - ▲ 채용박람회 : 외부시설을 활용한 대규모 구인·구직만남 행사, 채용 외에 부대행사(이력서·면접클리닉, 훈련·자격상담 등) 병행 실시
    - \* '09년부터 채용박람회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 \* 다만, 일부 센터는 청계천 잡페어 등 자체 채용박람회 개최
  - ▲ 구인·구직 만남의 날 : 주로 고용지원센터 내 공간·시설을 활용한 소규모의 채용 행사

##### ② 운영 센터 : 청 및 지청종합센터 전체 (47개소)

##### ③ 운영절차 및 방법

- 구인·구직 만남의 날 업무매뉴얼 참조 ('06.12월 배포)

#### ④ 유의 사항

- '10년에도 “빈 일자리 고용알선대책” 추진에 따라 구인에 어려움이 많은 “빈 일자리 기업 DB”에 포함된 기업을 중심으로 참여 기업 선정
  - \* 민간에서 주최하는 채용박람회에 대해서는 개최기관과 협력하여 관내 빈 일자리 기업이 참여하여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 심층상담 대상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의 조속한 취업을 위하여 구인·구직 만남의 날 적극 안내, 참여 유도
-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제외한 각종 취업지원 행사는 가급적 개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개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규모를 최소화하여 운영
- 취업알선실적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일 다음날까지 반드시 워크넷을 통해 구인·구직등록 및 알선 처리
- 운영실적을 반드시 워크넷에 입력 조치

#### (2) 동행면접

##### ① 프로그램 개요

- 면접 경험 및 자신감이 부족한 구직자를 위해 채용 면접시 센터 상담자가 사업체에 동행하여 면접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

##### ② 운영 센터 : 청 및 지청종합센터 전체 (47개소)

##### ③ 유의 사항

- 동행면접의 경우 취업성공율이 매우 높은 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 심층상담 대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조속한 취업을 위하여 동행면접 적극 추진

- 동행면접 전에 해당 구직자가 면접기술 및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하거나,
  -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담자가 면접 클리닉 실시
- 운영실적을 반드시 워크넷에 입력하고, 특히 구직표의 구직상담란에 동행면접시 구직자 또는 구인자의 상호 반응 등 동행면접 등을 반드시 간략히 기록

### (3) 채용대행 서비스

#### ① 프로그램 개요

- 기업의 직원채용 비용절감을 위하여 모집·전형·선발 등의 절차를 고용지원센터에서 직접 대행해주는 기업지원 서비스
  - \* '09.9.1일부터 Off-line에 의한 채용대행서비스 이외에도 On-line상의 채용대행서비스도 가능하도록 e-채용마당 시스템 개발·운영중

#### < 채용대행서비스 유형 >



#### ② 운영 센터 : 청 및 지청종합센터 전체 (47개소)

#### ③ 프로그램 운영절차 및 방법

- 채용대행서비스 업무매뉴얼 참조 ('06.12월 배포)
- e-채용마당은 “온라인 채용대행서비스 추진계획(고용서비스 정책과-2373) 등 참조

#### 4] 유의사항

- '10년에도 "빈 일자리 고용알선 대책" 추진에 따라 구인에 어려움이 많은 "빈 일자리 기업 DB"에 포함된 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수단으로 '채용대행서비스'를 적극 활용
- 관내 중소기업 중심으로 채용대행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여 활성화 도모
  - \*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대부분 구직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구인기업에 대한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채용대행서비스'는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 센터를 이용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자 중 적합자를 선정하여 채용대행서비스 대상기업에 적극적으로 알선
- 채용대행기업 구인·구직만남의 날, 기업설명회 등 채용대행서비스의 효과성 제고(취업률 제고) 방안 적극 강구
- 취업알선실적 오류 발생 최소화를 위해 채용대행서비스 마지막 날(사업체에 이력서 제출일)의 다음날까지 반드시 워크넷을 통해 구인·구직 등록 및 알선 처리
- 운영실적을 반드시 워크넷에 입력하여, 평가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 e-채용마당을 통한 운영실적은 본부에서 별도로 파악하여 실적 적용

#### 라. 행정사항

- 지방청별로 "2010년도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업계획"(관할센터 취합)을 작성·제출 (별도공문 시달 예정)
- 지방청별 사업계획 수립이 완료된 이후,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청(센터)별 사업계획 보완·조정

담당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4급 최태호, 7급 한종기 ☎ 02-2110-7134



## 2-4.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강화

### 가. 목 적

- 구직자, 학생 등이 자신의 희망, 관심, 자격 및 능력을 잘 파악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 훈련, 직업선택을 할 수 있도록
- 수요자 특성에 맞는 직업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에서 직장, 직장에서 직장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

### 나. 기본방향

- ◆ 센터 본연의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 취업지원을 위한 Activation 수단으로서 역할 강화
- ◆ 센터별로 프로그램 운영방식(자체, 인소싱 또는 병행)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센터 여건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
- ◆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시행을 통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 □ 프로그램 운영 개요

- '10년도 각 청별 사업계획(관할 지청 포함)에 기초하여 예산배정 및 사업 추진
  - 청(지청) 종합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사업 적극 발굴
  - 연간 사업목표는 각 청별 사업계획을 기초로 본부와 협의하여 조정
    - \* 센터 여건 및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목표를 설정
    - \* 다만, 빈 일자리 고용알선사업, 심층상담 전담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정·운영
- 센터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 자체 운영, 인소싱, 아웃소싱 또는 병행 등 운영방식을 결정

## □ 성과목표 설정

- 프로그램별 성과목표는 1차적으로 센터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본부 협의 후 최종 확정
  - 다만, 빈 일자리 고용알선사업, 심층상담 전담제,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정·운영 필요
- \* '10년 사업별 목표인원 : 빈 일자리 고용알선사업 및 심층상담 등은 수혜자수 확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1.5만명 → 2만명),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1.5만명 → 1.1만명)
- 기타 프로그램(취업특강 등)은 전년도 수준으로 목표량을 설정 하되, 센터별 여건 등을 감안하여 본부와 협의 후 최종 확정

## □ 프로그램 진행자 및 상담역량 강화교육

- '10년 센터 직원(자체운영 프로그램), 인소기업체 소속 직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프로그램 진행자 교육 실시
- 또한, 인소성 관리직원 등의 전반적인 집단상담프로그램 이해,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관의 북한이탈주민 집단상담프로그램 이해를 위한 교육도 신규 개설 운영

## 다. 프로그램별 세부운영지침

### (1) 집단상담프로그램

#### □ 프로그램 개요

- 대상에 따라 12~15명의 소규모 그룹이 참여식의 형태로 3~5일 과정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 상	내 용
성 취	구직자 전체	취업의욕 증진, 취업정보 수집, 지원서류 작성법, 면접 실습 등
CAP	15~29세 청년 구직자	진로결정을 위한 직업탐색, 강점 강화, 면접 실습 등
취업희망	취약계층 구직자	자존감 회복을 위한 활동, 자신감 향상, 근로의욕 증진, 효과적 의사소통 등
성 실	고령 구직자	화 다스리기,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방법, 대인관계, 구직기술 등
주부재취업설계	주부 등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위한 직종 선정, 셀프마케팅 등
제대군인 (V-TAP)	제대군인	전직준비 및 동기부여, 직업세계의 이해, 제대군인 적합직종 탐색 및 전직계획 등
올라(NEET)	취약 청년층	마음열기, 마음모으기(협력), 의사소통 및 생애설계와 비전수립 등

#### □ 인소싱 · 아웃소싱 운영 방식

- (운영방식) 센터는 참여자 선정, 사후관리, 운영경비 정산 업무 담당
  - 수탁기관은 프로그램 진행, 운영경비 집행 등 업무 담당
- (비용지급 : 회당 180만원) 프로그램 진행요원 인건비(회당 120만원), 운영비용 지원(회당 60만원)
  - \* 운영비에는 급량비 · 간식비 · 물품비 · 교재비, 보충자료 유인비 등 포함

#### □ 프로그램 운영절차 및 방법

- 프로그램별 업무매뉴얼 참조 ('06.12월 배포)

#### □ 유의 사항

- 인소싱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집단상담 프로그램 업무 담당자가 프로그램 진행 시작 전에 프로그램의 취지, 진행 내용, 사후 관리 등 전반에 걸쳐 반드시 설명

- 프로그램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지원 담당자(취업지원 1·2팀)가 빈 일자리 DB 구직자,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참여자, 심층상담 대상자에 대한 개별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자를 우선 선정
  -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일정(워크넷 외부망 전국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일정 안내, 워크넷 내부망 직업지도 프로그램 일정)을 숙지, 프로그램이 필요한 구직자에 대하여 적극 안내 및 참여 유도
    - \*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 및 일반구직자에 대한 개별상담 후 프로그램 참여 가능
  - 참여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워크넷 '직업지도' 권한을 취업지원과 전원에게 부여하여 인소싱 관리자는 과정 등록·인원 관리 등을 수행
  - CAP의 경우 대학생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졸업 후 취업준비 중인 청년구직자 참여를 적극 확대
  - NEET 프로그램은 구직의욕 향상 중심의 프로그램인 점을 감안,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대상자 중 적정자를 선정
    - \*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민간위탁기관에서 NEET 프로그램 대상자 추천시, 프로그램 대상자에 포함·운영
-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취업알선 등)를 강화하여 프로그램 참여 후 취업으로 연결되도록 노력
  - \*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자중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구직등록을 하여 취업알선 등 사후관리 실시
-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반드시 워크넷에 입력 조치

## (2)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 □ 프로그램 개요

-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가 특별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선택하여 25명 내외의 중규모 그룹의 참여식 형태로 3~4시간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명	내용
취업 의욕	행복한 대화 이끌기	효과적인 대화법 익히기, 화 다스리는 법 익히기 등
	취업 어려움 극복하기	생각 가다듬기, SWOT 분석 등
	나를 이해하기	직업가치탐색, 장점 및 보유능력 확인, 경력기술서 작성 등
기초 직업 능력	대인관계능력향상	팀워크, 리더십, 갈등관리, 협상능력, 고객서비스 능력
	의사소통능력향상	문서이해능력, 타인 의견 경청능력, 대화법, 전화 사용법 등
	자기개발능력향상	흥미·적성 이해, 자신의 역할 이해, 자기관리, 경력 개발관리 등
	직업윤리	근면성, 정직성, 성실성, 책임감, 봉사정신, 준법성, 직장예절 등
구직 기술	취업목표 정하기	의사결정과정 간접 체험하기, 합리적 경력개발 목표·실천계획 수립하기 등
	멋진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하기	이력서·자기소개서 관련 내용 총집합 (참여학습)
	면접기술 습득하기 I	면접기술 관련 총집합 (참여중심 진행)
	면접기술 습득하기 II	실전 모의면접
	취업전략 세우기	셀프마케팅, 일자리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는 다양한 방법 익히기 (구직망 구축, 사전탐방 등)
기타	부모를 위한 자녀진로 지도 프로그램	초·중·고교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미래 직업설계, 직업관 형성 등을 지도

\* 12개 과정의 매뉴얼('09.7월 배포)·강의용 PPT자료 활용(다우리 → 본부 시달 → 고용서비스정책관에 게재)

\* '10년부터 “부모를 위한 자녀진로지도 프로그램”은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에 포함·운영

□ 인소싱 · 아웃소싱 운영 방식

- (운영방식) 센터는 참여자 선정, 사후관리, 운영경비 정산 업무 담당
  - 수탁기관은 프로그램 진행, 운영경비 집행 등 업무 담당
- (비용지급) 프로그램 진행요원 인건비 및 운영비용 지원

구 분	계	인건비	운영비
3시간 과정	23만원	20만원	3만원
4시간 과정	28만원	25만원	3만원

\* 운영비에는 간식비, 물품비, 보충자료 유인비 등 포함

- 과정별 운영시간(3시간 또는 4시간)은 대상자 특성 및 센터 여건에 따라 자체 결정

□ 프로그램 운영절차 및 방법

- 운영 절차는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유사하므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업무매뉴얼 참조 ('06.12월 배포)

□ 유의 사항

- 프로그램 참여자는 취업의욕 증진, 기초직업능력, 구직기술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참여자, 심층상담 대상자 등에 대한 개별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자를 우선 선정하여 전 과정을 참여 예약제로 운영
  - \*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 및 일반구직자에 대한 개별상담 후 프로그램 참여 가능
  - \* 새로운 실업인정시스템 시범센터는 실업급여 수급자 중 IAP 수립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참여 조치
- 참여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워크넷 '직업지도' 권한을 취업 지원과 전원에게 부여하여 인소싱 관리자는 과정 등록 · 인원 관리 등을 수행
-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지속적으로 실시
- 운영실적은 반드시 워크넷에 입력 조치

### (3) 취업특강

#### □ 프로그램 개요

- 인원 제한 없이 2시간 강의식 형태로 운영되는 취업기술 특강 프로그램

구분	강의명	내 용
구직 기술	취업에 성공하는 이력서·자기소개서	성공적인 취업준비 전략,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등
	취업에 성공하는 면접요령	면접의 중요성, 면접의 종류, 면접준비 전략, 면접 최종 점검 등
	성공하는 취업정보 수집	고용시장 동향, 효과적인 취업·직업정보 수집방법, 허위 구인광고 대처 등
	여성·주부를 위한 취업특강	여성, 주부의 취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고령자를 위한 취업특강	고령자 취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기타	직업심리검사와 직업선택	직업심리검사 절차·방법, 직업탐색·선택에 도움이 되는 검사 등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이해, 임금·근로시간, 부당해고·구제 등
	자녀진로지도	부모 돌아보기, 변화하는 직업세계 이해, 진로지도 포인트 등

\* 개정된 5종 매뉴얼('09.7월 배포)·강의용 PPT·참여자용 배포 자료 활용(다우리 → 본부 시달 → 고용서비스정책관에 게재)

#### □ 운영 센터

- 전체 센터가 1개 이상의 취업특강을 운영하되, 구체적인 강좌는 센터별 수요를 감안하여 자체 결정

#### □ 프로그램 운영절차 및 방법

- 취업특강 업무매뉴얼 참조 ('06.12월 배포)

#### □ 유의 사항

- 센터 자체적으로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은 적극 권장
  - 다만, 취업과 관련(취업의욕 제고·자신감 향상·구직기술 습득 등) 없는 취미·오락차원의 특강 개설은 지양

-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한 프로그램 개설도 적극 강구
  - ▲ 중소기업청 : 창업특강    ▲ 인력공단 : 자격특강, 해외취업특강
  - ▲ 폴리텍대학 : 훈련특강    ▲ 신용회복위원회 : 경제·신용회복특강 등
- 프로그램 참여자는 1차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 일반구직자에 대한 개별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자를 선정
  - 취업지원 담당자(취업지원 1·2팀)는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일정 (워크넷 외부망 전국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일정 안내, 워크넷 내부망 직업지도 프로그램 일정)을 숙지, 프로그램이 필요한 구직자에 대하여 적극 안내 및 참여 유도
  - 참여자 접수를 할 수 있는 워크넷 '직업지도' 권한을 취업지원과 전원에게 부여하고 프로그램 관리자는 과정 등록·인원 관리 등을 수행
  -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지속적으로 실시
  -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취업특강 수강시 1회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을 악용하여 필요성이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수강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 \* '08.9월부터 취업특강 수강에 대한 실업인정을 최대 3회로 제한하였음에 유의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개정)
- 진행자는 강좌내용에 따라 내·외부 강사를 적정하게 선정
  - 외부강사의 경우 필요시 강사수당을 지급(운영수당 활용, 1회 10만원 이내)하되,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강사수당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 새로운 실업인정시스템 시범센터 8개소\*에 한해 민간위탁(인소싱·아웃소싱) 가능 ⇒ 민간위탁 지침 별도 시달('09.7월)
    - \* 6개청종합·청주·천안



#### (4) 일자리희망 프로그램 (센터 자체 개발 프로그램)

##### □ 프로그램 개요

- 센터별로 다양한 명칭 및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취약계층별 특화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 ▲ 스타트! 5070(고령자), ▲ JOB아라! 우먼파워(여성), ▲ 워크투게더(장애인),
  - ▲ 직업의식고취 프로그램(탈 성매매여성), ▲ 세상속 희망돋보기(출소자),
  - ▲ 희망드림(산재근로자) 등

##### □ 운영 센터 : 청 및 지청종합센터 전체 (47개소)

##### □ 프로그램 운영절차 및 방법

- 운영절차 및 방법은 특성화된 성격에 따라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나 취업특강과 유사하므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특강 업무매뉴얼 참조 ('06.12월 배포)

##### □ 유의 사항

- 지역별·대상자별 여건을 감안하여 센터 자체적으로 일자리 희망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은 적극 권장
  - 유관기관 협력 프로그램 및 센터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 개발 적극 강구
  - 대상자별 특성에 맞도록 설계하여, 단편적인 정보제공 수준이나 집체 교육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의
- <예시1> 취업의욕 제고 → 정보화 기초훈련 → 기업탐방 → 1:1 취업상담 → 취업알선 등 토털 서비스(부산종합센터, 브라보 은빛 재설계)
- <예시2> 성공적인 취업전략, 자기소개서·이미지 메이킹 특강, 여성 유망직종 구인정보 제공(서울종합센터, 우먼잡드림)

-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서비스 대상(예 : 북한이탈주민, 출소자, 제대군인, 노숙인, 성매매여성 등)을 적극 발굴
  -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구직등록 유도 및 취업알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프로그램 참여 후 취업으로 연결되도록 노력
- 일자리희망 프로그램 진행자는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내·외부 강사를 적정하게 선정
  - 외부강사의 경우 필요시 강사수당을 지급(운영수당 활용, 1회 10만원 이내)하되,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강사수당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 (5) 취업 설명회

### □ 프로그램 개요

- 대학생(졸업예정자 포함), 청년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기술 향상 프로그램(통상 1일의 특강형식으로 운영)
  - \* 취업캠프와 내용은 유사하나, 취업캠프는 2~3일, 취업설명회는 당일 진행

### □ 운영 센터 : 청 및 지청종합센터 전체 (47개소)

### □ 프로그램 운영절차 및 방법

- 취업설명회 업무매뉴얼 참조 ('06.12월 배포)

### □ 유의 사항

- 대학생(졸업예정자 포함)의 경우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운영형태는 대학별 개최 또는 2개 이상 대학 연합 개최 등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전문대 등의 참여 확대
  - 재학생 뿐만 아니라 졸업예정자, 졸업 후 취업준비 중인 청년 구직자, 제대군인 등 대상의 취업설명회도 적극 추진
  - \* 업종별·기업군별 설명회 등 지역특성에 맞추어 취업설명회 방식을 다양화

- 취업설명회시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참여자에게 유익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부대행사 병행을 적극 강구
  - ▲ 병무청 : 병무상담      ▲ 인력공단 : 자격상담, 해외취업상담
  - ▲ 중소기업청 : 창업상담 ▲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기관 : 훈련안내 및 상담
  - ▲ 경제단체·기업 : 채용동향 설명 등
- 소요예산은 수용비(자료집), 임차료(타 기관에서 장소제공시 제외), 여비 및 업무추진비 항목을 활용하여 적정수준에서 결정
  - \* 대학이 취업설명회를 실시하면서 그 예산을 전액 “대학 취업지원 기능 확충사업”(노동부 지원)에서 충당하는 경우
    - 센터에서 강사진, 프로그램 지원 등은 가능하나, 별도 예산지원 (임차료·급량비 등)은 하지 않도록 유의

## 라. 행정사항

- 지방청별로 “2010년도 직업진로지도 사업계획”(청종합 센터 취합)을 작성·제출 (별도 공문 시달 예정)
- 지방청별 사업계획 수립이 완료된 이후,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청(센터)별 사업계획 보완·조정
- 청별·센터별 운영실적은 별도 보고를 받지 않고 전산을 통해 관리하게 되므로, 각 센터는 운영실적을 워크넷에 정확하게 입력 조치

담당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4급 최태호, 8급 이상은 ☎ 02-2110-7150

**1. 추진방향**

- ‘10년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심층상담 전담제 시행 등에 따라 직업지도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증가
  - 이에 적정 대상자 선정과 참여자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직업지도프로그램의 Activation 수단으로서 역할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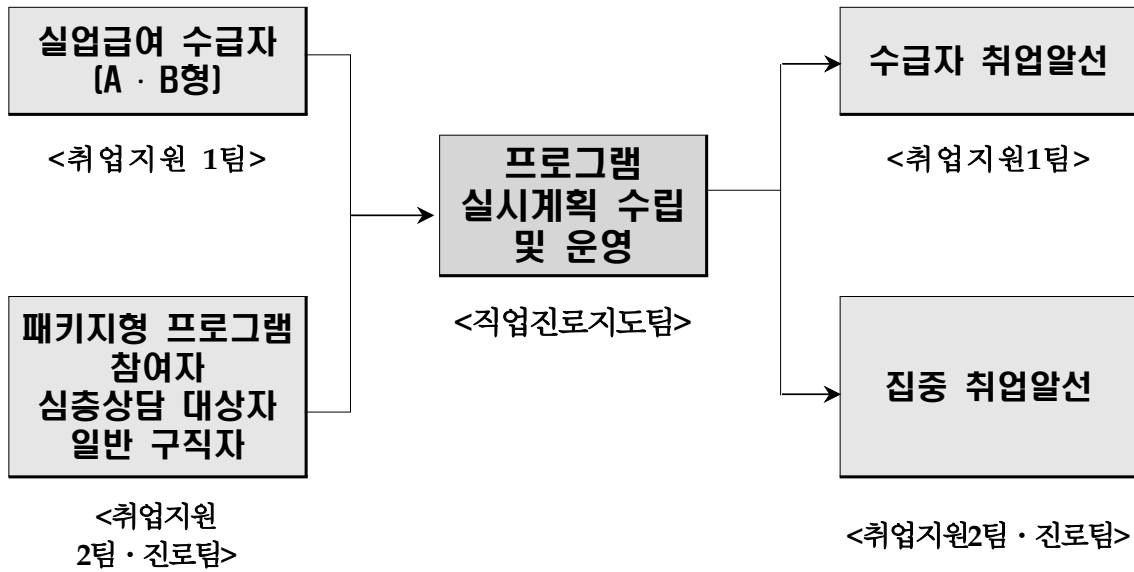
**2. 대상자 선정**

- (취업지원 2팀) ‘패키지형’ 사업 참여자, 심층상담 대상자 중 상담을 거쳐 취업의욕·취업기술 고취가 필요한 구직자 중심으로 대상자 선정
  - ▲ 취업성공패키지(2만명) → 성취, 취업희망 등
  - ▲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1.1만명) → NEET·CAP·취업희망 등
  - ▲ 심층상담 전담제 → 성취, 취업희망 등
- (취업지원 1팀) 실업급여수급자 중 A, B형 중심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한 구직자를 적극 선정
  - \* 센터별 A, B형 수급자 중 최소 20% 이상은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유도

**3. 프로그램 참여자 사후관리**

센터 내 팀간 업무연계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을 위한 Activation 수단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팀간 철저한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 ▲ 패키지형 프로그램 참여자·심층상담 대상자 : 진단·경로설계(취업지원 2팀) → 프로그램 참여(직업진로지도팀) → 집중 취업알선(취업지원 2팀)
  - ▲ 실업급여 수급자 : IAP수립 및 프로그램 참여자 선정(취업지원 1팀) → 프로그램 참여(직업진로지도팀) → 실업인정 및 취업알선(취업지원 1팀)
  - ▲ 일반 참여구직자 : 대상자 선정(취업지원 2팀·직업진로지도팀) → 프로그램 참여(직업진로지도팀) → 사후관리(취업지원2팀·직업진로지도팀)



※ 팀별로 입력·관리해야 하는 워크넷 메뉴

- 직업진로지도팀 : 프로그램 등록, 신청자등록, 수료자 관리
- 취업지원 1·2팀, 직업진로지도팀 : 취업자 관리

□ 프로그램 수료자에 대한 취업여부 확인 및 관리 방법

- 사후관리 기간 :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까지 관리
- 취업여부 확인 : 매월 1회 주기적으로 확인(확인일자는 센터 자체 결정)
- 확인방법 : 아래 순서에 입각하여 취업여부를 확인
  - i) 매월 1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자료와 대조하여 수료자 중 취업자 확인
  - ii) 프로그램 참여자 커뮤니티를 통해 취업자 및 창업자 확인
  - iii) 유선통화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취업자 및 창업자 확인
- 확인후 처리 : 취업자 관리 메뉴에 취업여부, 취업사업장, 취업 형태 등을 입력

## 2-5. 심층상담 전담제 운영

### 가. 목 적

- '08.2월부터 취약계층 구직자에 대한 심층상담 및 밀착 취업 지원을 위한 「심층상담 전담제」 운영
  - 심층상담을 통한 구직자 의욕 및 능력진단, 취업목표 설정 및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을 토대로, 취업취약 구직자에게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성공 가능성 제고

### 나. 추진방향

#### □ 심층상담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 Activation 강화

- 전담자는 대상자(구직자)의 문제 원인과 증상을 파악·치유하는 동시에 대상자의 장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담계획 수립
  - 매 회기마다 상층상담 및 센터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한 이행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장점을 강화하여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

####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의 정착

- 1:1 심층상담을 전제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지원센터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
  - \* 심층상담은 심리상담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직업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조속한 취업을 위해 센터의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과 연계
- 센터의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심층상담 사례를 전파·공유함으로써 센터 직원들의 직업상담 전문성을 제고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

#### □ 유관기관과의 업무 연계·협조

-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센터의 심층상담 업무를 연계함으로써 심층상담 대상자의 취업애로요인 극복 및 조기 취업 지원
- 유관기관 업무담당자와의 업무 연계 강화를 위하여 청 종합센터 주관 간담회 실시

## 다. 운영 사항

### □ 심층상담 전담자

- 청·지청 종합센터별 2명 이상 배치 (취업지원2팀 소속)
  - \* 향후 취업클리닉팀이 설치되는 센터의 경우, 취업클리닉팀 소속
- 지방관서 평가 그룹분류에 따라 청·A·B 그룹은 2명 이상의 전담자를 배치하고, C그룹은 총괄 담당자를 지정하여 취업지원팀 전체가 심층상담을 진행

구 분	전담자 수	비 고
청·A·B	▪ 전담자 2명 이상	전 담
C	▪ 총괄 담당자를 지정 ▪ 취업지원팀 직원 전체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심층상담 진행	검 직

### ○ 전담자의 업무

- 취업에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심층상담 및 밀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을 통하여 '보다 빨리, 보다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
  - \* 심층상담 회당 약 60분 가량의 밀도 있는 상담을 제공함과 동시에 동행면접 등 적극적인 취업지원서비스도 실시
- (청종합) 관내 심층상담 전담자의 상담능력 강화를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 전담자 간담회(상담사례 발표회 또는 전문가 수퍼비전) 분기 1회 이상 개최, 심층상담 사례집 연 1회 발간

#### 📁 학습동아리 운영 예시

- 심층상담 진행에 필요한 상담이론에 대한 단계별 특강 진행
- 동아리원들의 보고서를 토대로 또래 학습 및 전문가 강의 등 실시 : 기업의 채용 패턴 및 새로운 구직기술 관련 연구, 심층상담 기법을 일반 직업상담에 반영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 지역노동시장 분석 등
- 수퍼바이저 인력 pool은 직업재활학과·재활복지학과 등과 연계하여 본부에서 별도 시달할 예정

- (지청종합) 심층상담 전담자 주관 취업지원과 간담회 분기 1회 이상 실시(효율적인 업무 연계, 상담기법 향상방안 논의 등), 센터내 상담사례 발표회 분기 1회 이상(또래 또는 전문가 수퍼비전)

○ 전담자의 심층상담 내용 전산 입력

- 전담자는 대상자와의 심층상담 내용을 가급적 상담 당일에 전산 입력
- 심층상담 과정에서 파악된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상담내용 입력 자체가 업무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 노력

○ 전담자 자격 요건

- 취업지원업무(취업알선·실업인정·직업진로지도) 3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자를 우선 선발
  - ▲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 및 직업진로지도 경력자
  -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업무 수행 경력자
  - ▲ 고용서비스전문가과정 수료자

○ 전담자 업무 기간

- 최소 2년 이상 심층상담 업무를 전담 원칙 (2년 이내 업무 재분장 금지)
- 전담자는 타업무 겸직 및 업무대행 금지

○ 전담자 변경시 본부 보고

- 출산·인사이동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담자 변경 발생 시에는 즉시 본부 보고
  - ▲ 변경사유 및 전담자 변경사항을 아래의 서식으로 보고

변경 전		변경 후			
직급	성명	직급	성명	경력	기타
8	변학도	8	성춘향	▪ 취업알선('03.8~'05.7, 2년) ▪ 직업진로지도; 성취('05.8~'08.7, 3년) ▪ 실업인정('08.7~'09.12, 1년 6월)	고용서비스전문가과정 이수('08.3~6)

\* “경력란”에는 취업알선, 실업인정, 직업진로지도(성취 등) 또는 피보험자 관리 등의 업무수행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

\*\* “기타란”에는 고용서비스전문가 과정 등 별도 교육사항 등을 추가로 기재

- ▲ 업무 분장표 등 증빙서류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



□ 심층상담 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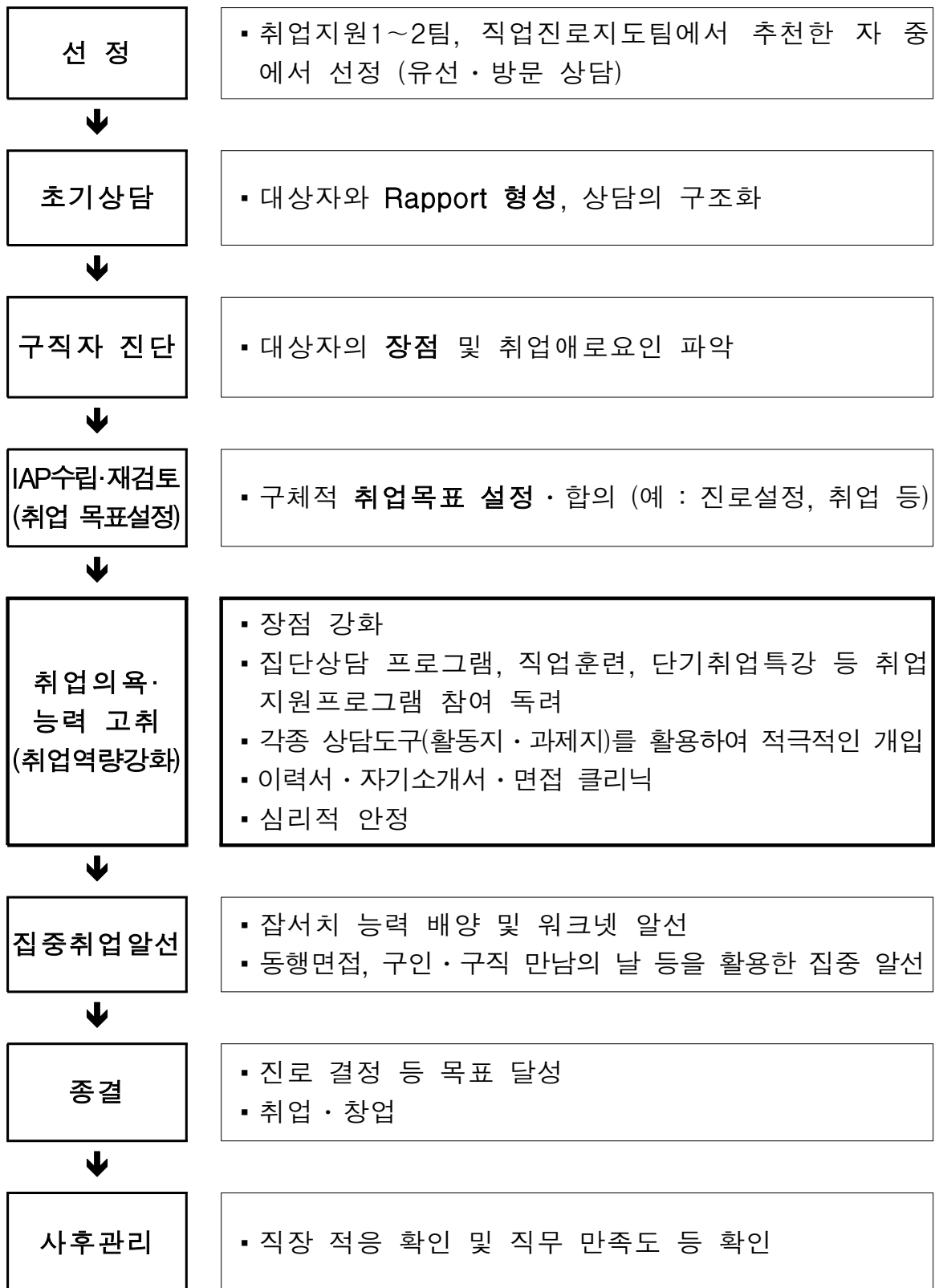
- 실업급여 수급자 A·B 유형 중심으로 취업에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
  - 일반 구직자는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자·장기 구직자 중에서 선정
  -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중에서 밀착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천되는 경우 선정

구분		유형	추천
실업급여 수급자		▪ 초기 상담시 취업의욕·능력·기술이 부족하여 밀도 있는 상담이 필요한 자 (A·B 유형)	취업지원 1팀
일반 구직자	일반 취약계층	▪ 유선·방문 상담시 복합적 취업애로요인을 겪고 있어 밀도 있는 상담이 필요한 자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결혼이민자·북한이탈주민·장기구직자 등)	취업지원 2팀
	프로그램 참여자	▪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집단상담 프로그램, 일자리희망 등) 참여자 중 밀도 있는 상담이 필요한 자	직업진로 지도팀

-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를 심층상담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도록 유의
- 심층상담 대상자 목표 인원
  - (연간) 전담자 1인당 130명 (청종합은 150명)
    - ▲ 청종합 : 300명, ▲ A·B 그룹 : 260명, ▲ C 그룹 : 100명
  - (현시점) 30명 이내
  - (일평균) 최소 4명 이상 실시하여, 일평균 5명 이상
  - (상담인원 분포) 연간 상담인원을 기준으로, 월별로 상담인원을 균등한 비율로 유지

## 라. 심층상담 운영

### <1> 심층상담 업무 기본 프로세스



## <2> 대상자 선정

- 업무담당자가 Work-net을 통해 대상자를 추천하고, 심층상담 전담자가 대상자 최종 선정 원칙
  - **(취업지원1팀)** 최초 실업인정시 상담을 거친 결과 심층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추천
    - \* 실업인정시스템 개편 시범센터에서 실업인정 담당자가 IAP 수립시에 심층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심층상담 전담자와 협의하여 추천과정 없이 즉시 대상자로 선정
  - **(취업지원2팀)** 방문 또는 유선상담 결과 심층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추천
  - **(직업진로지도팀)** 프로그램 진행자나 인소싱 관리자가 심층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추천
    - \* Work-net “구직상담” 아래 심층상담 추천 버튼을 클릭하면 심층상담 요청현황관리로 이동
- 유의사항
  - 센터별 실정을 감안하되, 각종 패키지 사업 참여자를 심층상담 대상자로 선정하여 이중으로 상담내용을 입력하고, 취업실적을 산정하지 않도록 유의
  - 특히, 심층상담 전담자가 직접 패키지 지원 사업 참여자 **홍보·모집하는 행위 금지**

## <3> 상담 회기 및 시간

- 체계적·집중적 상담을 통해 상담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가급적 7회기 이내에 상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
  - 대상자의 취업목표 및 복합적 취업애로 요인 등으로 인해 회기는 유동적일 수 있으나, 가급적 7회기를 넘기지 않도록 유의
- 대상자에 대해 **1회당 60분 내외의 상담 실시**
  - 다만, 집중 취업알선 시기에는 동행면접 등 적극적인 취업알선 서비스도 병행하여 제공

## <4> 심층상담 단계별 조치사항

### ① 초기 상담 (1회기)

- 전담자(상담자)와 대상자(내담자)의 신뢰관계 형성
  - 장기간에 걸친 상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의 신뢰관계(Rapport) 형성이 중요
  - 또한, 심층상담(직업상담)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상담의 구조화\*가 필수
- \* 상담의 구조화 : 상담과정의 본질, 제한조건 및 목적에 대하여 상담자가 정의를 내려 주는 것으로써 대상자에게 상담과정의 바람직한 체계와 방향을 알려 주는 것

### ② 구직자 진단 (1~2회기)

- 대상자에 대한 파악
  - 직업선호도검사, 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하여, 대상자의 흥미·적성 등 이해
  - \* 상담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하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
  - 각종 특성 파악을 위해 진단지 등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태도·가치관 및 개별 특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담 진행
  - 구직자 스스로 장점을 인식하여 직무와 관련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력
- 취업애로 요인 파악
  - 구직자의 욕구가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취업애로 요인을 파악하여 극복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

### ③ 취업 목표 설정 : IAP 수립 및 재검토 (2~3회기)

- 대상자의 개별 특성에 맞는 취업목표를 설정
  - 진로설정 · 직종변경 · 취업(희망직종, 희망임금, 취업목표 기간 등) · 창업 등으로 구분되며, 취업애로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취업 목표에 포함

#### 📁 목표 설정시 참조사항

- 심층상담을 통해 나홀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 보다, “보다 빨리,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집중 하는 것이 중요
- 취업 목표 기간 및 희망 직종 선정시 대상자와 합의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

### ④ 취업 의욕 · 능력 고취 (3~5회기)

- 대상자의 장점 강화
  - 실직기간으로 인해 자신의 장점 · 특기 등에 대한 탐색이 미흡해지고, 미래에 대한 성찰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장점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
  - 상담도구 매뉴얼에 수록된 각종 진단지를 적절히 활용
-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적극 권유 ⇒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피드백 제공
  - 집단상담프로그램 :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를 통해 심리적으로 취업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참여 권유
  -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및 취업특강 : 취업애로요인 파악 · 극복할 수 있도록 단기 프로그램에 참여 권유
  - \* 단기 프로그램은 각 프로그램의 목표가 상이하므로, 효과성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참여목적 · 결과에 대한 상담자의 피드백이 매우 중요

## ○ 직업훈련 참여

- 장시간의 직업훈련을 통해 직무능력 또는 자격요건 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자 직업훈련, 직업능력 개발계좌제 참여를 적극 권유
- 훈련과정 선택 및 추천 시에도 취업과의 연계, 직종 전망 등에 대한 상담 필요

## ○ 취업역량 강화

- 이력서·자기소개서·면접 클리닉을 실시하여 강화
- 잡서치 능력 및 셀프 마케팅이 가능하도록 지원
-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수행하도록 하여 성취감,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

## ⑤ 집중 취업알선 (3~7회기)

### ○ 정보 탐색 강화

- 집중적으로 Work-net 구인정보를 검색하여 알선\*  
\* 구직자에게 유선으로 반드시 구인조건(직무내용, 임금, 업종, 사업장 위치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
- 구직자 스스로 Work-net 및 인터넷 정보검색 외에도,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구인정보를 습득·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코칭

### ○ 동행면접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의 채용행사 적극 활용

- 전담자가 직접 구직자와 함께 동행면접을 실시
- '상설 채용관화'를 적극 활용하여 채용행사 참여 구인업체를 수시로 확인하고, 구직자에게 참석할 것을 안내

## ⑥ 종 결 (7회기)

- 종결은 심층상담의 마지막 단계로서 상담 시작부터 진행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상담을 통해 얻은 성과를 정리하는 중요한 단계로 소홀하지 않도록 주의
- 취업 또는 상담 목표를 달성한 경우 종결
  - 상담 목표 수립시 상담횟수를 제한하거나, 실업급여 종료시 까지 등의 사유로 종결하지 않도록 유의
  - 진로미결정자에 대해 진로결정까지를 상담 목표로 설정한 경우는, 심층상담 종결 이후에도 구직활동에 필요한 사항 및 구인정보 등을 유선이나 E-mail 등을 통해 제공
  - 직업훈련 참여자의 경우는 실업자 직업훈련 종료 이후에 상담을 개시하는 바람직하고, 직업능력개발 계좌제에 참여 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 중에도 심층상담 진행 가능
- 대상자와 상담을 통해 얻은 성과를 정리하고, 종결해야 하는 상황을 충분히 검토
  - 대상자가 해야 하는 과제, 남은 과제 정리, 대처방안에 대한 논의, 추가상담의 가능성에 대한 안내 등으로 마무리
- 부득이한 종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타\*로 종결(중도탈락) 처리
  - \* 건강상 사유, 다른 지역으로 이사, 저항이 심하여 상담진행이 곤란 하거나, 상담예약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등

## ⑦ 사후 관리 (Follow-up)

- 상담이 종결된 직후에는 월 1회 이상 유선이나 E-mail 등으로 직장 적응도 · 만족도 등에 대한 관리
  - 진로결정 · 훈련 · 구직자립 등으로 상담이 종결이 된 경우는 구직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follow up**을 실시
- 상담 진행을 종결한 이후, **180일**까지 취업자 관리 가능
- 심층상담 과정을 통해 취업한 자가 6개월 이내에 조기 퇴직한 후 다시 심층상담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집중 취업알선”을 중심으로 3회 정도의 심층상담 진행

## <5> 대내외 업무연계

### □ 센터 내 업무담당자들과의 업무연계

- 심층상담 전담자 주관 취업지원과 간담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고용지원센터 내의 업무담당자들과의 대상자 추천과 관련한 업무연계 체제 구축
  - 심층상담 전담자는 대상자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이를 조정
  - 특히,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새롭게 심층상담 대상으로 포함된 자들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관 등과 업무협조 관계 형성 및 대상자 선정시 배려

### □ 유관기관과의 업무연계 활성화

- 센터의 심층상담 업무와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심층상담 대상자의 취업애로요인 극복 및 조기 취업 지원
  - '10.1월중에 정신보건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등과 업무협조 관계 형성
  - 특히, 유관기관의 경우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바, 유관기관들의 심리상담과 센터의 취업 관련 심층상담을 조화롭게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

#### 📁 정신보건센터와의 업무연계 (예시)

- 심층상담 대상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심층상담 및 취업지원보다는 정신건강 전문상담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대상자를 정신보건센터로 직접 연계
  - \* 이 경우, 정신보건센터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어 대상자가 거부감 없이 두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 정신보건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은 후, 심층상담 및 취업지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고용지원센터 심층상담 과정 진행

#### 📁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업무연계 (예시)

- 심층상담 대상자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심층상담을 통한 취업지원과 함께 심층상담 기간동안 채무조정 및 신용관리 교육 등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조치



## 마. 심층상담 운영

### □ '10년도 심층상담 전담제 운영 평가 계획

- '10년도 기관평가는 심층상담 전담제를 통한 상담인원, 평균 상담 진행 회기 등에 대한 정량적 평가뿐만 아니라,
  - 심층상담 전담자의 지정요건·업무기간, 심층상담 전담수행 등 이행여부, 심층상담 사례집 발간 등에 대한 정성적 평가도 비중있게 반영할 계획
- \* 평가 배점 및 세부 평가 기준은 별도 시달 예정

### □ 포 상

- 심층상담 전담제 우수 운영자에 대해서는 '올해 고용서비스상' 포상 실시
  - 상담인원, 평균 상담진행 회기, 민원인 호응도(친절카드, 감사 편지 등), 제도 정착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천

### □ 예산 관련

- 분기별 취업지원 및 진로지도 예산 시달시, 심층상담 관련 예산을 포함(심층상담 예산임을 명확히 명기)하여 별도 시달할 예정
  - (청종합) 연간 12백만원 범위 이내
    - \* 사례집 발간 등으로 인해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본부와 협의
  - (지청종합) 연간 2백만원 범위 이내

### □ 워크숍 및 보고사항

- (본 부) 상담 노하우 축적 등을 위한 우수사례 발표회 중심의 워크숍 개최 (연 2회)
- (청 종합) 분기별 전담자 간담회 및 사례발표회(수퍼비전 포함) 개최 후 본부 보고
  - \* 청종합센터는 지청의 진행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 (지청 종합) 센터내 간담회 및 사례발표회(수퍼비전 포함) 개최 후 청종합센터에 보고

담당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4급 최태호, 8급 이상은 ☎ 02-2110-7150

## 2-6. 민간취업기관 지원사업 추진

### 가. 목 적

-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 공공-민간 고용서비스간의 상호 연계·보완을 통해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 및 취업촉진 도모
-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공공·민간 모두의 고용지원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으로
  - 동 사업을 통해 민간부문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 공공-민간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고용서비스 수혜대상 확대 (중점 국정과제)
- \* 고용지원센터 중심(82개) ⇒ 국가-지자체-민간 고용지원 네트워크(1천여개)

### 나. 주요내용

- **(취업곤란 장기실직자 민간위탁)** 고용지원센터의 집중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실패한 장기구직자의 심층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민간에 위탁
  - \* '10년 신규사업으로 총 35억(1,750명, 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 **(취약계층 전담 취업지원망 확충)** 취약계층별 전담 취업지원망을 추가 확대\*하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의 내실을 도모
  - \* 여성·노숙인·건설인력·산업단지('09) + 결혼이민자 전담지원망 추가('10)
-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민간위탁 확대)** 센터 내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다양화 하되, 인력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인소싱을 지속 확대
  - \* 기존 집단상담 프로그램(CAP, 취업희망, 성실, 경력단절여성·제대군인)에 추가하여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직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위탁을 확대

## 다. 세부추진내용

- 사업예산 : 20,194백만원
- 사업내용 :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여성·노숙인·건설인력·산업단지·결혼이민자, 취업곤란 장기실직자 등), 전직지원센터(노사공동재취업센터 포함), 구직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집단상담 인소싱, 집단상담 및 취업알선 아웃소싱 등
- 지원내용 : 사업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건비+운영비 등) 및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 ※ 구체적인 지원금액(한도액 등)은 별도사업계획 시달
- 사업기간 : '10년 1~12월
- 사업추진 절차 : 사업광고·안내·참여기관 모집 → 사업심사 및 사업자 선정 → 위탁계약 체결 → 사업운영 → 사업현황 보고 및 지원금 지급 → 사업평가

### □ '10년도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 예정으로 취업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 취업유형을 구분(일용·상용·정부지원 일자리)하고, 유형별로 각각 목표를 설정 ➡ '상용직' 취업 실적을 대상으로 성과 인센티브 지급
  - ② 수탁기관 고객만족도 상시화 및 결과 피드백
    - '10년부터는 수탁기관별로 상시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 후 그 결과를 분기별로 (지)청으로 보고 ➡ 만족도가 낮은 기관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 등 지도·점검을 강화
- \* 세부 추진계획 및 시행 지침은 '10.1월초 별도 시달 예정

담당 : 고용서비스정책과 5급 김선영, 7급 최충운 ☎ 02-2110-7136

## 2-7. 채용박람회 지원사업 추진

### 가. 목 적

- 민간의 채용박람회 개최지원을 통해 일자리 문제에 관한 민간의 관심제고 및 업종·대상별 특화 박람회 개최 등 내실화 도모
  - 그 간의 전통적인 운영방식은 지양하고,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한정하거나, 취업관련 정보(컨텐츠)를 한자리에 모아 제공하는 특화박람회로 방향을 전환
- ※ 온라인 채용시장이 보편화되고, 지자체·대학·유관기관 등이 경쟁적으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함에 따라 기존 오프라인 박람회의 실효성에 대해 외부기관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 나. 주요내용

- **(취약계층 특화 박람회)** 오프라인 박람회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측면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제고와 신속한 일자리 지원을 위한 박람회 개최가 필요
- \* 여성·장애인·고령자·새터민·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민간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관련 민간기관의 박람회 개최 비용 지원
- **(브랜드 박람회)** 단순 구인·구직자 간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목적이 아닌 취업관련 정보(컨텐츠)를 한자리에 모아 제공하거나, 특정 업(직)종별로 특화하여 취업준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부(고용지원센터)의 인지도 제고를 도모

#### 📁 브랜드 박람회 현황(예시)

- 서울청 잡-페어, 직업진로지도 박람회, 취업컨설팅 박람회, 서비스 산업 취업박람회, 조선업종 일자리 박람회 등

## 다. 세부추진내용

- 사업예산 : 1,661백만원(실버 박람회 420백만원 포함)
- 지원내용 : 민간기관의 채용박람회 개최 및 홍보비용 지원
  - ☞ 각 청별 박람회 개최 수요파악 및 사업계획 심사를 통해 개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 후 청별로 예산 재배정
- 사업기간 : '10년 1~12월
- 사업추진 절차 : 사업공고·안내·참여기관 모집 → 사업심사 및 사업자 선정 → 위탁계약 체결 → 사업운영 → 사업현황 보고 및 지원금 지급 → 사업평가

### □ '10년도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① 청별 고용시장·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되, 본부의 사업취지에 맞게 '10년도 박람회 개최 계획을 수립
  - \* (검토 사항) 취약계층 특화박람회의 대상·규모, 브랜드 박람회 개최가능 여부 및 필요성, 관내 수행가능 민간기관 소재 여부 등
- ② 각 청별 개최 필요성에 의해 수행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 (브랜드 박람회, 부분위탁)은 일정부분(전체 지원금액의 10%범위 내) 사업자의 이윤을 인정 ➡ 역량 있는 민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③ 공모를 통해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인정되어 지원하는 방식 (전부위탁) 경우 매칭펀드를 의무화 ➡ 수탁기관의 책임성 확보 후 사업 추진
  - \* 단,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화박람회의 경우는 매칭 펀드를 면제하여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
  - \* 각 청별 사업수요 파악 후 '10.1월중 세부 추진계획 및 시행 지침 시달

담당 : 고용서비스정책과 5급 김선영, 7급 최충운 ☎ 02-2110-7136

### 3. 실직자, 근로빈곤층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 3-1.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 가. 목적 및 취지

- 실업급여는 사업주의 사정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직한 자에게 재취업 노력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
- 실업급여는 제도 취지에 맞는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부여
  - 같은 이직사유에 대하여 센터별 또는 담당자별 수급자격이 달라지는 사례 방지
  -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이 가능한 경우에 수급자격을 부여

##### 나. 세부추진 계획

- 실업급여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는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시 정확한 판단에 역점
  -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정확하게 적용
    - \* 각 센터의 수급자격신청 불인정률 편차가 너무 심함
- 고용보험법 제58조 수급자격 제한사유 해당자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은 신중히 결정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이직자 또는 장기근속하고 전직 또는 자영업 경영을 위하여 이직하는 자가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신고하는 행위 차단
    - \* '09.11.9 시달한 “사업주 권고에 의한 이직의 수급자격인정 업무처리 지침”을 숙지하고, 피보험자관리팀의 협조를 받아 처리
    - \* 통계청 비경활인구 대상자가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는 다음 판단요령에 따라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되, 특히 이직을 회피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불가피성 여부를 판단

### <자발적 이직자 수급자격인정 여부 판단요령>

자발적 이직자의 수급자격 요건을 판단할 때는 첫째 “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바, 법 제40조 제2호 근로의 의사의 능력이 있는 자인가, 같은 제4호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인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고, 둘째 이직을 회피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면 이직의 불가피성(정당한 사유)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니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판단

“정당한 사유”라 함은 피보험자의 상황(건강상태, 가정사정 등)·사업장의 상황(근로 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등) 기타 상황으로 보아 그 이직이 진실로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주관적 판단은 고려하지 않음이 원칙

- 1)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 즉 담당자가 그 경우라면 이직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되, 이직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이직 회피노력) 불가피성이 인정되나, 휴가·휴직·직종 변경 등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도 사표부터 제출한 경우에는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음
- 2) 과거 고시로 규정하였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시행규칙으로 법제화되면서 고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던 사항이 일부 포괄적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신설된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2」를 적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과거 고시 내용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완화된 시행규칙을 적용
- 3) 취업 당시와 이직 당시의 상황이 같거나 또는 상태나 상황 변동이 있었다라도 일정기간(3~4개월 이상)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평온한 상태로 근무하다가 돌연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등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곤란함으로 불가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 4) 사업주나 이직자가 주장하는 것(외적인 이직사유) 만으로 불가피성 또는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아니되고 내면에 숨겨진 이직의 진정성을 파악하여 처리
  - \* 가령 권고사직, 육아휴직, 성희롱 등으로 이직한 경우 겉으로 들어난 사유와 달리 그 내면을 살펴보면 일하기 싫어서 그만두면서 사실과 다르게 이유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5) 어떤 경우이든 주장만으로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판단해서는 아니되고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판단
  - \*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이직이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참고인 등을 불러 진술조사를 받아 입증하는 방법으로 처리
- 6) 1~12호에 해당하는 자발적 이직자의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13호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모두 들어있으나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
- 7) 수급자격 인정의 판단이 명확한 것은 담당자가 직접 처리하고, 판단이 어려운 것은 실업급여 협의회에 상정하여 처리
  - \* 실업급여 협의회의에 상정할 때는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조사 자료도 함께 제공

- 지방노동관서 점검과정에서 지적이 많았던 부상·질병, 산재 보험 수급, 임금체불, 원거리 통근" 등에 대한 수급자격 판단은 2009.10.15 시달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준수
- 6개월만 근무하고 이직한 자(월급, 기간제근로자, 인턴 등)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
  - \*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 바 ①근로한 날, ②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된 날, ③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 임금을 지급받은 날만 포함됨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피보험이력을 소급신고한 기간이 150일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조직적 부정수급 여부를 검토
  - 피보험이력을 소급 신고한 기간이 긴 신청자에 대해서는 유령기업(Paper Company) 또는 임금체불업체(특히 체당금 신청업체) 소속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 의심이 되는 경우 부정수급 담당자에게 통지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함께 조사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인가 여부 판단

- ◆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실업인정, 부정수급 조사 등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점에서 **취업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활동(구직활동)이 가능한 자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임
-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라도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이 증명된다면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수급자격이 있는 것이고
  -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냈더라도 실제 영업을 영위하였다면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수급자격이 없다고 할 것임
-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자는 수급자격이 있는 것이지만, 임대사무실을 둔 경우 등은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수급 자격이 없는 것임



- ◆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대상이 아님
- ◆ 실업급여 수급자가 명예 또는 무보수직이라고 하더라도 사회활동 책임자 또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의 직책을 맡게 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것이라면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대상이 아님

## 다. 행정사항

- 수급자격 여부의 판단이 명백한 것은 수급자격자가 처리하되, 논의가 필요한 것은 실업급여 협의회에서 결정
  - \* 실업급여 협의회에 상정할 때는 위원이 수급자격 여부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초조사자료(담당자 의견 포함)를 첨부
- 수급자격 판단은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경력자 위주로 배치하되, 충분한 교육을 거쳐 업무능력이 갖춰진 자를 배치
  - 사례중심 교육이나 토론회 등을 월 1회 이상 실시
- 수급자격 불승인률이 1.0% 미만인 센터(실업인정 불인정률은 0.30%)는 수급자격인정 및 실업인정개선대책을 연 2회 마련하여 시행
  - 실업급여 관련 직원 및 단체 표창이나 성과평가 등에 불승인률 적극 반영(본부, 지방)

담당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4급 황선범, 6급 양동철 ☎ 02-2110-7145

## 3-2. 연장급여 제도 운영 활성화

### 가. 목적 및 취지

- 재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고 60일간 개별연장급여 지급
-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취업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훈련기간 훈련연장급여 지급
- 경기가 회복되고는 있으나 고용시장은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  
이므로 재취업이 어렵고 생활도 어려운 수급자에 대해서는 연장급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 나. 세부추진 계획

#### <1> 개별연장급여 제도의 적극적 활용

- “재취업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다음 제도개선(시행령 개정 2010. 1월 중) 내용에 따라 처리
  -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
  -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나 받지 못하였거나 받고 있지 아니한 자
- ⇒ 개정안 : 3회 이상 직업소개에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나 받지 못하였거나 받고 있지 아니한 자는 삭제
  - \*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만으로 직업소개 3회인 경우는 불인정
-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 다음 완화된 지급기준(시행령 개정 2010. 1월 중)에 따라 처리

- 부양가족에 ①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②장애인고용 촉진및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 ③1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
    - ① 이직전 평균임금이 58,000원 이하인 자
    - ② 부부합산 재산이 1억원(주택건물이 있는 경우 부부합산 재산세액이 70,000원) 이하인 자
- ⇒ 개정안 : 부양가족에 18세 이상 자녀로서 학업중인 자와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포함
- \* 소득이 없는 배우자라 함은 월 소득이 48만원 미만(단시간근로자로서 실업인정 대상자 기준을 준용)인 자를 말함

## <2> 훈련연장급여 활성화

- 직업능력이 부족하여 재취업이 안되는 수급자로서 다음 훈련연장급여 수급요건 해당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훈련지시
  - ①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것
  - ②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더라도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③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 ④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하였을 것('08.4.30. 신설)
- '09.6.22. 시달한 훈련연장급여 시행지침을 참조하여 훈련연장급여 활성화

-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한 경우에 개별연장급여와 같이 심층상담 및 집단상담을 포함(시행규칙 개정 진행)
- 특히,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지시 우선고려대상자('08.4.30. 고시 '08.7.1)에 대해서는 담당자 직권으로 훈련지시
  - i) 재산합계액이 개별연장급여 지급기준 해당자로서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으로 6개월 이상 근로한 경력이 있는 가장
  - ii) 중증장애인
  - iii)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받아 이직한 자
  - iv) 그밖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다. 행정사항

- 각 고용지원센터별로 연장급여 담당자 지정 운영
  - 연장급여 (기능)담당자 1인을 지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여 활성화를 유도
- 훈련지시 대상자는 훈련기관 훈련생 선발시기(3~4월, 8~9월) 등을 고려할 필요
  - \* 센터별 훈련연장급여 목표 : A그룹 30명, B그룹 20명, C그룹 10명
  - 그룹 구분은 기관평가 기준에 따름
- 개별연장 및 훈련연장급여 처리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또는 표창시 가점 부여(본부, 지방)

담당 : 고용지원실업과 4급 황선범, 6급 양동철 ☎ 02-2110-7145

### 3-3. 실업급여 부정행위 방지업무 수행

#### 가. 목적 및 취지

- 건전한 고용보험 운영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실업급여의 부정행위 예방 및 적발을 강화
- 적극적인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위하여 '08.8.7 「부정수급 종합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
  - 부정수급조사팀 및 조사관 임명, 자동경보시스템 가동, 부정수급교육용 CD개발 활용 등
- 피보험자수의 및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 등에 비례하여 부정수급 적발자 및 부정수급액 규모도 계속 증가
  - \* '05년 9,743명 38억원 → '06년 11,754명 42억원 → '07년 15,559명 108억원 → '08년 19,133명 87억원 → '09. 10월 21,757명 81억원

#### 나. 현황 및 문제점

- '07. 3월 브로커가 개입된 조직적·지능적 부정수급사건을 계기로 부정수급 종합방지대책('07. 8월)을 마련하여 시행 중
  - ①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07.7)하고 보완('07.12월) 및 새로운 유형을 추가('09.4월)하여 운영
  - ②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사업자등록 등과 연계하여 중복수혜 조사('04년)
  - ③ 부정수급 조사전담팀 설치(6개 노동청) 및 조사관(41개 지청, 3명 이상) 배 ('07.12)
  - ④ 실업급여 수급자의 2% 무작위 선정·조사('07.12)
  - ⑤ 교육원에 부정수급 담당자 교육과정 신설·운영('08.3월)
  - ⑥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증액(부정수급액의 10% → 20%,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08.4)

- ⑦ 실업급여 수급자 대상 부정수급 예방교육 CD 제작·배포 ('08.7)
- ⑧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업무처리규정 정비 ('08.7)
- 다양한 실업급여 부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전문 인력 부족으로 예방 및 적발에 한계
  - '07. 12월 이후 최소 6개청은 5명, 지청은 3명의 부정수급 전담자를 임명하도록 하였으나, 실업급여 수급자 과중 등으로 제대로 운영하는 지방관서가 없고
  - 부정수급 담당자도 수시 인사 교체되어 전문성(노하우)이 부족

#### 다. 세부추진 계획

##### <1> 부정수급 전담 조사관 인력 확보 및 역량 강화

- 부정수급 조사관은 본부 지침대로 최소 인력을 배치·운용
- 부정수급 조사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근로감독관 경력자 임명, 잦은 전보인사 자제 등 인사운용에 신중
- 부정수급 조사관은 노동교육원 부정수급 조사과정 교육이수

##### <2>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업무는 체계적으로 수행

- 매년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시행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근무할 수 있는 사업장을 발굴하여 연 2회 정기점검 실시

\* 점검목표 : A그룹 30개소, B그룹 20개소, C그룹 10개소

(그룹 구분은 기관평가 기준에 따름)

- 각 사업팀의 정기점검과 별도로 추진하되, 점검대상·일정 등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
- 외부로부터의 신고·제보·이첩 받은 부정행위사건은 지능적 조직적 범죄와 연결성 여부도 함께 검토

-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정기운영은 5월, 10월)
-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시)
- 「부정수급 조사관」이 사업장에 출장할 때는 증표를 소지
- 기타 부정수급 업무 총괄(교육·홍보·송무·포상·통계 등 각종 행정 및 부대업무)

#### <3>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 업무 정교화

- 본부는 자동경보시스템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지방 관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면서 보다 정교한 개선안을 수시 제시
- 사업팀은 자동경보시스템의 사전 경보되는 사항 위주로 처리, 부정수급 전담자는 사후경보 사항 위주로 처리하되,
  - 사업팀과 부정수급조사관의 긴밀한 협력적 관계를 유지

#### <4> 실업급여 부정행위 조사매뉴얼 등을 활용한 직원 교육

-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기법 개발 보급 ('09. 12월)
- 수급자격인정, 실업인정 담당자도 함께 교육 실시

### 라. 행정사항

- 부정행위 조사매뉴얼은 2010. 1. 1부터 시행
  - 과거 규정과 매뉴얼의 내용이 다른 과태료 부과,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자(피보험자격)에 대한 부정수급 처분 등

담당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5급 황선범, 6급 양동철 ☎ 02-2110-7145

### 3-4. 저소득층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실시

#### 가. 목 적

- ‘자활사업’ 대상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도모

#### 나. 주요내용

\* 구체적인 내용은 '09.12월 중 『2010년 저소득층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시달 시 확정

#### ○ 지원대상자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차차상위계층)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 \* 자활사업 대상자 포함

#### ○ 지원대상자 요건

- 정책대상(저소득 근로빈곤층)의 개념적 특성 및 제도취지(취업촉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관련 적정요건 설정

#### ○ 취업지원

-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 통합적 취업지원 실시
- \* 진단·경로 설정(1단계) → 의욕·능력 증진(2단계) → 집중 취업알선(3단계)
- \* 일부인원에 대해서는 취업지원 ‘쏠 과정’ 내지 3단계 위탁 실시

#### ○ 취업지원 중단 및 유예

- 불성실한 프로그램 참여 등 일정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중단하되 본인의 질병·부상, 임신·출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일정기간 취업지원을 유예

#### ○ ‘취업성공수당’ 등 지급

- 프로그램 참여자 중 ‘취업’에 성공한 자’로서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백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 아울러, 지원대상자로서 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하여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월 20만원의 ‘참여수당’ 지급



## 다. 추진계획

-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추진
  - 저소득층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종합적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09.12)
    - \* 단계별 취업지원 운용계획, 직업훈련 참여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지급기준, 교육·홍보, 전산시스템 기능 보완 계획 등 포함
  - 특히, 새로이 도입·시행되는 직업훈련 '참여수당' 및 취업지원 '전 과정' 위탁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세부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 사업 운영 관련 지침 및 업무매뉴얼 개정·배포
  -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단계별 프로그램 운용' 및 직업훈련 '참여수당'·'취업성공수당' 지급' 등 주요업무별 세부지침 개정·시달
    - \*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지침, 단계별 프로그램 운용에 관한 지침, 직업훈련 '참여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 '취업성공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 취업지원 '전 과정' 등 민간위탁사업 운용에 관한 지침 등
  - 아울러, 주요업무별 지침 등을 토대로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매뉴얼'을 제작·배포('10.1)
-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추진기반 및 여건 조성
  - '09년도 사업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전산시스템 기능 보완
    - \* 단계별 세부 프로그램 운용 관련 업무담당자 시각에서 시스템 운용을 체계화하고, 시스템의 전면 개편 추진(한고원, 별도사업 추진)
  -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사업취지와 주요내용 등에 대한 관계자(민간위탁기관 관계자 포함) 교육 및 정책대상의 생활특성 등을 고려한 다차원적인 전략적 홍보\* 실시
    - \* 연중 상시적인 성공사례 발굴을 통한 사례 연계형 홍보 강화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 추진과정 모니터링
  - 사업추진의 합리적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실시

## 라. 행정사항

### ○ 사업 운용 관련

- 사업의 원활한 시행 위한 「취업성공 패키지」 TF 구성·운영 (본부-지방)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운영 관련 「주요업무 추진지침」, 「업무매뉴얼」 작성·배포(본부)
- 일부 프로그램(취업지원 소 과정, 취업알선) 민간위탁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본부) 및 위탁기관 관리(본부-지방)
  - \* 위탁사업 운용 지침 마련을 통한 위탁사업 추진일정 확정 등
- 사업 시행 이후, 지방관서 업무담당자 및 위탁기관 관계자 대상 교육 및 관계자 워크숍 개최(본부)
  - \* 취업지원 소 과정 위탁사업 시행 전, 위탁사업 실시지역 업무담당자 및 위탁기관 관계자 대상 합동 워크숍 개최

### ○ 전산시스템 기능 보완

- 새로이 도입·시행되는 사항\* 관련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기능 보완 (본부-한고원)
  - \* 직업훈련 '참여수당' 지급, 취업지원 전 과정 민간위탁 실시 등

### ○ '홍보' 실시 관련

- 정책대상인 저소득층의 특성을 감안한 다차원적인 '홍보' 계획 수립·추진 (본부-지방)
-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에 대한 연중 상시적 홍보 실시를 위한 '턴키용역' 추진 (본부)
-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6개 지방청 주관 홍보 실시(지방)

### ○ 사업의 정책적 효과성 분석 등 정책연구용역 실시

- 사업추진의 정책적 효과 분석('09년도 참여자 대상 분석 포함) 등 정책연구용역 추진 (본부)

## 마. 추진일정

- 「세부추진계획」 수립('09.12), 「주요업무 추진지침」 마련 및 「운영매뉴얼」 제작 ('10.1)
-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시스템 기능 보완 및 전면 개편 추진(연중)
- 업무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및 관계자 워크숍 개최(필요시)
- 민간위탁 사업 관련 위탁기관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10.1)
- 사업추진 관련 현장 지도·점검 및 민간위탁기관 점검(상시)
-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의 정책적 효과성 분석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0.3 ~ '10.11)
- 우수 성공사례 발굴(상시)·선정('10.7월, 12월) 및 사례 연계형 홍보 등 다차원적 실시(상시)

담당 : 고용서비스정책과 4급 김형광, 5급 류해종, 8급 박민수 ☎ 02-2110-7149

## 4. 민간 직업안정기관의 활성화 및 지도감독 강화

### 4-1. 국외 유·무료 직업소개소

#### 가. 목 적

- 직업소개 관련 각종 부조리를 예방하여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

#### 나. 추진방향

- 유·무료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감독강화로 운영의 내실화 도모
-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으로 단속활동의 실효성 제고
- 직업소개부조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구직자 피해 사전 예방

#### 다. 세부추진 계획(국외 유·무료직업소개소 관련)

- 단속시기 : 정기단속(분기별 1회) 및 수시 단속
  - ※ 언론보도 또는 접수된 피해민원 내용 등을 토대로 단속이 필요한 경우 수시 단속
- 단속대상 : 등록·무등록 직업소개소
  - ※ 해외이주알선업체 중 등록하지 않고 국외유료직업소개행위 집중단속
- 단속방법 : 필요시 지자체 및 경찰 등과 합동단속 실시
- 직업소개부조리 신고창구 설치 및 전담자 지정
  -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직업소개부조리 신고창구」 설치 및 직업소개 부조리 업무전담자 지정 운영
  - 설치대상 : 종합고용지원센터

- 직업소개부조리 예방을 위한 홍보강화
  - 언론, 홍보매체, 반상회 및 취업정보지를 통한 홍보
  - 직업소개사업자 및 관련 공무원 교육
- ※ 직업소개사업자 등 교육훈련계획을 수립 시달 예정('10.2월초)

#### 라. 행정사항(본부·지방)

- 정기점검, 사전감독, 법령홍보 등 법령 위반 행위 사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의법 조치

담당 : 고용서비스정책과 5급 권혁정, 7급 최수진 ☎ 02-2110-7141

### 4-2. 거짓구인광고

#### 가. 목 적

- 거짓구인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구인광고 이용 구직자 보호

#### 나. 추진방향

- 집중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피해의 사전예방 및 단속
  - ※ 거짓구인광고 단속지침 시달 예정('10. 2월중)
- 피해신고에 대하여는 철저한 추적조사 및 처리강화
- 사이버를 통한 거짓구인광고의 단속강화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피해자의 신고유도

#### 다. 세부추진 계획

- 대상 : 관내 생활정보지, 직업정보지 및 일간지 등에 게재된 구인광고, 옥외부착광고 및 인터넷에 게재된 구인광고
- 시기 : 월 1회 주기적으로 5~6일간 실시
- 단속방법 : 모니터링 실시결과를 현장실사 등을 통해 확인
- 사전예방 홍보강화
- 거짓구인광고 신고창구 설치 및 전담자 지정
  - 설치대상 : 종합고용지원센터

#### 라. 행정사항(지방)

- '10년도 실시되는 거짓구인광고에 대한 단속 결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의법 처리

담당 : 고용서비스정책과 5급 권혁정, 7급 최수진 ☎ 02-2110-7141

### 4-3. 근로자공급사업

#### 가. 목 적

- 근로자공급사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근로자 공급사업의 건전한 육성 도모

## 나. 세부추진 계획

- 점검대상 :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사업체(국내 및 국외공급사업체)
- 점검주기 : 연 1회 이상, 필요시 수시
- 점검방법 : 현지 출장
- 점검사항
  -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 받는지 여부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행위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공급하는지 여부
  - 국내의 경우 노동조합원 이외의 자 및 국외의 경우 실연심사를 거치지 않은 근로자를 공급하는지 여부
  - 공급사업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지 여부

## 다. 행정사항(본부·지방)

- 근로자공급사업 신규 허가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 신중히 처리토록 하고, 필요시 본부와 사전협의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규정에 의거 상용화 체제로 개편되는 항운노조 소관관서는 노사정 세부 협약내용 등 수시 본부 보고

담당 : 고용서비스정책과 5급 권혁정, 7급 최수진 ☎ 02-2110-7141

#### 4-4. 신고포상금제

##### 가. 목 적

- 불법직업소개 또는 거짓구인광고 등을 한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

##### 나. 추진방향(본부·지방)

- 직업안정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신고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
- 직업안정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조치 등과 함께 신고인에게 처리결과 통보 및 신고포상금 지급
  - 징역형,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 검찰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 유예 처분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함을 안내
    - ※ 불법직업소개등 신고포상금제 운영규정(노동부고시 제2007-34호, '07.08.08) 준수
- 신고자의 신원이 유출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안철저

##### 다. 세부추진 계획

###### (1) 신고대상(본부·지방)

-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규정된 허위의 구인광고
-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폭행·협박 또는 감금 기타 정신·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나 미수에 그친 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성매매 행위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와 미수에 그친 자

## (2) 신고 접수기관

- 거짓구인광고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및 시·군·구청
- 불법 직업소개
  - 국내직업소개 관련 : 시·군·구청
  - 국외직업소개 관련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 거짓 구인광고 및 불법직업소개 관련 고소·고발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 (3) 포상금 지급기준

- 직업안정법 제34조위반 행위 신고 또는 고발 : 40만원
-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 제1호·제2호 해당행위 신고 또는 고발 : 100만원(동일인에 대한 지급상한액 300만원)

## (4) 포상금 지급시기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고발대상(징역형, 벌금형 등)인 경우 검찰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처분 후 신청 가능 :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신청 가능 :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조치에 준해서 지급

(5) 포상금 지급방법 : 신고자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포상금 지급기관: 지방노동청(지청)

#### 라. 행정사항(본부 · 지방)

- 본부 및 각 지방노동청(지청) 등은 연간 운영계획 및 홍보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종합평가 실시
- 지방노동청(지청) 및 시·도는 “불법직업소개행위 등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현황”을 매 반기 익월 10일까지 노동부 본부(고용서비스정책과)에 보고

담당 : 고용서비스정책과 5급 권혁정, 7급 최수진 ☎ 02-2110-7141

### 4-5.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가. 목 적

-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직업소개, 직업상담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 고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간고용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

#### 나. 추진방향(본부 · 지방)

- 직업안정법령에서 규정하는 교육훈련의 내용·방법 및 시간준수

- 최근 고용지원센터의 업무량 증가로 인한 업무과부하로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수행
- 직업소개종사자의 전문성확보를 위한 참여 식 교육 강화

#### 다. 세부추진 계획

- (1) 대상 : 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 ,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근로자파견사업자, 관련협회종사자 등 15,000여명
- (2) 관련근거 : 직업안정법 제40조의 2 및 시행규칙 제44조의2
- (3) 교육기관 :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수행
- (4)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육시간 : 4시간(온라인교육 1시간 포함)
  - 강 사 : 한국고용정보원연구원, 관계 공무원(지방자치단체 공무원포함) 및 전문가등 일정요건을 갖춘 자
  - 교과목 : 직업소개제도, 직업상담실무, 직업정보관리, 직업윤리의식 등

#### 라. 행정사항(본부·지방)

- 각 지방관서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소개사업자 등 종사자 교육 시 지방언론기관과 관내 생활정보지에 보도 자료를 작성 배포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 각 지방관서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전문기관의 교육 진행시 지역 내 직업소개기관 등에 공문 시달 등 적극 홍보 및 협조

담당 : 고용서비스정책과 5급 권혁정, 7급 최수진 ☎ 02-2110-7141

## 4-6.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 가. 목 적

- 구인·구직자에 대한 서비스향상에 기여하는 우수한 민간 고용지원서비스 업체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업체에 대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동기 부여

### 나. 추진방향(본부)

- (1) 한국고용정보원(고용지원서비스 평가센터)에 인증사업 운영을 위탁 수행
  - ※ 우수기관 인증업무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 인증기준·인증방법 등 필요사항은 노동부령에 규정
  - ※ 인증취득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노동부고시 제2007-33, '07.08.08)」에 규정
- (2) 인증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인증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비상설기구로 설치, 인증기업 및 인증기준 등 심의 결정
  - ※ 15인 이내의 노·사·정·민간 대표로 인증위원회 구성('07.10.26)
- (3) 현장심사 등을 위해 고용서비스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고 있는 자들로 평가위원 인력Pool을 구성하고, 이 중에서 선별하여 평가단을 구성(정부, 학계, 관련업계 대표 등)

### 다. 세부추진 계획

- 인증주체 및 대상

- 노동부장관 명의로 인증을 부여하며 , 노·사·정 및 민간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가 심의기구로 참여
  - ※ 서비스품질 우수기업(산업자원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노동부)의 경우도 장관 명의
-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안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 ※ 인증대상은 직업안정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심사 방법 및 기준

- 신청서 접수 후 서류심사 평가기준에 의거 항목별로 평가하고 서류심사 합격 시 현장실사 대상 업체 선정
- 인증 취득기준은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인증유형에 따라 각 영역별 50%이상 및 총점의 70%이상을 득점하여야 하며 현장실사의 통과기준점수는 인증위원회에서결정
  - ※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인증제 운영규정 제10조 규정

○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본부·지방)

- 3년간 인증마크사용, 우수기관에 대하여 정부포상, 교육훈련, 연수 등에 우대, 정부의 고용지원관련 공동사업 및 위탁사업 참여시 우대, 고용지원센터 시설이용 및 정보망연계, 고용 관련 정보 및 자료지원
  - ※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인증제 운영규정(노동부고시 제2007-33호, '07.08.08) 제15조(우대조치)

- 인증서 부여 시 우수사례 보고대회 등을 개최하고 언론사 브리핑, 홍보책자 제작, 노동부 홈페이지 공표 등을 통해 홍보

**라. 행정사항(본부)**

- '10년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인증제 사업추진계획 시달예정('10.1월중)

담당 : 고용서비스정책과 5급 권혁정, 7급 최수진 ☎ 02-2110-7141

## 4-7.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기관 지원

### 가. 사업목적

- 「고용지원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09.5. 8발표)」에 따라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기관에 대한 집적정보통신시설\*이용대금 지원을 통해
  - 민간고용서비스업계의 인증제 참여 동기 부여 및 이를 통한 민간 기관의 투명한 운영등 서비스 질 개선 도모

### 나. 지원대상

-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제 인증대상 기관
  - ※ 08년 19개사, '09년 11개사등 30개사

### 다. 지원내용

-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기관에 대한 집적정보통신시설\*이용대금 지원
  - ※ 3,000천원 \* 1회 \* 39('08년 19개사, '09년 11개사)
  - \* “집적정보통신시설”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의 위탁을 받아 컴퓨터장치 등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이하 “정보시스템 장비”라 한다)를 일정한 공간(이하 “전산실”이라 한다)에 집중하여 관리하는 시설을 말함

### 라. 지원절차 <인증기관 이용대금 지원>

- 사업계획수립
- 보조금 신청안내(지방관서→인증기관)
- 신청서 검토 및 보조금 교부
- 이행여부 확인 및 실적보고

### 마. 행정사항(본부)

- 시행계획 별도 시달예정('10. 1월중)

담당 : 고용서비스정책과 5급 권혁정, 7급 최수진 ☎ 02-2110-7141

## 5.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지원

### 5-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사업장 중점관리

#### 가. 목 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사업장에 대한 체계적·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신고누락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 나. 중점관리사업장의 유형

유 형	대상사업장
근로내용 미신고 건설현장	· 전전월 이전에 보험관계 성립된 사업장중 당월 1일 현재 일용 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이력이 전혀 없는 건설현장(하수급 포함)
피보험자격 미신고 사업장	· 전전월 이전에 보험관계 성립된 사업장 중 당월 1일 현재 피보험자격 신고이력(상용 및 일용)이 전혀 없는 사업장 (건설현장 제외)
1년간 전원 상실 사업장	· 보험관계 성립사업장 중 피보험자격이 전원 상실되어 당월 1일 현재 최근 1년간 피보험자가 없는 사업장
타사회보험 대비 신고누락추정사업장	· 당해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에는 자격 신고 되어 있으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상용 및 일용)는 되어 있지 않은 자가 있는 사업장
근로소득지급조서 대비 신고누락추정사업장	·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조서 신고 되어 있으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는 되어 있지 않은 자가 있는 사업장
피보험자가 있는 소멸사업장	· 전전월 이전에 보험관계 소멸된 사업장중 당월 1일 현재 상실 신고되지 않은 피보험자가 있는 사업장

#### 다. 중점관리사업장의 선정

근로내용 미신고 건설현장 및 피보험자격 미신고 사업장

- 고용보험전산망 자료를 활용하여 월단위로 생성

- 당월 1일 00:00~06:00까지 전산망을 통해 생성 작업

\* 예시 : 3월 성립사업장은 법정 신고기한인 4.15일 이후인 5월부터 중점관리사업장에 포함됨

□ 1년간 전원상실 사업장

- ①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보험전산망 자료를 활용하여 고용보험 성립사업장 중 피보험자격이 전원 상실되어 매월 말일 현재 최근 1년간 피보험자가 없는 사업장을 생성(월별)
- ② 위 사업장 명단을 매월 고용보험전산망에 공지
- ③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위 명단 중 해당 사업장에 대해 피보험자 존재 여부를 확인
  - 최근 1년간 피보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관계 소멸 조치토록 통보
  - 최근 1년간 피보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신고를 접수하여 입력
    - ※ 사업주의 연락두절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사회보험 취득 여부, 해당 근로자의 진술 등을 확인하여 직권처리

□ 타 사회보험 대비 신고누락 추정사업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로부터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 자료를 송부 받아 고용보험 자료와 대사하여 월단위로 생성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자료 수령(매월 25일)
  - 고용보험 자료와 대사하여 대상사업장 및 근로자 명단 생성

□ 근로소득지급조서 대비 신고누락 추정사업장

- 국세청으로부터 미신고사업장에 대한 근로소득지급조서 자료를 송부 받아 대상사업장 명단 생성(매년 9월, 연 1회)

□ 피보험자가 있는 소멸사업장

- 고용보험전산망 자료를 활용하여 월단위로 생성
  - 당월 1일 00:00~06:00까지 전산망을 통해 생성 작업
    - \* 예시 : 3월 소멸사업장은 법정 신고기한인 4.15일 이후인 5월부터 중점관리사업장에 포함됨



## 라. 중점관리사업장의 등재 및 처리

- 당월 1일 중점관리사업장 명단을 고용보험전산망에 등재(한국고용정보원)

## 마. 중점관리사업장의 갱신

- 중점관리사업장 명단은 당월 1일 00:00시 기준으로 신규 생성됨
  - 전월 중점관리사업장 중 '제외사업장', '신고사업장'으로 처리된 사업장은 당월 중점관리사업장에서 제외됨
    - \* 제외사업장은 중점관리사업장 관리화면에서 제외사유가 입력된 사업장임
    - \* 신고사업장은 당월중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된 사업장임 (관리화면에서 별도 입력하지 않아도 됨)
  - 전월 중점관리사업장중 미처리된 사업장은 전월 말일 기준으로 미처리 상태로 종결처리되고, 당월 중점관리사업장으로 다시 생성됨

## 바. 행정사항 : 중점관리사업장 업무처리요령

### ① 중점관리사업장 조회 및 안내문 발송

- 고용보험전산망에서 유형별 중점관리사업장 조회
- 피보험자격 신고안내문 발송
  - '08.10월부터 중점관리대상 사업장 중 근로내용미신고 건설현장, 피보험자격신고누락 사업장, 타사회보험대비신고누락 추정사업장에 대한 안내문은 본부에서 일괄 발송 중
  - 기타 중점관리대상 사업장 조치는 전년도 기준에 따라 각 센터별 처리

## ■ 첨부서류

-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 또는 건설일용근로자 확인서(근로내용 미신고 건설현장의 경우)
  - ※ '1년간 전원상실 사업장'의 경우에는 확인서 첨부 불요
- ② 신고누락 추정자 명단(타사회보험 대비 신고누락 추정사업장, 근로소득지급조서 대비 신고누락 추정사업장의 경우)
  - ※ 취득누락 추정사업장 조회화면에서 출력
-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식 각 1부

## ② 취득신고 또는 관리대상 제외 처리

-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 통상적인 취득 신고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
  - \* 취득신고 처리된 사업장은 당일 저녁 업데이트되어 자동으로 중점 관리사업장에서 제외됨 → 다음 날부터 조회 가능
-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 고용보험전산망에 제외사유 및 구체적 사유를 기재
  - 반드시 현장방문 또는 유선확인 등을 통해 대상 근로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사업주로부터 '피보험자 확인서'를 제출받아 처리
  - 구체적 사유란에는 확인일과 확인방식을 기재
    - 예시 : 0월 0일 확인서 접수 → 0월 0일 현장방문 확인
  -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종결처리되지 않고 계속 중점관리사업장으로 남게 됨
    - \*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면 즉시 중점관리사업장 명단에서 제외됨

③ 피보험자격의 직권취득 조치

- 관리대상 제외사업장이 아니고,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도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유선확인 등을 통해 신고 대상 근로자의 존재여부 확인
  - 신고 대상인 근로자가 있음에도 사업장에서 미신고하는 경우 직권확인을 통해 피보험자격 취득 조치하고 확인통지서 발송
  - 통지서식
    - ▲사업주 :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21호 또는 제23호 서식)
    - ▲근로자 :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22호 또는 제24호 서식)
- \* 직권취득 조치 된 사업장은 당일 저녁 업데이트되어 자동으로 중점 관리사업장에서 제외됨 → 다음 날부터 조회 가능

④ '근로소득지급조서 대비 신고누락 추정사업장'에 대한 조치

- '근로소득지급조서 대비 신고누락 추정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직권취득 조치한 자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권취득 조치시 직권상실 조치를 병행하여 처리
  - ① 귀속년도 종료일 이전 근로소득대상기간이 종료된 자 → 근로소득대상기간 종료일 다음날로 직권상실 조치
  - ② 사업장의 소재불명 등으로 공문이 반송되고, 사업을 계속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 소속인 자 → 귀속년도 종료일 다음날로 직권상실 조치

담당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7급 정동준 ☎ 02-2110-7235

## 5-2.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외주입력 관리 철저

### 가. 목 적

-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의 외주입력을 통해 단순 전산 입력업무 경감 및 피보험자 관리업무의 내실화 도모

### 나. 세부추진 계획

#### □ 외주입력업체 선정 및 계약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외주입력 보안업무 처리요령」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중에서 각 센터 단위로 선정·계약 체결
  - 여건에 따라 청 또는 지청 단위로 선정·계약체결 가능
- 계약은 「기술용역표준계약서」를 참조하여 체결

#### □ 입력준비사항

- 입력작업은 고용지원센터내에 입력실 등 별도의 입력 공간을 마련하여 수행
  - \*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청별 단위의 설치도 가능
- 입력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온라인망 구축, PC·캐비넷 등 물품·비품은 원칙적으로 일체를 외주입력업체에서 준비
  - 입력실 및 캐비넷 등 비품에 대한 시건 철저 관리

#### □ 입력업무의 수행 및 감독

- 입력 자료의 인계인수 및 운송
  - 신고서 등 입력 원시자료는 '과업지시서' 및 '과업처리내역서'와 함께 자료 관리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인계인수
- 각 고용지원센터 및 한국고용정보원에 외주입력 업무담당자를 지정·운영

- 외주입력업체 직원에 대한 업무상의 지휘·감독은 외주입력업체에서 행사하도록 하고,
  - 고용지원센터 직원이 직접 외주입력업체 직원에 대하여 출퇴근 또는 업무 등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행사함이 없도록 유의

□ 자료보안대책

■ 외주입력업체의 보안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 유출 가능성이 있는 바, 철저 대비 필요

- 고용지원센터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외주입력 보안업무 처리요령」을 숙지하여 이행 철저
  - 외주입력업체 및 입력요원에 대한 '서약서', '보안 및 비밀유지각서' 징구
  - 보안교육 및 실태점검 철저 시행
- 외주입력업체가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입력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열람 가능토록 제한

다. 행정사항

- 각 기관은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지원실업급여과로 청 취합 보고('10.1.31까지)
  - 각 기관은 외주용역업체에 대한 ID 발급, 보안교육, 보안 및 비밀 유지각서 징구 등 입력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한 후, 각 기관별로 '10. 1. 31 이전에 사업 개시

담당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7급 정동준 ☎ 02-2110-7235

### 5-3. 건설고용보험카드 사업 추진

#### 가. 목 적

-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누락 방지 및 신고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건설고용보험카드를 통한 신고 활성화 지속 추진

#### 나. 세부추진방안

- 사업대상 :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
  - 총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경우에도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 '08년 전국 확대 실시 경험을 토대로 건설고용보험카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건설고용보험카드 활용 건설현장 담당자 및 근로자에 대한 경품행사를 매월('10.2~11월) 정기적으로 추진
  - 제도설명회 개최, 매뉴얼, 리플릿 제작·배포

#### 다. 행정사항

- 각 고용지원센터는 관내 건설현장을 상대로 건설고용보험카드 사업 참여설명회 개최
  - 홍보 리플릿 등은 본부에서 일괄 제작하여 배포 예정

담당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7급 정동준 ☎ 02-2110-7235

## 6. 일자리 창출 지속 추진

### 6-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 가. 사업 목적

- 취업취약계층 등을 채용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에 지원금 지급
    - 취업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 하지만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사회적일자리사업의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기능 강화가 필요한바,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해
    - 지자체·지역사회와 연계 강화, 새로운 수요가 많고 시장과의 충돌이 적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환경·문화·지역 개발 등의 전략 분야를 집중 육성
- ※ '09년 전략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한 모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경영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일자리 사업 참여단체를 자립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나. 사업규모 : 9,608명

#### 다. 추진계획

##### 1) 추진방향

- 지역개발, 환경, 문화(예술), 로컬푸드, 대안에너지, 산림 등 6대 전략분야 대상 공모 실시

#### < 우선선정 대상사업 예시 >

- (1) 농촌마을 개발, 도시 재설계, 도농연계 개발 등 지역개발 사업
- (2) 문화재일상관리, 민속마을경영, 한옥스테이, 예술서비스 제공, 공공예술 등 문화(예술) 관련 사업
- (3)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과 공공급식 연계사업
- (4)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 위탁사업 등 환경 관련 사업
- (5) 신재생·친환경 대안에너지 개발 및 보급 등 에너지 관련 사업
- (6) 숲체험, 도시녹지조성·관리, 목제품 생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가공 등 산림 관련 사업

- '10년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시도별로 선발 가능한 인원을 미리 배정하고, 시도별 사업 발굴 및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인원 재배정(별도문서 시행)
  - 시도와 지방노동관서 공동으로 구성한 지역별 사회적기업 육성협의체를 중심으로 사업아이템 발굴
  - 발굴된 사업 아이টে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심사하여 인원을 배정하고 즉시 사업추진
- 특히, '10년부터는 일자리 참여자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선정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가능성이 없는 사업은 심사시 선정배제
  - ※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에 경영인을 포함시켜 기업의 발전가능성을 판단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지원기간을 다음과 같이 조정(기 참여단체는 종전규정 적용)
  - ① 예비사회적기업 : 3년 → 2년으로 축소
  - ② 사 회 적 기 업 : 2년 → 3년으로 연장
- 일자리 지원금이 최저임금의 100%를 지원함에 따른 인건비 의존성을 축소하기 위해 연차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 지원하되(신규 공모 사업은 즉시 적용, 기존참여 기관은 '11.1.1 시행)
  - ①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100%, 2년차 90%
  - ② 사 회 적 기 업 :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
- ※ 지침개정에 따른 경과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지원금이 잘못 지급 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2) 사업 내실화를 위한 재심사 강화

- 재심사 없이 지원종료('10.7.1 시행)
  - ① 사업개시일부터 재심사 신청일 직전 월까지 매출액이 참여단체가 제시한 금액의 70%에 미달한 경우
  - ②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자 1인당 월 평균매출액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i) 1차 재심사시 3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 ii) 2차 재심사시 4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 iii) 3차 재심사시 5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 iv) 4차 재심사시 6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 정부지원 인원의 수익창출 금액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는 총 근로지수를 기준으로 산정

※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많아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고용지원센터 소장이 판단되는 경우 심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 가능

○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수익금의 대부분을 소진하여 퇴직급여 총당금 미적립, 사회 서비스 미제공 및 취약계층 미고용(30%) 등 사회적기업으로 전환가능성이 없는 경우 지원중단

### 3) 사업의 효율적 수행방안

○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범정부적 후원 운동을 전개(1기업 1사회적기업 후원·자매결연 또는 설립 운동전개)

- 사회적기업의 회계감사 실시하여 경영 투명성을 제고로 후원 제도 활성화

※ '10년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추진

○ 사회적기업의 수익활동 지원 :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의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우선 구매·사업위탁 활성화

- '10년의 사업개발비(185억원)를 활용 지자체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사회적기업 육성 강화, 자치단체 평가에 반영

※ 지자체가 바우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 사업을 사회적기업에 우선 위탁토록 추진

○ 4대 중점관리 유형 집중관리

- 부정수급 등 기존의 소극적 지도·감독에서 참여단체의 자립 역량을 제고하고 교육·컨설팅과 연계하는 방식의 적극적 관리를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지도할 필요

- ①자립불가, ②과다투입, ③시장교란, ④관리·회계부실 등 4대 중점관리 유형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지도점검

○ 지역단위의 일자리 사업 추진

-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및 지원을 위해 지자체별 모델 발굴 지원, 시도·고용지원센터 공동 심사, '지역별 사회적기업 육성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

※ '10년부터 광역단위 사업은 폐지

○ 컨설팅·교육 등 경영능력 향상 지원

- 민간컨설팅 기관 등을 활용하여 사업신청 단계에서부터 사업 발굴,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초기상담 및 선정기관 대상 전문 컨설팅까지 등 경영자문 지원
- NGO에게 취약한 경영노하우, 회계·노무·마케팅 등에 식견과 경영능력을 배양토록 수요자 위주의 교육 실시
- 고용지원센터 담당자 및 사업과 관련한 지자체 담당자, 참여 단체 관리자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일자리 사업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식 제고

라. 행정사항

- 사회적일자리 지원과 관련된 지원기관, 인원, 지원금 등 각종 통계를 반드시 Work-net에 정확히 기재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허위고용, 지원금 유용, 수익금 부당 사용 등을 중점 점검

담당 : 지역고용사회적기업과 4급 이훈원, 6급 김현아 ☎ 02-2110-7169

## 6-2. 디딤돌일자리

### 가. 목 적

- 고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 중 취약계층이 일자리 경험을 통해 취업의욕을 높이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디딤돌일자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

나. 사업규모 : 11,000명('10년 정부예산안 기준)

### 다. 추진방향

- 고용지원센터에 구축되어 있는 풀(pool) 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고용지원센터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일경험이 꼭 필요한 대상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프로파일링 시스템 구축
- ※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의 범위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노숙자, 모부자가정, 새터민, 여성가장, 경력단절여성,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등)
- 일경험 제공을 통한 취약계층의 취업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 제고라는 디딤돌일자리 취지에 공감할 뿐 아니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비영리단체 등을 엄정히 선정하여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디딤돌일자리사업이 별도의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지원, 고용안정, 직업훈련사업과 「저소득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등 프로그램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통합 취업지원시스템의 일환으로 운영

### 라. 행정사항

- 사업계획 수립하여 '10년 신규 사업모집 공고(1월)
- 디딤돌일자리 지원과 관련된 지원기관, 인원, 지원금 등 각종 통계를 반드시 Work-net에 정확히 기재
- 디딤돌일자리 창출사업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담당 : 지역고용사회적기업과 4급 이훈원, 6급 김현아 ☎ 02-2110-7169

### 6-3. 사회적기업 육성(국정과제)

#### 가. 사업 목적

-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자

#### 나. 추진계획

##### 1) 사회적기업 인증

- 분기별 사회적기업 인증(2,5,8,10월 인증 신청 예정)

⇒ 지방노동관서에는 인증 신청 접수, 형식적요건 검토, 인증된 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등 사후모니터링, 인증취소를 담당

- 지방관서에서는 관할 지역 내 사회적일자리 참여단체, 지역내 비영리기관 등 사회적기업을 희망하는 단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 유관기관, 지자체, 센터 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인증 신청 관련 내용 및 지역 내 우수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홍보

\* 사회적기업 관련 내용 및 인증 요건·절차 등에 관한 민원 질문 시 인증 요건 등을 숙지하여 적극 설명토록 하고, 신청기관이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 인증 신청서, 사실확인서,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누락 서류가 없는 지 확인 후 접수하고, 형식적 요건을 검토하여 본부에 보고(유급근로자 고용보험 전산망 조회, 취약계층 근로자 및 서비스 수혜자 비율, 법정정관 요건,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

- 관내 사회적기업 중 인증요건 및 경영실적 등이 부실한 기관\*에 대해서 중점 관리·모니터링 할 필요

\* 사회적 목적 실현이 불분명하거나, 수익모델이 불분명하고, 자립의사가 불투명한 기업 등, 시정조치 및 개선을 위한 지도 후 불응시 인증 취소 등 검토

## 2)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 '10년에는 지원기관을 권역별로 세분화하여 확대 선정하고, 현장지원 업무를 강화하고 고용지원센터와의 직접적인 업무 소통을 통하여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임

###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분야의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시 인건비의 일부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및 지급)

\* 지원인원 : 기관당 3인(단 유급근로자수가 20인 미만은 2인)

\* 지원수준 : 1인당 월 150만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부분은 참여기관이 자부담

\* 자부담율 : 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10%(1차년도)→30%(2차년도)→50%(3차년도)

### ○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지원

- 사회적기업 설립(인증)을 준비 중인 단체들을 대상으로 기관 설립(정관 작성, 조직 구성 등)이나 인증에 필요한 정보 및 자문서비스 제공(사전 또는 창업컨설팅), 인증심사시 현장 실사 담당 등

-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회계·노무 등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 소셜벤처 경연대회
  - 경연대회 입상팀에 상금, 초기사업비 지원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창업화를 지원
- 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 지원사업
  - 사회적기업간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정보교류 등 업종별·지역별·전국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해 대학, NGO 등에 아카데미 과정 지원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제고 및 기업·지자체의 지원 유도
  - 사회적기업 인지도 확산을 위한 매체별 홍보 추진, 각 방면의 저명인사들을 사회적기업 홍보대사로 위촉,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 개최
  - 사회적기업의 생산품 판로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지원
    - \* 사회적기업의 제품·서비스 내용을 책자로 정리,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교육·홍보 등 추진,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
  - 은퇴한 전문인력 등으로 사회적기업 지원 전문봉사대(probano) 구성·운영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고용지원 센터·지자체 업무 담당자 교육, 워크숍

#### 다. 행정사항(협조 요망 사항)

-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확산하고,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우수한 사회적기업이 많이 발굴·육성되는 것이 중요

- 특히 견실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효율적 관리 운영이 필요
- 사회적기업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경영성과 등을 점검하여 재정·경영성과 등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 일부 관리가 필요한 대상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자립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컨설팅 등의 지원체계와 연계하는 방안 모색
- 고용지원센터는 노무관리 등 경영교육,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지원과 성과관리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우리부 사회적일자리 사업 및 재정지원 일자리가 우수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 '10년 우리부 사회적일자리 및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사회적기업으로 200개 전환 예정
- 고용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역내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기반 기업, 비영리단체 등과 유기적 협조
  - \* 지역별 사회적기업 육성협의체 구축, 포럼 운영,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 계획수립, 지자체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시 사회적기업이 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 지자체와 협조하여 사회적기업 지원·국공유지 무상임대·우선구매 등 조례제정, 전담조직 설치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에 노력

담당 : 지역고용사회적기업과 4급 박명순, 5급 김영현, 5급 송유나, 7급 김상범, 7급 진철 ☎ 02-2110-7170

## 6-4. 지자체 사업개발비 지원

### 가. 사업 방향

-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사업개발비를 지원
  - 다만, 지자체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을 위해 지자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진행

### 나. 사업추진 계획

- 지원범위
  - 전략분야 사업모델 발굴을 위한 제반비용, 홍보·마케팅 비용, 고객관리 비용, 시장개척을 위한 시장조사비, 브랜드 및 기술 개발 등 R&D 비용 등을 폭넓게 인정
- 지원내용
  - 지원방식 : 지자체에 경상 보조하여 지자체가 사회적기업 등에 지원하는 방식
  - 지원한도 : 2억원(사회적기업), 5천만원(예비사회적기업)  
7천만원(모델발굴형)
- 소요재원
  - 231억원(국비 80% : 185억원, 지방비 20% : 46억원)
- 지자체 재원배분(노동부)
  - 지자체에 경상보조할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형으로 추진
  - 16개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공모하여 우수한 지자체에게 국비 80%, 지자체 20% 부담 조건으로 차등 지원



○ 공모계획

- 1월말까지 공고하여 2월중 심사·선정 후 지원
- 재원은 지자체의 관심도 및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조례제정 여부, 우선구매, 사회적기업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분
- 지자체가 직접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우선 고려

다. 구체적 지원 분야

○ 신규사업 분야(모델발굴형) 예시

- 지역복원형(공동화된 구도심,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
- 지역자원활용형(농촌의 특화자원 활용) 등

○ 예비 사회적기업

- 제품개발, 경영컨설팅 분야 등

○ 인증 사회적기업

-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분야 등

라. 행정사항

○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사업 공고 실시(1월)

○ 공모 후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지원 (2월)

담당 : 지역고용사회적기업과 4급 박명순, 7급 장영철 ☎ 02-2110-7168

## 6-5.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추진

### 가. 사업개요

#### ○ 목적

- 지역의 고용주체들이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 및 인적자원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양질의 고용 확대를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

#### ○ 예산 : 115억원(사업비 112억원, 사업운영비 3억원)

- 본부가 심사하는 지역간 경쟁방식에 54억원 배정
- 지방청이 주관하는 지역내 경쟁방식에 54억원 배정
- 컨설팅, 교육, 정보망 운영 등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4억원 배정

#### ○ 대상 : 지역의 고용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지역내 노사단체, 연구기관, 대학교, NGO 등이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것을 적극 권장

### 나. 사업추진 계획

#### ○ 기본방향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①지역이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 발굴, ②지역고용주체의 연계를 통한 창의적인 사업 발굴, ③컨설팅 기능 강화 등 인프라확충에 중점

#### ○ 지원사업 선정 절차

- 지자체, 유관기관,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우선지원분야 선정
- 선정된 우선지원분야는 사업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지방고용 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 후 사업 공고 시 명시

- 우선지원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지정 공모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공모하되, 우선지원분야 이외의 자유제안사업 중 우수한 사업도 잔여예산으로 지원 가능
- 사업추진방식 : 경쟁력 있는 사업 및 연구 발굴을 위하여 「제안공모형」으로 사업 선정
  - 지방청별로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추진

#### 다. 행정사항

- 지역별 사업계획을 수립(우선지원분야 포함)하여 지방고용심의회 보고를 거친 후 확정(1월)
- 「지역간 경쟁방식」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업 적극 개발 및 추천('09.12월~'10.1월)
- 지방청별로 홈페이지 및 지역 일간신문 등에 사업공고를 하고 사업설명회 실시(1~2월)
-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 선정 후 지방고용심의회에는 사후 보고(2월)
- 협정서 체결(2월)
- 반기 1회 이상 참여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사업 추진상황 보고(수시)
  - 사업 각 단계별로 추진상황을 본부에 보고
  - 주요 보고대상 : 지역별 사업계획, 사업설명회 계획, 심사위원회 및 지방고용심의회 심사(심의) 결과, 지도점검 계획 및 결과, 사업정산 결과 등

담당 : 지역고용사회적기업과 5급 최상열, 7급 장영철 ☎ 02-2110-7163

# 노사협력정책극



## = 목 차 =

<b>1. 상생의 노사협력 기반 구축 .....</b>	<b>301</b>
1-1. 노사정책 기초 확산 .....	301
1-2. 생산적 교섭 지도를 통한 노사협력 확산 .....	303
1-3. 작업장 혁신 지원 .....	306
1-4. 노사협의회 운영 활성화 .....	309
1-5.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 활성화 지원 .....	312
1-6.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지원 사업 .....	316
1-7. 노동행정종합지원서비스 사업 시행 .....	319
1-8. 노사문화대상 및 노사상생협력 포상 .....	323
1-9.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실시 .....	326
1-10. 노사관계 선진화 홍보 .....	329
1-11.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도·감독 .....	331
1-12. 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 .....	335
<b>2. 노동조합 운영 및 단체교섭 지도 강화 .....</b>	<b>336</b>
2-1. 전임자·복수노조 제도 연착륙 지원 .....	336
2-2. 노동조합 조직현황 조기 파악 .....	337
2-3.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도 .....	339
2-4. 합리적인 노사문화·관행 정착지원 .....	342
2-5. 산별 노사관계의 교섭 및 쟁의 지도 철저 .....	344
2-6. 합법적 쟁의관행 형성을 위한 핵심 우선과제 선정·지도 .....	346
2-7. 부당노동행위 예방 및 조기해결 .....	348

2-8. 필수유지업무제도 의무이행 지도 강화 .....	350
2-9. 노동위원회 업무 지원 .....	353
<b>3. 노사분규 예방 및 갈등관리 강화 .....</b>	<b>355</b>
3-1. 노사 갈등관리 기조 .....	355
3-2. 노사관계 안정 및 협력분위기 조성 .....	355
3-3. 체계적·효율적인 노사분규 예방 및 해결 .....	357
3-4. 노사갈등관리 역량 강화 .....	359
3-5. 노사관계 취약 사업장·업종 집중관리 .....	361
3-6. 노사갈등 현안 이슈 및 분규 유형별 대응방안 .....	363

# 1. 상생의 노사협력 기반 구축

## 1-1. 노사정책 기조 확산

### 가. 목적

- 그간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노사관계 확산, 전임자·복수노조 제도 개선 합의 등을 토대로 노사관계 선진화의 기틀 마련
- 이를 토대로 2010년이 '대한민국 노사문화 선진화의 원년'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및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에 집중

### 나. 추진방향

- (1) 전임자·복수노조 제도의 원만한 정착 지원 및 체계적 갈등관리로 현장혼란 최소화
- (2) 공정하고 책임 있는 쟁의질서 확립 및 선진 노사문화 정착
- (3) 현장·지역 중심의 노사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참여와 협력의 생산적 노사관계 형성
- (4) 민간을 선도하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

### 다. 행정사항

#### ○ 본부

- 전임자·복수노조 제도는 내년초 대통령령 등 하위규정 정비 완료, 예방적 갈등관리를 통해 제도 정착 지원
- \* 현장에서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한시적으로 '노사정 이행 점검 TF팀'을 운영, 제도시행 매뉴얼 보급, 현장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및 대내외 홍보 등 준비에 철저
- \* 2010년 새로운 제도시행을 둘러싼 과도기적 갈등에 대비하여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공공기관 노사관계 집중 관리



-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불합리한 노사문화·파업관행 개선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
    - \* **법 테두리내 노사자율 해결** 원칙을 지키면서, 사업장 불법점거·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 ‘성과배분 중심’에서 일자리와 생산성 향상 등 ‘**성과확대 중심**’의 **생산적 노사관계** 형성 지원
    - \* 중소·영세기업 노무관리 중점 지원, 노사갈등 기업의 노사파트너십 구축 지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통한 노사협력 확산 및 일자리 창출
- △ 전국 지방관서(근로개선지도과장, 감독관) 워크숍 개최(10.1월)
- \* 정부 노동정책 방향 및 실행계획에 대한 본부-지방관서 공유를 통해 일관된 정책 추진과 효과 극대화

○ 지방

- 노사관계 지도, 갈등관리, 협력 확산 지원 등 업무 추진시 **정부 노동정책 기조**에 어긋나지 않게 유의
  - \* 노사정 지역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
  - \* 지방관서(근로개선지도과-고용지원센터)·지자체가 협력하여 노사협력 지원, 새로운 제도시행을 둘러싼 노사갈등 최소화 노력
- 노사관계 법질서 위에서 **상생의 노사협력 분위기**가 산업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 임단협 시기 이전부터 생산적 노사관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생산적 교섭」 적극 지도
  - \* 지역의 노사협력 확산을 위해 노사단체 지도 및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노사 인식 제고

담당 : 노사협력정책과 4급 홍정우, 6급 우도윤 ☎ 02-2110-7325

## 1-2. 생산적 교섭 지도를 통한 노사협력 확산

### 가.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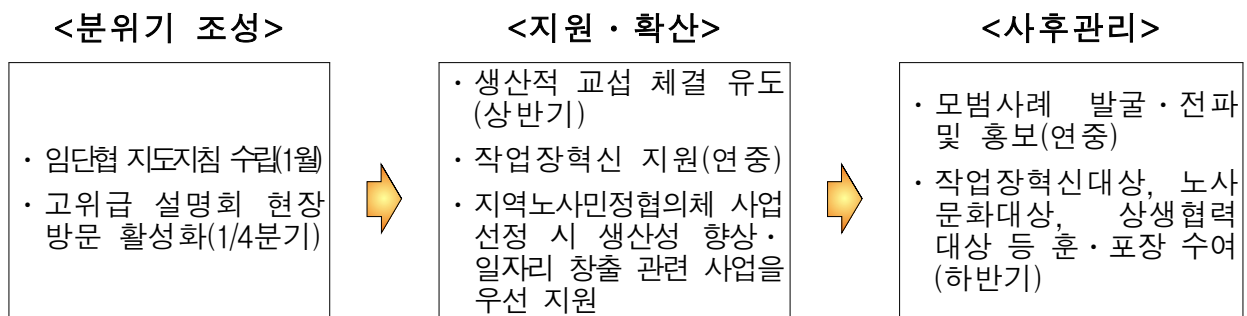
-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었으나, 고용은 더딘 회복을 보일 것을 예상, 금년 임·단협 지도는 생산적 노사관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생산적 교섭」 확산에 주력
- 지난해, 위기극복을 위한 양보교섭의 성과가 재도약을 위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

### 나. 추진방향

#### (1) 기본방향

- 현장 노사의 자율적인 생산적 교섭을 유도하되, 정부는 분위기 조성 및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
  - 단체교섭의 주요내용을 생산성 향상 등 “작업장 혁신”에 초점을 맞추도록 지도
- “지역노사민정협의체”를 생산적 교섭 확산의 핵심 기제로 활용

#### < 단계별 교섭지도 모형 >



#### (2) 임단협 시기 이전부터 사업장 지도 및 분위기 조성

- 노사단체 설명(간담회, 설명회 등) 및 노사민정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노사 인식 제고
  - 임단협 시기 이전에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설명·홍보 → 임단협 모범사례 발굴·선정
- 장·차관 정책설명회, 현장방문, 언론기고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적 교섭”의 필요성 강조
  - \* 노사관계 선진화 토크홍보를 활용, 생산적 교섭 필요성, 우수사업장 등 홍보

### (3) 생산적 교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 현장 노사에 대한 작업장 혁신 지원 확대
  - 통합진단 컨설팅 신설(150개소), 임금·근무체계 개선 컨설팅(150개소), 노사 대상 작업장 혁신 교육(40회, 2천명) 등
- 지역 노사민정협의체 사업 선정시 생산성 향상 및 고용창출과 연계되도록 코칭하고, 지역내 생산적 교섭 활성화 유도
-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노사문화우수기업 및 대상 등도 생산적 교섭과 연계되도록 유도

### (4)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강화

-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사례집 발간·배포 및 공중파·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강화
  - 모범기업 및 유공자에 대해서는 연말 노사상생협력 대상 등을 통해 훈·포장 수여·격려
    - \* 노사관계 파급효과가 큰 기업이 생산적교섭에 동참할 경우 주요인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격려하는 방안도 추진

## 다. 행정사항

- 본부
  - 2010년 임단협 지도 지침 수립(1월)
  - 각종 사업별 계획수립시 지원방안 마련(1월)
  - 고위급 정책설명회, 현장방문, 언론기고 등 추진(1/4분기)
  - 우수사례 발굴 및 집중 홍보(연중)
  - 우수기업 인증 및 훈·포장 수여(하반기)

○ 지방관서

- 임단협 지도 지침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설명회** 실시(1~3월)
- 관련 지침, 매뉴얼 등에 따라 사업장 **임·단협 지도**(연중)
- 관내에 생산적교섭·노사협력선언 행사가 있을 경우 '노사누리'를 통하여 당일 보고(2개월 경과 행사는 입력 불가)
- 생산적 교섭 **우수사업장 및 사례 보고**(수시)
- 작업장 혁신컨설팅,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생산적 교섭 지원 관련 각종 사업 신청 안내 및 **홍보**(연중)
- 생산적 교섭 우수기업을 파악하여 노사협력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연중)

△ 지역단위 노사협력활동 지원 예산(수용비, 업무추진비 등)은 연초에 전년도 지방관서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일괄배정 예정(1월중)

\*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경우 본부(노사협력정책과)에 소요예산 지원 요청

- 가용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예산이 부족한 경우 지원대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선별·지원

담당 : 노사협력정책과 4급 김수곤, 7급 박형서 ☎ 02-2110-7329

### 1-3. 작업장 혁신 지원

#### 가. 목적

- 경제위기 극복 후 재도약을 위해서는 작업장 혁신 지원을 강화하여 생산적 노사관계 형성 및 일자리 창출 역량 극대화로의 연계 필요
- 현장과 지역중심의 노사파트너십을 통해 '작업장 혁신'과 '생산적 교섭'을 매개로 일자리와 생산성 향상 등 '성과확대 중심' 지원 강화

#### 나. 추진방향

##### (1) 기본방향

- 금년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 선도기업 육성 및 거버넌스 조성 등 작업장 혁신 추진의 안정적인 토대를 마무리하는데 중점

##### < 작업장 혁신 중장기 발전단계 >

구 분	형성기('09~'10)	보급기('11~'12)	확산기('13~)
중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적 공감대 형성</li> <li>○ 인프라 구축</li> <li>○ 선도기업 육성</li> <li>○ 거버넌스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자율역량 강화</li> <li>○ 교육 및 홍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자율적 확산</li> <li>△ 대-중소기업간 협력</li> <li>△ 중소기업 네트워크</li> <li>△ 업종·지역간 협력</li> </ul>
	○ 노사파트너십 제고(작업장 혁신 기반 조성)		
혁신활동	HRM 임금직무체계 합리화	HRM+HRD, 참여·복지	사회적혁신+기술혁신

- 현장 및 지역은 직접 컨설팅과 지역 노사민정협의체 사업 지원을 통해, 중앙은 생산적 교섭 분위기 조성, 노사갈등기업의 선도 기업화, 우수모델 개발·확산을 통해 작업장 혁신 활성화

##### (2) 기업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현장 지원

- (대기업) 고성과 기업은 우수사례로 모델화하여 전파하고, 노사갈등기업\*은 선도기업으로 육성

\* 핵심사업장(완성차, 철도 등) 등

- (중견기업) 고성과 작업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통합진단 서비스 제공 및 자율혁신 역량\* 제고

\* 혁신도우미 육성, 자율진단 매뉴얼 제공, 컨설팅 이력관리, 노사대상 교육 등

### <작업장 혁신 통합진단 컨설팅 프로세스>



○ (소규모) 기본적인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지원 및 노사협의회 활성화 지원

- 소규모 기업에 대한 현장노무관리 지원방안 마련(1/4분기)
- 노사협의회 역할 전환(분배이슈→성과확대), 작업장 혁신 실행 기구로서의 역할모델 확산

#### (3) 지역 거버넌스체계를 통한 작업장 혁신 확산

- 지역노사민정협의체를 중심으로 작업장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의 노동운동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원
- 지역노사민정협의체 사업 선정시, 생산성 향상 및 고용창출과 연계되도록 코칭하고, 지역내 생산적 교섭 활성화 유도

#### (4) 민간시장 육성 및 자율 역량 강화

- 정부의 정책집행 총괄기관인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KOWIN)의 직접 컨설팅 비중을 줄이고, 민간 컨설팅 기관의 역할 확대
- 컨설팅 단가 현실화 및 컨설팅 기관 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 및 공정성 제고

- 정부 지원활동 이후에, 기업의 혁신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추진 역량 강화
  - (혁신도우미 육성) 현장경험이 많은 퇴직자(또는 예정자) 등을 혁신도우미로 육성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 강구
  - (대-중소기업간 협력모델) 모기업이 협력업체 등에 작업장 혁신을 지원하는 협력모델을 개발하여 확산
  - (자율진단 매뉴얼 제공) 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업장 혁신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하여 스스로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역량 제고

#### (5)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및 홍보 활성화

- 작업장 혁신 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부여, 작업장 혁신 대상 시상을 통해 기업 관심과 참여 유도
- 대학, 학회 등에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업장 혁신 교육컨텐츠” 개발 및 확산
- 작업장 혁신 교육(40회 2천명), 우수사례집 발간, 홍보동영상 제작 및 「작업장 혁신을 통한 생산적 교섭」 홍보캠페인 추진

#### 다. 행정사항

- 생산적 교섭 지원을 위한 임단협 지침(1월) 및 작업장 혁신 안내서(2월)를 발간·배포할 예정이므로 사업장 지도 및 안내 협조
- 작업장 혁신 우수기업을 발굴·추천(본부 담당자)하여 많은 기업이 인증 및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 기업의 작업장 혁신교육 참여 협조, 동영상 및 우수사례집 적극 홍보 등

담당 : 노사협력정책과 4급 김수곤, 7급 박형서 ☎ 02-2110-7329

## 1-4. 노사협의회 운영 활성화

### 가. 목적

- 노사간 의사소통과 정보공유의 장(場)을 넘어 고성과 작업장 혁신을 위한 협의·실행기구로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향상 및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열린경영을 통해 비전과 목표를 공유, 신뢰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작업장 혁신을 위한 과제제안 및 실천방안 강구
- 사업(장) 단위에서 파견·사내하청 근로자의 참여를 권장하고, 나아가 지역·업종별 협의체제를 구축하여 협력적 노사관계 확산을 위한 핵심기구로 육성

### 나. 추진방향

#### (1) 생산성 향상 등 고성과 작업장혁신을 위한 협의·추진기제로서의 역할 제고

- 노사협의회 개최 시 매출액, 경상이익 등 경영정보를 근로자 대표에게 반드시 공개토록 지도하여 열린 경영환경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고성과 작업관행 정착을 위한 작업장혁신의 필요성, 체계적 인력관리체제 도입 등을 논의, 구체적 실행방안 도출
    - \* 사업장 방문지도, 노사교육·간담회시 공감대 형성 및 모범사례 소개, 필요시 컨설팅·지원사업 등과 연계
- 노사협의회에 파견·사내하청 근로자대표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고충을 논의하는 등 전체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실질적인 협의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및 시범실시

#### (2) 노사협의회 노사위원 워크숍 및 노사파트너십 교육 강화

- 전략적 경영파트너로서 노사협의회 제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 위원 교육\*, 노사파트너십 교육, 작업장 혁신(고성과 작업장 구축) 교육 등 노사대상 교육 확대
  - \* 지방청 주도로 협의회 위원 등 노사를 대상으로 동반자적 파트너십 제고를 위한 워크숍 등 교육 실시



- 지방관서 직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 업무효율화 도모
  - \* 노사협력 전문과정을 협의회 운영기법, 노사협력선언·작업장혁신 지원 등 기업별 노사협력 수준에 따른 체계적·효율적인 지도가 가능하도록 보완

### (3) 중점지도대상 사업장 선정·지도 등 사업장 특성별 관리

- 노사협회의 활성화는 노사양측의 상호신뢰와 적극 참여가 중요하므로 사업장 특성\*에 따라 지원 위주로 접근
  - \* 미설치, 신규설립, 노사관계취약, 일반사업장, 노사협력 우수사업장 등 특성별 지원·관리 실시
  - 노사분규 발생 또는 법 위반 다발 사업장 등 노사관계 취약 사업장, 신규설치 사업장 등 노사협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사실상 교섭창구로 남용하는 사업장 등은 집중 관리
    - \*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을 적극 활용토록 안내 :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http://www.molab.go.kr))--정보마당-주요정책정보-정책자료, 노사관계선진화 홈페이지([www.nosabravo.or.kr](http://www.nosabravo.or.kr))-자료마당-정책자료실
  - 복수노조 설립사업장 등 노사협회를 둘러싼 노노 갈등 발생 사업장의 경우 전담자를 지정하여 맨투맨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밀착관리로 사전 갈등관리

### (4) 노사협의회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 및 점검

-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점검시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등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을 점검
  - \*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점검은 「근로조건 자율점검표」에 따라 노사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지도하고 감독은 최소화
  - 관서별 예방점검계획 수립시 노사협의회 점검 필요성이 큰 사업장(신규설립 사업장, 분규 및 법위반 다발사업장 등) 포함
  - 노사협의회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고,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과 '09년도 질의회시집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의 실정에 적합한 운영방안을 지도

## 다. 행정사항

### ○ 본부

- 노사협의회 설치현황 등 통계 작성('10.1~2월)
- 노사협의회 중점관리대상 사업장 관리·지원(연중)
- 노사협의회위원 교육 계획 시달 및 운영 지원

### ○ 지방관서

- '09.12월말 기준 노사협의회 설치현황 및 고충처리위원 선임 현황을 본부에 보고(1월말)
- 「노사협의회 중점지원 대상사업장」 선정하여 지원계획 및 소요예산 보고(2월)
  - \* 청은 규모별(100인이하, 300인이하, 300인이상) 최소 각1개소·지청은 2개소로 하되, 청은 파견·사내하청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1개소를 포함 선정
  - \* 지방청은 중점지원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원사항 등 성과를 관내 지청별 사항을 포함하여 본부에 보고(분기별)
- 노사협의회 설치현황 및 고충처리위원 선임현황을 「사업장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갱신(수시)
- 분기별로 1회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명단 등을 확인하여 노사협의회 설치현황 정리(폐업, 행불, 중복 등재사업장 등)
  - \* 특히 신규 설치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을 적극 활용토록 안내하는 공문 발송
- 노사협의회 위원 등에 대하여 각종 노사협의회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노사협의회 위원 교육 참여 안내

담당 : 노사협력정책과 5급 나예순, 6급 박정범 ☎ 02-2110-7330

## 1-5.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 활성화 지원

### 가. 목적

- 정부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 지역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노사협력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살리기 강조
- \* 대통령께서 '08.3.13 노동부 업무보고시부터 시·도지사 회의('08.5.2), 국무회의('08.7.16), 언론 인터뷰('08.11.9) 등을 통해 수시로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협력 당부
- \* 장관께서는 현장방문 시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노사민정 협의체의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역할을 당부하며 정부의 적극 지원 의지 피력('09.11.13 안산지역 중소기업 간담회)

### 나. 추진방향

#### (1) 기본방향

- 자치단체와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지방고용심의회 통합 등 확대 개편, 지역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노사관계 발전,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 도모
- 지역노사민정 협의체가 지역 고용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며 정부도 성과에 따라 예산 차등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지역의 자발적·자율적 노력을 최대한 지원
- \* '10년 상반기 지방고용심의회를 지역노사민정 협의체로 확대·개편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예정

#### (2) 세부 추진계획

- 노사민정 협력채널을 활용하여 노사관계는 물론 일자리 공시제 도입 등 지역고용사업을 확대·추진하여 지역별 노사민정 협의체를 활성화
- 지방고용심의회를 지역별 노사민정협의체로 확대·개편

- 지역 노사민정협의체 사업 선정시 작업장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고용창출과 연계되도록 코칭하고, 지역내 생산적 교섭 활성화 유도
  - 특히, 지역별 노사민정협의체의 고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지원 또는 능력개발사업 민간위탁업체 결정 시 지역별 노사민정협의체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
  - \* 예시) 각종 고용지원 또는 능력개발 민간위탁사업 심사 시 지역별 노사민정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지역별 노사민정협의체에 주기적으로 사업추진실적 등을 보고하도록 설계
- 지방노동관서별 평가체제를 지역단위 평가체제로 개편하여 지역별 고용대책 활성화 유도

### (3) 2010년 지원사업 추진계획

#### □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사업 예산 : 1,760백만원
- 국고 보조율 : 광역 50% 지원, 기초 80% 지원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 □ 국고보조금 교부방식

-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며, 사업계획이 우수한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대해 보조금 지급규모 등을 결정하여 지원
  - 노사관계는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발굴 및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가 주도하여 일자리 공시제\*를 도입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단체 우대

\* 일자리 공시제 :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임기중 일자리 목표를 공시하도록 유도하고, 성과와 연계하여 지원

□ “노사상생협력 우수 자치단체” 포상

○ 포상개요

- 지역 파트너십 활성화 우수 자치단체를 노사상생협력 우수 도시로 선정, 지역의 관심 및 인식을 제고하고
-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가 지역 노사관계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토록 유인

○ 포상대상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광역단체 규모는 축소하고 기초 단체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09년도 노사 상생 협력 우수 자치단체 선정·포상 사례>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우수 단체 (대통령 표창)	우수 단체 (국무총리 표창)	우수 단체 (장관 표창)
광 역	경기, 충북 <각 150>	부산, 인천, 전남 <각 70>	제주 <50>
기 초	부천, 순천 <각 70>	광주 광산구, 울산 북구 <각 40>	속초 <30>

다. 행정사항

(1) 본 부

- '10년도 지원사업 기본계획 안내('10.1월초) 및 설명회(1월 중순)
-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10.2월초)
- 사업계획서 심사·지원대상 결정('10.2월중순)
- 국고보조금 결정 통지 및 교부금 교부('10.2월중순)
- 지원사업 중간모니터링(분기별)
- 우수자치단체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10.12월)

## (2) 지방관서

-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해 '10년부터는 사업추진이 본격화되도록 정책추진과정에서 지방노동관서의 적극적 역할이 더욱 필요
  - ▲ 기 구성한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 합동 추진단」 운영 활성화
    - \* 월 1회 이상 회의 개최
  - ▲ 지방고용심의회와 통합 개편 등 독려를 통해 협의체 통합 추진
  - ▲ 지역별 자문위원과의 네트워킹 강화
- 지방노동관서별로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계획을 작성하여 본부(노사협력정책과)로 보고('10.2월초)
  - \* 작성시 기 송부한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 업무 참고자료집」 활용
-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관련 지방노동관서 평가지표
  - ▲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정도(정량)
    - \* 평가 중점사항 :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 합동 추진단」 활용실적 또는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한 실적, 자문위원 자문실적, 지방고용심의회와 통합 실적 등
- 관할지역내 기초자치단체 협의체 구성 현황 등 파악하여 6개청에서 취합·보고(연 2회, 3·9월말 기준)

담당 : 노사협력정책과 5급 서명석, 6급 조선열 ☎ 02-2110-7326  
지역고용사회적기업과 5급 최상열, 7급 장영철 ☎ 02-2110-7163

## 1-6.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사업

### 가. 목적

-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작업장 혁신, 생산성 향상,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 및 경비 지원을 통하여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적극 유도
- 이를 통해 협력적 노사문화가 산업현장에 조기 확산·정착 되도록 하여 기업 및 국가 경쟁력 제고

### 나. 추진방향

- 신청 및 발굴을 통한 지원대상 사업장 선정을 통하여 사업 효율성 제고
- 지역별 노사단체 지원을 중단하고, 단체사업장 지원을 신설(업종별 노사단체 포함)하여 원·하청사업장 단체 등 중점지원

#### < 신청에 의한 지원 >

- 노사대표가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에 대하여 합의 후 공동으로 신청
  - \* 신청내용이 사업취지에 부합하고, 공익성 및 노사관계개선에 영향이 큰 경우에는 단독신청의 경우도 제한적으로 인정
- 신청 공고일 이전 진행·완료된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10.2월 중에 공고하여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후 지원
  - \* '10년부터는 지역·업종별 노사단체 구분 지원을 폐지하고 단체사업장 지원 신설(업종별 노사단체는 단체사업장에 포함)
  - \* 단위사업장 및 단체사업장으로 구분 선정, 단위사업장은 1차적으로 물량의 80%만 선정

## < 발굴에 의한 지원 >

-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업장 지도·감독, 방문 컨설팅 등을 통해 노사파트너십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장 발굴 또는 노조 신설 사업장을 파악하여 노·사에게 파트너십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
  - 노사협력 프로그램 진행 소요기간을 감안, 3월 및 6월 중 2차에 걸쳐 선정·지원(단위사업장 분야 물량의 20%)
- 현장지원 강화를 통하여 사업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연 2회 이상 현장지도를 통하여 지원 프로그램의 효율성 제고 및 지원비용의 투명성 강화
  - 노사협력 우수사례 보급 및 교육 강화를 통해 작업장 혁신을 추진하여 고객만족도 제고 및 기업 경쟁력 강화
  - \*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수행사례집 발간(수기 공모),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경진대회 개최
- 노사관계 취약사업장에 대한 우선 지원을 통하여 노사분규 예방 및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
- 프로그램 지원 사업장 선정시 중소기업, 노사분규 발생유무 등을 우선 고려
  - 분규예방과 노사협력사업의 연계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지원 대상자 선정·지도시 지방관서와 사업수행기관과의 협조 강화
-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등 인프라 구축 체계화
-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지방관서, 사업수행기관, 프로그램 수행 사업장)을 통한 홍보 강화로 사업 인지도 제고
  - 간담회 정기 개최(분기 1회), 우수기업 벤치마킹, 우수기업 노사대표를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신규 수행 사업장 멘토로 활용
  - \* 지역별 협의체 운영결과를 평가, 우수운영자에 대하여 포상



- 사업효과 측정을 통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발전 방안 강구
  -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수행사업장, 사업수행기관, 지방관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효율성, 만족도, 발전방안에 대한 평가 실시

#### 다. 행정사항

- 본 부
  -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세부계획 수립('10.1월)
  - 사업수행기관, 평가기관 선정 및 용역계약 체결('10.1~2월)
  -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에 대한 사업공고 및 설명회 개최, 신청서 접수('10.2월)
  -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10.3월)
  -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예산 지원 등('10.3~12월)
- 지방관서
  -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이나 노사관계 취약사업장 등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신청서 접수 및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대상 선정
    - \* 지원대상자는 지방관서에서 1차 선정, 본부 및 사업수행기관에서 최종 선정
  - 지역별 노사파트너십 협의체 구성, 운영(분기 1회 간담회 개최)
    - \* 사업수행기관,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대상 사업장 노사대표
  -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다른 노사협력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 시행하여 우수사례 창출
  - 발굴 지원 대상사업장 추천('10. 2월, 5월)

담당 : 노사협력정책과 5급 나예순, 6급 박정범 ☎ 02-2110-7328

## 1-7. 노동행정종합지원서비스 사업 시행

### 가. 목적

- 노동관계법 및 각종 지원제도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상담·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 ‘작업장혁신지원’ 사업의 통합진단·지원프로그램과 통합 추진으로 전문화·체계화하는 한편, 작업장혁신사업으로의 효율적인 연계 도모

### 나. 추진방향

- ◆ ‘작업장혁신지원’ 사업의 통합진단·지원프로그램과 통합 추진으로 전문화·체계화
- ◆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행정컨설팅 병행 추진으로 영세기업 노무관리 강화

#### ① 컨설팅 방식 분리·적용

- 방문컨설팅은 작업장혁신사업과 통합, 실시
- 단체컨설팅은 지방관서에서 자율적으로 계획 수립·시행
  - 본부는 단체컨설팅 대상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컨설팅 방법·실시주기 등은 지방관서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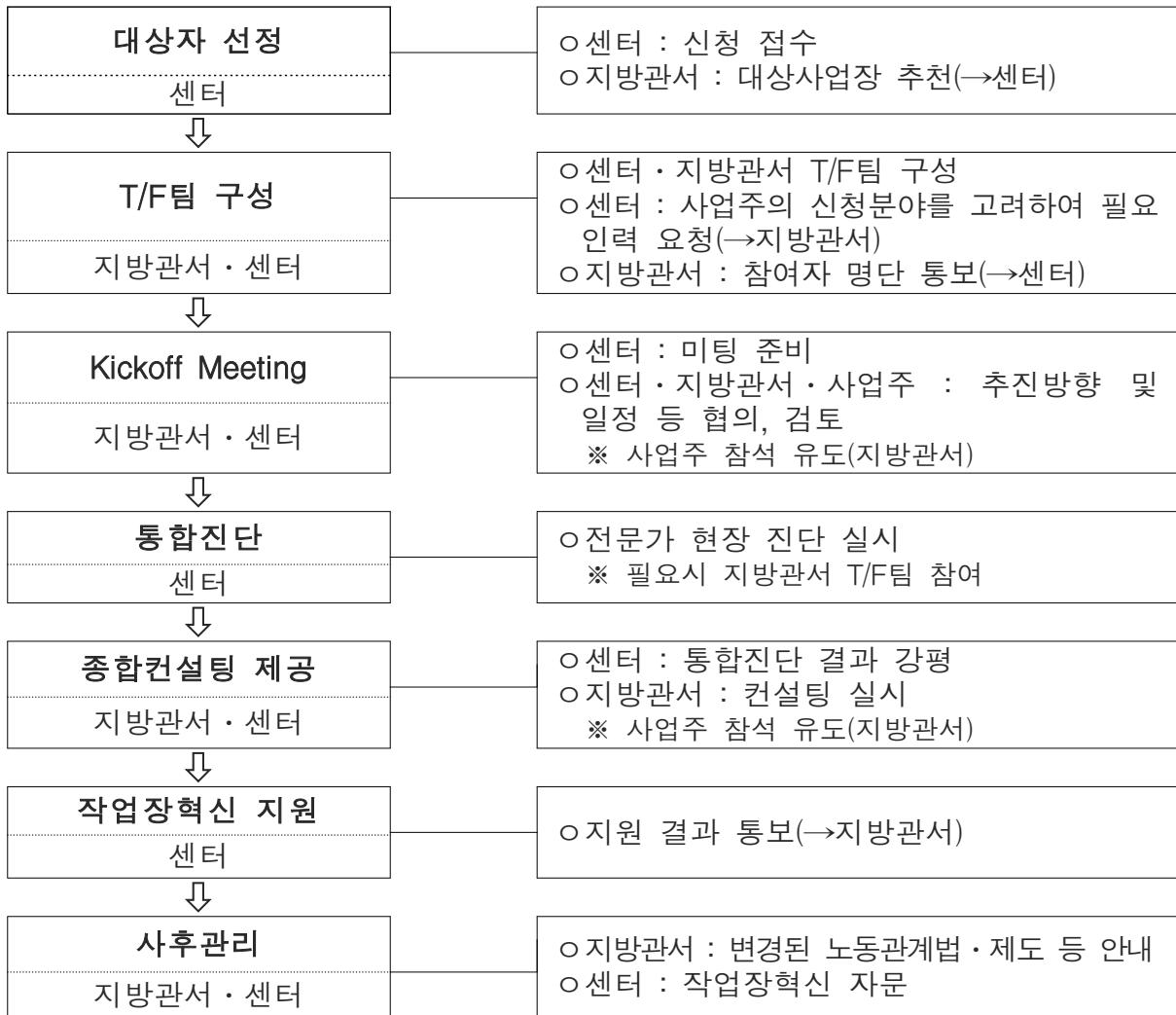
#### ② 기업규모별 차별화

- **(100인 이상)** ‘작업장혁신지원’ 사업의 통합진단·지원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 제공
- **(100인 미만)** 종전대로 지방관서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 다. 추진 방법

### ① 100인 이상 사업장

- 대상 : 100인 이상 사업장 중 작업장혁신 신청 사업장
- 방법 : 방문컨설팅 실시
  - 지방관서와 고성과센터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하여 단계별 업무 분담 및 협조를 통하여 현장 맞춤형 종합컨설팅 제공
  - 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업장 통합진단 결과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센터 컨설턴트, 지방관서 담당자가 합동컨설팅 실시



- 목표 : 150개소

○ 행정사항(지방관서)

- 연봉제 신규 도입, 근무제도 개편 등 통합 진단 대상 사업장 발굴, 추천(→센터)
- 작업장혁신 T/F팀 참여 : 지방관서 분야별 담당자 참여(사업주 신청분야를 감안하여 담당자 배치)
- 컨설팅 참여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

② 100인 미만 사업장

○ 대상

- 필수 : 신청 사업장\*, 신설 사업장 및 노조 신규 설립 사업장,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 사업장 신청시에는 기업 규모 구분없이 필수 실시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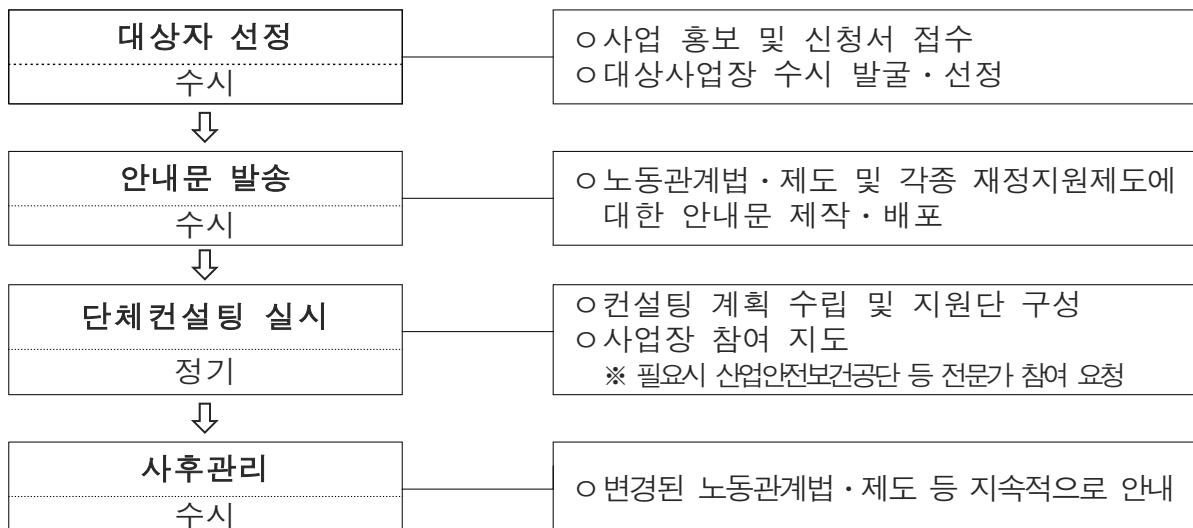
\*\* 신설 사업장은 고용보험DB 활용, 노조 신규 설립 사업장은 지자체·본부와 협조하여 명단 파악(2개 시·도 이상 노조는 주된 사업장 관할 사무소가 담당)

※ 필수 대상 실적은 '10년 기관평가에 반영 추진

- 임의 : 신고사건 다발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 방법 : 단체컨설팅 실시

- 사전에 대상 사업장에 안내문(노동관계법·제도 및 각종 지원 제도) 배포 이후 실시



○ 행정사항

-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 등이 다수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연중)
- 신설 사업장 및 노조 신규 설립 사업장 등 파악(수시)
- 6개 지방청은 매반기 익월 5일 이내 전 반기 사업 실적 보고  
(지청 실적 포함)
- \* 추진실적 보고서 보고양식(추후 송부 예정) 하단에 외투기업 지원 현황  
(지역, 사업장명)을 별도 표기

○ 예산

- 작업장혁신 지원사업비에서 실비(여비·수용비·사업추진비) 지원

담당 : 노사협력정책과 5급 나예순, 6급 박정범 ☎ 02-2110-7330

## 1-8. 노사문화대상 및 노사상생협력 포상

### 가. 목적

- 열린 경영, 상생의 노사파트너십을 통하여 우수한 노사문화를 일궈낸 모범기업 사례를 발굴·홍보하고
  - '상생의 노사문화 창조'를 위해 지역, 산업현장 단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 우수 자치단체, 모범 기업과 노·사 대표를 발굴·포상함으로써
  - 산업현장에 협력적 노사관계가 조기 확산·정착되도록 하여 노사관계 선진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 나. 추진방향

- 상생 경영 등을 통하여 노사협력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지원
  - \* 정부물품 적격심사시 우대,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우대 등 19개 항목의 인센티브 제공
  -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경진대회를 실시, 그 중 노사문화가 탁월한 기업을 **노사문화 大賞**으로 선정·시상
  - 대상 수상 기업 중 대통령상 수상 기업에 대해서는 장·차관이 기업을 직접 방문·시상하는 '찾아가는 시상식' 개최
- 불합리한 노사문화·관행을 개선, 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기업·노사대표 등 「**노사상생협력유공자**」에 대하여 훈·포장 등 정부포상 병행

- 현장 중심의 홍보 강화를 통하여 노사협력분위기 확산
  - 노사문화우수기업 벤치마킹 제도를 통하여 노사문화 우수 사례 전파
  - 노사문화우수기업 사례집 발간·배포

#### 다. 정부시상 및 정부포상 규모

- 시상 및 포상 규모는 '09년 규모 준용
  - 구체적 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확정
  - \* '09년도 시상 및 포상 규모
    - 노사문화대상 : 대통령표창 2점, 국무총리표창 4점, 노동부장관표창 12점
    - 노사상생협력 포상 : 훈장 10점, 포장 11점, 대통령표창 21점, 국무총리표창 25점, 노동부장관표창 66점

#### 라. 행정사항

#####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 본 부
  -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계획 수립(1월)
  - 사업수행자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2월)
  -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계획 공고(3월)
  -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접수 및 심사(4~5월)
  -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공고(7월)
  - 노사문화 대상기업 신청접수 및 심사(7~8월)
  - 노사문화 대상 선정 공고 및 시상·사례발표(10월)
  - 노사문화 우수기업 사례집 발간·배포(11월)

○ 지방관서

-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관한 홍보(지역 홍보매체 등 활용)
- 지역내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대한 벤치마킹 지도
  - \* 노동행정종합지원서비스,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연계·활용

<노사상생협력유공 포상>

○ 본 부

- '09년도 포상 계획 수립·시달(5월)
- 정부포상 계획 홍보(5~8월)
  - \* 온라인(노동부 홈페이지 게재) 및 오프라인(일간지·무가지 광고, 리플릿 제작·배포)을 통한 홍보 실시
- 추천된 포상대상자들의 공적내용을 심사하여 행정안전부에 포상후보자 추천(9~10월)

○ 지방관서

- 노사파트너십 구축 및 작업장 혁신 등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창조한 기업, 근로자 및 사용자를 발굴하여 추천서 접수(7월)
- 지방청별 공적심사 및 본부에 결과 제출(8월)
  - \* 추후 세부 시행계획 송부

담당 : 노사협력정책과 5급 최희순, 6급 유정민 ☎ 02-2110-7359



## 1-9.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실시

### 가. 목적

- 상생의 노사파트너십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 및 생산성 향상 등에 공헌한 모범근로자와 노조간부 등을 발굴·포상하여
  - 산업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를 격려하고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하여 노사관계 경쟁력을 제고

### 나. 추진방향

- 근로자의 날 취지에 부합하게 사용자에 대한 포상은 배제
  - \* 사용자는 '노사상생협력유공 포상'에 포함
- 포상대상 중 노조간부는 노사상생협력유공 포상과 중복되는 점을 감안하여 포상규모를 축소
- 추진일정 : 대상자 추천접수(1.20까지) → 지방청별 공적정리 및 심사(1.21~2.11) → 포상대상자 본부 추천(2.12) → 본부 심사(2.16~2.28) → 행정자치부에 포상대상자 추천(3월) → 포상실시(4.30)
- 지방청별 추천인원

구 분	계	국내 근로자	근로 청소년	노조간부 (단위노조)	노사관계 발전유공자
총 인 원	289	247	12	24	6
서 울 청	91	81	2	7	1
부 산 청	42	35	2	4	1
대 구 청	27	22	2	2	1
경 인 청	73	64	2	6	1
광 주 청	28	23	2	2	1
대 전 청	28	22	2	3	1

## 다. 행정사항

### ○ 본 부

- '10년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계획 수립·시달('09.12월)
-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계획 홍보(1월)
  - \* 온라인(노동부 홈페이지 게재) 및 오프라인(일간지·무가지 광고, 리플릿 제작·배포)을 통한 홍보 실시
- 추천된 포상대상자들의 공적내용을 심사하여 행정안전부에 포상후보자 추천(3월)
  - \* 포상 일정, 수상자 산업시찰 등에 대해서는 별도계획 수립·시행

### ○ 지방관서

- 적격자가 다수 추천될 수 있도록 각종 언론매체나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포상계획, 대상자 추천절차 등을 적극 홍보
  - \* 지방노동관서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포상계획 및 대상자추천 관련 사항 게재, 각종홍보물 배포 및 부착, 지역 언론 등을 통한 홍보 등
- 상생의 노사문화 창조, 불합리한 노사문화·관행 개선, 작업장 혁신, 고객만족,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추천
  - 특히, 현장에서 장기 근속하거나 여성 및 장애인으로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노조간부로서 적극적인 노조활동으로 근로자 권익 보호 및 기업발전에 기여한 자를 적극 발굴
    - \* 근로자 추천시 중소기업에 소속된 자를 50% 이상 추천
    - \* 관내 관련 단체 등에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적격자의 추천·발굴을 위한 협조를 강화

- 포상대상자 추천시 공적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적격요건**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노조 간부나 사용자를 근로자로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또한, 직·업종에 편중된 추천을 지양하고, 직종별·업종별·사업체별 전체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한 포상기회 제공
  - \* 동일 사업장에서 2명 이상 추천하거나 '09년도 수상자를 배출한 사업장 근로자를 '10년에도 추천하는 사례는 가급적 지양
- 추천 전 반드시 본인의 포상 훈격과 관계없이 **수상의사를 확인**하고, 범죄경력조회 등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을 것
  - \* 포상후보로 확정된 후 수상을 포기할 경우 3년간 포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사전에 고지
- 추천기관별 추천인원 및 추천기한('10.2.12)을 반드시 준수
  - \* 배정인원을 초과한 추천 지양(추천하더라도 초과 인원은 심사 제외 예정)

담당 : 노사협력정책과 5급 최희순, 6급 유정민 ☎ 02-2110-7359

## 1-10. 노사관계 선진화 홍보

### 가. 목적

- '10년에는 전임자·복수노조 제도 시행 준비,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둘러싸고 노사정간 갈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 이에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고 건강한 노사문화가 산업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추진

### 나. 추진방향

- **(추진체계)** 본부와 지방관서가 공동으로 홍보 추진
  - **(본부)** 홍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홍보 수행을 위해 **홍보전문업체와의 턴키홍보 및 방송사와 공동캠페인 추진**
    - \* 자체 홍보도 병행 : 공익광고 추진, 건강한 노사문화 사업장 방문 및 언론 브리핑, 노사협력 브리프 발송 등
  - **(지방관서)** 지역 상황에 맞는 홍보를 위해 **지방관서와 지역 언론간의 공동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본부에서 지원
    - \* 지원 금액 : 180백만원,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6개청에 차등 배분
    - \* 본부에서 제작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컨설팅을 제공하여 홍보활동 지원
- **(홍보내용)** 전임자·복수노조 제도의 원만한 정착,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 건강한 노사문화 확산 등 선진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중점과제 홍보
- **(홍보매체)** TV, 신문, 라디오,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전방위적으로 홍보
  - 특히, 파급력이 큰 **공중파 TV 홍보**에 집중하고, “**노사관계 선진화 홈페이지(www.nosabravo.or.kr)**”를 거점으로 한 온라인 홍보도 강화
    - \* 노사문화우수기업 및 대상,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노사상생협력 유공 포상, 작업장혁신 대상 등 온라인 신청 실시

- (홍보방법) 건강한 노사문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하우를 전파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통한 “스토리 텔링 (story-telling) 기법”을 주로 활용

#### 다. 행정사항

- 6개 청별로 지역 매체를 활용한 홍보계획 제출(~1월말)
  - 청별 홍보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을 차등 배분하고 홍보전문업체의 컨설팅 결과 제공
- 전임자·복수노조 제도 정착,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및 노사협력 사업장 중 홍보효과가 큰 사업장을 발굴하여 6개 청에서 매월 취합·보고(추후 공문시달)
  - \* 예시> 전임자·복수노조 제도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노력한 사업장, 노사 갈등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한 사업장, 노사협력을 통해 기업 성과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한 사업장 등
- 관내 노사협력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언론 취재 시 적극 협조
  - 특히, 관내 사업장의 노사화합행사 시 「사전 본부 보고 (다우리 메일활용) → 노동부 출입기자 전달 → 방문 취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 “노사관계선진화 홈페이지([www.nosabravo.or.kr](http://www.nosabravo.or.kr)) - 자료마당 - 홍보자료실”에 게재된 홍보물(동영상, 리플렛, 사례집 등)을 지방관서의 노사협력 확산 홍보에 적극 활용
  - \* 지방관서에서 제작한 홍보물은 본부 노사협력 홍보 담당자에게 제출(노사관계 선진화 홈페이지에 게재)

담당 : 노사협력정책과 5급 김병수 6급 박정범

☎ 02-2110-7361

## 1-11.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도·감독

### 가. 목적

- 노사관계 관련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의 사업수행 실태 및 설립허가 조건 위반 여부를 지도·점검하여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설립목적 달성을 지도

### 나. 추진방향

- 비영리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을 기초 자료로 목적사업의 이행여부, 수익사업의 적정성, 법인 재산의 구성원에게의 분배 여부 등을 검토, '10년도 지도·점검계획 수립
  - \*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서,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결산서,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주무부처에 제출
- 법인 사무 및 재산변동 회계사항을 중점적으로 검사

#### <주요 검사·감독내용>

- ◆ 등기해태, 재산목록 미비치 및 부정기재, 신고사항 미신고 및 부정 신고, 파산신청 해태 여부 등
- ◆ 적법한 임원, 감사 등의 선임여부, 적법한 이사회 운영 등
- ◆ 설립허가 및 매년도 제출한 사업계획의 시행여부 등
- ◆ 정관변경 사항의 임의변경, 허가조건 준수 여부 등
- ◆ 재산 확보상황, 처분 여부
  - 부동산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의 감정가액이 설립허가 당시에 갖추도록 된 금액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
  - 정관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산 처분, 임의적인 담보설정, 재산의 성질을 변경한 보존, 이용, 개량행위 여부 등
- ◆ 법인재산의 사원 분배 여부
  - 대표자 등 임원에 대한 과도한 임금지급 및 업무추진비 지급, 법인차량 등의 임원의 임의 사용 등

- 목적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
  - 등기 해태, 재산목록 및 사원명부 미비치(부정기재),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방해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그 이외의 경미한 법 위반사항은 시정지시 및 경고 조치
    - \*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청문을 실시, 취소시에는 취소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통지

#### 다. 행정사항

- 본 부
  - '09년도 지도·점검내용 및 비영리법인의 사업수행 실적, '10년도 사업계획을 검토, '09년도 지도·점검대상 확정(3월)
  - '10년도 비영리법인 지도·점검계획 수립(5월)
  -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5~6월)
- 지방관서
  - 지방청별로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10년도 비영리법인 지도·점검 계획 수립(5월), 지방청별 비영리법인 명단 및 점검대상 명단을 본부에 보고
    - \* 법인의 활동범위가 2이상의 지방노동청에 걸치는 경우에는 본부에서, 그 외의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지방청에서 업무 관장(노정 68008-4, 2003.1.21)
  -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5~6월), 허가취소에 관한 청문을 개최한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본부에 보고
    - \* <붙임> 비영리법인 점검대상 명단 참조

< 붙임 >

## 비영리법인 점검대상 명단

연번	법인명	법인종류	설립허가일	소재지	대표자	관할기관
1	한국경영자총협회	사단	'70.10.22	서울 마포구 대흥동 276-1	이수영	본부
2	한국노동연구소	사단	'71.10.27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002	김수복	본부
3	한국노사문제연구원	사단	'77.09.07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42-1번지 유니온빌딩 4층 401호	이찬혁	본부
4	한국노동협회	사단	'78.10.30	서울 용산구 갈월동 69-27 시립남부근로자복지회관	손병조	본부
5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재단	'90.07.16	서울 광진구 구의2동 547-8 리젠트 오피스텔 1008호	설용수	본부
6	한국노사평화연대회의 (구, 노사문제협의회)	사단	'91.04.19	서울 종로구 내수동 73 경희궁의아침 4단지 603호	이세중	본부
7	국제노동법연구원	사단	'92.10.05	서울 서초구 방배동 752-7 경덕빌딩 501호	김유성	본부
8	한국노동경제학회	사단	'94.10.28	서울 마포구 마포동 350 한신코아빌딩 1307호	김장호	본부
9	노동인권회관	사단	'95.04.28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46-2 2층	홍근수	본부
10	나우컨	사단	'97.07.21	경남 창원시 외동 851-1	김종호	본부
11	한겨레노동교육연구소	사단	'98.12.21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25 한겨레신문사 4층	성한표	본부
1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단	'99.04.03	서대문구 충정로 2가 69-18 석당빌딩 2층	이원보	본부
13	노동법률지원센터	사단	'00.07.25	서울 종로구 창신2동 131-106 전태일기념관	홍우철	본부
14	한국노사관계학회	사단	'01.03.0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협동중앙회 9층	이호수	본부
15	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교육원	사단	'01.09.11	경남 창원시 성남동 73-5 경창상가 5층	김용택	본부
16	노사공포럼	사단	'03.06.03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10-4 광노빌딩 7층	유용태	본부
17	한국항만운송노동연구원	재단	'04.02.11	부산 남구 용당동 산2-1번지	김동균	본부
18	전태일을따르는 민주노동연구원	사단	'05.02.28	서울 용산구 동자동 14-24 동광빌딩 502호	김승호	본부
19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사단	'06.04.24	서울 구로구 구로동 222-12	손춘식	본부
20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동우회	사단	'07.04.1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	박인상	본부
21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사단	07.08.28	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108 감리교회관 302호	조영복	본부
22	한국조정중재협회	사단	07.09.19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98 두산위브센티움 315호	박호환	본부
23	한국선진노사연구원	사단	08.05.09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324 오성빌딩 402호	박영수	본부
24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사단	08.08.07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 330호	하경호	본부
25	미래노사발전연대	사단	08.11.26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1가 89-16 노무빌딩 501호	문형남	본부
26	한국사회발전전략연구원	사단	09.04.1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0번지 프린스텔 909호	배일도	본부
27	한국노동법학회	사단	09.05.2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2번지 나야빌딩 907호	이상덕	본부
28	국민노동정책교육개발원	사단	09.05.26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36-7번지 대원빌딩	안동선	본부
29	한국노사인재협회	사단	09.06.24	서울 강남구 대치동 889-47번지 상 제리제센터 B-511호	우성	본부
30	선진노사정책개발원	사단	09.12.04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92-10 202호	곽민형	본부



연번	법인명	법인종류	설립허가일	소재지	대표자	관할기관
31	강원경영자협회	사단	'84.07.24	춘천 요선동 2-12	신광환	서울청
32	동국산업교육연수원	사단	'05.03.29	서울 강서구 등촌동 662-3 신송타워 1503호	김향숙	서울청
33	내린천산업교육연수원	재단	06.11.30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530-19	황인문	서울청
34	한국노동경제연구원	사단	07.05.18	서울 중구 태평로1가 76-3	곽태원	서울청
35	포천산업교육연수원	재단	07.12.27	서울 마포구 성산동 181-4	이옥규	서울청
36	부산경영자협회	사단	'81.08.25	부산 진구 범천1동 848-8	김병춘	부산청
37	경남경영자협회	사단	'83.11.30	경남 창원 외동 851-1	박용기	부산청
38	울산·양산경영자협회	사단	'91.08.01	울산 남구 무거2동 622-2 a동 3층	류기석	부산청
39	노동자를위한연대	사단	'01.07.06	부산 진구 부전1동 474-78	조기중	부산청
40	(사)양산노동민원상담소	사단	'04.09.01	경남 양산시 중부동 157-8	이보은	부산청
41	노동복지혁신연구소	사단	05.01.03	부산 사하구 하단2동 492-2	하만식	부산청
42	경북동부지역 경영자협의회	사단	'00.12.23	포항 북구 우현동 290	김수근	대구청
43	인천경영자협회	사단	'82.12.12	인천 남구 구월동 1452	장문영	경인청
44	경기경영자협회	사단	'91.05.09	수원 군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4층	조용이	경인청
45	보광산업교육원	재단	05.10.30	경기 평택시 지산동 807-18	박성제	경인청
46	주연산업교육연수원	재단	07.05.15	경기 평택시 이충동 608 장당플라자 3층 301호	여주연	경인청
47	인천공사공단 노동조합협의회	사단	08.06.26	인천 계양구 굴현동 451 차량기지사업소 내	이성희	경인청
48	광주·전남경영자협회	사단	'81.11.04	광주 동구 학동 74-24	박용훈	광주청
49	전북경영자협회	사단	'84.04.10	전주 완산구 다가동 1가 1	최상열	광주청
50	제주경영자협회	사단	'90.02.16	제주 이도2동 390	윤태현	광주청
51	전남지역경제인협회	사단	'02.07.29	광주 북구 중흥동 699-2	정윤삼	광주청
52	대전·충남경영자협회	사단	'82.03.23	대전 중구 문화동 1-13	한금태	대전청
53	충북경영자협회	사단	'86.05.14	청주 상당구 영동 86-3	박상호	대전청
54	중원산업교육연수원	재단	06.05.01	충북 제천시 화산동 935-4	이용태	대전

담당 : 노사협력정책과 5급 최희순, 6급 유정민 ☎ 02-2110-7362

## 1-12. 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

### 가. 목적

- 노사발전재단은 노사 주도의 자율적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단체가 주축이 되어 설립, 운영되어 온 비영리법인임('07.4.5~)
- \* '06.11.30 노사 주도의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 형성을 위해 노사발전재단 설립에 노사정 대표자가 합의(한국노총위원장, 경총회장, 노사정위위원장, 노동부장관)

### 나. 주요내용

- 노사발전재단은 공모방식에 의한 사업 뿐 만아니라 추가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 정부 지원규모 및 단체의 규모도 훨씬 크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노사발전재단이 공공기관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관기관과의 중복사업 방지를 통해 사업추진 역량을 집중토록 지도·지원 강화
  - \* 재단 정관상 주요사업 : △노사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노사 공동 교육사업 △취업알선, 전직지원 및 인적자원개발사업 △노사 공동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사업 △민간 국제노동교류 등 국제협력사업 등

### 다. 행정사항

- (본부) 노사발전재단이 출범 취지에 맞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신규 사업 발굴·추진에 역량을 집중토록하고, 성과·역량 평가 강화를 통한 역할 정립 추진
  - \* 노사 공동의 자율성 강화 등 재단의 출범취지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사단체가 자체 예산을 출연토록 유도
- (지방관서) 노사발전재단의 기존 지역노사발전협의회 사업은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를 중심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된바, 지역단위에서의 중복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담당 : 노사협력정책과 5급 서명석, 6급 조선열 ☎ 02-2110-7326

## 2. 노동조합 운영 및 단체교섭 지도 강화

### 2-1. 전임자·복수노조 제도 연착륙 지원

\* '10.1월중 별도 지침 시달 예정

담당 : 노사관계법제과 4급 오영민 ☎ 02-2110-7335

## 2-2. 노동조합 조직현황 조기 파악

### 가. 목적

- 전국의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조기 파악, 유용한 각종 통계 자료를 산출하여 노동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

### 나. 추진방향

- 복수노조 설립의 즉각적인 파악 및 전임자 활동의 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 철저
  - \* 노사누리시스템 사업장별 노동조합 실태조사 프로그램 운영('09.11)
- 행정관청(지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이 관내 노동조합으로부터 정기현황을 통보받아 노동단체카드를 정확히 작성하도록 지도
  - 특히 산업별·지역별 노조 등 초기업 노조 및 지부의 조직 현황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 행정관청(지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은 관내 노동조합의 노동단체카드를 작성('08.12.31 기준) 후 전산입력
- 노사누리시스템 노동조합관리프로그램을 통한 노동단체카드 자료입력 및 집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지도 철저
  - \* 노사누리시스템 노동단체카드 전산입력 프로그램 운영('09.2~)
- 지방노동관서·지방자치단체 및 연구용역기관 간 연락체계를 강화하여 노동조합 조직현황 조기 파악·분석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도 철저
  - \* 발표시기: '06년(익년 11월), '07년(익년 9월), '08년(익년 6월), '09년 현황(익년 6월)

## 다. 행정사항

### ○ 본부

- 노동조합 조직현황 통계조사를 위한 노동단체카드를 기한 내(2월) 전산 입력하도록 지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1월)
- 노동조합의 노동단체카드 집계 및 오류 검토(2~3월)
- 노동조합 조직현황 분석 연구용역 및 발표(4~6월)

### ○ 지방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 노동조합이 조합원수 변경 등 정기통보사항을 기한내(매년 1월말)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확인 철저(1~2월)
- 노동조합의 노동단체카드를 작성지침에 따라 전산입력하고 오류 검토(2월말)

담당 : 노사관계법제과 4급 오영민, 7급 이용학 ☎ 02-2110-7338

## 2-3.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도

### 가. 목적

- 노동조합 설립·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지도를 통해 노동조합 운영의 합법성·민주성·자주성 제고
- 개정된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관련 제도 연착륙 지원

### 나. 추진방향

- 전임자 급여지급 원칙적 금지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맞춘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 노동조합 설립·변경, 기타 지도업무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지식과 업무매뉴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업무처리 일관성 유지
- 노동조합의 활동은 근로의 의무와 사용자의 경영권이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이 허용되더라도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이나 노무지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도
    -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허용범위와 한계에 대한 지도지침」(노사관계법제과-576, '08.9.29) 참조
- 노동조합 내부분쟁 및 회계부정 예방을 위해 노동조합 규약, 회계시스템 정비 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를 통해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 도모
  - \* 「노동조합원의 권리」('09.3월),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위한 표준규약 권장안」('09.8월) 참조

## 다. 행정사항

### ○ 본부

- 전임자 관련 개정 제도 및 법률관계가 반영되도록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개정·보급(3월)
-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꼭 필요한 법률관계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 질의회시집 발간·배포(6월)

### ○ 지방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 전임자 급여지급 원칙적 금지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 연착륙을 위한 사업장 지도활동(연중)
- 노조설립신고서와 규약의 내용 중 결격요건의 해당여부 확인 및 보완·반려 조치(연중)
- 노동조합 운영관련 각종 신고의무 이행 안내 및 지도(연중)
- 노동조합이 자주적,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 제27조에 의한 운영상황 보고 등 자료제출권의 적극적 활용

담당 : 노사관계법제과 5급 박삼근, 6급 심인섭 ☎ 02-2110-7337

## 기타 노동조합 지도업무 행정사항

구분	휴면노조 정리	규약의 시정명령	노조결의·처분의 시정명령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노동조합 운영사항 확인
대상	-총회(대의원회) 개최사실, 조합비 징수실적 등 외견상 조합 활동이 1년 이상 중단된 노동조합, 기타 소위 “유령노조” 시비가 있는 노동조합	-행정관청에 제출된 규약의 내용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규약이 노동관계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될 경우. 다만, 규약 위반시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함	-단체협약의 내용이 위법한 경우	-노동조합 변경 신고사항(법 제 13조), 운영상황의 보고(법 제27조), 노동조합 해산신고(법 제 28조), 단체협약 신고(법 제31조) 등
절차	-사실조사 결과 해산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요청 후 노동조합 해산 조치  -폐업 등으로 사업체가 소멸되거나 조합원이 1명도 없어 신고주체가 없는 경우 시·도 및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노동위원회 의결 없이 직권으로 소멸 정리, 다만 노사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산 조치	-매년 1.31까지 노조가 전년도에 변경된 규약내용을 제출하거나 민원인이 시정명령을 요구할 경우에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규약의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의결 요청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명령도달 후 30일 이내에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불응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처리	-노동위원회에 의결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명령도달 후 30일 이내에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불응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처리	-노동위원회에 의결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명령도달 후 30일 이내에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불응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처리	-신고사항 이행 여부를 수사파악,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독려(공문),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노동조합 운영의 자주성·민주성 확보를 위해 운영상황 보고 요청,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보고 등					-법령상 노동조합에서 신고·통보하여야 할 사항을 기일 내 철저히 파악·관리



## 2-4. 합리적인 노사문화 · 관행 정착지원

### 가. 목적

- 위법 · 불합리한 노동조합 규약 및 단체협약 시정 등을 통해 불합리한 노사문화와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쟁의질서를 확립하여 노사관계의 선진화에 기여

### 나. 추진방향

- 전임자 급여지급 원칙적 금지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 시행을 맞아 산업현장에 합리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되는 계기 마련
  - 노사 간담회, 사업장 방문, 연찬회나 임금 · 단체협약 교섭 지도 과정에서 제도 시행의 취지를 설명하고, 위법 · 불합리한 관행도 함께 개선하도록 지도
- 임금협약의 짧은 유효기간으로 인한 교섭비용 과다발생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 교섭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도록 노사인식 개선 확산 지도
- 교섭단위, 시기 및 교섭대상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노사가 자율로 결정하되,
  - 사용자가 처분할 수 없는 정책적인 사항, 강행법규 ·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사항 및 인사·경영권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은 교섭이 금지됨을 적극 지도

### 다. 행정사항

- 본부
  - 2010년 임금 · 단체교섭 지도 매뉴얼 보급(1월)
  - 새로운 전임자 제도 관련 업무지침 마련 · 시달(1월)

○ 지방관서

- 자체 위법·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지도계획 수립·시행
- 신고된 노동조합 규약·단체협약의 적법성 심사 강화 및 개선지도(연중)
- 업무매뉴얼, 지도지침 등에 따라 사업장 적극지도(연중)
  - \* 불합리한 노사문화·관행개선 지도실적을 전산입력(매월)
  - \* 노사교육·간담회·연찬회나 노사교섭 지도 시 위법·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토록 지도

**< 불합리한 노사문화·관행개선 관련 지침 >**

- 최신 사례로 보는 부당노동행위('09.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09.3)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관련 지도지침('08.12.8)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허용범위와 한계에 대한 지도지침('08.9.29)
- 산별 중앙교섭에 관한 법적쟁점 검토 등 지도지침('08.8.20)
-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08.6.27)
- 산별 중앙교섭에 관한 법적쟁점 검토 등 지도지침('08.8.20) 등

담당 : 노사관계법제과 5급 박삼근, 6급 심인섭 ☎ 02-2110-7337

## 2-5. 산별 노사관계의 교섭 및 쟁의 지도 철저

### 가. 목적

- 산별노사관계 관련 불합리한 노사문화·관행 해소를 통한 노사관계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 나. 추진방향

-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되기 전 산별 교섭을 보장받고자 사용자에게 개별교섭권을 강요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하고
  - 개별교섭권 쟁취를 위해 파업하는 것은 불법임을 지도
- 산별노조의 지부(지회)라 하더라도 독자적 규약 및 집행기구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설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단체교섭 및 쟁의권이 있음을 지도
  - 이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교섭을 통해 체결된 해당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조합원 범위, 즉 교섭단위를 기준으로 판단
- 쟁의행위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지부·지회의 파업찬반투표 및 쟁의조정절차는 원칙적으로 별도 절차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병행하여 동시 실시하는 것도 가능
- 파업찬반투표의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찬성 여부 산정기준은 당해 교섭을 통해 체결하려는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조합원 과반수로 함

## 다. 행정사항

-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임금·단체교섭 지도지침 등을 숙지하여 교섭지도에 적극 활용
  - 아울러 기 시달한 산별중앙교섭에 관한 법적쟁점 검토 및 지도지침(노사관계법제과-105, '08.8.20), 정당한 쟁의행위의 허용 범위와 한계에 대한 지도지침(노사관계법제과-576, '08.9.29),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관련 지도지침(노사관계법제과-1315, '08.12.8) 확행
- 산별교섭 및 쟁의지도에 있어 법적 쟁점 발생시 본부(노사관계법제과)와 긴밀히 협의

담당 : 노사관계법제과 5급 박삼근, 6급 심인섭 ☎ 02-2110-7337

## 2-6. 합법적 쟁의관행 형성을 위한 핵심 우선과제 선정 · 지도

### 가. 목적

- 사업장 점거 농성, 파업 불참자에 대한 협박 등 쟁의행위 방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여전히 높은 실정으로 합법적인 쟁의관행 정착을 위해 적극 지도 필요

### 나. 추진방향

- 선진쟁의질서 핵심과제 개선 지도
  - 생산라인 점거, 조업방해, 불법 피케팅\*, 사업주 사생활 침해, 공격적 직장폐쇄 등의 핵심 우선 과제 선정 후 적극 개선
    - \* 작업현장 순회, 파업불참자에 대한 파업참가 강요 및 집단 따돌림, 고객 등의 사업장 출입저지, 원자재나 제품의 입반출 저지 등
- 불법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 준칙규정 등을 엄격히 적용하고, 민사상 제재 등의 책임을 묻도록 함
  - \* <제38조> 쟁의행위 시 출입·조업 방해, 쟁의행위 참가 강요(폭행·협박), <제42조> 폭력·파괴, 주요업무시설 점거 금지 등

### <사업장 점거>

- 쟁의행위는 근로제공을 소극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수준에 그쳐야 함
  - 사용자의 조업계속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기업시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에 대한 점거 등의 불법적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과 노조법 시행령 제21조에 정하는 시설의 점거는 병존적·부분적인 경우도 정당하지 않음

\* 예) 제조사업장의 생산시설, 병원의 각종진료시설 및 진료대기공간(로비), 사무실 등

◆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 등 이외의 시설\*에 대한 점거의 경우도 전면적·배타적 점거는 정당하지 않음

\* 예) 주차장, 운동장 등

## <피케팅>

- 쟁의행위의 보조수단으로서 파업에 동조하도록 호소하는 행위는 구두 등 평화적 설득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만 정당
  - 파업 불참자에 대한 협박 및 인신비방, 정문에 바리케이트 설치, 확산기를 통한 노동가 제창 등 소음으로 인한 업무 방해 등은 정당하지 않음
- 불법적 행위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제도, 간접강제금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 다. 행정사항

- 선진쟁의질서 핵심 우선 개선과제 선정, 지도지침 시달(2월)
  - \* 생산라인 점거, 조업방해, 불법 피케팅\*, 사업주 사생활 침해, 공격적 직장폐쇄 등 집중 관리 및 엄정대처
  - 지방관서, 선진쟁의질서 핵심과제 개선 지도(연중)
  - \* '10년 지방노동관서 연말 평가 시 핵심과제 개선 지도 실적 반영
- 쟁의문화 의식개혁을 위한 노사 간담회, 캠페인 등을 통한 교육·홍보노력 전개(수시)
- 사업장 점거, 파업불참자의 파업참여 호소 등에 대한 정당성·위법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법리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본부와 협의), 사전경고 등을 통한 예방 노력
  - 아울러, 불법적 행위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주지, 합법적 쟁의관행 형성 지도

담당 : 노사관계법제과	5급 박삼근	6급 허만욱	☎ 02-2110-7336
담당 : 노사갈등대책과	5급 이태훈	7급 장현태	☎ 02-2110-7342

## 2-7. 부당노동행위 예방 및 조기해결

### 가. 목적

- 전임자 급여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전임자 급여 탈법지급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증가할 소지
- 이러한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예방을 통해 노사관계의 기본 질서 확립 및 노사분쟁의 최소화 도모

### 나. 추진방향

- 본부의 부당노동행위 처리 지침을 정확히 이해하여 전임자 급여지급 원칙적 금지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와 관련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및 처리에 일관성 유지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현장지도와 사법처리 병행
  -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하고 처리 지연 시 구제실익이 없는 경우 즉시 시정지도 및 불응 시 사법처리
  - “전임자 급여지급” 행위(4호)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함은 물론 강행법규에 위반되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는 별개로 신속히 처리
- 부당노동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은 특별조사·특별근로감독 등 적극 대응
  - 특히, 부당노동행위 공범죄 적용여지가 있는 경우 감사지휘를 받는 등 적극 대처
  - \* 부당노동행위 공범죄 관련 신고사건 처리는 부당노동행위 공범죄 적용 참고자료(노동조합과-379, '05.10.27) 활용

- 유노조 사업장 중 기존 부당노동행위 발생사업장, 노사관계 취약사업장 위주로 노사교육, 간담회 등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예방지도

## 다. 행정사항

- 본부
  - 새로운 전임자 관련 제도 시행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업무 처리 지침 마련·시달(1월)
  -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위반 실태 및 사례분석(반기별)
- 지방노동관서
  -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공정·신속한 처리(연중)
  - 부당노동행위 예방교육 또는 간담회 개최(수시)
  - 전임자 급여지급 관련 부당노동행위(4호) 신고사건은 전산 처리시 반드시 “전임자” 관련 사건임을 표시
    - \*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처리 시 전산입력란 신설(1월)

담당 : 노사관계법제과 5급 박삼근, 6급 심인섭 ☎ 02-2110-7337



## 2-8. 필수유지업무제도 의무이행 지도 강화

### 가. 목적

- 필수유지업무제도가 공익과 쟁의권의 균형 보호라는 취지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및 협정 준수를 지도
- 사업장 내 복수노조 예외적 설립에 따른 협정체결 및 근무자 결정 방식 등에 대한 혼란 방지

### 나. 추진방향

#### <협정체결 및 협정 유지수준 준수 지도>

-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토록 하고, 자율체결이 어려울 경우 노동위원회에 결정 신청하도록 지도
  - \* '09.11월말 현재, 필수유지업무협정은 전체 259개 사업장 중 64.1%인 166개 사업장에서 체결(결정)되고, 여전히 93개 사업장에서 미체결됨
  - 관내 협정체결 대상 사업장 중 미체결 사업장에 대하여는 '10년도 중에는 협정체결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독려
    - \* 필수공익사업장의 일부 필수유지업무를 외주받아 수행하는 외주업체 변경시에도 노조 유무를 확인, 유노조 외주업체에 대해서는 협정을 체결토록 지도
  - 지방노동위원회와 유기적 협조하에 노동위원회 결정경과 등을 공유
-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 발생시 협정(결정)의 유지·운영 수준에 따른 유지의무 이행 지도 철저

- 노조 파업 시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통보와 관련, 필수유지 업무협정(결정)서상 통보시한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시한까지 사용자에게 통보토록 지도하고,
  - 필수유지업무협정(결정)서상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근무조편성 등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시간 전까지 사용자에게 통보토록 지도
- 아울러, 필수유지업무협정(결정)은 평상시와 같은 정상근무를 전제로 유지·운영 수준을 산정한 것임
  - 따라서,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 수행능력이 없는 조합원 등을 근무자로 통보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의 공익보호를 위한 유지·운영수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통보권 남용에 해당됨을 지도

#### <복수노조 설립에 따른 협정체결 및 근무자 결정 방식>

- 필수유지업무협정(결정)이 체결된 사업장에서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을 (일부)같이 하는 복수노조 설립 시 신설 노조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함
  - 필수유지업무 협정은 공익보호를 위한 보편타당한 기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설 노조와 사용자가 기존 유지·운영수준과 동일하게 협정 체결토록 지도
- 노조 파업 시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서상 유지·운영수준과 필요인원에서 노조별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통보토록 지도

\* 복수노조 사업장 필수유지업무협정체결 관련 지도지침(노사관계법제팀-1577, '09.5.19) 참조

#### 다. 행정사항

- '10년도 중에 협정체결 대상이 신규로 발생하거나 협정체결 대상 사업장이 폐업, 노조해산 등으로 체결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본부 보고
- 협정체결 대상사업장 중 미체결 사업장에 대하여는 체결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지도하고, 협정체결 실적은 매월 본부 보고
-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대상 사업장 파업 시 새로운 법적 쟁점은 본부(노사관계법제과)와 협의, 체계적 대응
- 필수공익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와 노동위원회는 결정신청, 임단협 조정신청 등의 업무에 대해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담당 : 노사관계법제과 5급 박삼근, 6급 허만욱 ☎ 02-2110-7336

## 2-9. 노동위원회 업무 지원

### 가. 목적

- 판정·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사, 조직·업무운영 및 제도개선에 대한 지원

### 나. 추진방향

- 전임자 급여지급 원칙적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 제도 시행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부당노동행위와 그 처리에 대해 노동위원회와 유기적 업무 협조
- 노동위원회법령 및 제도 개선 시 노동위원회와 사전 충분한 의견 수렴 및 협의
  - \* 복수노조 설립 허용에 따른 노동위원회법령 등 제도개선사항
- 노동위원회의 기능강화, 공정성 담보를 위한 관련 예산확보 적극 지원
-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및 노·사 위원 위촉 시 차질 없는 위원위촉 수행

#### < 공익위원 위촉절차 >

①중노위위원장·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에 대하여 동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순차배제 → ②중노위에서 위촉제청 요청 → ③노동부장관 위촉 제청 → ④대통령 위촉(노동위원회법 제6조제4항)

- 노동위원회와의 업무협조 강화를 위한 수시 간담회 추진
  - \* 복수노조 설립 허용에 따른 노동위원회 역할 문제, 필수유지업무제도 운영 등에 대한 상호 정보 공유

- 노동부(노사누리)와 노동위원회(노사마루)간 조정처리사건 등 전산자료 공유

\* 사건통계(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조정신청현황, 중점지원사업장, 조정사례검색, 판례정보 등

#### 다. 행정사항

- 새로운 전임자 관련 제도 시행에 따라 공익위원 워크숍 및 조사관 교육 집중 실시(1/4분기 중)
- 복수노조 허용 등과 관련한 노동위원회법 및 규칙 제도개선 사항 개정 추진(연중)
- 노동위원회의 예산과 관련한 업무협약(3월)
- 노동위원회와 본부 담당 부서간 현안사항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한 간담회(분기별)
- 분쟁조정(사전·사후 조정) 활성화를 위해 지방노동관서와 노동위원회간 정보공유 강화 및 조사관·근로감독관 교육 기회 공동 제공(연중)

담당 : 노사관계법제과 5급 박삼근, 7급 이용학 ☎ 02-2110-7338

### 3. 노사분규 예방 및 갈등관리 강화

#### 3-1. 노사 갈등관리 기조

- 노사 갈등은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노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분위기 확산
-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
- 전임자·복수노조 제도의 원만한 정착 지원 및 체계적 갈등관리로 현장혼란 최소화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적 교섭」 지도(임금 등 단기·분배 이슈 → 생산성 향상 등 장기·경쟁력 이슈 중심으로 전환)
- 불합리한 노사문화·파업 관행 개선을 통한 합리적 노사문화 정착, 국민적 공감대 확산
  - \* 사업장 점거·폭력·파괴 등 핵심개선과제 선정·개선, 선파업 후교섭 등 불합리한 교섭행태에 대한 시정노력 강화, 정부 정책사항을 임단협과 연계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등 조치
  -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노사관계 악화를 방지

#### 3-2. 노사관계 안정 및 협력분위기 조성

##### 가. 목 적

- 노사갈등 예방활동 추진 등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기조 유지 및 협력적 노사관계 확산 도모

##### 나. 추진방향

- 중앙단위, 노사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 정책 설명 및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노·사·정간 협력 도모

- 지역단위, 지방관서별로 지역 노사관계 여건 등을 고려한 「노사관계 안정대책」 수립 추진
  - \* 지역 노사대표와 간담회 등을 수시 개최하여 노사관계 안정 및 협력 분위기 진작
- 노사갈등 예방 활동이 노사협력 기조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사갈등 예방 활동과 노사협력사업 홍보 병행

#### 다. 행정사항

- 본부는 「노사분규 예방 및 수습지도 지침」을 수립·시달(1월)
- 지방관서별로 「노사분규 예방 및 수습지도 지침」을 참고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노사관계 안정대책」 수립 시행(2월)
- 「노사분규 예방 및 수습지도 지침」(본부), 「노사관계 안정대책」(지방관서) 등에 따라 노사갈등 예방활동 적극 전개

담당 : 노사갈등대책과 4급 김홍섭 7급 장현태 ☎ 02-2110-7342

### 3-3. 체계적 · 효율적인 노사분규 예방 및 해결

#### 가. 목적

- 노사분규에 대해 「지방관서-본부-범정부」간의 역할분담 및 긴밀한 연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신속한 해결 도모

#### 나. 추진방향

- 분류유형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대응

개별사업장 노사분규	⇒	지방관서 책임 하에 분류 해결 지원
장기화 또는 사회적 이슈화 된 분류	⇒	본부 및 지방관서간 협조 하에 적극 지원
국민의 일상생활 및 국가 경제에 영향이 큰 분류	⇒	범정부적 대응(국가정책조정회의 등 활용)

- 지방관서별로 「노사관계 현안점검회의」 운영

-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많은 과장·감독관 등으로 구성하여 관내 노사분규 예방, 교섭지도 및 분류 수습방향 등 모색

##### \* 회의구성 및 운영 예시

- ▲구성 : 지청장(회의주재), 근로개선지도과장(간사), 관내 노사관계 업무에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많은 과장, 감독관 등 참여

- ▲운영 : 지방관서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관내 노사분규 발생시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 대응방안 논의

- 6개청별로도 「지방청 노사관계 현안점검회의」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초래 및 지역경제에 영향이 큰 노사분규 예방 및 수습 방안 논의

##### \* 회의구성 및 운영 예시

- ▲구성 : 청장(회의주재), 근로개선지도과장(간사), 관내 노사관계 업무에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많은 지청장, 과장, 감독관 등이 참여



▲ 운영 : 지방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관내 주요분규 발생시, 2개 지방관서에 걸친 분규발생시 회의를 개최하여 대응방안 논의

○ 국가핵심기반 분야\* 종사자 파업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응

\* 금융전산, 보건의료, 식·용수, 원전안전, 육상화물운송, 전력, 정보통신, 가스 등

- 국가핵심기반 분야 노사관계 동향을 파악하여 주관부처[지경부(전력) 등]에 전파 → 주관부처는 위기수준을 판단하여 경보를 발령하고 우리부에 통보 → 우리부는 동향파악, 교섭지도 및 불법행위 자제 지도 등 적극 전개

#### 다. 행정사항

○ 본부-지방관서는 분규 유형별 대응체계에 따라 적극적인 분규 해결지원 활동 전개(연중)

- 본부는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에 영향이 큰 분규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활용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

○ 지방관서별 및 지방청별 자체 「노사관계 현안점검회의」를 구성하여 운영(연중)

○ 국가핵심기반 분야에 대한 본부-지방관서간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운영(연중)

- 국가핵심분야 위기관리와 관련하여 주관부처에서 위기경보 발령 시 본부는 지방관서에 긴급 업무연락 시달

- 본부-지방지방관서는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조치

담당 : 노사갈등대책과 5급 이태훈, 6급 박태영 ☎ 02-2110-7342

### 3-4. 노사갈등관리 역량 강화

#### 가. 목적

- 노사분규에 대한 이해와 관련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노사분규에 대한 예방 및 조정 효과 제고

#### 나. 추진방향

- 주요 노사분규 추이에 대한 이해 제고
  - '09년도 노사분규에 대한 업종·규모·상급단체·발생원인별 분포 및 최근 10년간 추이 분석 통계 자료 발간
- 주요 노사분규 사례집을 통한 사례별 응용력 향상
  - 노사분규의 주요 쟁점, 분규원인, 경과, 문제점 및 시사점 등에 대한 사례집 발간을 통해 노사갈등 예방 자료로 활용
- 「노사분규 예방 및 수습지도 매뉴얼」에 따른 노사갈등을 관리
  - ①갈등요인 사전예방 → ②원활한 교섭지원 → ③조정·중재과정에서의 교섭지원 → ④분규수습 → ⑤사후관리
- 노사분규 상황에 대한 점검 철저 및 본부와 유기적 대응 기조 유지
  - 노사교섭에 대한 대응기조, 노사간 쟁점에 대한 법적 판단 등에 관해 본부와 유기적으로 연락체계를 구축
- 노동위원회와 연계 강화를 통해 노사분규 예방·해결을 위해 상호 협조
  - 지방노동관서는 사업장별 쟁점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노동위원회와 공유하여 조정단계에서 분쟁해결 효과 제고
  -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 및 조정결과를 관할 노동관서에 통보하여 노사분규 예방 효과 제고

- 민간 노사전문가를 '교섭협력관'으로 채용·배치하여 노사갈등 관리 역량 강화('10년 3명, 총 6명)
  - 6개 지방청에 배치, 광역 노사갈등관리 전담 추진

#### 다. 행정사항

- 본부, 주요 노사분규 통계 및 사례집 발간·배포(4월)
  - 지방노동관서, '09년 해당 관서 주요 노사분규 사례를 작성하여 본부에 제출(2월)
- 지방노동관서는 노사분규(갈등) 상황에 대한 본부 보고 철저(연중)
  - 상황보고는 신속히, 핵심적 사항을 명확히 파악 본부 보고
- 지방관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와 정보공유 등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 (연중)
  - 지방관서 근로감독관과 노동위원회 심사관간 간담회 실시(수시)
- 본부, 교섭협력관에 대한 평가 및 추가 채용(4월)

담당 : 노사갈등대책과 5급 조해일, 7급 이근환 ☎ 02-2110-7344

### 3-5. 노사관계 취약 사업장 · 업종 집중관리

#### 가. 목적

- 노사관계 취약사업장 및 취약업종을 선정하여 노사분규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 나. 추진방향

- 노사관계 취약사업장 선정 및 관리
  - 전국 지방관서별로 노사분규 빈발 또는 분규발생 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을 선정
  - < 노사관계 취약사업장 선정기준 >
    - ① 분규발생 가능성이 있는 1,000인 이상 또는 공공부문 사업장
    - ② 특히 구조조정, 사내하청 노조, 신규노조 등 현안문제로 분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 ③ 최근 5년간 2회 이상 분규발생 사업장
    - ④ 외투기업 중 최근 3년내 분규발생 사업장
  -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여 임단협 만료 3개월 전부터 집중 지도
- 「노사관계 안정지원 TF」 운영(금속, 공공, 건설 등)
  - 관계부처, 학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
  - 노사관계 취약요인 분석, 교섭지원 및 대응방안 등 모색

#### 다. 행정사항

- 지방관서별로 취약사업장 선정기준에 따라 취약사업장을 자체 선정하여 본부로 제출(1월)
  - 취약사업장별로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여 임단협 만료 3개월 전부터 집중적인 예방활동 전개(연중)
  - 지방관서의 취약사업장 지도실적 점검(7월, 12월)
- 본부는 「노사관계 안정지원 TF」를 구성하고(3월), TF회의 수시 운영(연중)
  - 취약업종의 주요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장 또는 근로개선지도 과장도 TF회의에 적극 참여

담당 : 노사갈등대책과 5급 김희영, 6급 이경환 ☎ 02-2110-7346

### 3-6. 노사갈등 현안 이슈 및 분류 유형별 대응방안

#### 가. 목적

- '10년도에 예상되는 노사관계 주요 쟁점별 및 분류 유형별 대응방향을 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 사전 예방

#### 나. 추진방향

- 주요 갈등 이슈별 차별화된 대응 기초 확립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조법 개정에 따라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됨을 지도, 임금지급 요구 교섭은 불법임을 지도</li> <li>▪ 새로 도입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정착 지도</li> </ul>
복수노조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장내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지도</li> </ul>
구조조정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관서별 사업장 구조조정 관련 동향 파악, 고용 지원센터·지자체와 고용유지 지원 방안 모색</li> <li>▪ 노조의 요구가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 지 판단·지도</li> </ul>
비정규직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근로감독 강화를 통하여 불법성을 명확히 규명</li> <li>▪ 필요시 원·하청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화채널 마련 지원</li> </ul>
산별교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사자율기조를 유지하되 산별교섭의 비효율성이 국민 경제·기업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노사 지도</li> </ul>
화물운송업자 등 자영업자의 집단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법상 화물운송업자 등 자영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 관련 동향 파악 및 관계부처 대응 공조 지원</li> </ul>

- 분류 유형별 일관된 대응 기초 확립

- 노사를 불문하고 관내 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
-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행위 정도, 분류의 원인, 공익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일관성 있게 대처

- ① 폭력·파괴·점거·출입방해 등 수단상의 불법 집단행동  
(목적·절차상 합·불법 불문)
  - 사전 경고 후 불응시 불법행위 신속 제거(검·경)
  - 주동자는 물론 행위자도 엄중조치
- ② 목적·절차상 불법파업이나 소극적 업무거부 형태의 경우
  - 노조에 대해 불법임을 경고(서면)
  - 주동자 위주로 의법 조치
- ③ 불법파업이나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 등 그 원인이 사용자  
에게 있는 경우
  - 노사 모두에게 공정하고 엄정하게 대응(사용자의 의법 조치와  
함께 노측의 불법행위도 조치)
- ④ 목적·절차·수단 모두 합법파업인 경우
  - 적극적인 교섭주선 등을 통해 조기타결 노력 집중 전개

#### 다. 행정사항

- 지방관서는 「불법분규 예방팀」을 구성하고, 본부 보고(1월)
- 지방관서는 새로운 유형의 분규 및 불법분규 등에 대한 대응  
기조, 법적 판단을 위해 본부와 연계체제 유지(연중)

담당 : 노사갈등대책과 4급 조남홍, 6급 한삼남 ☎ 02-2110-7345

# 공공노사정책관실





## = 목 차 =

<b>1.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합리화 지도</b> .....	<b>369</b>
1-1. 합법적 공무원노조 운영지도 .....	369
1-2. 공무원 합리적 교섭관행 형성 지도 .....	371
1-3. 공무원·교원 단체협약 분석 및 개선 조치 .....	373
1-4. 교원 노사관계 합리화 지원 .....	375
<b>2. 공공기관 노사관계 합리화</b> .....	<b>377</b>
2-1. 공공기관 갈등 예방·관리 및 교섭지도 .....	377
2-2. 공공기관 노사관행 개선 지원 .....	379
2-3. 노사관계 진단·평가체계 구축 및 모범사례 확산 .....	381
<b>3. 공공부문 노사관계 전문성 제고</b> .....	<b>383</b>
3-1. 「공공부문 전담근로감독관」 전문성 및 역할 제고 .....	383
3-2. 노사관계 인식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	385



# 1.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합리화 지도

## 1-1. 합법적 공무원노조 운영지도

### 가. 목적

- 공무원 노조에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 또는 법률로 노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합리적 노사관계 질서 형성 미흡
- 따라서, 공무원 노조에 해직자 또는 노조 가입이 금지되는 업무총괄자 등에 대한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 등에 대한 시정 등 적극적인 노조 운영지도 필요

### 나. 추진방향

- 노동조합 규약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해직자) 및 법률로 노조 가입이 금지된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심사 및 시정조치
- 해직자 및 업무총괄자·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자의 노조 가입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시정조치
  - 특히, 업무총괄자가 공무원 노조에 가입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조 운영지도 필요

### 다. 행정사항

- 본부
  -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범위 관련 구체적인 판단 지침 마련(3월)

- 공무원노조법 쟁점 관련 질의회시집 발간·배포(2월)
- 연합단체 및 전국단위 공무원노조 임원 등 노조 간부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시정조치

○ 지방노동관서

- 관내 공무원노조 규약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통해 해직자 또는 가입금지 대상 가입 허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 조치(연중)
-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해직자 또는 ‘업무총괄자’ 등 가입금지 대상 가입여부 점검 및 지도(연중)
  - \* 기초 자치단체 “업무총괄자”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지자체 노사에 지도
- 특히, 관내 공무원노조 간부(전국단위 노조 지부 포함)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 보고 (상·하반기)

담당 : 공무원노사관계과 5급 김영기, 6급 김경민 ☎ 02-2110-7372

## 1-2. 공무원 합리적 교섭관행 형성 지도

### 가. 목적

- 공무원 단체교섭 과정에서 법상 비교섭사항에 대한 교섭 등 불합리한 교섭 관행 형성
- 단체교섭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섭 지원·지도를 통해 불합리한 교섭 관행이 형성되지 않도록 조치

### 나. 추진방향

- 관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 담당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 교섭 초기단계부터 공무원 단체교섭 진행 상황을 파악, 비교섭 사항 등 위법·불합리한 사항이 교섭의제에 포함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
  - \* 위법사항(공무원노조법 및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과 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 위반) 및 비교섭사항(공무원 노조법 제8조 단서 및 시행령 제4조)을 중심으로 지도하되, 부당한 사항과 기타 불합리한 사항도 포함되지 않도록 지도
-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조간 갈등으로 교섭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섭지도 강화
- 교섭 진행과정에서도 노사 교섭당사자(담당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합리적인 교섭관행 형성 지도

## 다. 행정사항

### ○ 본부

- 공무원 단체교섭 지도 지침 마련(3월)
- 공무원 단체교섭 지도 상황 점검 (매분기)

### ○ 지방노동관서

- 공무원 단체교섭사항에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지도(연중)
  - \* 위법 및 비교섭사항은 단체협약이 체결되더라도 효력이 없고, 향후 시정명령 대상이 됨을 노·사 당사자들에게 적극 안내
- 공무원 단체교섭 지도실적 제출(매분기)
- 추가로 배치되는 교섭협력관(서울·부산·광주 예정)은 관할 지청 및 시·군·구 등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교섭시작 단계에서 교섭대상에 대한 지도 실시

담당 : 공무원노사관계과 5급 김태현, 6급 오재민 ☎ 02-2110-7331

### 1-3 공무원·교원 단체협약 분석 및 개선 조치

#### 가. 목적

- 공무원·교원 노사관계는 노조 조직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단체교섭이 본격화 되고 있으나, 노사당사자의 인식 및 경험부족으로 불합리한 관행이 단체협약을 통해 형성
- 단체협약에 대한 분석 및 불합리한 내용에 대한 개선 지도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합리적 교섭질서 정착

#### 나. 추진방향

- 공무원 및 교원의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분석하여, 조항별로 위법·비교섭·부당·기타 불합리한 사항으로 분류
- 위법 사항 및 비교섭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는 등 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해서 후속 조치 실시

#### 다. 행정사항

- 본부
  - 단체협약 분석 및 개선계획 수립 및 「단체협약 위법 여부 등에 관한 판단지침」 보완 배포 (3월)
  - 소관 공무원·교원 단체협약을 분석 위법 등 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 등 조치
- 지방관서
  - 관내 지자체 등의 교섭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신고하도록 적극 독려



- 위법 및 비교섭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 명령,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토록 행정지도
  - \* 시정명령 기한 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 벌칙을 적용
  
- 부당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내용으로 변경하도록 지도 (문서 촉구 및 현지출장 등)

담당 : 공무원노사관계과 5급 김태현, 7급 오재민 ☎ 02-2110-7331

## 1-4. 교원 노사관계 합리화 지원

### 가. 목적

- 교원노조의 경우, 노조간 합의에 의해 교섭단을 구성하여야 하나, 일부 노조가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해태하여 단체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노동관서에서 교원 노사관계의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나. 추진방향

- 교원노조간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창구단일화 및 단체협약 체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다. 행정사항

- 본부
  - 현행 단체교섭 절차,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화 추진(3월)
  - 교원 단체교섭 절차 및 교섭대상 등 쟁점사항을 정리한 교원노사관계 질의회시집 발간 (6월)
- 지방관서
  - 교섭 초기단계부터 관내 시·도 교육청 순회지도 등을 통해 교육 정책 등 불합리한 사항의 교섭 배제 등 합리적 교섭관행 형성 지원 (연중)

- 지방관서별로 지자체 및 교육청 등 관내 유관기관과 교섭 지원 관련 업무 연계체제 구축
  - \* 관련 업무 담당자 등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업무 협조 활성화
- 관내 교원 노사관계 갈등 요인 및 주요 현안 사항 등 신속한 동향 파악·보고 및 대응(수시)

담당 : 공무원노사관계과 5급 김태현, 7급 오재민 ☎ 02-2110-7331

## 2. 공공기관 노사관계 합리화

### 2-1. 공공기관 갈등 예방·관리 및 교섭지도

#### 가. 목적

-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증폭될 우려
  - \*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이 지연되면서 철도공사 등 11개 기관이 기존 단체협약 해지, 노사갈등 확대양상
  - \* '10년 예산편정지침, 전임자 급여금지 등과 관련된 현장 갈등 전망
- 공공기관 부문의 노사갈등이 사회불안과 국민 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적 갈등관리 강화
- 불합리한 노사합의사항 개선 등 적극적인 교섭지도로 자율과 책임의 건강한 노사관계 정착을 지원

#### 나. 추진방향

- 선진화 추진과정상의 주요 쟁점 및 관련 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노사갈등을 사전에 적극 예방함으로써 개혁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 \* 선진화 추진 사업장 및 분류다발 사업장 대상으로 전담감독관을 지정, 합리적인 갈등관리 지도·지원
- 노사 갈등은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 해결토록 지도하되, 노사의 불법행위는 엄정 대처
- 「공공기관 단체교섭 지도지침」 시달, 지방관서는 노사관계 취약 기관 중심으로 집중적인 교섭 지도 실시

## 다. 행정사항

### ○ 본부

- 양대 노총 및 주요 사업장 동향을 파악하고, 유관부처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공부문 노사관계 안정 도모
- 기관별 노사갈등 요인 분석 등 사업장별 DB 관리시스템 구축(노사누리), 상시 모니터링 및 지원체계 마련
- 공공기관 노사분규 발생시 「지방관서-본부-감독부처」간 연계를 통해 노사갈등 해결을 지원
- 공공기관 단체교섭 지도지침을 작성·시달(3월)

### ○ 지방관서

- 관내 노사관계 취약 사업장 현황 파악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정보공유를 통해 갈등 요인을 사전에 해소
- 분규 등 노사갈등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해결 원칙을 견지하되, 무리한 단협해지, 위법한 직장폐쇄 등 불필요한 갈등 확산은 사전 예방
- 지역별 노조 간부 간담회 실시 등 관서별로 노조와의 대화 채널 유지하고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유도
- 공공기관 단체교섭 지도지침에 따른 합리적인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관내 공공기관 지도 강화
- 관내 공공기관의 노사관계 현황, 단체교섭 진행경과 등 기관별 세부 정보 지속 축적·보고(기관별 파악화)

담당 : 공공기관노사관계과 5급 조충현, 6급 천성화 ☎ 02-2110-7375

## 2-2. 공공기관 노사관행 개선 지원

### 가. 목적

- 공공부문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과는 달리 시장억제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노사담합 등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
- 우리나라 노사관계 선진화와 공공부문의 자기역할 확립을 위해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책임과 공정의 원칙이 지켜지는 균형적인 노사관계 정립

### 나. 추진방향

#### (1) 불합리한 노사합의 개선 지원

- 노사담합 등 불합리한 관행의 근거가 되는 단체협약 등 인사·노무관련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지원
  - 위법사항은 시정명령하고, 부당한 사항은 사용자 책임하에 자율 개선토록 지도
- 단체협약 체결·갱신시 그 개선정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감독부처 통보 등 지속 관리

#### (2) 컨설팅 서비스 내실화

- 소관부처 또는 공공기관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 지원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인사노무관련 규정 및 노사협의사항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본부-지방관서(공공부문 전담팀)」 간 역할분담 및 긴밀한 연계를 통해 심도있고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

## 다. 행정사항

### ○ 본 부

-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경영계약서 이행실적 평가시 노사관계 평가 강화, 합리적 평가기준 마련 추진
  - \*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에 평가단 참여 추진 등
- 노사관계 선진화 담당부처·공공기관의 인식 제고 및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 예산, 성과상여 차등배정 등 성과관리체계 확충 협의
- 기관별 전담자를 지정, 해당기관의 노사관계 DB를 상시관리 하고 기관별 특성에 따른 컨설팅 제공
- 공공기관 최고경영자 연찬회 개최,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의지 확산('10.5월)
- 지방노동관서 공공부문 전담팀 연찬회 개최, 선진화 추진 방향 공유 및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10.2월)

### ○ 지 방

- 공공부문 전담팀 구성, 관내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개선여부 등 선진화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고
  - \* 단체협약의 합리적 개선, 위법사항 시정조치 등
- 본부와 협의하여 지역내 노사관계 취약사업장 등에 대한 컨설팅 등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지원

담당 : 공공기관노사관계과 5급 조충현, 7급 박재규 ☎ 02-2110-7373

## 2-3. 노사관계 진단·평가체계 구축 및 모범사례 확산

### 가. 목적

-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노사관계 종합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함으로써 건강한 노사문화 확산 도모

### 나. 추진방향

#### (1) 노사관계 진단·평가체계 구축

- 객관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해당기관 노사관계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교섭지도, 컨설팅 등에 활용
- 분석결과를 활용, 전체 공공기관의 노사관계 합리성 분포(도)를 작성·공개함으로써 바람직한 노사관계 모델 제시
  - 기관 스스로 당해 노사관계를 진단할 수 있는 기준 제시, 미진한 부분은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
- 노사관계 등급에 따라 예산 및 성과상여를 차등 배정, 실질적인 보상으로 연계 추진

#### (2) 선도 모범사례 조성 및 확산

- 실적이 우수한 기관은 노사관계선진화 선도기관으로 선정·발표(“노사관계 우수기관” 포상), 타기관 벤치마킹 촉진
- 공공기관 노사관계 우수사례 기획연재 등 토크홍보 실시(9~12월), 선진화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 유도



## 다. 행정사항

### ○ 본 부

- 「공공기관 노사관계 종합평가지표」 개발 및 지방노동관서 시달(6월)
- “노사관계 우수기관” 포상(10월) 및 우수사례 홍보(9~12월)

### ○ 지 방

- 평가지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내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진단, 우수기관 발굴하여 포상대상 추천(9월)
-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관한 홍보(지역 홍보매체 등 활용)
- 지역내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대한 벤치마킹 지도

담당 : 공공기관노사관계과 5급 조충현, 7급 박재규 ☎ 02-2110-7373

### 3. 공공부문 노사관계 전문성 제고

#### 3-1. 「공공부문 전담근로감독관」 전문성 및 역할 제고

##### 가. 목적

-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노사당사자들은 노사관계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이 부족하여, 불합리한 노사관행이 형성되고 있음
- 현장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

##### 나. 추진방향

- 공공부문 전담근로감독관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
- 특히, '10년에는 통합공무원 노조 및 공공기관 선진화 등으로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

##### 다. 행정사항

- 본부
  - 공공부문 전담 감독관 워크숍 실시(2월)
  - 법령해석·제도개선 등에 대해서 지역별 설명회(6, 9월)
  - 공무원·교원노사관계 전문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 지방노동관서
  - 노사관계 유경험자를 공공부문 전담감독관으로 지정(변경시 공무원노사관계과에 보고)

- 공공부문 전담감독관이 관내 공공부문 노사관계 전담토록 조치
  - \* 주요업무 : ①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설립신고 및 운영지도 관련 업무 ②관내 지자체 등 공무원 및 교원 노사관계 동향파악 유지 및 본부 보고 ③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운용 등 관련 업무 ④ 기타, 공공부문 노사관계 통계 파악 및 유지 등
-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한 동향 파악 철저(연중)
  - \* 공무원·교원 등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교부, 단체협약 체결 상황, 기타 노사관계 동향 등
- 공무원 노사관계에 불합리한 노사관행이 형성되지 않도록 예방 지도 실시

담당 : 공무원노사관계과 5급 하창용, 6급 이민우 ☎ 02-2110-7355

### 3-2. 노사관계 인식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 가. 목적

-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 당사자 등의 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 필요
- 공공부문 노사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로 합리적 노사관계 형성 지원

#### 나. 추진방향

- 공공부문·일반 노사를 대상으로 한 노사관계 인식·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 본부 및 지방관서 직접교육·한국기술교육대와 합동 교육, 한국기술교육대 중심의 공공부문 전문교육,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체계적·집중적 교육 실시

#### 다. 행정사항

- 본부
  - 지방관서 합동 공공부문 권역별·대상별 순회교육 실시(연중)
  - 한국기술교육대와 합동 권역별·대상별 순회교육 실시(상반기)
    - \* 공무원, 교원,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실시
  -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내실화 및 활성화 추진
    - \* 사업계획 수립, 사업공고 및 사업자 선정, 사업평가 등

○ 지방관서

- 지방관서별 실정에 맞게 공무원·교원·공공기관 노사를 대상으로 한 자체 교육계획 수립·실시
  - \* 교육실시 실적은 매반기 말까지 공무원노사관계과 및 공공기관 노사관계과로 보고
- 공공부문 노사교육 전문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의 교육 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노사에 적극 안내 등 교육 지원
-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과 관련 관내 노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 내용 및 교육기관, 교육과정 소개 등 적극 협조

담당 : 공무원노사관계과 5급 김승환·공공기관노사관계과 5급 김옥진 ☎ 02-6902-8492

# 근로기준법



## = 목 차 =

<b>1. 취약근로자의 기본적 권익 보호</b> .....	<b>391</b>
1-1. 사업장 근로감독 .....	391
1-2.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	394
1-3. 신고사건의 신속·공정한 처리 .....	396
1-4. 근로감독행정의 효율화 .....	399
1-5.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 제고 .....	401
<b>2. 임금체불 예방 및 권리구제 지원 강화</b> .....	<b>405</b>
2-1. 임금체불예방 및 권리구제 지원 .....	405
2-2. 임금채권보장제도 운영 내실화 .....	407
<b>3. 주40시간제의 원활한 정착 지원</b> .....	<b>410</b>
<b>4. 선진기업복지제도의 정착·발전</b> .....	<b>412</b>
4-1. 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확산 지원 .....	412
4-2. 근로자 복지서비스 확충 .....	417
4-3. 선진기업복지제도 확산 노력 .....	420
<b>5. 공인노무사 관리 철저</b> .....	<b>423</b>





# 1. 취약근로자의 기본적 권익 보호

## 1-1. 사업장 근로감독

### 가. 목적 및 기본방향

-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등 가장 기초적인 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고,
  - 업종 분화, 자영업자 증가 등으로 근로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새로운 취약분야도 증가
- 금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신설 및 기존 사업장의 가동률 향상이 예상됨에 따라 노무관리가 취약한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피해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
- 따라서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취약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업장 감독이 필요

### 나. 세부추진 계획

#### (1) 「사업장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 수립·시달 (본부)

- 사업장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실국별 사업장근로 감독 목표와 대상(분야)을 총괄하는 「사업장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수립·시행
- 본부의 각 실·국은 ‘10년도 「사업장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할 사항\*을 근로기준과와 사전 협의
  - \* 근로조건을 개선하거나,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감독을 실시하여야 할 업무
- 근로기준과는 협의내용을 토대로 계획(안)을 마련, 「근로감독 행정발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

- 감독목표 : 근로감독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사업장과 근로감독관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사업장감독 목표를 조정
  - \* 점검목표(실적) : '05년 11,700개소(15,128) → '06년 12,620개소(17,732) → '07년 18,470개소(20,224) → '08년 22,960개소(24,771) → '09.11.월 24,540개소(25,471)
- 계획 시달 : 1.20까지

## (2) 지방관서별 세부시행계획 수립·추진 (지방)

- 「사업장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을 기초로 본부 업무계획, 지방관서의 행정여건 및 감독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 \* 산업구조, 사업장 규모, 노사분규 및 민원발생 현황, '10년 노사관계 여건 등
- 감독목표 설정
  - 본부에서 최소한의 목표만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지방관서가 자율적으로 추진
- 감독시기 및 방법
  - 대상 사업장 수, 감독관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감독시기를 적절하게 조정
  - 수사·특별감독, 기획감독 등을 적극 활용한 선택과 집중으로 사업장 근로감독의 효율을 높이고, 그 결과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근로감독업무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제고

## (3) 평가 (본부·지방)

- 분기 또는 반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는 등으로 사업장감독의 실효성을 제고
- 감독실적 우수 및 수범 지방관서 포상금 지급(연말)

## 다. 행정사항

- 본부 실·국은 「사업장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할 사항\*을 근로기준과로 제출
  - \* 노사협력정책국, 근로기준국, 고용평등정책관 업무(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2조 제2항에 정한 13개 법령 중심) 중 근로조건이 특히 취약하거나 핵심 정책과 관련된 분야 위주로 최소화
  - 사업장감독 요구 근거(업무계획, 관계 법령, 국정감사 지적 등) 및 목표, 중점점검사항(관련법조문), 점검표, 행정대상(사업장 수·규모)을 포함
- 「사업장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안) 마련
  -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방관서 시달('10.1.20까지)
- 지방관서별 「사업장근로감독 세부시행계획」수립('10.1.31까지)

담당 : 근로기준과 4급 김사익, 6급 김주화 ☎ 02-2110-7386, 7388

## 1-2.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 가. 목적

- 사업주단체, 공인노무사 등 노무관리 전문가가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노무관리 진단,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이행을 지원하고,
  - 국가가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취약 근로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 및 법 준수 분위기 확산을 도모
- \* 사업 추진절차 : 노동부(예산지원) → 운영기관(전담팀 구성, 사업장의 근로조건 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 지원) → 사업장(근로조건 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이행) → 노동부(결과 분석 및 사후 관리)

### 나. 세부추진 계획

#### (1) 본부

- '09.12월 중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예산 집행계획, 관서별 목표 사업장 수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운영계획」을 수립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수탁사업자 모집을 공고(신청 기간 '10.1.1~1.31)
- '10.1월 중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시달하여 사업 추진절차, 위탁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방법을 안내하고,
  - 위탁사업자 선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2월까지 점검표와 구체적인 업무 추진요령\*을 시달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
- \* 자율개선 지원 절차 및 요령, 지원결과 보고 및 시정, 결과 조치 등

- 근로감독관 및 수탁사업자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 사업 마무리 후 지원대상 사업장, 수탁사업주, 지방관서 등을 대상으로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

## (2) 지방

- 지방청별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에 응한 사업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탁사업주를 선정하되 선정된 수탁사업주와 위탁계약은 지방관서별로 체결
  - 위탁사업비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선급금으로 70%를 지급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업무 추진요령(추후 시달)에 따라 자율개선을 실시
  - 100인 미만 등 사업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곳을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효율성을 제고
  - 대상 사업장 및 수탁사업주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 주요한 근로조건이 점검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 \* 특히 교육에 불참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재교육 등을 통하여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수탁사업주에 대하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다. 행정사항

- 자율개선 지원 실시 단계별로 PKMS(노사누리) 전산입력을 철저하게 하고,
  - 자율개선 실시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본부에 보고

담당 : 근로기준과 4급 김사익, 6급 김주화 ☎ 02-2110-7386, 7388

### 1-3. 신고사건의 신속·공정한 처리

#### 가. 목적

- 신고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등 민원인 편의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섬기는 노동행정을 실천

#### 나. 세부추진 계획

##### (1) 민원처리기간 준수 및 진행상황 통보 (지방)

-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 그 밖의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
- 신고사건 처리 과정, 기한 내에 종결하지 못한 신고사건의 처리기한 연장 사실 등을 민원인에게 충분히 설명(안내)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 장기 미해결사건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하는 등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 (2) 재 민원, 이첩민원의 신속처리 (지방)

- 사건처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감독관 변경여부 등을 적극 검토 처리
  - \* 불친절 등에 관한 민원을 당사자가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2회 이상 반복 제기된 경우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거나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결
- 다른 관서 이첩대상 민원은 접수단계부터 관할여부를 신속히 확인, 지체 없이 이송하고 민원인에게 안내

### (3) 조사업무 간소화를 통한 민원인 편의 제고(지방)

-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 출석조사를 생략, 당사자가 합의처리토록 지도하고(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7조 제9항),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안됨) 사유가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가치가 없는 고소·고발사건은 불필요한 조사 없이 신속히 종결(근로기준팀-7910, 2007.11.27)
- ‘우편진술서’ 및 ‘전화진술서’ 적극 활용 (집무규정 제38조)
  - 신고인, 참고인 등이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우편진술서)
  - 전화로 확인한 결과 내사종결이 예상되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는 경우 (전화진술서)
- 사업장 대표 등 당사자의 출석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인의 출석을 허용하고 (집무규정 제8조제3항)
  -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원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출석일시를 지정 (집무규정 제8조제4항)

### (4) 강제수사 시 인권시비 예방 철저 (지방)

- 근로감독관이 강제수사에 임할 경우 지켜야 할 내용을 숙지
  - 피의자 체포 등 강제수사 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인권문제 등 불필요한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사례\* 예방
    - \* 체포영장집행절차 미준수(영장미제시, 범죄사실요지·체포이유·변호인선임가능여부 미고지 등), 자진출석한 피의자에게 면박을 주며 무리하게 수갑을 채우고 장시간 조사 등

### (5) 기소중지자 관리실태 일제 점검기간 운영 (지방)

- 기소중지자 관리실태 일제 점검기간을 운영, 지명수배·통보, 소재발견 시 대응 등 관련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점검
- 기 간 : ‘10.1.1 ~ 1.31(31일간)



○ 점검대상

- '07.1.1~'09.12.31(3년간) 기소중지 사건 및 피의자 소재발견 통보 건

○ 점검내용

- 지명통보(수배)에서 사건종결까지 기소중지사건 처리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 점검하여 적정 여부 확인
- 「지명수배·통보 및 해제대장」, 「피의자소재발견처리부」를 확인하여 기소중지자 중 전산 미등록자 여부 확인
- 공소시효 만료된 기소중지건 정리
- 소재발견통보서 접수 후 적정 업무처리 여부 확인
- 기타 기소중지자 관리 실태

다. 행정사항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적용 철저 (지방)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숙지하여 신고사건 처리 등 관련업무 처리 시 적용 철저

○ 수사업무 대장관리 철저 (지방)

- '09.1월부터 전산화가 완료된 각종 수사업무 관련 대장\*은 기 시달된 지침(근로기준법-133, 2007.1.4)에 따라 관리 철저

\* 입국시통보요청대장, 구속영장신청부, 긴급체포원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

담당 : 근로기준과 4급 김사익, 6급 김주화 ☎ 02-2110-7386, 7388

## 1-4. 근로감독행정의 효율화

### 가. 목적

- 근로감독행정의 역량강화와 근로감독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근로자 권익보호에 기여

### 나. 세부추진 계획

#### (1) 근로감독조직 및 역량관리

- 직무교육의 내실화 (연중)
  - 근로감독관 직무교육과정 검토(운영지원과와 협조)
    - '10년도 근로감독관 교육훈련 : 22개 과정
    - 1단계 기본과정(이해중심) - 2단계 심화과정(실무적용 중심)
      - 3단계 테마과정(분석·평가 중심)으로 재편
  - 연간교육대상자 확정명령 : 운영지원과에서 연초에 개별 신청을 취합하여 일괄 교육 명령
- 국내위탁교육훈련 추진 및 관리
  - 국내노동대학원에 「근로감독행정전문과정」을 개설 운영하여 경력근로감독관에게 노동법 관련 전문학습과 직무능력 및 지도역량 배양
  - 대상자 : 24명, 교육기간 4개월 예정, 시행시기 상반기

#### (2) 근로기준분야 업무추진실태 지도 점검

- 추진실태 지도점검
  - 상반기 근로기준분야 업무추진실적을 분석하여 우수사례 발굴 전파 및 부진관서 지도
  - 대상기관 : 상반기 업무추진 우수관서 및 부진관서

### (3) 업무프로세스 개선

-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노사누리, PKMS 등) 관리 (본부)
  - 지방관서에 수요조사 및 정보화기획팀에 통보 (1/4분기)
  - 업무분석 및 개발 (2/4~3/4분기)
  - 테스트 및 시범운영 (4/4분기)

### (4) 근로감독관 워크숍 및 사기진작

- 근로감독관워크숍 (연찬회) 주관 : 연 1회
  - 본부의 정책 및 현안사항을 현장과 공유하여 해결방안 모색
- 근로감독관 해외연수 추진
  - 올해의 근로감독관, 우수 및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7~8일의 해외연수 ('10년 상·하반기 각 1회)
-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정(10명, 12월)
  -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발방식 재검토(1/4분기)

### 다. 행정사항

- '10년도 근로감독분야 민원제도개선사항 숙지 및 이행철저
  - '09년부터 신고사건 처리상황이 민원시스템에 표시되므로 민원을 신속처리하고, 민원인에게 민원시스템 홍보
    - ※ 민원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minwon.molab.go.kr](http://minwon.molab.go.kr)
  - 신고사건 검찰 송치시 전산상의 결재일자와 실제 송치일자가 다르지 않도록 확인 철저
- 근로감독행정전문과정 위탁기관 선정 등 세부계획수립(1월)
- 근로감독관 업무추진실태 지도 점검계획 수립(6월)

담당 : 근로기준과 5급 김동현, 6급 손한식 ☎ 02-2110-7399, 7384

## 1-5.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 제고

### 가. 목 적

-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의 인지도 제고 및 최저임금의 사각지대 해소 등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통한 기본적 근로생활 보호

#### 《 최저임금 현황 》

- ◆ 적용기간 : '10.1.1 ~ '10.12.31
- ◆ 최저임금액 : 시간급 4,110원, 일급 32,880원(8시간 기준)
  - 감액적용
    - 감시·단속적 근로자(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80% 적용(시간급 3,288원, 2011년까지 감액적용)
    - 수습근로자(3월이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90% 적용(시간급 3,699원)
  - 적용제외 :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전면 적용배제

### 나. 세부추진 계획

#### (1)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 지원(본부)

- 고용에 대한 영향, 한계기업 보호 등을 감안하여 '11년 적용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지원
  - 최저임금 통계 정비, 근로자 생계비·소득 분배구조 관련 실태 파악 등 적정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기초통계 제공(상반기)

#### (2) 적극적 홍보활동으로 최저임금 준수 촉진(본부·지방)

- 방송·신문 등 다양한 언론매체 활용 및 유관사업 연계 홍보 등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홍보 실시
  -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소근로자, 장애인근로자, 고령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최저임금 준수 홍보

- 지역언론, 노사단체 및 시민단체, 교육기관, 각종 협회 등과의 협조를 통한 지방관서별 자체홍보 및 캠페인 실시 병행
  - \* 노사단체, 대학 취업지원센터, 실업계고등학교, 청소년단체 및 PC방 협회 등 소규모 사업자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청소년 취업이 증가하는 방학기간(7월, 12월)을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으로 지정, 집중 홍보 및 지도
  - \* “최저임금 지키기”(7월), “다음연도 최저임금 알리기”(12월) 캠페인 전개 등

### (3) 택시 최저임금 특례제도 정착 및 이행 지도(지방)

◆ ‘10.7.1부터 제주도 및 일반 시 지역의 택시 최저임금 특례제도 적용에 따른 임·단협 갱신교섭 및 조속타결 지도  
 \* 시행일 : 특별시·광역시 ‘09.7.1, 제주도·시 지역 ‘10.7.1, 기타 지역 ‘12.7.1

- 임·단협 갱신 교섭 조속 타결 지도(제주도 및 일반시 지역 관할 지방관서)
  - 노동조합 및 사업주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해 택시 최저임금 특례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
  - 특히, 개정 시행령 취지에 맞게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 하도록 임·단협 교섭을 신속히 진행, 늦어도 6월말까지 타결 지도
  -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원만한 노사합의 지원
  - 집단행동 등 불법 행위 엄정 대처

#### (4) 최저임금 이행실태 지도감독 실시 (지방)

- 사업장감독 등 각종 사업장 지도감독 시 최저임금 이행여부 확인 철저 (연중)
  - \* 사업장감독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10년도 사업장감독종합시행계획 (별도 시달)' 참조
- 매월 1회 이상 고용보험전산망의 '최저임금미만신고사업장'을 조회하여 범위반 사업장 이행지도

### 다. 행정사항

#### (1)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 지원 (본부)

- 최저임금 합리적 결정 지원을 위한 최저임금 통계정비(상반기)
  - \* 최저임금 통계 정비, 근로자 생계비·소득 분배구조 관련 실태파악 등 적정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기초통계 제공 등

#### (2) 최저임금 홍보 관련 (본부 및 지방)

- 최저임금 관련 종합적인 홍보계획 수립·추진 (본부)
  - \* TV(라디오)·신문 광고 실시 및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 등
  - \* '11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홍보 실시 (8월~12월)
- 지방관서별 자체 홍보계획 수립·추진 (연중)
  - '10년 최저임금 관련 교육·설명회(감단근로자 포함) 실시
  - 최저임금 준수강조기간 지정·운영 (7월, 12월)
  - 지역 라디오 방송 공동 홍보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홍보 추진

### (3) 택시 최저임금 특례제도 정착 및 이행 지도 (지방)

- 택시 노동조합 및 사업주 간담회·설명회 등 실시(1~6월)
- 임·단협 갱신 교섭 조속 타결 지도(연중)

### (4) 최저임금 이행실태 지도감독 관련 (지방)

-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속히 이행토록 지도하고, 미이행시 사법조치
  - 최저임금 지도감독 결과 등(적용제외 인가 포함)은 감독 후 10일 이내에 노사누리시스템에 전산 입력
- \* 지도감독 종류, 위반법령 및 법조항, 위반 근로자 수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 통계의 신뢰성 확보

교육홍보 : 근로기준과 5급 전해선 6급 김학수 ☎ 02-2110-7395, 7385
이행지도 : 근로기준과 4급 김사익 6급 김주화 ☎ 02-2110-7386, 7388

## 2. 임금체불 예방 및 권리구제 지원 강화

### 2-1. 임금체불예방 및 권리구제 지원

#### 가. 목 적

-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임금에 대한 지도해결, 체당금지급, 무료법률구조지원 등을 통한 체불근로자의 실질적 권익보호

#### 나. 세부추진 계획

##### (1)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 지도대책 수립·추진 (본부)

- 체불임금청산지원팀 운영기관 활성화 지도
  - 체불임금청산지원팀 운영 확대 (27개소 → 43개소)
  - 수범사례 수집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공유 워크숍 실시 (상반기)
  - 운영성과 분석 및 평가 후 우수기관 포상 (반기별)
- 설·추석(1·9월) 등 취약시기에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 설정·운영 (별도 계획)
  - 집중지도기간 중 전담반을 편성하여 청산지도와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 집중 지도
- 임금체불예방과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 관련 홍보
  - \* 임금채권보장업무와 연계 및 합동

##### (2)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지원 강화(지방)

-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해결 지도
  - 지역실정에 맞는 체불근로자 보호 대책 수립·시행
  - 신고사건 다발, 집단체불 발생 등 취약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지도



- 체불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
  - 청산 가능성이 낮은 체불임금사건은 신속히 체불액 확정
  -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 '07.7.1부터 전국 어느 지방관서에서나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 임금체불 관련 권리구제절차 등 홍보 강화
  - 홍보 리플릿(본부에서 기 제작·배포)을 활용, 체불임금 청산 제도 및 권리구제절차 등 적극 안내
  - \* 진정·고소, 체당금 신청, 민사소송, 생계비 대부 등

#### 다. 행정사항

- 체불임금청산지원팀 운영계획 수립 (지방)
  - 2010 체불청산지원팀 운영계획에 따라 자체 수립(43개 운영기관)
  - 민간조정제도를 포함하는 체불청산지원팀 기능확대 시범운영 관서는 별도로 수립
- 취약시기(명절 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 수립 (지방)
  - 본부 계획 시달내용에 따라 지방관서사정에 맞게 자체 계획수립 시행

담당 : 임금복지과 5급 김정수 6급 이상곤 ☎ 02-2110-7414, 7379

## 2-2. 임금채권보장제도 운영 내실화

### 가. 목 적

- 체당금 지급을 통한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 나. 세부추진 계획

#### (1) 경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기금운용 (본부)

-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경기상황 적극 반영
  - 경기상황 악화에 따라 '10년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계획수립시 체당금 및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수요 등을 적극 반영
- 기금운용의 탄력성 제고
  - 체당금 지급 및 무료법률구조 실적 추이를 매월 분석, 필요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경기상황에 적극 대응
  - \* '10.9~10월경 체당금 지급 상황 등에 대하여 지방관서 수요 파악

#### (2) 임금채권보장제도 홍보 강화 (본부 및 지방)

- 임금체불 권리구제(임금채권보장제도 포함) 관련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 (상·하반기 각 1회)
- 무료법률구조 지원서비스\* 안내 철저 및 “무료법률 One-Stop 지원의 날” 운영 활성화

\*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시 월평균임금 400만원 이상 근로자에게는 용도란에 “무료법률구조지원용” 임금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 지방관서에서는 “무료법률 One-Stop 지원의 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 “무료법률 One-Stop 지원의 날” 실적분석 및 개선 (6월, 본부)

### (3) 도산등 사실인정 및 채당금 지급의 신속처리(지방)

- 채당금 제도 안내 철저 및 도산 등 사실인정 등 신속처리
  -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도산기업 근로자들에 대하여 채당금 제도 관련 안내 철저
- 도산 등 사실인정 및 채당금 신속처리
  - 도산 등 사실인정 및 채당금 지급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

### (4) 채당금 부정수급 방지 철저

- 경제위기를 틈탄 채당금 부정수령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수급 의심사건에 대하여 조사 철저
  - \* '10.11월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업무담당자 합동워크숍시 채당금 부정수급 및 적발사례 등 정보공유
- 채당금 신청 접수시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고지 및 채당금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를 적극 활용

### (5) 근로복지공단 협조체제 강화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접수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속히 재산 파악이 가능하도록 즉시 전산입력
  - \* 사업주 변제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주요재원으로 사업주 재산을 신속히 파악·확보가 필수인 만큼 복지공단과의 정보공유가 긴요

- 도산 등 사실인정조사단계에서 사업주 재산 파악시 즉시 통보하여 공단에서 재산 확보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

## 다. 행정사항

### (1) 도산 등 사실인정·체당금 지급 관련

- 도산 등 신청 및 처리시 즉시 전산입력하고, 체당금 지급관련 현황 파악시(9~10월) 적극 협조

### (2) 무료법률구조 지원 관련

- “무료법률 One-Stop 지원의 날” 실적 보고 철저
  -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상담실적 보고

### (3) 임금채권보장제도 담당자 합동 워크숍 개최

-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노동부-근로복지공단 협조체제 강화를 위한 임금채권보장제도 담당자 합동워크숍 개최 (11월)
  - 체당금 부정수급 적발사례, 노동부-근로복지공단 협조체제 강화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정보공유

담당 : 임금복지과 5급 양현철 6급 정영수 ☎ 02-2110-7416, 6902-8429

### 3. 주40시간제의 원활한 정착 지원

#### 가. 목 적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적용될 예정으로
  - 주40시간제 도입 교육, 조기도입 지원제도 안내 등을 통해 주40시간제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

#### 나. 세부추진 계획

##### (1) 주40시간제의 원활한 정착 위한 교육 및 지도(본부·지방)

- 본부의 업무계획, 지방관서의 여건 및 현황 등을 감안, 각 기관별로 자체추진계획 수립
- 관내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40시간제 관련 교육·설명회를 개최
  - \* 노사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개정법 취지 및 내용에 대한 이해 제고
  - \* 기 배포한 주40시간제·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안내 리플렛·책자 활용
- 본부에서 실시하는 2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위탁교육 관련사항은 별도 시달 (1월 중)

##### (2) 주40시간제도 조기단축 지원(지방)

- 근로시간 단축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 근로시간 단축이 확산되도록 안내
  - \* **근로시간단축지원금** : 5인 이상 20인 미만 기업이 법정도입시기보다 6개월전에 주40시간제를 시행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한 경우 추가고용 1인당 분기 180만원을 법정도입시기까지 지원 ('09년부터 단축전 근로자수의 30% 한도까지 지원)
  - \* **교대제전환지원금** : 사업주가 교대제를 3조 이상으로 전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 초과고용 1인당 분기 180만원씩 1년간 지원

### (3) 법정근로시간 준수 지도(지방)

- 법정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감독 실시('09년 사업장감독종합시행계획에 반영 시달)

#### 다. 행정사항

- 주40시간제 교육 및 홍보 계획 수립·추진(지방)
  - 교육 및 홍보자료 등은 본부에서 배포된 자료를 활용하거나, 지방관서별로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자체 제작하여 사용
- 지방청에서 관할 지청별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본부에 보고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보고서식 추후 시달)

담당 : 근로기준과 5급 조원식 ☎ 02-2110-7390

## 4. 선진기업복지제도의 정착·발전

### 4-1. 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확산 지원

#### 가. 목 적

- 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확산을 통한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

#### 나. 세부추진 계획

##### (1) 도입 촉진을 위한 다각적 노력 추진 (본부·지방)

- 도입당사자 교육, 사업장 컨설팅 등 퇴직연금 도입 및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사업 지속 추진 ('10년 6억원)
-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유관기관 연계홍보 및 우수도입사례 전파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추진 ('10년 7억원)
- 퇴직연금 확산의 촉매역할을 하도록 퇴직보험 가입사업장 (적립규모 24조원)에 대해 퇴직연금 전환 유도
  - \* 퇴직금의 사외적립제도로써 '11년부터 퇴직급여제도의 효력이 상실
- 내실있는 감독 및 금융당국과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과당경쟁, 계약강요 등 불완전경쟁요소 제거

##### (2)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본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하위규정 정비 및 대국민 홍보 등으로 원활한 시행 여건 마련
  - \*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자동설정, 다양한 제도 도입(복수사용자 DC형, DB&DC 혼합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제한 등

- 5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급여 의무화, 근로복지공단의 서비스 제공 및 사용자 부담금 지원 등을 통하여 원활한 정착 도모
  - \* 5인 미만 사업장은 '10년을 넘지 않는 기간내에 적용하되, 기존 퇴직급여 수준의 50%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상향(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 퇴직연금 인센티브가 강화되도록 추가납입 소득공제 확대, 퇴직금 사내유보 손비인정 축소 등 추진(기획재정부 협의)

### (3)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 지도·감독 (지방)

- 시행 4년 동안 지방관서 역량이 퇴직연금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교육·홍보·규약심사 등에 집중되고 퇴직연금 운영현황에 대한 지도·점검 미비
- '10년에는 사용자의 법령 및 규약 준수여부 등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상시화(지방관서 평가와 연계)
  - 특히, 법령·규약준수여부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집중지도
    -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단계에서 사용자, 근로자 등이 특별한 이익의 제공(원금보장상품에서 과도한 금리요구 등)을 요구하는 관행 근절

## 다. 행정사항

### (1) 도입 촉진(지방관서 평가와 연계)

#### <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

- 교육사업 추진시 ①장소제공, ②인사말 지원(관서장 또는 담당과장), ③교육 참여 홍보 및 독려 등을 적극 지원(관할 지방관서, 계속)
- 컨설팅사업 추진시 ①대상 사업장 발굴, ②컨설팅 사업 적극 홍보, ③컨설팅 수수료업체에 대한 규약신고 간소화 등 적극 지원(관할지방관서, 계속)



- 컨설팅 대상으로 지방관서 관할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도입 모범사례를 창출·확산

### < 교육 · 홍보 >

- 교육 · 홍보자료 등은 본부에서 제작 · 배포(수시)
  - 지역생활지·지역신문·지역방송 등 지역별 홍보매체를 활용한 자체 홍보를 추진하고 지역 노사단체, 퇴직연금사업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설명회·간담회 등 개최
  - 특화된 홍보방안 및 선도사업장 도입 촉진방안 마련 · 추진시 소요예산 적극 지원(본부와 사전협의)

### (2)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개정안('08.11.28 국회제출)의 주요 제도개선 내용에 대한 지방관서의 적극적 안내 및 홍보(관할 지방관서, 계속)
- '10.12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적용에 대한 선제적 안내 및 홍보(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서비스체계 마련 중)

### (3)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지도 · 감독 등(지방관서 평가와 연계)

-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에 대한 자체 지도 ·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법령 및 규약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실시
  - 특히, 퇴직연금 도입을 준비 중인 사업장에서 노사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게 특별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 \* 원리금보장상품의 과도한 금리요구, 퇴직연금과 상관없는 대출확대 등 부가상품요구 등

- 퇴직연금사업자 등으로부터 사용자의 법령, 규약위반 사실 등을 보고받은 경우 사용자에게 대한 적극 시정조치 실시
- 퇴직연금 규약심사 신속·철저(관할지방관서, 계속)
  - 개별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 신고시 규약심사지침 및 표준 규약을 참조하여 신속히 심사·수리
    - \* 규약심사기간(접수 후 14일 이내)내 심사·수리하여 민원 발생 소지 제거
  - 퇴직연금 규약 신고 및 심사 현황, 도입사업장 정보 등 노사 누리시스템 등재 철저

<참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설명>

가. 제도도입의 용이성 제고

<1> 근로자대표 동의절차 합리화

-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퇴직연금을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근로자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현재는 동의를 필요)만으로 가능토록 함(제4조)

<2>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자동설정

- 신설사업장은 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우선적으로 설정하도록 함(제5조)

나. 제도설계의 다양성 제고

<1> 가입자의 DB형 및 DC형 동시설정 허용

- 가입근로자가 DB형과 DC형 퇴직연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DB형과 DC형 각각의 장점(안정성과 수익성)을 취할 수 있도록 함(제6조)

<2> 다수사용자 공동가입 퇴직연금제도 허용

- 다수의 사용자가 하나의 표준화된 DC형 규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도입절차 간소화, 제도운영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도모(제23조)

<3>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활성화

- 현행 개인퇴직계좌제도(IRA)를 DB형 및 DC형에 준하는 퇴직연금 제도의 한 유형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발전시킴
  - 개인형 퇴직연금에 추가 부담금 납부가 가능토록 하고 재직근로자 및 자영업자도 원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다. 퇴직급여의 연속성 강화

<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한

- 아무런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일부 제한을 두어 노후재원 자체의 소진을 막고자 함(제8조)

<2> 이직시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

-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이직하는 경우 일단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도록하여 제도가입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함(제17조)

담당 : 임금복지과 5급 최진광 6급 정언숙 ☎ 02-2110-7419, 7421

## 4-2. 근로자 복지서비스 확충

### 가. 목적

-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 나. 추진방향

#### (1) 취약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근로복지공단)

-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대부
  - 저소득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시 생활안정자금과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
- \* 700만원 한도, 이자율 3%,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근로자신용보증 지원
  - 담보·신용부족으로 대부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신용보증서비스를 제공하여 대부 가능토록 지원
  - \* 보증규모(총 1,753억원) 및 대상 : 근로기금(재직자생활안정자금, 체불 생계비, 훈련생계비)(525억원), 고용보험(대학학자금, 전직실업자훈련 생계비)(1,042억원), 산재보험(생활정착금, 대학학자금)(186억원)등 노동부 정책자금 융자대상으로 선정된 근로자

#### (2) 근로자복지포탈 서비스 제공(근로복지공단)

- 흩어져 있는 복지정보를 근로자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선진기업복지제도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포탈서비스([www.workdream.net](http://www.workdream.net))\* 지원
- \* ①개인별 맞춤 복지정보 제공 ②근로자지원상담(EAP)제공, ③선택적복지지원(공통 전산인프라 제공) ④선진기업복지 도입 및 운영 노하우 제공 ⑤복지상품몰(mall) ⑥어울림 마당 등

### (3) 근로자문화예술제 개최(근로복지공단)

- 근로자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정서 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건전한 노동문화 창출로 창의적 여가활동 유도과 근로의욕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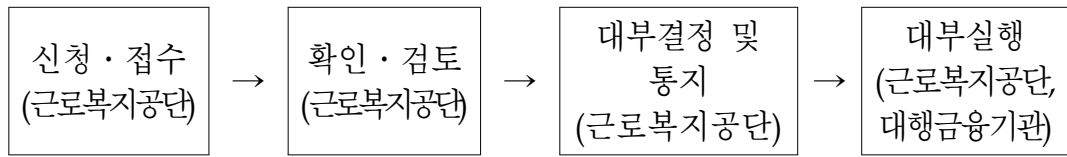
### 다. 행정사항

- 본부
  - 근로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 및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등 보완(상반기)
- 지방
  -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수행에 따른 협조 요청시 적극 협조 (체불임금 확인, 홍보 등)
- 근로복지공단
  - 사업별 자체 세부계획 수립 시행

#### <생활안정자금 대부>

- 홍보 : 1~2월, 7월(인터넷, 신문 등)
-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 접수·심의·결정 통지 : 수시
- 신용보증서 발급 : 수시
- 수요자 만족도 조사 : 11~12월

\* 업무 흐름도



<근로복지포탈 서비스>

- 포털 시스템 보완 : 5~7월
- 수요자 만족도 조사 : 11~12월

<근로자문화예술제 >

- 작품공모 및 홍보 : 2~3월
- 근로자가요제(본선대회) 개최 : 4.27
- 근로자문학회, 미술제, 연극제 개최 : 5월~10월
- 근로자문화제 종합시상식 개최 : 10.28
- 수상자 해외문화체험 : 11월

담당 : 임금복지과 5급 황병길, 6급 고민진 ☎ 02-2110-7418

### 4-3. 선진기업복지제도 확산 노력

#### 가. 목적

- 선진기업복지제도인 우리사주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 복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활성화하여 협력적 노사 관계 구축 및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
- 특히, 중소기업에 대하여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을 지원하여 우수인재 유치 및 복지격차 해소

#### 나. 추진방향

- (우리사주) 新우리사주제\* 확산과 더불어 근로자의 우리사주 장기보유를 유도

\* ① 사업주 무상출연, ② 차입형 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등

- 우리사주를 보상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여 임금지급능력 보전 및 인재확보 도모
- (사내근로복지기금) 수급업체·파견 근로자의 사내기금 수혜 대상 포함 및 공공기관 사내기금의 방만한 운영 예방을 지도
  - 기금재원 출연기준(순이익의 5%)을 폐지하여, 출연액을 노사 자율로 탄력적으로 결정토록 유도
- (선택적복지) 기업복지가 주택자금 대부 등 신용사업에 편중되지 않고, 여가·문화 등 지원토록 선택적복지 도입 지원
- (EAP\*) 온·오프라인 서비스 동시 제공 등으로 양적 확산을 도모함과 동시에, 전문자격제 도입으로 질적 향상 추구

\* 근로자고충지원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 업무수행·개인생활의 업무저해요인(직무스트레스, 알코올 중독, 부부관계 등) 해결 지원

- **(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 기업복지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업복지 제도 안내 및 도입·운영 지원
  - \* 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지원단 구성·운영(근로복지공단)
    - ▶ 선진기업복지 도입지원 컨설팅 및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 ▶ 권역별 선진기업복지설명회 연중 지속 추진
    - ▶ 근로복지포털을 이용한 기업복지 제도 안내 및 콘텐츠 제공
- **(기업복지관계 법령 정비)**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 통합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및 매뉴얼 정비
  - \* 주요내용 : ① 비정규직근로자 우대근거 신설 및 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 폐지, ② 新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및 우리사주 장기보유 유도, ③ 사내기금의 수혜대상 확대, ④ 선택적복지 및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근거 마련

## 다. 행정사항

- 본부
  -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통합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 \* '10년 상반기내 시행령 개정안 마련
    - \* 우리사주제도, 사내기금 제도에 관한 지침 정비 및 매뉴얼 작성 배부
  - 新우리사주제 등 기업복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안내 동영상 제작 및 언론매체 등 홍보
    - \* 우리사주대상 시상 및 세미나 개최
    - \* 권역별 선진기업복지 설명회 개최



- 기업복지 업무 희망 감독관에 대한 교육 강화 등 기업복지 전문감독관 양성
  - \* 기업복지 활성화를 위한 기업복지 담당과장 간담회 개최
  - \* 기업복지 담당 감독관 워크숍 개최(상, 하반기)
- 선택적복지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도입 확산을 위하여 근로복지포털 고도화사업 지속 추진 및 접근성 강화

○ 지방

- 근로자복지 활성화를 위한 기업복지제도 적극 홍보 및 도입 사업장 발굴 및 안내
  - \* 우리사주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복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중소기업선진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 및 찾아가는 서비스 적극 지원
  - \* 관내 근로복지공단, 중기협, 경협, 노총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추진 도모
- 우리사주조합,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기업복지 실태에 대한 감독 강화 및 운영상황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적기에 전산 입력 및 지속 관리
  - \* 제출된 보고서가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한 후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노사누리)에 입력
  - \* 기업복지 관련 보고 미보고, 보고지연, 착오보고 사항에 대하여 평가 반영
- 우리사주조합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되, 민원이 제기되거나 법령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직접 방문하여 점검 및 지도
  - \* 특히,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집행에 대한 지도 강화

담당 : 임금복지과 5급 성상호 6급 고민진 ☎ 02-2110-7377

## 5. 공인노무사 관리 철저

### 가. 목적

-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와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근로자의 권익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인노무사의 역할 확립과 위상 제고가 필요
-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인노무사의 부정수급 사건이 언급되는 등 공인노무사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사례가 발생
- 따라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등록, 변경사항 등을 수시로 관리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 시정토록 하고 공인노무사의 역할 확립과 위상 제고

### 나. 세부내용

#### (1) 공인노무사 직무등록

-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직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실무수습을 마쳐야 하므로 직무개시 신청이 접수되면 실무수습 여부 확인
  - \* 실무수습 확인은 노사누리에서 가능하므로 별도로 증명서를 요구할 필요 없음
- 신원조회를 통해 신청인의 결격사유 여부(법 제4조), 노사누리의 확인을 통해 이중등록(법 제5조제3항) 및 등록취소(법 제5조제4항) 사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후 처리

#### (2) 등록사항 변경신고

- 등록증에 기재된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가 변경되면 지방관서에 변경신고토록 하고 노사누리에 변경사항 입력 관리 및 등록증 재교부

- 다른 지방관서 관할로 사무소 소재지를 이전하면 새로운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관서는 종전의 관할 지방관서에서 직무개시등록부의 송부를 받아 변경사항을 기재 관리

\* 관할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등록사항변경신고는 하지 않아도 됨

### (3) 결격사유 등 확인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노무법인의 사원 또한 될 수 없음(법 제7조의3 및 제19조)

\* 법 제4조(결격사유) : ①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따라서 공인노무사가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처벌을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 확인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조치
-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을 취소하면 등록증을 반납 받아 불법 사용되지 못하도록 조치

### (4) 노무법인 관리

- 노무법인의 사원은 2명 이상 개업노무사로 구성하여야 하므로 설립 이후 사원이 도중에 탈퇴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도록 지도(법 제7조의3)

\* 노무법인의 사원이 2명에 미치지 못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취소사유에 해당함(법 제7조의6 제1호)

- 노무법인의 분사무소에 노무법인의 사원이 1명이상 상근하여야 하므로 분사무소가 사무장 등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부에 징계요구(시행령 제19조의8)

#### 다. 행정사항

- 공인노무사 업무매뉴얼('08.12)에 따라 업무처리하고, 특이사항 등에 대하여는 본부와 업무공유를 통해 업무효율성 극대화
- 고용보험 부정수급(고용지원센터), 체당금 부정수급(근로감독과) 등에 공인노무사 관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 여부에 따라 본부에 징계요구와 아울러 범위반시 고발 조치

담당 : 근로기준과 5급 김동현 6급 손한식 ☎ 02-2110-7399, 7384



# 산업안전보건법



## = 목 차 =

<b>1. 재해 취약 사업장 집중관리</b> .....	<b>431</b>
1-1.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	431
1-2. 건설재해 취약 사업장 .....	457
1-3. 화학물질 취급(PSM) 사업장 .....	467
<b>2. 업종별 맞춤형 재해예방 대책 추진</b> .....	<b>477</b>
2-1. 제조업 안전관리 강화 .....	477
2-2. 건설업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 .....	484
2-3. 조선업 규모별 재해예방활동 강화 .....	493
2-4. 기타 재해다발 업종 맞춤형 예방활동 .....	494
<b>3. 위험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강화</b> .....	<b>498</b>
3-1. 안전인증제도 정착 및 내실화 .....	498
3-2. 안전검사 제도 정착 및 내실화 .....	503
3-3. 인증·검사 위탁검사기관 업무능력 향상 및 관리강화 .....	509
<b>4. 점검·감독 효과성 제고</b> .....	<b>515</b>
4-1. 취약사업장 중심의 집중점검 .....	515
4-2.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직무능력 강화 .....	523
4-3. 중대재해 발생 대응체계 운영 .....	527
4-4. 산재발생미보고 사례 방지(지방관서) .....	529
4-5. 산재발생 원인조사 실시(공단) .....	531
<b>5. 화학물질 관리 및 주요 직업병 예방</b> .....	<b>532</b>
5-1. 화학물질관리 통합 DB 구축·운영 .....	532
5-2. 급성중독성 직업병 유발물질 취급사업장 기술지원 .....	534
5-3. 유해인자의 허용기준 준수여부 점검 .....	536
5-4. 화학물질 분류·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 이행 지도 .....	538
5-5.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 예방대책 추진 .....	540



<b>6.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활동 강화</b> .....	<b>541</b>
6-1. 석면 관리 인프라의 현장 작동성 제고 .....	541
6-2.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불법석면작업 차단 .....	543
6-3. 석면 해체·제거 현장 관리감독 강화 .....	545
6-4. 석면작업 일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호 강화 .....	548
6-5. 석면함유 건축물 보유 사업장 관리 .....	549
<b>7. 근로자 건강진단 저변 확대</b> .....	<b>550</b>
7-1.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	550
7-2.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기본정보 제공 .....	552
7-3. 특수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철저 .....	554
<b>8. 근로자 건강증진 강화</b> .....	<b>555</b>
8-1. 산업보건 국고지원사업 지원 .....	555
8-2.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추진 .....	557
8-3. 서서 일하는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추진 .....	558
8-4. 국민건강보험공단 협력사업 추진 .....	559
8-5. 사업장 주치의 컨설팅 시범사업 추진 .....	561
8-6. 하절기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관리 강화 .....	563
8-7. 진폐근로자의 보호 사업 .....	564
8-8. 사업장 보건관리 가이드라인 개발(직무스트레스, 고령근로자 근골격계질환, 병원체) .....	569
<b>9. 산업현장 안전보건문화 정착·확산</b> .....	<b>570</b>
9-1. 노사 무재해운동 확산·지원 .....	570
9-2. 예비산업인력의 안전의식 향상 .....	573
9-3. 민간단체와 연계한 안전문화운동 전개 .....	576
9-4. 산업안전보건정책 홍보 .....	578
9-5. 노사 산업재해예방 활동 지원 .....	580
9-6. 산재예방행사 및 우수사업장 등 포상(본부·공단·지방관서) .....	583

# 1. 재해 취약 사업장 집중관리

## 1-1.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 ① 사업개요

#### □ 목 적

-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제조 및 건설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을 집중 지원하여 사고성 재해 예방

#### □ 기본방향

- 위험성이 큰(재해발생주기가 짧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토록 기술·교육·재정 패키지 지원
- 지방노동관서·안전공단 지도원·대행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의 총괄 조정기능 강화
- 엄격한 성과평가를 통하여 사업의 실효성 제고

#### □ 추진사항

- 지원대상 : 총 123,530개소

구 분	계	제 조 업			건설업
		소계	패키지지원	일반기술지도	패키지 지원
총 계	123,530	88,530	70,000	18,530	35,000
안전공단	53,530	43,530	25,000	18,530	10,000
민간기관	70,000	45,000	45,000	-	25,000

- 지원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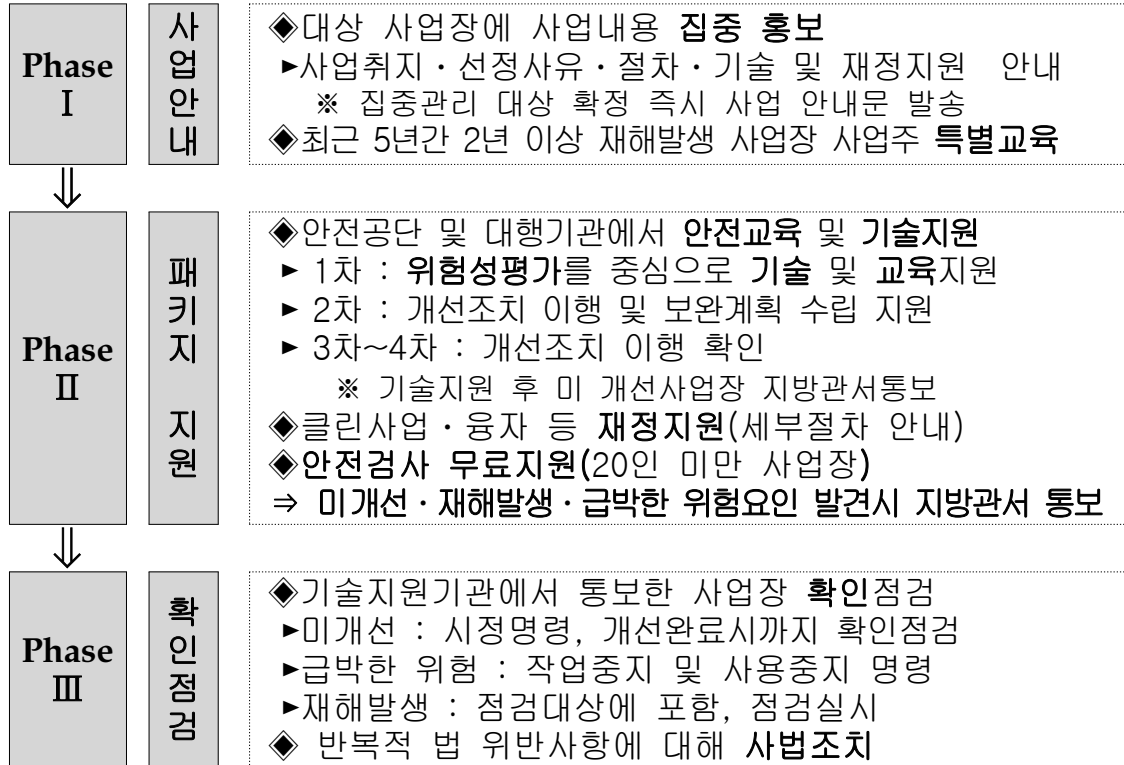
- 패키지 지원 : 안전공단 및 대행기관에서 기술지원(위험성 평가)+교육지원+재정지원
- 일반기술지도 : 안전공단에서 사업계획에 반영, 자체수행

- 패키지지원 사업예산 : 총 112.9억원(제조 75.8억, 건설 37.1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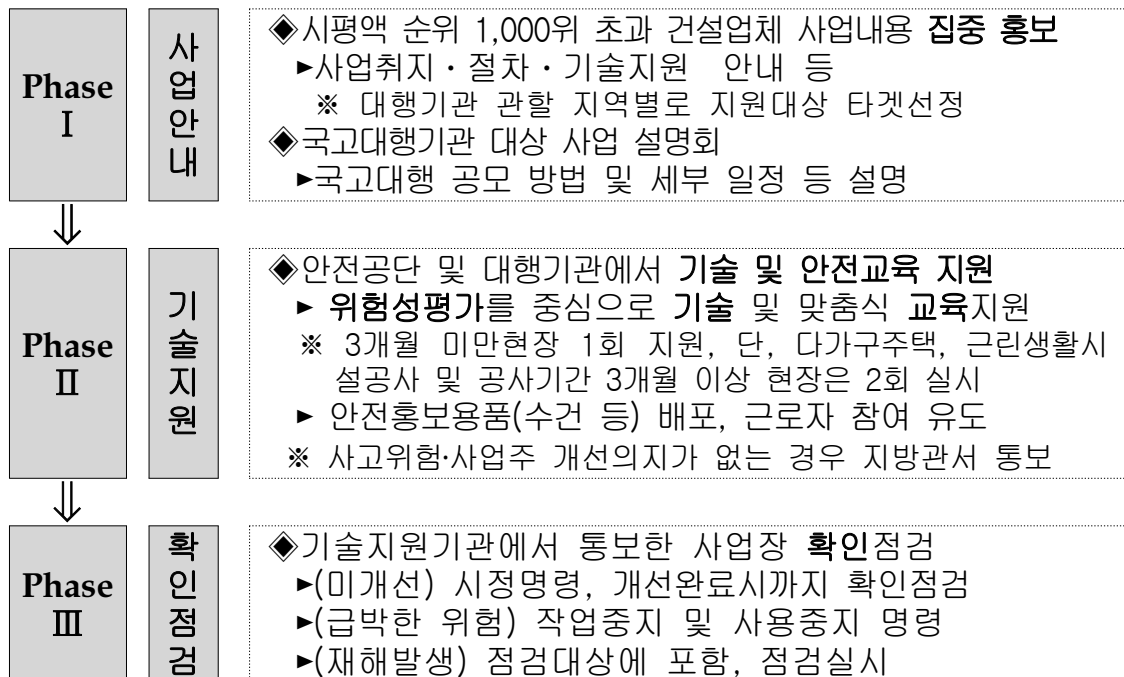
\* 재정지원 총 1,400억원(클린 : 570억원, 융자 : 830억원)

## 소규모 사업장 기술(패키지)지원 개요

### ■ 제조업



### ■ 건설업



## ② 추진방법(절차)

### 【제조업 집중관리】

#### ① 집중관리 지원대상 선정

- 과거 5년간('04. 10월~'09. 9월까지) 재해통계를 분석하여 “사업장당 재해발생 주기”가 15년 이하인 업종·규모 선정
  - 제조업 사업장 총 255,462개소를 총 725개 그룹[145개 소분류 업종, 5개 규모(1인 미만,2~4인,5~9인,10~19인,20~49인)]로 세분류
  - 각 그룹별 재해발생 주기를 산출, 재해발생 주기가 15년 이하인 402개 그룹(총 112,000개 사업장) 추출
- \* 재해발생 주기 = 각 그룹의 총 재해자수 ÷ 총 사업장수
- 지방관서별로 공단 및 대행기관과 협의하여 402개 그룹 중 지역별로 재해발생 주기가 짧은 그룹을 지원대상으로 선택

#### < 기술지원 대상 사업장 선정 흐름도 >



## ② 사업물량 배정

- (노동부·안전공단 본부) 제조업 사업장(약 25만개소)을 재해발생 주기에 따라 직접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 대상으로 구분
  - 직접기술지원 : 기술·교육·재정 패키지 지원(재정지원은 희망하는 경우)
  - 교육지원대상 : 공단에서 교육지원+기술자료 및 홍보자료 배부
- 직접기술지원대상 중 재해발생 위험성이 큰 사업장은 안전공단에서 기술지원, 기타는 대행기관에서 지원
  - 지원대상 사업장 총 70,000개소 중 재해발생 주기가 7년 이내인 사업장은 안전공단, 이상은 대행기관에 배분
    - ▶ (안전공단) 재해발생주기 7년 이내 그룹(총 25,000개소)
    - ▶ (대행기관) 재해발생주기 7~15년 그룹(총 45,000개소)

### < 지방관서별 기술지원 사업물량 >

지방관서	안전공단	계	공단수행		대행기관	지방관서	안전공단	계	공단수행		대행기관
			기술지원	사후관리					기술지원	사후관리	
계	-	70,049	17,499	7,540	45,010	대 구 청	대구본부	1,805	349	225	1,231
서울청	서울본부	237	38	11	188	대구북부	대구본부	3,359	569	505	2,285
서울강남	서울본부	198	16	12	170	구 미	경북북부	469	180	53	236
서울관악	서울본부	604	74	68	462	안 동	경북북부	136	53	20	63
서울남부	서울본부	396	43	37	316	영 주	경북북부	219	77	23	119
서울동부	서울본부	590	78	50	462	경 인 청	경인본부	2,321	541	410	1,370
서울북부	서울북부	337	101	19	217	인천북부	경인본부	2,850	710	416	1,724
서울서부	서울북부	171	36	8	127	부 천	부천센터	3,254	848	284	2,122
강릉	강릉	224	89	25	110	성 남	성남센터	2,698	787	186	1,725
태백	강릉	67	36	5	26	광 주 청	광주본부	2,013	500	181	1,332
영월	강원	94	22	14	58	여 수	전남동부	700	297	55	348
원주	강원	307	75	29	203	군 산	전 북	462	188	48	226
춘천	강원	278	49	28	201	익 산	전 북	626	235	70	321
부산청	부산본부	2,367	733	217	1,417	전 주	전 북	797	276	84	437
부산동래	부산본부	704	144	61	499	목 포	광주본부	962	509	72	381
부산북부	부산본부	3,261	513	440	2,308	제 주	제 주	318	89	21	208
수원	경기남부	5,565	1,131	554	3,880	대 전 청	대전본부	1,831	457	194	1,180
평택	경기남부	1,768	440	159	1,169	보 령	충 남	475	125	57	293
고양	경기북부	2,930	642	171	2,117	천 안	충 남	1,523	499	240	784
의정부	경기북부	4,420	818	289	3,313	청 주	충 북	1,381	343	219	819
안산	경기서부	4,157	929	499	2,729	충 주	충 북	789	242	97	450
안양	경기서부	1,117	233	114	770	* 안전공단에서 수행하는 사후관리는 '08년 또는 '09년 기술지원사업장으로 '08년 50%, '09년 10%를 Target에 포함하여 계속 지원					
진주	경 남	733	209	94	430						
창원	경 남	2,383	553	376	1,454						
통영	경 남	725	414	68	243						
울산	울 산	1,714	797	180	737						
양산	경동센터	4,644	960	382	3,302						
포항	경북동부	1,070	452	170	448						

### ③ 사업안내 및 관계자 교육

#### ○ (지방관서) 사업 안내문 발송

- 사업의 조기사행을 위해 지원대상 확정 즉시 기술지원 대상 사업장에 지방관서장 명의 안내문 발송
- 사업취지 및 선정사유, 클린사업장 조성 및 시설개선자금 용자 지원방법 등 지원절차를 상세하게 설명
- 안전공단 및 대행기관 직원 방문시 협조사항 포함

#### ○ (지방관서) 재해발생 사업장 사업주 교육

- 사업개시 전에 '05~'09년 중 2년 이상 재해발생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벌칙성 사업주 교육 실시
- 재해예방의 필요성, 패키지 지원사업의 취지 및 절차

#### ○ (지방관서) 지원대상 사업장 관계자 교육

- 시기 : 기술지원 전월 마지막 주(1월은 사업개시 전주)
- 대상 : 지원 대상 사업장 안전 관계자
- 방법 : 지방관서 주관, 지도원·대행기관 협조
- 내용 : 사업 안내문 내용 + 기술지도기관 관계자 방문시 협조

#### ○ (안전공단) 대행기관 사업 설명회

- '10년도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행기관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 '09년 Star Index 평가결과 S·O등급 기관(N등급 제외), '10년도 신규사업 참여 희망 대행기관 관계자

#### ○ (안전공단) 대행기관 지도요원 직무교육

- 지원사업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항을 표준화한 「표준 사업수행 절차서(SOP)」의 내용 중점 교육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교육(4M 및 체크리스트 기법 중심)
- 대행기관 지도요원 중 경력직원과 신규직원을 구분하여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차별화

#### ④ 사업장 지원

- 안전공단 및 민간 대행기관에서 「표준 사업수행 절차서 (SOP : 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 따라 사업장 지원
  - 사업장 스스로 재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토록 하는데 필요한 기술·교육·재정 등 패키지 지원
  -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클린사업장 조성 및 시설개선 용자사업과 연계하여 재정지원

#### < 패키지 지원내용 >



- 「사업장 기술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기술지원
  - 1일 3개소 기술지원, 1회차는 전 사업장에 대하여 위험성평가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이후 2~3회차 지원 실시
  - 기술지원기관별로 1회차 지원 이전에 사업장 자체 예방 활동을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철저히 시행
- 기술지원시 급박한 위험요인 발견 사업장 및 기술지원 실시 후 재해발생 사업장은 반드시 지방관서에 통보

- 사고성 재해 발생 사업장은 지방관서에 기술지원결과 조치 의뢰서를 제출하고 집중관리 대상에서 제외
-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급박한 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 지방관서에 유선 통보 후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

**< 급박한 위험요인에 대한 판단기준 >**

- 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않고 산소결핍, 질식, 중독 우려가 있는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할 경우
- ② 화재, 폭발, 독성가스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구조물 노후 등으로 인해 붕괴, 도괴 위험이 있는 경우

- 지방관서는 재해발생 사업장은 지적내용 중 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급박한 위험사업장은 즉시 현장 방문, 확인 후 작업·사용중지 명령, 개선완료 확인 후 해제

**⑤ 기술지원 거부 사업장 조치**

- 기술지원을 실시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업취지를 설명하여 설득하고, 이에 불응시 지방관서 통보
- ①사업장 방문, 출입·자료열람·현장확인 등 거부→ ②기술 지원 사업취지·절차 등을 충분히 설명, 거부의사 확인(대면 또는 유선)→③기술지원 거부시 노동부 통보 등 후속절차 설명, 거부의사 재차 확인→ ④기술지원 중단, 지방관서에 거부 사업장 통보→⑤ 대체사업장 선정 신청

**【 기술지원 거부 사업장 판정기준 】**

- ① 기술지원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② 위험성평가를 위한 자료열람 또는 현장확인을 거부·방해하는 경우
- ③ 2~3회차 기술지원(개선내용 확인 등)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1회차 기술지원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 ④ 관리책임자에게 기술지도 내용을 설명·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 ⑤ 기타 특별한 사유 없이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협조를 회피하는 경우

- 지방관서는 기술지도기관으로부터 거부사업장 명단을 통보 받은 경우 즉시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점검 실시



## ⑥ 지원 사업장 대체

- 불가피한 사유로 기술지원이 불가능한 사업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재해발생 주기가 빠른 사업장 대체 선정
  - 기술지원 前 휴·폐업·이전 사업장은 지방관서 및 안전공단에 사유를 명시하여 대체선정 요청
  - 1회차 지원 이후 재해발생(사고성 재해에 한정) 사업장은 기술지원 결과 조치의뢰서를 지방관서에 제출한 후 대체 선정
  - 기술지원 거부 사업장은 거부 의사 재확인 및 후속절차 설명 후 지방관서 통보 및 대체선정

## ⑦ 기술지원 기관별 성과관리

- 분기별 집중관리 기술지원기관별로 재해감소목표 달성율을 산출하여 관리등급 부여, 지방관서 시달
  - 기술지원 사업장의 '09년 동기 대비 평가 당기 재해율 15%p 감소를 기관별 재해감소 목표로 설정
  - 매분기 기술지원 기관별로 기술지원 사업장의 재해율을 산출하여 감소목표 달성비율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

< 목표 달성율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 >

관리등급	S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목표달성율	목표달성	90~99%	80~89%	80% 미만

- \* 세부 평가기준은 별도 수립예정
- 재해감소실적이 저조한 기술지원기관에 대하여 엄중 경고, 연말 대항기관 Star-Index 평가시 반영(경고기관 감점)
- 기술지원 사업 적정성 확인을 위한 불시점검 실시
  - 본부 주관으로 대항기관에서 기술지원을 실시한 사업장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불시 방문, 기술지원내용 확인
  - 점검결과 기술지원 내용이 부실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및 연말 대항기관 Star-Index 평가시 반영

## 【 건설업 집중관리 】

### ① 집중관리 지원대상 선정

- 재해가 다발하는 특정공사를 집중관리하기 위해 공모를 통하여 지역별로 1개 대행기관을 선정, 재해취약 현장을 수시선정
- 수시선정 대상 현장
  - 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체 및 개인이 시공하는 공사금액 **3억미만 건설현장 중 건축건설공사 및 기타건설공사현장** (상대적으로 재해 위험성이 적은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현장 제외)
  - 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기간 3월 미만 현장 중 공사금액 5억원 미만(산재보험 가입현장) 건축건설공사 및 기타 건설공사 현장

#### < 건축건설공사 및 기타 건설공사 종류(예) >

건축건설공사	기타 건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 및 교량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여지는 공사</li> <li>○ 목조, 연와조, 블록조, 석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건물건설공사</li> <li>○ 주택, 축사, 가건물, 창고, 학교, 강당, 등을 신·개축, 보수, 해체하는 건설공사</li> <li>○ 건축물설비공사(건축물 내외의 전기, 전등, 전신기등의 설비공사)</li> <li>○ 제방의 신설에 관한 가설공사 또는 기초공사 등 제방건설관련 공사</li> <li>○ 기설교량의 보수와 개수에 관한 공사</li> <li>○ 교량교각 등 기초건설공사, 교량 보수공사</li> <li>○ 선창의 건설공사, 이동식교량, 로프다리, 철교건설공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설도로, 철도, 궤도 등의 개수, 복구 또는 유지관리 공사</li> <li>○ 기설도로 또는 플랫폼 등의 포장공사</li> <li>○ 공작물의 해체, 이동, 제거 또는 철거공사</li> <li>○ 관개용수로, 기타 각종 수로의 신설, 개수, 유지에 관한 공사</li> <li>○ 철관, 콘크리트관, 케이블류, 가스관, 흙관, 지중선, 동재 등의 매설공사</li> <li>○ 무대세트 제작, 조립, 도색, 도배, 철거공사</li> <li>○ 스타디움공사, 경기장 및 유사 오락시설공사, 상하수도공사, 급배수관, 파이프라인공사 등의 토목시설물 공사</li> <li>○ 조경용 인공호수/ 시설물 설치공사, 외부환경조성공사, 정원조성공사, 녹지조성공사</li> </ul>

## ② 사업물량 배정

○ 사업물량 : 총 25,000개소(30,000회, 3,708백만원)

- 대행기관을 지역별로 1개 기관을 공모, 재해가 다발하는 건축 건설공사 및 기타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집중지원

○ 지역별 수시선정 사업물량 배정기준

- 지역별로 공사금액 3억원미만 건설현장 분포율(%)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수 및 사업물량 배분(총 25,000개소/30,000회)

### < 지역별 기관 및 물량 배정 내역 >

구분	계	소계	서울 본부	서울 북부	강원	강릉 센터	소계	부산 본부	경동 센터	울산	경남	소계	대구 본부	경북 동부	경북 북부
사업장수	247,507	33,653	11,604	6,101	10,144	5,804	34,727	8,819	3,801	5,459	16,648	37,468	11,288	13,085	13,095
점유율(%)	100	14.7	5.1	2.7	4.4	2.5	15.1	3.8	1.7	2.4	7.3	16.3	4.9	5.7	5.7
					6.9			7.9					10.6		
대행기관배정 (개소)	15	3	1	1	1		2	1			1	2	1	1	
물량배정 (개소/회)	25,000	4,430	1,450	1,280	1,700		3,750	1,960			1,790	4,000	2,550	1,450	
	30,000	5200	1,700	1,500	2,000		4,400	2,300			2,100	4,700	3,000	1,700	

구분	소계	경인 본부	부천 센터	경기 북부	경기 남부	성남 센터	경기 서부	소계	광주 본부	전남 동부	제주	전북	소계	대전 본부	충남	충북
사업장수	50,116	9,444	2,309	9,312	9,828	14,008	5,215	44,331	17,697	6,959	4,659	15,016	30,439	10,215	7,221	13,003
점유율(%)	21.9	4.1	1.0	4.1	4.3	6.1	2.3	19.4	7.7	3.1	2.1	6.5	13.4	4.5	3.2	5.7
		5.1		4.1	12.7				10.8					7.7		
대행기관배정 (개소)	3	1		1	1			3	1		1	1	2	1		1
물량배정 (개소/회)	5,280	1,450		1,280	2,550			4,770	2,550		600	1,620	3,320	1,870		1,450
	6,200	1,700		1,500	3,000			5,600	3,000		700	1,900	3,900	2,200		1,700

\* 건설현장수는 '09년 9월말 기준 공사금액 3억원 미만 건설현장수를 토대로 '09.12월말 현재 사업장 수 추정

### ③ 사업안내 및 관계자 교육 등

- '10년도 국고대행 참여 가능기관(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 개최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고대행 기관 공모 공고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 \* 공모참여기관은 지역의 사업장분포, 재해현황 등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소규모건설현장 재해예방 사업계획』을 제출
- 국고대행 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공단 본부에서 내·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응모 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기관 선정
- 국고대행 사업 수행 용역계약 체결
  -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선정결과 발표, 안전공단 6개 지역 본부별로 선정된 기관과 사업수행 용역계약 체결
- 대행기관 사업주 및 지도요원 교육
  - 반기별로 사업수행기관 사업주 워크숍 및 간담회 실시, 기관별 사업추진 실적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09년 업무수행능력 평가 우수기관 사례발표
- 반기별 지도요원 전문화 교육 실시
  - 대 사업장 친절 및 고객만족도 향상 방안, 소규모건설현장 기술지원 우수사례 발표,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기술지원 방안 등

### ④ 사업장 지원

-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대행기관에서 지역본부와 용역계약 체결 후 배정된 지역의 지원대상 현장을 발굴, 기술지원

- 현장방문 전에 우편 또는 유선 등을 이용하여 방문목적, 일정 등을 통보하고 기술지원 실시
  - 지역본부 및 지도원에서 분기별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위 초과 건설업체에 참여 안내문 발송
  - 관할 지방관서와 협의하여 노동부장관 명의의 “산업재해 예방 당부서한” 통보
-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현장은 1회 기술지원 실시 후 종료
  - 다만, 다가구 주택·근린생활시설공사 및 공사기간 3개월 이상 현장에 대해서는 2회 실시 가능
  - 지도요원 1인당 1일 최대 3개소까지 기술지원(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재해발생 위험요인 도출 및 구체적인 개선대책 제시
  - 공단에서 제공한 소규모 건설현장용 위험성평가 “단위작업별 중점관리 Check Point” 중심으로 기술지원 실시
  - 필요한 경우 대행기관에서 별도로 공사종류에 적합한 Check Point를 개발하여 활용
  - \* 단위작업 : 가설공사 → 기초공사 → 구조물공사(강구조물공사 포함) → 마감공사 → 전기 및 기계설비 공사 → 기타공사
  - 기술자료 제공 및 현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교육 병행 실시(사업주 포함)
  -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홍보 용품 배포

## ⑤ 기술지원 거부 사업장 조치

- 기술지원을 실시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업취지를 설명하여 설득하되, 이에 불응시 관할 지방관서에 통보

- ① 사업장 방문, 출입·자료열람·현장확인 등 거부 →
- ② 기술지원 사업취지·절차 등을 충분히 설명, 거부 의사 확인 (대면 또는 유선) →
- ③ 기술지원 거부시 노동부 통보 등 후속절차 설명, 거부 의사 재차 확인 →
- ④ 기술지원 중단, 지방관서에 사업장 명단 통보

\* 기술지원 거부 현장에 대해서는 제조업 조치기준에 준하여 조치

## ⑥ 기술지원 사업 성과평가

### ○ 매분기 건설현장 기술지원 대행기관 실적평가

- 관할 지역본부 및 지도원 주관으로 대행기관이 기술지원을 실시한 현장의 5% 이내 현장에 대하여 기술지원 적정성 평가

< 지역별 기술지원 적정성 평가물량(예상) >

사업명	계	서울 본부	서울 북부	강원	강릉 센터	부산 본부	경동 센터	울산	경남	대구 본부	경북 동부	경북 북부	경인 본부	부천 센터	경기 북부	경기 남부	성남 센터	경기 서부	광주 본부	전북	전남 동부	제주	대전 본부	충북	충남
국고대행 계약 (대행기관)	6 (22)	1 (4)				1 (3)				1 (3)			1 (5)						1 (4)				1 (3)		
기술지원평가 (현장 실사)	수시 (1,500)	75	50	65	50	50	15	50	100	70	80	80	50	25	60	60	85	50	100	90	50	40	60	80	50

## 【 지방노동관서 재해예방활동 강화 】

### ① 재해감소실적에 따른 지방관서 등급관리

#### □ 목 적

- 지방관서별 재해감소 실적에 따라 사고성 재해 관리등급을 부여하여 산업재해 예방활동 촉진

□ 사업내용

- 본부에서 분기별로 관서별 재해감소 실적에 따라 전체 지방노동관서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종합관리

관리등급	S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감소목표 달성율	100% 이상	재해감소		재해증가	
		90~99%	80~89%	80~89%	80% 미만

※ 관서별 재해감소목표 : 전년동기 대비 재해율 15% 감소(발생일 기준)

※ 통계 산출시점 : 매분기 평가대상 익월 5일자로 지방관서별 재해 통계를 출력하여 감소실적에 따라 등급부여

- 등급별 차등관리

- 재해감소 목표를 달성한 지방노동관서 인센티브 부여(S등급)
- 목표 미달관서에 대해서는 재해감소대책 수립·추진
  - ▶ 재해가 감소하였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관서(1~2등급)는 목표달성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시행
  - ▶ 재해가 증가한 관서는 세밀한 재해원인 분석을 토대로 단기 재해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본부에 실적보고

※ 지방관서별 세부 등급관리 방안 별도 수립

② 산업재해 감소 워크숍 개최

□ 목 적

- 산업재해 감소를 위하여 지방청 단위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방관서 재해감소 분위기 확산

□ 방법 및 내용

- 청단위로 관내지청 및 관련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사고성 재해 예방 워크숍 순차 개최

- 일시 및 장소 : '10. 1. 7~1. 15까지, 13:30~16:30

청별	부산청	대구청	서울청	경인청	광주청	대전청
일정	1.7(목)	1.8(금)	1.11(월)	1.12(화)	1.14(목)	1.15(금)
장소	안전공단 교육센터	대구청 대회의실	서울청 대회의실	안양지청 대회의실	광주청 대회의실	대전청 대회의실

※ 본부에서 사업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참석대상

【 기관별 】	【 참석대상 】
노동부	⇒ 본부 산업안전보건국장, 안전보건지도과장 및 사무관, 지방청 산업안전과장 및 감독관 전원, 지청 산업안전과장, 선임감독관 및 기능업무담당 감독관
안전공단	⇒ 본부 안전기술국장 및 업무담당 팀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도원장, 안전지도팀장 및 업무담당 직원
대행기관	⇒ 대표이사, 업무담당자

- 워크숍 내용

- ① 본부 산업안전보건국장님 당부사항
- ② '10년도 재해예방사업 추진방향 발표(본부 안전보건지도과장)
- ③ 지방관서 재해발생 현황분석 및 향후대책 발표(산업안전과장)

- 지방관서 · 안전공단 지도원 · 대행기관 각 1개소 발표  
(청에서 발표기관 선정)

- ④ 전체토론



### 3 추진일정

추진항목 및 일정	제 조 업	건 설 업
<b>1 집중관리 대상 (Target) 선정</b> <제조: '09.12. 8~12.20> <건설 : '09.12.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기준 확정('09.12.8까지)</li> <li>-지방관서별 세업종-규모별 과거 5년간 재해발생 추세 산출</li> <li>○ 선정기준 시달('09.12.10까지)</li> <li>○ 지원대상 확정('09.12.20까지)</li> <li>-지방관서·지도원·대행기관이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li> <li>-선정결과 본부 보고, 본부에서 확정, 지방관서/지도원 통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기준 확정('09.12.8까지)</li> <li>-공사금액 3억미만 현장 중 건축 건설공사 및 기타건설공사현장 (위험성이 큰 현장우선)</li> <li>-전기및정보통신공사현장 제외</li> <li>○ 지원대상 선정(수시선정)</li> <li>-지역별(22개지역)로 1개 대행 기관을 공모·선정하고 지원 대상 현장 수시선정</li> </ul>
<b>2 물량배정</b> <제조: '09.12.20~12.21> <건설: '09.12.20~1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량배정기준 마련('09.12.20까지)</li> <li>○ 기관별 물량 배정('09.12.21까지)</li> <li>-확정된 물량을 배정기준에 따라 공단 및 대행기관에 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량배정기준 마련('09.12.20까지)</li> <li>○ 지역별 물량배정('09.12.21까지)</li> <li>-전체 물량을 소규모건설현장 분포에 따라 사업물량 배정</li> </ul>
<b>3 사업 설명회</b> <제조 : '09.12.29> <건설 : '09.1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설명회 개최('09.12.29)</li> <li>-'10년 사업수행 대행기관 전체</li> <li>-'09년 STAR Index S·O 등급 기관(N등급 기관 제외)</li> <li>-'10년 신규 사업참여 희망 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설명회 개최('09.12.23)</li> <li>-산안법에 의거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건설공사 지도분야)으로 지정된 기관</li> </ul>
<b>4 사업기관 선정</b> <건설 : '09.12.28~'10.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행기관공모('09.12.28~'10.1.7)</li> <li>-공단 홈페이지 공고, 안내문 발송</li> <li>-참여기관별 사업계획서 제출</li> <li>○ 심사위원회개최('10.1.12~13)</li> <li>-내·외부 10인 이내로 심사위원회 구성, 22개 기관 선정</li> </ul>
<b>5 용역계약 체결</b> <제조 : '10.1.4~1.8> <건설 : '10.1.14~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단 지도원별로 사업수행 대행 기관과 용역계약 체결</li> <li>-물량 배정일부터 기술지원 사업 계획서를 제출토록 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체결 대상기관 선정결과발표</li> <li>-선정결과 발표('10. 1.14)</li> <li>○ 6개 지역본부별로 선정기관과 계약 체결('10.1.19 ~ 20)</li> </ul>

추진항목 및 일정	제 조 업	건 설 업
<p><b>⑥ 표준사업수행 절차서 개발</b></p> <p>&lt;제조 : '09.127~1218&gt; &lt;건설 : '09.127~218&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 사업수행 절차서(Standard Operating Procedure) 내용</li> <li>-목적 및 사업계획 추진지침</li> <li>-사업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li> <li>-단계별 기술지원 내용 및 방법</li> <li>-위험성평가 방법 및 개선방법</li> <li>-재해감소성과 평가기준 및 방법</li> <li>-지도요원 수행실태 모니터링 방법</li> <li>-기타 지도요원 준수사항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업 특성에 맞는 표준사업수행 절차서 작성</li> <li>-목적 및 사업계획 추진방향</li> <li>-지역별 사업대상 선정기준</li> <li>-지역별/현장별 산재감소 추진계획</li> <li>-단계별 기술지원 내용 및 방법</li> <li>-재해감소성과 평가기준 및 방법</li> <li>-전담 지도요원배치 및 총원계획</li> </ul>
<p><b>⑦ 위험성평가 서식 개발</b></p> <p>&lt;제조 : '09.127~1211&gt; &lt;건설 : '09.127~1211&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위험성평가서식 단순화</li> <li>-'09년 : 4M 위험성평가 ⇒'10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변경</li> <li>-사업수행기관 자체적으로 업종/규모별/사업장별 Check Point를 마련하여 사업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업특성에 적합한 단순화한 위험성평가서식 개발</li> <li>-단위작업별 Check Point를 마련하여 사업수행</li> <li>※ 단위작업 : 가설공사→기초공사→구조물공사(강구조물공사)→마감공사→전기 및 기계설비공사→기타공사</li> </ul>
<p><b>⑧ 지도요원 직무교육</b></p> <p>&lt;제조 : '10.14~1. 8&gt; &lt;건설 : '10.1.21~1. 22&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내용</li> <li>-표준 사업수행 절차서 내용</li> <li>-위험성평가 실시방법 등</li> <li>○ 교육기간</li> <li>-경력직원 : '10.1월중(1박2일)</li> <li>-신규직원 : '10.1월중(2박3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내용</li> <li>-재해예방 추진계획 내용</li> <li>-공단 소규모건설현장 기술지원 우수사례 발표</li> <li>○ 교육기간 : '10.1.21~22(1박2일)</li> </ul>
<p><b>⑨ 사업 안내문 발송</b></p> <p>&lt;제조 : '10.1.4~1.6&gt; &lt;건설 : 연중&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지원 대상 사업장 전체 사업장(70,000개소)에 지방관서장 명의 안내공문 일괄 발송</li> <li>-노동부장관 명의의 “산업재해예방 당부서한” 동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시평액 순위 1,000위초과 건설업체 참여 안내공문 발송(분기별)</li> <li>- 노동부장관 명의의 “산업재해예방 당부서한” 동봉</li> <li>○ 현장 방문시 안내공문 전달</li> </ul>

추진항목 및 일정	제 조 업	건 설 업
<p><b>10 지원 사업장 관계자 교육</b></p> <p>&lt;제조 : 월별&gt; &lt;건설 : 해당없음&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기 : 기술지원 전월 마지막 주</li> <li>※ 1월은 기술지원 개시 전주</li> <li>○ 대상 : 당월 지원사업장 관계자</li> <li>○ 방법 : 지방관서 주관하에 지도원 및 대행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 교육은 수시 생성·소멸되는 건설업의 특성상 생략</li> <li>○ 지속적으로 공단에서 지역건설업체에 재해예방 안내문 발송</li> <li>○ 현장 방문시 현장교육 실시</li> </ul>
<p><b>11 기술지원 사업 수행</b></p> <p>&lt;제조 : '10.1.1~11. 30&gt; &lt;건설 : '10.1.1~11. 30&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 사업수행 절차서(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 따라 사업장 기술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업 표준 사업수행 절차서(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 따라 기술지원</li> </ul>
<p><b>12 사업수행실태 모니터링</b></p> <p>&lt;제조 : 상·하반기 2회&gt; &lt;건설 : 상·하반기 2회&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 용역업체 선정</li> <li>- 전문 리서치 기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용역업체 공모</li> <li>- 모니터링 설문지 작성 및 실시</li> <li>- 상·하반기로 구분, 사업물량의 30%(13,500개소) 추출 실시</li> <li>- 모니터링 결과를 연말 STAR Index 평가에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무선 모니터링 실시</li> <li>- 현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단 지도원 직원이 모니터링 실시</li> <li>※ 기술지원 현장의 5%이내(30,000회의 5% 1,500개소)</li> <li>- 모니터링 결과를 연말 업무수행능력 평가에 반영</li> </ul>
<p><b>13 재해감소 모니터링</b></p> <p>&lt;제조 : 연중&gt; &lt;건설 : 연중&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기별 재해감소 실적 분석</li> <li>- 분기단위로 지방관서/지도원/대행기관별 감소실적 분석·통보</li> <li>- 실적 부진기관에 경고장 발부</li> <li>- 하위등급 10% 기관에 대하여 분기별 점검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기별 재해감소 분석</li> <li>- 시기 : 반기별</li> <li>- 지역별 3억원미만 건설현장 재해감소율과 사업대상 현장의 재해자 감소율 반영(50%:50%)</li> <li>※ 우수기관 성과급 지급 A(+5%),B(+3%),C(-3%),D(-5%) (?)</li> <li>○ 실적 부진기관에 경고장 발부</li> </ul>

추진항목 및 일정	제 조 업	건 설 업
<b>14 상반기 사업추진실태 확인</b> <제조 : 7월> <건설 : 7월,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 : 공단 본부-지도원</li> <li>○ 시기 : 7월(1~6월), 12월(7~11월)</li> <li>○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기별 위탁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업수행실태 확인</li> <li>-확인결과에 따라 계약의 해지, 수수료 감액사유 발생시 조치</li> <li>-수행기관 1개소 당 지원 사업장 5개소 현지확인 실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 : 공단 본부-일선기관</li> <li>○ 시기 : 7월, 12월</li> <li>○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기별 위탁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업수행실태 확인</li> <li>-평가결과에 따라 계약의 해지, 수수료 감액사유 발생시 조치</li> <li>-수행기관 실적의 5%이내 현장 방문 확인 실시</li> </ul> </li> </ul>
<b>15 Start Index 평가기준 개정 및 평가 실시</b> <제조 : '10. 11월> <건설 : '10.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AR Index 평가기준 개정 T/F 구성, 평가항목 전면개정</li> <li>-기관별 사업수행능력, 성의와 열의, 아이디어가 효율적으로 평가 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 구성</li> <li>-인적자원 관리분야의 지도요원의 처우분야 평가항목 및 배점 확대</li> <li>-기술지원 업무운영분야 및 개선대책 개선율은 사업수행기관별 변별력이 강화되도록 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행기관 업무수행능력 평가 전면 개정</li> <li>-공모방식 채택에 따라 대행기관의 재해감소 성과 반영</li> <li>-지역별 재해율 및 기술지원 사업장 재해율 등을 비교하여 성과중심으로 개정</li> </ul>
<b>16 기술지원 우수 사례 경진대회</b> <제조 : '10. 12월> <건설 : '10.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경진대회 ⇒ '10년 기술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로 명칭 변경 개최</li> <li>-우수사례에 대한 노동부장관, 공단 이사장 표창 및 시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지원 우수사례 발표회</li> <li>-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우수사례 발표</li> <li>- 노동부장관, 공단 이사장 표창 및 시상</li> </ul>

#### 4 기관별 역할

##### 【집중관리 지원대상 선정 관련】

##### □ 본 부

- 안전공단 본부와 협의하여 집중관리 지원대상 선정기준 확정
  - 지방관서별 집중관리 지원대상 예비 사업장 명단 작성, 지방노동관서 시달
- 지방노동관서에서 선정한 지원대상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10년도 집중관리 지원대상 확정, 지방노동관서 최종 시달

## □ 지방노동관서

- 관내 안전공단 지도원 및 국고대행기관과 협의하여 본부에서 시달한 예비 사업장 명단을 토대로 지역별로 배정된 사업물량 범위 내에서 집중관리 지원대상 사업장 선정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 주기 짧은 사업장을 집중 관리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본부 보고

## □ 안전공단 본부

- 노동부 본부와 협의하여 집중관리 대상 선정기준 확정 및 그룹별 재해발생 주기 산출, 예비사업장 명단 작성, 노동부 본부에 제출
- 지역본부 및 지도원에 집중관리 대상 선정지침 시달
  - 관할 지방노동관서와 협의하여 집중관리 지원대상을 선정 토록 조치

## □ 안전공단 지도원

- 관할 지방노동관서와 협의하여 집중관리 지원대상 선정

## 【사업안내 및 관계자 교육 관련】

### □ 본 부

- 지방관서별로 집중관리 지원대상 사업장에 발송하기 위한 사업안내문 샘플 작성, 지방노동관서에 시달

### □ 지방노동관서

- 본부에서 최종 집중관리 지원대상 명단이 통보되는 즉시 사업장에 사업 안내문 발송
  - 사업취지 및 선정사유, 클린사업장 조성 및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방법 등 지원절차를 상세하게 설명
  - 안전공단 및 대행기관 직원 방문시 협조사항 등 포함

○ 재해발생 사업장 사업주 교육

- 사업개시 전에 최근 5년간 2년이상 재해발생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방관서 주관 하에 사업주교육 실시
- 재해예방의 필요성 및 패키지 지원사업과의 관계 설명

□ 안전공단 본부

- 지방관서 주관 재해발생 사업주 교육시 지역본부 및 지도원에서 교육자료 및 강사지원 등 협조토록 조치
- '10년도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행기관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 대행기관 지도요원을 대상으로 「표준 사업수행 절차서(SOP)」의 내용 등 직무교육 실시
- 표준 사업 수행 절차서 및 4M 위험성평가 기법을 대체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기법 개발

□ 안전공단 지도원

- 지방관서 주관 사업주 교육 시 교육자료·강사지원 등 협조

【사업장 지원 관련】

□ 집중관리 기술지원기관

- 기술지원을 본격 실시하기 전에 기술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기술지원 실시
- 기술지원 거부, 기술지원 후 재해발생, 급박한 위험요인 발견 시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 지방노동관서에 통보
  - 재해예방 기술지원 결과 조치의뢰서를 지방관서에 제출, 기술지원 중단, 대체선정
  - 급박한 위험요인 발견 사업장은 지방관서에 유선 통보 후 서면으로 상세 상황 제출

< 양식 >

### 사고성 재해예방 기술지원 결과 조치의뢰

관할 관서	지원 기관	기관명	사업장명	사업장 관리번호	조치사유 및 의뢰내용	관련 법조항	사업장 담당자	전화 번호	개선 여부

※ 지원기관구분 : 안전공단, 대행기관으로 구분

※ 기관명 : 해당 지역본부/지도원/센터명, 대행기관명

※ 법적사항은 “관련조항”, 법적사항이 아닌 경우는 “자율”로 작성구분

#### □ 지방노동관서

- 기술지도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 또는 위험요인 접수 즉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개선조치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지시
  - 기술지도기관에서 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적사항 중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 급박한 위험요인을 통보받은 경우 위험상황 신고절차에 준하여 즉시 현장을 방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작업·사용 중지 명령, 개선완료 확인 후 해제
  - 개선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유선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개선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점검을 실시하고 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라 조치
  - 시정지시 조치결과 및 급박한 위험상황 개선조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 점검실시

## 【재해감소실적에 따른 지방관서 등급관리 관련】

### □ 본 부

- 본부에서 매분기 재해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방노동관서별로 재해감소실적(목표 달성율)에 따라 관리등급 부여
  - 월단위로 관서별 등급을 부여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시달, 등급에 따라 지방관서에 안전보건국장 지휘서신 발송
- 목표달성 관서에 포상금 지급(분기별)

### □ 지방노동관서

- 등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해예방 활동 계획 수립·시행
  - S 등 급 : 재해감소 목표 달성 관서이나 재해감소추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 1~2등급 : 재해감소 목표에 다소 미달한 관서로서 목표달성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시행
  - 3~4등급 : 월별로 관내 사업장의 재해발생 원인을 분석, 재해감소를 위한 단기대책 수립, 매월 재해 예방사업 추진실적을 본부에 보고

## 【산업재해 감소 워크숍 개최】

### □ 지방노동관서(청)

- 지방청 산업안전과에서 워크숍 주관
  - 관내 지청에 워크숍 개최안내 및 참석대상자 문서 통보
  - 발표자에게 원고 요청 및 회의자료 작성·유인 배부
- \* 본부 하반기 대책·재해분석자료, 재해감소 목표 미달관서 재해감소 대책, 안전공단·대행기관 업무수행실적 발표자료 등



- 워크샵 장소(회의장), 다과 및 음료 등 준비
- 워크샵 사회자 지정(예시 : 청 소속 선임감독관)

## □ 본 부

- '10년 사고성 재해예방사업 추진방향 및 '09년 재해발생현황 발표자료를 청에 제출, 워크샵 발표 준비
- 워크샵 완료 후 논의된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사고성 재해예방 사업 추진방향 추가보완·시달

## □ 지방노동관서·지도원·대행기관

- 워크샵 발표원고 작성, 청 담당자에게 제출
- 당일 프리젠테이션 자료 작성(PPT) 및 발표

### ※ 발표시 착안사항(예시)

- 관내 사업장 전체 및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 재해현황
- 집중관리 사업장 휴폐업·대체 등 변경 현황
- 사업장 방문관련 애로사항 등 조치와 대응
- 위험성 평가 실태, 기술지원 사업장의 반응, 위험성 평가 결과 반영 여부 및 사업장 인식, 결과보고와 기록물 관리 실태, 클린사업 등과 연계 추진 실태
- 관리대상 중 재해발생 사업장과 기술지원 내용과의 상관성

담당 : 안전보건지도과 5급 함병호, 6급 김민호 ☎ 02-6922-0933, 0935

<참고 1>

소규모 건설현장 중점관리 CHECK POINT

□ 가설공사

중점관리 Check Point	평가		
	양호	보통	미흡
○ 비계 기둥·띠장 간격의 적정성, 비계 벽이음의 전용철물 설치			
○ 주 출입통로 등의 상부에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 분전반 누전차단기 설치 및 작동상태의 적정성 및 전기인출시 누전차단기 연결 유무			
○ 가설전선의 정리정돈, 피복상태의 적정성, 통행로에 노출 유무			

□ 기초공사

중점관리 Check Point	평가		
	양호	보통	미흡
○ 건설기계 사용작업시 신호수 및 유도자 배치			
○ 굴착법면구배 안식각 준수 및 사면보강상태의 적정성			

□ 구조물 공사

중점관리 Check Point	평가		
	양호	보통	미흡
○ 목재가공용 기계·기구 설치상태의 적정성 - 톱날접촉예방장치 및 반발예방장치의 설치 상태			
○ 거푸집 동바리 설치방법·설치상태·간격 등의 적정성 - 동바리 침하방지, 수평연결재 설치상태, 전용핀 사용유무			
○ 철근조립 작업방법의 적정성 및 철근 전도방지조치			
○ 콘크리트 타설작업시 콘크리트 펌프카의 아웃트리거 설치 지반 및 설치상태의 적정성			

## □ 강구조물 공사

중점관리 Check Point	평가		
	양호	보통	미흡
○ 철골부재 인양방법의 적정성 - 2줄걸이 결속 및 수평유지, 인양고리 및 인양로프의 이상유무			
○ 철골 조립작업시 추락방지조치의 적정성 - 작업구간 하부 안전방망의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구명로프) 설치상태			

## □ 마감공사

중점관리 Check Point	평가		
	양호	보통	미흡
○ 조적벽체 해체작업 전 작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 벽체 전도방지(지지구조물 설치) 조치, 해체순서의 적정성			
○ 조적·미장·방수작업 시 주변 개구부 방호조치 유무 및 작업발판 설치상태 적정성			
○ 정화조, 저수조 등 밀폐된 공간내에서 방수작업시 질식위험 여부			

## □ 전기 및 기계설비

중점관리 Check Point	평가		
	양호	보통	미흡
○ 전기배선작업시 작업발판 설치상태의 적정성(사다리의 작업 발판 용도로 사용금지)			
○ 중량물의 인양·운반 등 취급작업시 작업방법의 적정성			

## □ 기타공사

중점관리 Check Point	평가		
	양호	보통	미흡
○ 트렌치 굴착작업시 굴착법면의 안식각 준수 또는 (간이) 흙막이 지보공 설치유무			
○ 백호우 등으로 터파기작업 시 출입금지조치 또는 유도자의 배치 등 충돌재해 예방조치 유무			
○ 근로자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착용상태의 적정성			

담당 : 안전보건지도과 5급 함병호, 6급 김민호 ☎ 02-6922-0933, 0935

## 1-2. 건설재해 취약 사업장

### 가. 3대 취약시기 건설현장 일제점검

#### ① 목 적

- 건설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3대 취약시기(해빙기, 장마철, 동절기)에 대형 건설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요인 개선

#### ② 사업내용

##### □ 점검대상

- 취약시기별로 감독관 1인당 3개소 이상 실시
  - 굴착공사·대형교량·터널·타워크레인 설치 현장 등
  - 관계부처 합동점검이 필요한 주요 SOC 건설현장
  -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재해발생 현장
    - ※ 재해율 우수업체라 하더라도 조사대상 중대재해 발생 현장 포함
  - 과거 산재은폐 사실이 있거나 기타 지방관서장이 취약시기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현장 등
    - ※ 시기별 우선 선정 대상
      - ① 해빙기 : 지반 및 토사붕괴의 위험이 있는 현장
      - ② 장마철 : 침수, 붕괴 및 감전위험이 있는 현장
      - ③ 동절기 : 동파, 화재 및 폭발위험이 있는 현장

##### □ 점검일정

- 해빙기(2.16~3.12), 장마철(6.1~6.25), 동절기(11.22~12.17)
  - \* 위 기간중 지청별로 2주 이내에 실시토록 하되, 해빙기는 남부지방부터, 장마철은 장마예보 기간 직전, 동절기는 기온 등을 고려하여 일정 편성

## □ 방 법

- 점검대상 현장에는 미리 개선하도록 사전 안내공문 발송
  - 장마철 점검은 검찰과 합동으로 점검 실시
  - 300억원 이상 지하굴착공사, 교량공사 및 터널공사 등 위험 공사는 안전공단의 지원을 받아 실시
- \* 그 외의 공사(아파트, 빌딩 및 300억원미만 공사 등)는 지방관서 단독 점검 실시

## □ 주요 점검내용

- 「건설업 안전·보건 통합 점검표」에 따라 취약시기별 위험 요인, 안전관리조직, 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종합점검
- 작업계획서 작성·이행여부, 작업지휘자 배치여부 등 중점 점검

## □ 관계부처 합동점검 추진(총리실 통합현장점검 체계구축)

- 주요 SOC 사업은 관계부처 합동점검(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실시('10. 2월 시범실시)
- ※ 국토부(부실시공), 노동부(근로자안전), 소방방재청(재난 예방), 환경부(상하수도 부실), 기타(행안부, 시·도, 조달청 등)
- ※ 총리실 주관으로서 세부추진계획 별도 시달

## □ 점검결과 조치

- 전반적으로 안전관리가 불량할 경우에는 전면작업중지, 특정부분에 대해 재해위험이 클 경우에는 부분작업중지하고
-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안전진단 명령 등 조치
- ※ 건설안전패트롤 점검 등 각종 건설현장 점검시 작업중지, 안전진단 명령 등은 위의 기준에 따라 시행
-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현장에서 추락위험 방지조치(안전규칙 제439조, 제440조) 위반 및 반복적 법 위반 현장은 즉시 사법처리

- 기타 위반사항은 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사용중지, 과태료 부과, 시정지시 등 조치

### ③ 기관별 역할

#### 본부

- 세부추진지침 수립, 결과집계 및 언론 홍보

#### 지방관서

- 지방관서 실정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점검 실시 및 조치)

#### 공단 본부

- 취약시기별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 공단 지도원

- 지방관서 점검인력 지원
- 점검시 사업장 공정상황에 맞는 기술자료 보급

담당 : 안전보건지도과 5급 고광훈, 7급 김윤진 ☎ 02-6922- 0936, 0937

## 나. 대형사고 재발방지 특별점검

### ① 사업목적

- 대형사고 발생업체 본사 및 시공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경각심 고취로 파급효과 확산

### ② 사업내용

#### □ 대 상

- 동시에 3명 이상 사망재해(조사대상) 발생업체 본사 및 동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현장

#### □ 점검일정

- 재해발생 후 1월 이내 실시  
※ 건설분야 제도개선 완료시('1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

#### □ 방 법

- 3명이상 사망재해 발생시 본부에서 원청업체의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에 시공현장 파악 요청(공동도급의 경우 주관사를 대상)
- 본부에서 명단을 통보받아 본사 및 공사현장 관할 지방관서에 즉시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지침 시행  
※ 해당업체의 현장수가 100개소 초과시 대형현장 위주로 100개소 이내에서 실시
- 점검실시 3일전까지 점검대상 현장에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지방관서 단독점검 실시
- 단, 300억원 이상 지하굴착공사·교량공사·터널공사 등 위험공사는 안전공단의 지원을 받아 점검 실시

주요 점검내용

- 「건설업 안전·보건통합점검표」에 의거 추락, 붕괴 예방 조치시설 등 안전보건 시설 전반에 대해 점검 실시

※ 대상, 점검결과 조치 등 세부추진계획은 사유발생시 별도 시달

3] 기관별 역할

본부

- 재해발생시 공사현장 파악, 물량 조정 및 지침 시행

지방관서

- 대형사고 발생 본사 관할 지방관서 : 전국시공현장 파악 및 본부보고, 본사 특별점검 실시

- 현장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 : 공사현장 점검실시 및 결과조치

공단 지도원

- 300억원 이상 위험공사 현장에 대해 지방관서에서 지원요청 시 인력지원

담당 : 안전보건지도과 5급 고광훈, 7급 김윤진 ☎ 02-6922- 0936, 0937



## 다. 대형국책공사 등 위험공사 특별관리

### ① 목 적

- 단기간에 대규모로 발주·시행하는 주요 국책사업이 턴키발주, 신기술·신공법 적용, 무리한 공기단축 등으로 건설재해 급증이 예상되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관리를 통하여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 ② 사업내용

#### □ 대 상

- 대형국책공사 : 4대강, 고속전철, 경인운하 사업

구 분	4대강 살리기	고속철도	경인운하
지역(구간)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경부, 호남선 구간	총연장 : 18km
공사기간	'09.11~'12.12	'09. 6~'14.12	'09. 6~'11.12
공사비	22조원	11조2천억원	1조3천억원
개설현장수	92개 현장 (추가 발주예정)	32개 현장 (경부 13개 호남 19개 현장, 추가발주 예정)	9개 현장

※ 4대강 사업은 '10년도 전 공정 발주예정

- 대형사고 위험공사 : 냉동·냉장창고 건축 및 설비·단열공사, 층고 6m이상 거푸집 동바리공사

□ 추진일정 : 연중 계속

□ 특별관리 방법

#### 【 대형 국책공사 】

- 매 반기단위로 하천(4대강, 경인아라뱃길), 고속전철(경부, 호남선) 참여업체별 재해발생 현황을 파악
  - 청색(양호), 황색(보통), 적색(불량)으로 구분, 차등관리

### 【 차등관리 방안(안) 】

#### ◆ 대상현장 관리기간별 재해율을 기준

- 청색(양호) : 무재해 현장(점검면제)
- 황색(보통) : 재해율이 평균재해율 미만인 현장(공단 기술지도)
- 적색(불량) : 사망사고 발생 또는 평균재해율 이상인 현장(지방관서 특별점검)

※ 6월 및 12월 별도지침 시달

- 본부와 공단이 합동으로 재해예방전담팀(T·F)을 구성하여 대책 마련 및 추진으로 사고 예방에 총력 대응
  - 매분기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마련
- 국책사업 수행 주체별 합동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역할 분담을 통한 공동 재해예방 전개
  - 본부, 공단,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가 참여(공단본부 주관)
  - 지방관서, 지도원, 발주기관 사업단 감독관 및 건설현장 책임자 참여(공단 지역본부 주관)
- 발주기관 및 건설현장 자율안전관리 향상·활성화 지원
  - 공사 종류 및 특성에 맞는 기술자료 제작·보급을 통한 자율 안전관리 활성화 유도
    - ※ 『4대강 살리기 하상작업』, 『고속철도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편람을 제작하여 발주기관 및 건설현장에 보급
  - 발주기관의 합동점검지원 요청현장에 대해서 수시 기술지원

### 【 대형사고 위험공사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산재보험 가입 자료 등을 통해 대상 현장을 파악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은 위험작업(Hold Point) 직전 동 계획서 확인을 실시
- 가동 중인 냉동·냉장창고의 개·보수공사시 신고제 도입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총리실 주관)
  - 공사발주현황을 지자체에 신고토록 의무화, 공사착수단계부터 노동부(공단)·지자체·소방서 합동 기술지원 실시
- 냉동·냉장창고 전문건설업체('08년말 현재 101개소)에 대한 교육·기술 지원 강화

### ③ 기관별 역할

#### 본부

- 재해예방전담팀(TF) 총괄 지휘, 사업방향 설정 및 분기별 회의개최
- 참여업체별 재해율 파악 및 차등관리 계획 수립 등

#### 지방관서

- 현장별 공사실적액 파악 및 재해자수 파악(본부보고), 불량업체 특별점검 실시
- 대형국책공사 및 대형사고 위험공사의 공종, 위험요인 및 현장 특이사항 등을 파악
- 위험작업 시기에 취약시기(대형공사) 및 패트롤 점검(중·소규모 공사)등 실시

#### 공단 본부

- 대형국책공사 재해예방전담팀(TF) 구성·운영 및 발주현황 등 파악

- 국책사업 수행 주체별 합동 협의체 구성·운영(본부 참여)
- 「4대강 살리기 사업」, 「고속철도 작업」 기술자료 개발·보급

□ 공단 지도원

- 관리대상 현장 및 시기별 작업현황 등을 DB 구축하고, DB 현황을 매월초에 지방관서에 통보
- 국책공사 발주기관의 합동점검지원 요청현장에 대해서 수시 기술지원
- 냉동·냉장창고 합동 기술지원 실시 및 전문건설업체(101개소)에 대한 교육(3-4월중 실시) 및 기술 지원

담당 : 안전보건지도과 5급 고광훈, 7급 김윤진 ☎ 02-6922- 0936, 0937

## 라. 건설안전 패트롤 점검 실시

### □ 대 상

- 근로감독관 1인당 2월에 3개소 이상
- 안전관리자 선임규모 미만 (건축공사 등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 중·소규모 건설현장
  - 「시민안전감시단」이 지방관서에 신고한 현장(필수 점검 실시)
    - ※ 신고물량이 많을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경미한 사항 위반시 우선으로 시정촉구
  - 추락·낙하·붕괴 등 반복형 산업재해발생 위험이 높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장
  - 기술지도 미실시 및 저가 계약 현장 등

### □ 주요 점검내용

- 건설안전 패트롤 점검표에 따라 안전시설 위주의 점검 실시
  - 추락·낙하·비래 등 반복형 재해위험요인 중심으로 안전난간, 안전방망 등 안전시설 설치상태를 집중점검
  - 안전시설이 미흡한 현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가설기자재 안전인증(검정품) 사용여부, 중고품의 경우 재사용 가설재 등록제품 사용여부 철저히 확인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적정여부 확인 등

### □ 방법

- 지방관서 실정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 다우리 → 알림마당 → 본부시달 → 산업안전보건국에 「건설안전 패트롤 점검계획 수립」 예시 게재 예정

담당 : 안전보건지도과 5급 고광훈, 7급 김윤진 ☎ 02-6922- 0936, 0937

### 1-3. 화학물질 취급(PSM) 사업장

#### ① 목 적

- 유해·위험물질 다량취급 또는 위험공정을 보유한 공정안전 관리(PSM) 대상 사업장의 관리강화 및 PSM에 대한 노·사 인식제고 등으로 중대산업사고 예방

#### ② 사업내용

#####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확인업무 강화

- PSM 적용대상 유무 파악(수시)
  - 각종 지도·점검 등 사업장 출입 시 적용대상 여부 확인
  - 관내 지자체 등의 협조를 받아 사업장 신축현장을 파악·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대상파악 추진
  - 보고서 미 제출 또는 제출기한 도과 등 법령 위반 시 작업 중지 등 행·사법조치 확행
- 보고서의 심사·확인 시 화학설비 등 안전조치 여부, 안전 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의 실현성 여부 검토 철저
  - 보고서 심사완료 전에 가동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강화
- 보고서 심사·확인 기간을 가급적 단축하고, 변경·보완 명령 시 충분한 설명 등으로 민원인의 불편·불만 최소화

#####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 등급별 차등관리

- 센터별 '10년도 상·하반기 이행상태평가 계획 수립·시행
  - 평가대상 : 신규평가(신규로 심사를 받은 사업장)·정기평가('06년에 평가를 받은 사업장)·재평가(재평가 요청사업장)

-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M- 등급으로 수시선정하고 6개월 이내 재평가 금지, 기타 사업장은 등급변동 후 1년 이내에 재평가 금지
  - 이행상태평가는 “이행상태평가프로그램”을 활용 평가한 후 노사누리를 통해 평가결과(파일) 본부 송신, 본부에서 평가결과 검토·승인(평가등급 확정)
  - 평가완료 후 3월 이내에 소견서 및 평가결과를 사업주에 통보, 다음 반기부터 등급관리 적용
- 등급별 차등관리 기준에 따라 이행상태점검 및 기술지도

**【 등급별 차등관리 기준 】**

- ◆ P등급 : 사업장 자율관리, ◆ S등급 : 년 1회 점검
- ◆ M등급 ('07년 이전 등급 부여) : 년 2회 점검 및 년 1회 기술지도
- ◆ M<sup>+</sup>등급 사업장 : 년 1회 점검 및 년 1회 기술지도
- ◆ M<sup>-</sup>등급 사업장 : 년 2회 점검 및 년 1회 기술지도

- 이행실태점검 및 기술지도는 반기별로 자체계획 수립·시행
  - M, M<sup>+</sup>, M<sup>-</sup> 등급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는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가급적 이행상태점검과 동시에 실시
  - 기술지도 시 사업장이 필요로 하는 안전관련 기술을 사전 파악, 맞춤형 지도 추진
- 평가등급 미부여 PSM사업장 관리 방법
- 신규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PSM사업장은 평가 등급을 부여하기 전까지는 M<sup>+</sup> 등급에 준하여 지도점검
  - 산재발생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검찰합동점검 등 점검·감독대상에서 제외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분위기 확산

- 「공정안전 리더십 그룹」 구성 · 운영
  - PSM 적용대상 사업주 · 근로자단체의 대표 등을 대상으로 리더십 그룹 구성(3월)
    -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장,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장, 정유협회장, 울산·여수석유화학협의회장 등
  - 「공정안전 리더십 그룹」 발족 및 선언서 채택(3월)
  - 울산, 여수 등 화학공단 지역순회 세미나 개최(5월, 10월)
  - 공정안전관리의 수준을 측정하는 “공정안전관리 성과지표” 개발 · 보급(연중)
    - ※ 지역순회 워크숍 개최 등 세부추진계획은 별도 시달
- 센터별 공정안전보고서 이행분위기 확산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 · 시행(1월)
  - PSM 12대 실천과제 실천운동 전개
  - 사업주 · PSM담당자 교육 · 간담회 개최, 캠페인 전개 등
  - 관내 PSM 담당자 협의회 구성 · 운영 추진
  - PSM 이행 우수사업장을 선정, PSM 담당자의 견학 추진

□ 유해 · 위험물질 취급사업장(PSM비대상) 기술지도

- 대 상 : PSM 비대상 중소규모 사업장 중 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목표 500개소)
  - 공단 지도원별로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대상선정(1월), 기술지도 실시(연중)



- 화재·폭발·독성물질 누출사고 예방조치 관련 기술지도
  - 사업장내 위험시설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및 대책 제시
  - 안전관리대행 사업장은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토록 조치
  - 용접기, 산소절단기 등 화기 사용 근로자(협력업체 포함)에 대해 화재·폭발 방지 관련 교육실시 여부, 화학물질 보관·사용 상태 등 중점 확인
  - 대규모 화학공장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모기업에서 해당 협력업체에 대해 화재·폭발방지 교육 등 지원 유도
  - 관내 중·소규모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관계자·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방지 교육 실시
  - 각종 교육·기술지원 불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 대상으로 우선 선정

□ PSM 제도개선사항 이행철저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10.1.1 시행

【 주요 개정내용 】

- ◆ 업종별·규모별 이행상태평가항목 차등 적용
- ◆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중 단서조항 신설
- ◆ 평가면제의 근거 신설
- ◆ 세부평가항목 전면개정('10.7.1. 시행)

- 50인 미만 사업장과 규정수량으로 인한 PSM적용사업장 평가 시 세부평가항목 차등적용(일부적용)
  - 고시 별표5(신설)에 따라 평가제외 항목은 '해당없음' 처리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이행상태평가 세부평가항목을 차등 적용

- 자동화설비, 조명설비 등 화재·폭발과 관련이 없는 설비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분의 변경 대상에서 제외
- PSM 적용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설비를 추가로 설치·이전 하거나 반응기 교체 등 주요구조부분의 변경(고시 제2조제1항 제1호)으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행 상태평가 면제
- 이행상태 세부평가항목 조정(별표4), '10.7.1 시행
  - 평가항목이 120문항에서 97개 문항으로 축소
  -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 시 착안사항 등 변경된 평가용 프로그램 추후 별도보급 예정

□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기관평가 실시

- 센터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센터간 선의의 경쟁의 유도하여 센터의 역량강화와 적극적 재해예방활동 촉진
- 예방센터가 설치된 지방청을 대상으로 하고 PSM 업무에 한정하여 평가

《 예방센터평가 지표 》

구분	평가 과제	평가지표	비고
평가 내용 (비중)	예방센터 조직 및 직무수행 능력 (50%)	- 예방센터 조직 구성(30%) ※ 전문인력의 효율적 배치 및 총원 실적 - 직무수행 능력향상 노력도(20%) ※ 외부교육, 자체세미나 등 실적 ※ 신규자 배치시 OJT 실적	정량평가  정량평가
	사고예방 활동 및 실적 (50%)	- PSM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률(40%)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분위기 확산 활동 (10%)	정량평가 정성평가

- 평가대상 기간은 지방관서 기관평가 기간과 일치

- 예방센터는 기관평가 일정에 맞추어 평가자료 본부 제출
  - 예방센터직원 기본 인사자료 및 직무관련 교육이수 현황 등 평가지표에 따른 근거자료
- '10년 이후 예방센터평가 결과를 지방관서평가에 반영
  - 예방센터 평가 순위에 따라 가·감점 부여

**【 예방센터 평가결과 기관평가 반영계획 】**

- ◆ 1위센터 소속 지방청 : 1.5점 가점    ◆ 2위센터 소속 지방청 : 0.5점 가점
- ◆ 3위센터 소속 지방청 : 0.5점 감점    ◆ 4위센터 소속 지방청 : 1.5점 감점

※ 안전보건지도과-2327('09.6.11,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평가계획 시달)

**□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직원의 전문성 제고**

- 센터 감독관 전문과정 이수 철저
  -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공학분야 전문과정 중 PSM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목을 1인당 1과목이상 필수적으로 이수

※ '10년 개설과정 중 PSM관련 전문과정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평가, 설비유지 및 변경관리(MI, MOC), 공정안전(PSM)자체감사, 위험과 운전분석(HAZOP), 사고빈도분석(FTA, ETA), 사고결과분석(CA), 공정안전기술기준해설 등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감독팀 및 기술지원팀 합동 워크숍 개최(7월중)
  - '10년도 PSM 추진실적 및 이행분위기 확산사업 평가, 제도 개선방안 토론
  - 중대산업사고예방 및 PSM제도 활성화 분임토의 등

### ③ 기관별 역할

#### □ 노동부 본부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업무의 계획수립·시달 등 총괄 관리(연중)
  - 제출·심사·확인·이행상태평가, 등급별 차등관리 등 추진 실적 파악
  - PSM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지침시달 또는 관련 규정 개정 등 개선조치
  - PSM이행상태 평가결과를 분기별로 검토하여 승인
- PSM 적용대상 화학물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추진(년중)
  - 현재 21종에서 선진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물질에 대하여 국내 사용량 등을 토대로 연차적으로 확대
    - ※ 1차 목표 : '13년까지 EU수준(38종)으로 확대
    - ※ 2차 목표 : '14년 이후 미국수준(137종)으로 연차적 확대
- 공정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정안전 리더십 그룹” 구성·운영 총괄 관리
  - 리더십 그룹 구성, 선언서 채택, 지역순회 워크숍 개최('10. 5월, 10월) 등 공단과 협의
- 4개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감독팀 및 기술지원팀 합동 워크숍 개최계획 수립·시행(7월중)
-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기관평가 실시(12월)

## □ 지방노동관서

- PSM 적용대상 사업장 파악 및 지도·감독(년중)
  - 각종 지도·점검 등 사업장 방문 시 PSM 대상유무 확인
  - 보고서 미제출 사업장 관할 지도원에 제출토록 조치,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사법조치
  - 공단의 심사·확인결과 부적정한 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치 철저
- PSM 제도개선 사항 안내·홍보

## □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 PSM이행상태평가 및 차등관리 계획 수립·시행(1월)
- 공정안전 리더십 구성·운영 홍보, 워크숍참석 독려(년중)
- PSM이행분위기 확산 자체사업계획 수립·시행(1월)
  - 기술지원팀과 합동으로 12대 실천과제 실천운동, 교육·간담회·캠페인 개최 등 PSM이행분위기 확산을 위한 자체 계획 수립·시행
- PSM 관련 제도개선 사항 홍보 및 이행 철저(년중)
  - 업종별·규모별 이행상태평가항목 차등 적용
  -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중 단서조항 신설
  - 이행상태평가 면제 내용 신설
  - 이행상태 세부평가항목 전면개정('10.7.1. 시행)
- 업무추진 실적 등 기관평가자료 본부 제출(12월)
- 감독관 1인당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주관 전문교육 중 PSM관련 교육을 1과목 이상 필수 이수

## □ 공단 본부

- 공정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정안전 리더십 그룹” 구성·운영 추진, 노동부와 실무 협의
  - 리더십 구성, 리더십 그룹 발족 및 선언서 채택(3월)
  - 지역순회 세미나 개최(5월, 10월)
- 공정안전문화 측정지표 개발(연중)
- PSM이행분위기 확산방안 검토·시행
  - 교육·간담회·캠페인 등 효율적인 PSM이행분위기 확산 방안 마련·시행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워크숍 개최(7월중)
  - 노동부와 일정·장소 등 세부추진계획 협의
- 일선 지도원 PSM 제도 등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연중)
  - PSM 제출·심사·확인 실적 파악 및 통계관리
  - PSM 차등관리 사업장(M, M+, M- 등급)에 대한 기술지도 및 유해·위험물질 취급사업장(PSM 비대상) 재해예방 기술지원
- PSM 심사·확인 등 제도시행상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연중)
  - 개선지침 시달(지도원) 또는 노동부와 관련규정 개정 등 협의

## □ 공단 지역본부(지도원)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확인업무 수행(연중)
  - PSM 적용대상사업장 파악 철저, 화학설비 등의 안전조치 계획 등 보고서 심사·확인 강화

- 법 위반사업장 지방노동관서 통보
- 업무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공단본부 보고
- 화학사고 취약사업장 재해예방 기술지도계획 수립·시행(1월, 7월)
  - 등급별 차등관리에 따른 기술지도 대상사업장(M, M+, M- 등급)에 대해 반기별 지도계획을 수립, 년1회 기술지도 실시
    - ※ 센터 감독팀과 협의하여 이행상태 점검과 병행추진
  - PSM비대상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기술지도 실시
    - ※ 관할 지방노동관서와 협의 시행
- PSM 이행분위기 확산 자체사업계획 수립·시행(1월)
  - 센터 감독팀과 합동으로 12대 실천과제 실천운동, 교육·간담회·캠페인 개최 등 PSM이행분위기 확산을 위한 자체 계획 수립·시행
- PSM 제도개선 사항 홍보 및 이행 철저
  - 업종별·규모별 이행상태평가항목 차등 적용
  -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중 단서조항 신설
  - 이행상태평가 면제 내용 신설
  - 이행상태 세부평가항목 전면개정('10.7.1. 시행)

담당 : 안전보건지도과 5급 오만석, 7급 김정태 ☎ 02-6922-0939,0946

## 2. 업종별 맞춤형 재해예방 대책 추진

### 2-1. 제조업 안전관리 강화

####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

##### ① 목 적

- 재해발생 위험성이 큰 설비의 신설·변경시 시공단계부터 안전성 검토 및 현장확인을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 확보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 ② 사업내용

##### □ 추진사항

-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심사·확인
  - 제출대상 : 금속가공제품등 제조업 및 위험설비를 신규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사업장
- 계획서 심사 내실화와 심사원의 심사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문화교육 또는 워크숍 실시
- 제출대상사업장의 제출누락 및 지연제출 방지를 위한 홍보 및 확인(수시)
  - 금속가공 및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종 신설가능 사업장에 대해 리플렛 작성 배포·안내
  - '09 작업환경실태조사에 따른 설비(용해로, 국소배기장치, 가스집합장치 등)보유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및 심사제도 안내
  - Plant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공장 신·증설 및 설비변경 현황 등 대상여부 파악



- 업종협의회, 시설업체 등의 협조를 받아 신·증설 및 변경관리 현황 파악

\* 철강업종(용해로), 조선업종(가스집합용접장치), 자동차 및 전기전자 업종(건조설비, 국소배기장치), 화학업종(화학설비)

- 계획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사업장 등에 대한 행·사법 조치 강화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에 대한 문제점 파악·개선

## □ 방 법

- 심사 및 확인 절차
  -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결과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
  - 사전에 확인일정을 통보하고 해당일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계획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일로 부터 5일 이내 확인 결과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

## □ 추진일정

- 접수, 심사, 확인 업무(연중)
- 심사원자격 및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문화교육 또는 워크숍 실시(3월, 11월)
-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 및 지도요원에 대한 제도 교육
  - 공단직원 및 대행기관 지도요원 교육(3월)
  - 5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교육시 제도 안내(수시)
- 대상 사업장 제출누락 및 지연방지를 위한 조사·확인(연중)
  - 금속가공 및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종 신설가능 사업장에 대한 조사 및 리플렛 등 홍보자료 배포·안내

- '09 작업환경실태조사에 따른 설비보유 사업장 조사 및 심사제도 안내
- Plant 건설현장 방문, 공장 신·증설 및 설비변경 현황 등 대상여부 파악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에 대한 문제점 파악·개선(년중)

### ③ 기관별 역할

#### □ 노동부 본부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총괄 관리
  - 제도 조기정착 계획수립, 심사·확인 실적 등 파악
  - 계획서 미제출·지연제출 사업장 파악방법 등 검토, 일선기관(지방관서·공단 등)에 조치사항 등 시달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에 대한 문제점 파악, 지침시달 또는 관련규정 개정 등 개선조치

#### □ 지방노동관서

- 각종 지도·감독 등 사업장 방문시 계획서 제출 대상여부 파악 및 제도 안내·홍보 철저
-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전문교육 및 워크숍 개최계획 협의(공단지도원), 참석 독려(세부 시행공문 시행 : 공단지도원, 민간기관 등)
- 계획서 미제출 등 법령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라 행·사법 조치
  -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설비를 설치한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및 10일 이내 제출도록 행정조치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본부보고

#### □ 공단 본부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실적 통계유지
- 심사·확인 등 제도조기정착 방안 마련, 노동부와 협의 후 시행
  - 심사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워크숍 계획 수립·시행
- 계획서 미제출·지연제출 사업장 파악방법 등 세부계획 수립, 일선 지도원에 시달
  - 금속가공 및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종 신설가능 사업장 조사 및 리플렛 등 홍보자료 배포·안내
  - '09 작업환경실태조사에 따른 설비보유 사업장 조사·관리 및 제도 안내
  - 공단 지도원 및 민간 위탁기관에서 Plant 건설현장을 방문할 경우, 공장 신·증설 및 설비변경 현황조사를 통하여 대상 파악
  - 업종 협의회, 시설업체,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장 신·증설 및 변경관리 현황파악·조사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확인 등 일선 지도원의 제도 시행상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검토
  - 개선지침 시달 또는 노동부에 규정개정 등 개선 건의

#### □ 공단 지도원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심사·확인 등 업무수행
- 계획서 제출 대상여부 파악 철저 및 지도·홍보 강화

- 사업장 관계자에 대한 각종 교육·간담회 시 계획서 제도 설명 및 홍보 강화
- 금속가공 및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종 신설가능 사업장 조사 및 리플렛 등 홍보자료 배포·안내
- '09 작업환경실태조사에 따른 설비보유 사업장 조사·관리 및 제도 안내
- 공단직원 및 민간위탁기관에서 Plant 건설현장을 방문할 경우, 공장 신·증설 및 설비변경 현황조사를 통하여 대상을 파악
- 업종협의회, 시설업체,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장 신·증설 및 변경관리 현황 파악·조사
-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전문교육 및 워크숍 개최계획, 참석 독려 등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와 협의·시행
- 계획서 제출·심사·확인 등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공단본부 보고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의로 미제출하거나 지연하는 사업장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통보

담당 : 안전보건지도과 5급 오만석, 7급 김정태 ☎ 02-6922-0939,0946

## 나.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 ① 목 적

- 재해다발 또는 작업환경 불량 사업장에 대하여 종합적인 안전·보건상의 개선조치를 수립·시행하게 함으로써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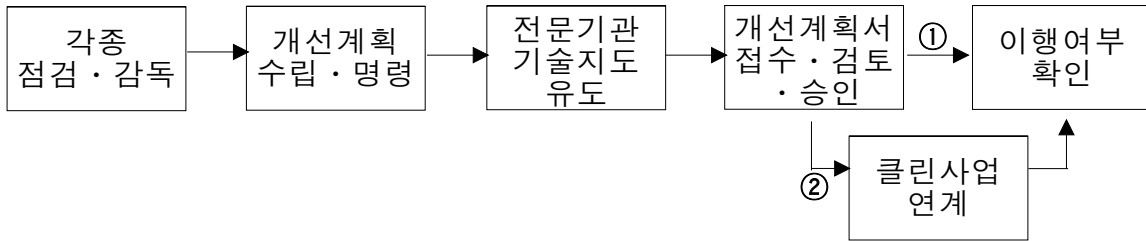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 ② 사업내용

#### □ 추진사항

- 재해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조치(시설개선)가 필요한 사업장 중 시설개선 등에 3개월 이상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 필요시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거나 안전공단의 기술지도를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조치
- 개선계획 수립명령 사업장에 재정지원사업(클린사업 및 시설자금 융자 등)을 안내
- 사업장에서 제출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여부 검토, 그 결과를 사업주에 통보
  -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포함여부 확인
  - 필요한 경우 계획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공단 또는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에게 적정여부를 확인 요청
- 개선계획 승인 후 이행여부, 개선결과 보고시 현장 확인 등 계획서 이행여부 지도·감독 철저
  - 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 등 법령 위반 시에는 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

## □ 추진절차



※ ① 재정지원 사업(클린·용자)과 연계가 불필요한 경우

② 재정지원 사업(클린·용자)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

## ③ 기관별 역할

### □ 노동부 본부

- 개선계획 수립·명령 실적 파악, 필요시 시행지침 시달(수시)

### □ 지방노동관서

- 각종 점검·감독결과 개선계획 대상 여부 검토 및 개선계획 (진단명령 포함) 수립·시행 명령(수시)
  - 필요시 공단의 기술지원을 받아 개선계획 수립토록 조치
- 개선계획서의 검토·보완명령·승인, 개선계획 이행여부 및 개선결과 확인 등 사후관리(수시)
  -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사법 조치

### □ 공단 지역본부(지도원)

- 지방관서 또는 사업장 요청 시 개선계획수립 기술지도
- 지방노동관서의 계획서 검토 요청 시 적정여부 확인

담당 : 안전보건지도과 5급 오만석, 7급 김정태 ☎ 02-6922-0939,0946

## 2-2. 건설업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

### 가. 건설안전제도의 현장 적용성 및 실효성 제고

#### ① 사업내용

##### □ 위험공사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의무화

- 교량공사, 시스템비계, 시스템 동바리 및 갱폼 등의 안전기준 신설
- 2m 이상 굴착공사·교량공사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배치 의무 신설

##### □ 자율관리업체 지정제도 개선

- 지정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 지정요건을 강화(평균재해율 이하 → 재해율이 우수한 순으로 상위 20%)
  - 자율관리업체 확인시기 명기, 건설안전기술사 등 확인 의무화
- 자율안전관리업체 명칭 개선, 즉시 해제기준 신설 등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개선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를 1, 2종으로 구분, 차등관리
  - 1종 건설공사는 안전공단 본부에서 심사·확인 수행, 2종 공사는 현행 절차(지도원 심사 및 확인)대로 운영
- 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중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하는 신기술·신공법 사용 건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 심사 실시
  - 심사·확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 적극 활용

##### □ 도급사업에서 안전관리 책임강화

- 같은 사업장내에서 도급을 줄 경우 하청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해 원청이 법 제29조를 명확히 적용받도록 방안 강구

□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 국토부 설계자문위원회에 안전전문가 참여 및 가시설공사 설계기준 보완, 표준설계도면 등 마련(국토부 추진)
- 안전관리 업무전담 감리원 지정 의무화(국토부 규정 개정) 및 안전보건교육 포함(감리협회 등 5개 감리원 지정교육 기관과 협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촉진방안 강구

- 대상 공사종류 단순화, 공사위험도에 따른 효율의 개선
- 사용항목 규정방식을 현행 positive(사용가능)에서 negative(사용 불가능)로 변경하는 등 사용범위 확대

② 기관별 역할

□ 본부

-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규정 개정

□ 공단 본부 및 지도원

- '10.3월말까지 「건설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 '10. 7. 1부터 1종 공사에 대해 심사 실시
- 감리원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재 마련
- 감리원 산업안전보건교육 출강(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계·거푸집 등 건설작업 위험예방(사고사례 포함))

담당 : 안전보건지도과 5급 고광훈, 7급 김윤진 ☎ 02-6922- 0936, 0937



## 나. 「시민안전감시단」 운영

### ① 목 적

-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상시 순찰 및 감시를 통해 안전시설 개선을 유도

### ② 사업내용

- 감시단 구성 : 총 50명
  - 6대도시 중심(공단 지역본부별), 5명 단위·10개 감시단 운영
- 감시 대상
  - 전담안전관리자 선임규모 미만 건설현장
- 추진일정
  - 1월중 감시단 모집공고 및 채용, 2월초 교육 실시, 2월중 ~ 12월중(10개월) 감시단 운영
- 감시단 자격요건
  - 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로서 일반건설업체에서 5년 이상 건설안전경력이 있는 퇴직자
  - 안전관련 NGO 단체 등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퇴직자
  - 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경력이 있는 퇴직공무원 등
- 운영 방법
  - 감시단은 모집공고를 통하여 공개모집 후 일정기간 기초 소양교육, 안전관계 법규, 건설안전 작업지침 및 현장감시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2~3인/1조 편성, 1조가 1일 3개소 이상 현장감시
    - 현장감시는 외부감시를 원칙으로 하고, 안전난간, 작업발판, 추락 및 낙하물방지망 등의 기본적 안전시설 설치여부, 근로자 보호구 착용여부 감시

- 불가피한 경우(굴착공사, 담벽 설치 등으로 현장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관계자에게 방문목적을 설명, 현장순찰 협조요청(신분증 제시)

- \* 감시단의 안전활동 및 순찰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방청장 명의의 현장출입증 제작, 감시단에게 교부
- \* 일일 출근 및 퇴근 등의 근태관리를 실시하고, 감시조별로 전담 구역을 지정

- 안전시설이 극히 미비하여 급박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지방관서에 조치토록 유선으로 신고

- 기타 점검이 필요한 현장에 대해서는 감시보고서를 작성한 후 노동부 신고(지역본부에서 관할 지방관서에 FAX송부)

- \* 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 발견시에는 즉시 이행토록 지도

#### ○ 신고된 현장 조치

- 지방관서에서 즉시 패트롤 점검 실시(미개선 사항 확인 및 조치)

### ③ 기관별 역할

- 본부 : 총괄 지휘, 언론 홍보
- 지방관서 : 신고된 현장에 대해 건설안전패트롤 점검 실시 및 조치
- 공단 본부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감시단 모집공고 및 채용, 교육, 문제점 등 모니터링
- 공단 지도원 : 감시단 근태관리, 현장출입증 제작, 수시 교육 및 감시 보고서 관리 등

담당 : 안전보건지도과 5급 고광훈, 7급 김윤진 ☎ 02-6922- 0936, 0937

## 다. 위험공사 현장소장 간담회

### □ 대 상

- 대규모 굴착공사, 교량, 터널, 경전철 및 타워크레인 설치현장 등 특히 위험한 공사현장 현장소장

### □ 추진시기

- 시기 : 매 분기별 실시(2월, 5월, 8월, 11월)

\* 대규모 개발단지의 경우 발주처 회의실에서도 개최하는 방안 강구

### □ 방 법

- 지방관서별 매 분기마다 실시하되, 관내 실정에 따라 분기별 2~3회, 1회당 현장소장 15명 이내로 실시

- 건설현장이 많은 관서에서는 유사 공종으로 묶어 실시함으로써 상호 벤치마킹 등 효율성 증대

- 산업안전과장 및 지도원 건설팀장이 재해발생 현황, 정책방향 및 대형사고 사례 등 설명

\* 휴일작업, 위험작업시 반드시 공사책임자가 입회하여 작업을 지휘토록 당부

-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소장은 붙임 「간담회 자료 작성서식」에 의거 향후 주요위험공정 분석, 향후 안전관리 대책, 재해예방의지 등 발표(10분 내외)

### □ 불참현장 등 조치

- 불참현장, 하위직급자 대리참석 및 재해예방 대책을 작성하지 않은 현장은 취약시기 점검 등 각종 점검대상에 포함(재해를 우수업체 등 지도점검 면제 업체도 포함)

### □ 기관별 역할

- 지방관서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간담회 추진

- 공단 지도원 : 간담회 참여 및 시기별 필요한 기술자료 제공

담당 : 안전보건지도과 5급 고광훈, 7급 김윤진 ☎ 02-6922- 0936, 0937

< 붙임 >

## 간담회 자료 작성서식(건설현장용)

건설업체명 :	현장명 :
---------	-------

발표자 : 직책                      성명

### 1. 공사개요

- 공사기간 :            ~            ○ 공사금액 :            백만원
- 현재 상시근로자수 :    여명    ○ 현공정율 :            %
- 현장소장 :

### 2. 안전관리자 선임현황

소 속	직 책	성 명	자 격	선임일자

### 3. 산업재해 발생현황

공사착공후 ~ '09.12.31	'10.1.1 ~ 현재
재해자수    명(사망    , 부상    )	재해자수    명(사망    , 부상    )

### 4. 향후 안전관리 추진계획

- 주요 위험공정 분석

※ 내용의 글자크기는 15포인트, 총 페이지는 2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안전관리 추진대책

-

## 라. 중·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도 내실화

### ① 기술지도 미실시 사업장 조치 강화

#### □ 대 상

- 공사금액 3억(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이상 120억(토목공사업 공사는 150억) 미만 건설현장

#### □ 추진방법

##### 【지방청】

- '09. 12월말 현재 재해예방기관 현황을 관할관서에 송부
  - 지도기관으로 하여금 매 익월 5일까지 전월 계약체결 현황을 관할 지방관서에 송부토록 조치

##### 【지방관서】

-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지도원에 매월초 통보) 명단과 지도기관에서 제출한 계약체결 현황을 확인하여 미실시 현장은 즉시 기술지도 계약 촉구(불이행시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
  - ※ 기술지도 계약촉구 문서(안)은 다우리 → 알림마당 → 본부시달 → 산업안전보건국에 게재
- 저가 계약현장, 공사기간이 1/2이 경과된 후 계약체결 현장은 건설안전 패트롤 점검대상에 우선 선정

##### 【지도원】

- 매 익월 5일까지 전월말 기준 기술지도 대상 건설현장 명단을 관할 지방관서에 송부

##### 【지도기관】

- 매 익월 5일까지 아래 서식에 의거 기술지도 계약체결 현황을 관할 지방관서에 FAX 송부

**건설현장 기술지도 체결현황(지도기관용)**

○ 기관명 : ( 월)

연번	건설업체명	현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계약일자	계약금액	1회당금액

**②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내실화 지도(지방청)**

대 상 : '09. 12. 31 현재 지정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방 법 : 지방청별 자체계획 수립·추진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10년도 기술지도 실시계획 및 지도능력 향상방안」을 '10. 1. 31까지 제출

※ 동 계획서는 기관운영계획, 신규사업장 발굴계획, 매월 지도요원 교육계획, 사업장 기술지도 서비스 향상방안 등을 포함

○ 2월말까지 '10년도 기술지도 실시계획 및 지도능력 향상방안 발표회 개최(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자가 발표토록 함)

○ 발표회 개최후 지도기관으로 하여금 매 분기 익월 5일까지 전 분기 추진실적을 제출토록하여

-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이행촉구 등 조치 병행

지도점검 실시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점검(반기 1회)시 「2010년도 기술지도 실시계획 및 지도능력 향상방안」 이행실태 점검병행

○ 이행실적이 저조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지도기관에 대해서는 점검 강화

-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실적 등을 확인하여 지도요원 실제 근무여부, 이면계약 여부 등도 철저히 확인

담당 : 안전보건지도과 5급 고광훈, 7급 김윤진 ☎ 02-6922- 0936, 0937

## 마. 1,000대 건설업체 재해율 조사·적용

### □ 대 상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

### □ 방 법

- 업체별 재해자수 조사
  - 지방관서에서 1,000대 건설업체 소속현장으로 인정승인 되거나 자체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업체 산업재해 발생현황 (요양승인 전 요양 신청서를 반려한 재해자 포함) 및 전 건설현장 사망재해 발생현황을 3.20까지 본부에 보고
    - ※ 사망재해는 검찰송치서(범죄사실, 수사결과보고서) 사본을 함께 제출
    - ※ 재해율 산정대상 건설업체 명단 및 보고서식은 다우리/계시판/본부 시달/산업안전보건국 참조
- 공단은 업체별 공사실적액 조사, 이의신청 기회부여 등을 통해 재해율 산정 : 3~6월
- 본부에서는 산정결과 발표 : 6월말
  - 조달청 등에 통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가점 부여
- 재해율에 따라 차등관리(지방관서)
  - 재해율 우수업체(상위 10%) : 7.1부터 1년간 각종 점검·감독 대상에서 가급적 제외
  - 재해율 불량업체(하위 10%) : 각종 점검시 우선 선정

담당 : 안전보건지도과 5급 고광훈, 7급 김윤진 ☎ 02-6922- 0936, 0937

## 2-3. 조선업 규모별 재해예방활동 강화

※ 세부추진지침 별도 시달

담당 : 안전보건지도과 4급 최관병, 6급 김민호 ☎ 02-6922- 0932,0935



## 2-4. 기타 재해다발 업종 맞춤형 예방활동

### 가. 임업(영림업)

#### ① 사업내용

- 지방관서별로 안전공단 지도원의 협조를 받아 관내 영림 사업장 현황 파악
- 영림사업장이 다수인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지방관서 주관 하에 안전공단·영림단 관계자 회의 수시 개최
  - 관내 영림단의 협조를 받아 영림단 작업장 현황 파악, 인력·재해관련 통계유지, 영림 작업장별 작업일정 확보
  - 각 기관별 영림재해 예방관련 사업추진 현황발표 및 안전교육·협력체계 구축 등 영림재해 예방대책 협의
- 국유림영림단·개별법인·산림조합 등과 사전협의하여 숲가꾸기 사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 교육시 사업장의 위험특성에 적합한 교육자료 보급
- 지역본부/지도원으로부터 영림사업장 기술지원결과를 제출 받아 안전조치가 불량 사업장에 대해 불시점검,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

#### ② 기관별 조치사항

##### □ 지방노동관서

- 안전공단 지도원의 협조를 받아 관내 영림사업장 현황 및 재해발생 현황 수시 파악, 관련통계 유지
- 영림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지방관서 주관 하에 안전공단·영림단 관계자 회의 수시 개최

- 영림단 작업장 현황 파악, 인력·재해관련 통계유지, 영림 작업장별 작업일정 확보
- 영림재해 예방관련 사업추진 현황 및 안전교육·협력체계 구축 등 영림재해 예방대책 협의
-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의 진척상황을 수시로 점검
-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안전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과 협의 하에 영림 사업장 점검계획 수립

□ 안전공단 본부

- 지역본부 및 지도원에 영림재해예방 세부추진지침 시달

□ 안전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

- 관내 영림 사업장 현황 및 재해발생 현황 파악, 지방노동 관서에 현황자료를 송부하여 관련자료 공유
- 영림사업장 작업장 방문 교육 및 기술지원
- 안전관리 소홀 및 재해 1건 이상 발생 사업장 명단을 관할 지청에 보고

\* 세부추진지침 별도 시달

담당 : 안전보건지도과 5급 함병호, 6급 김민호 ☎ 02-6922- 0933,0935

## 나. 희망근로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 ① 사업내용

- 희망근로 사업장 현황 파악 및 통계유지
  - 관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희망근로 사업장 현황 파악
  - 현장별 산재보험 가입현황 · 산재성립번호 등 일반현황과 현장별 재해발생 현황 파악 및 통계관리
- 희망근로 사업장 점검계획 수립 · 시행
  - 사업장수 ·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위험작업 현장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 안전보건기준 준수여부 점검
  - ※ 희망근로 사업장 점검시 착안사항
    - 작업을 총괄 감독하는 직원을 안전보건업무담당자로 지정, 작업장내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임무부여 여부
    - 작업시작 전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작업장내 기계 · 기구 · 설비의 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실시 여부
    - 보호구 착용, 작업전 작업장 순회점검 · 지도 및 조치여부
    - 인력 투입 전 고령자 · 허약자 · 개인질병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체크 후 작업배치, 현장에 구급함 비치여부
  - ※ 지자체에서 보건소를 통해 혈압 · 당뇨 등 간단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상자에 대해서는 투약 등의 조치 후 작업배치토록 지도
- 점검결과 산안법 위반사항 발견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행 · 사법조치
  - 급박한 재해발생 위험요인 발견시 즉시 작업중지 명령, 작업중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점검

## ② 기관별 조치사항

### □ 지방노동관서

- 관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희망근로 사업장 현황 파악 및 통계관리
  - 희망근로 현장별 산재보험 가입현황·산재성립번호 등 일반 현황 및 현장별 재해발생 현황 파악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희망근로사업장 점검계획 수립·시행
  - 전체 사업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분기 또는 반기별 점검계획 수립
- 지자체 등 희망근로 관련기관에서 근로자 안전교육을 위한 산안법 관련 강의 요청시 적극 지원

### □ 안전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

- 관내 희망근로 사업장 실태 파악, 지방관서와 통계공유
- 지방노동관서에서 희망근로 사업장 점검 기술지원 요청 시 적극 지원 및 기술자료 제공
- 매월 희망근로 사업장별 재해현황을 분석, 해당기관 통보
- 지자체 등 희망근로 관련기관에서 근로자 안전교육을 위한 산안법 관련 강의 요청 시 적극 지원

※ 세부추진지침 별도 시달

담당 : 안전보건지도과 5급 함병호, 6급 김민호 ☎ 02-6922- 0933,0935

### 3. 위험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강화

#### 3-1. 안전인증제도 정착 및 내실화

##### 가. 제조단계의 안전성 확보(기계·기구 및 방호장치·보호구)

##### ① 목표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 50,000건
-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 3,000건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업무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위탁기관	위탁업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전체 대상)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수리
(사)대한산업안전협회	기계·기구 중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의 안전인증
(재)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기계·기구 중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의 안전인증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방호장치 중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의 안전인증
한국가스안전공사	방호장치 중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의 안전인증
한국건설가설협회	방호장치 중 가설기자재의 안전인증

##### ② 기관별 역할

##### □ 노동부 본부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운영현황 모니터링, 시장감시 등 종합 분석

##### □ 지방노동관서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제조업체 사업주 교육(1/4분기)

- 관할 지역 제조업체 중심 제도 안내 교육

※ 안전공단과 협조하여 진행 : 관할지역 제조업체 명단 별도 시달

- 해당 사업장에 재해예방 지도·점검시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의 안전인증 취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 여부 반드시 확인

-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 취소 사유 접수시 안전인증 취소·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개선명령 등 조치

- 해당 조치후 노동부 본부 보고

- 인증심사 반려, 부적합 기계·기구 보유 사업장에 사용금지 등 관련법령 안내 및 개선 독려 공문 발송

- 사업장 명단은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확보

#### □ 안전공단(본부·지역본부·지도원)

- 월별 안전인증기관별 안전인증 수행 실적 집계 및 통계관리

- 안전인증 대상품 제조업체 집체교육 계획 수립(각 지역본부별)

- 지방노동관서와 협조하여 관내 안전인증 대상품 제조자 대상 집체교육 실시

- 기계·기구 및 설비 안전인증 심사 반려 및 부적합 발생시 지방관서에 해당 사업장, 기계, 사유 등 상세 보고

#### □ 안전인증기관

- '09년 안전인증을 받은 업체 대상 안전인증 유지여부 확인을 위한 사후확인 실시(법 제34조 제5항)

- 연중 실시일정, 시료채취 방법, 세부 판정절차 등 세부시행계획 노동부 보고·협의 후 확정, 시행(1월)

- 심사 결과 안전인증 취소 사유 발생시 지방노동관서 보고하여 행정조치 의뢰

담당 : 안전보건지도과 5급 김용원, 7급 서상훈 ☎ 02-6922- 0943,0940

## 나. 우수 제조업체 양성 및 불량업체 지도·감독

### ① 사업내용

#### □ 제조업체 제품 안전설계 능력향상(안전공단)

- 기종별 안전인증 기술상담 사례집, 인증기준 해설서 개발·보급(상반기)
  - '09~'10년도 주요 문의·상담 사례 중심으로 제작
- 안전인증 대상품 제조자 집체교육 추진(지역본부별 1회)
  - 주요 부적합 사례, 개선방안 교육 및 인증기준 관련 질의응답
- 안전인증 우수사례 발굴·보급을 위한 발표대회 개최(6월)
  - 제품 안전성능·편의성 개선 사례(제조자) 및 심사기법, 장비 개발·활용 우수사례(인증기관) 발표 및 전파
- 영세소규모 사업장 대상 기술능력·생산체계 시스템 구축현장 기술지원
  - 1/4분기 영세 제조업체 교육 실시 및 홍보로 사업신청 접수 ⇒ 심사 ⇒ 업체 선정(50개소)
    - ※ 업체 선정방법 및 세부 사업수행 계획은 별도 시달

#### □ 미인증·미신고품 제조·유통·사용 방지(지방관서·공단 지도원)

- 미인증·미신고품 생산·유통 방지를 위한 해당 제조업체 특별점검
- 종전 제도에 의한 방호장치·보호구 특별수거 실시(8월)
  - ※ 세부시행계획은 별도시달 예정

담당 : 안전보건지도과 5급 김용원, 7급 서상훈 ☎ 02-6922- 0943,0940

## 다. 방호장치 · 보호구 유관단체 협력 강화

### ① 사업내용

#### 추진사항

- 방호장치 · 보호구 유관단체 협의회 운영
- 취약품목 제조자 간담회, 우수제품 포상, 유통업체 집체교육 등 실시

#### 방법

- 공단-방호장치 · 보호구 유관단체 협의회 운영
  - 대상 : (사)한국보호구협회, 한국안전보호구협회, (사)안전장치기술협회
  - 주기 : 반기별 1회
  - 주요 논의사항 : 불량 보호구 합동 감시활동 추진방안, 방호장치 · 보호구 산업발전을 위한 주체별 과제 부여 및 정책건의, 인증기준 개정 의견수렴

### ② 기관별 역할

#### 노동부 본부

- 방호장치 · 보호구 안전인증제도 전환 추이 · 부적합률 모니터링
  - 안전인증제도 전환 추이를 특별점검 범위 결정에 반영
- 공단 주관 유관단체 협의회 · 취약품목 제조자 간담회 참석, 정책방향 설명 및 제도 발전 방향 의견수렴

#### 안전공단(본부, 지역본부)

- 방호장치 · 보호구 유관단체 협의회 운영(분기별 1회)



- 산업발전방안 논의 및 과제 부여, 제도개선 노동부 건의
- 불량 방호장치·보호구 근절 및 보호구의 올바른 착용을 위한 캠페인 합동 전개(5월)
- 부적합률이 높은 취약품목에 대한 사업주 간담회 실시 (품목당 반기별 1회)
  - 주요 부적합 요인, 품질관리 능력 향상 방안 교육, 품질향상을 위한 주의노력 촉구
    - ※ '09년 및 '10년 안전인증 실적상 부적합률이 높은 주요 품목 대상 개최
- 우수 방호장치·보호구 제조·보급 활성화를 위한 품질대상 개최(심사6월, 시상7월)
  - ※ 대상: 1개, 재해예방 혁신상: 1개, 최우수상: 4개, 우수상: 4개
- 유통업체 대상 집체교육 실시
  - 대상 : 보호구 판매상 대표·종사자
  - 시기·지역 : 경인지역 3월, 영남지역 5월
  - 교육내용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보호구의 중요성, 미인증·불량제품 식별 요령 등
- 기술 취약 사업장 지원 강화(지역본부·지도원)
  - 사업장별 전담자 지정, 기술상담·방문지도 등 지속적 기술지원

담당 : 안전보건지도과 5급 김용원, 7급 서상훈 ☎ 02-6922- 0943,0940

### 3-2. 안전검사 제도 정착 및 내실화

#### 가. 안전검사 수검율 제고

##### ① 사업개요

###### ○ 목 적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12종에 대하여 사용단계 안전검사를 통하여 안전성 확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

###### ○ 기본방향

- 사업장 신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검사 실시, 검사기준에 따른 합격/불합격 판정
-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지방관서 보고 및 지방관서 행정조치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 업무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위탁기관	위탁업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종 안전검사(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검사를 제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사)대한산업안전협회	12종 안전검사
(재)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압력용기, 화학설비·건조설비의 안전검사
(사)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	12종 안전검사

##### ② '10년도 목표

- 검사 대상품 약 15.2만대(20인 이상: 약 10만대, 20인 미만 약 5.2만대)

※ '09년 17만대 검사 수행(총 대상 대비 80%)하였으나 '10년에는 작업환경실태조사를 기초로 미수검 사업장 Zero를 목표

##### ③ 기관별 역할

<노동부 본부>

- 안전검사·자율검사프로그램 제도 운영실적 모니터링

○ 안전검사 기준 개정 추진('10.하반기)

※ 사용중 검사 특성에 적합하고, 기준의 객관성·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 추진

○ '11년 안전검사 제도 운영 방안 확정('10.12월)

- '09~'10년 안전검사·자율검사프로그램 실적 및 시장현황을 분석, '11년이후 제도 운영 방안 마련

※ 안전검사·자율검사프로그램 균형적 발전방안, 공단·민간검사기관의 업무영역 재설정 등

<지방노동관서>

○ 안전검사 불합격 사실 보고시 사용중지 및 재검사 독려

- 감독관집무규정 및 '09년도 안전검사불합격품처리지침에 따라 불합격품 조치

○ 각종 지도·점검시 안전검사 합격여부(합격필증 부착여부) 확인 및 사업장 대상 교육시 안전검사 제도 안내

<안전공단>

○ 20인 미만 사업장 안전검사 실시

○ '10년 안전검사 주기도래 사업장에 검사신청 안내문 발송

○ 월별·기종별·기관별 안전검사 실적 집계 및 통계 관리

<민간검사기관>

○ 불합격 판정시 재검사일정, 태그부착 현장 사진, 상세 설비 내역 첨부하여 지방관서 보고 및 사업장 대상 신속한 개선 및 재검사 독려

- '09년도 안전검사불합격품처리지침에 따라 조치

담당 : 안전보건지도과 5급 김용원, 7급 서상훈 ☎ 02-6922- 0943,0940

## 나. 안전검사 미수검 사업장 조치강화

### ① 사업내용

#### <방 법>

- '09년 작업환경실태조사 결과 및 검사실시 실적을 대조, 미수검품 보유 사업장 명단 파악
- 최초 검사시기를 도과한 사업장에 안전검사 미수검 사실 의견조회 후 안전검사기관 안내 및 검사 수검 명령
- 수검명령 불응 사업장 사용중지명령 등 의법조치
- 각종 지도·점검시 안전검사 대상품 수검여부 확인, 행정조치
  - 소규모 사업장 사고성 재해예방 집중관리 기술지원시 파악된 미수검품 통계 관리

#### 《 안전검사 미수검품 처리 절차 》

검사 미수검품 조사·통보 (본부, 안전공단)	'09 작업환경실태조사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작성 (각 지방관서에 미수검 사업장 통보)
↓	
사실확인, 의견조회 (지방노동관서)	사업장에 사실확인(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조회) (각 사업장에 사실 의견조회 및 안전검사 수검안내)
↓	
실제 미수검사업장 파악 (지방노동관서, 검사기관)	1차 의견조회후 실제 미수검 사업장 파악 (즉시 사용중지명령서 발부 및 안전검사 수검 명령)
↓	
안전검사 (사업주⇒안전검사기관)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안전검사기관에 검사 신청 (공단에서 안전검사 실시사업장 데이터 분석 및 관리)
↓	
지방관서 보고 (안전검사기관⇒지방 관서)	안전검사 실시후 합격사실을 지방관서에 보고 (각 지방관서는 사용중지 명령 중 사용여부 모니터링)
↓	
합격시 사용중지 해제 (지방노동관서)	안전검사기관에 문서접수후 즉시 명령해제

### <추진일정>

- '09년 작업환경실태조사 분석결과 시달('09. 12월말)
- 각 지방관서 별 의견조회 공문발송(~1월) 및 행정조치(~2월)
- 각 안전검사기관 검사실시후 지방관서에 보고

### ② 기관별 역할

#### <노동부 본부>

- '09년 안전검사 미수검품 조치절차 작성·시달('09. 12월말)

#### <지방노동관서>

- 안전검사 미수검품 조치절차에 따라 사업장 공문발송 및 행정 조치 실시
- 각종 지도·점검 시 안전검사 대상품 수검여부(합격필증 부착 여부) 확인 및 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조치

#### <안전검사기관>

- 각 지방노동관서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안전검사 미수검품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검사업무 수행
  - 지방노동관서에서 안전검사 수검명령을 받은 대상(사용중지 명령 발부 상태)부터 우선 선정하여 검사 실시
  - 안전검사 수행후 관련 규정에 따른 합격/불합격 처리(불합격의 경우 반드시 지방노동관서에 보고)
- (공단 지도원) 소규모 사업장 사고성 재해예방 집중관리 기술 지원시 파악된(공단·대행기관) 미수검품 내역 관리 및 직접 검사수행 또는 민간검사기관에 미수검품 내역 통보

담당 : 안전보건지도과 5급 김용원, 7급 서상훈 ☎ 02-6922- 0943,0940

## 다. 소규모 사업장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

### ① 목표 : 26,000대

### ② 추진방법

- 20인 미만 안전검사 대상품 보유 사업장 검사수수료 지원
  - ※ '09년도 지원조건에 준하여 지원하되, 기 지원 사업장은 제외
- 20인 미만 사업장당 수수료 및 출장비 20만원 한도 내 지원
- '09년 작업환경실태조사 결과를 참고,공단지도원·민간검사기관 지회별 20인 미만 사업장 검사수행 목표 설정
  - ※ 계약방식, 예산 소진 이후 공단·민간검사기관 검사수행 방법 등 세부시행계획은 별도 수립·시달
- 자율검사프로그램 신청 예상 사업장 홍보·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 구축 지원
  - ※ (예시) 자율안전관리 능력이 있는 근로자수 100인 이상 사업장

### ③ 일정

-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사업 계약체결('09.12월), 사업수행(~11월)
- 자율검사프로그램 사업 설명회 계획 수립(1월), 실시(~3월)

### ④ 기관별 역할

#### <지방노동관서>

- 영세·소규모 사업장 대상 사업주 교육(1~2월)
  - ※ 안전공단과 협의하여 사업장 대상 확정후 교육 실시
-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예정 사업장 대상으로 교육 실시
  - ※ 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사업 수행

<안전공단(본부·지역본부(지도원))>

- 안전검사기관과 수수료지원 사업 계약 체결
  - 민간검사기관 희망물량 및 검사수행인력 고려
- 월별 수수료지원 실적 모니터링 및 사업수행 독려
-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철강업종 등 대기업 중심 자율검사 프로그램 사업설명회 개최(총6회)
  - ※ 울산·여수·대산지구 석유화학 단지, 포항·창원 등 철강·기계·자동차 업종 밀집지역 업체 대상
  - 중점 대상업종(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철강) 밀집 지역 중심으로 사업장 전담지원 수행 지역본부(지도원) 선정

담당 : 안전보건지도과 5급 김용원, 7급 서상훈 ☎ 02-6922- 0943,0940

### 3-3. 인증·검사 위탁기관 업무능력 향상 및 관리강화

#### 가. 업무역량 강화 및 표준화 추진

##### ① 사업개요

###### <목 적>

- 민간검사기관 업무 수행능력 향상 및 기관간 업무표준화를 통한 안전검사 업무의 신뢰성·공정성 제고

###### <기본방향>

- 민간검사기관 검사원에 대하여 공단 주관의 기종별 체계화된 기본 직무교육 및 판정표준화 교육 실시
- 검사원 자격기준 마련·시행 및 수행가능업무 차등화
  - ※ 안전검사기관의 법적 인력기준과 별도로 국가자격, 검사업무 경력, 교육실적 등을 기준으로 한 검사원 자격(등급별)을 마련·시행

##### ② 사업내용

###### <방 법>

- 공단 교육원의 검사원 양성교육 과정을 활용, 민간검사기관 검사원을 대상으로 기종별 기본이론 및 실습사례 중심 교육 실시
  - ※ 6개 과정 개설, 기계·기구 기본이론, 장비활용법, 검사실습 교육
- 안전인증실 주관 검사판정 표준화 토론회·교육 실시
  - ※ 현장 검사수행시 현행 안전검사기준(노동부고시)만으로 통일된 판정이 곤란한 주요 사례에 대한 세부 판정기준 마련

상반기 (4월)	하반기 (9월)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압력용기, 화학설비, 건조설비	프레스, 전단기, 사출성형기, 원심기, 로울러기, 국소배기장치



- (대상) 각 검사기관별 기종담당자 1인 이상
- 주요 불합격 사례 위주로 토론 실시 및 표준화된 판정 기준 도출, 안전검사기준 개정 필요사항 정리·건의
- 논의 결과를 취합하여 세부 판정기준 매뉴얼 개발
- 검사원 대상 집체교육 실시: 2회 (5월, 10월)
  - (대상) 각 검사기관 지부책임자 및 지부별 기종담당자 1인 이상
  - 집체교육 참석자는 소속 지부 검사원에 대한 전과교육 실시
- 검사기관 합동 스터디그룹 운영
  - 지역별 소그룹 구성, 기술기준 및 검사기법 적용·개발 등 연구과제 선정 및 토의
    - ※ 인터넷 커뮤니티 기반으로 운영하고 필요시 Off-line 회의 병행
- 검사원 자격 기준 마련
  - 실무 경력, 교육 실적 등을 고려한 검사원 등급별 자격기준 마련 및 등급에 따라 수행가능한 업무범위 설정
    - ※ (예시) 1급 검사원: 콜리엇 크레인 검사 등 고도의 업무 수행
    - 2급 검사원: 단독 현장판정 수행
    - 3급 검사원: 1급 또는 2급 검사원과 동행검사 및 지휘 판정 수행
  - 매년 일정 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율 자격유지 요건으로 부가

### <추진일정>

- 민간검사기관의 검사원 양성교육 수요 확정 및 교육 인원 배정·신청방법 등 행정사항 교육원과 협의('09.12월)
- 교육일정에 따른 교육수강(2월~11월)

- 공단 안전인증실 판정표준화 교육 시행방안 수립(2월) 및 실시(상반기, 하반기 1회)
- 검사원 자격기준에 대한 노동부·검사기관 협의 및 기준 확정, 검사기관 업무처리규칙에 반영(1월)

### ③ 기관별 역할

#### <노동부 본부>

- 검사기관의 검사원 자격 기준 협의 및 검사기관 업무처리규칙 개정 승인
- 민간검사기관 자체교육 계획 검토 및 보완 협의
  - ※ 교육내용·시간,참여인원 적정성 검토 및 기관간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 민간검사기관의 공단 주관 교육 참여 실적, 자체 교육계획 적정성 및 실적을 평가하여 '10년도 기관평가에 반영

#### <공 단>

- 검사원 양성교육 수요 조사·확정 및 행정사항 협의
- 판정표준화 토론 및 교육 주관
  - 민간검사기관 대상 토의사항 수집 및 표준화 토론 개최
  - 표준화 토론 결과를 토대로 세부 판정기준 매뉴얼 개발
  - 세부 판정기준 매뉴얼을 주교재로 활용, 검사원 집체교육 실시
- 검사기관 스터디그룹 구성·운영 계획 수립

담당 : 안전보건지도과 5급 김용원, 7급 서상훈 ☎ 02-6922- 0943,0940

## 나. 인증·검사기관 관리 강화

### ① 사업개요

#### <목 적>

- 민간 인증·검사기관의 업무수행 및 기관운영 관리 강화를 통해 업무수행의 공정성, 신뢰성 제고

#### <기본방향>

- 안전검사기관 소속 지부에 대한 내부감시·통제기능 활성화 및 법정업무 수행 조직의 명확화
- 위탁기관 업무수행 실태점검 및 평가 실시
- 위탁기관 관리·감독의 법상 근거 마련
- 안전검사 수검안내 방식을 공단주관으로 개선하여, 검사기관간 중복홍보·과당경쟁 소지 차단

### ② 사업내용

- 민간검사기관 자체감사 강화
  - 감사 조직·인력이 미비한 기관은 확충
  - 소속 지부 대상 연 1회 이상 정기감사 계획 수립 및 감사실시
    - ※ '09.12 노동부 제출 「안전검사기관 향후 운영계획」에 따라 시행
- 민간검사기관 법정 업무 수행조직 명확화
  - 법정 검사업무와 기타 업무 수행조직을 분리하여 안전검사원은 안전검사 업무만을 전담
    - ※ '09.12 노동부 제출 「안전검사기관 향후 운영계획」에 따라 시행

○ 위탁기관 업무수행 실태점검

- (안전인증기관) 기술능력 · 생산체계 심사 및 확인심사 운영 실태 점검
- (안전검사기관) 노동부 지침 · 내부업무처리규칙 준수여부, 검사기준 · 수수료 기준 준수여부 등 점검
- 점검표에 따라 점검실시 후 규정 · 지침 위반사항 시정조치, 기관 간 업무수행 표준화 필요 사항은 업무처리규칙에 반영

③ 기관별 역할

<노동부 본부>

- 민간검사기관 자체감사 계획 검토 및 필요시 보완 협의
  - ※ 기본계획 검토 후 감사항목, 피드백 방안 등 우수사례 상호 벤치마킹
- 안전인증 · 안전검사기관 업무수행 실태점검
- 민간검사기관 평가
  - '09년 사업실적 근거로 시범평가 실시, 항목별 배점 등 조정
  - '10년도 평가지표 확정, 기관에 공지 및 10년도 평가실시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및 미흡한 평가항목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 징구
- 위탁기관 협의회 활성화 및 '11년도 운영예산 반영 추진
  - 기술기준 토의 및 기관간 우수사례 공유 · 교류 촉진 등 기능 확대를 통한 발전적 운영방안 공단과 협의
- 우수 위탁기관 및 심사 · 검사원 포상 검토
  - ※ '10년도 포상계획에 반영하여 장관 표창 등 추진

### <지방노동관서>

- 인증검사업무 담당자 지정, 분기 1회 위탁기관 협의회 참여
  - 위탁기관 업무수행시 애로사항 접수 및 민원사항 적극대응

### <공 단>

- 안전검사 신청안내문 발송
  - '10년 검사주기 도래 사업장에 대한 검사신청 안내문을 검사시점 30일전 공단 주관으로 발송
- 위탁기관 협의회 개최(간사기관)
  - '10년도 위탁기관 협의회 운영계획 수립
  - 업무표준화, 기술기준 검토·개발 및 제도정착·발전 방향 중심의 안전 선정 및 민간위탁기관에 관련과제 부여
  - 기관별 기관운영·업무수행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

담당 : 안전보건지도과 5급 김용원, 7급 서상훈 ☎ 02-6922- 0943,0940

## 4. 점검·감독 효과성 제고

### 4-1. 취약사업장 중심의 집중점검

#### ① 사업목적

- 재해발생 위험성이 큰 산재취약 사업장 집중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

#### ② 사업내용

##### <기본방향>

- 재해다발 사업장,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장, 개선의지가 없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대상 선정
  - ※ 점검·감독은 상시근로자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3억원)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 단, 동 규모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대 재해나 중대 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기술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 기술지원 거부 사업장 등은 포함
- 전국 공통으로 실시하는 필수점검과 지방 특성을 고려한 지방관서별 자체점검으로 구분
  - 필수점검 : 안전관리 인식 및 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전국적으로 같은 시기에 실시

#### 【 필수점검사업 】

- ★ 건설현장 취약시기 일제점검
  - 해빙기(2.16~3.12), 장마철(6.1~6.25), 동절기(11.22~12.17)
- ★ 건설안전 패트롤 점검
- ★ 대형사고 재발방지 특별점검
- ★ 보건관리실태 일제점검(3월)
- ★ 노동부·검찰 합동점검(5~6월)
- ★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일제점검(5~8월)
- ★ 석면해체·제거작업현장 일제점검(3월, 7월)
- ★ 3대 다발재해 기술지원사업장 집중점검(4월 이후 연중)
- ★ 산재취약근로자 고용사업장 점검
  - 비정규직 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점검
  - 외국인 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점검
  - 고령근로자 재해다발 사업장 지도·점검

- 자체점검 : 사업장 점검 수요와 지역여건 등 특성을 감안, 지방관서 자율적으로 수립·시행

<b>【 자체점검사업(예시) 】</b>
★ 지자체 환경미화원 재해예방 점검
★ 타워크레인 사용사업장 점검
★ 석면함유제품 불법제조·수입·사용 등 점검
★ 유해인자의 허용기준 준수여부 점검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예방 점검
★ 건강진단 미 실시 사업장 지도점검
★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 지도점검
★ 병원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점검
★ 서서일하는 근로자 재해예방점검
★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 일제점검(필수점검 제외 시기)

※ 지방관서별 자체계획 수립·시행

- 점검은 사업별 목적에 맞도록 착안사항 위주로 실시하되, 그 밖의 위험요인에 대한 법 위반여부도 모두 점검하는 통합점검으로 실시
- '09년에 이어 '10년에도 주요 법 위반사항에 대한 즉시 사법 처리 지속 시행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사업장의 추락 위험방지 미 조치 (3대 취약시기 일제점검, 검찰 합동점검 사업장에 한함)
    - ※ 추락의 방지(안전규칙 제439조),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제440조)
  -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 제조·금속가공업의 협착재해 위험방지 미 조치
    - ※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방지(안전규칙 제32조), 기계의 동력 차단 장치(제33조)
  -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장
    - ※ 점검일 직전 2년간 동일 공정의 동일 기계·기구 등에 같은 안전·보건상의 조치 위반(관련문서 2009. 2. 16(안전보건지도과 - 546) 참조)
- 작업중지 등 행정적 제재수단 적극 활용
  - 안전·보건조치 미비로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등 재해 위험성이 큰 사업장은 안전보건진단 등을 통해 그 원인을 파악, 개선될 때까지 해당 작업을 중지

- 위험기계 등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후 불이행 사업장 작업중지
- 시정명령 불응에 대한 단계적 제재 강화
  - ※ 시정조치→사용·작업중지→사법처리(과태료조항 위반은 과태료 부과)
  - ※ 불입 작업중지명령 조치기준(예시) 참조

### <세부 추진사항>

- 지방관서별 지역 여건에 맞는 '10년도 산업안전보건 분야 사업장 점검 총량을 설정
  - ※ 점검목표 : 지방관서간 형평성을 감안, 산업안전감독관 1인당 연간 80개소 이상 실시
- 균형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안전과 산업보건 분야별 점검량을 배분
  - ※ 산업안전과 보건을 고려, 분야별 적정한 점검비율 유지
  - ※ 안전분야 점검은 건설업과 건설업외 업종에서 특정업종에 점검이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점검총량에서 점검비율을 설정)
- '10년 업무추진지침 및 지방관서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시 점검대상 사업 및 점검량 설정
  - 본부에서 제시한 분야별·업종별 목표량을 배분하되, 사업별 점검량은 지역여건을 감안, 자율적으로 결정
- 점검계획에 필수점검은 반드시 포함, 자체점검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되,
  - 비정규직, 외국인 등 취약계층과 안전보건 취약사업장 근로자 우선 보호취지를 감안
- 아래의 점검대상 선정 및 제외기준을 참조, 점검사업 목적에 맞는 점검대상을 선정토록 노력



점검대상 선정 및 제외기준	
선정기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업재해 다발 또는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상위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신고사건이 제기된 사업장(사건조사에서 법 위반 없이 특정 목적을 위한 신고사건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
	신규 사업장으로 재해위험이 높은 사업장(건설 등)
	최근 2년간 분진을 포함한 화학적인자로 인한 직업병유소견자(D1) 1명 이상 발생 사업장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미 실시 사업장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이 노출기준치 초과 사업장
	측정결과 허용기준 대상물질이 노출기준의 0.5배 이상 초과사업장
	측정결과 허용기준 대상물질이 노출기준의 0.5배 초과 사업장
	산업안전공단의 재정·기술지원 사업 수행 중 개선의 노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통보받은 사업장
제외기준	최근 1년간 점검·감독을 실시한 사업장 (건설업은 3개월)
	산재예방을 위한 재정 및 기술지원 신청 또는 진행 중인 사업장
	클린사업장 인증 사업장으로서 사후 확인이 진행 중인 사업장

○ 점검시기 및 방법

- 대상 사업장 수, 취약시기, 점검 목표 등을 고려하여 특정 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적기에 효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간 점검일정 수립
- ※ 점검시기 : 연말 등 특정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분기 또는 월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점검내용

- 아래 착안사항(예시)을 참고, 내실 있는 점검 실시

필수 및 자체점검 시 착안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재해 5대 위험작업 안전관리 조치상태</li> <li>○ '09.1.1 시행되는 안전검사 대상의 검사 실시여부</li> <li>○ 건강검진결과에 따른 근로자 사후관리조치 이행여부</li> <li>○ MSDS 작성 게시, 비치 및 교육실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물질 경고표지에 대한 GHS 이행 여부</li> </ul> </li> <l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실태(건설업)</li> <li>○ 근로자 면담을 통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확인</li> <li>○ 건축물 철거현장의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조치기준 준수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재해 5대 위험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 기타 동력기계 취급 작업,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 천장크레인 취급 작업, 지게차 운전 작업, 설비내부 작업</li> <li>· 건설업 : 건물외벽작업, 크레인 자재 인양작업, 전기취급 또는 인근작업, 철골구조 설치작업, 굴삭기 관련 작업</li> </ul> </li> </ul> </li> </ul>

- 점검반 구성
  - 산업안전감독관 2인 1조로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관서의 여건, 사업장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의 지원을 받아 실시
- 지방노동관서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지원조치(안전공단 본부, 지도원)

#### <제도개선(본부)>

- (개선내용) 과태료 범 조항 위반 즉시 과태료 부과
- (개선방안)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시행령 별표 13)
  - 현행 시행령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횟수별로 차등화(1~3단계)
  - 2년의 기준기간을 두고 동일 범조항 위반에 따른 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 즉시 부과
  - 집무규정 중 시행령과 배치되는 과태료 부과사항 정비 (시행령 개정 후 정비 추진)
- (개선시기) '10년 상반기 중

담당 : 안전보건지도과 5급 여인형, 6급 신우승 ☎ 02-6922- 0947,0934

<참고>

<급박한 유해·위험 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중지 명령의 조치 기준**

1. 일반기준

□ 관련 법령

-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법 제51조 제6항에 따른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법 제51조 제7항)

※ 법 제51조 제6항 : 노동부장관은 공단 소속직원의 검사 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건설물 또는 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의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음

-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는 경우(시행규칙 제135조)
  - ① 감독결과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 또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② 시행규칙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한 때
  - ③ 유해·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 때

□ 판단기준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현존하는 위험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편·타당한 관행**이나 **근거** 등에 의하여 **감독현장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위 권한은 근로감독관에게 부과된 권한으로 동 권한의 재량남용이 제기될 수 있음을 감안, 객관적 기준과 근거에 의하여 판단하고 관련자료 입증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함

## □ 작업중지 명령 방법

- 붙임 「사용·작업중지 명령서」에 의해 현장에서 선 명령, 후 결재

## □ 작업중지 명령의 해제

- 개선 후 작업중지 명령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개선여부는 현장 확인을 원칙으로 함 (관련사진 등에 의하여 개선을 입증할 수 있음이 명확한 경우 제외)

※ 작업중지 대상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 즉시 해제조치

## 2.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예시)

### □ 안전 분야

-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으로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과 낙하물에 의한 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시설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 불량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토사, 구축물, 공작물 등의 변형 또는 변위 발생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 우려가 높은 경우
- 화학물질 취급공정에서 부속설비 고장, 변형 등으로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 화학공장의 반응기, 보일러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파열판 등 방호장치 기능을 해제하여 폭발·화재 등의 사고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 크레인에 의한 중량물 취급 작업의 안전조치 불량, 적재물의 편중으로 인한 협착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 굴삭기 등 건설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면허나 자격 없이 운전하는 등 불량한 작업으로 인한 전락 등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 습한 장소에서 바닥에 전선이 훼손·방치된 상태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등 전기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 □ 보건 분야

- 맨홀 등 밀폐공간에 대한 작업 전 환기조치, 산소농도 측정, 출입제한 등의 사전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산소 결핍 등에 의한 질식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관리대상 물질이나 허용기준 대상물질 등 유해물질에 대해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 밀폐 설비 또는 국소배기 장치를 하지 않아 동 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
- 금지 또는 허가대상 물질을 사전 승인이나 허가 없이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하거나, 허가받은 물질에 대한 규정을 준수치 않아 동 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
- 석면해체·제거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당해 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
  - 석면조사 없이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해체
  - 건축물 철거·해체과정의 작업기준 미 준수
  - 미 등록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한 해체·제거작업
  - 건축물 등을 철거·해체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초과작업장에 대한 개선조치 없이 작업 등

## 4-2.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직무능력 강화

### ① 사업목적

- 집체교육, 사이버교육, 지방청 및 지방관서별 감독관 교육 수요에 맞는 과정을 개설,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전문성 향상을 통한 직무능력 제고

### ② 사업내용

#### □ 기본방향

- 교육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 집체교육, 사이버 교육, 지방청 교육, 지방관서 교육

#### 【'09년도 산업안전보건 분야 교육 계획 및 주관 부서】

- ◇ 본부 집체교육 및 사이버 교육 : 본부 '10 교육훈련계획 반영 예정
  - 본부 집체교육(총 31개 과정, 67회)은 신규과정 1개 과정(1회, 10일 내외), 기본과정 8개 과정(10회, 2박3일 또는 3박 4일), 전문과정 21개 과정(56회, 2박3일)
  - 사이버 6개 과정(1개월 과정, 교육시간 20시간)은 **과정 당 연 2회 운영**
- ◇ 청 자체교육 연 2회 내외 : 청별 자체계획 수립·시행
- ◇ 초임감독관 현장직무교육(OJT) : 지방관서 자체계획 수립·시행 ○

- 산업안전보건관련 교육이수 의무화(감독관집무규정 제5조)
  - ※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받아야 할 연간 교육시간의 40%(60시간 중 24시간) 이상을 산업안전보건 분야 교육으로 이수
- 단계별(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및 이수 의무화
  - 산업안전실무경력 1년 미만은 산업안전보건기본과정
  - 산업안전실무경력 1년 이상은 기본과정
  - 산업안전실무경력 3년 이상은 전문과정
    - ※ 모든 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 분야 집체교육을 1회 이상 이수

- 안전보건관련 교육 강사에 대한 혜택 부여(본부)
  - 실무경험이 풍부한 감독관을 강사로 활용, 내실 있는 교안작성 및 강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강사에 혜택 부여
    - ※ 본부 집체교육 및 청 자체교육 강의 1시간당 기관평가지 당해 감독관 연간 근무시간에서 2주, OJT 기간동안 멘토(선임감독관)는 2개월 제외
    - ※ 본부 집체교육 강의 1시간당 2시간 교육인정, 강의교재 작성시 과목당 30시간 교육인정
- 업무 연계형 감독관 교육체계 구축(본부)
  - '10년 본부 주관 집체교육 과정을 세분화하고 현장업무중심의 체험·실습 형태의 교육 비중을 점차 확대
- 감독관 강사의 혜택 이행 철저(지방관서)
  - OJT, 본부 집체교육 및 청 자체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멘토 및 강사에 부여되는 점검·감독 면제 등 혜택 이행 철저
  - 지방관서는 부여된 혜택에 부합하여 강사가 교육준비 및 이행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교재작성 시간 등을 적극 지원
    - ※ 현장 직무교육을 위해 점검·감독, 재해조사, 신고사건 처리, 과태료 부과, PKMS 등의 매뉴얼을 마련, 보급 예정

#### □ 직무교육 내용, 이수사항

-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본부 주관 집체교육을 연 1개 과정 이상 이수하되, 단계별 교육과정 이수 의무화
  - 산업안전경력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은 신규 과정, 경력1~3년 미만은 기본과정, 경력 3년 이상은 전문과정
- 사이버교육 과정 교육기회 확대
  - 교육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과정별 교육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 과정별 연간 교육기회를 2회로 확대 시행('10.3)

○ 현장직무교육(OJT)의 내실화

- 경력 1년 미만 초임 감독관에 대해 산업안전과장과 경험이 풍부한 선임감독관을 지정, 3개월간 교육 실시
  - 이론은 과장, 동행점검은 경험 있는 감독관이 수행
- 선임감독관은 초임감독관의 사업장 점검·감독 및 재해조사 등 현장업무 수행에 동행
- 각종 계획수립·시행, 통계 확보·관리 등 기능업무와 출장 복명·시정지시 등 사무실내 업무에 대해 과장 주관 시행, 선임감독관이 과장을 보좌, 수시로 지도·확인
- OJT 계획수립 및 변경, 종료 즉시 본부 보고
  - ※ OJT 계획수립·시행, 보고서 작성 및 참여자 인센티브 부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 시달한 “현장직무교육(OJT) 추진지침 (안전보건지도과-1517, ‘08.7.3)” 참조

○ 지방청 교육의 내실화

- 지방청별 여건 등을 감안하여 년 2회 내외로 자체 교육 계획을 수립, 감독관을 대상으로 실시
- 교육내용은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 특정업종 또는 분야 등에 대하여 실무경험(체험) 사례와 주요 위반내용 및 점검·감독의 주요사항 등 실무 중심의 교육 실시
- 강사는 구속 등 수사경험이 있는 감독관, 산업안전보건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감독관(과장 포함)이 실시
  - ※ 집합교육 등에 포함된 일반 과목 등은 가급적 제외
- 자체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계획(시간·장소, 교육과목·시간 및 강사 등), 교육실시 후 그 결과를 본부 보고



※ 교육실시 10일전까지 교육계획을 본부로 제출, 타당성 협의 후 실시

※ 자체교육 계획수립, 교육실시 및 결과조치는 기 시달한 “지방청 자체교육 추진지침(안전보건지도과-1704, '08.7.14')에 준하여 시행

#### □ 평가방법 등 교육제도 개선(노동부, 안전공단 교육원)

##### <강사의 질제고 방안 추진>

- 강사인력풀 운영, 과목 당 3인 이상 강사 확보
- 강의기법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 강의 스킬 향상을 위한 사전교육 실시
- 수료자가 강의에 대한 문제점, 보완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강사에게 통보하는 강사 사후평가제 도입
- 강사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맞춤형 직무교육 실시>

- 수강자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그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직무교육 추진

##### <교육 수료자의 직무능력 향상도 측정>

- 교육수료 후 3개월 경과 후 업무적응도 조사·평가
- 평가를 통해 교육과 업무와의 연계정도, 업무적응성과 지식 수준 향상정도를 측정하고 문제점을 분석, 개선

담당 : 안전보건지도과 5급 여인형, 6급 신우승 ☎ 02-6922- 0947,0934

### 4-3. 중대재해 발생 대응체계 운영

#### ① 사업개요

##### □ 목 적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신속한 원인조사 및 법 위반 사항 제재, 결과전파 등을 통해 동종 재해 예방효과 극대화

##### □ 기본방향

- 중대재해 모니터링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 관련 전문가와 합동조사반 구성, 법 위반사항 제재 강화
- 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해 사고사례 전파

#### ② 사업내용

##### □ 추진사항

- 중대재해 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상황반 상시 가동
  - 관내 중대재해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2인 1조의 상황 대응체제 구축(상황반에 과장을 반드시 포함)
  - 소방서, 경찰 등과 즉시 대처할 수 있는 협조체제 유지
- 중대재해 발생 즉시 사고 원인조사, 법 위반여부 조사, 사후 조치 등을 위한 상황대응반 투입
- 2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 다수의 부상자를 동반하여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중대재해는 신속히 본부보고(1차 유선 등 가장 신속한 방법, 2차 동향보고 서식 활용)

##### □ 추진일정

- 중대재해 발생 즉시(수시)

### ③ 기관별 역할

#### □ 노동부 본부

- 24시간 사고대응 상황반 운영(초기 대응, 안전보건지도과 동향 담당)
- 초기 대응 후 관련 후속대책 등은 본부 소관 각과, 각계에서 추진

#### □ 지방노동관서

- 『위험상황신고전화』 (1588-3088) 및 산업안전과 대표 번호를 상시 가능한 상태로 유지
- 사고발생 모니터링 상황반 상시 운영, 사고시 현장에 즉각 투입
- 비상연락체제 상시 유지
- 중대재해 매뉴얼 숙지, 대응

#### □ 공단 본부

- 사고발생 시 원인조사 지원을 위한 비상연락체제 구축
- 신속한 원인조사 및 유사 업종에 동종 재해예방을 위한 사고 사례 전파
- 추가적인 피해예방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한 「피해복구 지원팀」 운영

#### □ 공단 지도원

- 지방관서의 지원요청에 즉각 투입을 위한 상시 연락체제 유지

담당 : 안전보건지도과 5급 여인형, 6급 신우승 ☎ 02-6922- 0947,0934

#### 4-4. 산재발생미보고 사례 방지(지방관서)

##### □ 조사방법 다양화

- 종전의 조사방법\* 외 각종 사업장 점검·감독 시 산재발생 미보고 여부에 대한 조사를 추가 실시

\*)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자 명단 조사, 산재요양신청서 반려 및 지연제출 건 조사, 119 구급대 출동내역 조사 등

##### □ 조사대상

- 최초 요양일 기준 4일 이상의 재해를 대상으로 하되,
  - 산재발생 미보고 사실 인지 당시 사업장의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범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재해는 제외
- 요양 4일 이상 28일 미만의 재해에 대해서는
  - 과거 산재발생 미보고가 다발한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미만인 건설현장(협력업체 포함)만을 대상으로 조사
- 요양 28일 이상 재해는 전 업종에 대하여 조사

##### □ 조치기준

- 1차 시정지시 대상
  - 사망재해를 제외한 요양 4일 이상의 재해 미보고
- 즉시 과태료 대상
  - 사망재해 → 사망재해 및 요양 84일 이상 재해
  - 최근 1년간 2회 이상 미보고 → 최근 1년간 요양 28일 이상 84일 미만 재해는 2회 이상, 요양 4일 이상 28일 미만 재해는 3회 이상 미보고

- 최근 3년 이내에 보고의무 위반으로 행·사법조치된 후 요양 4일 이상의 재해를 재차 미보고 → 최근 3년 이내에 보고의무 위반으로 행·사법조치된 후 요양 28일 이상의 재해를 재차 미보고
- 수개의 산재 미보고 건을 동시 발견한 경우 조치방법
  - 동시에 적발된 산재 미보고건을 각각 별개의 건으로 간주하여 조치

**【적용 예】**

- 2010.8.1 조사시점에서 ‘2008.1.1 미보고건, 2009.9.1 미보고건, 2010.2.1 미보고건’ 총 3건을 적발한 경우
  - ⇒ 2008.1.1 건에 대해서는 범죄인지 후 사법처리, 2009.9.1 건과 2010.2.1 건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1,000만원씩 부과(노동부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매뉴얼 참조)

- 1건으로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산업재해를 미보고한 경우는 1건의 미보고로 간주하여 조치

**□ 산재발생 기록·유지의무 이행여부 확인 철저(지방관서)**

- 사업장에 대한 각종 지도·점검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 원인 등 기록유지 의무 이행여부에 대하여 확인

※ 산업재해발생 기록은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생시점으로부터 즉시(지체없이) 기록하여야 함

담당 : 안전보건정책과 4.5급 김영규, 7급 윤현욱, 전문위원 이현숙  
☎ 02-6922-0912, 0920, 0921

#### 4-5. 산재발생 원인조사 실시(공단)

□ 목적 : 일반재해 및 업무상 질병에 대한 발생원인과 경위 등을 파악, 분석하여 재해예방대책 수립시 참고

□ 대상 : 요양 1개월 이상 사고성 재해와 응급치료를 동반한 업무상 질병

※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무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제외

#### □ 방법

○ 안전공단 본부에서 사고성 재해, 중독성 질병, 작업관련성 질환으로 구분하여 조사표를 개발, 지역본부·지도원에 배포

※ 신속한 조사와 재해조사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 방지를 위해 가급적 조사항목을 필요최소한으로 제한(조사내용 : 근로자 직종, 근무연수, 작업종류 및 방법, 취급 기계·기구 및 화학물질, 재해발생전 작업 또는 행동내용, 재해발생 기인물, 재해유형 등)

- 안전공단 조사통계팀에서 각 지역본부·지도원에 조사대상 재해 및 업무상 질병을 매월 말일까지 통보

- 안전공단 지역본부·지도원에서는 통보 익월 말일까지 각종 기술지원 및 법정 위탁사업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안전공단 본부(안전기술국, 산업보건국)에 통보

- 조사결과를 매분기 단위로 취합, 분석하여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 각과,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 안전공단 지역본부·지도원 및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에 배포(인터넷 메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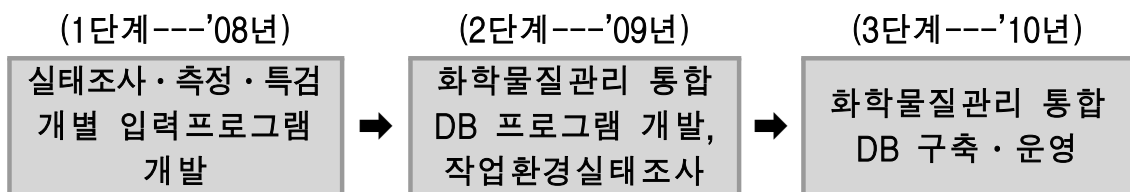
담당 : 안전보건정책과 4·5급 김영규, 전문위원 이현숙 ☎ 02-6922-0912, 0921

## 5. 화학물질 관리 및 주요 직업병 예방

### 5-1. 화학물질관리 통합 DB 구축·운영

#### □ 사업개요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누락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지도·감독사업 추진을 위해 작업환경 실태조사·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결과의 화학물질 정보를 연계하여 화학물질관리 통합 DB 구축·운영
- 기초데이터를 생성하는 개별 DB 프로그램 및 화학물질 정보를 연결하는 통합 DB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사누리 및 PKMS에서 활용



#### □ 추진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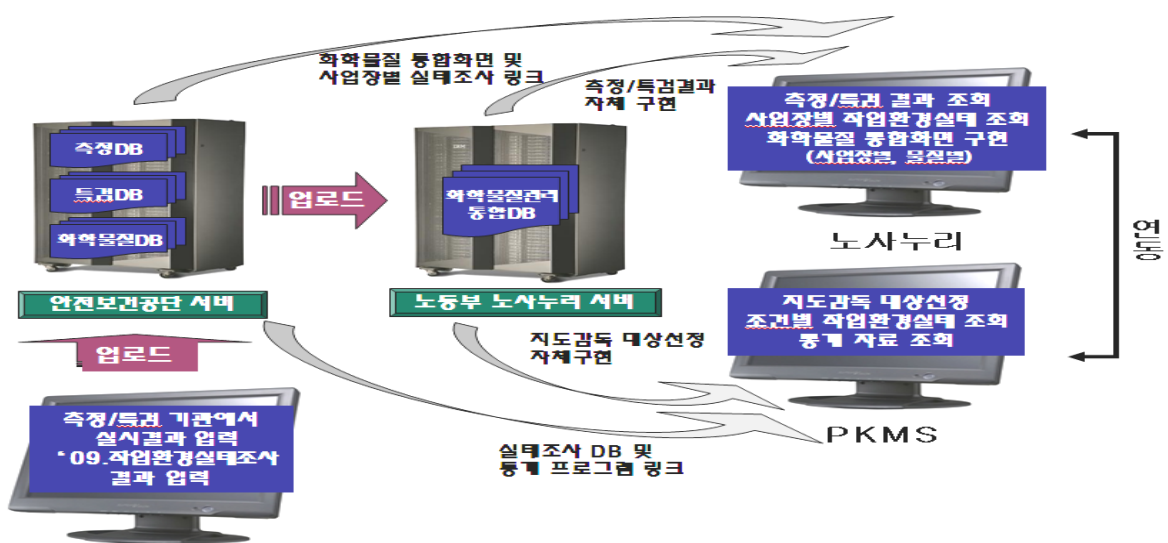
#### 《공단》

- 화학물질관리 통합 DB 구축('10)
  - 측정·특검기관으로부터 측정·특검결과 전산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받아 통합 DB 구축
- 화학물질관리 통합 검색 프로그램 보완('10.3월~12월)
  - 반기별 간담회(5월, 10월) 및 메일 등을 통해 지방관서 감독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 사용시의 문제점을 수시 보완
- 화학물질관리 통합 통계프로그램 개발('10.3~10월)

- 화학물질별 · 규모별 · 업종별 취급현황, 측정 · 특검 실시현황, 노출기준 초과현황, 유소견자 발생현황 등 화학물질 정보를 연계한 통계가 산출되도록 프로그램 개발(공단에서 용역으로 추진)
- 공단 지역본부/지도원 지도요원 및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 감독관(보건담당)에게 작업환경 실태조사 · 작업환경측정 · 특수건강진단결과 개별 검색 프로그램과 화학물질관리 통합 검색 프로그램 사용방법 교육('10.2월초)
- 6개 지방청 순회교육 세부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사용매뉴얼 작성('10.1월)

### 《지방관서》

- 검색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화학물질 관련 각종 사업대상 선정 및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 파악 · 지도
  - ※ 화학물질별 취급현황 검색 : 다우리 - PKMS - 작업환경 실태조사 실태조사 · 측정 · 특검을 연계한 검색 : 다우리 - 노사누리 - 보건환경 - 화학물질목록
- 기초자료 확보 및 최신화를 위해 작업환경측정 · 특수건강진단 기관이 신속히 전산자료를 공단에 제출토록 지도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기관 점검시 독려



담당 : 근로자건강보호과 5급 김대유, 6급 김진숙 ☎ 02-6922-0953



## 5-2. 급성중독성 직업병 유발물질 취급사업장 기술지원

### ① 사업개요

- 10대 급성중독성 물질 중 매년 3종씩 타깃 물질을 선정하여 '12년까지 집중 기술지원함으로써 급성중독사고를 예방
- 화학물질별 주요 3대 공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단 기술지도 및 거부사업장에 대한 노동부 점검 실시

### ② 추진내용 및 방법

#### 《공단》

#### □ 대상

- '10년 타깃 물질 3종(TCE, DMF, MEK)의 각 주요 3대 공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50개소

#### <대상 선정기준>

- \* 10대 급성중독성 화학물질 : 직업병 발생 여부, 유해성 수준, 노출용이성(휘발성)
- \* 물질별 주요 3대 공정 : 노출실태(노출기준 대비 평균 노출농도), 취급 근로자수, 사용량
- \* 취급사업장 : 물질별 주요 3대 공정을 1개 이상 보유한 사업장
- \* 기술지도 대상 : 취급사업장 중 노출기준 초과 여부, 취급근로자수 순으로 선정  
· 물질별 공정을 중심으로 기술지원이 이루어지므로 기존('09.톨루엔) 기술지원대상과 중복되더라도 선정

#### □ 기간 : '10.3월 ~ 11월

#### □ 내용

- TCE, DMF, MEK 취급공정에서의 화학물질 노출평가
- 작업설비 및 환기설비에 대한 관리방법
- 보호구 착용 등 취급근로자 관리방안
- 유해·위험성 교육 및 MSDS 이행
- 해당 화학물질 및 공정에 대한 각종 보건관리 안내자료 배포 및 정보 이용방법 등

□ 방법

<1> 사업안내

- 대상사업장에 사업목적, 선정사유, 사업내용 및 기술지원을 위한 방문시 협조사항 등에 대한 안내공문 발송
- 사전연락을 통해 사업장의 정상가동 여부 등 기술지도 여건 확인 및 담당자 파악

<2> 기술지원 실시

- 물질별 주요 공정의 기술지도 가이드를 활용, 해당 물질과 공정에 집중하여 기술지원하고, 특히 해당 공정의 근로자들의 유해성 인지에 초점
- 공단 지도요원이 1개소당 연간 2~3회 방문 기술지원(개선방법은 근로자의 작업방법, 작업장 관리, 시설관리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원)
- 대상사업장별 전담 지도요원을 지정하여 밀착관리
  - 대상사업장의 측정·특검 및 직업병 발생현황을 수시 모니터링 하고, 화학물질 중독 초기증상자에 대한 연락망 유지

<3> 기술지원 거부사업장 조치

- 기술지원 거부사업장은 지방관서에 통보하고 대상사업장 대체

<4> 기술지원 성과평가

- 업종별·규모별 노·사 만족도 조사(50개소)
  - 기술지원 방식, 내용, 방문인력 등에 대한 만족도와 유해성 인지도 향상여부 및 작업환경 개선여부 등
- 기술지원 실시과정 및 실적에 대한 평가
  - 목표설정·대상선정 및 물량배정, 기술지원 실적, 개선실적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지방관서》

- 공단으로부터 기술지원 거부사업장 통보시 지도·감독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

담당 : 근로자건강보호과 5급 김대유, 6급 김진숙 ☎ 02-6922-0953

### 5-3. 유해인자의 허용기준 준수여부 점검

#### ① 사업개요

- 허용기준 설정 유해인자 13종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준수하도록 지도·점검

※ ①납 및 그 무기화합물 ②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③디메틸포름아미드 ④벤젠 ⑤2-브로모프로판 ⑥석면 ⑦6가크롬 화합물 ⑧이황화탄소 ⑨카드뮴 및 그 화합물 ⑩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⑪트리클로로에틸렌 ⑫포름알데히드 ⑬노말헥산

#### ② 추진내용 및 방법

##### 《지방관서, 공단》

##### 대상

- 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인자 13종의 노출수준이 허용기준의 0.5배 이상인 사업장 중 다수의 유해인자 취급 여부 및 노출수준을 감안하여 대상사업장 선정

※ 허용기준 0.5배 이상('08년 기준)인 사업장 명단(609개소)은 본부에서 일괄 시달

##### 시기 : '10.상반기

##### 내용 및 방법

##### <1> 대상선정

- 본부에서 일괄 시달된 명단 중 우선순위별로 대상 선정
  - 관할 지역본부/지도원의 측정 가능인력 및 공단 연구원의 분석능력을 감안하여 물량 결정

## <2> 사업안내

- 점검목적, 점검시기 및 점검방법 등에 대해 안내공문을 발송

## <3> 점검실시

- 유해인자의 노출농도를 불시측정
  - 시료 샘플은 공단 지역본부/지도원에서 연구원에 분석 의뢰

## <4> 점검결과 조치

- 지방관서에서는 연구원으로부터 분석결과를 통보받아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 초과 유해인자에 대하여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설비의 개선 등 작업환경 개선 지시 병행

담당 : 근로자건강보호과 5급 김대유, 6급 김진숙 ☎ 02-6922-0953

## 5-4. 화학물질 분류·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 이행 지도

### ① 사업개요

- '10.7.1.부터 단일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 전면시행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GHS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화학물질 제조·수입·사용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교육, 간담회 및 홍보를 통한 이행지도

### ② 추진내용 및 방법

#### 《공단》

#### □ 화학물질 수입·취급업체에 대한 GHS 교육 실시

-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 2,000여개소 대상('10.3~5월)
  - 지역본부/지도원별 2회 이상 실시(1회당 50여명, 3시간)
  - GHS 적용 매뉴얼을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유해·위험성 분류 및 경고표지 작성 프로그램 시연 등 안내
- 여수·울산·대산 석유화학단지 및 대규모 도료 제조업체 대상 간담회 실시('10.3월, 연구원 대전화학물질센터 주관)
  - 단일물질에 대한 GHS 조기적용 지도 및 분류정보 공유
- 화학물질 취급업체 담당자 및 보건전문기관 지도요원 대상 GHS 전문교육과정 운영('10.3~11월, 교육원)
  - 연중 총 6회 실시(2일 16시간, 1회당 30명)
  - 유해·위험성 분류 및 경고표지 작성 프로그램 실습 등

□ 소규모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GHS 이행지원

- 50인 미만 직업병예방 기술지원사업 수행 시 공단 정보망의 GHS 설명자료, 교육자료 및 경고표지 작성 프로그램 활용 방법 등 안내('10.3~10월, 보건관리 국고지원 수행기관)

□ GHS 홍보활동

- GHS 안내 리플릿 제작·배포('10.1~10월)
  - '10.1월 중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화학물질 취급업체 지도·점검, 직업병예방 기술지원 등의 사업 추진시 배포(50,000부)
-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10.3~8월)
  - 신문광고 및 기획기사 게재(일간지 및 안전신문, 5~6월)
  - 공단 40개소 전광판 홍보(1일 10회, 총 72,000회, 3~8월)

《지방관서》

□ 단일물질 제조업체에 대한 GHS 이행 점검

- “화학물질 취급업체 예방점검” 대상으로 단일물질 제조업체 (213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GHS 이행 여부 점검('10.7~11월)
  -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등 집무규정에 의거 조치

담당 : 근로자건강보호과 5급 김대유, 6급 김진숙 ☎ 02-6922-0953

## 5-5.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 예방대책 추진

### 《본부》

- 환경부·행안부와 협조체제 강화 추진
  - 상하수도 관련 지자체 평가시 밀폐공간질식재해 예방실적 반영 (환경부)
  - 지자체와 지방노동관서간 밀폐공간 현장 정보교류 강화(행안부)

### 《지방관서》

-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 예방점검 실시('10.5~8월)
  - 사업대상 : 공단의 밀폐공간작업 보유사업장 DB(19,900개소), 지자체 발주현황을 수시 조회하여 선정
    - ※ 지자체와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질식재해 우려가 높은 현장을 5~8월중 집중 파악, 선정 및 점검
  - 추진내용·방법 : 밀폐공간 보건작업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환기 조치, 출입 인원 점검, 출입금지 표지, 연락체계 유지, 송기 마스크 지급·착용 및 산소·가스농도 측정여부 등 조치 여부를 중점 확인
    - ※ 공단 기술지원 대상사업장과 달리하고, 공단의 지원을 받아 실시

### 《공단》

- 밀폐공간 보유사업장 DB 정비
- 질식재해예방 기술자료 신규 개발·보급
  - 맨홀작업, 저장탱크 및 반응기 내부작업, 오·폐수처리장 탱크내부 작업, 황화수소 중독 위험작업 등 분류하여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조치 요령 수록
  - 밀폐공간 보유사업장 19,900개소에 보급
- 교육지원 및 홍보 : TV, 라디오, 주요 일간지, 인터넷, 전문지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및 전문 공사업체 홍보자료 보급

담당 : 근로자건강보호과 4.5급 신인재, 6급 구자환 ☎ 02-6922-0952

## 6.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활동 강화

### 6-1. 석면 관리 인프라의 현장 작동성 제고

#### ① 사업개요

-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작업 시 필수장비 사양을 마련하는 등 석면작업관련 인프라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

#### ② 추진내용 및 방법

##### 《본부, 공단》

- 제도운영실태 파악 및 개선대책 수립('10.1~3월)
  -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석면해체·제거작업 종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워크숍 개최
-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전성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TF 구성·운영('10.3~11월)
  -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 절차, 공표방법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
    - ※ '11년부터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성 평가 실시
-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작업을 위한 장비사양 마련('10. 상반기)
  - 기존 연구용역 자료, KOSHA CODE를 통해 음압기, 음압측정기, HEPA 필터 등 장비사양 초안을 마련한 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고시 또는 지침 제정 준비
- 석면 해체·제거작업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을 위한 「석면 체험교육장」 설치·운영 : 수도권내 1개소(연중)
- 석면 해체·제거작업현장 기술지원 실시(연중, 4,455개소)



- 신고대상 미만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 등에 대해 공단 전문가 또는 민간전문가가 현장을 방문, 기술지원 및 자료제공
- 석면조사기관의 분석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석면분석정도관리를 실시('10. 하반기)
- 석면조사기관과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

### 《지방관서》

- 석면조사기관 지도점검 실시
  - 본부의 점검계획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의 업무 처리 적정성, 조사기관의 인력, 장비 보유현황 및 조사업무 수행 시 법규 준수여부 등 확인
    - ※ 본부 점검계획은 추후 시달('10. 상반기)
- 석면해체·제거업체 지도·점검 실시
  - '09.8월중에 등록한 석면 해체·제거업체(440여 개소)는 상반기, 나머지 업체(560여개소)는 하반기에 집중 점검 실시
    - ※ 세부 점검계획은 추후 시달('10.2월)
  - 등록 요건 및 등록한 사항의 위반여부 등에 대해 시행규칙 별표20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
  - 신고사건 또는 석면해체작업 현장 점검결과 등록업체의 법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업체등록을 한 지방관서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 등록업체 점검시 반영

담당 : 근로자건강보호과 5급 김광석, 전문위원 한인영 ☎ 02-6922-0958

## 6-2.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불법석면작업 차단

### ① 사업개요

- 합동점검, 정보공유 등 지자체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불법 석면작업의 방지 및 효율적 관리
- 서울시와 석면관리에 대한 협력방안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10년 상반기에 전국 확대

### ② 추진내용 및 방법

#### 《지방관서》

##### ○ 주민감시단을 활용하여 석면작업 불법행위 차단

-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감시단을 적극 활용하여 석면 해체·제거 현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

※ 주민감시단은 불법작업현장 적발 시 현장의 감리자 또는 관할구청에 신고(단, 불법사례 중 긴급 상황 발생시는 노동관서로 즉시 신고)  
→ 감리자, 관할구청 담당자는 현장확인을 통해 불법사례를 노동관서로 통보

-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실여부를 확인, 위법사항 적발 시 행·사법 조치

##### ○ 석면 해체·제거현장 합동점검

- 근로감독관과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감독권한은 없지만 건축공사에 대해 전반적인 감독권이 있는 서울시(구청) 담당자와 합동점검을 통해 감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
- 재건축 등 대규모 철거현장의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 여부에 대하여 합동점검 실시(분기별)

○ 석면관리 관련정보 공유

- 지자체에 대해 건축물 멸실 신고 시 첨부하는 「석면조사 결과서」를 우리부에 통보하도록 요청하고, 지방관서는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내용을 지자체에 제공

※ 지자체로부터 석면조사 결과서를 자동으로 전송받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

○ 주민에 대한 “석면공사 정보” 제공(‘10.1~)

- 주민의 석면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사업주에게 석면 해체·제거 작업경계선상에 작업현황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토록 지도

- 우리부에 신고된 석면 해체·제거 현장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

※ 서울시는 작업 후 공기 중 농도측정 결과도 모두 인터넷에 공개

○ 지자체 석면담당자와 공사현장 감리자가 석면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공단과 지자체를 연계(‘10.3~6월)

《공단》

○ 지자체 석면담당자와 공사현장 감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석면교육 지원(‘10.3~6월)

- 석면담당자에 대해서는 공단 교육정보센터에서 기본적인 사항<sup>1)</sup>을 교육하고, 감리자는 민간교육기관<sup>2)</sup>을 통해 전문교육<sup>3)</sup>을 실시

※ 1) 석면의 유해성, 석면관련 법 규정 등 석면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0의3, 10의4 및 노동부 고시 제2009-31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비영리 법인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0의3, 10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면조사자 과정」 및 「석면해체·제거 관리자 과정」으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

담당 : 근로자건강보호과 5급 김광석, 전문위원 한인영 ☎ 02-6922-0958

### 6-3. 석면 해체·제거 현장 관리감독 강화

#### ① 사업개요

-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 시 현장 확인과 점검강화로 불법 석면 해체·제거작업 차단
- 불법·부실 석면 해체·제거 업체 근절
- 「석면 안전 강조의 달」 운영('10.7월)을 통하여 석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제고

#### ② 석면 해체·제거현장 점검

##### 《지방관서》

#### □ 점검대상

- 불법 석면 해체·제거가 예상되거나 석면분진 발생으로 민원 발생,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현장 및 대규모 재개발 현장 등을 우선점검 대상으로 선정

#### 【 우선점검 대상 선정기준 】

- 신고를 처음 한 업체가 작업하는 현장
- 과거 범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가 작업하는 현장
- 학교 및 지하철, 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과 대규모 재개발 현장
- 도급계약서상 석면 해체·제거 계약 단가가 낮게 이루어진 현장
- 지속적 민원 발생 현장
- 시민단체, 언론 등 문제 제기 현장
- 공단 등 기술지원 거부 현장

- 일제점검('10.3월, 7월) 및 수시점검(연중)시 우선점검 대상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을 점검하되
- 일제점검시 우선점검 선정대상이 없거나 점검물량이 부족한 지방관서는 지자체의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통보명단에서 임의선정

## □ 점검일정

- (일제점검) '10.3월에 전국 지방관서별로 우선점검 선정대상에 대한 점검실시(감독관당 3개소 이상)
  - ※ 「석면안전 강조의 달」 운영지침 시달에 따라 '10.7월 일제점검 예정
- (수시점검) 지방관서 자체점검계획에 따라 연중점검 실시

## □ 점검방법

-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과정에서의 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확인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단 지원을 받아 실시)
  - ※ 현장방문 점검시 방진마스크, 보호의 등 보호 장구 착용
- 학교 및 지하철, 관공서와 대규모 재개발 현장 등은 년초에 작업일정\* 등을 확인하고 석면해체·제거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사전안내
  - \* 시·도 교육청, 서울시 등 지자체 및 서울메트로(주) 등 본사 등에 '10년 석면해체제거 공사일정 등을 확인
  - ※ 절차 등 안내책자 ⇒ '09년 석면제도 개선 관계자 설명회 자료 참고 (공지 : 노동부 다우리-알림마당-본부시달-산업안전보건국)

## □ 주요 점검내용

- 공사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도급여부, 석면 해체·제거 적정 단가 설정여부
  - ※ 재하도급이 수차에 반복된 경우에는 작업기준 준수여부를 철저히 확인
- 석면 사전조사 및 석면 해체·제거 작업신고서 제출여부 및 신고서 제출내용과 일치여부
-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서 작성, 석면분진 방지대책 등 작업 기준 준수 여부 등
  - ※ 산업안전보건 통합점검표 활용(노동부 다우리-알림마당-본부시달-산업안전보건국 등재 자료)하되 석면해체제거 점검표를 추가로 활용

## □ 점검결과 조치

- 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하되, 석면 해체·제거 작업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등의 현장은 즉시 작업중지
- 등록된 업체는 관할지방관서로 위반사실 통보, 등록업체에 대한 점검시 반영

## 《공단 지도원》

-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신고서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지방관서 점검 지원
- 신고규모 미만의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 현장에 대한 기술지원
  - 기술지원 거부 또는 불법이 예상되는 현장은 지방관서에 즉시 통보

## ③ 석면안전 강조의 달 운영

### 《본부》

- 「석면 안전강조의 달」 세부운영 지침 시달('10.6월)
- 주요 일간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석면 안전강조의 달 홍보

### 《지방관서》

- '10.6월 본부지침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관내 언론기관 활용 등 석면제도에 대한 집중홍보 실시
  -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 해체·제거업자 간담회 실시
  - 석면 해체·제거 현장 일제점검(감독관별 2개소 이상) 실시

담당 : 근로자건강보호과 5급 이정인, 7급 연현석 ☎ 02-6922-0968,0959

## 6-4. 석면작업 일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호 강화

### 《본부, 공단》

- 석면해체·제거 작업 일용직 근로자들의 체계적 관리
  - 일용직 근로자들의 인적사항, 작업이력 등 기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DB관리 시스템 구축('10.1~3월)
    - ※ 우리부와 공단 전산망 현황을 우선 파악한 후 보안 및 통신의 효율성을 감안한 연계시스템 구축
- 사업장 소멸이 잦은 점을 감안하여 당시 동료근로자나 사업주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을 경우 근로자의 이력을 인정하는 방안 검토

### 《지방관서》

-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 접수 시 근로자 인적사항이 구축된 DB관리 시스템에 입력

### 《지방관서, 공단》

- 과거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일용직 근로자 파악('10. 상반기)
  - 지방노동관서 및 공단 지도원에 「석면취급 근로자 상담 창구」 설치 및 운영, 지역신문·방송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전개('10. 상반기)

담당 : 근로자건강보호과 5급 김광석, 전문위원 한인영 ☎ 02-6922-0958

## 6-5. 석면함유 건축물 보유 사업장 관리

### ① 사업개요

- 석면이 함유된 사업장 건축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리매뉴얼 보급 및 관리기법 지도 등에 대하여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석면지도 작성 유도 및 지도

### ② 추진내용 및 방법

#### 《본부》

- 석면함유 사업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되
  -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범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산재예방 유공자 포상 등 산업 안전보건관련 우수사업장 심사 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 《지방관서, 공단》

- 「석면함유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방법」을 50인 이상 사업장, 지자체 등에 보급('10. 상반기 18,000부)
  - ※ '09.12월 지방노동관서, 지자체,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2,000부 배포
- 사업주가 자율적 석면관리를 위해 석면함유 건축물관리 기술 지원(500개소) 및 석면지도 작성 유도('10.4~11월)
  - 석면함유 건축물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석면지도 작성방법 등 석면함유 건축물 관리기법 교육
    - ※ 사업장 규모에 따른 단계별 석면지도 작성 유도('10년 300인 이상, '11년 50~299인, '12년 50인 미만)

담당 : 근로자건강보호과 5급 김광석, 전문위원 한인영 ☎ 02-6922-0958



## 7. 근로자 건강진단 저변 확대

### 7-1.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 ① 사업개요

- 특수검진의 신뢰성 및 수검율 제고와 취약계층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소규모사업장에 대해 특수검진 비용 전액을 지원  
<목표인원 : 연인원 150,000명 >
- 추진방향
  - 특수검진 신규대상 사업장 발굴에 주력
  - 사업주 및 검진기관 참여를 유도

#### ② 추진내용 및 방법

##### 《본부》

- 공단에서 월별 추진실적을 보고토록 하고,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매월 초)
  - 분기별로 공단과 사업내실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 분기별로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을 수립하여 지방노동관서 및 공단에 시달(4월, 7월, 10월)

##### 《지방관서》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지도·감독 시 특수검진대상 사업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
- 본부에서 구축한 “화학물질관리 통합 검색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신규대상 사업장 발굴(매월)
  - 작업환경실태 일제조사 결과 구축된 유해인자 취급사업장과 특수검진 미실시 사업장을 대조하여 발굴
- 대상사업장에 대한 검진 독려 및 미실시시 과태료 부과
  - ※ 공단에서 통보한 특수검진 거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1회 특수검진 실시를 지도하고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 부과(수시)
- 본부에서 시달한 “사업추진 실적 및 대책”에 의거 조치사항 이행(4월, 7월, 10월)

## 《공단, 지도원》

### □ 지원방법

- 특수검진 대상근로자가 특수검진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실시
  - 특수검진기관에서 사업장에 검진결과를 통보하고 검진비용을 공단에 청구, 공단에서 검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 ※ 특수검진 대상자 : 177종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 추진사항

- 자체추진계획 수립(1월)
  - 공단 본부에서는 신규 대상사업장 발굴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도원을 통한 발굴방안 강구
  - 지도원에 지역별 형편에 맞게 목표량을 배분하여 금년에는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 공장밀집지역 산업단지공단 입주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기간을 정하여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내용 전파(1월~2월)
  - 산업단지공단 내에서 출장검진이 가능하도록 산업단지공단, 특수검진기관과 협의
- 신규로 발굴한 특수검진 대상사업장에서 검진을 거부시 관할 지방관서에 통보
- 노동부에서 시달한 “사업추진 실적 및 대책”에 의거 조치사항을 지도원에 전달(4월, 7월, 10월)
- 매월 추진실적을 익월 5일까지 노동부에 보고하고 매분기 사업내실화 간담회 참석 및 자료 준비

담당 : 근로자건강보호과 5급 차상호, 견습직원 양재연 ☎ 02-6922-0957, 0963

## 7-2.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기본정보 제공

### ① 사업개요

-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 기본정보에 대한 인식 향상 및 내국인 근로자와의 차별격차 해소를 위해 외국어로 번역된 안전보건 기본정보를 제공

### ② 추진내용 및 방법

#### 《본부》

#### □ 추진내용

- '10년 5개국어로 번역된 안전보건 기본정보를 제공
  - 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아어
  - ※ '11년 : 2개국어 추가, '12년 : 3개국어 추가
- 정보제공 내용
  - 건강진단 문진표, 보호구 사용방법, 요통예방, 산소결핍 재해 예방, 작업별 유해위험 요인과 안전작업 수칙

#### □ 추진방법

- 건강진단기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정보제공 내용안내 및 활용공문 발송(6월)
- 지방노동관서에 공문 발송(5월)
  - 관내 외국인고용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정보 제공내용을 안내 하도록 시달
- 보도자료 배포(6월말)

## 《지방관서》

- 본부에서 시달된 공문에 의거 관내 외국인고용사업장에 안전보건 기본정보 제공 안내 공문 발송(6월)
  -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에게 동 내용을 반드시 전달하여 안전보건 기본정보서비스가 활용되도록 조치
-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시 사업안내 및 활용지도(산업안전과, 근로개선지도과 : 하반기)

## 《공단》

- 건강진단 문진표 등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 기본정보를 5개국어로 번역(1월~5월)
  - 노동부 및 공단에 배너구축 완료 및 시험운영(6월)
- 노동부 및 공단 홈페이지에 제공된 안전보건 기본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7월~계속)

담당 : 근로자건강보호과 5급 차상호, 견습직원 양재연 ☎ 02-6922-0957, 0963

### 7-3. 특수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철저

#### 《본부》

- 특수검진기관에 대하여 검진결과 전산입력 자료를 안전공단에 즉시 송부토록 지도(3월)
- 특수검진 미실시 사업장 지도 및 유소견자 사후지도 대책 시달(7월)

#### 《지방관서》

- 특수검진 미실시 사업장 지도 강화
  - “화학물질관리 통합 검색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특수검진대상 미실시 사업장 발굴 및 검진 실시 지도
  - 작업환경실태 일제조사 결과 구축된 유해인자 취급사업장과 특수검진 사업장을 대조하여 미실시 사업장을 발굴
  - 미실시 사업장에 대하여 시정지시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특검비용지원사업 내용을 안내
    -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72조제3항(과태료 1,000만원 이하)
-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 철저
  - “화학물질관리 통합 검색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직업병유소견자 발생 사업장을 수시로 파악
  - 사후관리 소견에 따라 작업전환, 보호구착용 등의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 미 조치시 사법처리
    -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 및 같은 법 제69조(벌금 1,000만원 이하)
- 본부 “특수검진 미실시 사업장 및 유소견자 사후지도” 대책(7월 예정)에 의거 조치(8월~9월)

담당 : 근로자건강보호과 5급 차상호, 견습직원 양재연 ☎ 02-6922-0957, 0963

## 8. 근로자 건강증진 강화

### 8-1. 산업보건 국고지원사업 지원

#### ① 사업개요

- (보건관리대행 기술지원)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기관을 통해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작업환경개선 및 근로자 건강관리 체계 구축 지원
- (뇌심혈관계질환예방 기술지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보건관리자 선임 제외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기관의 지도요원을 통해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 ② 추진내용 및 방법

##### 《지방관서》

##### □ 대상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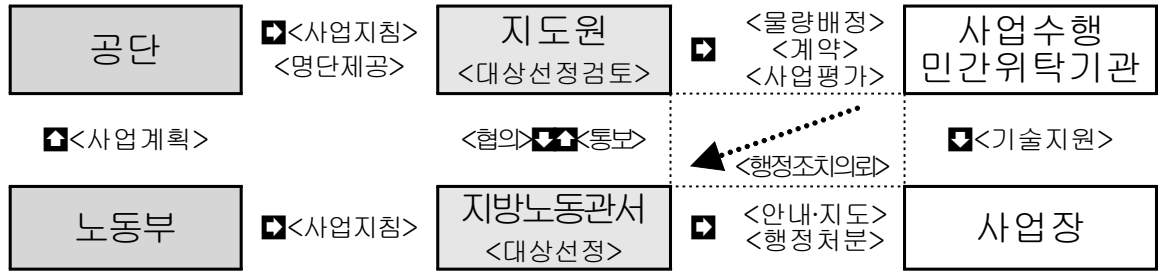
- 공단 본부에서 우선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배정하여 지도원에 시달하고 지도원에서 지방관서에 협조를 요청하면 지방관서에서 우선선정기준\*을 참조하여 지원대상 사업장을 최종 선정하여 지도원에 통보('10.1월)

##### \* 우선선정기준

<1> 보건관리대행 기술지원 : 화학물질중독 업무상질병 발생 →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가능) → 화학물질 다수 취급 → 비제조업 중 업무상질병 발생 우려 사업장

<2> 뇌심혈관계질환예방 기술지원 : 뇌심혈관계질환 발생 → 뇌심혈관 기초질환자 발생 → 고령자·외국인 근로자 다수 보유 → 근골격계 질환 발생

○ 업무추진흐름도



□ 사업안내

- 지원대상 사업장 선정 확정 후 10일 이내에 지방관서장 명의 공문 시행

□ 지원거부 사업장 조치

- 보건관리대행기관 등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지원거부 사업장이 보고될 경우 '10년 작업환경 불시점검 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수시 지도·점검 실시

《공단》

- 공단 본부는 지원가능 사업장을 지도원에 시달하고 지도원은 지방관서에 지원대상 확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10.1월)
- 지방관서로부터 지원대상이 통보되면 사업수행기관 용역계약 체결 등 사업추진 준비
  - 용역계약 체결 시 지원거부 사업장은 수시 지방관서에 통보하도록 주지
- 사업 수행기관 지도요원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10.1~2월)
- 월별/분기별 사업실적 및 수행기관 관리
- 사업수행기관 업무수행능력평가, 사업효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실시('10.6월, 11월)

담당 : 근로자건강보호과 4.5급 신인재, 6급 구자환 ☎ 02-6922-0952

## 8-2.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추진

### □ 정기유해요인조사 3차년도 실태조사(지방관서)

#### ○ 사업대상

- 5~49인 사업장 3,700여개소(건설업을 제외한 전체 사업장의 1%를 무작위 추출하여 표본조사)

※ 조사대상 사업장명단, 실태조사표 등 세부계획은 본부에서 추후 지방관서에 송부 예정

#### ○ 추진내용 및 방법

- 표본 추출한 조사대상 사업장에 실태조사표를 우편(또는 FAX)으로 발송하여 설문조사(1차)를 실시하고, 조사표 및 증빙자료 미제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2차) 실시

#### ○ 행정사항 : 실태조사(1차) 결과보고(6.15), 지도점검(2차) 결과 보고(10.15)

### □ 유해요인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자 교육 실시(지방관서, 공단)

#### ○ 사업대상 : 안전·보건관리자 등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는 자

#### ○ 추진목표 : 지방청당 300개 사업장

#### ○ 추진내용 및 방법 : 6개 지방청 주관으로 사업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여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실무 교육 실시 (공단은 교육내용 및 강사 협조)

※ 3차년도 유해요인조사 실시가 도래(10년)됨에 따라 유해요인조사 실시방법 및 작업환경개선 등 실무교육을 실시

#### ○ 행정사항 : 7.15일까지 실적보고

담당 : 근로자건강보호과 5급 김정연, 전문위원 박선아 ☎ 02-6922-0955, 0965



### 8-3. 서서 일하는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추진

#### ① '편의점' 본사 대상 간담회 개최(본부)

- 사업대상 : 8개 주요 편의점의 본사 사업주('10.3)
  - ※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세븐일레븐, 씨스페이스, GS25, 훼미리마트, OK마트, 조이마트
- 추진목표 : '10년말까지 의자비치 등 근로자 보호계획 수립하여 제출(※ 점검은 '11년이후 시행)
- 추진내용·방법 : 우리부의 정책방향 설명, 홍보 동영상 상영, 서비스업종의 의자비치 환경개선 사례 등을 알리고 정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

#### ② 서서 일하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지도·홍보(지방관서, 공단)

- 사업대상 :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 추진내용 및 방법
  - 지방관서에서 추진할 자체점검사업 및 지방관서 주관 각종 회의·세미나 시 교육·홍보
  - 공단 "유해공정 작업환경 재정지원사업"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기술지원 사업"시 서서일하는 근로자 건강보호지원(계속)
- 행정사항 : 9.30일까지 교육·홍보 실적 보고

#### ③ 「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작업관리 지침」 개발·보급(공단)

- 장시간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인간공학적 가이드라인, 작업관리 지침 등을 제시
  - ※ '09년 연구용역 "산재취약근로자 보건관리 기법 개발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

담당 : 근로자건강보호과 5급 김정연, 전문위원 박선아 ☎ 02-6922-0955, 0965

#### 8-4. 국민건강보험공단 협력사업 추진

##### 《공단》

#### □ 국민건강증진센터사업 연계를 통한 근로자 건강증진 지원사업

##### ○ 사업대상

- 안전공단 건강증진사업시 정밀체력측정(운동처방)사업을 추진한 사업장 소속 근로자

##### ○ 추진목표 : '10년도 시범사업으로 근로자 750명을 국민건강증진 센터 프로그램으로 연계

##### ○ 추진내용 및 방법

- 건강보험공단과 안전공단간 MOU 체결('10.1월중)
- 공단 건강증진사업시 정밀체력측정(운동처방)사업을 추진한 사업장에서 희망하는 근로자(유소견자 중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여 의사상담 및 운동·영양지도 등 사후관리 실시
- 공단은 사업장 간담회시 사업 안내를 통해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건강증진센터에 참여토록 하고, 연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원 및 지사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분기별 정기회의 개최

##### 《본부, 지방관서》

#### □ 건강보험공단과 검진 유소견자 사후관리 협력사업 시행

##### ○ 사업대상 :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국고사업 대상 제외) 중 검진결과 유소견자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

##### ○ 추진목표 : 1,780개 사업장(건보공단 지사당 10개소)

○ 추진내용 및 방법

- 선정된 사업장에 우리부 명의의 공문 발송(지방관서), 비협조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에서 유선으로 협조 독려
  - ※ 대상 사업장명단 등 세부계획은 본부에서 추후 지방관서에 송부
-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해당 사업장에 유선 접촉을 통해 사업 진행
  - 사업장에 방문상담, 문자·전화를 통한 원격상담, 보건교육 자료제공 등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사업실적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부에 분기별 보고하고, 사업 추진상 필요한 협력방안을 분기별 협의

담당 : 근로자건강보호과 5급 김정연, 전문위원 박선아 ☎ 02-6922-0955, 0965

## 8-5. 사업장 주치의 컨설팅 시범사업 추진

### ① 사업개요

- 사업장내 산업의학적 작업관련성 질병에 대한 질환관리체계가 미흡
  - 근로자에 대한 의학적 질병상담과 처치, 호흡기보호프로그램 · 발병위험도예방프로그램 등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의학적 평가와 지도가 필요하나,
  - “산업보건의” 제도는 임의규정으로 활용이 저조하고, 1,000인 이상 다수 근로자 사용사업장 192개소중 29개소에서만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
- 이에 따라 사업장내에서 작업관련성 질환의 의학적 서비스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0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사업장 주치의 컨설팅」 사업 추진
  - 산업의학전문의와 계약을 체결, 질병 유소견자 등에 대해 정기적 의료컨설팅 실시

### ② 추진내용 및 방법

#### 《공단》

#### □ 대상

- 1,000인 이상 사업장중 질병(일반질병 포함) 유소견자 · 요관찰자 다수발생 사업장\*(의사인 보건관리자가 있는 경우 제외)

\* '08년 일반 · 특수건강진단 결과 41개소 파악

※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업종 1,000인상 사업장은 192개소, 그 중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사업장은 29개소

□ 목표 : 30개소

□ 기간 : '10.3~12월

□ 내용 및 방법

- '08년 일반·특수건강진단 결과 질병 유소견(요관찰)자 다수 발생 사업장 41개소 중 컨설팅 대상사업장 선정('10.1월)
- 대상선정기준, 계약(안), 컨설팅프로세스 및 관리방법 등 시범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하여 시행('10.1월)
- 사업장에서 산업의학전문의 또는 관련경험이 풍부한 의사가 있는 병·의원, 대학 등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도('10.1월)
- 컨설팅 대상 사업장의 워크숍 등을 통하여 당해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 마련

※ 주치의 수행내용

- 근로자에게 질병관리와 건강증진에 대한 상담 실시
- 사업주에게 작업특성·유해인자·근로자 특성을 고려하여 의학적인 산업보건관리방안 제시
- 사업주와 보건관리자에게 산업의학적 자문 및 보건교육 실시

#### 《지방관서》

- 공단 지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범사업 대상사업장 선정과정에 적극 협조하여 사업장이 시범사업을 수용하도록 지도하고,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은 직업병 사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기간 내 산업보건분야 지도·점검을 면제

담당 : 근로자건강보호과 4.5급 신인재, 6급 구자환 ☎ 02-6922-0952

## 8-6. 하절기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관리 강화

### ① 폭염대비 취약사업장 지도 강화(지방관서, 공단)

#### ○ 사업대상

- 제철업, 주물업, 유리가공업 등 고열사업장, 조선·항만업, 건설현장 등 옥외사업장 등

#### ○ 추진내용 및 방법

- '10.6~8월중 실시되는 각종 사업장 점검·지원시 폭염 취약 작업에 대한 예방조치 준수여부 확인 및 지도
- 건설현장 등의 경우 폭염특보 발령시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휴식시간제(Heat Break) 운영지도

※ 세부내용은 본부에서 6월 중 지방관서 및 공단에 송부

#### ○ 행정사항 : 8.30일까지 점검·지원실적 보고

### ② 근로자 인식제고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

#### ○ 추진내용 및 방법

- 안전, 건설분야 각종 교육 및 간담회시 폭염 및 고열작업으로 인한 재해예방교육을 강화(지방관서, 공단)
- 폭염 등에 대한 경각심 인식제고 홍보를 위한 전광판 안내 및 라디오캠페인 등 실시(공단)

#### ○ 행정사항 : 8.30일까지 폭염 예방교육실적 보고

담당 : 근로자건강보호과 5급 김정연, 전문위원 박선아 ☎ 02-6922-0955

## 8-7. 진폐근로자의 보호 사업

### ① 사업개요

- 진폐제도 개선내용\* 시행을 위한 법령 및 관련 규정 개정

\* 진폐위로금 통합(장해위로금+유족위로금), 관리구분판정 대상에서 이직자 제외, 정밀건강진단자 휴업급여 지급기준 조정 및 건강검진 항목 조정 등

- 진폐법 적용사업장에 대한 진폐예방 강화
- 진폐건강진단기관의 건강검진 내실화

### ② 추진내용 및 방법

- 진폐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진폐법 하위규정 개정

#### 《본부》

- 진폐법 개정(안)\* 반영 및 진폐제도 개선내용 반영을 위한 진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추진(산재보험과)

\* 진폐위로금 통합(장해위로금+유족위로금 → 진폐재해위로금) 및 진폐관리구분판정 대상에서 이직자를 제외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진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09.9.25)하여 현재 계류 중

- 진폐법 시행령 개정내용 : 제1차·제2차 진폐건강진단기관 통합(제12조의5), 건강진단비용 지급근거 마련(제14조) 및 권한의 위임·위탁사항 수정(제16조) 등
- 진폐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 정기·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 검사대상 및 검사항목 조정(제14조) 및 법 개정에 따른 위로금 지급절차 등 반영(제40조~제42조)

- 진폐법령 개정에 따른 『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 규정』(고시 2009-1호) 개정

- 정밀건강진단 세부검사항목, 정밀검사 기간조정(5일→3일, 제9조의2), 건강진단부대비용 지급기준(제12조의2) 등 개정
- 입법절차에 따라 진폐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개정
  - 산재보험과 및 근로복지공단(산재의료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한 개정안 마련
  - ※ 진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산재보험과에서 수행

## □ 진폐법 적용사업장 점검

### 《지방관서》

- 점검대상
  - 진폐법 적용대상 8대광업\* 사업장 44개소
  - ※ 진폐법 적용대상 사업장을 노사누리에서 확인하여 점검대상에 포함 (노사누리/지도감독/데이터베이스 검색에서 업종검색)
  - \* 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 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 점검일정 : 지방관서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 중 실시
- 점검방법
  - 연초에 해당 사업장이 점검대상임을 공지하고 안전보건기준 등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안내
  - 감독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산안법 상 보건기준 및 진폐법상 기준준수 여부를 확인
  - ※ 특히, 석탄광업 사업장 중 협력업체 근로자의 건강검진 실시 및 보건기준 준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 주요 점검내용

- 「제조업 등 안전·보건 통합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하되
  -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실시여부, 진폐 근로자에 대한 취업제한·작업전환·근로시간단축·방진마스크 등 분진 예방 조치 이행 여부 및 진폐 교육 실시 여부를 중점점검
    - ※ 산업안전보건 통합점검표 활용(노동부 다우리-알림마당-본부 시달-산업안전보건국 등재자료)

○ 점검결과 조치

- 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하되 근로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진폐법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절차 등을 안내
- 점검내용 및 점검결과는 노사누리에 입력
  - ※ '10.3월부터 진폐법 적용 사업장의 점검결과를 노사누리에 입력할 수 있도록 노사누리 시스템 개발 중

□ 진폐건강진단기관 점검

- 점검대상 : 제1차·제2차 진폐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18개 기관)
- 점검일정 : 본부의 상세지침 시달('10.1월)에 따라 지방관서는 '10.2월에 실시
- 점검방법
  - 감독관, 근로복지공단 직원, 전문가\* 등 4인 1조로 점검반 구성
    - \* 안전보건공단 정도관리 담당 및 산재의료원 폐질환연구소 직원 포함
  - 점검반이 해당기관을 불시에 방문하여 본부에서 시달된 점검표에 따라 점검 실시

- 인력요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원을 직접 면담하여 실제 근무 여부 및 지정시 등록된 인원인지 확인
  - ※ 휴무중인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전화등을 통하여 인적사항, 근무내용 및 거주지 등을 확인
- 건강진단 실시내용과 건강진단비 지급내용의 대조를 통한 허위 건강진단 여부 및 불법 건강진단비 청구 등을 확인
- 건강진단기관이 보유한 장비의 보유수량, 작동상태 및 분석정도를 직접 확인
  - ※ 서류상으로만 확인하지 말고 실제로 작성되는 상태를 점검하고 가능하면 실제로 건강검진을 받는 인원에게 사용되는 지 확인

####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는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
  - 건강진단기관이 부정확한 방법에 의한 지정, 허위 건강진단 실시 등이 확인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 ※ 진폐법 시행규칙 제24조(별표 4)의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처벌
  - 건강진단결과 거짓작성 및 집계표 미제출 등 진폐법 제16조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집무규정(별표2)에 따라 조치
- 건강진단비 부당청구, 진폐관리구분판정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통보, 부당 청구금액 환수조치

#### 《본부》

- 진폐건강진단기관 점검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시달('10.1월)
- 점검진행사항 확인 및 점검시 공유가 필요한 사항은 지방관서에 내용전파를 통한 점검의 내실화

### 《지방노동관서》

- 본부의 세부점검계획에 따라 지방관서별 점검반 편성, 점검반 회의 개최를 통한 점검방법, 역할분담 등 점검 내실화 방안에 대한 사전협의 실시
- 점검결과에 대한 엄정한 조치 및 점검결과 보고
  - 점검 중 중요 부실사례 등이 발견되는 경우 타 관서 점검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본부로 수시 보고

### 《안전보건공단·근로복지공단》

- 점검인력 지원 및 점검에 필요한 자료(건강진단비 청구내역 및 정도관리 현황 등) 제공
-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 정도관리 재실시 또는 건강진단비 부당청구 등에 대한 회수 조치 등

담당 : 근로자건강보호과 5급 이정인, 7급 연현석 ☎ 02-6922-0968,0959

## 8-8. 사업장 보건관리 가이드라인 개발(직무스트레스, 고령 근로자 근골격계질환, 병원체)

### 《본부, 공단》

- 직무스트레스 예방 기반 마련을 위한 예방관리 매뉴얼 개발
  - 직무스트레스 고위험 업종·직업군인 3개 위험직종(운수업, 청소경비직, 음식서비스업)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매뉴얼 개발(상반기)
    - '09년 연구용역 “직무스트레스 고위험군 특성에 따른 매뉴얼 및 지원프로그램 개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
- 고령근로자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관리 지침 개발
  - 고령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건물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을 대상으로 보건관리자 등이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발(상반기)
    - '09년 연구용역 “산재취약근로자 보건관리 기법 개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
- 전염병 유행시 사업장 보건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 신종플루 등과 같은 유행성 전염병 발생시 업종에 따른 위험도 구분 및 당해 구분에 따른 관리방법의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사업주가 평상시 보건관리자를 통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 개발
    - '10년 연구용역 실시(상반기)하여 하반기 개발

담당 : 근로자건강보호과 5급 김정연, 전문위원 박선아 ☎ 02-6922-0955, 0965

## 9. 산업현장 안전보건문화 정착·확산

### 9-1. 노사 무재해운동 확산·지원

#### ① 추진방침

- 무재해운동 신규참여 사업장 확대를 위한 사업홍보 강화
- 무재해 목표달성 성공률 향상을 위한 “무재해 사업장 함께 만들기” 컨설팅 실시
-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캠페인을 실시

#### ② 사업물량

- 무재해운동 지원
  - 신규참여 지원 : 2,835개소, 무재해 인증 : 1,565개소
  - 무재해 사업장 함께 만들기 컨설팅(산업안전보건문화 인증) : 500개소
- 안전문화추진기법 개발·보급
  - 기계기구·설비별 유해·위험요인 점검표 개발 : 500종
  - 유해위험관리활동 운영 프로그램 개발 : 1종
  - 안전성향검사 응용 프로그램 개발 : 1종
-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캠페인 : 480회

#### ③ 주요 추진내용

-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홍보 실시
  - 사업장의 무재해운동 신규참여 안내공문 발송, 사업홍보물 개발 보급, EMS, 대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업체 참여 유도

- 「무재해 사업장 함께 만들기 컨설팅」 지원
  - 사업장 안전보건수준평가는 무재해 함께 만들기 참여 사업장과 자율개선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추진
  - 무재해 목표달성 조사 시 사업장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병행 실시하고 종합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수준별 무재해 인증
    - ※ 단, '10년도에는 사업장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되 사업장 홍보 부족으로 평가점수 적용유예
- 기계기구·설비별 유해·위험관리기법 개발·보급
  - 노사 자율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개선할 수 있는 유해·위험 점검표와 관리 매뉴얼을 개발·보급
  - 개발된 기법은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파일화하여 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On-Line 보급
    - ※ 1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계기구·작업공정별로 500종
- 노사 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안전성향검사 응용 프로그램 및 안전문화 콘텐츠 개발·보급
  - 개발된 안전의식지수 프로그램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On-Line 보급하고 개인별 안전의식 진단, 근로자 안전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 보완 실시
-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캠페인
  - 1社 1安全 지키기 운동 전개
  - 업종, 규모 등 안전점검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점검반을 구성하고 시범 안전점검 및 캠페인 실시

#### ④ 기관별 역할

##### □ 공단 본부

- 세부추진지침 수립·시달, 유해·위험관리 매뉴얼 개발
- 안전성향검사 응용 프로그램 및 안전문화 콘텐츠 개발·보급

##### □ 공단 지도원

- 안전보건컨설팅, 안전보건수준 평가 및 지원
-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캠페인

담당 : 안전보건정책과 5급 이삼근, 전문위원 박현진 ☎ 02-6922-0915, 0922

## 9-2. 예비산업인력의 안전의식 향상

### ① 추진방침

- 조기 안전보건교육을 통하여 성장기에 안전보건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 및 습관화를 유도
- 민간단체지원 사업과 연계, 사업공모 방식으로 추진

### ② 사업물량

- 초·중·고 교과과정에 안전보건 내용 확충 추진
- 안전보건 UCC Show : 1회
- 초·중·고 안전보건 글짓기 대회 : 1회
- 어린이 안전 동요제 : 8회(예선 7회, 본선 1회)
- 교사용 안전보건지도서 : 60종(민간단체 지원사업과 연계)

### ③ 사업내용

#### □ 학교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 초·중·고 교과과정에 재해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 등 안전보건 내용 확충을 교과부 협조를 받아 추진
- 유치원·초등학교 교사용 안전보건 지도서 제작·배포(60종)
  - 기 개발된 학교안전 교육용 교재와 연계, 안전교육 담당교사가 조기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 유도
    - ※ 안전공단·교원단체연합회 등과 공동협력사업 형태로 추진
  - 성장발달 단계별로 수준에 맞는 안전교육자료·프로그램 개발·보급
    - ※ 애니메이션, 동영상, 삽화, 사진 등이 포함된 PPT형태로 개발



- 안전교육담당 교사 연수 및 교육계 지도층 연찬회 개최
  - ※ 교육청과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교사 연수신청자 모집 절차 및 사업추진 행정절차 간소화

## □ 학교안전문화 콘텐츠 개발·운영

- 안전보건 UCC(User Created Contents) Show
  - 시행주체 공모형으로 전문대행사 선정하여 추진
  - UCC 공모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실시
    - ※ 공모대상 : 전 국민(청소년, 근로자, 일반시민)
  - 강조주간 행사시 UCC 공모 응모작중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해 현장심사를 통하여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
  - 우수작품을 대형 모니터를 통해 연속 상영하고 현장심사는 심사용 PC를 통해 검색해 보면서 심사할 수 있도록 배치
- 초·중·고 안전보건 글짓기 대회
  - 시행주체 공모형으로 전문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추진
  - 대상 : 초·중·고 재학생
  - 주제 : 산업안전보건
- 어린이 안전 동요제
  - 시행주체 공모형으로 전문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추진
  - 대상 : 초등학교 재학생
  - 참가분야
    - 어린이 안전을 주제로 한 동요

- 공단 보급 안전노래(안전의 약속, 안전송, 무재해는 좋아 등)
- 창작 외에 개사곡, 기성곡 참여 가능
- 참가 종목 : 중창 및 합창
- 예선(7회)
  - 전국 16개 시·도를 7개 권역으로 나눠 예선대회 개최
  - 예선 성적 상위 2개팀 본선 진출(총 14개팀)
- 본선(1회) : 강조주간 행사기간 중 본선 진출팀에 대하여 실시
- 쉽고 재미있게 안전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문화 웹사이트 구축 운영
- 안전담당 교사, 학생 등 수요자가 학교안전문화 콘텐츠를 쉽게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On-Line 개발 보급

#### 4] 기관별 역할

##### 노동부 본부

- 공단본부의 협조를 받아 초·중·고 교과과정에 안전보건 내용 확충을 위한 교과부 협의 추진

##### 공단 본부

- 세부추진지침 마련·추진
- 안전보건 UCC Show, 학교안전문화 웹사이트 구축 운영
- 초·중·고 안전보건 글짓기 대회, 어린이 안전동요제 본선 대회 개최

##### 공단 지도원

- 어린이 안전동요제 지역예선 개최

담당 : 안전보건정책과 5급 이삼근, 전문위원 박현진 ☎ 02-6922-0915, 0922

### 9-3. 민간단체와 연계한 안전문화운동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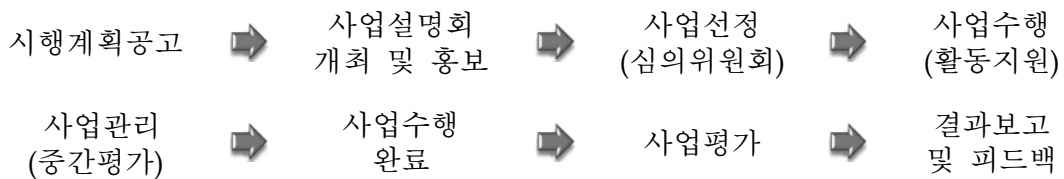
#### ① 추진방침

- 전국단위 추진사업은 안전공단 본부, 지역단위 추진사업은 해당 공단지도원에서 추진
- 민간단체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재해예방 사업을 개발하고 대상단체별 적합한 수행방식을 선택
- 선정 및 평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활용

#### ② 사업내용

##### □ 민간단체 산재예방사업 공모

- 사업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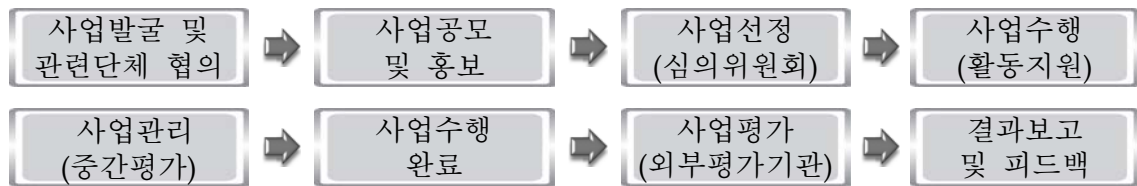
-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원해온 기존의 전국단위 사업으로 공단 본부에서 사업을 시행
  - 대상단체 : 안전보건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및 산업별연합단체 이상의 노동단체
  - 대상사업
    - 안전보건진단·기술지원, 교육·안전문화사업으로 하되, 취약계층 근로자 재해예방과 관련된 사업에 우선 지원
  - 사업추진방법
    - 공모한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후 사업을 선정,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추진실적에 대해 평가를 실시

□ 민간단체 안전보건활동지원

- 대상단체의 특성 및 기능을 고려,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

구분	공동 사업형	사업 공모형	시행주체 공모형
대상단체	지원자금의 직접 지원이 어려운 지자체 및 협의체	단독사업 수행 역량이 있고 자금이 이전이 가능한 NGO, 노·사단체 및 협회 등 법인단체	단독사업 수행 역량이 있고 자금이 이전이 가능한 NGO, 노·사단체 및 협회
공모방식	공동부담, 공동수행을 원칙으로 공모	자체개발한 사업을 단독 수행 원칙으로 공모	공단에서 개발한 사업 수행을 원칙으로 공모
자금지원	자부담 비용은 단체에서, 공단 지원금은 공단에서 집행	사업추진 시기별, 단계별 자금지원	사업추진 시기별, 단계별 자금지원

- 사업추진 절차



- 대상사업

- 캠페인, 결의대회, 간담회, 안전패트룰, 안전의식 고취사업
-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등

- 사업선정 및 평가

-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활용

③ 기관별 역할

□ 공단 본부

- 세부추진지침 마련·추진
- 민간단체 산재예방사업 공모·추진
- 일선기관의 사업추진 의견수렴·관리 등 지원체계 구축

□ 공단 지도원

- 민간단체 안전보건활동 지원·추진

## 9-4. 산업안전보건정책 홍보

### ① 추진방침

- 홍보매체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회계층별 차별화된 홍보 전략 추진
- 권역별 지역특성화 홍보 확대

### ② 사업내용

#### □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 TV 홍보(캠페인 3편 제작 120회 방송, 기획특집 12편 제작·방송)
  - TV 캠페인(40초물, 3편)은 양질의 콘텐츠 확보를 위해 영상물 전문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공모형식으로 추진
    - ※ 공중과 방송의 시청율이 높은 고정시간대를 확보하여 집중 방송 전개
  - TV 기획프로그램(15분물, 12편)은 KBS-2TV의 「위기탈출 넘버원」 프로그램 제작협찬을 통해 매월 산업안전보건편 제작·방송
    - ※ 방송물은 KBS와 저작권 협의를 통해 사업장 교육용으로 활용
- 신문광고 홍보(4편 제작 56회 광고)
  - 광고주제는 연중 홍보추진 주제별로 광고 문안을 제작
  - 광고는 일간지, 전문지, 무료지 등 고객별 선호매체를 중심으로 추진
    - ※ 광고문안은 제작 후 생활매체 홍보, 권역별 특성화 홍보 추진 시 활용
- 인터넷 캠페인(캠페인 : 4편)
  - 온라인 홍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온라인 홍보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 추진
  - 인지도가 높은 매체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략 수립·추진

- 안전공단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하여 고객유입 확대를 위한 정기적인 이벤트 추진
- 언론보도(기획특집 보도 : 20회, 기타언론보도 : 수시)
  - 연간 홍보추진 주제 등을 일간지, 전문지 등을 대상으로 기획특집 보도추진
  - 안전보건 주요정책 및 주요사업, 우수사례 등에 대한 인터뷰, 기고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한 언론보도 추진

권역별 지역특성화 홍보

- 사업추진기관 : 안전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 등 8개 기관
- 추진절차
  - 권역내 일선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공단 본부 승인을 거쳐 사업추진
- 추진방법
  - 홍보주제는 권역내 산재통계 등에 근거하여 지역별 산재감소 목표와 연계한 주제 선정
  - 권역별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내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 등과 공동 캠페인 형식으로 추진
  - 권역별 특성화 홍보추진 후 사업결과 및 홍보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사업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

**3** 기관별 역할

공단 본부

- 공단 세부추진지침 마련·시달

공단 지도원

- 권역별 지역특성화 홍보 추진

담당 : 안전보건정책과 5급 이삼근, 전문위원 박현진 ☎ 02-6922-0915, 0922

## 9-5. 노사 산업재해예방 활동 지원

- ① 목 적 : 사업장내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근로자들의 직접·적극적 참여 유도를 통하여 노사가 함께 책임지는 자율·협력적 산재예방체계를 구축

### ② 사업내용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활성화

##### ① 명예감독관 위촉확대 및 활동에 대한 지원(지방관서)

- 관내 명예감독관 위촉대상 사업장 중 미 위촉 사업장에 제도의 내용과 필요성 및 위촉 독려공문을 분기 1회 이상 발송하고 확인

※ 필요시 관내 노총 지역본부·산별연맹 등에 대하여 관내 사업장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명예감독관 위촉을 요청토록 협조요청 등 조치

- 명예감독관 지역협의회를 반드시 반기1회 이상 개최하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논의의제 등을 정하여 사전 통보

- 노사누리(PKMS)상의 명예감독관 현황관리 철저

※ 누락된 사외·사내명예감독관이 있는 경우에는 노사누리(PKMS)에 등록·관리하고, 사업장 소멸, 해촉요청 등으로 명예감독관이 해촉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

##### ② 명예감독관 전문성 제고(공단)

- 명예감독관 기초소양교육은 상반기중 실시하고, 전문화교육은 전년도 기초소양교육 이수자 및 전문교육이수자 중 희망자에 대하여 실시

- 명예감독관의 전문성 향상 및 업무지원을 위해 월간지 제작·보급 및 명예감독관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우수활동 유공자는 해외산업시찰 실시(1회), 명예감독관에게 흉장 및 안전모 제작·보급

○ 명예감독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험교육 실시

※ 관내 사업장 중 체험교육에 협조할 사업장을 선정하여 지역협의회 차원에서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체험교육에 협조한 사업장은 '10년도 지도점검 면제(중대재해발생 및 감독대상 사업장 제외)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내실화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지도(지방관서)

○ 각종 사업장 점검·감독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설치 대상사업장에 대해 동 위원회 설치·운영 여부 확인 철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우수 사업장을 적극 발굴, 관내 사업장에 전파

○ 안전공단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관상 수상 사업장에 대해서 향후 1년간 점검·감독 면제

※ 안전공단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우수사례에 대한 현장실사시 동 위원회 구성·운영의 적법성 및 사실여부를 확인 철저

○ 관내 건설업체 및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업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적극 홍보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활성화 지원(공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및 우수사례 전파(7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의 전문성 및 커뮤니케이션 기법 제고를 위한 교육·세미나 과정 개설·운영(연 4회)



□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 공표(본부, 지방관서, 공단)

- 목적 : 산업재해 다발, 중대재해 발생 등 안전보건관리가 불량한 사업장 명단 공표로 산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업주의 산재예방활동을 유인
- 공표시기 : 7월
- 공표방법 : 관보, 우리부 홈페이지 등

※ 세부시행지침 추후 시달

담당 : 안전보건정책과 5급 이삼근, 전문위원 박현진 ☎ 02-6922-0915, 0922

## 9-6. 산재예방행사 및 우수사업장 등 포상(본부·공단·지방관서)

### ① 제43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운영(본부·공단·지방관서)

#### <추진방향>

- ◆ 산업안전보건문화 확산을 위해 일반국민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기획
- ◆ 강조주간 행사의 취지 및 사회적 관심을 전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행사를 기획·운영

#### □ 산업안전보건문화 확산을 위해 참여형 강조주간 행사기획

##### ○ 고객 중심의 기념식 행사 운영 및 행사의 위상 제고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노·사·정의 책임과 역할, 화합과 협력을 다지는 공연을 기획, 노·사가 주체가 되는 행사 운영
- 강조주간 행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주도층과 외국 관련기관장 등의 행사참여 유도

##### ○ 일반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회 운영

- 당일 행사장을 찾은 학생·구직자·시민 등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 기획

※ 안전체험코너, 안전보건 UCC Show, 안전보건퀴즈대회, 안전동요제 등 일반인의 참여가 가능한 행사를 기획·운영

##### ○ 산업안전보건 관련분야 주요 이슈에 대한 공론의 장 제공

- 사회적 이슈가 되는 모토 및 주제를 선정, 토론 및 정보교류를 위한 기술세미나 등 개최
- 관련 학회, 협회 등의 정기 학술대회, 세미나, 워크샵 등을 강조주간 행사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 추진

## □ 안전보건문화의 지방확산을 위한 지역밀착형 행사 추진

- 수도권을 제외한 4개 권역(부산, 대구, 광주, 대전)별로 지역행사를 실시하여 안전보건문화의 지방확산 추진
  -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방청, 안전공단 등이 공동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행사를 기획·추진
  - 중앙에서 개최되는 강조주간 행사와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행사계획을 본부와 협의·조정
- 지방청별로 관내 사업장이 자체적인 산재예방활동 및 행사를 추진 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인센티브 제공 등 방안 마련
  - ※ 안전보건 관련 사내전시회, 세미나, 외부강사 초청 강연회, 영상 홍보자료 상영 등 다양한 활동 장려

## ② 산재예방유공자 포상(본부, 지방관서)

- 산재예방에 공적이 우수한 사업장 및 사업주·근로자, 안전보건관계자 및 민간단체 임직원 등 대상
- 지방관서별로 유공자를 추천하고, 본부에서 공적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자 확정
- '10.7.5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시 포상 전수
  - ※ 세부시행지침 추후 시달

## ③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포상(본부)

- 산재예방 업무수행 실적이 우수한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을 선발·포상하여 사기진작
- 지방관서 추천, 1차 지방청 심사, 청별 추천을 통한 본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확정
  - ※ 세부시행지침 추후 시달

④ 『제18회 안전경영대상』 시상(본부, 지방, 안전공단)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증진에 앞장선 사업장을 선정·포상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 활동을 장려하고 안전의식을 제고
- 노동부, 매일경제신문사 공동 주최
  - ※ 세부시행지침 추후 시달

담당 : 안전보건정책과 5급 지영철, 7급 윤현욱 ☎ 02-6922-0913, 0920



# 정책기획관실



= 목 차 =

1. '11년도 예산편성 .....	591
2. 재정집행의 효율화 .....	596
3.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	601
4. 대국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 .....	606
5. 국정감사 수감준비 .....	609
6. 당정협의 .....	610
7. 지방노동행정기관 기관평가 .....	612
8. 소송업무 .....	613
9. 행정심판업무 .....	618
10. 청문 등 행정절차제도 준수 .....	622
11. 노동부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운영 .....	625
12. 비상대비 업무 .....	627
12-1. 충무계획 수립·시행 .....	627
12-2. 을지연습 .....	629
12-3. 비상대비업무 확인·평가 .....	631
12-4. 비상대비 교육계획 .....	632
12-5. 직장민방위대 및 예비군 업무 .....	633





## 1. '11년도 예산편성

###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기획재정부)

- 수립근거 :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 수립기준
  -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
- 수립시기 :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 대상기간 : '10~'14년도

### 나. 중기사업계획의 수립

- 수립근거 : 국가재정법 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 수립기준
  - 기획재정부의 「중기사업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우리부의 정책 비전과 재정투자계획을 제시하는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안) 수립·제출
    - 예산과 기금을 포괄하는 통합재정 기준으로 5년 단위의 중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재원의 전략적 배분과 재정건전성 유지 및 투명성 제고
    - 단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기본 틀로 활용하고,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
- 수립시기 : '10년 1월
- 대상기간 : '10~'14년도

## 다. 예산편성 및 심의

### ○ 편성기준

- 「2011년도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및 「2011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예산편성
  - 기획재정부에서 연도별·분야별·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 우리부는 지출한도 내에서 사업별 자율 편성

### ○ 시기 : 연중(1~12월)

\* 국가재정법 관련 예산업무 추진일정 참조

### ○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의 주요 협의·보완사항

- 인건비, 조직·인력 증원, 업무추진비 등의 경우 별도 공통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 예산·기금간의 사업 이관 및 회계분류 등에 관계되는 사항
-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 집행실적 부진, 사업성과 미흡 등으로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한지 여부
- 국회·감사원·언론·시민단체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 ○ 예산안 편성시 유의사항

- 4대 재정혁신(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성과관리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취지에 맞도록 사전준비 철저, 특히 신규 및 주요사업 중 큰 폭의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업은 총액배분시 누락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강화(1~2월)

\*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국가재정법 제7조제6항)

- '11년 예산요구시 각 실·국별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법적 근거, 전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산출내역(단가, 물량) 등 입증자료를 축적(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적극 활용)
- 본부 실·국에서는 예산요구시 지방관서 의견을 수렴할 것
- 기획재정부 예산협의, 국회(상임위, 예결위, 예산정책처) 예산·결산심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예산요구서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
  - \* 특히 임차보증금, 산하기관 자체수입 등이 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유의
- 산하기관의 인력증원사항 등은 예산요구 이전에 기획재정부 및 기획재정담당관실과 사전 협의를 철저히 하여 관련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청사(센터) 임차료는 최소 1년 후까지의 청사이전 계획 등을 고려하여 예산요구
  - \* 청사관리 예산(청사 신·증축 및 청사운영 등)은 지방관서에서 소요예산을 해당 청으로 제출, 각 청에서는 별도 우선순위를 정해 본부(운영지원과)로 예산요구서 제출
-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 필요한 내부자료 및 외부기관(국회, 기획재정부 등) 요구 자료는 신중히 작성하고 제출기한 준수
- 예산요구서 제출 후 법령개정 등 추가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추가요

담당 : 기획재정담당관실 4급 임관규, 6급 조대인, 유봉현, 김인철  
 ☎ 02-2110-7112, 7121, 7123, 7120

< 참고 >

## '11년 예산업무 추진일정

일정(월)	추진내용	비고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기사업계획('09~'13년) 제출(1.31) ※ 기금운용계획안('09~'13년)도 함께 수립·제출</li> <li>○ 예산배정요구서 제출</li> <li>○ 기금 지출금액 이월명세서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획재정부 제출</li> <li>기획재정부 제출</li> <li>기획재정부, 감사원 송부</li> </ul>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기사업계획 부처의견 조회 및 협의</li> <li>○ 결산보고서 등의 작성·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입세출결산보고서</li> <li>- 계속비결산보고서</li> <li>- 국고채무부담행위명세서</li> <li>- 성인지결산서</li> <li>- 통합재정수지보고서</li> <li>- 국가채무관리보고서 등</li> </ul>                             ※ 기금결산보고서도 함께 제출                         </li> <li>○ 예비비사용금액명세서 제출</li> <li>○ 성과보고서 작성·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의자료 작성</li> <li>기획재정부 제출</li> <li>기획재정부 제출</li> <li>기획재정부 제출</li> <li>기획재정부 제출</li> </ul>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재정운용계획 보완작성(국정과제)</li> <li>○ 예산절감계획 작성</li> <li>○ '11년 예산 지출한도 심의(3~4월)</li> <li>○ 중기사업계획 당정협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의자료 작성</li> </ul>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산서 작성·제출(4.10) ※ 기금 결산서도 함께 제출</li> <li>○ 중기사업계획 총리 및 대통령 보고</li> <li>○ 국무위원 자원배분 토론회</li> <li>○ '11년 예산 지출한도 최종안 작성 및 보고(4월중)</li> <li>○ 부처별 지출한도 통보(4.30)</li> <li>○ 예산안편성지침 통보(4.3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획재정부에서 감사원에 제출</li> <li>보고서 작성</li> <li>토론회 자료 작성</li> </ul>

일정(월)	추진내용	비고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산검사보고서 송부(5.20)</li> <li>○ 예산안작성세부지침 통보(5.31)</li> <li>○ 감사원 검사를 거친 결산서 및 첨부서류 제출 ※ 기금결산보고서도 함께 제출</li> <li>○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제출</li> <li>○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제출</li> </ul>	<p>감사원에서 기획재정부에 송부</p> <p>국회 제출</p> <p>국회 제출</p> <p>기획재정부,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p>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년 예산요구서 제출(6.30) (다음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 보고서 함께 제출)</li> </ul>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년 예산요구서 소관별 기획재정부 검토</li> </ul>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년 예산요구서 재정운영회의 종합 조정</li> </ul>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년 결산서 의결(9.1)</li> <li>○ '11년 예산요구서 관련 예산자문회의 개최</li> <li>○ '11년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기금정책심의회 개최</li> <li>○ '11년 예산요구서 대통령 최종보고</li> <li>○ '11년 예산요구서 국무회의 의결</li> <li>○ '11년 예산요구서 관련 당정협의</li> </ul>	<p>'08년 결산서는 9.29 의결</p> <p>'10년은 9.28 의결</p>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년 예산안(정부안) 국회 제출(10.2)</li> <li>○ '11년 예산안 상임위 예비검토</li> <li>○ '11년 예산안 예결위 예비검토</li> <li>○ '11년 예산안 예산정책처 업무협의</li> </ul>	<p>'10년은 9.28~10.14 검토</p> <p>'10년은 10.20 개최</p> <p>'10년은 10.15 협의</p>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년 예산안 상임위 심의</li> <li>○ '11년 예산안 예결위 및 심의</li> </ul>	<p>'10년 11.19. 개시</p> <p>'10년은 12.7 개시</p>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의결(12.2)</li> </ul>	<p>법정시한</p>

## 2. 재정집행의 효율화

### 가. 디지털회계시스템(dbrain) 활용 적극 노력

- 정부재정의 편성에서 결산까지 재정활동의 전 과정을 디지털 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하여 시행
  - 예산의 요구에서부터 관서운영경비, 물품의 구매 및 계약 등 지출과 결산까지 전 과정에 적용
  - 재정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사업담당자(세부사업 담당자 포함) 및 집행관리담당자 등을 연초 및 인사이동시마다 지정하여야 하므로 전 직원이 동 시스템의 사용 매뉴얼을 숙지(동 시스템의 초기화면 사이버교육실 활용)
- 월 마감 철저 준수
  - 각 재정의 수입관리담당자 및 집행관리담당자는 국고금 관리법에 의한 세입수입부와 세출지출부를 작성하여야 하나, 디지털시스템(dbrain)상 마감하는 것으로 대체하므로 **매월 7일** 기준으로 전월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마감을 철저히 하여야 함(기금 포함)

### 나. 총액인건비 관련 예산운용지침 준수

- 총액인건비(표 참조)는 각 중안관서의 인력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비총액인건비)를 총액인건비로 전용하는 등 총액인건비 규모 증액은 원칙적으로 금지
  - 총액인건비 대상간의 이·전용은 자체 이·전용이 가능하며, 총액인건비를 비총액인건비로 이·전용 등은 기획재정부와 협의(승인포함) 후 가능
  - 총액인건비 규모의 증액은 연도 중 법률개정이나 직제의 개편 등에 의한 경우에만 기획재정부와 협의조정 가능

**< 총액인건비 보수항목 분류 >**

구 분		세부내역
인 건 비	기본항목	봉급, 기말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자율항목	성과상여금,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기술업무수당 등 총 26종), 업무대행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운영경비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각종 보수성경비와 활동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예산 등

- 기타사항은 『10년도 총액인건비 세부운영지침』에 따른 기준 등 준수

**다. 재정의 재배정계획 반영 및 절감노력 철저**

- 재정을 수반하는 사업의 경우 2010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분기별 (재)배정계획을 참조하여 수립
  - 사업계획과 재배정계획이 괴리되어 이월되거나, 집행부진 또는 당겨배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수시배정사업(예산)이나, 집행전 사전협의대상사업(기금)의 경우 재배정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수립
- 지출경비(기금포함)의 절감을 위해 일부항목의 절감목표액 설정
  - 절감대상인 사업항목의 절감액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지출 불가
  - 특히, 절감대상액 외에 환차익, 사업비의 낙찰차액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불용예산액은 타 용도로 사용금지하여 예산 절감 노력



## 라.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 철저

- 경기회복추세 유지 및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10년에도 주요사업비의 60% 내외를 상반기 중 조기 집행
  - 각 청(지청)별로 구축된 점검체계 지속 운영으로 매월 집행 상황 점검 및 대책 강구
- 재정은 편성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계획의 변경은 가급적 최소화
  - 예산회계법령, 2010년도 예산편성기준 및 집행지침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
- 세출예산의 적기집행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
  -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월 사업은 '09년 말부터 사업을 발주하여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
  - 불용액 발생사업, '09년도 집행률 80%미만 사업, 청사신축 및 연구용역 사업 등은 최대한 조기에 착수하여 연내 집행완료
  - 본부 지원예산 중 관서운영비(공공요금 제외), 자산취득비 등은 적기 집행완료
    - \* 본부보유예산을 적기에 배정하여 연말의 낭비성 예산 집행 금지
- 수시배정사업(예산)이나 집행 전 사전협의대상사업(기금)의 경우 사업계획이 미진하므로 각 사업 소관 과장이 수시 점검
- 예산편성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여건의 변동으로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용 요구
  - 예산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전용재원을 명시하여 최소한 예산집행 15일 전에 기획재정담당관실로 요구
    - \* 국가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이용불가.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거 국회에서 미리 의결한 부분에 대하여만 이용가능(2010년 세출예산집행지침 참조)
    - \* 소속기관의 전용요구는 반드시 1차기관(지청→청, 지노위→중노위)에 요구하고, 1차기관은 검토 후 본부로 신청

- 예산의 세부사업간 또는 세목간 변경(내역변경)하는 경우 별도의 제한이 없는 한 가능하나 예산편성 목적에 반하지 않도록 최소화
  - 일정규모 이상을 변경하여 집행하는 경우 「예산집행심의회」의 의결절차 준수
    - \* 기타 심의대상 및 절차는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참조
  - 세부사업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와 변경재원을 명시하여 집행 1개월 전에 기획재정담당관실로 요구(전용요구 절차와 동일)
  - 세목간의 변경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당해 소관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
    - \* 세목간 변경하는 경우 세부사업담당자가 디지털회계시스템(dbrain)에 변경내역 입력조치

< 세출예산 세목간 조정 위임한도 기준 >

기관별	위임한도 기준	최종결재	협조·경유 부서
본부	○ 변경액 1억원 이상 ○ 변경액 1억원 미만	실장 국장(정책관),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	○ 변경액 1천만원 이상 ○ 변경액 1천만원 미만	기관장 과(소)장	관리과장
직할기관	○ 변경액 1억원 이상 ○ 변경액 1억원 미만	위원장 사무국장	

- 지방관서에서 예산 부족으로 지원예산 배정요구시에는 반드시 1차 기관(지청→청, 지노위→중노위)에 요구하고, 1차기관은 타당성 및 청의 재정집행현황을 검토하여 본부에 요구할 것
  - 지청에서 본부로 직접 유선 또는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 미검토 및 미반영

## 마. 세입징수 관리 철저

- 당해연도 발생한 세입은 최대한 당해연도 수납조치로 미수납액의 이월 최소화
  -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신속한 채권 확보로 장기체납 방지
  - 채권확보시 조속히 현금화 할 수 있는 채권 위주로 확보
  
- 장기체납액에 대한 체납관리 철저
  - 매년 2회 이상 과태료체납정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손처분이 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실시
  
- 노동관계법 위반과태료 제정에 따른 변경내용 숙지 및 업무처리 철저
  - 질서행위위반규제법(제정2007.12.21. 법률 제8725호, 시행일 '08.6.22)
  - 과태료부과 · 징수업무매뉴얼('08.8)

담당 : 기획재정담당관실 5급 한홍수, 6급 박철준 ☎ 02-2110-7124

### 3.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 가. 결산대상 회계 및 기금

- 일반회계
- 특별회계(4)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기금(5) :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 나. 2009회계연도 통합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발생주의 회계도입으로 회계, 기금별 결산을 별도로 작성하던 것을 회계·기금을 통합하여 결산보고서 작성
- 근거 : 국가재정법 제58조
- 제출기한 :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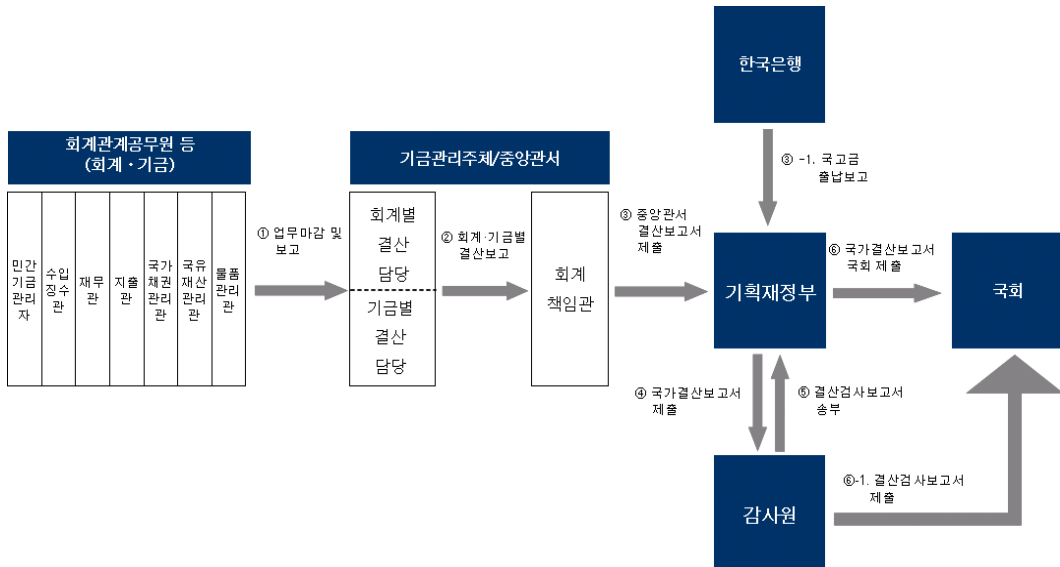
#### < 통합결산보고서 체계 >

구분	세부내용		
<b>I. 결산개요</b>	제1장 일반현황	1. 주요기능 2. 조직구조 3. 정원현황 4. 2009회계연도 주요 정책 목표	
	제2장 세입세출 (수입지출)결산분석	1. 세입세출결산 분석 2. 수입지출결산 분석	
	제3장 재무제표 분석	1. 재정상태 분석 2. 재정운영 분석 3. 순자산변동 분석	
	제4장 성과보고 <별첨1>	성과요약 예비금(비) 사용개황	
<b>II. 세입세출 (수입지출)결산</b>	제1장 세입세출 결산	1.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보고서 (2) 세출결산보고서
		2.부속서류	(1) 계속비 결산명세서 (2)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 (3)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4) 이월명세서

구 분	세 부 내 용	
		(5)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6)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 운용명세서 (7) 재정증권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운용명세서 (8) 예비금(비) 사용명세서 * 예비비 사용명세는 작성은 하나 중앙관서별 결산서에는 미포함 (9) 현물출자명세서 (10) 성인지결산서(2010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
	제2장 수입지출 결산	1. 수입지출결산 (1) 수입결산보고서 (2) 지출결산보고서
		2. 부속서류 (1) 재원조성실적표 (2)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설명서
	<별첨2>	결산부표
III. 재무제표	제1장.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2 재정운영표 3 순자산변동표
	제2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2.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3. 장기충당부채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5.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지급보증, 파생상품, 담보제공자산 명세 포함) 6.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7. 순자산조정명세 8.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필수보충정보	1.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2. 국세징수활동표 3.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4.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5. 기타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구분	세부내용	
	제4장. 부속명세서	1. 금융상품명세서 2. 단기투자증권명세서 3. 장기투자증권명세서 4. 미수채권명세서 5. 대여금명세서 6. 일반유형자산명세서 7. 사회기반시설명세서 8. 무형자산명세서 9. 국채및공채명세서 10. 차입금명세서 11. 자원별 원가명세서
	제5장. 부속서류	1.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2. 국유재산관리운동보고서 3.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 4. 국가채무관리보고서
	<별첨3>	자산·부채조정명세서
	<별첨4>	회계·기금별 재무제표
IV.성과보고서		

다. 정부결산 과정



- ① 업무마감 및 보고(회계관계공무원 등 → 회계·기금별 결산부서)
- 수입·지출관련 지방노동관서 및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은 각종 부표 등 정부결산을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본부 회계·기금별 결산담당(수입·지출) 부서에 **2010. 1.25일까지** 보고함
  - 세입 : 세입부, 세입결산보고서, 세입불납결손액 조서, 세입미수납액 조서 등
  - 세출 : 세출부, 세출결산보고서, 세출예산전용 조서, 불용액 조서 등
  - 본부 회계별 수입·지출 결산 부서는 각종 부표의 총괄표 등을 작성하여 결산총괄 부서(기획재정담당관실)에 보고
- ② 회계·기금별 결산보고(회계·기금별 결산부서 → 회계책임관)
- 회계·기금별 결산부서는 회계·기금별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책임관(기획조정실장)에게 **2010. 2.10일까지** 보고
  - 근로자복지진흥기금 관리주체(근로복지공단)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노동부장관에게 **2010. 2.10까지** 제출
    - \* 단, 국가재정법 부칙 제9278호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및 2010회계연도 결산시에는 기금, 기업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포함)의 재무제표 및 첨부서류는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도 제출
- ③ 우리부 결산보고서 기획재정부 제출 : 국가재정법 제58조 제1항
- 우리부 소관 회계·기금의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을 통합하여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작성, 회계·기금별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회계·기금간 내부거래제거, 원가계산을 통해 노동부 재무제표 작성
  -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결과를 토대로 결산 개요 및 회계·기금의 성과보고서를 작성

- 결산 개요,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이루어진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

\* 단, 국가재정법 부칙 제9278호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및 2010회계연도 결산시에는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을 3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④ 국가결산보고서 제출(기획재정부 → 감사원) : 국가재정법 제59조

-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함

⑤ 결산검사보고서 송부(감사원 → 기획재정부, 5.20일까지)

⑥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기획재정부 → 국회, 5.30일까지)

- 국회에서 결산보고서를 심사하고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면 정부 결산 절차 종료

\* 국회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국회법 제84조)

담당 : 기획재정담당관실 5급 한홍수, 7급 김덕용, 오태준 ☎ 02-2110-7126



## 4. 대국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

### 가. 국회운영 개요

#### □ 국회 회기

- 정기회 : 매년 9월 1일 개회, 회기 100일
- 임시회 : 매년 2, 4, 6월 1일 개회, 회기 30일
  - \* 개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집회
  - \* 임시회는 2, 4, 6월 외에도 대통령 또는 재적의원 1/4이상 요구로 소집가능

#### □ 임시회 및 정기회 주요활동

구분	본회의 주요 활동	상임위원회 주요 활동
임시회	1. 교섭단체 대표연설(대→한) 2. 대정부 질문(5일간, 우리부는 교육·사회·문화분야로 마지막 날 실시) 3. 법률안 등 안건심의 4. 기타 현안사항 논의	1. 업무보고 : 업무추진현황, 현안 2. 법률안, 결산·예산안 등 안건 심사
정기회	1. 예산안 시정연설 2. 교섭단체 대표연설(대→한) 3. 대정부 질문(5일간, 우리부는 교육·사회·문화분야로 마지막 날 실시) 4. 예산안 및 결산 심의 5. 법률안 등 안건 심의 6. 기타 현안사항	1. 국정감사(20일간) 2. 예산, 기금운용(안) 심의 3. 법률안 등 안건 심사 4. 기타 현안사항

\* 예산·기금운용계획(안)은 환노위(대체토론 → 소위 심사 → 전체회의 의결) → 예결위(종합정책질의 → 부별심사 → 소위 심사 → 전체회의 의결) → 본회의 의결

\* 법안은 환노위(대체토론 → 소위 심사 → 전체회의 의결) → 법사위 → 본회의 의결

## 나. 국회의 보고·서류제출 요구

### □ 의 의

- 보고·서류제출요구제도는 국회의 국정감사·조사 또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등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위한 기본적 수단임

### □ 근 거

-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8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 관한법률 제2조

### □ 처리방법

- 서류제출요구는 국정감사 또는 중대한 사안이 아니면 통상 개별의원 명의의 요구서를 발송하며, 서류제출요구서 접수 후 작성·제출시 유의사항(붙임)을 참고하여 처리

### □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을 정하여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다만 제출기한내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의원실)와 사전 협의 필요
- 종래의 서면에 의한 제출 이외에도 전자문서, 전산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출 가능
- 지방관서에 직접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부 업무소관 부서와 사전에 협의 후 제출

담당 : 기획재정담당관실 5급 강인석, 7급 류성진 ☎ 02-2110-7119, 7125

< 참조 >

서류(자료) 작성 · 제출시 유의사항

- ① 현행법상 서류제출 요구대상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즉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고 · 서류제출 요구 가능(단, 아래 ㉠, ㉡의 경우 제출 거부 가능)

<서류제출 예외>

- ㉠ 군사 · 외교 · 대북관계의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다는 주무장관의 소명이 요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
- ㉡ 순수한 사적 영역 관련자료,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② 요구서가 접수되면 담당 부서를 명확히 결정하되, 반드시 부서장(기관장) 책임 하에 자료를 작성, 제출
- 특히 자료 작성시 개인의견, 공식화되지 않은 자료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우리부 정책추진 방향에서 이탈(逸脫)하지 않도록 주의
- ③ 요구자료의 내용 · 범위 등과 관련하여 기한내 제출이 곤란하거나, 요구내용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쳐 본부 소관 부서 및 의원실과 협의 · 조정하여 처리 (제출기한내 협의 필요)
- ④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의 경우(엄격한 사전검토 필요)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 명의로 요구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 또한 제공 자료의 범위 조정, 보안유지 안내문 삽입, 자료 회수방안, 상황에 따라 자료열람 및 직접 설명 등 다양한 보완수단을 검토한 후 조치
- ⑤ 국회업무 주무과는 요구서 원본, 자료제출 유무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서류제출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

## 5. 국정감사 수감준비

### 가. 의의

- 국정감사제도는 국회의 본래 기능인 입법권, 재정에 관한 권한, 국정통제권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국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제도임

### 나. 근거

-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 다. 시기 : 정기국회 개회(9.1) 후 9월 10일부터 20일간 실시

\* 구체적인 감사일정, 방법, 장소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

### 라. 특성

- 국정감사는 업무추진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평가로서, 본부·지방청·산하단체 등 부 전체와 관련되는 주요한 업무임
  - 따라서 수감계획수립, 기관간 협조, 자료작성 및 제출, 국감장 준비, 사후처리 등 모든 면에서 차질 없이 치밀하게 준비·진행하여야 하며
  - 평소 법과 원칙에 의한 엄정한 업무수행으로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도록 대비

### 마. 기타 국정감사 관련 세부사항은 '10.9월초에 시달되는 「국정 감사 준비 총괄계획」 참조

담당 : 기획재정담당관실 5급 강인석, 7급 류성진 ☎ 02-2110-7119, 7125

## 6. 당정협의

가. 근거 : 당정협의업무운영규정(국무총리훈령 제506호)

### 나. 당정협의업무의 내용

- 법률안, 대통령령안 및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에 관하여 여당과 협의하여야 하며
- 여당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안 및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에 대하여 각 정당과 협의하여야 함

### 다. 운영체제

#### □ 고위당정협의회

- 참석 : 국무총리, 여당 대표, 관계부처의 장, 대통령실장 등
- 개최 : 매월 1회 개최(긴급현안 발생시 수시 개최)
- 안건 : 행정부와 여당 간 정책협의 및 조정
  - \* 여당이 없는 경우에 국무총리는 행정부와 정당간 정책협의를 위한 정당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음(필요시)

#### □ 부처별 당정협의회의

- 참석 : 장관, 여당 정책위원회 의장 등
- 개최 : 매 2월마다 1회 개최
- 안건 : 법률안, 대통령령안,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

#### □ 기 타

- 주요 법률안 및 정책안에 대해 각 정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정책설명회(실무당정협의) 개최 및 정당(전문위원 등)에 정책자료 제공

## 라. 당정협의 업무처리 원칙

- 법령개정안 등 단일 안건인 경우는 소관 국에서 회의자료 작성·내부보고 및 당 송부 등 직접 처리(법안이 복수일 경우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요청)
- 법안, 정책안 등 복수 안건인 경우는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총괄

## 마. 행정사항

- 당정협의를 법률 및 대통령령 제·개정시의 경우 입안단계부터 실시하며
  - 국민생활·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의 입안·변경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용확정 전에 협의
- 각 실국은 당정협의 종료 후 당정협의 자료 및 결과를 기획재정담당관실로 송부
  - \* 기획재정담당관실은 국무총리실 등 유관기관 보고

### <당정협의업무 처리절차(예시)>

- ① 국무총리실(정무운영비서관)에 당정협의 안건 및 개최희망 시기 등 계획안 제출 (개최 前月 25일 이전)
- ② 국무총리실, 정책위에 당정협의 총괄계획서 송부(개최 前月 말일 이전)
- ③ 국무총리실, 정책위와 일정협의 및 소관부처 통보(개최 7일전)
- ④ 소관부처, 보고서 작성
- ⑤ 소관부처, 당정협의 통보(개최 72시간전)
- ⑥ 정책위원회 자료 제출(개최 48시간전)
- ⑦ 부처별 당정협의회의 개최
- ⑧ 소관부처, 결과보고서 국무총리실에 제출

담당 : 기획재정담당관실 5급 강인석, 7급 류성진 ☎ 02-2110-7119, 7125

## 7. 지방노동행정기관 기관평가

### 가. 근 거

- 업무추진실적평가규정(훈령 제515호)

### 나. 평가대상기관 : 지방노동관서 및 지방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다. 평가 영역

- 업무추진 성과평가, 고객만족도 평가 등 2개 영역

### 라. 평가 방법

- 업무추진성과 중간점검
  - 실·국별로 6월말까지 실적을 7~8월중 점검 실시
  - 중간점검결과는 평가계획 검증, 부진관서 독려 등 업무추진 실적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연말평가에는 반영하지 않음
- 연말 종합평가 실시
  - 청·A·B·C 등 4개 그룹으로 평가, 청은 소속 지청 실적을 반영(자체실적 70%, 소속 지청 평균실적 30%)
  - 실·국의 업무추진성과 평가결과 및 고객만족도 결과를 토대로 영역별 우수기관 선정
  -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통해 각 분야별 최우수 기관 및 우수기관 선정

### 마. 세부추진계획 : 별도 시달

담당 : 행정관리담당관실 5급 이도경, 6급 홍재광 ☎ 02-2110-7034

## 8. 소송업무

### 가. 목적 및 법적근거

-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판례동향 등의 분석·전파를 통해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 「행정소송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소송업무 처리지침(노동부예규 제70호)」

### 나. 불변기간 준수 등 적극적 소송수행

- 항소·상고기한 등 각종 불변·법정기간이 도과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소송지휘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검사 또는 공익 법무관의 사전 지휘를 받드시 받아 소송수행

#### 《 각종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 》

연번	소송행위	처리기간	근거법(민소법)	비고
1	상소제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제396조, 제425조	불변기간
2	즉시항고, 특별항고	재판고지일로부터 1주일	제444조, 제449조	"
3	재심의 소제기	재심의 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	제456조	"
4	제소 전 화해 불성립시의 제소신청	조서등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제388조	"
5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제기	판결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1월	제491조	"
6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송달일로부터 2주일	제470조	"
7	소취하 동의	취하서 송달일로부터 2주일	제266조제6항	"
8	상고이유서 제출	기록접수 통지일로부터 20일	제427조	"



연번	소송행위	처리기간	근거법(민소법)	비고
9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제출	상고이유서부분 수령일로부터 10일	제428조	법정기간
10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	최종 변론기일로부터 1월	제268조제2항	"
11	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 제출	소장 부분 송달일로부터 30일	제256조	"

불변기간은 대체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기간으로서 이를  
도과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에 대하여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음

법정기간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으로서 법원이  
그 기간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기간의 계산방법 : 초일 불산입, 말일이 일요일 그 밖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만료(민법 제157조, 제159조)

- 주요 소송사건은 본부 소관과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  
사전 협의
  - 소송가액이 5천만원 이상 사건의 제소·응소
  - 본부·감사원 감사 결과 행한 처분으로 인한 행정소송
  - 항소·상고를 제기하는 경우 또는 항소·상고를 포기하는 경우
  - 그 밖의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 예상되는 사건

#### 다. 소송수행자 지정

- 소송당사자인 행정청에서 소송수행자(소속과장 등 5급 이상  
직원 1명이상 포함하여 3명 이상)를 지정하고 법원에 소송  
수행자 지정서를 제출
  -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수행자를 관할 검찰청에 추천 후  
검찰청에서 송부된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

- 답변서 작성·제출(소장부분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최초 변론기일 전까지 상대방 수만큼의 부분과 함께 제출
    - \* 30일 이내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제 자백으로 패소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및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기재
    - \* 답변서 작성시 일응 부인식 답변을 지양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반박하는 등 실질적 내용을 기재

## 라. 변론시 유의사항

- 불출석하거나 대기시간 중 방심하여 재판장의 사건호명시 변론석에 나오지 아니하면 불출석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 \* 제출한 소장 또는 답변서 등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
  - \* 2회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될 경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취하로 간주되므로 기일지정 신청여부에 대한 검찰 지휘를 받아야 함
- 강제조정 또는 화해권고에 대한 결정문 송달 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 결정문 송달 후 지체 없이 이의신청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처리

## 마. 소송 관련보고 철저

- 소송진행 과정별로 “소송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한 소송사무 보고(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관할 검찰청)
  - \* 주요 보고내용 : 제소·피소, 준비절차·변론절차 진행, 판결·결정·명령문 송달, 항소·상소, 판결확정, 소송종결 등
  - \* 검찰 지휘사항 : ①소(반소)의 제기 및 취하 ②상소의 제기·포기 및 취하 ③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 및 인락 ④청구의 변경 ⑤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 등

## 바. 소송 종결시 유의사항

### ○ 승소사건의 처리

-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후 상대방 항소 없이 2주일 경과하면 원심법원에 판결확정 여부를 확인(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하고 확정된 때에는 판결확정 증명원을 교부받아 소송종결 보고
-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장 부분을 첨부하여 보고하고, 부대항소여부를 검토

### ○ 패소사건의 처리

- 판결문 정본 송달시 판결문정본에 접수일자를 명기한 후 3일 이내(통상 1주일 이내)에 항소제기(포기)의견서, 항소제기 이유요약서, 패소원인분석표, 판결문사본을 첨부하여 검찰의 지휘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항소제기
-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송달료납부서 등을 첨부하여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
  - \* 송달일(항소기간의 기산일)은 판결문이 검찰청에 송달된 날이며, 검찰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송수행청에 송달된 경우 수행청에 송달된 날이 기산일임(문서접수부서에 접수된 날 또는 소송수행자가 판결문을 수령한 날이 아님에 유의)
- 항소제기 후 항소제기증명서 첨부하여 보고
  - \* 법원 및 검찰청마다 다르기는 하나 실무상으로는 항소장을 접수하는 경우에 접수분 외에 별도의 항소장 부분에 접수인 도장을 받는 방법으로 항소제기를 증명

○ 항소포기

- 항소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소포기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항소포기서 제출
  - \* 실무상 별도의 항소포기서를 제출하지 않고 통상 항소기간 도과로 원심판결을 확정시킴

○ 소취하

- 원고로부터 소취하서를 송달받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소취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국가소송에서 상대방이 소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취하 동의에 대한 검찰의 지휘를 받을 것
  - \*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수행청이 이에 동의할지 여부를 자체 판단하고 검찰 지휘 생략할 수 있음
  - \* 소취하 부동의 지휘 시 : “소취하 부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법원으로부터 “소취하 부동의증명원”을 발급받아 검찰에 송부
  - \* 소취하 동의 지휘 시 : 소송종결보고

사. 행정사항

○ 소송상황보고

- 보고서식 : 소송업무처리지침 별지 제42호 서식
  - \* 답변서 등 소송서류 양식 및 기존의 소송서류를 참고할 경우에는 다우리 홈페이지 행정·국가소송 매뉴얼을 참고

○ 관련문서 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5838('09.6.22), 9533(2009.10.7), 9617(2009.10.8), 9797(2009.10.15)

담당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5급 양현수, 6급 김성기 ☎ 02-6902-8115

## 9. 행정심판업무

### 가. 목적 및 관련근거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통하여 행정기관이 스스로 해결하여 바로 잡는 절차
  - \* 「행정심판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나. 행정심판청구 안내

- 행정처분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서면으로 고지
  - 행정처분 불복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청구기간, 피청구인 등)을 명시
    - \*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법 제18조)
-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 제기 가능
  - \*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등에 관한 처분(고용보험심사위원회)
  - \* 산재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다.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 청구인은 처분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가능
  - \* 피청구인을 잘못 기재하여 접수된 행정심판청구라도 반려하지 말고, 즉시 해당 처분청으로 이첩할 것
- 행정심판청구서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인·피청구인·청구취지·청구대상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동 서식이 아니라도 무방

- 청구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석명을 구하고, 응하지 않는 경우 적절하게 해석하여 답변서를 작성
  - \* 청구서 내용의 일부하자를 이유로 반려하여서는 아니 됨
-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거나 청구기간 도과 등 명백하게 부적법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도 접수 거부 및 반려는 불가
  - \* '진정서 처리결과 회신', '질의에 대한 회신' 및 '인턴고용지원약정 취소 및 지원금반환통지' 등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 라. 직권 취소

- 행정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지체없이 이를 본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 청구인에게 통지
  - \* 원처분의 위법부당성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적으로 국무 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받고자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마. 답변서 작성

- 행정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므로 답변서 내용이 부실할 경우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할 사건이 인용될 수 있으므로 청구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조사 후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처분기관의 반박을 쟁점별로 논리적으로 서술
  - \* 답변서 작성 시 본부의 해당 과 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 협의
- 처분을 하게 된 경위 및 처분의 근거로서 법령 및 지침, 질의회시, 노동부 예규, 고시, 관련판례, 재결례 등을 반드시 명시하여 원처분의 적법·타당성을 강조
  - 청구의 대상 또는 처분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사본(예: 부지급결정통지서 등) 및 처분 경위에 관한 사실 조사자료(예: 조사복명서 등), 처분의 근거인 관련지침, 질의회시, 예규 또는 관련 판례, 재결례 등 논리적 답변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를 첨부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는 답변서 중 1부가 청구인에게 송부됨을 유의
  - 답변서 작성 및 입증자료 첨부시 청구인에게 비공개해야 하는 정보가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답변서 작성시 비공개한 정보내용을 그대로 답변서에 첨부하는 경우 등

## 바.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송부

- 행정심판청구가 접수되면 답변서를 작성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서 원본\* 1부와 답변서 2부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 송달하고 추후에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로 청구서 사본 2부와 답변서 사본 2부를 송달
  - \* 답변서 작성 양식 및 기존의 답변서를 참고할 경우에는 다우리-업무매뉴얼의 행정심판업무를 참고하거나, 다우리 커뮤니티 『행정심판 길라잡이』의 ‘답변서 참고’ 참조
  - \* 청구서 원본 : 접수일자가 기재된 접수인이 찍힌 것을 의미
  - \* 답변서 : 각 1부당 반드시 피청구인의 직인을 날인하고 첨부서류 일체를 각각 첨부한 후 첨부서류에는 피청구인의 증거를 뜻하는 을호증 번호를 날인 또는 번호를 기재한 견출지를 붙임(‘을1호증’, ‘을2호증’)

## 사. 보충서면 접수

- 청구인이 청구취지 변경 또는 최초 주장에 대한 추가주장 등의 이유로 보충서면을 제출할 경우 최초 청구서 접수와 같은 절차로 보충서면 원본 1부 및 보충답변서 2부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 송부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의결이 임박한 경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담당 직원과 통화 등 협의를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

## 아. 행정심판청구 취하

- 청구인이 청구를 취하하거나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의 이유를 인정하여 직권취소한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취하서를 받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그 사실을 통보

## 자. 재결서 접수

- 각하 또는 기각재결의 경우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배척한 것이므로 해당건을 종결
- 인용재결의 경우 재결의 주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나, 절차 또는 형식의 위법으로 취소된 경우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새로운 처분을 부과
- 반복 인용사건에 대해서는 동일유형 업무처리시 행정심판 위원회의 인용재결 내용을 검토·반영
  - \* 인용재결 유형은 다우리 커뮤니티 『행정심판 길라잡이』 참조

담당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5급 양현수, 6급 김성기 ☎ 02-6902-8115



## 10. 청문 등 행정절차제도 준수

### 가. 목적 및 근거

- 행정청이 국민에게 불이익 처분시 청문·의견제출 기회 등을 부여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를 사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

\* 행정절차법·시행령·시행규칙,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 나. 의견청취 요건

구분	청 문	의견제출	공청회
개 념	-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 국민의 권익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앞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	-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
실 시 요 건	-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불이익 처분시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	-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 용 사 례	- 비교적 중대한 처분 - 인·허가, 면허 등의 취소 및 철회, 제조·판매금지 - 법인 등의 설립취소, 해산·폐쇄 명령 등	- 비교적 경미한 처분 - 영업정지, 면허정지 - 자격정지 - 과징금 부과처분	- 다수인 관련 처분 - 주요법령의 제·개정 -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제도의 도입 - 대립된 이해관계의 조정 - 여론의 수렴 등

### 다. 처분기준의 공표 등

-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

### 라. 사전통지의 엄격한 이행

-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시에는 반드시 처분전 사전통지
- 처분원인의 사실을 6하원칙에 따라 명확히 명시하고, 예정된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서식 첨부 및 이메일·인터넷 등을 통한 의견제출 요령 등도 함께 안내

## 마. 제출된 의견의 반영철저

- 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분에 적극 반영, 개별법령에서 별도의 감경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의견에 이유가 있는 경우 예정처분을 변경(법 제27조의2, 제35조, 제39조 등)

## 바. 기타 청문시 유의사항 안내

- 청문주재자의 구성
  - 청문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지방노동관서별 5~7인의 「청문주재자 인력풀」 구성
    - \* 민간전문가 : 변호사, 공인노무사, 관련학과 교수, 의사, 노사단체 임원, 관련 기관·협회 전문가, 전직공무원 등으로 구성
- 청문의 통지
  -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함
  - 청문통지는 「청문시 유의사항」 및 불출석할 경우의 「의견 제출서」도 반드시 동봉하여야 함
- 청문의 진행
  - 청문은 위법행위 여부의 확인 등 당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크므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 청문일 전까지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 원칙으로 하되,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불가
- 청문장의 설치
  - 청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독립적인 청문장을 운영하여야 하나, 청문횟수가 적고 사무실 부족 등으로 상설 청문장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 회의실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 청문진행시 “청문실시 중” 등 알림판을 부착하여 청문관계자 이외의 출입제한 등 당사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

- 청문출석에 갈음하는 의견서의 처리
  -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간주
    - \* 의견서는 청문이 종결될 때까지 청문주재자에게 제출
- 청문조서의 작성
  - 청문조서는 규칙 제18호 서식에 따라 청문주재자가 작성
    - \* 당사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반드시 기재하고 청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 청문의 비밀유지
  - 누구든지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 또는 경영상이나 거래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 유의
- 청문결과의 반영
  - 청문조서 기타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분에 적극 반영
    - \* 행정청은 청문주재자의 의견 등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청문결과와 부합하지 않는 처분의 경우 청문조서 및 증거자료 등을 부인할 만한 충분한 사유 및 입증자료가 필요

담당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5급 최승찬, 6급 박무훈 ☎ 02-2110-7045

## 11. 노동부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운영

### 가. 목적

- 「민법」 제32조 및 「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설립·감독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내용 및 처리 절차 등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 나. 적용범위

- 「민법」 제32조 및 「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 신고하거나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적용됨
  - 다만,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업무처리지침」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법인과 「훈련법인 업무처리 요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

### 다. 업무 내용 및 처리요령

- 본부는 이 지침에 따라 법인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허가 신청자에 대한 설립허가 기준요건 검토(현장실사 포함), 법인취소 관련 청문 실시 및 법인 지도·감독업무에 대하여는 지방노동관서의 의견을 들어 처리할 수 있으며,
  - 지방노동관서에 의견을 요청할 때에는 지방노동관서의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문서로 의견요청 업무의 구체적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적시하여야 함

- 지방노동관서는 본부의 의견요청에 대하여 이 지침 및 본부의 의견 요청 공문 등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본부에 보고하여야 함

#### 라. 행정사항

- 관련지침: 규제개혁법무담당관-10384(2009.10.30)  
규제개혁법무담당관-11017(2009.11.19)
- 지침 시행일: 2009년 11월 1일

담당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5급 양현수, 6급 김성기 ☎ 02-6902-8115

## 12. 비상대비 업무

### 12-1. 총무계획 수립·시행

#### 가. 총무4400 집행계획

##### 1) 목적

- 전시·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시 노동부의 전시노동행정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

\* 관련법령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국가전시지도지침, 총무기본계획 등

##### 2) 추진일정

- 기본계획(안) 작성·제출 : 4월말
- 집행계획(안) 작성·제출 : 9월 중순
- 시행계획(안) 점검 및 승인 : 11월말
- 실시계획(안) 점검 및 승인시달 : 12월말

#### 나. 총무6000 자체총무계획

##### 1) 목적

- 비상사태시 노동행정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자체 행동요령 및 제반 업무처리기준 등 세부실행계획 수립

##### 2) 추진일정

- 자체총무계획(안) 작성 : 10월
- 자체총무계획(안) 검토/보완 : 11월 중순
- 자체총무계획(안) 승인/시달 : 11월말

## 다. 총무9800 집행계획

### 1) 목적

- 북한의 전면남침시 응전반격으로 자유화 된 북한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 헌정이 시행될 때까지 자유화 행정에 필요한 노동 행정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획 수립

### 2) 추진일정

- 기본 및 총괄계획 작성지침 제출 : 1월말
- 집행계획 수립·시달 : 4월말
- 시행계획 승인·확정 : 6월말

담당 : 비상계획담당관실 6급 김영훈 ☎ 02-2110-7093

## 12-2. 을지연습

### 가. 연습지침 / 추진방향

#### 1) 도상연습

- 가) 도상연습은 『군사작전지원』, 『정부기능유지』, 『국민생활안정유지』 분야에 대한 사건을 계획화하여 실시
- 나) 실전적 상황조치 연습을 위해 일정별 연습주안을 선정, 사건계획을 발전시키되, “연습가정”에 부합되도록 상황 조성
- 다) 주요 현안사건은 기관장과제로 선정
- 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고유기능 업무와 지역적 특성(노동시장 환경, 산업시설환경 등을 고려)에 부합된 사건을 염출하여 연습
- 마) 연습간 유희부서 및 직원이 없도록 기관(부서)별, 기능별로 연계성을 유지하여 일자별·시간대별로 사건을 균형 있게 조성
- 바) 사건계획은 상호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별로 Top-down 방식으로 작성

#### 2) 전시 주요현안과제 발표 / 토의 연습

- 가) 전시주요현안과제는 다수기관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토의함으로써 총무계획의 보완·발전 추진
- 나) 전시주요현안과제 선정은 기관별 임무/기능과 지역별 특성, 안보환경 등에 부합된 사항 위주로 실시한다. 또한, 평시 시행되는 각종 제도, 규정, 정책, 법령 등의 사항이 전시 적용시 차질, 혼선이 예상되어 해당 전시법령 또는 총무계획도 따라서 정비(제·개정) 되어야 할 사항에 주안을 두고 실시
- 다) 전시주요현안과제와 관련된 사항은 사건화하여 도상연습에 반영



- 라) 전시주요현안과제를 선정, 계획수립 및 실시에 대한 감독책임은 차상급 기관에 있음
- 마) 전시주요현안과제 토의결과는 일일상황보고, 문제점선정보고, 강평, 평가, 사후보고시 포함

### 3) 실제훈련

- 가) 실제훈련은 인력, 물자, 장비 등을 사용하여 총무계획의 시행 절차를 실제행동으로 숙달시키는 훈련
- 나) 실제훈련은 각 기관의 전·평시 임무와 여건을 고려, 자체 총무계획상의 제원을 산출하거나 실시상의 문제점 도출이 필요한 종목을 선정하여 실시

### 나. 연습계획 추진일정

#### ○ 일정별 주요업무 추진내용

일 정	주 요 업 무 내 용	비 고
1.7-1.31	○ 2010 을지연습 추진방향 회의	행안부
2.1-2.28	○ 노동분야 중통사건 / 중통단 전시주요현안과제 소요제기	
3.2-3.31	○ 2010을지연습 산하기관별 노동사건 / 기관별 자체현안과제 소요접수	중앙계획 /통제단
4.1-4.30	○ 2010 을지연습 노동계획 수립 / 시달	
5.1-5.31	○ 노동 연습각본 수립 / 시달	·
6.1-6.30	○ 산하기관의 연습계획 / 각본 지도점검 ○ 중통단 전국통제부장 회의	
7.1-7.31	○ 계엄연습협조회의 / 각 파견연락관 소집교육참가 ○ 연습전산시스템 운용교육 / 전화번호부 종합제출 ○ 2010 을지연습계획(안) 중통단 보고회의 ○ 을지연습 노동평가계획 수립제출 ○ 연습단요원 근무편성표 종합 / 실국통보	노동계획 /통제부 ·
8.3.-8.31	○ 비상시 정보시스템 가동훈련 ○ 2010을지연습 준비보고 회의 ○ 기관별 을지연습 자체 준비보고 회의	소속기관 및
	○ 2010 을지연습 (8.16-8.19 예상)	
9.1-9.30	○ 전시주요현안과제 토의결과 / 문제점 선정보고 ○ 노동부 연습 종합강평 보고회의 ○ 종합 평가결과 보고 (중평단)	산하기관
10.1-10.31	○ 2010 을지연습 사후보고 ○ 중앙 종합강평회의 (연습총감 주재)	계획 /통제부

담당 : 비상계획담당관실 5급 상당 김성덕 ☎ 02-2110-7092

## 12-3. 비상대비업무 확인·평가

### 가. 목적

- 소속 및 산하기관의 총무계획 작성절차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비상대비업무 개선·보완

### 나. 추진중점

- 기관의 임무와 임무수행능력 및 지역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한 계획인지 실효성과 현실성을 검증
- 전·평시 연계성 확보와 현행화 정도
- 총무계획승인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 비상대비 교육실태, 총무계획 순기이행 여부점검 등 지도방문

### 다. 추진일정

- 비상대비업무 확인·평가 지도방문계획 시달 및 현장지도  
: 5~6월  
\* 평가대상 : 지청·산하기관

담당 : 비상계획담당관실 6급 김영훈 ☎ 02-2110-7093

## 12-4. 비상대비 교육계획

### 가. 목 적

-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에 비상대비 역량 강화

### 나. 추진중점

-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안보 현장 답사 및 워크숍을 통한 체험형 교육 실시
- 비상대비업무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안보불감증 해소

### 다. 추진일정

- 비상대비교육 지침 시달 : 2월
- 비상대비업무 담당실무자 집체교육 : 3회(3~7월)  
\* 을지연습 담당실무자교육과 병행
- 총무계획 발전 워크숍 : 5월
- 행안부 비상대비업무 담당실무자교육 : 3회(3~11월)
- 2010년도 워크숍/안보 현장답사 : 11월
- 행안부·통일부 주관 안보워크숍 참여 : 연중

담당 : 비상계획담당관실 6급 김영훈 ☎ 02-2110-7093

## 12-5. 직장민방위대 및 예비군 업무

### 가. 직장민방위대

#### (1) 편성대상

- 대상 : 만20세~만40세 이하의 남자(예비군 편성대상자 제외)
- 민방위 편성의무자가 아닌 17세 이상의 남·여 지원자

#### (2) 자원관리

- 직원 인사발령시 전·출입 및 과전자에 대한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민방위 전산망 “새울” 자원관리)
- 전시에 즉시 연합민방위대 확대 편성이 가능하도록 자원관리 유지(41세~50세)
- 민방위대 장비유지 관리
- 훈련사항 관련서류 작성·관리 및 통보

#### (3) 교육훈련

- 비상소집훈련 : 연 1회(2~3월)
- 민방공훈련 : 연 3회
- 방 재 훈 련 : 연 5회
- 기 본 교 육 : 연 1회(4시간)
- 화생방교육 : 연 1회(4시간)

\* 매월 15일 민방위의 날 행사 및 교육훈련 실시

### 나. 직장예비군

#### (1) 편성대상

-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군인사법에 의한 현역군 연령정년까지)
- 예비역의 보충역·병(전역후 8년차 이내) 또는 지원자

(2) 예비군 전산망(국방동원정보체계) 관리

- 신상변동자(전·출입 및 파견자)에 대한 직장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 예비군 편성카드 작성 및 관리
- 유형별 교육대상 판단 및 실시
- 예비군 무기 및 장비관리
- 훈련사항 관련서류 작성·관리 및 통보

(3) 신분별/연차별 교육훈련

- 수임군부대 통제하 연중 예비군 신분별, 연차별 기본교육 및 향방훈련 실시
  - 향방작계훈련 : 연 2회(12시간), 사병1~6년차
  - 동원훈련 : 연 1회(28시간), 동원지정자
  - 향방기본교육 : 연 1회(8시간), 병5~6년차
  - 소 집 점 검 : 연 1회(4시간), 동원지정자 병 5~6년차

《 대상자별 훈련시간 》

구 분		계	동원훈련	동미참 (동원미지정)	향 방 기 본	향 방 작 계	소 집 점 검	예 비 시 간
신규전역자(간부/병)		100						100
일 반 하 사 · 병	1-4 년차	동원지정	100	28 (2박3일)				72
		동원미지정	100		24	12		64
	5-6 년차	동원지정	68		8	6	4	50
		동원미지정	68		8	12		48
	7-8년차		68					68
간 부	1-6 년차	동원지정	100	28 (2박3일)				72
		동원 미 지정	장교	100	28 (2박3일)			72
			부사관	100		24	12	
	7-8년차		68					68

담당 : 비상계획담당관실 기능 8급 이태형 ☎ 02-2110-7094

# 국제협력관실



= 목 차 =

1. 외투기업에 대한 노무관리 지원 강화 .....	639
2. 사우디사회보험료 환불신청 접수 및 안내 .....	641
3.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진정 등에 대한 처리방법 .....	643
4. 수요자 중심의 노동행정정보화 추진 .....	645
5. 민원처리업무 내실화 .....	653
5-1. 민원사무 심사 철저 .....	653
5-2.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철저 .....	654
5-3. 온라인 민원서비스 활성화 .....	656
5-4. 민원상담실 운영 내실화 .....	658
6. 전화민원 처리체계 및 상담서비스 개선 .....	660
7. 노동민원행정 음부즈만 운영 활성화 .....	662
8. 고객관점의 민원서식 개선 .....	663
9. 공무원 친절운동 운영 내실화 .....	665
10. 제안 활성화 .....	666





# 1. 외투기업에 대한 노무관리 지원 강화

## 가. 목 적

- 외투기업에 대한 노무관리 지원활동을 통해 외투기업의 노사관계 안정 및 노사분규 최소화 도모

## 나. 주요내용

- 지방노동관서 직원이 중소외투기업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및 각종 지원제도에 대해 상담·안내하는 노동행정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 Invest Korea 노사관계지원반(노동부 직원 파견)의 외투기업 대상 「노무관리지원컨설팅」 등 연계
- 외투기업 대상 노동정책설명회를 수시 개최, 우리나라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 변화양상 등을 적극 홍보
  - 본부는 국제노동협력원·KOTRA 및 외투기업 협의체(AMCHAM, EUCCK 등) 등과 연계하여 개최
  - 외투기업이 밀집한 지방관서도 관내 외투기업 대상 노동정책설명회 개최 추진
- 「외투기업 노무관리 매뉴얼」, 영문노동정보지(Korea Labor Review, 격월간) 등 영문 노동자료를 배포하고
  - 외투기업 노무담당자, 외신기자 등에 노동관련 정보를 e-mail 뉴스레터 및 영문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제공
- 우리부 상담센터에 근로감독관 및 통역요원을 배치('08.5월), 외투기업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서비스 운영

- 분규 발생가능성이 있는 취약외투사업장\*에 대해 지방관서 담당감독관 지정 및 중점 관리

\* 노사관계 취약외투사업장 : 최근 3년내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향후 분규발생 우려가 있는 외투기업으로 지정(노사협력정책국)

## 다. 행정사항

- 지방노동관서는 본부(국제협력담당관실)에 관내 외투기업 대상 노동정책 설명회 등 추진실적 보고
  - 노무관리 활동시 제기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 지방노동관서에서 분규 발생가능성이 있는 취약외투사업장\*에 대해서는 담당감독관 지정 및 중점 관리
  - 관내 일일동향 보고시(노사갈등대책과) 분규사업장이 외투기업(외자비율 50% 이상)인 경우 '외투기업'으로 표기
- 우리부 상담센터에서 근로감독관 및 통역요원을 배치, 외투기업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서비스 운영 계속
  - 자주 제기되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본부(국제협력담당관실)에 전달

담당 : 국제협력담당관실 4급 임동희

☎ 02-2110-7437

## 2. 사우디사회보험료 환불신청 접수 및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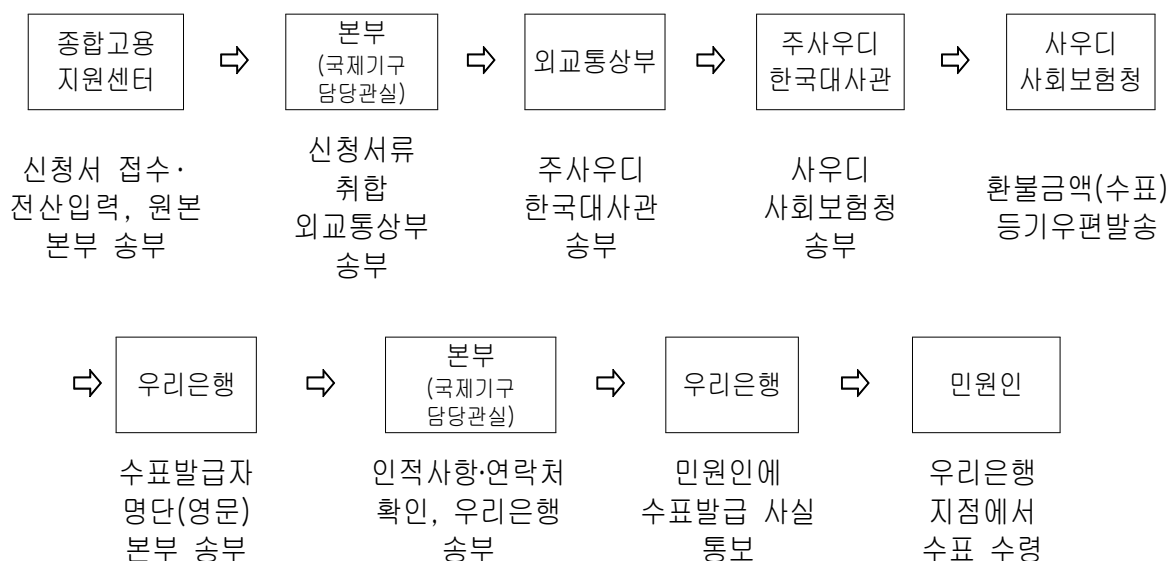
### 가. 업무 개요

- '87.3.10 사우디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연금 적용을 폐지하고, '89.2 사회보험료 환불방침을 결정
  - \* 개별 근로자가 사우디 사회보험청에 보험료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 부담분(5%)을 환불
- '98.2월 사우디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사우디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일괄 신청(정부가 환불신청 대행)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 노동부에서 일괄 접수를 받아 신청

### 나. 업무 절차

- '76.~'87.3.10.사이 사우디에서 1년 이상 취업하고 사우디 사회보험료를 12회(12개월)이상 불입한 근로자가 종합고용 지원센터에 환불 신청
  - 센터에서 신청서 내용을 전산입력한 후 신청서류 원본을 본부로 송부
- 본부(국제기구담당관실)에서 일괄 취합하여 주사우디아라비아 한국대사관을 통해 사우디 사회보험청에 접수
  - \* 환불 대상근로자 20만여명(주사우디대사관 집계) 중 '09.12월 현재 환불건수는 약 17만여명으로 약 85%가 환불받은 것으로 추산됨

#### < 사우디사회보험료 환불신청 처리절차 >



## 다. 업무 추진시 유의사항

- 민원인이 보험료 환불가능 여부 및 환불금액 등을 문의하는 경우 확인해 줄 수 없는 사정을 충분히 설명
  - 사우디 정부는 '03.2월 이후 자국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 감축에 따라 보험료관련 상기 각종 확인 업무 수행이 불가하다는 입장
- 본인(보험료 불입자)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상속인 수당지급 신청서”와 함께 ②국문신청서, ③공증된 영문 제적등본 및 ④영문 여권무효확인서(또는 환불수표 원본)등의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토록 안내
- 해당근로자 등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사우디한국대사관을 경유 사우디 사회보험청에 신청토록 안내
  - \* “개정된 사우디사회보험료 환불관련 업무처리지침(“06.1)”을 숙지하여 민원 응대

## 라. 행정사항

### < 지방관서 >

- 사우디사회보험 전산망 입력 및 조회는 본부 국제기구담당관실에서 ID를 부여하여야 가능하므로 담당자 변경시 본부에 보고
- 신청서접수시 전산입력한 후 신청서류 원본을 본부에 송부

담당 : 국제기구담당관실 7급 구현경

☎ 02-2110-7444

### 3.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진정 등에 대한 처리방법

#### 가. SOFA(주한미군지위에 관한 협정) 개요

-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국에 주둔하게 된 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하기 위해 한·미 SOFA 협정 체결
- SOFA 협정은 한미간 분쟁해결의 법적 근거(정치적, 군사적으로 중요)로 양국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 전문, 본 협정 31개 조항, 합의의사록, 합의 양해사항, 교환서한 등으로 구성('67.2.9 발효, '91.2.1 개정, '01.4.2 개정)

\* SOFA(Agreement on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 나. 진정 처리 방법

- SOFA 협정 및 부속문서 제17조(노무조항)에 따라 진정유형 별로 다음과 같이 처리

##### 1) 개별 노사 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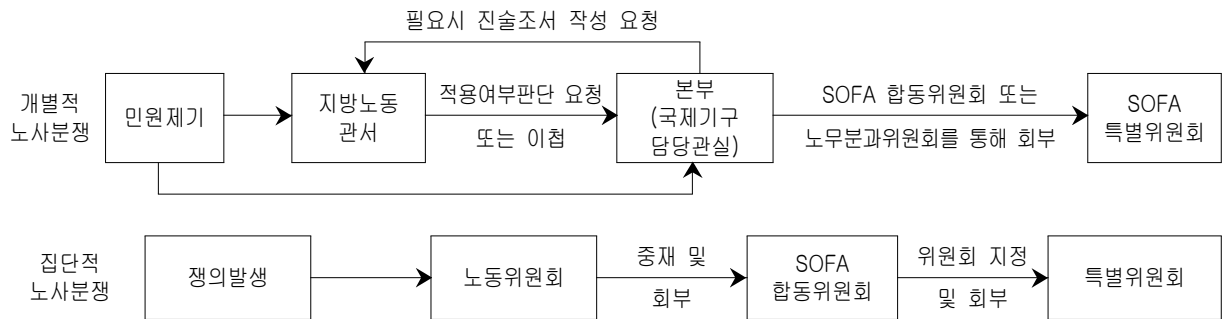
- 개별진정 사안은 SOFA 노무분과위원회 한국측 위원장인 본부의 국제기구담당관이 속하는 국제기구담당관실에서 처리하므로
- 지방노동관서에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의 개별 진정이 접수된 경우 본부(국제기구담당관실)로 즉시 이첩
- 다만, 진정인이 지방에서 진술조서 작성을 원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본부(국제기구담당관실)로 이송

\* 근거 : 노동부와그소속기관사무분장규정상 SOFA 업무는 국제기구 담당관실 소관

## 2) 집단 노사 분쟁

- 주한미군과 노동조합간 쟁의 조정은 중앙노동위원회 관할 사항이므로
- 노동조합 등에서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토록 안내

### < SOFA 제17조에 따른 진정 등의 처리절차 >



## 다. 행정사항

- 지방노동관서에서 진정 사안과 관련, SOFA 협정적용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부(국제기구담당관실)에 확인 요청

담당 : 국제기구담당관실 7급 구현경

☎ 02-2110-7444

## 4. 수요자 중심의 노동행정정보화 추진

### 가. 노동행정 효율성 제고

#### 1) 목적

- 노동행정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고객 위주 행정구현

#### 2) 추진내용

##### □ 온나라시스템 운영

- 국가기록원에서 온나라시스템 문서이관 프로그램이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온나라시스템 문서이관 처리(본부 및 지방관서)
- 과제카드 및 조직관리
  - 직제변경 시 과제카드 이관 및 조직정보 변경(본부 및 지방관서)

##### □ 다우리 내부메일 운영

- 대량 메일 발송 금지
  - 다우리 내부메일을 통해 대량메일(경조사 등)을 발송하면 다우리포털에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대량 메일 발송을 금지함.
- \* 업무상 부득이한 대량메일 발송은 업무시간외에 발송 바람

담당 : 정보화담당관 4급 김두희, 6급 문주란 ☎ 02-2110-7108



## □ 홈페이지·전자민원시스템

- 우리부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장애인, 노인 등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개선('10.5~8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3조 3항 및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지침 제6조에 따라 국민이 특정 웹 브라우저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호환성 개선
    - \* 47개 지방관서 등 50개의 홈페이지에 대한 적용
- 민원사무의 신청·발급절차를 온라인화 하여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에너지 절감 등 탄소 배출 억제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마련('09. 12~'10. 6월)
  - 전자적 신청할 수 있는 민원사무를 확대(55종)하고, 전자적 민원신청시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풍선도움말, 작성 예제 등의 신청 관련 편의 기능을 구현함은 물론 G4C와 연계하여 전자적 민원 발급사무(45종)를 확대하는 등 전자 민원서식의 구축
  -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 상태정보를 세분화하여 제공하고, 유관기관 민원시스템 연계를 통한 FAQ 콘텐츠 정보 수집, 가공 등 민원 처리정보 제공 확대로 민원 편의성 제고
  - 온·오프라인 민원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민원통합관리대장을 구현하고 관리자 및 담당자가 민원의 진행 상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현황 및 통계정보 고도화

담당 : 정보화담당관 4급 이규원, 기능7급 김경애 ☎ 02-2110-7061

## □ 노사누리

-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보건업무의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법령 등 제도개선사항,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스템 개선('10.2~10월)
  - '09년에 추진한 노사누리시스템 분석 및 설계결과를 토대로 주요 개선요구사항을 우선 반영
  - 취업규칙 미신고사업장 조치 및 사업장정보 변경이력 관리 등 사업장정보의 관리체계 개선
  - 별도의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정안전관리(PSM) 프로그램을 노사누리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정보 활용도 제고
  - 추진일정
    - 사업추진계획 수립 : '10. 2월
    - 용역사업수행자 선정 : '10. 3월
    - 시스템 개발 : '10. 3~10월
- 지속적인 사용자 교육 실시 및 사용자 매뉴얼 갱신
  - 신규임용 및 초임 근로감독관에 대한 노사누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
  - 프로그램의 변경사항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 갱신

담당 : 정보화담당관 4급 이규원, 6급 송기영, 김정자 ☎ 02-2110-7060

## 나. 정보화 인프라 확충

### 1) 목적

- 노후 전산장비(PC, 프린터, 노트북) 교체를 위한 신규장비의 적기 보급 및 기 보유 전산장비의 안정적 운영·관리로 업무 효율성 제고
- 노후 통신장비 교체 및 네트워크 대역폭 확보 등 정보인프라 기반 강화
- 정보보안 강화를 통한 해킹 등으로부터 정보자산 보호

### 2) 추진내용

#### □ 최신 전산장비 보급 및 유지보수

- '10년 중 PC 1,700여대 신기종으로 교체 및 프린터 500여대 보급
  - 상반기(3월중, 자산취득비)
    - PC : 400대, 프린터 : 100대 보급, 노트북 30대
  - 하반기(8월중, 임차료)
    - PC : 2,000대, 프린터 : 500대 보급
    - \* 내용연수에 따라 PC는 4.8년, 프린터는 5.8년마다 교체
-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전산장비, 통신장비, 향온향습기 등의 유지보수 체제를 강화하여 시스템의 최적상태 유지
  - 전산장비관리 전문업체와의 유지보수 계약을 통한 지속적인 예방정비 실시

담당 : 정보화담당관 5급 임혜경 기능8급 이혜숙 ☎ 02-2110-7064

## □ 정보보안 수준 제고

- 주요 정보나 정보시스템이 도청, 해킹 등 조직 내·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훼손 또는 누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수행
- 보안솔루션 도입·운영 및 개인PC 보안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 정보보호시스템 업그레이드
  - 바이러스 및 웹 백신 프로그램 운영
  - 소속 직원들의 정보보안의식 제고를 위한 보안교육실시
- 정보보안취약점 진단 및 분석실시
  -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진단 분석
  - 보안취약점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따른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우리부 정보보안기본지침 개정(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배포)
- 노동부 및 5개 산하기관 통합 사이버관제센터 구축
  - 노동부 및 산하기관을 24시간 관제하는 사이버관제센터를 구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강화
- 정보보안 감사(본부 운영지원과와 공동실시) 및 불시점검 실시
  - ▲ ID 및 비밀번호 관리 ▲ 운영체제(윈도우즈)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프로그램 설치 ▲ 바이러스백신 설치 및 엔진 업그레이드 ▲ 네트워크 폴더 공유 ▲ 노트북 PC 관리 ▲ 해킹 프로그램 설치 여부 점검
- 문화관광부 합동 불법 S/W 사용 점검대비
  - 건전한 S/W보급을 위해 불법 S/W 사용 방지를 위한 수시 점검 및 필요 S/W보급

담당 : 정보화담당관 5급 임혜경, 6급 김윤선 ☎ 02-2110-7062

## □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 소속 직원의 정보화 활용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우리부 정보화역량 강화 도모
- 우리부 자체 정보화능력경진대회 실시('10.7월)
  - 지방청별로 실시 후 그 결과를 정보화기획팀으로 보고
- 문제출제는 외부에 위탁하고, 본부 직원이 출장하여 감독
- 시험과목은 직급별로 차이를 두되 업무 관련성이 큰 문서편집 및 인터넷 정보검색, 프리젠테이션 등으로 실시
  - 5급이상 : 기획문서 작성, 정보화 실용능력 및 정보화 전략 인터넷 정보검색
  - 6급이하 : 전자문서 편집, 정보화 실용능력 및 정보화 전략 전자문서 편집, 인터넷 정보검색
- 평가
  - 개인 : 직급별로 구분, 응시과목 종합득점 순으로 평가
  - 기관 : 기관별 참가자 평균 득점 순으로 평가
- 시상
  - 최우수 및 우수기관 각 1개 기관 포상
  - 직급별 최우수자(총 7명) 포상
- 직급별 성적우수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중앙경진대회('10. 10월) 참가

담당 : 정보화담당관 5급 임혜경, 6급 최정희 ☎ 02-2110-7055

## 다. 지식포털시스템 개선 및 인프라 확충사업

###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10. 30 ~ 2010. 1.28

### 2) 추진내용

- 내부직원용 메신저 도입
  - 기본기능 : 사용자상태표시(온라인, 오프라인, 자리비움), 1:1 1:N 대화 및 쪽지기능, 파일전송, 원격제어
  - 알림기능 : 온나라 문서 메모보고 도착알림, 내부메일 도착알림, 내부 게시판 등록알림
- 소통마당의 제안방 기능개선 : 개인제안, 현장제안이 관련부서가 여러개인 경우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모두 지정하고 답변 가능, 검토결과 등록시 부서장 승인, 우수제안등록개선
- e-정책토론방 기능개선 : 파일첨부기능 추가, 완료된 토론의 결과등록, 인쇄기능
- 지식마당과 홈페이지·온나라지식나라 간의 핵심지식 연계
  - 지식관리시스템에 핵심지식등록시 지식분류별로 관련된 홈페이지 자료실과 온나라지식나라(GKMC)에 지식연계기능 구현
  - 온나라시스템 문서접수 및 기안시 지식마당과 연계
- 핵심정보 상황판
  - 노사분규사업장수, 근로손실일수, 신규구인·구직인원, 알선·취업건수 등 핵심 행정지표
  - 산하공단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최신 핵심 행정지표를 업데이트하고 화면출력을 통해 활용

- 고용지원센터 인력관리 프로그램
  - 각 고용지원센터의 담당자가 인력현황을 입력, 본부에서 관리자가 월마감을 하면 각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더 이상 추가 및 변경 삭제할 수 없고 본부관리자만 수정가능
  - 본부에서 업무분야와 기간제 구분에 대해 추가 변경가능
  - 업무분야별, 과별 현황 조회가능
  
- 산업안전분야 3개 프로세스, 30개 단위업무개발
  - 석면조사 제외 확인신청,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변경, 작업신고

담당 : 정보화담당관 4급 김두희, 6급 안명희 ☎ 02-2110-7059

## 5. 민원처리업무 내실화

### 5-1. 민원사무 심사 철저

- 지방관서 민원사무심사관제 지정·운영 내실화
  - 관리과장을 민원사무심사관으로 임명하고, 고용지원센터 민원업무가 과다할 경우 분임민원사무심사관을 추가 지정
  - 민원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수시 확인·점검, 기관장 보고 등 구체적인 활동 실적 관리
    - \* 민원사무심사관의 임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참조
- 매월 1회 이상 민원사무 처리상황 확인·점검, 민원서류 장기방치 등 부당한 사항 발견 시 시정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처리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처리기간 경과 민원에 대한 즉시 독촉장 발부
- 민원서류 접수·이송·회신 등 민원사무 신속·적정 처리 및 국민신문고, G4C 등에 대한 처리결과 입력여부 점검
  -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민원담당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민원 구비서류의 징구 금지
- 민원통합관리시스템상 민원처리현황 모니터링 등 민원관리 기능 적극 활용
  - 기관·부서·개인별 민원처리건수 및 처리기한 준수율 등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를 활용, 민원처리현황 확인·점검

담당 : 고객만족팀 5급 최상률, 7급 정진호 ☎ 02-6902-8113



## 5-2.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철저

### 가. 운영현황

- 국민신문고 민원의 경우 신속·공정한 답변에 대한 민원인 기대가 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
  - \* 연간 7만건 정도 제기, 이중 종합상담센터에서 약 65% 처리
-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해 표준 답변안 마련, 처리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 등 추진
- 아울러, 적극적인 민원 대응을 통해 민원량 감소 및 답변 품질 제고를 위해 프로세스 개선 및 민간자원 활용
  - 노동법상 보호기준, 실업급여 수급 여부 등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e-자가진단 시스템(홈페이지) 운영
  - NHN, 공인노무사회와 제휴, 네이버 지식iN 노동법 전문가 상담서비스 오픈(6.30~, 정부부처 최초)
    - \* 6개월간 노무사 183명이 총 9,148건 상담 (1일 평균 60건 상담)
- 운영실적에 대한 외부기관(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 평가 결과가 크게 향상
  - \* 우리부는 '09년 평가결과 종합점수 5위(73.3점), 보통평가 11개 부처 중 1위를 차지 (처리기간 준수정도, 답변성실도 등 대폭 개선)

### 나. 중점 추진사항

- 국민신문고 민원 관서 및 부서담당자 관리 철저
  - 관서 및 부서담당자는 매일 1회 이상 국민신문고에 접속하여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신속히 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
    - \* 담당자 배정 이전에 불필요하게 처리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의

- 특히, 잔여 처리기간이 1일인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즉시 처리 또는 기간 연장토록 독려
- 기관장 및 관리자의 민원처리상황 확인·점검 철저
  - 처리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처리기간 경과 민원에 대해서는 일반민원과 동일하게 독촉장 발부 등 처리 독려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평가지표 준수 철저
  - 민원인 만족률 및 불만족률 향상 정도, 처리기간 준수 및 답변 성실도 등 주요 평가지표 중심으로 처리실적 관리
  - \* '10년 추가 예정인 불만족 민원에 대한 관리실적(“한마디 더”에 대한 추가답변 등록 등) 등 이행

담당 : 고객만족팀 5급 김영심, 7급 정진호 ☎ 02-6902-8113

### 5-3. 온라인 민원서비스 활성화

#### 가. 추진현황

- 민원신청 및 처리결과 조회까지 모든 민원절차에서 접근성·편리성을 제고하고자 온라인 민원서비스 강화 추진
  -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종이없는 그린 민원시대 개막, 온라인 민원서비스 선진화」 방안과 추진방향 공유·연계
    -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09년 1,500종, '10년까지 4,000여종 민원사무를 온라인화할 계획
- 이에 따라 대면상담, 의사표시 증명 등 지방관서 방문이 반드시 필요한 민원을 제외하고 모든 민원의 전자화
  - 기존 120종 민원사무 이외에 추가로 105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전자민원 신청서식 개발('10.6월 완료 예정)
    - \* 우리부 처리 민원 237종 대비 225종(95%)의 민원사무 전자화
  - 민원서식 작성 도움말, 샘플 등을 제공해 민원인의 서식 작성의 용이성 제고
    - \* 각 민원 분야별로 소관 실국 협조를 통해 마련(실무작업반 운영 등)
- 민원인이 보다 쉽게 자신의 민원처리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담당자 정보, 세부 처리현황 정보 등을 추가 안내
  - SMS 외에 콜센터 ARS, e-mail 등 안내 채널 확대 예정
- 민원처리결과 및 발급 민원서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거나 전자발급 형태로 타 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구현할 계획
  - \* 기존 9종의 서식 이외에 추가로 45종 확대 추진

## 나. 중점 추진사항

-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안내·홍보를 통해 활성화 추진
  - 특히, 인터넷 기반이 갖추어져 있는 사업장 및 민원인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신청의 이점 등을 알려 적극 권장
    - \* 인터넷 민원신청·처리 우수사례 적극 발굴·확산 추진
- 온라인 민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자체 추진 계획 마련·시행
  - 민원 신청건수 대비 온라인 민원 이용률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추진
    - \* 행안부 등 외부기관에서 민원사무 전자화율, 온라인 이용률 등 온라인 민원서비스 활성화 정도를 평가할 예정

담당 : 고객만족팀 5급 김남용, 6급 김형섭 ☎ 02-6902-8114

## 5-4. 민원상담실 운영 내실화

### 가. 운영현황

- 방문 및 전화 민원인 대상 민원 안내 및 상담 기능 수행을 위해 지방노동관서별도 민원상담실 운영(청·지청 관리과 소속)
  - 고용지원센터의 경우 직제상 별도의 민원상담실이 없고 안내데스크 설치 등 자체적으로 민원 안내·상담
    - \* 민원상담실의 업무범위 및 절차, 민력배치 등 운영에 관한 규정: 「노동부민원상담실운영규정(전부개정 2007. 8.10. 훈령 제644호)」
- 실태조사결과, 소속 공무원이 배치된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명예상담원, 공익요원 등 민간 인력을 상담업무에 활용
  - \* 민간 상담인력은 총 126명(명예상담원 47명 등 민원상담실 73명, 체불청산지원팀 53명)이며, 기타 운전기사 등 기능적 공무원 배치

### 나. 중점 추진사항

- 민원상담 인력 확보·배치를 통한 운영 내실화
  - 민원상담실 상담을 위해 근로감독 및 고용분야 경력이 있는 공무원 각 1명, 민원서류 접수자 등을 배치
    - \* 순환파견근무, 체불임금청산팀('09년 27개소→'10년 40개소)와의 연계 등을 통해 자체 인력 운용방안 마련·시행
  - 상담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노동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 있는 민간인을 명예상담원으로 위촉 운영
    - \* 민간인 채용시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및 처우개선 추진지침” 및 “노동부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이행 철저

- 당직자의 민원상담 수행을 통해 휴일·야간 민원상담 공백 방지
- 체불청산지원팀 설치 관서의 경우 민원상담실과의 적절한 역할 분배, 연계 상담 등 운영 내실화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실의 각종 시설, 장비 우선 배치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및 민원사무편람 상시 비치(인터넷 비치 포함), 각종 민원 안내자료 자체 제작·활용 등 추진

#### 다. 행정사항

- 지방관서 민원상담실 운영실적 보고 : '10.1.16(월)까지
  - \* 지방청별로 소속 기관분을 취합하여 제출

담당 : 고객만족팀 5급 최상률, 7급 정진호 ☎ 02-6902-8113

## 6. 전화민원 처리체계 및 상담서비스 개선

### 가. 추진현황

- 급증하는 전화민원에 대한 대응 능력 확충을 위해 상담인력 증원, 상담시스템 개선 등 전화상담 인프라 확충 추진
  - \* 노동부 고객전화량 1,500만콜, 최초 민원성 전화 700만콜 내외 ('08년 기준 추정)로 이 중 70% 이상이 고용분야임
- 고용분야 상담인력 증원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의 '고용콜센터' 추가 신설('09.7월, 상담인력 72명)
- 일선 고용지원센터로 직접 연결되던 1588-1919 민원전화를 '고용콜센터'로 이관, 집중처리를 통해 상담 품질 제고
  - \* 전화응대를 상승('09.7월 57% → '09.10월 99%), 만족 비율 74%
- 상담업무 프로세서 개선을 통해 전화민원 처리 신속·효율화
  - 민원처리현황 ARS 안내, 지방관서 위치 ARS 안내 간소화
    - \*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처리 등 민원인 빈발 문의 사항 및 본인의 신청 민원 처리현황 및 결과를 자동 안내
  - 응대 대기시간 안내 및 사후 콜백 예약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대기시간 및 시스템 부하 방지
- 표준 상담지식 DB 구축을 통해 상담업무 표준화
  - 고용분야 상담스크립트 개발, 각종 업무매뉴얼 관리시스템 도입 등으로 상담업무 일관성·투명성 제고
  - 「본부-지방관서-상담센터」간 상담지식 공유·활용을 통해 상시적인 상담지식 현행화 체계 구축
    - \* 노동기준 분야 상담지식 개발 등 상담업무 개선 방안 검토 계획

- 상담이력 및 고객정보 축적·공유를 통해 초기 상담에서 민원신청까지 One-Stop 상담서비스 제공
  - \* 콜센터 상담이력을 지방관서와 공유, 고객의 거듭된 설명을 줄이고 재상담에 따른 업무부담을 줄이는 효과
- 상시 전화응대 모니터링을 통한 상담 품질관리(QA) 강화
  - \* 본부, 지방관서 및 종합상담센터 등 전 관서 대상

## 나. 중점 추진사항

- One-Stop 상담서비스 체계 등 전화상담시스템 개선사항 이행
  - 종합상담센터로부터 민원전화 이관시 연계된 상담이력 및 고객정보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이고 일관된 민원 응대 제공
    - \* 상담센터에서 적용하고 있는 상담스크립트 등 상담지식에 대해서는 지속 체크를 통해 오상담 및 민원 야기 가능성을 견제
- 본부 주관 모니터링 외에 자체적인 추진방안 마련·시행
  - \* 전화응대 조사표 및 조사방식 등 연계 협조(본부)

담당 : 고객만족팀 5급 김남용, 6급 김형섭 ☎ 02-6902-8114



## 7. 노동민원행정 음부즈만 운영 활성화

### 가. 운영현황

- 민원현장 모니터링 및 제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학계, 국민, CS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노동민원행정 음부즈만」 구성('09.7월)
  - \* 위원장(송위섭 아주대 명예교수) 및 권역별·업무별 위원 총 36명 구성
- 전체회의('09.7월) 및 지방청 권역별 회의('09.11월)를 개최하는 한편, 지방청별 현장 모니터링 활동 수행
- 아울러 자발적 국민참여단(54명), 청년인턴 모니터링단(17명) 운영을 통해 일반국민 입장의 개선과제를 발굴
  - \* 제도개선 의견 제출 : 국민참여단 26건, 청년인턴 18건 등

### 나. 중점 추진사항

- 지방청 권역별 음부즈만 운영 활성화
  - 3월·11월경 전체회의(본부주관) 및 6월·9월경 권역별회의(지방청) 대비, 위원 섭외, 자료 준비 등 행사 사전 준비 철저
  - 지방청 관할 지청 방문 등 음부즈만 현장 모니터링 활동 실시
    - \* 위원의 현지조사 및 현장시찰 활동시 소정의 활동비 지급(본부)
- 노동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제고방안 적극 발굴·논의
  - 민원 현장활동을 통해 민원행정 시스템 운영, 민원제도 및 정책 집행, 고객응대 태도 등에 관한 개선의견 발굴
    - \* 지방청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CS정책 추진상황 자료 등 활용

### 다. 행정사항

- 음부즈만 회의결과 보고 : 회의개최 후 10일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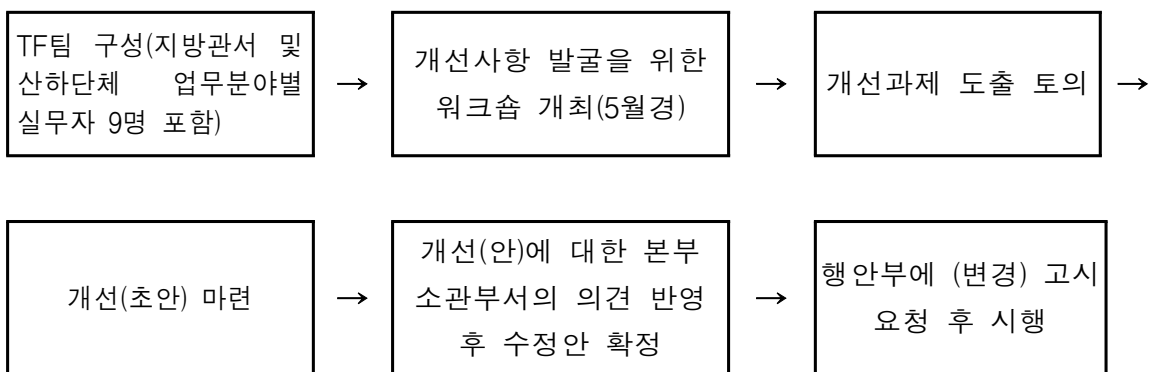
담당 : 고객만족팀 5급 최상률, 7급 정진호 ☎ 02-6902-8113

## 8. 고객관점의 민원서식 개선

### 가. 추진 목적

- 민원인 관점에서 노동민원 서식의 개선사항 발굴 후 불필요한 개인정보 항목 개선 및 용어순화, 안내정보 확대 등 개선 추진
- 민원신청 및 접수절차 간소화, 처리기간 단축 등 기타 민원 제도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

### 나. 추진체계 및 계획



- 지방관서 업무담당자와의 워크숍을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입력항목 개선, 용어순화 및 안내정보 확대 등 2차 개선 추진
  - 서식 전자화를 통한 항목 입력의 편의성 제고
- 범정부적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09년 71종 → '10년 300종)에 따라 구비서류 추가 감축을 추진하고
  - 고용보험 관련 사업장 및 피보험자 정보, 훈련기관 정보 등 관련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내부 확인 가능한 정보에 의한 감축

**【참고 : '09년도 서식개선 추진현황】**

- ※ 500여종에 달하는 노동민원 서식 일제 정비 후 총 280건, 215종의 민원 서식 개선 완료
-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입항목을 생년월일로 변경(관련 서식 86건)
-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으로 표기돼 애매모호했던 일부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특정서류로 구체화하거나 관련 서류 종류를 예시 또는 삭제(관련 서식 84건)
- 행정기관내에서 확인가능해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를 서식에서 제외(관련 서식 50건)
- 기타 향후 온라인화에 걸림돌이 되는 등의 불필요하고 복잡한 항목을 폐지·개선하여 서식을 간소화(관련 서식 60건)

#### 다. 중점 추진사항

- 범정부적인 행정정보공동이용의 확대('09년 71종 → '10년 300종)를 추진 중인바, 민원현장에서의 차질없는 적용 추진
- 민원상담 및 접수 처리시 개선된 서식 안내 및 적용('10.1월)
  - \* 개선된 서식 G4C(정부민원포탈) 고시 및 다우리(본부시달-국제협력국) 게시
-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민원서식 및 항목을 적극 발굴, 지속적인 제안 요망

담당 : 고객만족팀 5급 김영심, 6급 김형섭, 박문홍 ☎ 02-6902-8119

## 9. 공무원 친절운동 운영 내실화

### 가. 추진 목적

- 직원의 친절사례를 공유·확산하고, 불친절사례는 적극 대처를 통해 감소시킴으로써 신뢰받는 노동행정 구현

### 나. 중점 추진사항

- 친절 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장려
  - 친절의견 개선 민원인에게 별도 답변 대신 기관장 명의의 감사장 발송 자체 시행
  - 연 3회 이상 친절사례가 제기된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우대 등 기타 자체 포상 격려
- 불친절 직원에 대한 명확한 불이익 조치 이행
  - 당초 게시판 형태로 운영해 온 「불친절신고」를 국민신문고 민원과 연계함으로써 정식 민원으로 접수 후 민원인에게 회시하고 기관장 명의의 서한문 발송
  - 홈페이지 외에 지방관서로 직접 제기되는 불친절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장 관리하고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되도록 조치
- 특이행동 민원인에 대한 관리 강화
  - 소속 직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대해 악의적·상습적 문제 제기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해당 민원인 인적사항 및 문제제기 내용 등을 월 1회 본부 보고

### 다. 행정사항

- 직원친절운동 운영실적 보고 : 매분기 종료후 익월 10일까지
- 특이행동 민원인 보고 : 매월 종료후 익월 10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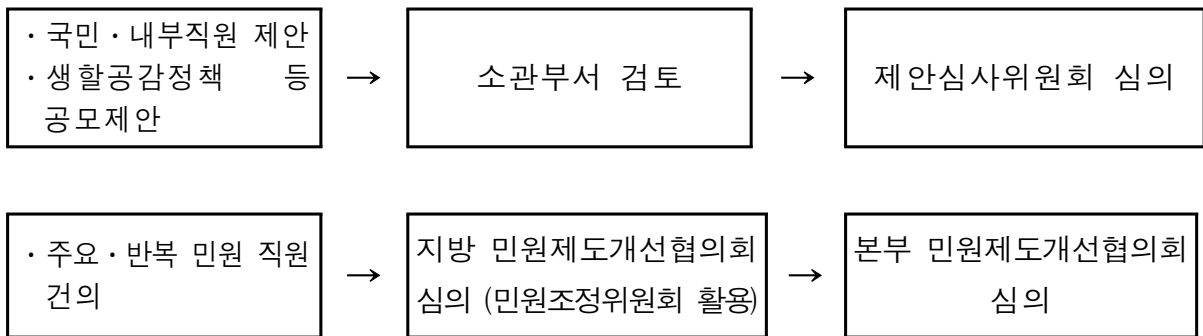
담당 : 고객만족팀 5급 최상률, 7급 정진호 ☎ 02-6902-8113

## 10. 제안 활성화

### 가. 추진 목적

- 국민들이 느끼는 제도상 문제점이나 불편한 점을 상시 발굴·개선하여 국민 체감의 민원서비스 혁신(생활공감정책) 추진

### 나. 추진체계 및 방향



#### ○ 제안 및 생활공감정책 발굴 활성화

- 내실있는 심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제안 채택률을 제고하는 한편, 우수 제안자에 대한 포상 강화

\* 생활공감정책 등 연 2회 제안 공모를 통하여 창의적인 정책 발굴하는 한편, 우수제안을 심사하여 상·하반기 포상 실시

### 다. 중점 추진사항

#### ○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을 통한 일선 현장 제안 활성화

- 지방관서는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반기 1회 이상 개최하여 민원제도개선 과제(제안사항)를 발굴하고 논의

\* 민원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관서는 통합 운영

- 주요 고충·반복 민원, 국민불편·기업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논의하되, 자체 개선이 어려운 과제는 본부(고객만족팀 및 소관부서) 제안 및 건의

○ 과장 책임심사제 및 사후관리 이행 철저(본부)

- 본부 담당부서는 과장 책임하에 제안취지 및 내용을 제안자와 충분히 논의하고, 노동행정 수요자의 입장에서 정책반영 적극 검토
- 제도개선 추진키로 한 과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사후관리 강화

라. 행정사항

○ 민원제도개선 자체 추진실적 제출

- 본부 각 실국 및 지방관서별 추진실적을 매반기 종료 익월 10일까지 고객만족팀에 제출(반기 1회)

\* 지방관서는 지방청별로 소속 기관분을 취합하여 제출

담당 : 고객만족팀 5급 최상률, 7급 정진호, 권명희 ☎ 02-6902-8113, 8219



# 대 변 인 실





**= 목 차 =**

<b>1. 홍보계획 수립 시행</b> .....	<b>673</b>
<b>2. 대언론 홍보</b> .....	<b>673</b>
2-1. 언론브리핑·보도자료 등 .....	673
2-2.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대응 .....	674
<b>3. 대국민 직접 홍보</b> .....	<b>675</b>
3-1. 온라인 홍보(홈페이지 관리 등) .....	675
3-2. 디지털 영상시스템 운영 .....	675
3-3. PCRM 운영 .....	676



## 1. 홍보계획 수립 시행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단계에서 홍보목표, 시기, 타킷, 수단 등이 포함된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시행
-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창출 목표하에 청년·근로빈곤층·여성·베이비붐 세대의 고용기회 확대에 중점
- 아울러 전임자 급여금지 시행('10.7월) 등 변화된 제도에 맞춰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 주력

### 【홍보 계획 방향】

- 사업별 성공사례 등을 중심으로 보도자료 작성, 배포하여 정책홍보 기능 강화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홈페이지, 블로그, 디지털 영상시스템 등) 고객 친화적, 쌍방향적 홍보
- 지방지 기획 연재, 광고 등 다양하고 전문화된 홍보

## 2. 대언론 홍보

### 2-1. 언론브리핑·보도자료 등

- 노동정책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신속·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홍보효과 제고
  - 정책별 중요도에 따라 기관장 또는 과(소)장 등이 역할을 구분하여 기자 설명회 실시
- 지방관서 차원에서 실시하는 주요정책은 물론 노동시장 동향, 노사화합 우수사례 등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활성화

- 체불임금 · 실업급여 · 고용유지지원금 실적 등 노동시장 현황
- 노사화합 · 상생 사례,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 연봉제 성공사례, 체불임금 구제 미담사례 등
- ※ 보도자료 작성방법은 「보도자료 매뉴얼(1월초 배부 예정)」 참조

담당 : 홍보담당관실 5급 이문규 ☎ 02-6902-8471

## 2-2.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대응

- 관내 지역 언론 보도내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신속 · 적절하게 대응방안 강구(정정·반론·해명·수용 등)하고 그 결과 해당실국 및 대변인실로 보고
- 모니터링 대상을 신문 · 방송에서 온라인 포털, 블로그 등으로 확대하고 사전 · 사후 및 환류체계(feed back system)확립
  - \* 문제보도 뿐만 아니라 우호적 보도에 대해서도 관심 표명
- 보도내용이 중요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언론사에 적극적으로 정정 · 반론보도를 청구함으로써 오보확대 재생산 방지
  - \* 문제보도에 대응할 경우 해당실국 및 대변인실과 사전 협의

담당 : 홍보담당관실 5급 이문규 ☎ 02-6902-8471

### 3. 대국민 직접 홍보

#### 3-1. 온라인 홍보(홈페이지 관리 등)

- 각(지)청 및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대하여는 각(지)청 관리과 및 기획총괄과에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
  - 각종 홍보자료(동영상, 팸플렛, 행사 등)는 실시간 업데이트 실시
  - 각(지)청 및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민원성 글 등록시 신속 정확하게 답변함으로써 민원 재발 방지

담당 : 홍보담당관실 5급 이일우

☎ 02-2110-7104

#### 3-2. 디지털 영상시스템 운영

- 지방청, 지청 및 고용지원센터에 설치된 디지털 영상시스템을 활용하여 노동정책 적극 홍보
  - 디지털 영상시스템의 콘텐츠는 본부에서 일괄송출하고 다만, 지방관서별로 필요한 행사, 슬로건 등은 텍스트화하여 자율적으로 실시간 표출 활용
  - 청(지청), 고용지원센터별로 디지털영상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고장 등 문제 발생시 신속하게 조치 요망
  - \* 대변인실에서 운용에 필요한 담당자 교육 및 시스템 관리업체를 통한 고장수리 등 지원

담당 : 홍보담당관실 5급 최삼흠

☎ 02-2110-7099

### 3-3. PCRМ 운영

- 정부와 국민의 공감대를 확대하고 원활한 정책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메일을 통한 정책홍보서비스(PCRМ) 구축 운영
  - 각종지원금, 노사관계제도 등의 정보(보도자료, 정책자료, 여론조사 등)발생시 해당 정책고객에게 신속히 이메일 서비스 실시
- 정책고객 명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회원정보를 갱신하는 등 D/B관리 철저
  - 월별 개봉률 5%미만 고객을 파악하여 명단삭제, 신규고객 추가 등록 등 고객관리 철저
  - 사업장간담회, 워크숍, 각종행사시 정책고객 명단을 확보하여 등록하는 등 DB관리 운영 철저
  - \* 필요시 대변인실에서 PCRМ 담당자 교육 및 운영 지원 실시
- '10.2(예정) PCRМ 서버 및 프로그램 교체로 지방관서를 상대로 담당자교육 실시 예정
  - 기존 PCRМ의 각종 통계 및 템플릿 부족 등을 보완한 새로운 프로그램 교체를 통한 PCRМ 운영 활성화 기대

담당 : 홍보담당관실 6급 임준석

☎ 02-2110-7101

# 감 사 관 실





## = 목 차 =

<b>I. 지난해 주요성과 평가와 한계</b> .....	<b>681</b>
1. 지난해 주요성과 평가 .....	681
2. 한계 및 문제점 .....	682
<b>II. 2010년 감사여건 및 방향</b> .....	<b>683</b>
1. 감사여건 및 환경 .....	683
2. 감사중점 추진방향 .....	683
<b>III. 2010년 감사계획</b> .....	<b>684</b>
1. 정책과 집행의 연계 강화 .....	684
2.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687
3.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	688
4. 공직윤리 의무 준수 .....	691
5.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	693
6. 지도방문 조정·통제 .....	693
7. 감사행정의 질적수준 제고 .....	694
<b>IV. 행정사항</b> .....	<b>695</b>
1. 공직기강 확립 관련 .....	695
2. 청렴도 향상 관련 .....	695
3.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	695
4. 사고보고 철저 .....	695



# I. 지난해 주요성과 평가와 한계

## 1. 지난해 주요성과 평가

### □ 정책과 집행의 연계강화 및 감사 수용성 제고

- 지방관서(23개소) 및 산하기관(3개소) 종합감사, 주요 사업 정책 점검(3건), 위탁사업 및 보조금 지원단체 등 감사를 실시하여
  - 문제점 시정 및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본부·지방관서·산하기관간 정책과 집행의 연계를 강화
- 감사의 전문성·공정성 제고 및 처분의 적정성 향상, 종합감사에 대한 피감기관의 수용도 조사 등 감사 품질을 제고
  - ⇒ 감사원의 자체감사기관 운영실태 평가(5개 분야, 16개 지표)에서 국가기관 39개 부처 중 1위 (기관표창 및 기관운영감사 1회 면제)

### □ 적극행정 토대를 마련하여 고용위기 조기 극복 지원

- 적극행정 면책규정 시행('09.3), 재정 조기집행, 고용위기 대책 추진 실태 및 대응노력 점검 등 고용위기의 조기 극복을 지원
- 무사안일·복지부동에 대하여 엄정조치하고, 우수사례 발굴, 수범공직자 발굴 포상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진작

### □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조직의 안정성 확보

- 공직기강 감찰(4회 67개 기관),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09.8),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09.8) 등 마련으로 기강확립 및 조직의 안정성 확보
- 외부강의 신고 전산화, 공무원 행동강령 요약본을 제작 배포 및 숙지 지시, 청렴도 체크리스트 개발 보급 등 직원 청렴의식 제고
- 소속기관(관리자) 및 산하기관에 대한 기관운영 점검 및 교육(2회, 16개소, 2,093명) 감찰강화로 정부개혁에 기여

## 2. 한계 및 문제점

### □ 감사 인력 등 한계로 능동적, 정책감사 등 미흡

- 정책감사로의 감사방향을 전환하고, 집행과 본부 정책간 연계, 제도개선과제 발굴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 전문성 및 인력부족으로 일상적·관행적인 감사가 지속되어 정책감사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은 실정
    - ※ 정책감사에 대한 수용도(긍정적 응답비율)가 68.8%에 불과('09.감사 수용도 조사)
  - 주요정책 수립과정에 감사인의 참여가 제한되어 정책 수립, 성과 평가 등 정책의 전 과정에서 감사 활용 미흡
- 조직 확대, 사업이 복잡·다양화되는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할 감사 인력 등 인프라는 크게 미흡
  - 자체 감사기구에 의한 능동적 감사보다 국감, 언론 등 지적에 따른 수동적 감사

###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낮은 실정

- 강도 높은 청렴도 향상대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올해 청렴도는 지난해에 비해 하락
  - ※ 종합청렴도가 10점만점 중 8.11점(외부 8.49, 내부 7.41)으로 전년도에 비해 0.09점 하락하여 21개 중앙부처 중 19위
  - 이는 상당수가 신규직원으로 전문성 부족과 과도한 업무에 따른 민원인의 불신,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따른 낮은 조직 만족도에 기인

### □ 공직기강 해이 사례 지속 발생

- 음주운전, 폭행 등 공무원 범죄의 증가, 신고사건의 송치지연, 외부강의 미신고, 훈련비 지원금 횡령시도, 일부 관리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공직기강 해이사례도 지속 발생

## Ⅱ. 2010년 감사여건 및 방향

### 1. 감사여건 및 환경

- 2010년은 선진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안정적 국정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로
  - 직무 수행시 법과 원칙의 준수와 아울러 공직자에게는 엄정한 기강과 투철한 사명감이 요구되고, '제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는 배격
- 특히,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의무와 국정과제의 소극적 추진 행위 척결이 강조되는 시기임
  - 사소한 실수나 사건이 국정운영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예방에 철저
- 경제상황의 호전이 지연되면서 고용불안이 계속되고 신고사건 및 지원금 신청 등 노동행정 수요는 지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
  - 업무의 다양화·전문화에 따른 감사의 전문성 강화 및 정책감사(점검)의 수요가 증가

### 2. 감사중점 추진방향

- 법과 원칙을 확립하여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
- 무사안일, 보신주의 타파 등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향상을 통해 신뢰받는 노동행정 구현 지원

- 법과 원칙을 확립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
  - 기강감찰 및 각종 감사를 통하여 직무수행시 법과 원칙의 준수여부 점검으로 준법의식 정착
  - 주요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국정과제 지연행위 및 갈등조장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 대응

- 적극 행정 장려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
  -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적극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대하여 면책 등 적극행정을 장려
  - 조직내 일하는 분위기 저해요인, 연고·온정주의, 끼리끼리 문화 배격 등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 본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중요성, 시의성, 효율성에 대한 감사(점검)를 적기에 실시하여 정책에 대한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
-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노동행정 신뢰 회복 및 청렴도 제고
  - 기본적인 공직윤리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함으로써 노동행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 비리발생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 및 기관(관리자 포함)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기강확립, 청렴도 향상

### Ⅲ. 2010년 감사계획

#### 1. 정책과 집행의 연계 강화

##### 가. 종합감사

- 감사대상 : 별도계획 수립 및 시달(1월)
  - 총 29개소(청 3, 지청 19, 위원회 7)
    - ※ 종합감사를 받고 2년 이상 경과한 기관(위원회는 3년)
- 감사 중점
  - 본부 정책의 적절한 집행여부(산하기관 위탁업무와 연계)
  - 보조금 사업 및 지원금 등 예산의 부적정 집행여부
  - 실·국에서 제출한 감사 착안사항 점검
  - 도덕적 해이, 대민업무 시 불필요한 민원야기 사례, 민원방치 등
  - 금품·향응수수의 개연성이 많은 분야

-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일을 태만히 하거나 하지 않는 직원
- 감사방법 및 조치
  - 감사요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한 감사반 편성으로 감사효과 극대화 및 간담회, 강평 등을 내실화 하여 감사 수용성 증대
  - 감사결과 피감사기관의 소명·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정하게 조치하되,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는 관련규정에 따라 면책함으로써 적극행정 장려
    - ※ “한 일에 대한 감사” 관행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데 대한 감사”로 전환
  - 무사안일 등은 엄정조치하고 상급자에 대해서도 지도감독 소홀 및 연대책임을 물어 팀플레이 및 책임의식 고취
    - ※ 무사안일자 : 업무실적 저조(하위 10% 등), 지시 및 의무 불이행 등
  - 주요 지적 및 수범사례를 전파하여 업무의 정확성·통일성 제고
    - ※ 수범공직자 발굴 표창 : 1-9월간 10명을 선정, 11월에 포상 실시
  - 피감사기관의 감사수용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체 감사 개선방안 도출(11월 중 1회 실시)

## 나. 정책 성과감사

- 본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중요성, 시의성, 효율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책임성 및 노동행정 효율성 제고
- 감사대상 : 별도계획 수립(수시)
  - 보조금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예상치 못한 집행상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
  - 장·차관 지시 또는 사업국에서 감사를 요청하는 문제사업
  - 집행이 정책목적과 괴리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 비리소지, 중대한 예산낭비, 그 외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 발생 또는 예상 사업(중요성, 효과성 등을 고려)



- 감사방법 및 조치
  - 주요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효과 등을 점검하고, 산하기관 관련사항은 노동부와 유기적 연계 시행여부를 점검
  - Pilot study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필요시 해당 사업부서의 지원을 받아 실시
  -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정책의 기본목적, 효율적 업무 집행, 고객편의 관점에서 개선방안 제시 및 개선 등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 다. 산하기관 감사

- 산하기관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감사하여 우리부 정책추진 방향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 개선함으로써 노동정책의 효율화 도모
- 감사대상 : 한국폴리텍대학(3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10월)
  - ※ 필요시 기타 산하기관 추가선정
- 감사방법 및 조치
  - 감사방법 및 조치는 위 「가. 종합감사」를 준용
  - 감사결과 우수직원은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 격려 또는 포상조치

#### 라. 일상감사

- 비리발생이 우려되고 사후 감사로는 원상회복이 어려운 분야의 예상 문제점을 사전 점검하여 시행착오 및 행정·재정상 낭비 방지
- 감사대상
  - 5천만원 이상 국유재산의 취득·매각·사용(수익)허가, 고정자산(토지, 건물 등)의 교환 양여 등
  -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제조(인쇄) 및 용역
  - 추정가격 1억 이상 시설공사 등
- 감사방법 및 조치

- 사업추진의 합목적성, 효과성, 위법·부당성, 회계처리의 투명성, 계약의 적정성 등을 검토 의견통보

※ 일상감사 실시지침('08.8)

#### 마. 자율감사 시범실시

- 분야별로 소속기관 스스로 자체점검·시정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자체 자정노력 및 업무능력을 제고하고, 감사관실 인력의 효율적 활용 도모
- 자율감사 대상 : '10년도 감사대상 중 3개소 내외
  - ※ 분야별 기관평가 우수기관 등 선정
- 자율감사 범위 : 관서운영경비 적정집행 등 지정분야
- 감사방법 등 : 자율감사 매뉴얼 배포 등 별도 수립·시달(2월)

## 2.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가. 공직기강 대책 수립 : 별도 수립·시달(2월중)

- 국무총리실 지침(2010년 1월중 시행예정)을 토대로 우리부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수립

#### 나. 공직기강 감찰

- 감찰대상 및 시기 : 별도 수립·시행(수시)
  - ※ 정기(설, 하계휴가, 추석명절 전후) 및 수시감찰
- 중점 감찰분야
  - 복무기강 및 공무원행동강령, 청렴도 향상시책 추진사항
  - 민원 등 각종 현안업무 처리현황
  - 기관장 등 관리자·직원의 동향, 무사안일, 인사·근무평정 및 예산집행 적정 여부

- 본부 지시사항 등 이행여부
- 기타 일하는 분위기 저해 및 조직의 비효율 유발 요인
- 감찰방법 및 조치
  - 예산의 부적정 집행 등 도덕적 해이, 금품수수 등 섬기는 정부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공직윤리 위반행위를 불시점검하여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한 조치(온정주의적 처벌 지양)
    - ※ 외부강의 미신고, 음주운전, 신고사건 송치지연, 성매매, 보조금 부당수령, 사업장 점검에 노무사 대동 등
  -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에 기인한 국정과제 지연행위 및 갈등조장행위에 대하여 엄중 조치
  - 상시 여론청취를 통해 부조리 개연성 내재자, 기관장 등 관리자 및 기관의 동향을 수시파악(문제관리자 상시감찰)

### 3.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 가. 청렴도향상 종합대책 수립 : 별도수립 · 시행(1-2월)

- 국민권익위원회 지침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 · 시행
- 외부청렴도가 계속 하락하는 분야(근로감독관련 신고사건 처리), 내부청렴도 취약 영역 향상 방안 강구(예산집행, 부당지시 등)

#### '09년 우리부 청렴도 실태(국민권익위 측정)

- **종합청렴도는 8.11점으로 전년도 8.20점에 비해 0.09점 하락**
  - 중앙부처 및 위원회 21개 중 19위로 전년도에 비해 4단계 하락
    - \* 전체 조사기관 39개 중 35위
- **외부청렴도는 8.49점(0.32점 ↑)으로 중앙부처 21개 중 20위**
  - 민원인들의 금품향응 및 편의 제공 등 부패지수는 향상된 반면, 근로감독 업무의 투명성, 책임성 지수는 하락
- **내부청렴도는 7.41점(0.88점 ↓)으로 중앙부처 21개 중 18위**
  - 전체 영역이 모두 하락하였으며 특히 ①업무지시의 공정성, ②위법 · 부당한 예산집행이 가장 낮음

## 나. 공무원 행동강령의 숙지 및 이행

- 행동강령 요약 및 상급자 부당지시 유형을 업무용수첩에 인쇄 배포하여 각종 감사시 숙지 및 이행여부 점검
- 기관장 미승인 외부강의·회의참석, 통상의 지급기준을 초과한 고액대가, 잦은 외부강의·회의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사례 등에 대한 엄중경고 및 교육 철저
-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불이행에 따른 조치기준 마련(1-2월)

## 다. 직무관련 범죄 고발 확행

- 공금횡령, 뇌물수수, 배임 등 부당이득 또는 재물취득 관련 범죄,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준 범죄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필요
- 단, 횡령 또는 뇌물수수, 향응제공을 받은 금액이 200만원(공소 시효내의 누계금액) 이상 등은 반드시 고발
- ※ 노동부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09.8)

## 라. 부패행위 신고의무 철저

-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 신고기관에 지체없이 신고
- ※ 신고 기관 : 수사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사정기관 (소속기관의 장, 각급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감사관실)
- ※ 신고의무 한계시점 : 부패행위가 수사·감사기관에 적발되기 이전
- 부패행위자의 신고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직근 상급자, 차상급 감독자 및 소속부서의 동료직원 등 그밖에 공직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 요구
- ※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09.8)

#### 마. 상급자 부당지시 근절

- 부당지시 근절을 위해서는 기관장의 강력한 의지와 간부의 솔선수범이 매우 중요
  - 직협 또는 직원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여론을 파악하여 부당지시 시정 및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노력 전개
- 부당한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행동강령 책임관 등의 직무수행 실태 수시점검
  - ※ '09년 내부청렴도 중 부당한 업무지시가 10점 만점에 0.46점으로 극히저조
  - ※ 노동부공무원행동강령(훈령 제689호)호 별표 “부당지시의 판단기준 및 유형
- 직원들의 고충 및 직장내 위법 부당내용을 감사관실과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 신고 시스템 등 마련(정기 및 수시신고 활성화)
  - ※ 관리자 등의 부당한 지시 등의 제보는 신속히 조치하고, 제보자 익명성 보호 철저

#### 바. 클린신고센터 설치·운영

- 금지금품 등의 반환신고·접수·처리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접수를 위해 행동강령책임관 책임 하에 기관별 클린신고센터 설치·운영
  - ※ 금지금품 : 노동부행동강령 제14조 및 제17조에서 정한 금품
- 각급 기관은 월례조회 또는 정신교육시 행동강령관련 상담 및 클린신고센터의 취지를 적극 설명하여 운영 활성화 도모
- 금품반납자, 부패방지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채택된 자, 청렴한 공·사생활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등에 대해 포상
  - ※ 클린공직자를 선발하여 표창 및 포상(수시)

## 사. 청렴위원회 내실화

- 직할기관, 지방관서, 노동위원회는 자체실정에 맞는 청렴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기 1회 이상 회의개최 등 운영
  - 업무추진과정에서의 부정부패 유발요인 발굴·개선, 반부패 교육·홍보,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방안 강구 등 내실있는 청렴도 향상활동 전개

## 아. 윤리청렴 교육

- 공직기강·청렴도향상·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감사관 순회교육 실시 (연 1회)
- 사이버 윤리청렴 교육의 지속 실시 (과정명 : 클린 9.9 스마일 노동부)
- 신규채용자 및 2주 이상의 교육과정에 '청렴공직자상 정립 과목을 운용
- 공무원행동강령, 청렴행동수칙 등 청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특히, 내부고발제도, 이해관계 직무회피 제도 등 그간 다소 소홀히 취급된 부분을 교육 강화

## 4. 공직윤리 의무 준수

### 가. 공직자 재산등록(공직자윤리법 제5조)

- 재산등록 의무자 : 4급이상 및 감사관실 근무자, 산하기관 이사·감사 이상 상근임원
- 정기 재산변동사항 안내 : 전년도 변동사항을 2월말까지 신고
- 신규 및 퇴직자에 대해 철저한 신고안내
- 고지거부 및 금융자료 사전조회 안내 및 금융조회 강화
  - 신고사항 누락, 허위신고 등은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및 자체 기준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엄정 조치
- ※ 3급 이상 및 감사관실 직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

#### 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부패방지법 제82조)

- 대상 : 비위면직으로 파면, 해임 및 당연 퇴직된 자
- 취업제한 기간 및 기관
  - 퇴직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또는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
-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조사 및 조치
  - 비위면직자에게 취업제한제도를 안내
  -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보되는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조회 결과'를 토대로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를 확인
  - 해당자에 대해 취업제한제도 안내 및 위반시 고발 및 해임을 요구

#### 다. 퇴직공직자 취업승인 및 취업제한(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

- 취업제한 대상자 : 재산등록의무자
- 취업제한 기간 및 기관
  -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 부서업무와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행안부 고시)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
- 퇴직공직자 취업절차
  - 취업제한 대상업체에 취업 희망시 감사관실에 취업승인신청서 제출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필요

## 5.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 다우리 메인화면에 “칭찬릴레이” 코너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
  - 칭찬릴레이 적극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활성화 도모(모범사례 적극 발굴 포상)
- 일하는 분위기 저해요인 조치 및 사기진작
  - 기강감찰, 제보 등을 통하여 일하는 분위기 저해요인을 찾아 제거함으로써 조직 분위기 쇄신
  - 공정한 인사 및 투명한 예산집행, 부당한 언행·요구·지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 각종 감사·감찰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와 지연처리는 관용조치
  - 수범공직자 발굴·포상으로 사기진작

## 6. 지도방문 조정·통제

- 불요불급 또는 중복 지도방문을 억제하고 합동 지도방문을 활용함으로써 일선기관의 불편을 감소
  - ※ 적용범위 : 본부직원의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도 방문(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 지도방문의 조정·통제 기준
  - 불요불급한 출장, 지침시달로 목적달성이 가능하거나 서면보고 또는 전화 등으로 대체 가능한 사항은 출장을 억제하고, 시기, 기간 및 인원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
    - ※ 새로운 사업의 시행 및 확대 등 불가피한 지도방문은 예외
  - 연간기본계획에 없으나 불가피하게 일선기관을 방문해야 할 경우에는 전월 20일까지 지도방문계획 및 월별 조정계획을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지도방문 실시
    - ※ 행정감사규정 제29조 및 지도방문조정통제규정(훈령 제528, '00.12.29)



## 7. 감사행정의 질적수준 제고

### 가. 감사의 품질관리 제고 및 감사결과 사후관리

- 감사착안사항 발굴, 감사업무수행에 대한 자체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감사품질 제고와 감사인 자질 향상
- 감사 지적사항 처리대장 비치 및 사후관리자 지정으로 사후관리 강화
- 종합감사 등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 현황 등 정보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나. 노동부·산하기관 합동 워크숍 및 감사관련 정보교류 활성화

- 노동부와 산하기관 감사담당자 등 합동 워크숍 개최로 감사정보 교류 및 상호 유대 강화로 일관성 있는 노동행정 업무수행(연 1회)
  - ※ 타부처 감사부서와 정보교류 등도 활성화
- 감사관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토론회 또는 워크숍 수시 개최
- 감사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침 등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감사커뮤니티(감사포럼) 활성화를 통한 정보교류 활성화

### 다. 감사인 역량강화

- 업무 및 조직확대에 따른 감사관실 인력충원 노력
- 감사원의 교육과정(감사전문, 회계과정 등) 이수 의무화, 자체 학습의 날 운영 등
- 감사실 주관하에 사업부서와 워크숍 실시 등 정보교류

### 라. 감사규정 개정

- 재심청구에 대한 별도 심의기구 필요, 처분기준의 현실화 및 명확화, 산하기관의 감사규정과 일관성 및 연계필요 등

## IV. 행정사항

### 1. 공직기강 확립 관련

- 관서별로 '10년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추진 및 실적보고(별도 시달되는 대책 참조)

### 2. 청렴도 향상 관련

-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시달(본부, 1-2월)
-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시달에 따라 관서별로 기관실정에 맞는 자체 청렴행동실천 세부계획을 수립·추진(소속관서 및 산하단체)
  - 자체 감찰활동, 청렴위원회 구성·운영, 부패친화적 문화 개선, 내·외부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향상 방안 등
- 각 기관별 전직원 윤리청렴 교육 실시
  - 지방관서 감사관 순회교육(연 1회)
  - 소속관서 : 분기 1회 이상 기관장 또는 외부강사 활용

### 3.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 공무원행동강령 운영실적 제출 (매반기말 익월 10일까지) : 소속관서
- 공무원행동강령 운영실적 자료입력(제로미) : 반기말 익월 31일)
- 부패방지시책 추진실적 제출(국민권익위) : 6월, 10월
-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반기별 자료입력(제로미) : 7월초

### 4. 사고보고 철저

- 노동부 감사규정 제13조(사고보고)에 따라 5개 항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감사관실로 보고
  - 사안에 따라 미보고 및 지연보고시 기관문책(기관평가 반영)
- ※ 사고보고 항목 : ①소속직원의 비위행위가 언론 보도 등, ②도난 및 화재발생, ③감사원 등 타기관의 점검시, ④경찰 등 수사관련, ⑤기타 비위사실



# 운 영 지 원 과



## = 목 차 =

1. 정보공개제도 운영 내실화 .....	701
2. 보안관리 강화 .....	702
3. 당직근무 강화 .....	703
4. 기록관리 업무체계 정립 .....	704
5. 직원 복리후생 증진 .....	705
6. 어려운 이웃돕기 추진 .....	709
7. 직무중심의 합리적 인사운영 .....	710
8.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관리 철저 .....	713
9. 상 훈 .....	714
10. 명예퇴직제도 운영 .....	715
11. 교육훈련 정보제공체제 정비 .....	716
12. 블랜디드 교육훈련 도입·운영 .....	717
13. 우선구매제품 적극 활용 .....	718
14. 물품관리의 적정성 및 효율성 제고 .....	719
15. 공용차량 운영의 합리화 .....	720
16. 국유재산관리 .....	721
17. 국가채권관리 .....	722
18.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관리 .....	723
19.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 철저 .....	725
20. 초과근무수당 운영 철저 .....	727
21. 고위공무원 임용사항 변동시 연봉책정 .....	729
22. 청사 수급관리 .....	733
23. 시설공사 기술지원 .....	736
24.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 .....	737
25.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합리적 인력운용 정착 .....	739
26. 공무원단체 지원 및 관리 .....	741
27. 직장동호회 운영지원 .....	742



## 1. 정보공개제도 운영 내실화

### 가. 목 적

-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노동 행정의 투명성 제고

### 나. 세부추진계획

- 사전정보공개 강화
  - 소속기관 정보목록의 자동 공개 추진
    - ※ 각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개편 등을 통해 본부와 같은 적극적 정보공개 실시(정보화담당관 협의)
- 정보공개절차 준수
  - 정보공개청구서 처리기한 준수 철저
  - 결정기간 연장통지 시 연장내용 및 사유를 반드시 기재
  - 비공개(또는 부분공개) 통지 시 만족도 증진과 이의제기 최소화를 위해 근거법령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정보공개 수수료에 대한 관서별 계좌등록 추진
  - ※ 현재는 본부 통합계좌이나, 각 관서별로 분리 등록 실시 예정
- 정보공개업무시스템인 “열린정부”(https://admin.open.go.kr) 활용 철저(정보공개청구 등록·처리·관리 및 기타 답변사항)
  - ※ 우편, 팩스, 방문접수 된 청구서도 시스템 등록을 통하여 처리

### 다. 행정사항

- 2010년도 행정정보공개업무 추진계획 : 별도시달

담당 : 운영지원과(서무) 5급 이승우, 기록연구사 양은영 ☎ 02-2110-7450



## 2. 보안관리 강화

### 가. 목 적

- 보안환경 대응능력 제고를 통한 안정된 노동행정 구현
- 소속직원의 보안의식 제고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관리 강화

### 나. 세부추진계획

- 2010년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수립·시행
  - 비밀문서 및 암호장비·음어자재 관리 철저
  - 신규 임용자 등 소속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강화
  - 보호구역 지정관리 및 청사방호 계획 현행화
  - 정보보안관리 강화 및 불용PC 처리시 보안관리 철저
    - ※ 노동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참조
  -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매월 셋째주 수요일) 운영 철저
  - 기록물 폐기시 보안관리 철저
- 보안업무 내실화를 위한 정기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강화
  - 본 부 각 실국에 대한 보안 감사 강화(매년 실시)
  - 보안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 고취 및 신상필벌 확행

### 다. 행정사항

- 기관별 비밀보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제출
  - 상반기 : '10. 7.9까지, 하반기 : '11.1.10까지
- 기관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안감사를 실시하고 '10년 9월 30일까지 보안감사 결과 및 보안심사 분석 결과 제출
- 매월 마지막 근무일까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실시결과 제출

담당 : 운영지원과(서무) 5급 이승우, 7급 박성태 ☎ 02-2110-7452

### 3. 당직근무 강화

#### 가. 목 적

- 당직관련 규정 준수를 통한 청사방호 철저 및 일과후 긴급 사태에 대비한 신속한 연락체계 유지

#### 나. 세부추진계획

- 근 거
  -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행정자치부령 제76호)
  - 노동부당직및비상근무규칙(훈령 제516호)
- 당직근무자 준수사항 이행
  - 당직신고 및 지시사항 이행 철저
  - 당직근무지(재택당직 포함) 이탈금지 및 수시 순찰·점검 실시
  - 당직근무 인수인계 철저
  - 당직 근무기강 확립(음주행위 등 품위 손상행위 금지)
  - 재택당직자는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대기 및 당직전용 이동전화·직원 비상소집 명부 등 상시 소지
-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유지 및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간 비상연락체계 확립
- 청사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장비(CCTV)설치 등 보안대책 강구
- 재택당직 운영 기관은 침입경보 작동시 대응절차 수립·시행
- 당직근무 직원에 대한 교육강화
  - 특히 재택당직자에 대한 근무요령 등에 대한 교육 철저

#### 다. 행정사항

- 긴급사태 발생 즉시 해당 기관장 및 본부(당직실/운영지원과) 보고

담당 : 운영지원과(서무) 5급 이승우, 7급 박성태 ☎ 02-2110-7452

## 4. 기록관리 업무체계 정립

### 가. 목 적

- 본부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리업무 체계정립을 위한 기반 구축

### 나. 세부 추진계획

- 기록관리 기본계획 수립(본부 및 지방청)
  - 기록관 설치 대상기관은 매년 기록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기록관리 업무 추진
- 기록물 이관용역 예산 편성 추진(본부)
  - 다우리시스템, 온나라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이관·보존·활용을 위해 이관용역 예산 편성
    - \* 2011년까지 '04~'08 다우리시스템 생산 기록물의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 완료 추진
- 소속기관 기록관리 현황 점검 실시(본부)
  - 소속기관의 기록관리 현황 점검 및 현황 개선을 위한 점검 실시('10.6 예정)
- 기록관리업무 담당자 교육철저(본부 및 지방청)
  - 국가기록원에서 매 분기 실시하는 기록관리 교육 과정 중 반드시 1개 과정 이상 이수
  - 소속 지청 및 처리과 직원 대상 교육 2회 이상 실시
- 문서고 정리 및 최소 장비 설치(지방청)
  - 문서고 정리 후 보유 목록 작성·공개 실시(각 홈페이지)
  - 기록관리법에 의한 기록물 보존 설비 설치
    - \* 향온·향습(제습기 대체 가능)설비, 온·습도계, 소화설비(하론가스소화기), 보안장비(이중잠금장치 등)

### 다. 행정사항

- 지방청은 “기록관리 기본계획” 수립 현황을 '10년 3말까지 본부 운영지원과(서무)로 보고
- 소속기관에 대한 기록관리 현황 점검 실시('10년 6월중)

담당 : 운영지원과(서무) 5급 이승우, 기록연구사 양은영 ☎ 02-2110-7450

## 5. 직원 복리후생 증진

### □ 맞춤형 복지제도 실시

#### 가. 목 적

-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복지포인트를 부여,
- 부여된 복지포인트를 기본항목(단체보험) 및 자율항목에 활용하여 직원개인의 복지증진

#### 나. 운영방법

- 적용대상 : 우리부 소속 전 공무원
- 맞춤형복지 제도 구성
  - 기본항목 :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생명·장애보험, 입원의료비보험 등으로 구성
  - 자율항목 : 소속 공무원은 제휴카드(농협복지카드)를 통해서 자기개발, 건강관리, 레저/취미, 문화생활, 가정친화 등에 자유롭게 활용
- 복지점수 부여 (2010.1.1~12.31 기간 적용)

(P=포인트, 1P=1,000원, '10.1.1.기준)

구 분		부여기준	비 고
기본복지점수		전 공무원에게 300P 일률 배정	
변 동 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1년 근속당 10P 배정 (최고 30년까지 최고 300P 배정)	300P 상한
	가족복지점수	<b>배우자 포함 4인 이내로 하되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b> 배우자 100P, 자녀 1인당 50P 배정 직계존속등(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형제 자매 등) 1인당 50P 배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 <b>가족수당 지급대상 부양가족에 배정</b>

\* 연도 중 근속년수, 부양가족 변동이 있어도 복지점수 변경 없음(다음 연도 반영)

\*\* 연도 중 신분변동(신규임용, 퇴직, 휴직, 전출 등) 사유 발생시 월할 계산하여 복지점수 정산

- 맞춤형복지 세부 내역
  - 필수기본항목 : 생명/장해보험
    - 공무원과 그 가족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토록하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 보장한도는 최소 5천만원에서 최고 2억한도로 설정
  - 선택기본항목 : 입원의료비보장보험
    - 공무원 개개인 건강 및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입원 치료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보상
    - 입원 치료시 본인부담금의 90% 보장
    - 기타 암진단 및 뇌졸중, 심근경색 등 성인 질병에 대한 추가 보장을 통한 맞춤형복지제도 보완
  - 자율항목
    -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활용(레저,취미), 문화생활, 가정친화 등에 활용
    - 개인별 부여된 복지점수 범위 내에서 '10.12.15까지 사용

#### 다. 세부추진계획

- '10년 단체보험 설계(안) 확정 및 단체보험 계약 체결('09.12월)
- '10년 개인별 단체보험 가입('10. 1. 1)
- 개인별 복지포인트 부여 및 전산 등록('10년 1월)

#### 라. 행정사항

- 단체보험 가입 여부 선택 후 본부 제출('10. 1.1.)
- 보험사고(사망, 장애, 암진단, 입원)에 대한 보험금 청구 안내 철저
- 신분변동(입·퇴사,전·출입)에 따른 피보험자 자격변동 통보 철저
- 복지점수 사용액에 대한 지급신청 철저(매월 10일까지 : 전월 사용분)

## □ 직원휴양시설(콘도) 운영

### 가. 목 적

-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 및 여가선용 도모

### 나. 배분현황

(단위 : 구좌수, 일)

운영기관	운 영 구좌수	연간이용 가능일	비 고	운영기관	운 영 구좌수	연간이용 가 능 일	비 고
합 계	16	471	-				
본 부	3	88	직할기관, 노정회 포함	대구청	2	58	지청 포함
중노위	1	28	지노위 포함	경인청	2	58	지청 포함
서울청	3	97	지청 포함	광주청	2	56	지청 포함
부산청	2	58	지청 포함	대전청	1	28	지청 포함

### 다. 콘도 운영

- 소속 직원들에 대한 콘도이용 홍보 강화
  - 운영기관은 매월 1회 이상 소속 직원에 대한 이용 안내
  - 이용·신청이 주말, 여름·겨울 성수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잔여 이용가능일수(주말, 평일, 성수기별)를 사전에 안내
  - \* 연가활성화 차원에서 평일 사용 적극 권장
- 이용신청 접수 → 추천 → 이용자 선정 즉시 예약신청

### 라. 참고사항

- 콘도 추가구입 배분 시 운영실적 우수기관에 우선 배분
- 실적이 저조한 기관의 운영구좌는 실적이 우수한 기관으로 재배분

## □ 공제회 운영

### 가. 목 적

- 공제회원(노동부공무원) 상호간 부조 및 복리증진 도모

### 나. 운영내용

- 급 부

급부의 종류	지 급 요 건	지 급 액
퇴 직 금	사망, 퇴직, 타부처 전출시	불입기간에 따라 차등
조 위 금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시 (장인, 장모, 시부모는 제외)	본인사망시 50만원 기타 : 20만원
특별조위금	재직 중 사망에 따른 유족 생계 지원	1인당 1만원 특별회비
장례 용품	회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장례시	흉명칭·로고가 인쇄된 장례용품(2박스)
재해부조금	화재,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300만원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20만원 ~ 50만원
질병부조금	본인의 부상이나 질병치료로 인해 부담한 진료비가 100만원 이상일 때	"

- 대 부

- 공제회 회원으로서 6개월 이상 납부한 자에 대해 100만원 단위로 대부
- 현 이율은 연 8%, 상환기간은 1년 또는 2년 중 본인이 선택, 대출한도액은 500만원

### 다. 행정사항

- 신규 회원에 대한 회칙고지, 퇴직자에 대한 급부청구 안내 철저
  - \* 퇴직·전출자의 경우 공제회제도 미고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공제회퇴직금 청구 철저

담당 : 운영지원과(서무) 5급 이승우, 7급 허재행 ☎ 02-2110-7453

## 6. 어려운 이웃돕기 추진

### 가. 목 적

-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을 실천하여 사회구성원간 참여 정신을 공유함으로써 공동체문화를 조성·확대

### 나. 추진방법

- 명절과 연말 연시에 집중되던 어려운 이웃돕기 활동을 상시 위문과 봉사활동 체제로 전환
- '09년 자매결연 협약체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위문 봉사활동 실시
- 소외계층(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및 어려운 직원 방문 등 방문대상 다양화
- 현장 체험과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 나눔 실천

### 다. 주요 추진내용

- 어려운 이웃 및 직원 돕기 성금모금 운동 전개
- 연말연시 각종 이웃돕기 행사 참여
- 자매결연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봉사활동 실시
- 자매결연 사회복지시설 중·고등학교 재학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 소년소녀가장 지원, 크리스마스 쌀 구입, 사랑의 쌀 나누기, 사랑의 열매(희망2010나눔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 참여
- 수해, 가뭄 등 천재지변 발생시 재해구호활동 참여  
※ 사안발생시(추석 및 설날 등) 세부계획 별도 수립·시달

담당 : 운영지원과(서무) 5급 이승우, 7급 박성태 ☎ 02-2110-7452



## 7. 직무중심의 합리적 인사운영

### 가. 목 적

- 우리부 업무의 효과적 추진을 인사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인사를 운영하도록 함

### 나. 근 거

- 노동부인사운영규정(노동부 훈령 제681호, '08.12.26)
- 인사운영혁신지침(노동부 훈령 제697호, '09.4.14)

### 다. 기본방향

- 적재적소 원칙 : 직무요건에 따른 객관적 역량 평가로 최적격자 인선
- 실적주의 원칙 :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일 위주의 성과주의 인사로 공직경쟁력 제고
- 투명·공정 원칙 : 다면평가, 인사기준 공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공정한 인사구현
- 균형인사 원칙 : 지역, 성별, 출신 등 편중되지 않는 균형 인사 실현

### 라. 세부 추진계획

#### (1) 신속한 공무원 충원(채용)

- 9급 공무원 임용대기자 및 7급 신규공무원 신속 충원
  - 9급 공무원 임용대기자 : 결원 발생시 즉시 임용
  - 7급 공무원 : '10. 1/4분기 임용 예정
- ※ 9급 공무원 323명을 '09.10월 말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기 배정
- ※ 이와 관련하여 교육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OJT·멘토링제를 적극 실천하여 신규직원이 조기 업무 숙지

(2) 근무성적평가지 공정성·객관성 유지

- 근무성적 평가는 연공서열이나 친소관계에 의한 평가를 금지하고, 업무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
- 연초에 평가 대상자별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평가자는 성과계획의 달성도와 성과목표 수행과정을 수시로 점검·기록(주기적 성과기록 및 성과면담)하여 이를 반기별 근무성적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3) 인사기준 공개

- 인사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 확립
- 본부, 지방청·지청, 중노위에서는 승진 또는 전보시 인사기준을 내부전산망(다우리)에 공개
  - 업무형편상 예외를 적용한 경우 그 내용도 공개

(4) 기관·부서간 균형배치

- 전보·신규자 배치시 기관·부서간 정·현원 및 기존·신규 직원간 비율이 가급적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
- 소속기관장은 소속직원의 부서간 순환전보를 위하여 노력

(5) 인사운영 시 「인사운영혁신지침」 및 「노동부인사운영규정」  
숙지·이행

(6) 인사관련 일반 업무

- 성과상여금 지급
  - 성과상여금 지급의 공정성과 성과보상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지급시기·방법 등에 대한 지침 추후 시달 예정

- 공무원 승급대상자 호봉 승급업무 철저
  - 승급시기 : 매월 1일
  - 소속기관은 호봉승급 발령후 본부 보고
- 소속기관의 공무원 정·현원관리 철저 및 보고 철저
  -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제22조에 따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정·현원대비표 작성·보관
- e-사람(PPSS)의 자료 입력·관리 철저
  - 소속기관은 각종 임용사항(채용, 전보, 승진, 정규임용, 휴직, 직무대리 등) 발령 즉시 자료 입력
  - 소속공무원의 신상정보(학력, 자격사항 등) 변경시 본부 보고 (증빙서류 첨부)와 동시에 자료 입력
  - 호봉승급, 근무성적평가, 경력·가점평정, 다면평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반드시 동 시스템을 활용
  - 개인정보 훼손·누설 금지

담당 : 운영지원과(인사) 4급 박두하, 6급 전대환·장만순  
 7급 권연경·전황규·마윤경 ☎ 02-2110-7463

## 8.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관리 철저

### 가. 주요 추진내용

- 복무자세와 관련 기관별 실정에 맞는 수시점검 및 교육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
  - 특히, 명절·휴가·연말연시 등을 전후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기강해이 방지
- 5급 승진대상자들의 역량평가준비로 인한 업무소홀 또는 근무지 이탈 등 업무공백을 초래하는 행위가 없도록 조치
  - 수시 점검을 통해 복무규정 위반사례 적발시 문책(해당자 심사대상 제외 등)
- 연가 및 특별휴가 등 적극적 시행
  - 「자기계발의 날」, 「가족과 함께하는 날」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월례휴가제 등 연가사용 적극실시
  - 기관의 업무형편을 고려하고, 연가가 균형 있게 연중 분산 실시되도록 연가계획 수립 시행
  - 출산·여성보건·육아시간부여 등 특별휴가 적극 시행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탄력근무제 시행
  - 다른 기관 및 타 부서와의 업무연계성이 적고,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업무공백이나 대민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관의 실정에 맞는 탄력근무제 실시 권장
  - 1일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출근시간을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계발 및 능력발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행정의 생산성 향상 도모

담당 : 운영지원과(인사) 4급 박두하, 7급 전황규 ☎ 02-2110-7468

## 9. 상 훈

### 가.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행정안전부 「정부포상계획」 및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수하여 상훈업무 운영
  - ※ 「정부포상계획」, 「정부포상업무지침」은 '10.1월중 시달예정(행안부)
- 민간분야 포상은 본부 사업추진 부서에서 공무원 포상은 운영지원과에서 주관(개별 포상계획은 별도로시달)
-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정부포상 추천시 추천기한을 준수하고, 공적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적격자가 추천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퇴직자포상(공무원) 추천기한(소속기관→본부)>

구분	퇴직일(퇴직시기)	추천기한
정년퇴직	2010. 6월말	2010. 3. 31
	2010. 12월말	2010. 8. 31
기타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등 )	2009. 10월 ~ 2010. 3월	2010. 3. 31
	2010. 4월 ~ 2010. 9월	2010. 8. 31

### 나. 장관 표창(상)

- 장관표창계획 수립 · 시행 : '10.2월중
  - 장관표창(장관상 포함) 수요조사 : '10.1월중

담당 : 운영지원과(인사) 4급 박두하, 6급 연창석 ☎ 02-2110-7467

## 10. 명예퇴직제도 운영

### 가. 목 적

-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금전적 보상 및 특별승진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명예로운 퇴직을 유도하고 조직의 침체와 행정능률 저하 방지

### 나. 주요내용

- 지급제외자
  - 명예퇴직수당에 준하는 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자
  - 공무원으로 20년 미만 근속한 자
  -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자
  - 징계의결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 감사기관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
  - 정부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직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경력직공무원 및 정무직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기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 환수대상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경력직·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담당 : 운영지원과(인사) 4급 박두하, 7급 전황규 ☎ 02-2110-7468

## 11. 교육훈련 정보제공체제 정비

### 가. 목 적

- 교육관리 중심의 배우리를 종합교육훈련정보 제공 시스템으로 개편하여 효과적인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 나. 추진계획

#### (1) 교육훈련제도, 절차 등 안내

- 직무역량진단→ 자기개발계획 수립→ 수강신청→ 수강신청 변경(취소)→교육실시 → 실적 관리 등 업무방법 및 절차를 매뉴얼 형태로 제작 배우리에 게재
- 전화 또는 메일로 하는 질문내용을 Q&A형태로 게재

#### (2) 교육훈련 선택 지원

- 연간 수강 가능한 교육훈련 과정·내용·방법·시기 등을 연초에 일괄 안내(집체, 사이버과정)
  - 우리부 연간 교육훈련 과정, 타 부처 및 민간기관 교육훈련 과정 등

#### (3) 직무역량 진단 결과 제공

- 직원 개개인의 직무역량 진단결과를 연도별로 비교·분석하여 제공하여 교육훈련 참여의욕 자극
  - 직무별 필요역량과 자신의 현 보유역량과의 Gap을 객관화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추천

담당 : 운영지원과(교육) 4급 이수중, 6급 이종복 ☎ 02-2110-7478

## 12. 블랜디드 교육훈련 도입 · 운영

### 가. 목 적

- 이론과 실습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블랜디드 과정을 도입 · 운영하여 교육훈련의 실효성 및 업무 활용도를 높임

### 나. 추진계획

#### (1) 현행 교육과정 분석 및 블랜디드 과정개발

- 블랜디드 과정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이버 및 집체교육 현황 분석
  - 분야별 · 직무별 · 수준별 분석
- 고용, 근로감독, 산업안전 등 분야별로 블랜디드 과정 설계
  - 이론과 실습을 조화시키기 위한 사이버과정과 집체과정 연결
- 하반기 이후 실습 · 사례형 과정 중심으로 시범운영

#### (2)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TF 구성 · 운영

- 대상과정 선정, 교육내용 구성, 과정 개발 및 운영방법 등 결정
- 관련 실 · 국과 협의하여 노동행정연수원과 공동으로 추진

#### (3) 시범운영 결과를 보완하여 2011년부터 본격 시행

- 시범교육 실시 후 결과 평가 · 분석하여 문제점을 시정하는 등 피드백을 체계화

담당 : 운영지원과(교육) 4급 이수중, 6급 이종복 ☎ 02-2110-7478



### 13. 우선구매제품 적극 활용

#### 가. 목 적

- 중소기업제품 등 법령에서 의무 권장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 나. 근 거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및 제14조의3
-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 제3조
-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 다. 세부추진계획

- 「우선구매 해당 제품의 적극적 구매 추진권장」 지침 시달 ('10.3월중)
  - 우선구매품목 의무적 구매 및 법정 구매비율 준수
  - 관서별 우선구매실적 매분기별 확인 및 실적 저조관서 명단 공개

#### 라. 행정사항

- 각 기관은 '10년도 우선구매 자체계획 및 '09년도 실적은 아래 각 기한 내 운영지원과(재무)로 보고

우선구매 제품	대상기관	제출기한	비 고
중소기업제품	소속기관	'10. 1.15	
친환경제품	소속기관	'10. 2.26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소속기관	'10. 1.22	
사회적기업 생산제품	소속기관	'10. 2.12	

※ 각 실·국 주무과, 지방청, 중노위는 소속 기관의 실적 취합

담당 : 운영지원과(재무) 4급 윤상훈, 6급 심용태 ☎ 02-2110-7480

## 14. 물품관리의 적정성 및 효율성 제고

### 가. 목 적

- 물품·미술품(이하 “물품”이라 함) 관리의 적정화로 활용도 제고 및 물자절약에 기여

### 나. 세부추진계획

- 물품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침 시달('10.3월중)
  -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따른 물품의 취득 및 처분으로 물품 활용도 제고
  - 물품의 취득 및 처분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실물과 장부상 물품을 일치
  - '10.1월에 도입예정인 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해 물품 관리 철저
    - ※ '10년 1월 중 RFID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한 재물조사 실시
- RFID물품관리시스템 “사이버 갤러리”에 미술품 증감현황, 증감내역 입력 철저 및 연2회(1월, 7월) 미술품 관리실태 자체점검 실시

### 다. 행정사항

- 각 기관은 '10년도 물품관리보고서를 '10.2.20까지 조달청에 제출
  - 물품수급관리계획서 및 정기재물조사보고서는 RFID물품관리 시스템으로,
  - 물품관리운영보고서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 각 기관은 물품관리계산서를 '10.2.20까지 감사원에 제출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담당 : 운영지원과(재무) 4급 윤상훈, 6급 심용태 ☎ 02-2110-7480

## 15. 공용차량 운영의 합리화

### 가. 목 적

- 본부 및 지방관서 공용차량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 확보

### 나. 근 거

-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 다. 세부추진계획

-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 차량에 공무용 표시 부착의무 준수
- 공용차량 운영현황의 투명성 제고
  - '09년도 정수운영현황을 노동부 홈페이지에 등록('10.1월말 본부)
- 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우선 구매 권장
  - 공용 차량을 교체 또는 신규 구입시 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우선구매토록 지도
    - ※ 소속기관은 차량의 정수이체 또는 차량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본부의 승인요청 이행 철저

### 라. 행정사항

- 공용차량 운영현황은 '10.1.15까지 운영지원과(재무)로 보고

담당 : 운영지원과(재무) 4급 윤상훈, 6급 심용태 ☎ 02-2110-7480

## 16. 국유재산관리

### 가. 목 적

- 국유재산의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

### 나. 세부추진계획

-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전환, 교환 등 관리는 “국유재산법령” 및 “2010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에 의거 처리
- 국유재산 대장·등기부등본 등의 작성비치(국유재산법 제66조)
- 국유재산 실태조사 실시(국유재산법시행령 제68조 제4항)
  - 년 1회 이상 (국유재산 소관 기관)
- 전세보증금(무체재산권) 손실 방지
  - 청사임대차 계약시 기존 담보물권(전세권, 저당권 등) 유무를 조사하여 보증금 또는 전세금 환수에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확인
  - ※ 청사임대차계약에관한규정(훈령 제468호) 제4조(계약시 준수사항) 참조

### 다. 행정사항

- '09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집행실적은 '10.1.15까지 운영지원과(재무)로 보고
- '09년도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는 '10.1.29까지 운영지원과(재무)로 보고
- '11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은 '10.12.15까지 운영지원과(재무)로 보고

담당 : 운영지원과(재무) 4급 윤상훈, 7급 신유수 ☎ 02-2110-7485

## 17. 국가채권관리

### 가. 목 적

- 국가채권에 대한 적극적 환수업무 이행으로 국가채권의 손실방지 및 적정관리 도모

### 나. 세부추진계획

- 국가채권 강제이행조치 철저
  - 채권관리관은 국가채권 발생 즉시 채권내역을 수입징수관에게 통보
  - 수입징수관은 채권발생내역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전산입력 및 징수결의후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납입고지서 발부
  - 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를 불이행하여 독촉을 받고도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는 가압류 등 강제이행조치
- 미회수채권에 대한 자체 회수관리강화방안 마련·시행
- 국가채권에 대한 적극적 관리 및 회수업무 철저

### 다. 행정사항

- 각 기관은 '09년도분 국가채권관리계산서 등을 '10.1.31까지 운영지원과(재무)로 보고
  - 국가채권관리계산서 등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 제출사항 : 국가채권관리계산서 등 8종

담당 : 운영지원과(재무) 4급 윤상훈, 6급 심용태 ☎ 02-2110-7480

## 18.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관리

### 가. 목 적

-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사고에 대비하여 신원보증보험에 가입, 일정규모액의 국고손실 보전 등

### 나. 근 거

-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 제1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
- 노동부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훈령 제598호)

### 다. 세부추진계획

- 신원보증보험 계약 체결(갱신)

#### - 관리기관

본부(운영지원과), 각 지방노동청(관리과), 중앙노동위원회(사무국),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 종합상담센터

#### - 대 상

- 일반회계 · 특별회계 소관 수입징수관 · 재무관 · 계약관 · 지출관 · 출납공무원
- 각 기금 소관 수입징수관 · 재무관 · 지출관 · 출납공무원
- 위 각 회계관직의 대리자 · 분임자 · 대리분임자,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보험기간 : 만기일 기준 1년 단위

※ 현재 보험가입기간 : '09. 9. 11 ~ '10. 9. 10.

- 보상한도액 : 1인당 1,000만원
- 특별약관 : 추가위험부담특약 I, 직위식 단체계약특약, 대위권 제한특약
- 가입업체 : 서울보증보험(주) 예정
- 사고 발생시 조치
  - 사고 발생시 각 관리기관은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및 보험금 청구
    - \*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 회계관계공무원의 사고로 인해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보증보험 재가입 조치 이행 철저

#### 라. 행정사항

- 각 관리기관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보증보험계약 체결 (갱신) 철저
- '10년도 보험갱신 결과는 '10. 9.17까지 운영지원과(재무)로 보고
  - \* 보고양식은 추후 별도 시달 예정

담당 : 운영지원과(재무) 4급 윤상훈, 6급 김승희 ☎ 02-2110-7482

## 19.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 철저

### 가. 목 적

- 언론에서 가족수당 등 부당지급 사례가 보도되어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시 지적된 사실이 있음
-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의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점검 필요

### 나. 근 거

- 『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1조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3호)

### 다. 세부추진계획

#### □ 지급기준

##### ○ 가족수당

- 각 기관은 매년도 3월초에 가족수당 등 지급기준을 직원들에게 문서로 통보(부서별로 공람 등)
- 소속직원들은 수당 지급기준에 따른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신고서(자녀학비보조수당 포함)를 해당부서(경리)에 제출, 담당부서는 이를 확인 후 지급

\* 이와는 별도로 해당부서(경리)는 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주민등록등본 조회)하여 수시로 사실 확인

- 특히, 인사발령 시에는 수당신고서를 새로이 제출받아 확인 후 지급(기존에는 전출관서에서 수당신고서 송부받아 처리하였음)

##### ○ 자녀학비보조수당

- 매년 신학기(2~3월)에 자녀학비보조수당신고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지급



- 인사발령시에는 수당신고서를 새로이 제출받아 확인 후 지급 (다만, 증빙서류는 기존관서를 통해 확인)

## □ 자체점검 실시

- 점검시기 : 년 1회('10. 3월중)
- 점검사항
  - 가족수당
    - 부양가족 사망, 주민등록 세대분리 등 부양가족 변동사항
    - 부부공무원(배우자가 인건비 국고보조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포함)의 경우 이중수령 여부 등
  - 자녀학비보조수당
    - 자녀의 자퇴, 휴학 등 취학변동사항
    - 부부공무원(배우자가 인건비 국고보조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포함)의 경우 이중수령 여부 등
- 조치사항
  - 수당을 과다 지급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소멸 시효)에 의거 5년 범위에서 과다 지급한 금액 전액 환수
  - 거짓 또는 허위의 방법으로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액 전액을 환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수당 지급정지 및 징계 등 조치

## 라. 행정사항

- 각 관서장은 수당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 '10년도 자체점검 결과는 '10. 4.15까지 운영지원과(재무)에 보고
  - \* 지청 및 지노위는 '10. 4.10까지 청 및 증노위에 보고
  - \* 보고양식은 추후 별도 시달 예정

담당 : 운영지원과(재무) 4급 윤상훈, 6급 김승희 ☎ 02-2110-7482

## 20. 초과근무수당 운영 철저

### 가. 목 적

- 매년 언론에서 공직사회의 부적절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시에도 지적
- 수당 부당수령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지급실태 등 점검

### 나. 근 거

- 『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3호)

### 다. 세부추진계획

- 모든 관서는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 본부, 청, 중노위는 소속기관에 대하여 반기별로 2개소 이상 점검 실시
- 점검사항
  - 퇴근후 심야에 복귀하여 시간체크하는지 여부
  - 사적용무 후 초과근무 입력하는지 여부
  - 당직자 초과근무 입력 여부
  - 정액분 지급시 월간 출근일수가 15일이상인지 여부 등 확인
- 조치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과 부당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초과근무명령 금지

-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3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부당수령액은 환수조치하고, 가산징수액은 세입조치(과목 : 기타경상이전수입, 12-59-596)
- 가산징수액은 사전 고지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강제징수

#### 라. 행정사항

- 각 관서장은 수당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 '10년도 상·하반기 점검결과는 '10. 7.10 및 '11. 1.10까지 각각 운영지원과(재무)로 보고
  - \* 지청 및 지노위는 '10. 7. 5 및 '11. 1. 5까지 각각 청 및 중노위에 보고
  - \* 보고양식은 추후 별도 시달 예정

담당 : 운영지원과(재무) 4급 윤상훈, 6급 김승희 ☎ 02-2110-7482

## 21. 고위공무원 임용사항 변동시 연봉책정

### 가. 목 적

- 고위공무원 전보에 따른 연봉책정 시 해당관서 담당자가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함

### 나. 근 거

- 『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 『공무원보수규정』 제7장(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수)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3호)

### 다. 책정방법

□ 본부 국장(일반직고위) → 중노위 상임위원 또는 서울지노위 위원장(별정직고위)

#### ○ 기준급 책정기준

- 고정기준급과 신규채용 시 책정되는 기준급 중 유리한 기준급을 적용

#### ① 고정기준급 산정방법

- 아래 직위에 신규임용(e사람/인사근무사항/임용이력에서 반드시 확인)된 경우 기준급 책정 특례에 따라 기준급 하한액 적용 가능

중노위 상임위원, 지노위 위원장, 지노위 상임위원, 최임위 상임위원

#### ② 신규채용 시 산정방법

- 퇴직 후 별정직고위공무원으로 신규임용(e사람/인사근무사항/임용이력에서 반드시 확인)된 경우 신규채용시 기준급 책정방법 중 기준급 책정의 예외에 따라 퇴직 당시 기준급이 기준급의 자율책정범위(58,229~48,525천원)를 초과하는 경우 고위공무원 기준급 한계액의 상한액

(72,236천원) 범위 내에서 퇴직당시 기준급을 신규채용시 기준급으로 책정

- 직무급
    - 직무급 지급의 경과조치에 따라 '10년에는 10,200천원, '11년부터는 10,800천원 적용
  - 성과급
    - 공무원 경력자가 퇴직 후 30일 이내에 고위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 받던 성과급을 적용
- 센터소장(부이사관) → 지노위위원장 또는 상임위원(별정직고위)
- 기준급
    - “본부 국장(일반직고위) → 중노위 상임위원 또는 서울지노위 위원장(별정직고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책정
  - 직무급
    - 직무급 지급의 경과조치에 따라 '10년에는 3,600천원, '11년부터는 4,800천원 적용
  - 성과급
    - 공무원 경력자가 퇴직 후 30일 이내에 고위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 받던 성과급을 적용
- 지청장(서기관) → 지노위위원장 또는 상임위원(별정직고위)
- 기준급
    - 퇴직 후 별정직고위공무원으로 신규임용(e사람/인사근무사항 /임용이력에서 반드시 확인)된 경우 기준급 책정 특례에 따라 기준급 하한액 적용
  - 직무급
    - 직무급 지급의 경과조치에 따라 '10년에는 3,600천원, '11년부터는 4,800천원 적용

- 성과급
  - 공무원 경력자가 퇴직 후 30일 이내에 고위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 받던 성과급을 적용
- 지노위위원장(별정직고위) → 청 센터소장(부이사관)
  - 기본연봉
    - 퇴직 후 청 센터소장(원직급 재임용, 특채)으로 신규임용 (e사람/인사근무사항/임용이력에서 반드시 확인)된 경우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신규채용자 연봉책정 방법에 따라 책정
  - 성과연봉
    - 근무기간의 단절이 없는 경우 계속근무로 간주하여 종전 성과연봉을 적용
- 청 센터소장(부이사관) → 청장(일반직고위)
  - 기준급
    -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e사람/인사근무사항/임용이력에서 반드시 확인)된 경우 기준급 책정방법에 따라 승진전의 기본연봉을 기준급으로 책정하되, 승진전 기본연봉 금액이 기준급 하한액보다 적은 경우 기준급 하한액 적용
  - 직무급
    - 직무급 지급의 경과조치에 따라 '10년에는 3,600천원, '11년부터는 4,800천원 적용
  - 성과급
    -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승진 전 성과급을 적용

## 라. 행정사항

- 각 관서장은 연봉이 잘못 책정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 '09년에는 ○○청 및 ○○위원회 등에서 연봉책정 착오 사례(센터소장에서 본부국장 또는 청장 임용시, 지노위위원장에서 센터소장 임용시, 지청장에서 지노위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임용시 등)가 있어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해당자의 연봉을 재조정하도록 한 바 있음
- 각 청 및 위원회는 연봉책정 결과를 고위공무원 임용 후 10일 이내에 아래 양식에 따라 운영지원과(재무)에 보고

관서명	직 위 (직무등급)	성 명	연봉액 (천원)	기본연봉(천원)		성과연봉 (천원)	연봉월액 (원)	적용일자
				기준급	직무급			

담당 : 운영지원과(재무) 4급 윤상훈, 6급 김승희 ☎ 02-2110-7482

## 22. 청사 수급관리

### 가. 목 적

- 대민 서비스 제고 및 청사의 안정화를 위해 산재기금 등 임차청사를 대상으로 신·증축, 매입 등을 통해 노동행정 수요에 맞는 자체청사를 확보
- 비연고 직원을 위한 직원숙소 확보를 통하여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사기 진작

### 나. 추진방침

- 정부청사관리규정에 의거 청사확보가 시급한 지방노동관서로 부터 청사수급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조정
- 청사신축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4개년으로 연차적 구분 추진  
※ 1~2차년도: 부지매입, 3차년도: 설계 및 공사착공, 4차년도: 공사준공
- 청사매입·임차는 1~2개년으로 추진

### 다. 추진계획

#### (1) 청사수급관리계획 대상

- 산재기금 및 임차 청사(붙임 청사현황 및 추진계획 참조)
-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의 증원으로 사무공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청사
- 비연고 공무원의 주거용 숙소

#### (2) 청사수급관리계획 제출(소속기관)

- 청사수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성, 소요면적 및 예산 등을 작성하여 제출  
※ 청사(숙소)수급 필요 소속기관에 작성서식 등 공문시달 예정 ('10.1월말)



(3) 청사수급관리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조정·승인 요청(본부)

- 소속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청사수급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조정하여 청사수급관리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10. 2월말)
  - ※ 고용지원센터는 고용서비스정책과에서 지노위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청사수급계획 일괄 검토
- 조정·승인된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소속기관에 통보('10. 4월초)

(4) 예산확보(본부 및 소속기관)

- 청사신축 등 청사관리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작성·제출(본부, '10.1월)
-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청사수급관리계획서를 기준으로 청사신축 등 예산 반영 추진(본부)
  -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시 해당 지방관서에서 기획재정부에 사업설명 등 수행(소속기관)

(5) 예산집행(소속기관)

- 확정된 청사예산의 사업집행은 지방관서장 책임하에 매입, 신축, 임차 등 추진

라. 행정사항

- 지방관서 등 소속기관은 운영지원과(시설)에 청사수급관리계획안 제출 : '10. 2월말까지
- 청사 신축·매입이 확정된 지방관서(서울강남, 여수, 충주)는 예산 배정 전부터 토지·건물 등 사전 조사 및 준비를 철저히 하여 조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

담당 : 운영지원과(시설) 5급 이병재, 6급 소병관 ☎ 02-2110-7492

## 청사현황 및 추진계획

### ■ 청사현황

계	일반회계청사		산재기금청사
	보유	임차	
47	33	3	11
지방관서	서울청,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관악, 춘천*, 강릉, 원주, 영월, 부산청, 부산북부, 부산동부*, 울산, 양산, 진주, 대구청*, 포항, 안동, 인천북부, 수원*, 안양, 안산, 성남, 의정부, 광주청*, 전주*, 목포, 군산, 익산, 대전청*, 청주*, 천안, 보령	서울서부, 고양, 평택	서울강남, 태백, 창원, 통영, 대구북부, 구미, 영주, 경인청, 부천, 여수, 충주

※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지역 청사 신축시 등 병행하여 추진

### ■ 청사신축 등 추진 실적 및 진행현황

○ 최근 4년간 추진 실적

계	'06년	'07년	'08년	'09년
12	3	2	3	2
기관명	서울북부, 성남, 대구청*	안양, 서울남부(매입)	서울청(매입), 원주, 부산동부*	서울동부(매입), 강릉

○ 2010년 진행 현황

계	공사준공	청사매입 계약	토지매입 계약
4	1	1	1
기관명	구미	서울강남	여수, 충주

※ 산재기금청사 중 대구북부는 행정안전부에서 정부합동청사로 신축 진행중

### ■ 향후 추진계획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9개소	2	2	2	2(3)	1
기관명	서울서부, 고양	평택, 통영	경인청, 태백	부천, 창원*	영주

※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적정 청사부지·건물매입이 있는 경우 변경 추진 가능

## 23. 시설공사 기술지원

### 가. 목 적

- 청사 신축 등 사업 추진시 적합성 여부, 설계도서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및 현지 지도 등을 통해 건실한 청사 건립을 도모

### 나. 추진계획

#### (1) 기술지원 대상

- 청사 신축
  - 준공 : 구미지청
  - 토지매입 계약 : 여수, 충주지청
- 청사 매입 : 강남지청

#### (2) 주요내용

- 매입 대상 토지 및 건물 현지 출장 및 검토
- 사업별 집행계획 및 설계단계별(기본·실시) 설계도서 검토
- 터파기, 구조물공사 등 주요 공정별 현지출장 기술지도
  -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등)에 의한 적정 시공여부 등
  - 시공상 문제점 및 예산집행 관리 등
- 청사 신축·매입시 발생하는 기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관서의 요청에 따라 지원팀을 구성하여 추가 지원 실시

### 다. 행정사항

- 매입 대상 토지 및 건물 선정시, 매입 등 계약 체결 사항, 공사착공 후 분기별 공사 진행사항(공정율, 예산집행 등) 등은 본부에 보고
- 청사신축 및 매입 등 업무 수행은 청사신축 기술지원 업무 매뉴얼과 청사매입 업무 매뉴얼을 참고하여 추진

담당 : 운영지원과(시설) 5급 이병재, 6급 소병관 ☎ 02-2110-7492

## 24.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

### 가. 목 적

- 에너지절약을 통해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의식의 확산을 도모

### 나. 기본방침

- 『노동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에 의한 기관별 에너지절감 목표관리 및 에너지절약운동 적극 추진
  - ※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 2005-5호)
  - ※ 『공공부분의 효율적 에너지절약 추진 강화』(국무총리특별지시 2009-4호)

### 다. 중점사항

- 에너지소비총량제 설정·관리
  - 당해연도 에너지소비 총량을 최근 2년간 평균에너지소비 총량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목표 설정 및 관리
- 에너지절약 추진체계 구축
  - 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관서 자체 에너지절약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하반기 각1회 이상 위원회 개최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을 통한 에너지절약사업 타당성 및 에너지관리진단 시행 검토
  - 대 상 : 건물 연면적 3,000㎡이상인 단독청사 기관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 의무화
  - '12년까지 청사내 조명의 30%를 LED조명으로 교체하여야 하므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확보 등 추진
- 물 절약 추진을 통한 에너지절약 가속화 도모
- 5부제·요일제 등 특성에 맞는 승용차운행 자제방안 추진

## 라. 추진계획

- 지방관서별 『에너지절약 추진대책』 수립·시행
    - 지방관서는 에너지절약 추진지침을 참조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 년 1회 이상 에너지절약 추진실태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에서 반기별 에너지절약 추진 계획 및 실적을 평가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
    - 본부 또는 청에서 년 1회 이상 에너지절약추진실적 미흡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 실시
- ※ 별도 공문시달 예정, 산하단체는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 마. 행정사항

- 추진계획 및 실적 제출
    - 지방관서는 추진계획 및 실적을 '10. 11월말 까지 본부에 보고
      - 내용 : '09. 에너지절약추진실적('09.7.1.~'10.6.30.) 및 '10. 에너지절약추진계획('10.7.1.~'11.6.30.)
    - 산하단체는 연면적 10,000m<sup>2</sup> 이상 소속기관의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본부에 보고('10.2월)
      - 내용 : '09. 에너지절약추진실적('09.1.1~'09.12.31.) 및 '10. 에너지절약추진계획('10.1.1.~'10.12.31.)
- ※ 실적 및 계획 보고양식 별첨

담당 : 운영지원과(시설) 5급 이병재, 7급 이상원 ☎ 02-2110-7493

## 25.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합리적 인력운용 정착

### 가. 목 적

-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에 있어 불합리한 사용 관행 근절과 합리적인 인력운용을 통해 제도 조기정착 도모

### 나. 추진계획

#### 1)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 「2009년 제2차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지침 및 처우개선 방안(‘09.9.1)」에 따라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 보수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표」를 적용하고, 휴일·휴가 등 기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취업규칙 등을 적용

#### 2) 무기계약근로자 합리적 인력운용

- 소속기관·부서 및 직종별 정원에 따라 현원 관리·운영
- 인사·복무 관련 자료 적정 관리 및 연 2회 근무성적 평정 실시
-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 부여

#### 3) 기간제근로자 사용원칙 준수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은 ‘10년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 범위 내에서 결원대체, 노동통계 조사 등 일시적·한시적 업무에 한해 사용  
※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담당
- 업무를 구체화·특화하는 등 합리적 업무부여로 차별문제 예방

#### 4) 행정인턴십 원활한 시행

- 청년실업 감소, 행정체험 기회 제공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09년에 이어 행정인턴십 도입

- 단순행정 보조업무는 지양하고 전공·자격증 등을 고려,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 분야에 채용
  - 취업캠프 운영, 취업정보 제공, 사이버교육 과정 확대 등을 통하여 행정인턴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조기취업 유도
  - 채용규모, 계약기간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추후 지침 시달 예정
- 5)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영 실태 지도·점검
- 인력관리 및 보수지급의 적정성, 기간제근로자 사용원칙 준수 여부, 차별문제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사항 등 점검
  - 점검시기 : 2010.11월(지도·점검계획 별도 시달)

#### 다. 행정사항

##### 1)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조정 계획 수립

업무의 신설·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원조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

##### 2)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 수립

확정된 '10년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 중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인원 및 소요예산을 조정하고 운영지원과에 통보

- 2011년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 수립(9월말)→운영지원과 통보(10월)

##### 3)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다음달 5일까지 운영지원과로 보고

담당 : 운영지원과(협력지원) 5급 소병년, 7급 신창용 ☎ 02-6902-8212

## 26. 공무원단체 지원 및 관리

### 가. 목 적

- 건전하고 모범적인 공무원노사관계 구축
-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직장협의회 활성화 및 합리적 운영

### 나. 추진계획

- 1) 직원대표와의 정기 간담회 개최
- 2) 직원들의 사기진작, 밝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형성 및 조직 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의견수렴 체계 활성화 적극 추진
- 3)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

### 다. 행정사항

- 1) 지방관서별로 공무원단체 담당자 지정·운영
  - 2) 지방청 주관 간담회 개최
    - 대화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청장 등 주관으로 그 소속기관 직원대표를 대상으로 간담회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
  - 3) 직장협의회 개최
    -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기관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협의회를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
  - 4) 직원간담회 개최
    -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기관은 직원대표(기관별 자체 선출)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
- ※ 직장협의회 등 의견수렴 활성화방안(총무12110- 3115호, '03.10.21), 노동부및소속기관직원간담회운영지침('98.7.27) 참조

담당 : 운영지원과(협력지원) 5급 소병년, 6급 신현수 ☎ 02-2110-7495



## 27. 직장동호회 운영지원

### 가. 목 적

- 우리부 직원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통한 조직화합 및 행정의 능률성 제고

### 나. 추진계획

#### 1) 1인 1동호회 갖기 운동 전개

소속기관 내 1인 1동호회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동호회 운영 활성화

#### 2) 중앙행정기관 주최 동호인대회 적극적인 참여

우리부 위상을 제고하고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주최 동호인대회 적극적인 참여

#### 3) 신규동호회 적극 발굴 지원

신규동호회를 발굴하고 초기 안정적인 정착 지원

### 다. 행정사항

#### 1) 동호회 현황 보고

소속기간 내 동호회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운영지원과에 보고(연초)

#### 2) 동호회 운영비용 지원

동호회 운영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  
- 직원 참여도, 대회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산 지원

담당 : 운영지원과(협력지원) 5급 소병년, 6급 신현수 ☎ 02-2110-7495